

녹색성장 연구 10-16-Ⅱ

()
가

- : -

2010. 12. 30.

가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air
pollution control by introduc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 THE CLEAN AIR ACT -

연구자 : 현준원(부연구위원)

Hyon, Jun-Won

2010. 12. 30.

목 차¹⁾

청정대기법	15
I 장.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15
파트 A. 공기 질 및 배출 한도	15
파트 B. 오존 보호. 폐지됨	200
파트 C.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 방지	200
파트 D. 달성 제외 지역의 계획 요건	228
II 장. 이동 공급원의 배출 기준	319
A 파트. 자동차 배출 및 연료 기준	319
B 파트. 항공기 배출 기준	407
C 파트. 청정 연료 차량	409
III 장. 개 론	439
IV 장. 소음 공해 · 산성 침전물 관리	483
V 장. 허가	563
VI. 성층권 오존 보호	585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공법 95-95)	625
에너지보호법 발채 규정(공법 96-294)	638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공법 101-549)	646
1995년도 국가고속도로체계지정법 438조(공법 104-59)	676

1) 본 간행본(2권)의 첨부 간행본에는 고품폐기물처리법, 수은함유충전가능배터리관리법, 1990년도 오염방지법, 독극물관리법, 1992년도 주택용납성분페인트위험감소법 1018조, 석면관련법 특정규정, 1972년도 소음관리법, 안전음용수법, 1996년도 안전음용수법개정안, 1980년도 종합환경대책 및보상책임법, 그리고 1986년도 수퍼펀드 개정안 및 재인가법(SARA) 등이 수록되어 있다.



청정대기법

[2004년 2월 24일, P.L. 108.201을 통해 개정됨]

청정대기법 목차¹⁾

I 장.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15
파트 A. 대기질 및 배출 한도	15
101조. 조사 및 목적	15
102조. 협조 활동 및 통일 법칙	16
103조. 연구, 조사, 교육 및 기타 활동	17
104조. 연료 및 차량 관련 연구	27
105조. 대기오염 계획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교부금	29
106조. 주 정부간 대기질 관련 기관 또는 위원회	32
107조. 대기질 관리 지역	33
108조. 대기질 기준 및 관리 기법	42
109조. 국가 대기질 기준	47
110조. 시행 계획	49
111조. 신규 고정 공급원 관련 성과기준	65
112조. 위험 대기오염물질	76
113조. 연방정부 집행	148
114조. 검사, 감시 및 출입	161
115조. 해외 대기오염	164
116조. 주 권한의 보유	165
117조. 대통령 대기질 자문국 및 자문위원회	165
118조. 연방 시설의 오염원 관리	166
119조. 비철 원광 제련소 명령	168
120조. 준수불이행 벌칙	173
121조. 자 문	180
122조. 특정 규제 외 오염물질 목록	181

1) 이 목차는 청정대기법 일부는 아니나 본 간행물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여기 수록함.

123조. 굴뚝의 높이	183
124조. 주 정부 계획의 적합성 보장	184
125조. 경제혼란 및 실업방지대책	185
126조. 주 정부간 오염 감축	187
127조. 일반 공고	189
128조. 주 정부 사무국	189
129조. 고형폐기물 연소	190
130조. 배출 계수	199
131조. 토지 사용 권한	200
파트 B. 오존 보호	200
150조~159조 폐지조항	200
파트 C.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 방지	200
파트 C의 1	200
160조. 목 적	200
161조. 계획 요건	201
162조. 최초 분류	201
163조 증분 및 최대치	202
164조. 지역 재지정	206
165조. 사전 건축 요건	209
166조. 기타오염물질	216
167조. 집 행	217
168조. 계획 승인전 기간	217
169조. 용어 정의	218
파트 C의 2	220
169A조. 연방 I 등급 지역의 가시성 보호	220
169B조. 가시성	225

파트 D. 달성 제외 지역의 계획 요건	228
파트 D의 1. 달성 제외 지역 개요	228
171조. 용어 정의	229
172조. 달성 제외 계획 규정 개요	230
173조. 허가 요건	234
174조. 계획 절차	237
175조. 환경보호청의 보조금	239
175A조. 유지관리 계획	239
176조. 특정 연방 지원에 대한 제한	240
176A조. 주간 교통 위원회	246
177조. 신규 자동차 배출기준 및 달성 제외 지역	247
178조. 지침 문서	248
179조. 달성 불이행 제재 및 결과	249
179B조. 해외 국경 지역	252
파트 D의 2. 오존 달성 제외 지역의 추가 조항	253
181조. 분류 및 달성일자	254
182조. 계획서 제출 및 요건	258
183조. 연방정부 오존대책	284
184조. 주 정부간 오존 대기오염 관리	294
185조. 오전달성제외 심각한 지역 및 극심한 지역의 달성 불이행 집행	297
185A조. 과도기 지역	299
185B조. NO _x 및 VOC 연구	299
파트 D의 3.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 지역의 추가 규정	300
186조. 분류 및 달성 일자	300
187조. 계획서 제출서류 및 요건	302
파트 D의 4. 미립자 물질 달성 제외 지역의 추가 규정	309

188조. 분류 및 달성 일자	309
189조. 계획규정 및 계획 제출 일정	312
190조. RACM 및 BACM 지침 공포	316
파트 D의 5. 황산화물, 이산화질소나 납 달성제외지역의 추가 조항	316
191조. 계획 제출기한	316
192조. 달성 일자	317
파트 D의 6. 유보조항	317
193조. 유보조항 개괄	318
II 장. 이동 공급원의 배출 기준	319
201조. 약식 표제	319
파트 A. 자동차 배출 및 연료 기준	319
202조. 기준 제정	319
203조. 금지 행위	342
204조. 금지명령 조치	346
205조. 민사 벌금	346
206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엔진 적합성 시험 및 인증	350
207조. 실제 사용 중인 차량 및 엔진의 적합성	356
208조. 정보수집	367
209조. 주 정부 기준	368
210조. 주 정부 보조금	371
211조. 연료 규정	372
212조.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	395
213조. 신규 자동차의 연료 효율 향상	395
214조. 자동차의 미립자 배출가스 연구	398
215조. 고위도 성능 조정	398

216조. 파트 A의 용어 정의	400
217조. 자동차 적합성 프로그램 수수료	402
218조. 유연 휘발유를 필요로 하는 엔진 생산의 금지	403
219조. 도시 버스 기준	403
파트 B. 항공기 배출 기준	407
231조. 기준 제정	407
232조. 기준 집행	408
233조. 주 정부 기준 및 관리대책	409
234조. 용어 정의	409
파트 C. 청정연료차량	409
241조. 용어 정의	409
242조. 청정연료차량의 적용 요건	412
243조. 소형 청정연료차량의 기준	414
244조. 캘리포니아 기준에 의한 행정관리 및 집행	423
245조. 중대형 청정연료차량의 기준 (26,000lbs미만, gvwr 8,500초과)	423
246조. 중앙 연료공급 군단	424
247조. 차량 전환	429
248조. 연방부서기관의 군단	431
249조. 캘리포니아 모의실험 프로그램	432
250조. 일반 규정	437
III 장. 개 론	439
301조. 행정 관리	439
302조. 용어 정의	441
303조. 긴급 권한	445

304조. 시민 소송	446
305조. 소송의 대리인	450
306조. 연방정부조달	451
307조. 행정소송 및 사법심사 관련 일반 규정	452
308조. 강제 면허	460
309조. 정책심사	461
310조. 기타 영향을 받지 않는 권한	461
311조. 기록 및 감사	462
312조. 경제영향분석	462
313조. 폐지 조항	464
314조. 노동 기준	464
315조. 분리 가능성	465
316조. 하수 처리 보조금	465
317조. 약식 표제	466
317조. 경제영향평가	466
318조. 폐지 조항	469
319조. 대기질 감시	469
320조. 대기질 모델링 표준화	470
321조. 고용 효과	471
322조. 고용인 보호	473
323조. 소매점의 소유자가 부담할 특정증기회수를 위한 배출관리비용	475
324조. 석유화학제품 영세상인의 증기회수	476
325조. 특정 영역의 면제	477
326조. 특정 조항의 구성	478
327조. 충당금의 권한	478
328조. 해외 대륙붕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479

IV 장. 소음 공해 · 산성 침전물 관리 ¹⁾	483
401조. 조사 및 목적	484
402조. 용어 정의	486
403조. 기존 설비 및 신규설비 관련 이산화황 허용 프로그램 ..	492
404조. I 단계 이산화황 요건	498
405조. II 단계 이산화황 요건	520
406조. 주 정부 배출량이 0.80 lbs/mmBtu 이하인 경우 허용량 ...	533
407조. 질소산화물배출감축프로그램	533
408조. 허가 및 준수 계획	538
409조. 재동력 공급원	544
410조. 추가 공급원 선정	547
411조. 과다 배출량 벌금	550
412조. 감시,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551
413조. 다른 규정과의 일반 적합성	553
414조. 집 행	553
415조. 청정석탄기술 행정인센티브	554
416조. 비상시 보증, 경매, 보유	555
V 장. 허가	563
501조. 용어 정의	563
502조 허가프로그램	564
503조. 허가 적용	572
504조. 허가요건 및 조건	574
505조. 환경청장 및 인근 주에 대한 통지	576
506조. 기타 권한	579

1) IV장은 산성 침전물 관리와 관련되며, 소음 공해와 관련된 기존의 IV을 폐지하지 않고 공법 101-549 401조가 추가되었다.

507조. 소규모 사업 고정 공급원의 기술 환경 준수 지원프로그램	580
VI 장. 성층권 오존 보호	585
601조. 용어 정의	585
602조. I 등급 물질과 II 등급 물질목록	587
603조. 감시 및 보고요건	593
604조. 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596
605조. I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602
606조. 진행상황 일정	604
607조. 교환 권한	605
608조. 전국 재활용 및 배출감축프로그램	606
609조. 자동차 공기조화기 가동	608
610조. 염화불화탄소 성분 필수품 외 품목	611
611조. 라벨표시	613
612조. 안전대안정책	615
613조. 연방정부 조달	617
61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618
615조. 환경청장의 권한	619
616조. 몬트리올협정 당사국간 양도	619
617조. 국제 협력	620
618조. 기타 규정	621
부 록	623

청정대기법¹⁾

I 장.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A.

조사 및 목적

101조. (a) 의회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토 인구는 상당 부분 대체로 지방 관할구역 경계를 통과하고 보통 둘 이상의 주로 확대되며 급속도로 팽창하는 대도시 지역 및 기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지,
- (2) 도시화, 산업발전 및 자동차 사용 증가로 대기오염의 양과 복잡성이 커지면서 공중 보건복지에 미치는 위험 증대,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재산 피해 및 열화, 그리고 대기 및 지상 교통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 (3) 대기오염방지(공급원에서 생산, 생성된 오염물질을 어떻게든 감축하거나 제거) 및 공급원별 대기오염관리가 주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의무인지,
- (4)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및 통솔력이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연방, 주, 지역 및 지방의 협조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지.

(b) 본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공중보건복지 함양을 위해 국가의 대기 자원의 질과 인구의 생산 능력 보호, 증대
- (2)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을 주도, 추진하여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

1) 청정대기법(42 U.S.C. 7401.7626)은 공법 159 (July 14, 1955; 69 Stat. 322) 및 후속 입법에 의한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과 연계하여 주 및 지방 정부에 기술 및 재정 지원 제공
 - (4)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장려와 진작
- (c) 오염예방. 이 법의 주요 목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오염예방과 관련하여,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조치를 격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후원하는 것이다. [42 U.S.C. 7401]

협조 활동 및 통일 법칙

- 102조. (a) 환경청장은 대기오염예방관리를 위해 주 및 지방 정부의 협조 활동을 장려하며, 다양한 조건 및 필요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한, 대기오염예방관리와 관련하여 향상된 통일 주 및 지방 법칙을 제정하도록 장려하며, 대기오염예방관리를 위해 주 정부 간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환경청장은 대기오염예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부서기관과 협조하고 부서기관의 협조 활동을 장려하며, 연방 정부 내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자원에 대해 연방정부 대기오염관리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c) 의회의 동의는 이 조에서 둘 이상의 주가 미국의 여타 법규나 조약에 저촉되지 않게 약정 또는 협약을 협상, 체결하는데 부여되는데, 이는 (1) 대기오염예방관리 및 관련 법규의 집행에 대한 협조 노력 및 상호 지원, 그리고 (2) 이 약정이나 협약의 발효에 바람직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기관을 연대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설립하기 위함이다. 이 약정이나 협의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면 어떤 주 정부나 관련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질 관리 지역의 대기오염 관리 및 저감과 관련된 1967년도 ‘대기질 법’의 제정 일자 후 주 정부사

이에 체결된 약정이나 협약은 이 대기질 관리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가 참여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7402]

연구, 조사, 교육 및 기타 활동

103조. (a) 환경청장은 대기오염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 (1) 대기오염의 원인, 영향(보건복지 영향 등), 정도, 방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 실사, 실험, 시연, 조사 및 실험 등의 조정 및 추진 활동을 수행, 후원하며,
- (2) 대기오염관리기관 및 기타 해당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기구, 조직, 그리고 각 활동의 주체자인 개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협조하며, 기술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 (3) 대기오염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 혹은 자신의 판단으로 대기오염문제가 오염 원인이나 기여하는 물질의 공급원이 있는 지역 이외에 어느 주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정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책을 권장하기 위해 기관과 협조하여 실사연구를 수행하고, 문제를 조사하며,
- (4)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대기오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행 및 제안의 심사 및 평가 작업을 돕고,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 (5) 대기오염의 원인, 영향, 정도, 예방관리와 관련된 담당자 교육 조정, 추진 업무를 수행, 후원하여야 한다.

(b) 이전 항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청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및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와 결과를 수집하고, 간행물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고안 등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 (2) 연구 및 기타 활동을 준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연방부서기관, 대기오염관리기관, 공공조직 및 사설 조직, 기구, 위원회, 관련 산업과 협조하기
 - (3) 이 조(a)(1)항에 명시한 목적을 위해 대기오염관리기관, 기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사설기관, 기구, 조직 및 개인에게 보조금 제공
 - (4)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조직, 기구 및 개인과 약정체결(개정 법령의 3648조 및 3709조와 무관)(31 U.S.C. 529;41U.S.C.5);
 - (5) 환경청에, 공공 또는 비영리사설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구단체를 조직, 관리
 - (6) 기타 관련 의무가 있는 연방 부서기관,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조직, 기구 등과 협조하여 대기오염 관련 정보 및 다양한 대기질의 화학, 물리, 생물학적 영향 및 대기오염예방관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수집, 유포
 - (7) 대기오염예방관리를 위해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정, 방법 및 원형 장치 등의 개발
 - (8)¹⁾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구축, 장비 제공 및 인원 확충
- (a) 항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대기오염관리기관 직원 및 유자격자에게 교육 및 교육 보조금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 기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사설기관, 단체, (a)(5)항에 명시한 목적에 맞는 기구 등에 보조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기오염관리단체 직원 이외의 자에 제공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적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대기오염관리단체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법 101.549 (104 Stat. 2700) 901(a)(2)(C)항은 103(b)항에 (8)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아마도 (7)항 다음에 추가하려고 했을 것임.

- (c) 대기오염감시, 분석, 모델링 및 목록 연구. (a)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샘플링, 측정, 감시, 분석 및 모델링과 관련하여 연구시험 및 방법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각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화합물 및 대기 중 화학 변형물질 고찰
 - (2) 대기 배출가스, 침전물, 대기질, 표층수 질, 숲 상태 및 가시성 장애 등의 상황 및 동향에서 확실한 수량 데이터를 감시, 수집, 집계하고, 주별로 수집, 국가별로 취합한 대기질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국가 네트워크 수립
 - (3) 오존 전구물질, 오존 형성, 오존 이동, 지역별 도시 오존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오존 추세 및 오염물질과 오존의 상호작용 등 자료 이해를 돕기 위해 샘플링, 측정, 감시, 분석 및 모델링과 관련하여 개선된 방법 및 기술의 개발. 역점을 두어야 할 기법은 다음과 같다.
 - (A) 도시에서 자연적, 인위적 대기오염원에 기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가스목록 작성 능력을 높이기.
 - (B) 인위적, 생물적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오존 및 기타 산화물 형성에 반응하는 수단의 이해를 높이기.
 - (C) 지역별 오존 오염의 관리 방안을 조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 (4) 대기오염관리규정의 효과성과 이 항에 따라 수집한 감시 및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검사, 평가하는 정기보고서를 5년마다 1회 이상 의회에 제출
- (d) 환경보건영향연구 (1)환경청장은 보건행정업무장관과 협의하여 목재 스모크 등 대기오염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단기, 장기

영향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 (A)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는데 필요한 대로 역학, 임상, 실험실 및 현장 연구 등을 실시하고,
 - (B) 기존 연방과학실험실 및 연구센터시설을 상환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 (C) 기타 연방기관과 의논해서 다른 기관에서 실시중인 유사 연구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이 항에 따른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혼합물에 정기적, 우발적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사, 평가하는데 필요한 방법 및 기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기관 간 프로그램 조정 전담반 구성. 전담반은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환경청, 독극물질병기록기관, 국립독성프로그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의료장관 및 에너지부 등의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기관 간 전담반의 장은 환경청의 대표가 되며, 이 항의 제정일자 경과 후 60일 이내 최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B) 이 항의 제정일자 경과 후 12개월 이내, 이 법 112(b)항의 위험 오염물질 목록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C)항에 따라 환경보건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평가 작업. 이 평가는 인구밀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량과 발생 빈도수 등 사람에 대한 합리적 독성 예측 및 노출요인에 기초하며, (A)항에 따라 설립한 기관 간 전담반이 심사하여야 한다.
 - (C) (B)항의 위험 대기오염물질 관련 환경보건평가 작업은 기관 간 전담반의 최초 회의 경과 후 6개월 지나 시작, 그

후 96개월 이내 완수한다. 평가서는 24개 이상 작성하여 매년 발표하여야 한다. 평가서는 기관 간 전담반 및 환경청 과학 자문국과 협의하여 환경청장이 개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i) 사람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 및 관련 급성, 아급성, 만성 부작용을 나타내는 오염물질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독성, 역학 정보 조사, 요약 및 평가
- (ii) 사람의 건강 영향 및 노출 수준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보 차이 판단, 그리고
- (iii) 적절한 경우, 독성, 흡입 검사 등 사람에서 부작용 위험이 상당할 수 있는 노출 형태나 수준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추가 활동조사

(e) 생태계연구. (a)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해당되는 경우 해양대기상무차관보, 수산물야생국장 및 농무부 장관과 협조하여 생태계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의 장, 단기적 원인, 영향 및 동향 등의 이해를 높이는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와 관련하여 지역의 대표적, 중요 생태계 조사
- (2)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된 생태계 위험 평가, 대기오염물질의 만성적, 간헐적 노출 원인과 영향의 특성 분류 및 가역성 판단
- (3) 대기확산모델 개선안 및 감시 시스템과 대기오염 관련 복합 환경스트레스의 노출 및 영향을 평가, 수량화 작업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
- (4) 대기오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산성 침전물 및 기타 대기에서 비롯된 오염물질이 표층수(습지 및 어귀 등) 및 지하수에 미치는 장, 단기 생태계 영향 평가를 포함

- (5) 대기오염이 숲, 물질, 농작물, 생물 다양성, 토양 및 기타 대기 오염물질에 노출된 토양수생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6) 대기오염물질 노출 결과로 인한 생태 피해 관련 경제 비용 산출.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환경청장은 1972년 해안지역관리법 315조에 따라 마련된 어귀연구 예비비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f) 액화가스연료유출시험시설

- (1) 환경청장은 연방과학공학기술조정위원회장과 협의하여 액화가스연료유출시험시설에서 실시할 실험연구와 함께 실험연구 분석 작업을 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별 현장실험 일정 및 화학물질목록을 개발하여야 한다. 매년 최소 10가지 화학물질 분석과 매년 최소 2가지 화학물질을 선택하여 현장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유출 사고결과 사람의 건강에 최대 위험가능성을 나타낼 화학물질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A) 고정 부지에서 누출 혹은
- (B) 화학물질 수송 관련

- (2)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최소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대기확산 예측향상모델 개발
 - (i) 바람이 변화무쌍한 인공 구조물이나 장애물 등 복합 지형에서 짙은 가스 누출 설명
 - (ii) 난류가 확산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 (iii) 에어로졸의 실제 양상 고찰, 수증기와의 물리화학적 반응, 지상침전 및 물을 뿌려 없애는 일 등.
- (B) 다음의 방법으로 기존, 향후 대기확산모델 평가
 - (i) 농후 가스 모델과 관련하여 엄격하고, 표준화 방법론 개발,

- (ii) 현장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후가스 확산 모델 개발,
- (C) 고정 부지 및 독성 화학물질의 운송 관련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위험 완화 및 비상 대책의 효과성 평가.
 유출 사고와 관련된 모델은 평가 절차를 계획, 이행하는데 있어 그 유용성 및 사고로 유출된 대기오염위험물질에 사람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완화 전략을 정기적으로 평가, 보완하여야 한다.
- (3) 에너지장관은 이 항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위해 액화가스연료유출시험시설을 이해관계자가(다른 연방기관 및 업체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g) 오염방지 및 배출 감독. (a)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규제 외 전략 및 기술을 개발, 평가, 시연을 할 기본 공학 연구기술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략 및 기술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커다란 위험이 되는 오염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업, 공공이해단체, 학계 및 전략 및 기술개발 이해관계자 등에 참여기회를 주어 개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기오염물질 즉, 화석연료공장 등 고정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중금속, 미립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방지 또는 저감하는 규제 외 전략 및 기술 개선. 이 전략 및 기술은 에너지 보존, 최종 사용 효율성, 청정 연료로의 연료전환 등 다양한 규제 외 관리 전략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상대적 비용 효과성과 장기 영향의 개선안을 포함하며, 기존 시설 및 신규 시설별로 고려하여야 한다.
 - (2) 지역 공급원의 대기 배출가스감축을 위한 규제 외 전략 및 기술 개선

- (3) 대기오염위험물질의 유출사고 방지, 탐지 및 교정을 위한 규제 외 전략 및 기술 개선
- (4) 대기의 질이 악화되지 않게 타이어 폐기 관련 규제 외 전략 및 기술 개선

이 항의 어느 내용도 대기오염관리 요건의 해당자에 강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항에서 허가한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해당 연방기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 (h) NIEHS 연구. (1)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장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확인, 분류, 수치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대학 및 의과대학별 보조금뿐만 아니라 교내연구 및 계약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연구소장은 환경보건 분야에서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연구소장은 프로그램이 환경청장이 주도하는 연구와 저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4) 이 항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총당금액을 연구소에 허가한다.

- (i) 연구 조정. 환경청장은 연방 정부 생태대기오염연구업무와 연계하여 이 항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하는 계획을 개발,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이 항의 제정일자 경과 후 6개월 이내 의회에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도시 및 농촌 환경에서 감시 역량을 증대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 감시 기지국 및 네트워크 평가
- (2) 대기과정의 효과 및 대기오염영향의 고려사항을 포함하기 위

해 (e)항의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개연성 및 학문적 가치 범위의 고찰

- (3) 대기오염물질 및 기타 우려할만한 대기전파성 화학물질의 배출을 비용 효과적인 감축 가능성 능력 측면에서 (g)항에서 개발한 방법론 등 오염방지기술 평가, 등급조정 방법론. 이 항의 제정일자 경과 후 2년 이내, 그 후 4년 마다, 환경청장은 이 항에 따라 개발한 계획을 이행하는데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 하며, 계획 수정사항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j) 국립산성비평가프로그램 지속

- (1) 1980년 산성비법에 제시된 산성비연구프로그램은 이 항의 수정사항에 따라 계속되어야 한다.
- (2) 산성비 전담반은 환경청장, 에너지장관, 내무장관, 농무장관, 국립해양대기청장, 국립항공우주청장 및 기타 대통령이 선임 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이 항의 제정일자 경과 후 30일 이내 구성원들 중에 전담반의 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 (3) 전담반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A) 1980년 산성비법에 따라 개발한 종합연구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한 연구 활동상황의 검토, 현행, 향후 연구 우선순위를 다룰 조정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당한 연구 격차를 조사하는 수정계획안 개발. 수정계획 초안은 이 항의 제정일자 경과 후 6개월 이내 전담반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제출 후 60일 기간에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안은 착수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B) 연방 참여기관과의 조정, 기관의 연구 감시활동 증대, 산성침전물 관리프로그램의 상태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방법론 및 데이터의 질 및 이용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학계의 추가 연구 활동 지원. 이 연구 감시활동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한다.

- (i) 산성침전물의 전구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시
 - (ii) 지역의 산성침전물 모델 등 대기와 배출가스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모델, 그리고 생태계의 산성침전물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모델의 유지관리, 개선 및 응용, 그리고
 - (iii) 산성침전물 관리프로그램의 비용, 이익 및 효과성 분석
- (C) 표층수산성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호수의 대표 통계 시료의 시간별 상태 및 변화를 추적하는 국립 산성호수등록부 발간 및 유지관리
- (D) 이 항의 연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방정부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통합예산 권고안을 2년마다 제출.
- (E) 1992년에 시작, 그 후 2년마다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산성 침적물에 대한 기술 정보의 보고는 정책입안자 및 대중과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i) 실제배출량 및 예상 배출량과 산성 침적물 동향
 - (ii) 산성 침적물 전구물질¹⁾ 및 변형산물의 평균 환경 농도
 - (iii) 생태계(숲, 표층수 등), 물질 및 산성 침전물로 인한 가시성 상태:
 - (iv) 침전 원인 및 영향, 표층수질 및 산림토양 조건의 변화도 포함
 - (v) 간헐적 산성화의 발생 및 영향, 특히 고위도 지역 수역과 관련하여,
 - (vi) 정보 이용에서 구체 정책입안자의 결론과 관련된 신뢰도 수준

1) 아마도 '전구물질'일 것임

(F) 1996년에 시작, 그 후 4년 마다, (E)항의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i)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해 달성할 침전물 감소 비율,
- (ii) 이 법 IV장의 산성 침적물 관리 프로그램의 비용 및 이득

(k) 대기오염 학회.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상당히 큰 대기오염문제가 방출 물질에서 비롯되거나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에 기인할 수 있다면, 환경청장은 이 방출이 발생중이거나 발생할 장소 1곳 이상에서 오염가능성문제 관련 학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학회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청장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리인이나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학회에 제시된 증거에 기초하여, 방출 허가를 받았거나 방출 중인 물질이 I 장의 A 파트에서 감축을 조건으로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오염 방지에 합리적이고 적합한 대책에 관한 권고안과 함께 조사결과를 관련 방출 결과를 제공한 조치의 당사자에게, 방출 공급원의 시당국 및 주의 대기오염기관에, 그리고 시당국이 소재한 관할지역에서 주 사이의 대기오염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조사결과 및 권고안은 자문적인 성격을 띠지만, 108조 (b)~(f)항 절차의 일환으로 학회기록과 함께 용인되어야 한다. [42 U.S.C. 7403]

연료 및 차량 관련 연구

104조. (a) 환경청장은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예방관리를 위해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신규, 개선 방법의 연구개발에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하며, 연구 및 개발에 더하여 수행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다음 목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개선방법 개발 위주로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추진
 - (A) 연료 연소 부산물 관리
 - (B) 연소 전 연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가능성물질 제거
 - (C) 연료 기화로 인한 배출 관리
 - (D) 대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료연소효율 향상
 - (E) 사용될 경우 대기 배출량을 감소할 합성연료나 신생연료 생산
- (2)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 단체, 기구 및 개인에게 연방교부금 제공,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단체나 개인과 (A) 연구개발, 대기 중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의 방출을 방지, 또는 통제하는데 산업 전반에서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선장치나 방법과 관련하여 구매, 공사 또는 다른 보증 비용 (B) 현행 내연기관의 저 방출 대체수단 개발 프로그램 비용, (C) 연구개발, 시험 목적으로 구매차량 및 차량엔진이나 그 부품 비용, (D)헌법 개정안 3648조 및 3709조와 관련하여 이 조의 기타 규정을 이행 목적으로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이는 이 조에 따라 허가된 연구나 시연 계약 혹은 이 항의 시연 계약(시공 계약 등)은 미합중국법전 10장 2353조, 군대기관 연구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제한규정에 따라, 그리고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따른 교부금이 150만 달러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환경청장이 법전에 의해 필요한 결정, 승인 및 인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실행 가능한, 대규모로 시연할 수 있는 정도로 신규, 개선 프로세스 및 공장설계 개발을 위해 실험실 및 모의공장시험방식으로 대기오염연구, 실험결과를 결정한다.

-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가능케 하는 신규, 개선 시연 공장이나 프로세스의 구성, 가동 및 유지관리 비용을 마련, 운용, 유지하거나 충족하는데 조력한다.
- (5) 오염물질제거로 인해 상업가치가 있는 부산물 회수 및 판매를 위해 신규방법이나 개선 방법을 연구한다.

(b)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 (1)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의 양 및 질의 측정에 도움이 되는 비용 효과적 도구 기법의 연구개발을 실시, 추진하고
- (2) 기존 연방과학실험실 시설을 상환 조건으로 활용하며,
- (3) 이 조의 목적을 유효하게 하는데 필요한 연구시험개발 및 프로그래밍 작업을 위한 시설 및 시험 부지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 (4) 비밀 프로세스, 기술 자료, 발명, 특허 신청, 특허, 라이선스 및 토지, 공장 시설의 이득, 그리고 구매, 라이선스, 리스 혹은 기증에 의한 자산이나 권리를 획득하며,
- (5) 국내의 예상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하도록 하며,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프로젝트 개발에 조력, 참여할 수 있다.

(c) 청정대체연료. 환경청장은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청정대체연료의 생산, 보급, 보관 및 활용과 관련된 대기 배출가스를 확인, 분류, 예측하여 종래의 휘발유 및 디젤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및 이익을 측정하며, 다른 연방 기관과 의논하여 이 조에서 허가된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U.S.C. 7404]

대기오염계획 및 관리프로그램 지원 교부금

105조. (a)(1)(A) 환경청장은 302조 (1), (2), (3), (4) 혹은 (5)항의 의미 내, 대기오염관리기관에게 국가 대기질의 주요, 부수 기준 시행이

나 대기오염예방관리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비용의 최고 3/4까지 보조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에 맞게, ‘이행’은 그 프로그램 계획, 개발, 수립, 실시, 개선이나 유지와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B) 이 조 (b)항 및 (c)항에 따라, (A)항의 교부금을 받고, 최소 필요한 금액의 2/5이하를 기부하는 대기오염관리단체는 1990년 청정대기법 개정안 제정일자 후 3년간 그 금액을 기부하여야 한다. 이 기관이 필요 수준을 충족, 유지하지 못할 경우 환경청장은 그에 따라 연방 기부금을 축소하여야 한다.

(C) 110조의 해당 이행계획과 관련된 대기오염지역이나 그 일부와 관련하여, (A)항의 교부금은 해당 이행계획을 이행할 실질적 의무가 있는 대기오염관리기관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2) 302(b)(2) 및 302(b)(4)항의 의미 내 대기오염관리기관에 이 항의 교부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대기질 관리지역에서 해당 주, 주 사이, 지방 및 (해당되는 경우) 해외 관계자의 적정 대리인을 제공한다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3) 302(b)(2) 및 302(b)(4)항의 의미 내 대기오염관리기관에게 이 항의 계획 보조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그 기관이 대기질 관리 지역과 관련하여 대기질 종합계획의 개발 역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계획은 대기질 관리지역과, 대기질 기준수립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상업 시설, 인구 및 자연발생요인의 집중 등 여러 양상 및 대기오염물로 인한 공중 보건이나 복지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위험을 피하고 줄이는 경고 권고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b) (1) 특정 회계연도 중 이 조 (a)항의 목적에 맞게 이용 가능한 금액에서, 환경청장은 때때로 이 항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기오염관리기관에 보조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기금 제공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실행 가능한 한 (A) 인구, (B) 실제, 잠재적 대기오염문제의 범위, 그리고 (C) 각 기관의 재정요구 등을 정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조 (a)항의 목적에 맞게 충당, 배정된 총기금의 10퍼센트 이하의 특정 주의 대기오염관리 프로그램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 경계를 지나는 지역에서 프로그램 교부금인 경우, 환경청장은 월경 주의 경우 이 항의 백분율 한도로 부담 가능한 교부금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1)조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떤 주도 그 주내 기관에게 교부금과 관련하여 이 조의 연간 교부충당금의 1퍼센트의 1/2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c) 활동의 유지. (1) 어떤 기관도 대기오염관리 프로그램의 경상지출비와 관련하여 비연방기금비용이 직전 회계연도 중 프로그램 지출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특정 회계연도 중 이 조의 교부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환경청장이 매 회계 연도에 시기적절하게 이 조의 교부금을 하사하기 위해 전전 회계 연도의 교부금과 기관의 예상 지출수준을 비교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경상 및 경상 외 지출비용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는데 있어 그 회계연도 중 환경청장에게 수락 가능한 목적에 맞게 연간 지출에서 때때로 기관의 정기 증액으로 인하여 (a)항 및 이 항의 한도에서 기관을 제외하는데 정히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환경청장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지출 비용의 감소가 해당 정부 부서의 집행지정기관의 프로그램에서 지출비용의 비

임의적 감소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경우 위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교부금을 여전히 제공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교부금을 사용하여 주, 지방 혹은 기타 비연방 기금을 보완하고, 실행 가능한 정도로 늘리는데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떤 기관도 대기오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유지와 관련하여 이 조의 교부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의 교부금은 환경청장이 영향권 내 주의 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과 의논을 끝낼 때까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d) 환경청장은 이 조의 교부금 수령인과 동시에, 이 법 규정의 목적에 맞게 수령인의 편리를 위해, 수령인의 요청으로 관리직원의 명세와 관련하여 이 법 301조의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기타 비용, 월급, 수당, 출장비 등 수령인에게 주는 지급액을 축소할 수 있다. 축소된 지급금액은 환경청장이 이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조 (a)항의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그 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 어느 주에서 이 조의 교부금 신청은 영향권 내 주에서 공청회 사전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환경청장이 부결할 수 없으며, 이 교부금의 기금 관련 약속이나 의무는 영향권 내 주에서(혹은 영향권 내 주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주에서) 공청회 사전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부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42 U.S.C. 7405]

주 정부간 대기질 기관 또는 위원회

106조. 176A(주 사이 대기오염관리) 혹은 184조(주 사이 오존오염관리)에 따라 주 사이 대기질 관리 지정지역별 이행계획의 개발을

1) (1)항일 것이다.

위해 환경청장은 2년간 176A조 또는 18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또는 영향권 내 주의 지사가 지정하고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의 이행계획을 주지사에게 추천할 능력이 있고, 대기질 관리지역 내 주 및 해당 행정구역 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대기질 계획 프로그램비용의 최고 100퍼센트까지 지급할 권한이 부여된다. 처음 2년 기간 경과 후 환경청장은 이 기관이나 위원회의 대기질 이행 프로그램비용¹⁾의 최고 3/5까지 교부금을 마련할 권한이 부여된다. [42 U.S.C. 7406]

대기질 관리 지역

107조. (a) 주정부는 대기질 관리지역 내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을 달성, 유지하는 방식을 명시한 주별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그 주를 포함한 전 지역 내 일차적으로 대기질을 확보할 의무를 지닌다.

(b) 110조에 따른 이행계획을 개발, 실시하는 목적에 맞게

- (1) 197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제정일자 전 이 조의 대기질 관리 지정지역 또는 (c)항의 일자 후 지정된 지역이 대기질 관리 지역이며,
- (2) 주의 일부가 지정 지역은 아니지만 대기질 관리 지역이 되며, 그 일부는 환경청장의 승인으로 주 내 둘 이상의 대기질 관리 지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c) 197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제정일자 경과 후 90일 이내 환경청장은 해당 주 및 지방당국과 협의 후 대기질 기준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주 사이 지역이나 주요 주 내 지역을 대기질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항을 영향권 내 주의 지사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법 101.549의 102(f)(2)항은 106조에 ‘~의 프로그램비용’ 다음에 ‘176A조나 184조에서 설립된 위원회’ 표현을 삽입하였으며, 개정안은 아마 이 표현이 나타나는 처음 위치에서만 이 표현을 삽입하려고 했을 것이다.

(d) 지정

(1) 지정 개요

(A) 신규 혹은 개정 기준 공포 후 최초 지정사항을 주지사가 제출.

환경청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날짜까지, 109조의 오염물질 관련 대기질 국가 기준을 새로, 개정된 내용을 공포한 후 1년 이내, 주지사는(주지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시기에) 주의 지역목록(또는 그 일부)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i) 오염물질 관련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혹은 부합하지 못하는 인근 지역에서 대기질에 기여하는) 지역을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ii) 오염물질 관련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i)항 이외의 지역)을 달성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iii) 오염물질 관련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기준의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유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없는 지역은 분류불능 지역으로 지정한다.

환경청장은 주지사에게 새로 혹은 개정된 국가 대기질 기준을 공포한 뒤 120 일 전에 필요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B) 환경청의 지정사항 공포

(i) 국가 대기질 기준의 공포 또는 개정시, 환경청장은 (A)항에서 제출한 지역의 지정사항을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어느 경우든 새로 또는 개정된 국가 대기질 기준 공포일 자로부터 2년 이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환경청장이 지정사항을 공포하는데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에 최고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ii)(i)항에서 요구된 공표를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A)항에서 제출된 지역(이나 그 일부)의 (지역이나 일부 경계까지 포함) 지정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에 통보를 하고, 수정안이 부적절한 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주에 제공하여야 하며, 지정내용과 그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공표일 전 120일 이내 통보를 하여야 한다. 주지사가 (A)항에서 요구한 대로 목록 전체나 그 일부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환경청장은 주 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나 그 일부)에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지정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iii) 주의 지사가 자신의 동의로 (A)항에 따라 달성 제외, 달성 혹은 분류불능으로 지정된 지역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3)항의(재지정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지정내용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iv) 이 항에서 어느 지역(이나 그 일부)의 지정은 그 지역(이나 그 일부)이 (3)항 또는 (4)항에 따라 재지정 될 때까지 유효하다.

(C) 법규 시행에 의한 지정

(i) 이 항의 (1)(A), (B), 또는 (C)항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지정된 지역(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제정일자 직전에 발효 중인)은 법률 시행으로 (A)(i)항의 의미 내 이들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ii)(1)(E)항 규정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지정된 지역은(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제정일자 직전에 발효 중인) 법률시행으로 (A)(ii)항의 의미 내 오염물질과 관련된 달성 지역으로 지정한다.

(iii) (1)(D)항 규정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지정된 지

역은(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제정일자 직전에 발효 중인) 법률시행으로 (A)(iii)항의 의미 내 오염물질 관련 분류불능 지역으로 지정한다.

(2) 지정 및 재지정의 공표

(A) 환경청장은 (1) 혹은 (5)항의 지정사항을 공표하거나, (4)항의 지정사항을 알리거나, (3)항의 재지정 사항을 알리는 연방기록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B) (1), (4) 또는 (5)항 지정내용의 공표나 발표는 미합중국법전(통지 및 의견 관련) 5장 553조~ 557조 규정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나, 여기 어떤 내용도 가능한 경우에 공고 및 의견을 미리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3) 재지정. (A) (E)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대기질 데이터, 계획 및 관리 고려사항이나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대기질 관련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그 주 또는 주간 지역 내 특정지역이나 그 일부 지정의 수정사항을 나타내도록 주 지사에게 어느 때라도 통지할 수 있다. 주 지사에게 통지를(대중에게 공개) 알리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통지와 관련하여 근거 설명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A)항의 통지를 받고 난 후 120일 이내, 주지사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때 환경청장에게 주 혹은 주간 지역 내 해당 지역 혹은 그 일부의 재지정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C) (B)항((1)(B)(iii))에 언급된 일자 후 120일 이내 환경청장은 (B)항에 따라 주지사가 제출한 지역이나 그 일부의 재지정사항을 공표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항을 (1)(B)항의 (ii)조항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 단 '60일' 이란 표현은 그 조항에서

“120일”을 대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지사가 (B)항에 따라 (A)항의 환경청장이 확인한 지역(이나 그 일부)에 대한 재지정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환경청장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재지정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D) 주의 지사는 자신의 동의로, 환경청장에게 주의 특정 지역이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 재지정 제출 완 성안을 수령한지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재지정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주지사의 재지정 제출은 주별 해당 이행 계획의 효과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 환경청장은 다음을 제외하고 달성제외지역(이나 그 일부)을 달성지역으로 재지정한 사항을 공표할 수 없다.

(i) 어느 지역이 국가 대기 기준을 달성한 결과 자신이 판단한 경우

(ii) 110(k)항 지역별 해당 이행계획을 자신이 전부 승인한 경우

(iii) 대기질이 해당 이행계획 및 연방대기오염물질 관리규정을 이행하여, 또 배출량을 영구, 집행 가능한 방법으로 감축하여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iv) 환경청장이 175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전부 승인한 경우

(v) 그러한 지역이 포함된 주가 110조 및 파트 D 지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F) 환경청장은 달성제외지역에서 분류불능으로 재지정이 된 지역(이나그 일부)을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4) 오존, 일산화탄소 및 미립자(PM.10) 관련 달성제외 지정

(A) 오존 및 일산화탄소

(i)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20일 이내, 주의 지사는 환경청장에게 오존 및 일산화탄소 국가 대기질 기준과 관련하여 달성, 달성제외 또는 분류불능으로 주지사의 주 지역(혹은 그 일부)을 지정, 지정을 확인 또는 재확인하거나 재지정(상황에 따라)하는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ii) 위 (i)조항에서 요구한 지역(혹은 그 일부)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일자 후 120일 이내, 환경청장은 그 지정사항을 공표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항을 (1)(B)항의 (ii)조항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동 절차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하여야 한다. 단 ‘60일’이란 표현은 ‘120일’이란 표현으로 대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지사가 위 (i)항에 따라 지역(혹은 그 일부)의 지정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청장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지정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iii) 어느 달성 제외 지역도 위 조항의 달성지역으로 재지정을 할 수는 없다.

(iv) 이 조 (1)(C)(ii)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통계지역이나 통합대도시통계지역(인구통계국에서 확정) 내 오존 또는 일산화탄소 달성제외 지역이 이 장 D파트에서 중증, 심각 또는 극심 지역으로 분류된 경우, 그 지역의 경계는 법률 시행으로 상황에 따라 대도시통계전체지역이나 통합대도시통계지역을 포함하도록 수정한다. 단, 주지사(주 및 지방 대기관리기관과 협의하여)가 45일 기간 내 환경청장에게 (v)조항의 적용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지사가 환경청장에게 이 통지서를 제출한 때 경계 변경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가 경과하고 14개월 후 혹은 그러한 분류를 하고 8개월 후 중 늦은 일자에 하여야 한다. 단, 주지사가 그 기간 내 (v)항에 언급된 조사를 하고 환경청장이 그 조사결과를 시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이나 (v)조항의 경계 변경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제출할 필요가 있는 주 이행 계획수정의 목적에 맞게 신청하여야 한다.

(v) 주의 지사가 (iv)항의 통지서를 제출완료한 때, 지사는 주 및 지방 대기오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대도시통계 전체지역이나 통합 대도시 통계지역을 달성제외 지역에 포함하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하여야 한다. 주지사가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조사를 하고 증명하고, 환경청장이 조사결과에서 대도시 통계지역이나 통합대도시통계지역별로 그 일부의 공급원이 국가 대기질 기준을 크게 위반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 환경청장은 그 일부를 달성제외 지역에서 배제해 달라는 지사의 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지사 및 환경청장은 인구밀도, 교통 혼잡, 공업개발, 산업개발, 기상조건 및 오염 이동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B) PM.10 지정, 법률 시행으로, (3)항에서 환경청장의 재지정 시점까지

(i) 52 연방기록부 29393(1987/8/7)에서 그룹 I 지역에 속한 지역(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환경청장이 확인사항을 수정한 정도는 제외)은 PM.10의 경우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한다.

(ii) 대기질 감시 자료에서 1989/1/1일 이전 PM.10 관련 국가 대기질 기준 위반사항이 나타나는 부지 지역(연방규정 법전 40장 부록 K, 50부에서 결정됨)은 여기서 PM.10 관련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한다.

(iii) (i) 또는 (ii)항에 언급되지 않는 지역은 여기서 PM.10 관련 분류불능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공표한 미립자(총 부유미립자의 측면에서 측정)에 대한 지정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발효 중인) 더 이상 그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할 때까지 163조 (b)항에 따라 미립자(총 부유미립자 측면에서 측정)의 최대 허용 농도를 높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5) 납의 지정. 환경청장은 어느 때라도 자신의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때,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유효한 납 관련 국가의 대기질 기준과 관련하여 지역(혹은 그 일부)을 (1)항(A) 및 (B)조항의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1)(B)(i)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신규 혹은 개정 국가 대기질 기준 공표일자로부터 2년간’은 ‘납의 경우 기준과 관련하여 지역 지정 요건을 환경청장이 주에 통보하는 날짜로부터 1년’이란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정

(A) 제출.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2/5일 이내, 주의 지사는 1997년 7월자 PM2.5 주 내 각 지역의 국가 대기질 기준과 관련하여 (1)항에서 언급된 지정 사항을 관련 지역별로 연방정부의 참조 방법에 따라 수집한 대기질 감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공표.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이내, 청장은 1997년 7월자 PM2.5 국가 대기질 기준과 관련

하여 주의 지역별 (A)항에 언급한 지정 사항을 (1)항에서와 같이 공표하여야 한다.

(7) 지역 안개 관련 이행 계획

(A) 개요.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와 관련 (6)(B)항에 언급된 지정 내용을 환경청장이 공표하는 날짜 후 3년 이내, 해당 주는 169B(e)(1)항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한 요건을(지역 안개 요건으로 언급됨) 충족하기 위해 주 이행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사전 배제 규정은 없음. 이 조항의 어느 것도 1996년 6월 1자 그랜드 캐논 가시성 이동위원회 보고서에 기인한 합의안 및 권고안의 이행을 사전에 배제하지 않으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다호,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혹은 와이오밍 주는 각 주별 지역 안개 요건 이행을 위해 주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e) (1) (2)항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의 지사는 환경청장의 승인으로 효율적,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주 내 대기질 관리지역을 때때로 재지정을 할 권한이 부여된다. 재지정시, (d)항의 목록은 그에 따라 수정을 하여야 한다.

(2) 주의 대기질 관리지역 또는 그 일부의 경우에, 환경청장이 다른 주의 대기오염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견한 경우, 그 지역이나 그 일부가 소재한 주의 주지사는 때때로 환경청장의 승인과, 주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하여 주지사의 동의를 받고나서야만 그 주에 소재한 대기질 관리지역의 상당 부분의 경계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3) 113(d)(5)항(석탄 전환 관련)에서 부여한 적합성 날짜 연장은 이 항에 규정된 지역별 한도 위반이 이 조항의 지역 재지정에

기인한 경우에 그 한도를 이유로 실효성이 없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 [42 U.S.C. 7407]

대기질 기준 및 관리 방법

108조. (a)(1)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을 제정할 목적으로 환경청장은 1970년도 대기정화개정안 입법일자 후 30일 이내 다음 대기오염물질 목록을 공표하고, 그 후 때때로 개정을 하여야 한다.

- (A)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배출가스
- (B) 대기 중 다양한 이동 공급원이나 고정 공급원에서 비롯되는 물질,
- (C) 대기질 기준이 1970년도 대기정화개정안 입법일자 전 발효되지 않았지만 환경청장이 이 항의 대기질 기준을 발효할 예정인 물질

(2) 환경청장은 (1)항 목록에 해당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나서 12개월 이내 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질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공중보건이나 복지 영향 예측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종류 및 정도를 나타내는데 유용한 최신 과학지식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행 가능한 정도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공중보건이나 복지에 대기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요인(대기상태 등)
- (B) 공중보건이나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대기 중 오염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C) 복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경우

- (b) (1) (a)항의 기준 공표와 동시에, 환경청장은 해당 자문위원회 및 연방부서기관과 협의 후, 대기오염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주 및 해당 대기오염관리기관에 제공하되, 정보에 배출관리기술의 환경영향, 배출감소 이익, 에너지요건 및 설치 및 가동비용 등과 관련된 데이터, 대기오염예방관리 대안 및 가용 기술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또 배출가스를 제거하거나 상당량 감축하게 하는 대체연료, 프로세스 및 가동방법 등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오염관리방법에 관한 정보개발을 돕기 위해, 환경청장은 (a)(1)항에 따라 공표한 목록에 대기오염물질 관련 상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주, 지방 정부, 산업 및 경제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기술유자격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1)항의 요건과 관련된 정보를 환경청장에게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c) 환경청장은 때때로 이 항에 따라 공표한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 또는 기준을 적절한 대로 검토, 수정한 후 다시 공표를 하여야 한다.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NO₂ 농도와 관련된 기준을 개정, 다시 공표를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질산, 아질산, 질산염, 아질산염, 질산아민 및 기타 발암성, 발암가능성 질산화물 유도체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 (d) 대기질 오염관리방법 관련 정보 및 대기질 기준의 공표는 연방기록부에 발표하고, 사본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 환경주 및 지방 공무원과 협의 후, 1989년 청정대기법개정안¹⁾ 입법일자 후 9개월 이내, 그 후 연속적 교통 대기질 설계과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로 정기적으로, 1978년도 교통 대기질 설계지

1) 원본이 그러함, '1990'일 것이다.

침을 갱신하고,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입증, 계속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조치 및 교통 대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다음 정보를 수록한다.

- (1) 기타 계획 및 관리 활동을 확인, 평가하는 방법;
- (2) 조건이 변경되거나 새 정보가 제시될 때 정기적인 계획 검토 방안
- (3)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자원을 확인, 기관 간 자금 및 자원제공 합의안도 포함
- (4) 모든 계획 과정 단계에서 대중 참여기회를 확보하는 방법;
- (5) 기타 환경청장이 연속계획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f) (1)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그 후 때때로, 연방, 주, 및 지방의 해당 환경교통기관에 다음 정보를 공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A) 해당되는 경우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 기회를 제공한 후, 기준 오염물질 및 그 전구체와 관련된 교통관리대책을 입법화하고 배출감축 가능성과 관련하여 준비한 정보로 다음을 포함한다.

- (i) 대중 교통통행 개선 프로그램
- (ii) 여객버스나 다인승 차량용 특정도로나 가로의 제한, 혹은 여객버스나 다인승 차량용 도로나 가로의 신설
- (iii) 고용주 위주 교통관리계획, 인센티브 포함
- (iv) 여행 축소 명령
- (v)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교통흐름개선프로그램
- (vi) 다인승차량프로그램이나 통행서비스를 돕는 외곽 주차 시설 및 교통통로주차시설

- (vii) 특히 피크 시즌 배출농도 지역이나 도심지에서 차량 사용을 통제 또는 제한하는 프로그램
 - (viii) 승차 인원을 늘리고 편승 서비스 형태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 (ix) 대도시지역의 노면이나 특정 구역을 비 모터형 차량이나 통행인용으로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제한하는 프로그램
 - (x) 공공 지역 및 사유 지역에서 자전거 보관시설 및 자전거도로 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 (xi) 차량의 공회전을 증가를 통제하는 프로그램
 - (xii) II장과 일치하여, 동절기 극한 시동 조건으로 인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프로그램
 - (xiii) 유연한 작업스케줄을 허용하도록 고용주 지지기반 프로그램
 - (xiv) 현장 교통계획 및 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여행, 대중교통 편의 및 활용을 도모하고, 나홀로차량 여행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프로그램 및 명령, 신축 쇼핑센터, 특별 이벤트 및 기타 차량 운행 중심지 등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명령도 포함.
 - (xv) 경제적 개연성이 있고 대중의 이익이 있는 경우, 통행인이나 기타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수단용으로만 활용되는 통로, 트랙의 신규 공사 및 대대적 보수 프로그램. 이 조항의 목적에 맞게, 환경청장은 내무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 (xvi) 1980년도 이전 모델 소형차 및 소형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
- (B) 대기질 주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간 중에,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경보, 경고 혹은 비상 선포 기간 중에, 기타 차량

- 관련 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하는 방법이나 전략에 관한 정보
- (C) 예민하거나 취약한 개인이나 단체의 건강을 보호하거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
- (D)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생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거나 통제하는 프로세스, 절차 또는 방법의 정도에 관한 정보
- (2) 이러한 정보를 공표할 때 환경청장은 다음 평가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과정, 절차 및 방법의 상대적 효과성
- (B) 교통체계 및 교통서비스제공에 관한 과정, 절차 및 방법의 잠재적 효과
- (C) 과정, 절차 및 방법의 환경영향, 에너지 및 경제적인 영향
- (3) 교통부장관 및 환경청장은 1993년1월1일까지, 그 후 3년마다 다음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A) 기존의 주 및 지방 대기질 관련 교통프로그램을 검토, 분석하고, 특히 해당 주 이행계획 및 이들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시기에 주 이행 계획에서 확인된 교통완비 프로젝트에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여부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 (B) 교통부의 기존 대기질 관련 교통 프로그램 및 교통부서 예산안이 이 법과의 적합성 및 법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 (C) 기존 프로그램 및 예산 변경뿐만 아니라 청정대기법의 목표 및 적합성 달성을 향상시킬 대기질 관련 교통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사법당국에 대한 권고사항
- (4) (3)항에서 요구한 최초 보고 후 의회에 보낼 보고서에, 교통부

장관은 이전 보고서에서 권장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취한 조치를 언급하여야 한다.

(g) 생태계 위험 평가.

환경청장은 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한 생태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환경청장 단독 재량으로 확인한 대로)

(h) RACT/BACT/LAER 정보센터. 환경청장은 미합중국 및 일반대중이 배출관리기술 관련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기존 공급원의 가동 허가 등 공급원 허가를 요하는 주 계획 규정에 따라 입수한 통제 기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42 U.S.C. 7408]

국가 대기질 기준

109조. (a)(1)환경청장은

(A) 197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일 이내, 이 입법일자 전 발효한 대기질 기준 관련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 부수 기준을 규정한 상정안을 공표하여야 하며,

(B) 그에 관해 이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적당한 시간 경과 후, (그러나 기준안을 최초 공표한 후 90일 이내) 환경청장이 적당하다고 간주한 수정 사항과 함께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안을 규정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2) 1970년도 대기정화개정안 입법일자 후 공표한 대기질 기준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기준 및 정보 공표와 동시에, 오염물질의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 (1)(B)항에 규정된 절차는 이 기준의 공표에

적용하여야 한다.

- (b) (1) (a)항에서 규정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이 대기질 기준이며,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기준에 기초하여 적합한 안전 한계를 허용하면서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주요 기준은 공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다.
- (2) (a)항에서 규정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은 대기질 수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기준에 기초하여 대기 중 오염물질의 존재와 관련하여 알고 있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부터 공중 복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부수 기준은 공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다.
- (c) 환경청장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3시간 이내에 NO₂ 농도에 대해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108(c)항에서 공표한 기준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이 기간에 대한 기준이 공중보건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없음을 안 때에는 제외한다.
- (d) (1) 1980년 12월 31일 이전, 그 후 5년 간격으로, 환경청장은 108조의 공표기준 및 이 조에서 공표한 국가 대기질 기준을 철저히 심사하고, 기준 및 표준을 수정하고, 이 조 (b)항 및 108조에 따라 적절할 수 있는 신규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 항에서 요구된 것보다 더 자주 또는 더 일찍 기준을 심사, 수정하거나 신규 기준을 공표할 수 있다.
- (2) (A) 환경청장은 7명으로 구성된 독자적 과학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국립과학아카데미, 의사, 주 대기오염관리기관의 대표자 각기 1명씩을 포함하여야 한다.
- (B)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그 후 5년 간격으로, 이 위원회는

108조에서 공표한 기준 및 이 조에서 공표한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 을 철저히 심사하고 108조 및 이 조 (b) 항에 따라 적절할 수 있는 기존 기준 및 표준의 수정 사항 및 신규 국가 대기질 기준을 환경청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 (C) 이 위원회는 또한 (i) 기존, 신규, 개정 국가 대기질 기준의 적합성 및 근거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추가 지식의 분야를 환경청장에게 조언하며, (ii) 필수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연구 활동을 설명하며, (iii) 자연 활동뿐만 아니라 인위적 활동이 대기오염농도에 상대적인 기여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조언하며, (iv) 환경청장에게 국가 대기질 기준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비롯될 수 있는 공중보건, 복지, 사회경제적, 에너지 등에 나쁜 영향을 조언하여야 한다.[42 U.S.C. 7409]

시행 계획

110조. (a)(1) 각 주는 적당한 통지 및 공청회 후에, 대기오염물질 관련 109조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이나 그 개정내용)을 공표한 후 3년 이내(혹은 환경청장이 규정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환경청장에게 주의 대기질 관리지역(이나 그 일부)에서 주요 기준을 이행, 유지, 집행하는 내용을 규정한 계획을 채택,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그 주는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이나 그 개정내용)을 공표한 후 3년 이내(혹은 환경청장이 규정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환경청장에게(앞 문장에서 제출한 계획의 일부로 혹은 별도로) 주의 대기질 관리지역(이나 그 일부)에서 주요 기준을 이행, 유지, 이행하는 내용을 규정한 계획을 채택, 제출하여야 한다. 공청회가 따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주정부는 이 조항의 처음 문장에

서 요구된 공청회에서 부수 기준을 이행하는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따라 어느 주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은 적절한 공지 및 공청회를 제공한 후 주에서 채택을 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A) 이 법의 해당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대로 집행 가능한 배출 한도 및 다른 관리 조치, 수단이나 방법(경제적 인센티브 즉 수수료, 판매허가 및 배출권 경매 등) 뿐만 아니라 준수 관련 일정 및 시간표를 포함한다.

(B) 다음 사항에 필요한 해당 장치, 방법, 시스템 및 절차 등의 제정 및 운용 규정

(i) 환경 대기질에 관한 데이터를 감시, 수집 및 분석, 그리고

(ii) 요구시 환경청장에게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C) (A)항에 설명한 조치의 이행 및 C 및 D파트에서 요구된 허가 프로그램 등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대로 계획에서 다루는 지역 및 고정 공급원의 변경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D)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i) 이 장에서의 규정과 일치하여, 다음의 양으로 주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배출가스 종류나 공급원의 금지

(I) 그와 같이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 기준과 관련하여 여타 주에서 달성 제외사항에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여타 주의 유지관리에 저해가 되는 양

(II) 대기질의 현저한 약화를 방지하거나 가시성 보호

를 위해 C파트에서 여타 주에 적용 가능한 이행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조치와 상충되는 양

- (ii) 126조 및 115조 해당 요건과의 적합성 확보(주간, 국가 간 오염감축 관련)
- (E) (i) 주(혹은 환경청장이 부적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 목적의 지방 정부나 주 또는 일반 목적의 지방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기관)는 이러한 이행 계획을 수행할 주법(및 해당되는 경우 지방 정부 법)에 따라 적정한 인력, 자금 및 권한을 확보하는데(연방법 혹은 주법 규정에서 이행계획이나 그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필요한 보장, (ii) 주는 128조 주의 사무국과 관련된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요건 및 (iii) 특정 계획 규정의 이행을 위해 주가 지방 혹은 지역 정부, 기관이나 제도 등에 의존하는 경우, 주가 이 계획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
- (F) 환경청장이 규정할 수 있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고정 공급원 소유자나 운영자가 공급원의 배출가스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이행, 장비의 설치, 유지 및 교체,
 - (ii)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특성 및 양 및 배출 관련 데이터에 관한 정기 보고,
 - (iii) 이 법에 따라 수립한 기준이나 배출한도와 주 기관의 보고서와의 상관관계, 이 보고는 공개 감사를 위해 적절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G) 303조의 사항에 필적할만한 권한 및 이 권한을 이행하는데 적합한 비상 계획 규정
- (H) 이 계획의 수정사항 규정
 - (i) 때때로 국가 대기질 주요, 부수기준 혹은 이 기준을

달성하는 개선방법이나 더 편리한 방법의 이용 가능성을 수정한 사항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대로

(ii) 다만, 환경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법에 따라 수립한 추가 여건을 따르는데 계획이 상당히 부적합함을 안 때 (3)(C)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I)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하여 계획이나 계획 수정안의 경우, D파트의 해당요건을 따르는 경우

(J) 121조(자문), 12조(공고) 및 C부(심각한 대기질 악화 방지 및 가시성 보호)의 해당 요건을 따르는 경우

(K) 다음 규정사항

(i) 환경청장이 수립한 국가대기질 기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목적을 규정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의 수행, 그리고 (ii) 환경청장에 게 이러한 대기질 모델링 관련하여 요구시 데이터 제출

(L) 이 법에 따라 필요한 허가 조건으로 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허가 당국에 충분한 취급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함

(i) 허가 신청이 있는 때 적당한 심사비 및 활동비, 그리고

(ii) 소유자나 운영자가 공급원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 조건을 이행, 집행하는 적정 비용은(기타 집행 조치와 관련된 비용이나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공급원과 관련하여 V장의 수수료 계획에 대한 환경청장의 허가료 대신함.

(M) 이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 정부부서의 자문 및 참여 규정

(3) [(A)]¹⁾

(B) 실행 가능한 곧, 환경청장은 이 법 및 1974년도 에너지공

1) (A)항은 공법 01.549 (104 Stat. 2409)의 101(d)(1)항으로 폐지되었음.

급환경조정법의 목적과 일치하여 이 조의 허용 기간 내 국가 대기질 기준의 달성 및 유지에 저촉되지 않게, 주의 해당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연료 연소 고정공급원(혹은 공급원에 연료 공급자)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주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에서 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을 주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에서 제출하는 계획 수정안은 공지 및 공청회 기회를 제공한 후, 수정안이 연료연소 공급원과만(혹은 공급원에 연료 공급자) 관련되는 경우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이 계획은 위 (2)항을 따른다. 환경청장은 제출 후 3개월 이내 수정안을 가결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C) 어떠한 면제, 명령이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획이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바로 위 조항에서 승인한 계획(이나 그 일부)과 관련하여 주정부도 (c)항에서 공표된 계획(이나 그 일부)과 관련하여 환경청장도 118조(연방시설)의 면제, 113(d)²⁾항의 집행 명령, 110(f) 혹은 (g)항의 중단(임시 에너지 또는 경제 권한), 119조의 명령(비철 원광제련소) 혹은 113(e)항(철강생산시설)의 명령 준수연장에 대한 허가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해당 이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4)]¹⁾

(5) (A)(i) 어느 주라도 주 이행계획에 간접 공급원심사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지만, 환경청장은 이 조의 계획 승인 조건으로

2) 113(d)항은 이 참조사항을 따르지 않고 공법 101.549 (104 Stat. 2672)의 701조로 개정되었음.

1) (4)항은 공법 101.549 (104 Stat. 2409)의 101(d)(2)항으로 개정되었음.

그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주에서 해당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의 일부로 채택, 제출하는 간접공급원심사프로그램을 승인, 집행할 수 있다.

(ii) (B)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환경청장이 공표한 어떠한 계획도 대기질 관리지역이나 그 일부에 대한 간접공급원심사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iii) 어느 주라도 110(a)항에서 승인한 해당이행계획을 수정하여 계획이 이 조의 요건을 충족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중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B) 환경정장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고속도로, 공항 및 기타 주요 연방 지원 간접공급원 및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가동하는 간접공급원에만 적용되는 간접공급원 심사프로그램 관련 1109(c)항의 규정을 공표, 이행,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C) 위에서 ‘간접공급원’이란 용어는 이동성오염원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시설, 빌딩, 구조물, 설치물, 부동산, 도로나 고속도로 등을 말한다. 이 용어는 주차장, 주차차고 및 기존의 도로 외 주차규정 등 기타 주차 공급관리 대책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하지만, 신규 혹은 기존 도로상 주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간접공급원에서, 공급원내, 공급원과 관련된 직접 배출 공급원이나 시설은 이항의 목적에 따른 간접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D) 위에서, ‘간접공급원심사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신규 혹은 변경 간접공급원이 이동성 대기오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돕는데 필요한 대책 등 간접 대기오염원의 시설별로, 다음의 대기오염 농도를 초래하거나 기여할 시설의 배출가스 심사를 의미한다.

- (i) 주요 기준 달성 일자 후 유동성 공급원관련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초과하거나,
 - (ii) 그 날짜 후 그와 같은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농도
- (E) 이 항과 (2)(B)항의 목적과 관련하여, ‘교통통제대책’이란 용어는 ‘간접공급원심사프로그램’의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 (6) 어느 주의 계획도 113(d)¹⁾ 혹은 119조(비철 원광제련소 명령)의 명령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보조적, 간헐적 통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급원인 경우, 그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이 보조적, 간헐적 혹은 기타 확산에 의한 제어장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용인의 월급을 임시로 줄일 수 없음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 (b)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마다 이 계획 제출에 달리 요구된 일자로부터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국가 대기질 부수 기준을 이행하는 계획이나 그 일부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c) (1) 환경청장은 다음의 경우 2년 이내 어느 때라도 연방 이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A) 주가 필요한 제출을 하지 못했음을 알거나 주에서 제출한 계획이나 그 수정안이 110(k)(1)(A)항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안 때, 혹은
 - (B) 주가 하자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주 이행계획제출안을 전부 혹은 일부 부결하고, 환경청장이 연방이행계획을 공표하기 전에 이 계획이나 그 수정안을 승인한 때
- (2) [(A)]¹⁾

1) 34쪽 주석 2 참조.

(B) 어떤 주차 할증료 규정도 위 (1)항에서 환경청장이 해당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전에 환경청장이 요구한 모든 주차 할증료 규정은 이 항의 입법일자에 무효이다. 이 항은 해당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어느 주에서 할증료 규정을 채택, 제출한 경우 환경청장이 주차 할증료를 승인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 환경청장은 주차 할증료 규정을 포함하여 이 계획과 관련하여 주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C)]²⁾

(D) 이 항의 목적과 관련하여

(i) ‘주차 할증료 규정’이란 용어는 자동차 임시 보관용 주차 공간이나 기타 지역에 세금, 할증료,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거나 부과하는 규정을 말한다.

(ii) ‘주차공급관리’란 용어는 주차 공간대수가 정해진 신규 시설에서 대기질 고려사항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허가 혹은 기타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버스/카풀 전용차선’이란 용어는 도로나 고속도로의 차선을 영구히 또는 임시로 버스나 카풀 또는 둘 전용으로 하나 이상 남겨 두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E) 주차공급관리 또는 버스/카풀전용차선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 계획이나 요건도 이 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이 조항의 입법일자 후에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러한 공표가 영향권 내 지역에서 적절하게 공지를 하고 그 지역에서 최소 1번 개최된 공청회를 조건으로 하였던 경우는 제외

1) (A)항은 101(d)(3)항, 공법 101.549 (104 Stat. 2409)에 의해 폐지되었음.

2) (C)항은 101(d)(3)항, 공법 101.549, (104 Stat. 2409)에 의해 폐지되었음.

한다. 공청회 후 상당한 변경을 한 경우, 추가 공청회는 한 번 이상 이를 공고한 후 그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3) 일반목적 지방정부 시설의 CEO의 신청이 있는 때, 그 시설이 주법이나 지방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은 위 조항에 따라 공표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설 관할권 내 이행, 집행 권한을 이 시설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느 내용도 환경청장이 이 항에 따라 공표한 해당 계획규정을 이행, 집행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

(5)¹⁾ (A) 해당이행계획에서 시에 소재한 교량 이용을 위해 통행료나 기타 비용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든 주지사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이 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신청서는 (B)항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주지사가 보증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B) (A)항에서 제외시킨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이행계획의 경우, 이 계획은 이 항목의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다음과 같이 종합조치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i) 가능한 한 신속히, 기본 교통 수요를 충족할 대중교통 수단을 마련, 확대하거나 개선

(ii)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통통제대책을 실시하고, 수정계획은 종합 대중교통대책을 실시하는 목적에 맞게 연방보조금, 주나 지방의 기금 또는 보조금 및 기금 입법규정의 조건과 일치할 수 있는 보조금 및 기금 총액을 활용(필요한 대로)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대책은 (A)항에서 제외한 통행료나 비용의 대안으로 배제된 통행료나 비용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으로 합당하

1) (4)항은 101(d)(3), 공법 101.549 (104 Stat. 2409)에 의해 폐지되었음.

게 예상할 수 있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C) (B)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행계획수정안은 D 파트에서 요구된 계획 수정안과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¹⁾

[(e)]²⁾

(f) (1) 연료연소 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의 신청이 있는 때, 그리고 공청회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한 후, 공급원 소재의 주지사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그 심각성에 대해 국가나 지역의 에너지 비상사태의 존재를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청원할 수 있다.

(A) 이 법 IV 장 411조(과다배출 벌칙이나 상쇄조치)의 요건이나 해당 이행계획²⁾의 부분의 임시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B) 에너지비상사태 대응 수단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나 지역의 심각한 에너지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이행계획²⁾의 일부나 이 법 IV장 411조 요건의 임시 비상사태 중단은 (2)항의 명시 조건에 따라 대통령 결정으로 주지사가 공포할 수 있으며 즉각 발효할 수 있다.

(2) 위 조항의 임시 비상사태 중단은 해당 주의 지사가 다음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만 공급원과 관련하여 발효되어야 한다.

(A) 공급원 부근에 주거용 필수 에너지 물품의 손실이나 실업

1) (d) 및 (e) 조항은 101(d)항, 공법101.549 (104 Stat. 2409)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d) 항은 404(b)항, 공법95.620 (42U.S.C. 8374(d))에 계속 언급되어 있다.

2) 공법101.549 (104 Stat. 2634), 412조는 추가 명시사항 없이 ‘이행계획’ 다음에 이 법 IV장 411조 요건의 110(f)(1)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으며, ‘이행계획’이란 단어는 110(f)(1)에서 두 번 나타난다.

수준 상승과 관련된 임시 에너지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B) 이러한 실업이나 손실은 비상사태 중지로 일부 혹은 전체
경감될 수 있다. 이러한 중지는 1회 이하로 같은 비상사
태에 기초하거나 같은 상황에 기초하여 특정 공급원에 발
효할 수 있다.

- (3) 위 조항에서 주지사가 발효한 임시 비상사태 중단은 최대 4개
월간 혹은 환경청장의 부결 명령에 명시할 수 있고 그보다 적
은 기간에 발효 상태에 있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중단을 부결할 수 있다.
- (4) 위 조항은 이 조 (c)항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한 요건이나 계획
규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대통
령이 (1) 및 (2)항에 명시한 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 4개월 동
안 규정이나 요건 기간 중에 임시 비상 중단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5) 주지사는 위 조항에서 공표한 중단조치의 근거 조건 이유로
만 공급원이 일정(이나 증분)을 준수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
이 법의 113(d)¹⁾항이나 이 항의 입법일자 전 유효한 대로 119
조에서 공급원의 준수 일정(혹은 진행 증가분)을 중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지연하는 규정을 위 조항에서 공표한 임시비
상 중단조치에 포함할 수 있다.

(g) (1) 주에서 다음과 같이

(A)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B) (i) 대기오염원을 2년 이상 폐쇄하지 않도록, (ii) 이러한
폐쇄로 인한 상당한 실업 상승을 예방하는데 필요하며,
계획 수정안 제출 기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이 조에 따

1) 34쪽 주석 2 참조.

라 아직 승인도 부결도 하지 않은 계획의 수정안을 채택, 환경청장에게 제출한 주의 경우에, 주지사는 이 공급원과 관련하여 수정제안을 할 주의 해당 이행계획 일부의 임시 비상 중단조치를 발할 수 있다. (B)항의 결정은 계획수정안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폐쇄될 공급원에 대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위 조항에서 주지사가 발한 임시비상중단은 최대 4개월 간 혹은 환경청장의 부결 명령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보다 짧은 기간에 발효 상태에 있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중단을 부결할 수 있다.

(3) 주지사는 위 조항에서 공표한 중단조치의 근거 조건 때문으로만 공급원이 일정(이나 증분)을 준수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 이 법의 113(d)1항이나 이 항의 입법일자 전 유효한 대로 119조의 공급원에 준수 일정(혹은 진행 증가분)을 중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지연하는 조항을 위 조항에서 공표한 임시비상 중단조치에 포함할 수 있다.

(h)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그 후 3년마다, 환경청장은 주의 해당 이행계획 요건을 제시하는 주별로 총괄 서류를 취합, 발표하여야 하며, 이 문서의 이용 가능성을 연방기록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환경청장은 위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합당하게 필요할 수 있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i) 119조의 비철원광 제련소 명령, 110(f) 혹은 (g)항의 중단, 118조의 면제, 113(d)1의 명령, 110(c)의 계획 공표 또는 110(a)(3)항의 계획수정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명령, 중단, 계획 수정안이나

해당 이행계획요건의 수정 조치도 고정 공급원과 관련하여 주 혹은 환경청장이 취할 수 없다.

(j) 이 장에서 요구한 허가 발급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신규, 변경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사용 예정인 연속 배출 감축 기술 시스템으로 이 공급원에 적용될 성과 기준을 공급원이 준수할 수 있고, 공급원의 공사나 변경 및 가동은 이 법의 다른 모든 여건에 부합함을 허가 당국이 만족하게끔 보여주어야 한다.

(k) 계획제출 관련 환경청 조치

(1) 계획제출의 완비성

(A) 완비 기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항의 제출에서 환경청장이 조치할 필요가 있기 전에 계획 제출서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계획 제출서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환경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B) 완비성 조사. 계획이나 그 수정안을 환경청장이 수령하고 60일 이내, 해당 주가 계획이나 그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령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A)항에 따라 수립한 최소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환경청장이 (A)항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제출서 수령 후 6개월까지) 계획이나 그 수정안은 법률 시행에 의해 그 날짜에 이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C) 불완전성 조사 결과. 환경청장이 어떤 계획 제출서(혹은

그 일부)가 (A)항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경우, 주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혹은 환경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

- (2) 조치 마감기한. (1)항에서 어느 주가 계획이나 그 수정안을(혹은 환경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 제출완료 한 것으로 환경청장이 결정하고 나서 12개월 이내, 해당되는 경우(혹은 계획이나 수정안 제출 후 12개월 이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환경청장은 (3)항에 따라 제출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전부, 일부 승인 및 부결. 환경청장이 (2)항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제출의 경우, 환경청장은 이 제출서류가 이 법의 해당 요건 전부를 충족한다면 전부 승인하여야 한다. 계획 수정안 일부가 이 법의 해당요건 전부를 충족할 경우, 환경청장은 계획 수정안 일부를 승인, 일부를 부결할 수 있다. 계획 수정안은 환경청장이 이 법의 해당요건을 따른 것으로 전체 계획 수정안을 승인할 때까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 (4) 조건부 승인. 환경청장은 특정 일자까지, 계획 수정안 승인일자 후 1년 이내, 집행 가능한 특정 조치를 채택하겠다는 주의 공약에 기초한 계획 수정안을 승인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조건부 승인은 주가 공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결로 다루어야 한다.
- (5) 계획 수정안 요청. 환경청장이 특정 지역의 해당 이행 계획이 관련 국가대기질 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데, 176A항이나 184조의 주 사이 오염물질의 이동을 적절히 완화하거나, 그 밖에 이 법의 요건을 따르는데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환경청장은 주가 이 부적합사항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대로 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주에 부적합사항

을 통지하고, 계획 수정안 제출을 위해 적정한 기한(통지날짜 후 18개월을 넘지 않게)을 정할 수 있다. 이 조사결과 및 공지는 공개하여야 하며, 이 항의 조사결과는 환경청장이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계획을 주가 개발, 제출한 때 주에 적용되는 이 법의 요건을 주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환경청장이 적절한 대로 그 요건에서 적용 가능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날짜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환경청장이 D 파트에서 규정된 달성 일자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6) 수정. 환경청장의 계획이나 그 수정안(혹은 그 일부)의 승인, 부결, 혹은 공표, 지역 지정, 재지정, 분류 혹은 재분류 조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때, 환경청장은 승인, 부결이나 공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주의 추가 제출서를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대로 이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 및 그 근거는 주 및 대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l) 계획 수정. 이 법에 따라 주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의 수정은 적당한 통지 및 공청회 후 그 주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수정 사항이 달성관련 해당 요건 및 합당한 추후 과정(171조에 규정) 혹은 이 법의 여타 해당요건과 저촉된다면 계획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m) 제재. 환경청장은 이 법에서 요구한 계획이나 계획 항목(환경청장이 정의한 항목)과 관련하여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환경청장이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주의 일부지역과 관련하여 179(a)항의 (1)~(4)항에서 조사, 부결이나 결정을 한 어느 때라도 (그 후 어느 때) 179(b)의 제재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179(a)조의 하자과 관련하여 앞 문장에서 자신

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준을 정해서, 179(a)조의 조사, 부결이나 결정 후 24개월 기간 중에, 해당 이행계획에 관련된 행정구역이 하나 이상 이 하자에 대해 1차 책임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재가 주 전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n) 유보 조항.

- (1) 기존 계획 조항.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하며, 이 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승인하거나 공표한 해당 이행계획 규정은 해당이행계획의 일부로 여전히 유효하다. 단 그러한 규정의 수정안이 이 법에 따라 환경청장이 승인하거나 공표한 정도는 제외한다.
- (2) 달성 일자.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주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있는 계획이나 그 수정안
 -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 유효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공표 또는 수정에 대한 대응으로,
 - (B) (a)(2)항의 상당한 부적합성 발견에 대한 대응으로(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혹은 상당한 부적합성 발견 공표 후 5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 달성을 규정하여야 한다.
- (3) 특정 지역의 건설 활동정지 유예.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대로 이 지역의 주가 172(a)(1)(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대로) 혹은 172(b)(6)항의(허가 프로그램 수립)(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환경청장이 발견한 사실로 적용된 (a)(2)(I)항(1982년 12월 31일까지 이산화황 관련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 달성 규정과 관련되는 정도로)에 규정된 주요 고정 공급원의 건설 또는 변경에 대한 금지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환경청장이 172(c)(5)항의 해당 요건(허가 프로그램 관련)이나 D 파트의 제 5파트(이산화황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 달성)를 각각 충족한다고 발견할 때까지는 어떤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고정식 공급원도 그 지역에서 건조되거나 개조되지 않아야 한다.

- (o) 인디언 부족. 301(d)항에 따라 인디언 부족이 환경청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할 경우, 이 계획은 301(d)(2)에서 공표한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계획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제시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계획이 301(d)에서 공표한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된 때, 이 계획은 특권 발급에도 불구하고 보호거주지를 통과하여 적용되는 통행권을 포함하여 보호거주지 외곽경계 내 소재한 모든 지역(계획에 달리 명시한 규정의 경우는 제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p) 보고. 환경청장이 규정할 수 있는 일정에 따라 어느 주라도 배출감축, 차량이동거리, 혼잡 수준 및 기타 이 법에서 요구한 계획이나 계획 수정안의 수정이나 이행을 위해 개발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간주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U.S.C. 7410]

신규 고정 공급원의 성과 기준

111조. (a) 이 조의 목적에 따라,

- (1) “성과 기준”이란 용어는 환경청장이 적절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는 최상 배출 감축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배출 한도의(에너지 감축 달성 비용과 대기 외 질 보건 및 환

경영향 및 에너지 요건을 고려하여) 정도를 반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의미한다. (A)(i)~(ii) 및 (B)항의 목적에 맞게, 성과 기준은 환경청장이 적절하게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최상의 연속 배출감축 기술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백분을 감축 및 배출 한도의(에너지 감축 달성 비용과 대기 외 질 조건 및 환경영향 및 에너지 요건을 고려하여)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1)(A)(ii)항1)의 목적에 맞게, 연소 추출 전후에 연료 오염 특성을 줄이거나 연료 세척을 하면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측정된 대로 이 연료를 연소하는 공급원에게 배출권이 부여될 수 있다.

- (2) ‘신규 공급원’이란 용어는 고정공급원, 이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이 조의 성과 기준을 정한 규정을(혹은 더 이른 경우, 규정상정안) 공표한 후 착수하여 건조하거나 개조된 공급원을 의미한다.
- (3) ‘고정 공급원’이란 용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빌딩, 구조물, 시설 혹은 설치물 등을 의미한다. 이 법 II 장에서 비도로용 엔진과 관련된 어느 항목도 고정 내연기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4) ‘개조’란 용어는 공급원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늘리거나 이전에 배출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정 공급원의 물리적 변화, 가동 방법의 변경을 의미한다.
- (5) ‘소유자나 운영자’란 용어는 고정 공급원을 소유, 임차, 가동, 관리나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6) ‘기존 공급원’이란 용어는 신규 공급원 이외의 고정 공급원을 의미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조항”일 것이다.

- (7) ‘연속 배출 감축 기술 시스템’이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A) 본질적으로 오염성이 낮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공급원의 생산 또는 가동을 위한 기술 프로세스
 - (B)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기 전에 공급원이 생성한 오염물질의 연속 감축 기술 시스템, 연소 전 연료 세척이나 처리를 포함.
- (8) (A) 1974년 에너지공급및환경조정법의 2(a)항의 명령을 이유로 석탄으로 전환, 혹은 (B) 이 법 113(d)(5)(A)(ii)¹⁾항에 따라 수량화한 석탄의 전환은 위 (2) 및 (4)항의 목적을 위해 변경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²⁾

(b) (1)(A)환경청장은 197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0일 이내 고정 공급원 분류 목록을 공표(그 후 때때로 수정)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어느 공급원 부문이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상당하게 기여할 경우 이 목록에 그 공급원 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B) (A)항 목록에 고정 공급원 부문을 포함한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규정 상정안을 공표하고, 그 부문에 속하는 신규 공급원과 관련하여 연방 성과 기준을 수립하며, 이해관계자에게는 상정안에 대한 서면 의견 기회를 제공하며, 의견을 고려한 후, 공표를 하고 나서 1년 이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최소 8년마다 해당되는 경우 위 기준의 공표를 위해 위 조항에서 요구된 절차 이후에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앞 문장 요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이 기

1) 34쪽 주석 2참조.

2) 관련 규정에 대해, 1978년 발전소산업연료사용법 301조(공법 97.35 1021조에서 수장된 대로)를 참조.

준의 효력과 관련하여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준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성과 기준이나 그 수정사항은 공표한 때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 법의 요건의 이행 및 집행으로 이 조에 따라 공표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 배출한도 및 백분율 감축이 실제로 달성되었음을 나타낼 때, 환경청장은 이 조에 따라 공표한 기준을 수정할 때 실제로 달성한 배출한도 및 백분율 감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환경청장은 그 기준 수립 목적으로 신규 공급원 부문 내 등급, 종류 및 규모를 구별할 수 있다.
 - (3) 환경청장은 때때로 신규 공급원 부문 및 이 조의 규정을 받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오염관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 (4) 이 조의 규정은 미합중국이 소유 또는 가동하는 신규 공급원에 적용한다.
 - (5) (h)항에서 달리 허가한 때를 제외하고, 이 조의 어떤 항목도 신규 공급원 성과 기준을 따르기 위해 특정 연속 배출감축 기술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도록 신규 혹은 변경 공급원에 요구하거나 환경청장에 권한을 부여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6) (a)(1)(A)(i)~(ii)항 제정에서 요구된 수정 성과기준은 이 항의 제정 후 1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수정기준안의 공표일자 전 시공을 시작한 신규 혹은 변경 연료연소 고정 공급원은 수정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c) (1) 주는 주에 소재한 신규 공급원의 성과기준을 이행, 집행하는 절차를 개발, 환경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그 주의 절차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을 이행, 집행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권한을 그 주에 위임하여야 한다.

(2) 위 조항의 어떤 내용도 환경청장이 이 조의 해당 성과기준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

(d) (1) 환경청장은 110조에서 규정한 것과 유사한 절차를 수립하는 규정을 명하며, 이 조에서 각 주는 환경청장에게 (A) i) 112조 혹은 112(b)¹⁾항에서 규정한 공급원 부문에서 방출되거나 108(a)항에 공표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공표된 적이 없지만 (ii) 기존 공급원이 신규 공급원인 경우 이 조의 성과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질 기준의 대기오염물질 관련 기존 공급원의 성과 기준을 수립하고, (B) 이 성과기준의 이행 및 집행을 규정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른 환경청장의 규정은 이 항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특정 공급원에 성과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가 여러 요소 중 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공급원의 잔존 활용수명을 고려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2) 환경청장은 다음 권한을 갖는다.

(A) 어느 주가 만족할 만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110(c)에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때 행사하게 될 주의 계획을 규정할 권한

(B) 주가 규정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행계획 관련 113조 및 114조에서 행사하게 될 이 계획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 이 항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성과기준을 공표할 때, 환경청장은 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원 부문에서 여러 요소 중에서 공급원의 잔존 활용 수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e) 이 조에서 공표한 성과기준의 유효일자 후, 신규 공급원의 소유자

1) 괄호의 개정내용은 공법 101-549의 108(g) 및 302(a)항에 따른 것인데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며, 둘 다, 다른 언어로 112조의 참조사항을 수정한 것이다.

나 운영자가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성과기준을 위반하여 공급원을 가동하면 불법이다.

(f)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환경청장이 (b)(1)(A)항에 열거한 주요 고정 공급원의 부문과 관련하여, 그 날짜까지 환경청장이 아직 상정한 적이 없는 규정의 경우, 환경청장은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공급원 부문의 최소 25퍼센트에 대해 성과기준을 수립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B)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4년 이내 그 공급원 부문의 최소 50퍼센트에 대해 성과기준을 수립하는 규정을 제안하며,

(C)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년 이내 남은 공급원 부문에 대한 규정을 상정하여야 하며,

(2) (1)항의 목적에 맞게 주요 고정 공급원 부문의 기준을 공표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그 부문이 배출하거나 배출 계획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B) 오염물질이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 및 국가의 해당 신규 공급원 성과기준에 대한 연속적 필요성 및 각 공급원 부문의 유동성 및 경쟁적 특성.

(3) 이 조항의 규정을 공표하거나 이 항에서 요구된 주요 고정 공급원 부문 목록을 만들기 전에, 환경청장은 주지사 및 주의 대기관리기관 대표자들과 의논을 하여야 한다.

(g) (1)(f)(1)항의 규정에서 환경청장이 규정에 따라 명시할 필요가 있는 주요 고정 공급원 부문을 명시하지 못했음을 제시하면서 주지

사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그 규정을 수정하여 그 부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b)(1)(A)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고정 공급원 부문이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함을 입증하면서(그 부문이 주요 고정 공급원 부문에 속하지 않더라도) 주지사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그 규정을 수정하여 고정 공급원 부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3) (f)(2)항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준을 환경청장이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음을 제시하면서 주지사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b)(1)(A)항의 목록을 수정하여 그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4) 다음 사항을 제시하면서 주지사가 신청하는 때,

(A) 연속 배출 감축을 더 많이 달성하는 신규, 혁신적, 향상된 기술이나 프로세스가 고정 공급원 부문과 관련하여 적절히 증명되었음.

(B) 이 기술이나 프로세스 결과로, 그 부문에 대해 이 조에서 유효한 신규 공급원 성과기준이 적절히 증명되었던 최상의 연속배출감축기술시스템을 활용하여(배출감축달성비용 및 대기 외적인 조건 및 환경영향 및 에너지 요건을 고려하여) 배출달성가능 한도의 정도를 더 이상 최대한 반영하지 못하면,

환경청장은 이에 따라 그 부문의 성과기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5) 환경청장의 조치 최종 기한이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청장은 주지사의 신청을 받은 날짜 후 3개월 이내, (A) 신청서에 필수 제시사항이 없는 지를 조사하고 신청서를 기각하거나 (B) 신청서를 승인하고 이 항에 요구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f)항이나 위 조항에서 요구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공고 및 공청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h) (1) 이 조의 목적에 따라,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어떠한 성과기준을 규정하거나 집행할 개연성이 없다면, 환경청장이 적절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는 최상의 연속배출감측기술시스템을 반영하는(배출감측달성비용 및 대기 외적인 조건 및 환경영향 및 에너지요건을 고려하여) 설계, 장비, 작업관행이나 운용 기준 또는 이를 합한 요소를 대신 공표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이 항의 설계나 장비를 공표하는 경우, 설계나 장비의 요소를 적절히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기준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항의 목적과 관련하여, ‘성과기준을 규정하거나 집행할 개연성이 없음’이란 표현은 환경청장이 (A)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포착하도록 설계, 건조된 전달 장치를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없거나, 이 전달 장치의 요건이나 용도가 연방, 주 혹은 지방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B) 특정 공급원 종류에 측정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기술 또는 경제적 한계로 인해 실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3) 공청회 공고 및 기회를 제공한 후, 어느 자가 다른 배출제한수단이 최소한 (1)항 요건에서 달성할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측량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감측을 달성하겠다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한 경우, 환경청장은 이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이 조를 준수하기 위해 공급원이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4) (1)항에서 공표된 기준은 그러한 조건으로 기준을 공표, 집행할 개연성이 있게 되는 때 성과기준의 측면에서 공표되어야 한다.

(5) 위 조항에서 언급한 설계, 장비, 작업관행이나 운용기준 혹은 이들 결합요소는 이 법 규정의 목적에 맞게((a)항 및 이 항의 규정은 제외) 성과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i) 권양기에 적용할 수 있고 이 조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은 저장 용량이 250만 부셀 이하인 농촌의 권양기에 (환경청장이 정의한) 적용하지 않는다.

(j) (1)(A) 신규 공급원을 소유하거나 가동할 예정인 자는 혁신적인 연속 배출감축기술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환경청장에 대기오염물질 관련 공급원이나 그 일부에 대해 이 조의 요건의 권리포기 요건을 하나 이상 요청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공급원이 소재할 주지사의 동의로, 공청회 공고 및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권리포기를 부여할 수 있다.

(i) 예정시스템이 적절히 증명되지 못하였음.

(ii) 예정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다른 방법으로 적용된 성과기준에 따라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것보다 연속배출감축달성도가 더 크거나, 에너지, 경제, 대기 외 환경영향의 측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감축달성도가 최소한 동등하게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

(iii) 예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예정 시스템이 그 운용, 기능이나 기능불량에서 공중보건 복지나 안전에 합당하지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기여하지도 않을 걸로 입증하였음.

(iv) 이 권리포기의 부여는 (C)항 요건과 일치함

(ii) 항에 따라 판단을 할 때, 환경청장은 그러한 시스템이 전에 신규 공급원 성과기준요건을 충족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항에서 합당하지 못한 위험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청장은 여러 요소 중에서 예정기술시스템의 활용으로 규제 외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래, 증대,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기여하지도 않고 이 조의 기준을 따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술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관련 시험을 실시하고, 예정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이 시험을 실시하고 위 (iii)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그러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적은 양으로 배출된 경우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규제 외 오염물질을 신속히 보고하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이 조항의 권리포기는 환경청장이 다음 사항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i) 공급원의 배출가스가 국가 대기질기준의 달성, 유지를 방해하지 않음.

(ii) 허가받은 기술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성

이러한 조건은 이조 (e)항 및 113조의 목적을 위한 성과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C) 예정된 연속배출감축기술시스템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서 부여한 권리포기사항 수는 시스템이 (A)(ii)~(iii)조항의 명시조건을 달성하는 여부를 환경청장이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개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이 조항의 권리포기는 다음 중 이른 날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i) 환경청장이 공급원 소유자나 운영자와 상의 후 사용 중인 기술시스템의 설계, 설치 및 자본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 날짜.

- (ii)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이 시스템이 다음 사항을 달성하지 못한 날짜
 - (I)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성과기준에 따라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것과 동량으로 연속배출감축량 달성
 - (II) (1)(A)(iii)항의 명시조건을 따르고, 실패를 교정할 수 없음.
 - (E) (D)(i)항을 수행할 때, 환경청장은 공급원이나 그 일부에 대해 권리포기가 그 날짜를 지나 연장되도록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 (i) 권리포기가 공급원이나 그 일부에 부여되는 날짜에서 7년 후
 - (ii) 공급원이나 그 일부가 작업을 개시한 날짜에서 4년 후 중 더 빠른 경우
 - (F) 위 항에서 권리포기는 혁신적인 연속배출감축시스템이 사용된 부분 이외의 공급원 부분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A)(1)항의 권리포기가 (1)(D)항의 (ii)조항에서 만료된 경우, 환경청장은 이 조의 해당 성과기준을 따르는데 필요할 수 있는 최소 기간 동안 공급원과 관련하여 이 조의 요건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권리포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3년간 그 날짜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
- (B) 이 조항에서 허가된 연장은 중간에 배출량을 최소로 하는데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성과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는 진행과정의 증분을 포함하여 배출한도 및 준수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일정은 이 조의 (e)항 및 113조의 목적에 맞게 성과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42 U.S.C. 7411]

위험 대기오염물질

112조. (a) 용어 정의. 이 조의 목적에 맞게, (r)항을 제외하고.

- (1) 주요 공급원. 이 용어는 특정 위험대기오염물질량이 연간 10톤 또는 총 오염물질 양이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거나 통제 수단을 고려하여 배출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관리되고, 인접 지역 내 소재한 고정 공급원을 의미한다. 환경청장은 주요 공급원과 관련, 방사핵종별 기준의 경우에 대기오염물질, 생물누적 가능성, 대기오염물질 특성이나 기타 관련 요소들의 효력에 기초하여 앞 문장에서 명시한 것보다 양을 더 적게 정할 수 있다.
- (2) 지역 공급원. 이 용어는 주요 공급원이 아닌 위험대기오염물질의 고정 공급원을 의미하며, 이 조의 목적에 맞게, ‘지역 공급원’이란 용어는 II장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나 비 도로용 차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 (3) 고정 공급원. 이 용어는 111(a)항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4) 신규 공급원. 이 용어는 환경청장이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배출기준을 수립한 이 조의 규정을 처음 제시한 후 건조 혹은 개조가 착수된 고정 공급원을 의미한다.
- (5) 변경. 이 용어는 최소 허용량 이상으로 주요 공급원이 배출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을 증가시키거나 최소 허용량 이상으로 이전에 배출되지 않은 위험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주요 공급원의 물리적 변화나 가동 방법의 변화를 의미한다.
- (6) 위험대기오염물질. 이 용어는 (b)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 (7) 불리한 환경영향. 이 용어는 야생, 수생물이나 기타 천연자원에 온당하게 예상할 수 있게 유의하고 만연된 불리한 영향을 의미하며, 멸종 위기 집단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나 광범위

한 지역에 걸친 환경질의 유의한 악화 등을 포함한다.

- (8) 전력 공급 증기생성설비. 이 용어는 판매 목적의 전기 생산발 전기용 화석연료 연소설비가 25메가와트인 설비를 말한다. 증기와 전력을 함께 생산하고 전기 생산가능 용량의 1/3이상, 판매 목적 유틸리티 배전설비에 25메가와트 이상 발전량을 공급하는 설비는 전력 공급 증기생성설비로 간주하여야 한다.
- (9) 소유자나 운영자. 이 용어는 고정공급원을 소유, 임차, 가동, 관리 혹은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0) 기존 공급원. 이 용어는 신규 공급원 이외의 고정 공급원을 말한다.
- (11) 발암 영향.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암 영향’이란 용어는 입법일자 현재 발암위험평가지침에서 환경청장이 규정한 의미를 갖는다.¹⁾ 기존 지침의 수정사항은 공고 및 의견 기회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b) 오염물질 목록

- (1) 최초 목록. 의회는 이 조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위험대기오염물질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CAS

<u>번호</u>		<u>화학 물질 명칭</u>
75070	Acetaldehyde	아세트알데하이드
60355	Acetamide	아세트아마이드
75058	Acetonitrile	아세토나이트릴
98862	Acetophenone	아세토페논
53963	2-Acetylaminofluorene	2-아세틸아미노플루오렌

1) 원본이 그러함. 공법101.549 (Nov. 15, 1990) 입법일자를 참조.

107028	Acrolein	아크롤레인
79061	Acrylamide	아크릴아마이드
79107	Acrylic acid	아크릴산
107131	Acrylonitrile	아크릴로나이트릴
107051	Allyl chloride	염화 알릴
92671	4-Aminobiphenyl	4-아미노비페닐
62533	Aniline	아닐린
90040	o-Anisidine	o-아니시딘
1332214	Asbestos	석면(아스베스토스)
71432	Benzene (including benzene from gasoline)	벤젠 (가솔린의 벤젠 포함)
92875	Benzidine	벤지딘
98077	Benzotrichloride	벤조트리클로리드
100447	Benzyl chloride	염화 벤질
92524	Biphenyl	바이페닐
117817	Bis(2-ethylhexyl)phthalate (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542881	Bis(chloromethyl)ether	비스(클로로에틸)에테르
75252	Bromoform	브로모포름
106990	1,3-Butadiene	1,3-뷰타다이엔
156627	Calcium cyanamide	칼슘 시안아미드
105602	Caprolactam	카프로락탐
133062	Captan	캡탄
63252	Carbaryl	카마릴
75150	Carbon disulfide	이황화탄소
56235	Carbon tetrachloride	사염화탄소
463581	Carbonyl sulfide	카르보닐화합물
120809	Catechol	카테콜

133904	Chloramben	클로람벤
57749	Chlordane	클로르데인
7782505	Chlorine	염소
79118	Chloroacetic acid	클로로아세트산
532274	2-Chloroacetophenone	2-클로로아세토페논
108907	Chlorobenzene	클로로벤젠
510156	Chlorobenzilate	클로로벤질레이트
67663	Chloroform	클로로폼
107302	Chloromethyl methyl ether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126998	Chloroprene	클로로프렌
1319773	Cresols/Cresylic acid (isomers and mixture)	크레졸/크레졸 산 (이성질체 혼합)
95487	o-Cresol	o-크레솔
108394	m-Cresol	m-크레솔
106445	p-Cresol	p-크레솔
98828	Cumene	큐멘
94757	2,4-D, salts and esters	염류 및 에스테르
3547044	DDE	
334883	Diazomethane	디아조메탄
132649	Dibenzofurans	다이벤조푸란
96128	1,2-Dibromo-3-chloropropane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84742	Dibutylphthalate	디부틸푸탈레이트
106467	1,4-Dichlorobenzene(p)	1,4-디클로로벤젠(p)
91941	3,3-Dichlorobenzidene	3,3-디클로로벤자이딘
111444	Dichloroethyl ether (Bis(2-chloroethyl)ether)	디클로르에틸에테르(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
542756	1,3-Dichloropropene	1,3-디클로로프로펜

62737	Dichlorvos	디클로르보스
111422	Diethanolamin	디에탄올아민
121697	N,N-Diethyl aniline (N,N-Dimethylaniline)	
	N,N-디에틸 아닐린 (N,N-디메틸아닐린)	
64675	Diethyl sulfate	디에틸황산
119904	3,3-Dimethoxybenzidine	3,3-이메톡시벤지딘
60117	Dimethyl aminoazobenzene	디메틸 아미노아조벤젠
119937	3,3'-Dimethyl benzidine	3,3'-디메틸벤지딘
79447	Dimethyl carbamoyl chloride	디메틸 카보마일 클로라이드
68122	Dimethyl formamide	디메틸 폼아마이드
57147	1,1-Dimethyl hydrazine	1,1-디메틸하이드라진
131113	Dimethyl phthalate	디메틸 프탈레이트
77781	Dimethyl sulfate	디메틸 황산
534521	4,6-Dinitro-o-cresol, and salts	4,6-디니트로-o-크레솔, 및 염류
51285	2,4-Dinitrophenol	2,4-디니트로페놀
121142	2,4-Dinitrotoluene	2,4-디니트로톨루엔
123911	1,4-Dioxane (1,4-Diethyleneoxide)	
	1,4-다이옥세인 (1,4-디에틸레녹사이드)	
122667	1,2-Diphenylhydrazine	1,2-디페놀하이드라젠
106898	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	
106887	1,2-Epoxybutane	1,2-에폭시부탄
140885	Ethyl acrylate	아크릴산에틸
100414	Ethyl benzene	에틸벤젠
51796	Ethyl carbamate (Urethane)	에틸 카바메이트(우레탄)
75003	Ethyl chloride (Chloroethane)	염화에틸(클로로에탄)
106934	Ethylene dibromide (Dibromoethane)	

	에틸렌다이브로마이드(디브로메탄)	
107062	Ethylene dichloride (1,2-Dichloroethane)	
	염화 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107211	Ethylene glycol	에틸렌글리콜
151564	Ethylene imine (Aziridine)	에틸렌 이민 (아지리딘)
75218	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
96457	Ethylene thiourea	에틸렌 티오우레아
75343	Ethylidene dichloride (1,1-Dichloroethane)	
	이염화에틸리덴 (1,1-D디클로로에탄)	
50000	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76448	Heptachlor	헵타클로르
118741	Hexachlorobenzene	육클로벤젠
87683	Hexachlorobutadiene	헥사클로로부타디엔
77474	Hexachlorocyclopentadiene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67721	Hexachloroethane	헥시클로르에탄
822060	Hexamethylene-1,6-diisocyanate	헥사메틸렌-1,6-다이소시아네이트
680319	Hexamethylphosphoramide	헥사메틸포스포라미드
110543	Hexane	헥산
302012	Hydrazine	히드라진
7647010	Hydrochloric acid	염산
7664393	Hydrogen fluoride (Hydrofluoric acid)	플루오린화수소 (염산)
123319	Hydroquinone	하이드로퀴논
78591	Isophorone	이소포론
58899	Lindane (all isomers)	린덴 (모든 이성질체)
108316	Maleic anhydride	말레산무수물
67561	Methanol	메탄올
72435	Methoxychlor	메톡시클로로

74839	Methyl bromide (Bromomethane)	메틸브로마이드 (브로모메탄)
74873	Methyl chloride (Chloromethane)	염화메틸 (클로로메탄)
71556	Methyl chloroform (1,1,1-Trichloroethane)	메틸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78933	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메틸에틸케톤(2-부탄온)
60344	Methyl hydrazine	메틸 히드라진
74884	Methyl iodide (Iodomethane)	메틸아이오딘 (아이아이오딘화메틸)
108101	Methyl isobutyl ketone (Hexone)	메틸이소부틸케톤 (헥손)
624839	Methyl isocyanate	메틸이소시아나이드
80626	Methyl methacrylate	메타크릴산메틸
1634044	Methyl tert butyl ether	메틸 tert-부틸 에테르
101144	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
75092	Methylene chloride (Dichloromethane)	염화메틸렌 (다이클로로메테인)
101688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MDI)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
101779	4,4 ' -Methylenedianiline	4,4 ' -메틸렌디아닐린
91203	Naphthalene	나프탈렌
98953	Nitrobenzene	니트로벤젠
92933	4-Nitrobiphenyl	4-니트로비페닐
100027	4-Nitrophenol	4-니트로페놀
79469	2-Nitropropane	2-니트로프로페인
684935	N-Nitroso-N-methylurea	N-니트로소-N-메틸요소
62759	N-Nitrosodimethylamine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59892	N-Nitrosomorpholine	N-니트로소모포라인
56382	Parathion	파라티온

82688	Pentachloronitrobenzene (Quintobenzene)	
	펜타클로로 니트로벤젠(과인토벤젠)	
87865	Pentachlorophenol	펜타클로로페놀
108952	Phenol	페놀
106503	p-Phenylenediamine	파라페닐렌디아민
75445	Phosgene	스젠
7803512	Phosphine	수소화인
7723140	Phosphorus	인
85449	Phthalic anhydride	프탈산무수물
1336363	Polychlorinated biphenyls (Aroclors)	
	폴리염화바이페닐(아르클로스)	
1120714	1,3-Propane sultone	1,3-프로판 술통
57578	beta-Propiolactone	베타-프로피오락톤
123386	Propionaldehyde	프로피온알데히드
114261	Propoxur (Baygon)	프로폭서(베이곤)
78875	Propylene dichloride (1,2-Dichloropropane)	
	프로필렌 디클로라이드 (1,2-디클로프로판)	
75569	Propylene oxide	프로필렌 옥사이드
75558	1,2-Propylenimine (2-Methyl aziridine)	
	1,2-프로필렌마인 (2-메틸아지리딘)	
91225	Quinoline	퀴놀린
106514	Quinone	퀴논
100425	Styrene	스타이렌
96093	Styrene oxide	스타이렌 옥사이드
1746016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2,3,7,8-사염화다이옥신
79345	1,1,2,2-Tetrachloroethane	테트로클로로에탄
127184	Tetra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

7550450	Titanium tetrachloride	사염화티타늄
108883	Toluene	톨루엔
95807	2,4-Toluene diamine	2,4-톨루엔 디아민
584849	2,4-Toluene diisocyanate	2,4-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95534	o-Toluidine	o-톨루이딘
8001352	Toxaphene (chlorinated camphene)	톨라센 (염소화캄펜)
120821	1,2,4-Trichlorobenzene	1,2,4-트리클로로벤젠
79005	1,1,2-Trichloroethane	1,1,2-트리클로로에탄
79016	Trichloroethylene	트라이클로로에틸렌
95954	2,4,5-Trichlorophenol	2,4,5-트리클로로페놀
88062	2,4,6-Trichlorophenol	2,4,6-트리클로로페놀
121448	Triethylamine	트리에틸아민
1582098	Trifluralin	트리플루라린
540841	2,2,4-Trimethylpentane	2,2,4-트라이메틸펜테인
108054	Vinyl acetate	아세트산비닐
593602	Vinyl bromide	비닐 브롬화물
75014	Vinyl chloride	염화비닐
75354	Vinylidene chloride (1,1-Dichloroethylene)	염화비닐(1,1-디클로로에틸렌)
1330207	Xylenes (isomers and mixture)	크실렌 (이성질체 화합물)
95476	o-Xylenes	o-크실렌
108383	m-Xylenes	m-크실렌
106423	p-Xylenes	p-크실렌
	○ Antimony Compounds	안티몬 화합물
	○ Arsenic Compounds (inorganic including arsine)	비소 화합물 (무기물 비화수소 포함)

○ Beryllium Compounds	베릴륨 화합물
○ Cadmium Compounds	카드뮴 화합물
○ Chromium Compounds	크롬 화합물
○ Cobalt Compounds	코발트 화합물
○ Coke Oven Emissions	코크스 배출물질
○ Cyanide Compounds ¹	시안화물 화학물
○ Glycol ethers ²	글리콜 에테르
○ Lead Compounds	납 화합물
○ Manganese Compounds	망간 화합물
○ Mercury Compounds	수은 화합물
○ Fine mineral fibers ³	파인 미네랄 파이버
○ Nickel Compounds	니켈 화합물
○ Polycyclic Organic Matter ⁴	폴리싸이릭 유기물
○ Radionuclides (including radon) ⁵	방사성 핵종 (라돈 포함) ⁵
○ Selenium Compounds	셀레늄 화합물

주: ‘화합물’ 단어가 있는 위 목록 및 에테르글리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목록은 화학물질 인프라의 일환으로 명칭이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독특한 화학물질을(예, 안티몬, 비소 등)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¹ X'CN, 여기서 X = 형태 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H'나 다른 그룹 예를 들어 KCN or Ca(CN)₂

² 모노, 디- 글리콜에틸렌 에테르화합물, 제2에틸렌글리콜 및 제3에틸렌글리콜 R.(OCH₂CH₂)_n-OR'을 포함, 여기서,

n = 1, 2, or 3

R = 알킬 혹은 알킬족

R' = R, H, or 그룹, 제거될 때, R. (OCH₂CH)n.OH. 구조식을 가진 글리콜에테르화합물을 생성. 폴리머는 글리콜 종류에서 제외한다.

³ 유리섬유, 광물섬유나 슬래그 섬유(혹은 광물추출섬유) 평균 직경이 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제조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광섬유 배출물질을 포함한다.

⁴ 벤젠고리가 하나 이상, 비등점이 100°C 이상인 유기화합물을 포함

⁵ 자연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원자 유형

(2) 목록 수정. 환경청장은 이 조항에서 정한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그 목록을 규칙에 따라 수정하며, 흡입 또는 다른 노출 경로를 통해 사람에게 나쁜 건강 영향 위협이나 대기 농도, 생물축적, 침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리한 환경 영향을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는 오염물질(내분비장애를 일으키거나 급성, 임상독성을 나타내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기형성, 신경독성이 있을 것으로 온당하게 예상할 수 있거나 알려진 물질 등) 추가하지만, 대기 방출 결과로 (r)항의 규제를 받는 방출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108(a)항에 열거한 어떤 대기오염물질도 이 조에 따라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이 문장의 금지사항은 이 조항의 목록기준을 충족하고 108(a)조에 열거한 오염물질의 전구체인 오염물질이나 이 조에 열거한 오염물질 종류에 속하는 오염물질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VI장의 규제를 받는 어떤 물질, 관행, 프로세스나 활동도 오로지 환경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조의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3) 목록 수정 신청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지나고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특정 독특한 물질을 삭제하고, CAS 번호가 없는 오염물질목록의(코크 오븐 배출가스, 광섬유나 다환식 유기물질은 제외) 경우에 물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환경청장에게 위 조항의 위험대기오염물질목록을 수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수령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자신의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공표하여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신청은 신청인이 오염물질의 보건이나 환경 장애

1)에 대한 적합한 자료나 기타 신청을 지지하는데 적절한 증거가 있음을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심사하는데 부적합한 자원이나 시간만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B) 환경청장은 신청인이나 환경청장 자신의 판단으로 그 물질이 대기오염물질이며, 물질의 배출량, 대기 농도, 생물축적이나 침적이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이나 나쁜 환경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때 목록에 물질을 추가하여야 한다.

(C) 환경청장은 사람의 건강에 불리한 영향이나 불리한 환경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물질의 배출가스, 대기 농도, 생물축적이나 침적을 결정하기 위해 물질의 보건 및 환경영향에 대해 적절한 자료가 있다는 신청인의 설명이나 혹은 자신의 결정으로 목록에서 물질을 제외시켜야 한다.

(D) 환경청장은 위험대기오염물질목록에서 화학명칭이 있는 독특한 화학물질이 (C)항 삭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나 환경청장의 결정에 기초하여 CAS 번호가 없고 목록의 위험대기오염물질을 함유한 독특한 화학물질을 제외시켜야 한다. 환경청장은 (b)항의 CAS 목록 번호가 없는 위험대기오염물질 목록의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에 적용 가능하고 (d)항에 따라 배출기준을 공표하기 전에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제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를 승인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4) 추후 정보. 환경청장이 어떤 물질의 보건이나 환경영향에 관

1) 원본이 그러함. '영향'일 것이다.

한 정보가 이 항에서 요구된 결정을 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환경청장의 이용 가능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 (5) 시험 방법. 환경청장은 규칙대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감시, 측정 배출량, 대기 농도, 침적 및 생물축적 등과 관련된 시험 조치 및 기타 분석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6) 유의한 약화 상태의 방지
C 파트의 규정(유의한 약화 상태 방지)은 이 조의 오염물질목록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7) 납. 환경청장은 납을 위 조항의 위험대기오염물질목록에 넣을 수 없다.

(c) 공급원 부문 목록

- (1) 개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 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때때로 그러나 8년 이내의 간격으로 공공 의견이나 새 정보에 대한 대응으로, (b)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목록의 주요 공급원 및 지역 공급원((3)항에 열거)의 부문 및 하위 부문목록을 공표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실행 가능한 정도로, 위 조항의 부문 및 하위 부문은 111조 및 C 파트에 따라 수립한 공급원 부문목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앞 문장의 어느 사항도 해당되는 경우 위 조항의 하위 부문을 정하는데 환경청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 (2) 배출기준 요건. 환경청장이 정한 부문 및 하위 부문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이 항 및 (e)항의 일정에 따라 (d)항의 배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3) 지역 공급원. 환경청장은 이 조의 규제를 보증하면서 이 조에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불리한 영향의 위협을 나타낸다고

생각한 지역 공급원(공급원 개별로 또는 합쳐서) 부문 및 하위 부문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k)(3)(B)항에 따라, 오염물질 목록의 실제 배출량이나 총 예상 배출량에 기초하여 대도시 도시지역에서 공중보건에 커다란 위협을 나타내는 위험대기오염물질 30개의 지역공급원 배출량의 90퍼센트를 나타내는 지역 공급원이 이 조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지역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입법일자 후 10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 (4) 이전에 규정한 부문.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대로, 전에 이 조의 규제를 받는 공급원의 부문이나 하위 부문 목록을 만들 수 있다.
- (5) 추가 목록. (1)항 및 (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급원 부문 및 하위부문 목록 외에, 환경청장은 어느 때라도 위 조항에서 적용 가능한 목록 작성을 위해 동 기준에 따라 위험대기오염물질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 목록을 만들 수 있다. (1) 혹은 (3)항에 요구된 최초 목록을 발표한 후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 목록의 경우에, 부문이나 하위 부문별 (d)항의 배출 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0년 이내 혹은 그 부문이나 하위 부문 목록 일자 후 2년 이내 중 더 늦은 기간에 공표를 하여야 한다.
- (6) 특정 오염물질. 알킬화 납 화합물, 다환식 유기물질, 헥사클로로벤젠, 수은, 폴리염화중페닐류, 2,3,7,8 사염화디벤조푸란 및 2,3,7,8, 사염화디벤조-p디옥신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원이 (d)(2) 혹은 (d)(4)항의 기준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공급원의 부문이나 하

위 부문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은 그 입법일자 후 10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전력공급 증기생성 설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환경청장이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7) 연구시설. 환경청장은 이 시설의 합법적인 처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대로 연구시설이나 실험시설을 다루는 별도 범주를 정하여야 한다. 이 조의 목적에 맞게, ‘연구실험 시설’은 주요 목적이 새로운 프로세스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고정 공급원을 말하며, 공급원이 기술교육을 받은 인원의 세밀한 감독 하에 운용되고, 최소허용 방식의 경우는 제외하고, 상업용 판매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8) 보트 제조. 스티렌 배출 기준을 정할 때, 환경청장은 그 목록이 이 법의 목적 및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하위 범주로 보트 제조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 (9) 목록의 삭제사항. (A) 위 조항에서 요구된 목록에 공급원 범주에 삽입할 유일한 근거가 특수 화학물질의 배출물질인 경우, 환경청장은 (b)(3)항의 (C)항이나 (D)항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하여 적절하다면 목록에서 그 공급원 부문을 삭제하여야 한다. (B) 환경청장은 특정인의 청구나 환경청장의 동의로, 환경청장이 해당되는 경우 다음 결정을 할 때 위 조항의 목록에서 공급원 부문을 삭제할 수 있다.
 - (i)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킬 수 있고 공급원 부문에서 배출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 그 부문의 어떤 공급원도 오염물질 배출에 많이 노출된 인구집단의 개인에게 1/1백만 이상의 암 위험을 생존 중 일으킬 수 있는 양으로 위험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결정
 - (ii) 사람에게서 암 이외의 나쁜 건강 영향이나 나쁜 환경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경우, 관련 부문이나 하위 부문의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특정 물질(혹은 지역 공급원의 경우 공급원 집단)도 충분한 안전한도로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적합한 수치를 넘지 않으며, 어떤 나쁜 환경영향도 공급원의 배출 가스에 비롯되지 않을 거라는 결정. 환경청장은 청원서가 제출된 후 1년 이내 이 조항에 따른 청원서를 승인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d) 배출 기준

- (1) 개요. 환경청장은 (c)항의 규정에 맞게 위험대기오염물질목록의 주요 공급원 및 지역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과 관련된 배출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c) 및 (e)항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서 공표를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기준을 정할 때 부문이나 하위 부문 내 공급원의 종류, 등급 및 규모를 구별할 수 있다. 단, 이 문장에서 부여한 권한의 결과 (i)항의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기준과 관련하여 준수 일자에 지체가 없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기준 및 방법. 위 조항에 따라 공표하고 신규 또는 기존 위험대기오염물질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배출 기준은 이 조(달성 가능한 경우 배출 금지 등)의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최대 배출 감축정도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배출감축 달성비용 및 대기 외적인 조건 및 환경영향 및 에너지요건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신규, 기존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에서 다음의 조치 등 여러 수단, 프로세스, 방법, 시스템이나 기법 등을 활용하여 달성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정도이다.

- (A) 프로세스 변경, 물질 대체나 기타 변경(개조)을 통해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거나 배출량 제거
- (B) 배출량을 제거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봉쇄

- (C) 프로세스, 글썩, 보관 혹은 비산성 배출지점에서 방출될 때 오염물질의 수거, 포착 또는 처리
- (D) (h)항에 언급한 대로 설계, 장비, 작업관행이나 작업 기준 (운용자 교육이나 인증 요건 등)
- (E) 위 사항의 결합.

(A)~(D)조항의 어떤 조치도 114(c)항 규정과 일치하여, 어느 방법으로든 미국의 특허나 상표권이나 비밀사업정보 또는 거래비밀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3) 신규 공급원 및 기존 공급원. 어떤 부문이나 하위 부문 신규 공급원의 경우 달성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최대 배출감축정도는 환경청장이 판단한 대로 가장 잘 관리되는 유사 공급원이 실제로 달성하는 배출관리보다 덜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부문이나 하위 부문에서 기존 공급원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서 공표된 배출 기준은 동 부문이나 하위 부문의 신규 공급원에 대한 기준보다 덜 엄격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사항보다 더 엄격할 수도 있다.

(A) 기존 공급원이(환경청장이 배출정보를 아는 경우) 최고 12 퍼센트까지 달성한 평균배출량 한도. 단, 기준이 공표되기 전 30개월 이내 또는 배출기준이 상정되기 전 18개월 이내 중 더 늦은 기간에 30개 이상의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의 경우에, 공급원 부문에 적용 가능하고 그 당시 유효한 최저 달성 가능 배출 비율(171조에 규정)을 준수하거나, 또는 공급원이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준수할 배출 비율 또는 배출감축 수준을 먼저 달성한 공급원은 제외한다.

(B) 공급원이 30개 미만인 부문이나 하위부문의 경우 최고 성

과를 보인 공급원 5개에서 얻은 평균 배출량 한도(환경청장이 배출 정보가 있거나 합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 (4) 건강 경계치. 건강 경계치가 정해진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위 조항의 배출 기준을 정할 때 충분한 안전 한계를 두고 경계치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 (5) 지역 공급원의 다른 기준. (c)항에 따른 지역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과만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2)항 및 (f)항의 권한 대신에,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해 공급원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이나 관리관행을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요건을 공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 (6) 심사 및 수정. 환경청장은 7년 이내의 간격으로 이 조에서 공표한 배출기준을 심사하고 필요한 대로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 기술 개발사항을 고려) 수정하여야 한다.
- (7) 기타 보전 요건. 이 조에서 공표된 어떤 배출기준이나 기타 요건도 더 엄격한 배출한도 요건이나 기타 111조, C 파트 혹은 D 파트 또는 기타 이 법의 당국이나 주 당국에서 공표한 기준 등에서 정한 해당 요건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8) 코크스로

(A) 1992년 12월 31일 이내, 환경청장은 코크스로 배터리 관련하여 위 (2)항 및 (3)항에 따라 배출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할 때,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i) 문의 누출을 막기 위해 규산나트륨(혹은 동류)붕화합물, 그리고 코크스로의 배출감축 효과성을 위해 기타

가동 업무 및 기술, 그리고 신규, 기존 코크스로 배터리에 사용하는 적합성 등, 비용 및 문의 해당 판매 보증사항을 고려한다.

(ii) 이 기준의 제안일자 후 시공을 시작한 신규 코크스로 배터리와 관련하여 위 조항의 배출기준의 근거로, Jewel 디자인 톱슨 비 회수 방식 코크스로 배터리 및 기타 비 회수 방식 코크스로 기술, 기타 적절한 배출관리 및 코크스 생산기술, 코크스로 배출량감축의 효과성 및 강 코크스 생산용량 등.

이 규정은 최소한 코크스로 배터리에서 문 누출은 8퍼센트, 뚜껑 누출은 1퍼센트, 이륙(offtake)누출은 5퍼센트, 가시성 배출 가스는 16초/방출회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 폐쇄형 로 문을 닫은 후 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경우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규정하여야 한다. (i)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코크스로 배터리에 대한 배출기준의 준수 일자는 1995년 12월 31일이어야 한다.

(B) 환경청장은 적절한 대로 코크스로배터리 관련하여 위 조항의 업무관행규정을 공표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i) 규산나트륨(혹은 동종)붕니화합물의 사용, 환경청장이 문 및 관련 장비의 경우 회계비용 및 합당한 상업보증사항을 고려하여 규산나트륨의 사용이 효과적인 배출관리수단이고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ii) 문 및 잼 세척 업무.

(i)항에도 불구하고, 코크스로배터리 관련 작업관행규정의 준수 일자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이어야 한다.

(C) (i)(8)항에 따라 (f)항에서 공표한 기준의 준수 일자 연장 자격을 정하기 위한 코크스로배터리의 경우, 이 조항의 코크스로배터리 배출기준은 코크스로배터리에서 문 누출은 8퍼센트, 뚜껑 누출은 1퍼센트, 이륙(offtake)누출은 5퍼센트, 가시성 배출 가스는 16초/방출회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동밀봉 로 문을 닫은 후 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경우 예외사항을 두지 않을 것을 요한다. (i)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요청의 경우에 기존 코크스로 배터리에 대한 배출기준의 준수 일자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이어야 한다.

(9) 핵규제위원회에서 허가한 공급원 핵규제위원회에서(혹은 협정주) 허가한 시설 부문이나 하위 부문의 방사성핵종 방출 물질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환경청장이 규칙에 의해 핵규제위원회와 협의 후, 원자에너지법에 따라 핵규제위원회가 정한 이 부문에 대한 규제계획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안전 한계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조에 따라 공표할 필요가 없다. 위 조항의 어느 사항도 111조나 이 조에서 유효한 기준이나 제한보다 더 엄격한 방사성핵종의 방출 물질과 관련된 기준이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주 또는 그 행정당국의 권리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

(10) 유효일자. 이 조항에서 공표한 배출기준이나 기타 규정은 공표하는 때 유효하다.

(e) 기준 및 심사 일정

(1) 개요. 환경청장은 (c)(1)항의 규정 관련하여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의 최초 목록의 배출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확보하면서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A) 40개 이상의 부문 및 하위 부문의 배출 기준은 1990년도

-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 (B) 코크스로배터리 배출기준은 1992/12/31일 이내 공표하여야 다.
- (C) 부문 및 하위 부문 목록의 25퍼센트 배출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4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 (D) 부문 및 하위 부문 목록의 추가 25퍼센트 배출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7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 (E) 모든 부문 및 하위 부문의 배출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0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 (2) (d)항의 기준을 공표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오염물질이 공중보건 및 환경에 미친다고 알고 있거나 예상되는 나쁜 영향
- (B) 각 부문이나 하위 부문이 배출하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양과 배출 장소 혹은 합당하게 예상되는 배출량
- (C) 배출된 오염물질이나, 사용한 프로세스나 기술에 따라 부문 및 하위 부문을 분류하는 효율성
- (3) 일정 발표.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의견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은 (1) 및 (2)항의 요건과 일치하는 (c)(1) 및 (3)항에 따라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 목록의 배출기준 공표 일자를 정하는 일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 공표의 우선순위 결정은 규칙에 의한 것은 아니며, 사법 심사를 받지 않는다. 단 이 조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준을 공표하지 못해 이 법 304조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사법 심사. 이 법 307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이 (b)항에서 목록에 오염물질을 추가하거나 (c)항에서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 목록을 작성하는 어떠한 조치도 사법 심사를 받는 최종 기관의 조치는 아니다. 단, 그와 같은 조치는 환경청장이 오염 물질이나 범주에 대한 배출기준을 발하는 때 307조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5) 공공 소유 처리 설비. 환경청장은 공공소유처리 설비에(연방수질오염관리법의 II장에 규정) 적용할 수 있는 (d)항의 기준을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f) 보건 및 환경 보호기준

- (1) 보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년 이내,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기회 후, 그리고 의료장관과 협의 후, 다음 내용을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A) (d)항의 기준 적용 후 이 조의 규정을 받는 공급원에 잔존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공중보건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 (B) 이렇게 평가한 잔존 위험의 공중보건 중요성 및 위험을 기술적, 상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비용

- (C) 공급원 부근에 거주민과 관련 실제 건강 영향, 유용한 역학연구나 기타 보건연구,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배경농도로 나타나는 위험, 위험평가방법론의 불확실성이나 기타 건강평가방법, 그리고 이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공동체의 보건이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D) 잔존 위험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권고안

- (2) 배출기준

- (A) 의회가 (1)항에서 제출된 권고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환경청장은 (d)항에 따라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의 기준을 공표하고 8년 이내 기준의 공표가 이 조에 따라(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대로) 공중보건보호나 비용, 에너지, 안전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불리한 환경 영향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안전 한계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부문 및 하위 부문의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공표된 배출기준은 이 조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안전 한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환경청장이 비용, 에너지, 안전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예방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람에게 발암인자로 알려져 있거나 가능성이 다소간 있는 것으로 분류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에 적용할 수 있고 (d)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이 그 부문이나 하위부문의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에게 생존 중 커다란 암 위험을 1/100백만 이하로 줄이지 않을 경우, 환경청장은 위 조항에 따라 그 공급원 부문에 대한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B) (A)항이나 이 조의 여타 규정의 어느 사항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하고 1989년9월14일 연방기록부에 제시된 대로 환경청장의 이 조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C) 환경청장은 이 기준을 공표하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에 관해 (d)항의 기준을 공표하고 나서 8년 후 그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d)항의 기준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공표될 필요가 있는 부문 및 하위 부문의 경우, 환경청장은 (d)항의 기준을

공표하고 나서 9년 후, 앞 문장의 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 조항의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3) 유효일자. 위 조항에 따라 정한 배출기준은 공표하는 때 유효하다.
- (4) 금지. 이 조항의 기준이 적용되는 어떤 대기오염물질도 기존 공급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고정 공급원에서 배출될 수 없다.
 - (A) 그 기준은 유효일자 후 90일까지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 (B) 환경청장은 기준을 따르기 위해 기준의 유효일자 후 최고 2년 기간 동안 공급원을 허용하는 권리포기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기간이 제어장치 설치에 최고 2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건강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권리포기 기간 중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환경청장이 조사한 경우에 그렇다.
- (5) 지역 공급원. 환경청장은 위 조항의 심사를 실시하거나 (c)(3)에서 열거되어 있고, 배출 기준이 (d)(5)에 따라 공표된 경우에 지역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 관련하여 위 조항의 배출한도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 (6) 특수 화학물질. 위 조항에서 CAS 번호가 없는 오염물질 목록의 특수 화학물질의 관리 기준을 정할 때, 환경청장은 공급원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물질과 그 부문 및 하위 부문의 배출 물질의 직접적 변형 부산물의 보건 및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g) 변경

(1) 상쇄

- (A)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에서 최소 허용증가량을 초과하게끔 주요 공급원의 물리적 변화 혹은 운용방법의

변화는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그 공급원에서 나오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실제배출량의 증가가 (B)항에서 환경청장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공급원에서 다른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같은 양으로 또는 초과하여 감소됨으로써 상쇄되는 경우이다. 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증가가 앞 문장에서 상쇄되었음을 제시하면서 환경청장(혹은 주)에 보낼 설명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B)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의견 공고 및 기회 제공 후, 위 조항의 이행과 관련한 지침을 간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A)항에서 허가한 상쇄 설명을 돕는데 충분한 (b)항의 오염물질목록의 대기 중 방출로 인해 사람 건강에 상대적인 위험을 실행 가능한 정도로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오염물질 증가(혹은 오염물질 흐름에서 오염물질 하나 이상)가 사람 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오염물질 종류가 그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다면 노출에 대한 안전 경계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오염물질 사이에 상쇄조치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 개조 및 변경

- (A) 어느 주에서 V장의 허가 프로그램 유효일자 후, 어떤 자도 해당 주에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주요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환경청장(혹은 주)이 기존 공급원과 관련 이 조의 최대 달성가능 통제기술 배출한도를 충족한다고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결정은 해당 배출한도를 환경청장이 정한 적이 없는 경우에 사례별로 하여야 한다.

- (B) 어느 주에서 V장의 허가 프로그램의 유효일자 후, 어떤 자도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주요 공급원을 건축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단, 환경청장(혹은 주)가 기존 공급원과 관련이 조의 최대 달성가능 통제기술 배출한도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배출한도를 환경청장이 수립한 적이 없는 경우에 사례별로 하여야 한다.
- (3) 수정 절차. 환경청장(혹은 주)은 이 조의 변경에 적용하는 요건이 허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h) 작업관행기준 및 기타 요건

- (1) 개요. 이 조의 목적에 맞게,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배출기준을 규정하거나 집행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 환경청장은 그 대신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d)이나 (f)항 규정과 일치하는 설계, 장비, 작업관행이나 작업 기준이나 이를 합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위 조항의 설계나 장비 기준을 공표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그 기준의 일부로 그와 같은 설계나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용어 정의. ‘배출기준을 규정하거나 집행할 개연성이 없는’이란 표현은 환경청장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 (A) 위험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포착하도록 설계, 건조된 전달 장치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없거나, 이 전달 장치의 요건이나 활용이 연방, 주 혹은 지방법과 일치하지 않음
- (B) 특정 종류의 공급원에 측정방법 적용을 기술 및 경제 한도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음.
- (3) 대체 기준. 의견 공지 및 기회 제공 후,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

용자가 다른 배출한도 수단이 최소한 (1)항 요건에서 달성될 오염물질 배출 감축량과 같게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감축을 달성할거라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한 경우, 환경청장은 이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이 조의 준수 목적으로 공급원이 그러한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수치 기준. (1)항에서 공표한 기준은 배출기준 조건으로 기준을 공표, 집행할 개연성이 있는 때 그 기준 측면에서 공표를 하여야 한다.

(i) 준수 일정

(1) 사전 건축 및 작업 요건

(d), (f) 혹은 (h)항의 배출기준, 한도나 규정의 유효일자 후, 어떤 자도 신규 주요 공급원을 건조하거나 그러한 배출기준, 규정이나 한도가 적용되는 기존 공급원을 개조할 수 없다. 단, 공급원이 적절하게 건축, 개조, 운용되는 경우 그 기준, 규정이나 한도를 준수할 거라고 환경청장이(혹은 V장에서 승인한 허가 프로그램이 있는 주)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 규칙. (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기준, 제한이나 규정 후, 그리고 이 기준, 제한이나 규정이 공표되기 전에 건축 또는 개조를 착수하는 신규 공급원은 다음의 경우 공표일자 후 3년의 일자까지 그와 같이 공표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A) 공표된 기준, 제한이나 규정이 상정 기준, 제한이나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경우

(B) 공급원이 공표 직후 3년의 기간 중 상정 기준, 제한이나 규정을 따르는 경우

(3) 기존 공급원의 준수 일정

- (A) 이 조에서 공표되고 어떤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배출기준, 제한이나 규정의 유효일자 후, 어떠한 자도 그 기준, 제한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원을 운용할 수 없다. 단, 기존 공급원의 경우에, 환경청장이 기존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의 준수 일자를 정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B)항 및 (4)~(8)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유효일자 후 여하한 경우에도 3년 이내 준수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B) 환경청장(혹은 V장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이 있는 주)은 제어장치 설치를 위해 최대 1년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 공급원이 (d)항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허용하는 연장 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 최대 3년 연장은 (b)항의 오염물질 목록의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광업 폐기물을 건조, 차폐하는데 4년의 준수 시한이 불충분한 경우에 광업 폐기물 작업에 추가할 수 있다.
- (4) 대통령 면제. 대통령이 이 기준을 이행하는 기술을 이용할 수 없고, 면제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정 공급원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 조의 기준이나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면제사항은 1번 더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각 기간은 2년을 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른 면제사항에 대하여(혹은 그 연장)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5) 조기 감축
- (A) 환경청장은 (혹은 V장의 승인 허가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는 주) 공급원에서 나오는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위험대기오염물질이 미립자인 경우 95 퍼센트)이 90퍼센트 이상 감축을 달성하였다고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입증한 경우, 기존 공급원이 달리 적용 가능한 기준의 준수 일자로부터 6년의 기간 동안 (d)항에서 공표된 배출한도 대신에 이러한 감축을 반영하는 다른 배출한도를 충족하도록 허용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그러한 감축이 (d)항의 달리 적용 가능한 기준이 처음에 제기되기 전에 달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조항의 어느 사항도 앞 문장에서 허용된 연장기간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어느 주에게 이 조항에 명시된 양을 초과하는 감축량을 미리 요구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

- (B) 해당 기준 제기 후, 1994년 1월1일 전, (A)항의 감축량을 달성한 기존 공급원은 기준 제기 전에 집행 가능한 감축량 달성 공약을 한 경우 (A)항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 공약은 이 조의 규정과 같은 정도로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
- (C) 감축량은 1987년도 이후의 기준년도에 입증 가능하고, 실제 배출량과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기준년도의 배출량이 배출감축조치 이행 전 여러 년도에 배출량보다 실질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더 큰 증거가 없음을 조건으로 한다. 환경청장은 공급원이 기준년도를 1985년이나 1986년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공급원의 배출량 자료가 공급원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입증 가능하고, 114조에 제공한 정보 요청에 따라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 일자 전에 환경청장이 입수한 자료를 반영함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증명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 (D) 이 조항의 다른 배출한도를 승인받은 공급원의 경우, 이 조항의 다른 배출한도에 대한 공급원 자격을 부여하는 감축량을 반영하면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집행 가능한 배출한도를 V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다른 배출한도는 (f)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이나 요건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하며, 환경청장은 (f)항의 기준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다른 공급원 부문이나 하위 부문이 심사를 받는 같은 시기에 이 조항의 다른 배출한도를 승인받은 공급원의 배출량을 심사하여야 한다.

(E) 불리한 공중보건 영향의 고위험이 염화다이옥신 및 푸란 등 소량에 노출과 관련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이 조항의 대체 배출한도의 자격이 되는 고위험 오염물질 감축량이 90퍼센트에 육박할 때 공급원의 다른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배출감축량을 상쇄하는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6) 기타 감축. 이 조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A) 최대 이용 가능한 기술(169(3)에 정의되어 있음), 혹은

(B) (A)나 (B)항의 조치에 따라 통제된 동 오염물질(혹은 오염물질 유량) 및 공급원에 적용 가능하며 이 조의 기준을 공표하기 전에, 최저 달성 가능한 배출량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설치한 어떠한 기존 공급원도 환경청장이 결정한대로 설치나 감축을 한 날짜 후 5년 까지 이 조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칙 및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7) 신규 공급원에 대한 연장. (d)항의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배출기준을 제기한 후, (f)항에서 그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배출기준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이나 재건축이 착수된 공급원은 건축이나 재건축을 착수하고 10년 후 일자까지 (f)항의 배출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8) 코크스로.

- (A) (d)(8)(C), (B)항 및 (C)항에서 정한 배출한도를 준수하고, (E)항 규정을 준수하는 코크스로배터리는 2020년 1월1일 까지 (f)항에서 공표한 배출한도를 달성할 필요는 없다.
- (B) (i) 1992년 12월 31일 이내, 환경청장은 코크스로배터리의 코크스에 대한 배출한도를 공표하여야 한다. 위 (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코크스로배터리의 배출한도 준수 일자는 1998년 1월 1일이다. 이 배출한도는 기존 배터리의 코크스로공장에서 교체물이나 다시 신축된 코크스로배터리와 관련하여 171조에 규정된 최저 달성 가능 배출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배출한도는 다음 사항보다 더 엄격하여야 한다.
- (I) 문의 유출은 3%(6미터 배터리의 문의 유출은 5%)
 - (II) 뚜껑 유출의 경우 1%
 - (III) 증발 유출의 경우 4%
 - (IV) 가시성 배출량은 16초/방출회수. 자동 밀폐 로 문의 닫힌 후 기간 동안 배출량은(혹은 총 배출 질량과 동량) 제외. 배출한도 공표에 대한 규칙제정은 또한 배출한도의 준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정한 측정 방법론을 정하고, 코크스로배터리에서 배출질량과 같은 수준의 의미에서 배출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단, 환경청장이 이 배출질량 기준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집행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측정 방법론은 문의 유출을 측정하는 정도까지 영향을 받는 산업에 실제로 적용되는 최상의 기술 및 관행을 반영하는 다른 시험 방법을 고려하고, 최종 시험 방법이 이 최상의 기술 및 관행을 실시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i) 환경청장이 그러한 배출한도 유효일자 전에 이 조항

의 배출한도를 공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조항의 코크스로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배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 (I) 문의 유출은 3%(6미터 배터리의 문의 유출은 5%)
 - (II) 뚜껑 유출의 경우 1%
 - (III) 증발 유출의 경우 4 %
 - (IV) 가시성 배출량은 16초/방출회수, 혹은 총 배출 질량과 동량(총 배출 질량에 해당하는 양이 실행 또는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 밀폐 로 문이 닫힌 후 기간 동안 배출량은 제외,
- (C) 2007년 1월 1일 이내, 환경청장은 (B)항에서 공표된 배출한도를 심사하고, 필요한 대로 기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다시 건조된 코크스로배터리의 경우, 교체나 건조 시점에서 171조에 규정된 최저 달성가능 배출량을 반영하기 위해 배출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배출한도는 (B)항에서 공표된 배출한도보다 더 엄격하여야 한다. 위 (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코크스로배터리의 배출한도 준수일자는 2010/1/1일이다.
- (D) 1998/1/1 전 어느 때라도, 코크스로배터리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위 (B)항 및 (C)항에 규정된 배출한도 및 준수일자 대신에 코크스로배터리에 달리 적용될 날짜까지 (f)항에서 공표된 배출한도를 준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소유자나 운영자는 2002/1/1일 현재 (f)항에서 공표된 배출한도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 코크스로배터리에 대한 배출한도가 공표된 적이 없는 경우, 환경청장은 (f)항의 배출한도를 공표하여야 한다.
- (E) (A)항의 연장자격이 있는 코크스로배터리는 2000/1/1일 이내, 관련 위원회에서 (f)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정한 배출

한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청장이 수행한 위험평가결과를 주변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의 연장 자격이 있는 코크스로배터리 공급원의 재건축은 2020/1/1일 까지 (B) 및 (C)항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f)항의 배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서 ‘재건축’이란 용어는 비교 가능하거나 더 낮은 용량 및 더 낮은 양을 배출할 수 있는 신규 코크스로배터리로 기존 코크스로배터리 용량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j) 허가에 의한 동량 배출 한도

- (1) 유효일자. 이 조항의 요건은 V장에 따라 주에서 정한 허가 프로그램의 유효일자에 시작하지만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42개월 이후에 각 주에 적용하여야 한다.
- (2) 기준 공표 불이행. 환경청장이 (e)(1) 및 (3)항에서 정한 날짜까지 주요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에 대한 기준을 공표하지 못할 경우, 그 날짜 후 18개월부터 (V장의 허가 프로그램 유효일자 이전은 아님) 주요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의 소유자나 운용자는 (3)항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자나 운용자도 또한 (5)항 및 (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신청. (2)항에서 정한 날짜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요 공급원 소유자나 운용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이 조항에서 요구된 허가 신청서를 적시에 완비하여 제출 완료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단, 최종 조치의 지연이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요구나 요청을 받은 정보를 신청자가 적시

에 처리하지 못해 비롯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그리고 의견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적시에 신청서 완비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신청서 양식기준 등 이 조항의 신청서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 (4) 심사 및 승인. 위 조항에 따라 제출한 허가신청서는 505조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또는 부결을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혹은 주)이 제출된 허가 신청서를 부결하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은 환경청장의 이의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서를 최고 6개월까지는 수정하여야 한다.
- (5) 배출한도. 허가서는 V장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이 조의 규정 적용을 받고, (d)항에 따라 적시에 배출기준이 공표된 경우 사례별로 해당 공급원에 적용할 한도와 같다고 환경청장(혹은 주)이 판단한 공급원에서 제출되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대안으로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허가서는 (i)(5)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배출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 문장의 목적에 맞게, (i)(5)(A)항에서 요구한 감축량은 관련 기준이 (d)항에서 공표되었어야 할 날짜까지는 달성되어야 한다. 어떠한 오염물질도 신규 공급원의 경우 즉시, 가능한 한 신속히, (i)항에서 적용될 다른 준수 날짜나 기존 공급원에 대해 허가서가 발급되고 3년 후 날짜 이내, 허가서에 수록된 배출한도를 초과하는 양으로 배출될 수 없다.
- (6) 후속 기준의 적용 가능성. 환경청장이 허가 신청서 승인날짜 이전에 주요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배출기준을 공표하는 경우, 허가서의 배출한도는 (5)항에 따라 결정된 배출한도가 아니라 공표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급원이 (i)항에 언급된 준수 기간을 갖는 조건으로 한다. 환경청장이 허가

서 발급일자 후 이 조항의 허가서에 정한 배출한도 대신에 (d)항에 따라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을 기준을 공표하는 경우, 환경청장(혹은 주)은 공급원에게 준수할 적당한 시간을 주지만, 기준 공표 후 8년 이내 혹은 (5)항에서 정한 배출한도를 공급원이 처음에 준수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 날짜 후 8년 이내 중 더 이른 날짜에 환경청장이 공표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갱신시 그 허가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k) 지역 공급원 프로그램

- (1) 조사 및 목적. 의회는 지역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양이 개별로나 총합하여 도시지역의 공중보건에 커다란 위험을 나타내는지를 조사한다. 노출인구수 및 위험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발암 및 기타 불리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대도시지역의 환경농도특성은 현재 겪고 있는 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공급원의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상당량 감축하고 공급원의 배출량에 기인할 수 있는 암 발생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등 공급원과 관련된 공중보건 위험도 그만큼 감소시키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다.
- (2) 연구 프로그램. 환경청장이 주 및 지방 대기오염관리공무원과 협의 후, 도시 지역의 위험대기오염물질 공급원과 관련하여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대표 도시 지역에서 광범위한 위험대기오염물질에(휘발성 유기화합물, 금속, 살충제 및 불완전한 연소 산물 등) 대한 환경 감시
 - (B) 지역 공급원 및 위험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 지역 공급원이 기여하는 정도에 역점을 두고 오염 공급원의 특성을 분석

(C) 오염물질에 기인한 공중보건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기 변형 및 기타 요인 고찰

이 프로그램에서 고려한 보건 영향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기형성, 신경독성, 생식기능저하 및 기타 급, 만성 영향 등 오존 전구체 같은 오염물질의 역할이나 산성 에어로졸 형성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예비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국가 전략

(A) (2)항에서 허가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고려하면서,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제공 후 도시지역에서 지역공급원의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할 종합전략을 마련,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B) 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지역 공급원의 배출 결과, 대다수 도시지역에서 공중 보건에 커다란 위협을 나타내고, (b)항에 따라 목록 작성이 되어 있거나 있게 될 위험대기오염물질 30개 이상을 확인하고 (ii) (c)항에 따라 목록 작성이 되어 있거나 있게 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을 확인한다. 이 조항의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을 확인할 때, 환경청장은 위험대기오염물질로 확인될 30종류의 총 배출량의 90 퍼센트를 차지하는 공급원이 (d)항에 따른 기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이 전략은 지역 공급원의 위험대기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공중보건위험을 상당부분 줄이기 위해 여러 법의(독성물관리법, 연방살충제공평이제거제¹⁾ 및설치류살충제법 및 자

원보존회수법²⁾등) 관할 하에 환경청장이나 주에서 이행할 특정 조치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전략은 고정공급원이 배출한 위험대기오염물질 노출로 기인할 수 있는 암 발생을 75퍼센트 이상 줄이도록 하며, 모든 고정공급원에서, 여러 법에 따라 환경청장이나 주에서 이행한 조치에서 비롯되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관리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D) 이 전략은 또한 이 조항의 목적 및 목표를 보완할 법 개정을 위한 권고안 및 감시, 분석방법론, 모델링이나 오염 관리기법 등의 연구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여러 법에 따라 심의 중에 있고 전략을 마련하기 전에 공표될 수 있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지역 공급원과 관련하여 조치 이행을 지연하거나 사전에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F)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년 이내 모든 공급원이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전략을 이행하여야 한다.

(G) 이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청장은 전략의 목표 및 목적이 충족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적절한 대로 도시 지역의 환경감시 및 배출가스 모델링을 규정하여야 한다.

(4) 전(全) 지역적 활동. (3)항에서 허가한 국가도시대기독성전략 외에, 환경청장은 또한 특정 도시지역 내 지역 공급원의 배출가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 또는 지방의 대기오염관리기관에서 개발한 지역 전략을 장려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의 보조금에 이용 가능한 기금에서, 환경청장은 지역

1) 원본이 그러함. ‘곰팡이살충제’다음에 쉼표가 있어야 함.

2) 원본이 그러함. ‘1976’이란 표현은 ‘법’ 다음에 나타나야 함.

공급원이 배출하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차폐 지역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10퍼센트 이상을 비축하여야 하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있는 주들에게 시연회별 이 기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나 지방의 대기오염관리 공무원의 요청으로 환경청장은 지역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기술이나 관리업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보고. 환경청장은 지역 공급원의 위험대기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공중보건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조항 및 이 법의 다른 부분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8년~12년 이내 간격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 국가 프로그램

- (1) 개요. 각 주는 (r)항의 누출사고 방지, 경감을 위한 요건이나 이 조의 대기오염물질 요건 및 배출기준의 이행 및 집행(전에 부여한 집행 위임 심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주가 제출한 프로그램은 환경청장의 권한 및 의무를 일부 혹은 전부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출기준 및 예방요건을 이행, 집행을 하여야 하지만 이 법에서 환경청장이 공포한 것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 (2) 지침.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조항에서 제출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에 유용할 지침을 간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또한 (r)항에서 열거한 물질을 한계량보다 많이 생산, 처리, 취급 또는 저장하는 시설 등록을 규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b)항에 열거한 위험대기물질 등 대기오염고위험물질 공급원을 심사하기 위해 1986년 시작된 단계별 선택 프로그램을 그 지침의 요소로 포함하여야 한다.

- (3) 기술 지원. 환경청장은 대기독성정보센터를 설립, 관리하여 주 및 지방 기관에 기술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되, 관리기술, 보건 및 생태위험평가, 위험분석, 환경감시 및 모델링 및 배출측정 및 감시 등 관련 기타 기관에는 비용 회수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103조의 권한을 활용하여 배출가스를 방지, 측정 및 관리하고 관련 보건 및 생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며, 해당되는 경우, 비영리 기관과 함께 이 활동을 실시하며, 배출 가스를 방지, 측정, 관리하고, 관련 보건 및 환경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보조금. 주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으로 이 조항의 제출 및 승인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하는데 있어서 주를 돕기 위해 주에 보조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지원된 프로그램은 특히 이 조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 극히 위험한 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루는 프로그램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보조금은 (2)항에 언급된 고위험지점공급원의 심사 지원 및 (k)항의 전 지역별 공급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5) 승인 또는 부결. 주에서 제출한 프로그램 수령 후 180일 이내,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은 이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주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을 부결하여야 한다.
- (A) 프로그램에 관련된 당국이 이 조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해당 기준, 규정이나 요건을 주의 모든 공급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B)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적합한 당국이 없거나 적당한 자원을 이용할 수 없음.

(C) 프로그램 이행 및 영향권 내 공급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이 충분히 신속하지 않거나

(D) 프로그램이 (2)항에서 환경청장이 간행한 지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 법의 목적을 전부 혹은 일부 충족할 가능성이 없음

환경청장이 어느 주의 프로그램을 부결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수정 또는 변경사항을 주에 통보하여야한다. 주는 프로그램제안서를 수정, 다시 제출하여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

(6) 철회. 환경청장이 공청회 후 어느 주가 (2)항의 간행 지침이나 (5)항의 요건에 따라 이 조항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을 관리,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은 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90일 이내 취하지 않을 경우 환경청장은 프로그램 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주에게 통보되었어야하고, 철회 근거가 서면으로 명시되고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승인을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7) 집행 권한. 이 조항의 어느 항목도 환경청장이 이 조의 요건이나 해당배출기준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지 않아야 한다.

(8) 지방 프로그램.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제공 후, 이 조항에 따라 지방 대기오염관리 기관(주와 협의 후)에서 개발, 제출한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관은 이 조에 따라 주가 허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허가 권한. 이 조항의 어느 항목도 V장에서 환경청장이나 주의 의무 및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m) 대형 호수 및 해역에 대기 침전물

- (1) 침전물 평가. 환경청장은 해양대기상무차관보와 함께,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역에 위험대기오염물질(및 환경청장의 재량으로,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성침적의 정도를 조사, 평가할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A)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 호수 및 해역 등을 감시하고, 이 조항의 (2)항에서 정한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오대호의 감시, (4)항에서 해역 대기 감시 네트워크를 계획, 전개하는 것도 포함,
 - (B) 대기오염물질(및 대기변형전구체)의 대기 침전물 공급원 및 침전물비율 조사
 - (C) 감시 방법을 개발, 개선하고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역 등에 총 오염 축적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할 연구를 실시.
 - (D) 침적물로 인해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불리한 영향의 평가 (간접 노출경로에서 비롯된 영향 등) 및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및 안전음용수법에서 정한 식수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침전물의 기여도 평가, 그리고
 - (E)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역 등의 생물상, 어류 및 야생생물에서 오염물질 샘플 채취 및 오염물질 공급원 특성의 분류
- (2) 오대호 감시 네트워크. 환경청장은 오대호 수질협정 부록 15에 따라 오대호에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침적을 감시할 오대호 대기 침적 네트워크의 수립 및 운용을 감독하여야 한다.
- (A) 이 조항에서 규정된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1991/12/31이내, 환경청장은 건조 조건 및 습한 조건에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침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최소 1곳 오대

호에 건축하여야 한다.

(B) 환경청장은 네트워크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대호를 통한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확인, 추적하고, 오염물질의 대기 침적에 기인할 수 있는 수질오염 부하량을 측정하고, 오대호수질협정에서 요구한 구제조치계획 및 기타 관리계획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C) 환경청장은 오대호 대기 침적 감시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자료가 국제공동위원회, 캐나다 및 오대호지역 각 주에서 지원한 데이터베이스와 호환 가능한 양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체사피크만 및 챔플린호수의 감시. 환경청장은 체사피크만 및 챔플린호수 분수령내 위험대기오염물질 침전물을 감시할 대기 침전물 기지국을 체사피크만 및 챔플린호수에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체사피크만 및 챔플린호수의 오염물질 축적량에서 대기 침전물의 비중을 측정하고, 이러한 오염물질량의 보건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며, 이들 영향 특성을 분류하는데 필요한 대로 분수령 내 생물상, 어류 및 야생생물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4) 해역의 감시. 환경청장은 해역 및 분수령 관련 대기 침전물 감시네트워크를 계획, 전개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청장은 침전물 감시 방법을 개발, 개선하고, 대기 침전물이 오염물질 축적량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 320(a)(2)(A)항에서 선정되거나 동 법 320(a)(2)(B)에 수록되어 있거나 해안지역관리법 315조에 따라 지정된 어귀연구 보호지를 말한다.

- (5) 보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그 후 2년마다, 환경청장은 해양대기상무차관보와 협조하여 이 조항에서 실시한 감시, 연구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평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안 수역에서 대기 침전물의 오염물질 축적에 대한 기여도.
 - (B)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안 수역에 대기 침전물에 기인할 수 있는 오염의 환경영향 및 공중보건 영향
 - (C) 대기 침전물에 기인할 수 있는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안 수역의 오염원
 - (D)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안 수역의 오염축적량이 안전식수법의 식수기준 또는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의 수질기준이나 오대호 관련 오대호수질협정의 특정 목적의 초과사항(exceedance)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여부
 - (E) 이 법의 요건, 기준 및 제한 수정사항 및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해당 연방정부법에 대한 설명
- (6) 추가 규정. 의회 보고의 일환으로 환경청장은 이 조의 여타 규정이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및 심각하거나 만연된 환경영향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지 그 여부를 결정하되, 위험 대기오염물질이(및 대기 변형산물) 오대호, 체사피크만, 챔플린호수 및 해안 수역에 대기 침적과 관련하여 간접 노출경로에서 비롯된 영향도 포함한다. 환경청장은 오염물질의 생물축적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환경청장은 이 조에 따라 보고 및 결정에 기초하여 그 영향을 예방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할 수 있는 통제

조치나 다른 배출기준을 공표하되, 생물축적 및 간접 노출경로로 인한 영향도 포함한다. 해안 수역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서 공표된 요건은 328(a)항의 적용을 받는 주의 해안 수역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n) 기타 규정

(1) 전력공급 증기생성설비.

(A) 환경청장은 이 법의 요건 부과 후 (b)항의 오염물질 목록 중 전력공급 증기생성설비의 배출 결과로 일어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되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연구 결과를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의회에 보고하며, 이 조의 규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배출관리 대체전략을 개발, 환경청장의 의회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에서 요구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규정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조의 전력공급 증기생성설비를 규정하는 제정을 하여야 한다.

(B) 환경청장은 전력공급 증기생성설비, 시립폐기물연소설비, 지역 공급원 등 기타 공급원에서 나오는 수은 배출 물질 연구를 실시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4년 이내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배출 비율 및 질량, 배출물의 보건환경 영향, 배출 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기술 비용 등을 고찰하여야 한다.

(C)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는 수은 노출 수준 이하에서 사람의 건강에 불리한 영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계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소비될 수 있는(예민한 인구의 소비 등) 어류 조직의 수은농도의 한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코크스로 생산기술연구

(A) 에너지부 장관 및 환경청장은 6년에 걸친 합동연구를 착수하여 코크스로생산배출관리기술을 평가하고, 코크스로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위험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크게 감소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제어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조력하여야 한다. 제어기술을 조사할 때, 장관 및 환경청장은 기존 코크스로시설 및 배터리 디자인의 범위 및 코크스로용 재료 공급원의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존 코크스로생산디자인의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장관 및 환경청장은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의하게 감축할 수 있는 코크스생산배출통제시설을 개발, 설치 및 작동하기로 한 자와 협정 체결을 할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는 연방기금이 이 조항에서 지원된 프로젝트 비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C) 장관은 연구 프로그램의 상태에 대해 의회에 보낼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 완료 시점에서 (d)항의 기준을 이행한 후 코크스로생산시설이 잔존위험을 줄이게 하며 실행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통제기술을 조사한 내용을 환경청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D) 이 조항에서 허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1992~1997년 각 회계연도에 500백만 달러 총당금이 부여된다.

(3) 공영 처리 설비. 환경청장은 공영 처리 설비의 소유자 및 운전자와 협조하여 시설에서 배출하는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을 분류하고, 배출량에 기여하는 산업, 상업 및 주거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들 배출 물질에 대한 통제조치를 증명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공영 처리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공포할 때, 환경청장은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일으키는 방출물의 사전처리 및 프로세스 혹은 배출 감축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제품 대체물이나 제한물품을 포함하는 통제조치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이행에 사용할 위험평가방법 및 통일된 샘플링 및 모델링을 규정할 수 있다.

(4) 유정 및 가스 정: 파이프라인 시설.

(A) (a)항에도 불구하고, 오일이나 가스 시추로 또는 생산정(관련 장비와 함께)에서 배출되는 물질 및 파이프라인 압축기나 펌프 스테이션의 배출 물질은 다른 유사 시설이 인접지역에 있던, 통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기간에, 시설이나 스테이션이 주요 공급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의 배출 물질과 합치지 않아야 하며, 오일이나 가스 시추 혹은 생산정의 경우(관련 장비 포함), 배출 물질은 이 조의 어느 목적으로든 합치지 않아야 한다.

(B) 환경청장은 (c)항의 지역 공급원 부문으로 오일 및 가스 생산정(관련 장비와 함께)을 목록에 넣지 않아야 한다. 단, 환경청장이 이들 정에서 나오는 위험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공중보건에 간과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불리한 위험영향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경우에 인구수 1백만 명이 넘는 대도시통계지역이나 통합대도시통계지역에 소재한 오일 및 가스 생산정에 대한 지역 공급원 부문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황화수소. 환경청장은 오일 및 천연가스자원의 추출과 관련된 황화수소 배출로 인해 공중보건환경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실행 가능한 정도로, 평가는 고형폐기물처리법 8002(m)항에 따라 평가실시 작업에 기초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각 주와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는 기존의 주 및 산업 관리기준, 방법 및 집행 사항의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평가 결과 및 권고안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11조¹⁾ 및 이 조 등 이 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람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황하수소배출량 관련 통제전략을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

- (6) 플루오르화수소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이 물질과 관련하여 종합보건안전규정이 없는 지역을 위해 이 물질의 위험가능성 및 최악의 유출사고 사례 등 여러 사고를 고려하여 공중보건 환경에 산업적, 상업적으로 적용하는데 이 물질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완수하고, 해당되는 경우 위험 감축을 위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7) RCRA 시설. 고형폐기물처리법 C장의 규제를 받는 대기 배출 물질의 공급원 부문 및 하위 부문의 경우에, 환경청장은 그장에서 공표한 배출 규정을 고려하고, 최대 실행 가능한 정도로 이 조의 규정과 일치하게끔 그 장 및 이 조의 요건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국립과학연구아카데미

- (1) 아카데미의 요청.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다음을 심사하기 위해 아카데미와 적정한 약정체결을 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조’이어야 함.

(A) 이 조의 요건을 적용 받는 공급원 범주 및 하위 범주에서 비롯되는 위험대기오염물질 노출과 관련된 발암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청에서 사용한 위험평가방법론

(B) 그 방법론 개선안.

(2) 연구 요소. 심사를 할 때, 아카데미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위험대기오염물질의 사람에 대한 발암영향 평가, 설명에 사용한 기법

(B) 위험대기오염물질 노출 평가에 사용한 기법(가정 하에, 실제로 최대 노출된 개인뿐만 아니라 기타 노출된 개인에 대해)

(3) 기타 우려할 만한 건강 영향. 실행 가능한 정도로, 아카데미는 유전성돌연변이, 선천성 장애 및 생식기능저하 등 노출안전한 계치가 없을 수 있는 암 이외 사람에 나쁜 건강 영향위험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고. 심사결과 보고서는 상원환경공공사업위원회, 하원에너지통상위원회,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303조에서 수립된 위험평가관리위원회, 환경청장 등에게 그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원. 환경청장은 아카데미를 도와 이 조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이 법의 권한으로 다른 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다른 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가 실시한 기타 활동이나 연구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6) 허가. 이 법에서 환경청장에게 충당하도록 허가된 기금 중에서, 필요한 금액은 이 조항을 실시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발암위험평가 지침. 환경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국립 아카데미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안 및 보고와 관련하여 과학자 문국의 견해를 고려하되, 채택할 필요는 없다. (f)항의 기준을 공표하기 전, 의견 공지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은 발암위험평가개정지침이나 국립아카데미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근거에 대한 상세설명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지침의 간행은 307조 목적에 맞게 최종기관의 조치이다.

(p) Mickey Leland 도시대기독성연구센터.

(1) 설립. 환경청장은 대학, 병원이나 기타 역학, 종양학, 독물학, 흥부의학, 병리학 및 생물통계학 등의 분야에서 유사한 연구 역량을 착수,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위치할 국립도시대기독성센터의 설립을 감독하여야 한다. 센터는 Mickey Leland 도시대기독성연구센터로 칭한다. 센터의 지리적 위치는 텍사스 주 해리스카운티 쪽으로 하고 텍사스메디컬센터 현장에서 잘 구축된 학문단체 존재뿐만 아니라 현재 정착된 종합감시시스템을 위해 이전에 수집된 광대한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

(2) 이사회. 국립도시대기독성연구센터는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리하며, 이사는 하원의장, 상원의 여당지도자 및 대통령 중에서 비례 선출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회 이사는 각 전문 학력에 기초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공중보건, 환경오염 및 산업위생 등과 관련된 문제에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사회 역할은 정책 및 연구 지침을 결정하고, 센터 후원자 및 대중의 의견을 제출하고, 센터 연구결과 및 활동의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3) 과학자문위원회. 이사회는 과학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으며, 위원 13명은 자문국에서 임명하고, 과학의료단체의 저명한 인

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 구성원은 국립환경과학연구소, 질병관리센터, 환경보호청, 국립암연구소 및 기타 등 관련 경험이 많은 학자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문가(peer) 심사를 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자문국을 도와 연구안건 개발, 제안서 및 신청서 검토 및 연구보조금제공에 관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4) 기금조달. 센터는 연방기금 및 사설 기금으로 설립되고, 지원을 받는다.

(q) 유보 조항

(1) 이전에 공표된 기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1조의 기준은 개정안 입법일자 전이나 개정안에서 이 조에 제시된 대로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날짜 후 효력을 발한다. (4)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에 공표되었지만 아직 발효하지 않은 이 조의 기준은 이 일자 전에 혹은 그 개정안에서 이 조에서 언급된 대로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0년 이내 (d)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심사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307조에서 그와 같은 기준 심사를 받기 위해 기한 내 요청한 청구가 입법일자에 심리중인 경우, 그 일자 전에 유효한 이 조를 준수할 경우 그 기준은 확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기준이 환경청장에게 반송되는 경우,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이 조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2) 특별 규칙. (1)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에서 개정된 대로, (A) 인 원소 공장, (B) 인 원소

난로 석화 공장, (C) 인 석고 굴뚝이나 (D) 앞서 언급한 하위 범주 등에서 배출된 방사성핵종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이 조에서 정하지 않아야 한다.

(3) 다른 범주. (1)항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대로, 이 조는 핵규제위원회의 면허를 받지 않은 에너지부 외 연방시설, 석탄연소시설 및 산업용 보일러, 우라늄 지하광산, 우라늄 표층광산 및 우라늄 체재 부스러기 더미 처리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핵종의 경우 여전히 유효하다. 단, 환경청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에서 개정된 이 조의 권고안을 방사성핵종에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의료시설.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연구시설이나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에 이 조에서 공표된 어떠한 기준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간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청장이 112(d)(9)항의 규칙제정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이 위 시설에 대한 핵규제위원회에서 수립한 규제 프로그램이 공중보건보호에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112조 요건은 이 시설에 전부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 규제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보호에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112(d)(9)항에 규정된 대로 이 시설에 대한 이 조의 기준을 공표할 필요는 없다.

(r) 유출사고 방지

(1) 목적 및 일반 의무. 이 조항에서 허가한 규정 및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3)항에 열거된 물질이나 기타 극히 위험한 물질의 방출 영향을 최소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생산, 처리,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는 미국 법전¹⁾ 29장 654조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도로 일반 의무가 있다. 즉 적정 위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방출로 비롯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안전시설을 설계, 유지하며, 유출사고 발생의 영향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304조 규정은 다른 자에게 이용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의 어느 항목도 이러한 물질의 유출사고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람에게 신체 상해나 기타 상해 혹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 소송의 근거나 책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 판단, 암시나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어 정의

- (A) ‘유출사고’란 용어는 고정 공급원에서 대기 중에 규제 물질이나 기타 극히 위험한 물질이 예상치 못하게 배출됨을 의미한다.
- (B) “규제 물질”이란 용어는 (3)항에 열거한 물질을 말한다.
- (C) “고정 공급원”이란 용어는 건물, 구조물, 장비, 설치물 혹은 물질을 배출하는 고정 활동을 말하며, I) 같은 산업 그룹에 속하고 (ii) 하나 이상의 인접 자산에 소재하며, (iii) 같은 사람의 관리를 받고(혹은 통상의 관리를 받는 자), 그리고 유출사고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것 등이다.
- (D) ‘소매 시설’이란 용어는 수입의 1/2이상이 최종 사용자에게서 직접 판매로부터 오거나 부피별 판매 연료의 1/2이상이 실린더교환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되는 곳에서의 고정 공급원을 말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참고는 1970년도 직업안전보건법 5조를 참고.

(3) 물질목록. 환경청장은 100개 물질의 최초 목록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공표하여야 하며, 유출사고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불리한 영향,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킬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목록의 공표를 위해, 환경청장은 1986년도 비상계획및공동체알권리법에서 발표한 극 위험 물질 목록을 활용하여야 하나, 이에 한하지 않고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최초 목록은 염소, 무수암모니아, 염화메틸, 에틸렌산화물, 염화비닐, 이소시아네틸,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로엔이시아산, 포스겐, 브롬산, 무수염산, 불화수소, 무수이산화황 및 삼산화황 등을 포함한다. 최초 목록은 유출 사고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부작용,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위험이 가장 큰 물질 최소한 100개를 포함한다.

목록을 정하는 규정은 목록 수립 근거에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때때로 환경청장이 자신의 동의로 혹은 신청에 의해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적어도 5년마다 검토를 하여야 한다.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어떠한 오염물질도 그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VI장의 규제를 받는 물질, 업무, 과정이나 활동은 이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환경청장은 (b)항의 목록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하여 이 조항에서 정한 목록에 물질을 추가, 삭제할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 고려할 사항. (3)항의 물질 목록 작성에 환경청장은

(A)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i) 물질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건강에 급성부작용의 심각성

- (ii) 물질의 유출사고의 가능성, 및
 - (iii) 물질의 유출사고에 사람이 노출되는 가능성 정도
- (B) 물질의 폭발성이나 인화 특성 때문에 이 조항의 소매시설에서 연료 판매용으로 보관되거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인화성물질 목록은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단, 화염 열기나 폭발 영향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연소되지 않은 연료나 연소부산물 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로 물질에 사람이 노출되어 건강에 급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임계량. 특정 물질이 (3)항에 따라 목록이 작성되는 시점에,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이 물질의 임계량을 정하고, 독성, 반응성, 휘발성, 확산성, 연소성, 인화성 및 유출사고 결과 목록에 있는 물질의 경우 사람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을 고려한다.
- (6) 화학물질안전국
- (A) 이 조에서 설립된 독립 안전국은 화학물질안전위험조사국으로 칭한다.
 - (B) 이 사무국은 의장을 포함하여 구성원이 5명이며,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 및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은 사고 재건, 안전공학, 인적 요소, 독성이나 대기오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자격, 전문적 위치, 증명된 지식에 기초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위원 임기는 5년이다.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비효율성, 의무 해태나 봉직 중 배임행위 등으로 면직될 수 있다. 의장은 사무국의 CEO 이며, 사무국의 행정관리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C) 사무국은 다음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i) 치사, 심각한 상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상해를 일으키는 유출사고의 원인이나 원인가능성, 사실, 상태 및 상황 등을 조사(혹은 조사받을 원인), 판단하고 서면으로 대중에게 보고.

(ii) 의회, 연방, 주, 지방 기관, 화학물질 생산, 처리, 취급, 보관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청 및 직업안전보건청, 기타 유출사고 영향가능성을 줄이는 대책을 권고하고 화학물질 생산, 처리, 취급 및 보관을 하는데 가능한 한 상해위험 없이 안전하게 교정 조치를 제안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정기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유출사고 결과 사망, 상해나 사람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유출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로 하기 위해 직업안전보건법¹⁾에 따라 노동 장관이나 이 조에서 환경청장이 발효한 규칙이나 명령 상정안을 포함할 수 있다.

(iii) 사무국의 조사 관할 대상인 대기 중 유출사고의 보고자를 구속하는 규정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사무국 대신에 국립대응센터에 직접 간행물 보고는 이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센터는 사무국 관할권내 유출사건을 사무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D) 사무국은 다른 기관의 전문 인력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E) 사무국은 공중보건안전 보호의무가 있는 기타 미국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와 그 활동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립수송안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 안전국을 수송 관련 주요 유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제한하고 역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원본이 그러함. '1970'이란 표현은 '법'다음에 와야 함.

사무국은 해양오일유출을 조사할 권한은 없으며, 국가수송안전국이 조사권한이 있다. 사무국은 활동 중복을 제한하기 위해 직업안전보건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무국은 유출사고가 일반 대중들 간에 치사나 심각한 상해를 일으키거나 막대한 사망이나 상해 혹은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 (F) 사무국은 유출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이나 위험가능성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때 사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연구 및 실험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실행 가능한 정도로, 사무국은 산업, 상업 및 비영리 분야의 단체 및 협회, 주 기관, 지방 정부기관, 비상대응 권한이 있는 기타 연방 기관과 협조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G) 유출사고나 조사 관련하여 사무국의 결론, 연구결과나 권고안의 어떤 부분도 보고에 언급된 문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조치나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H)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사무국은 극 위험 물질의 유출사고발생을 예방하고 그 영향을 최소로 하는데 있어 위험평가활용이나 환경청장에 대한 권고안을 첨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권고안은 규제를 받지 않고 극히 위험한 물질(물질의 임계량 포함)의 목록 및 유출사고 예방을 돕고 발생영향을 최소로 할 적절한 수단이 될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고정 공급원 부문을 포함하고, 또한 위험평가에 포함하는데 적절할 정보 및 분석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유출사고 방지에서 (8)(B)¹⁾항에서 요구한 위험관리계획의 역할과 관련하

여 권고를 하여야 하며, 때때로 이 조항의 권고안을 검토, 수정할 수 있다.

(I) 사무국이 유출사고 관련 환경청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한 때 환경청장은 이를 수령한 후 180일 이내 권고안에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을 주어야 하며, 다음 사항 여부를 나타내야 한다.

(i) 규칙제정을 시작하거나 권고안을 전부 혹은 일부 이행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권고안에 포함된 시간표에 따라 발한다.

(ii) 규칙제정을 거부하거나 권고된 대로 명령을 발한다. 환경청장이 사무국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기로, 부분적으로만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 권고안에 포함된 일정 변경 등은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환경청장의 설명문을 동반하여야 한다.

(J) 사무국은 노동 장관에게 유출사고 관련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안을 제출한 때, 장관은 이를 수령하고 180일 이내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면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의 권고안에 대한 환경청장의 답변은 장관이 다음 사항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나타내어야 한다.

(i) 규칙제정을 시작하거나 권고안을 전부 혹은 일부 이행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권고안에 포함된 시간표에 따라 발한다.

(ii) 규칙제정을 거부하거나 권고된 대로 명령을 발한다. 장관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권고안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 권고안에 포함된 일정 변경 등은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장관의 설명문을 첨부하여야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7)(B)항일 것임.

한다.

- (K)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사무국은 환경청장에게, 직업안전보건청장에게 대기 중 규제물질의 ((3)항 물질 목록작성 권고안 포함) 유출사고 예방 및 임계량 이상으로 규제물질을 취급하는 고정공급원에 적용 가능할 유출사고 결과로 사람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가능성을 완화하는 위험관리계획 및 일반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채택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이 조의 권한으로 환경청장이나 직업안전보건법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발행할 명령이나 규칙 상정안을 포함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권고안은 구체적이며, 권고안이 적용되는 규제물질(기타 물질)의 종류나 규제 물질을 구별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7)(B)항에서 요구한 규정을 공표하기 전에 이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L) 사무국은 사무국의 권한으로, 그 구성원, 사무국에서 고용하거나 위임한 행정심판관이나 사무국에서 정히 지정한 관리직원은 (C)항에서 허가한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i)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기 및 장소에서 앉아 행동하고, 서약을 하며, 소환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증인의 참석 및 증언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의해 극히 위험한 물질의 생산, 처리, 취급 혹은 보관에 관여하는 자가 사무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양식으로 서면 보고서 및 요청 답변서를 시간 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ii) 적합한 증명서 및 검사 당국의 서면 통지서를 제시할 때, 치사, 중상이나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유

1) 87쪽 주석 1 참조.

출사고가 발생하였고 (C)항에 따라 적절한 조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적당한 시간에 기록, 파일, 문서, 과정, 통제수단 및 시설을 검사하고 이 조사와 관련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나 사무국이 이 조항에 따라 시설 검사를 할 때, 고용인 및 그 대표자는 직업안전보건법에 언급된 것과 같은 검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¹

- (M) (L)항에 언급된 것 외에, 사무국은 이 법 307(a)(1)항에서 언급된 소환 권한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환경청장의 정보 수집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 (N) 사무국은 역할 및 임무 행사에 필요한 절차 및 행정규칙을 수립할 권한이 부여되며, 미합중국 법전 41장 5조를 고려하지 않고 여타 기관, 단체나 개인과 사무국의 의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할 수 있는 계약, 임대차, 협조약정이나 기타 거래를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다.
- (O) (C)(iii)항에 따라 공표된 보고 요건의 유효일자 후, 어떠한 자가 그 조항에서 요구된 대로 극히 위험한 물질의 유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환경청장은 113조 및 114조에서 정한 규정이나 요건을 집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에게서 이 조의 사무국이나 환경청장이 제기한 정보 요청은 이 법 113, 114, 116, 120, 303, 304 및 307조 및 기타 집행 규정의 목적에 맞게 114조에서 환경청장에 제기한 요구로 다룰 수 있으며, 그 조에서 언급된 대로 환경청장이나 사무국 의장이 집행할 수 있다.
- (P) 환경청장은 사무국의 활동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지원 및 시설을 사무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Q) (G)¹⁾ 및 114(c)항과 일치하여, 어떠한 기록, 보고서나 사무국이 얻는 정보는 환경청장, 노동부 장관, 의회 및 대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이 열람하는 기록, 보고서나 정보 혹은 그 특정 부분(유출이나 배출량 자료는 제외)이 특정인의 경쟁 입장에 상당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자가 사무국에게 만족스럽게 제시한 때, 사무국은 미합중국법전 18정 1905조에 따라 기록, 보고서나 정보나 그 특정 부분을 비밀로 간주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러한 기록, 보고서나 정보가 다른 직원, 고용인 및 이 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미국의 위임대리인에게 노출될 수 있거나 이 법에 따라 소송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 조항은 의회로부터 기록, 보고서나 정보를 보유할 권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 (R) 사무국이 예산 산출서, 예산요청서, 추경예산요청서나 기타 예산정보, 입법 권고안, 의회 공청회 관련 예비 증언, 대통령, 노동부 장관, 환경청장이나 관리예산청장에 보내는 권고안이나 연구서를 제출하거나 송부한 때, 이와 동시에 의회에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국의 어떤 보고서도 환경청장이나 연방기관의 심사나 법원의 사법 심사를 받지 않는다. 어떤 미국의 공무원이나 기관도 사무국에 예산 요청서나 산출서, 입법 권고안, 예비 증언, 의견, 권고안, 증언, 의견이나 의회로 보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승인 또는 검토를 받기 위해 미국의 공무원이나 기관에 보낼 권고안이나 보고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이 법에 정한 각 역할의 수행에서, 사무국의 구성원, 관리 직원은 이 조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청, 노

1) 원본이 그러함. ‘조항’이어야 함.

동부나 기타 미국의 기관의 관리직원이나 대리인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책임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무능, 의무해태나 봉직 중 배임행위 등의 이유로 사무국의 구성원, 관리나 직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의 어느 항목도 미합중국법전 5장을 사무국 관리나 직원에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S) 사무국은 연례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전년도 중 사무국에서 조사, 보고되었던 유출사고에 대한 정보 등, 사무국이 취한 입법 조치나 행정조치에 대한 권고안,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청장이나 노동부장관이나 다른 기관의 장이 취한 조치, 후속 년도에 연구조사를 위한 우선순위사항 확인, 위험감축기술개발의 진행 및 공공부문 및 사설 부문에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중요한 연구결과의 이행 및 대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사고 방지.

- (A) 규제물질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청장은 유출방지, 검출 및 구제 요건을 공표할 권한이 있으며, 이 요건은 감시, 기록유지, 보고, 교육, 증기회수, 2차 봉쇄 및 기타 설계, 장비 작업관행 및 작업 요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공표한 규정은 시설, 장치 및 설비의 종류, 등급 및 유형 등 사이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별할 수 있으며, 취급물질의 크기, 장소, 과정, 과정 통제수단, 양, 물질의 효능 및 고정 공급원에서 존재하는 대응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서 공표된 규정은 환경청장이 정한 대로 유효일자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i)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환경청장은 최대 실행 가능한 정도로 규제 물질의 유출사고 방지 및 탐지를 위해, 그리고 이 유출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의 유출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는데 적당한 규정 및 해당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때, 이 규정은 유출을 감시, 탐지, 검사, 통제하기 위해 장비의 활용, 가동, 보수, 대체 및 유지관리를 다루며, 장비 사용 및 유지보수에서, 그리고 정기검사 실시에서 담당자 교육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물질 유출사고 후 비상대응 절차 및 조치를 포함하며, 보관뿐만 아니라 작업을 다루며, 해당되는 때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원의 자발적인 조치 및 공급원의 규모, 작업, 과정, 등급 및 범주 등의 차이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공포일자 후 3년 후 혹은 임계량 이상의 공급원에 현존한 규제물질이 (3)항에서 처음 목록으로 작성되는 날짜가 지나고 3년 후 더 늦은 날짜에 고정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 이 조항의 규정은 규제물질이 임계량 이상으로 있는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고정 공급원에서 물질의 유출사고를 탐지하고 방지하거나 최소로 하기 위해 위험관리계획을 마련, 이행하고,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와 같은 유출에 대해 신속한 비상대응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위 조항의 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규제물질의 유출사고의 영향가능성을 평가할 위험평가서. 이 평가서는 잠재적 유출량의 산정 및 순풍 영향의 측정을 포함하며, 사고 인구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서는 과거 5년간 유출기록, 유출의 규모, 농도 및 기간, 최악의 유출사고사례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II) 규제물질의 유출사고 방지 프로그램, 공급원에서 이용할 안전예방조치 및 유지관리, 감시 및 직원 훈련 조치 등도 포함하며, 그리고

(III)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물질의 유출사고에 대응하여 취할 특정 조치를 규정하는 대응 프로그램, 유출사고, 비상건강관리 및 직원훈련조치 등에 대응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 기관에게 고지할 절차도 포함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이 공표된 시점에서, 환경청장은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정 공급원을 도울 지침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 지침은 실행가능한 정도로 모델위험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ii)항에서 다룬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는 환경청장이 규칙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방식 및 형태로 (i)항 규정의 유효일자 전 환경청장과 함께 위 항목에서 마련된 위험관리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서 마련한 계획은 또한 화학안전위험조사국에, 고정공급원이 소재하는 주, 그리고 공급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출사고에 대한 계획이나 대응책임이 있는 지방기관이나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며, 114(c)항에 따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정기심사감사체제를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위험관리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여 계획이 위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계획은 환경청장이 요구하는 대로, 규칙에 의해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

- (C) 이 조항에 따라 공표된 규정은 최대 가능한 정도로 이 조항과 일치하고, 미국기계공학협회(ASME), 미국표준연구소(ANSI)나 미국시험물질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 및 권고안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의 규정을 공표하는데 있어 소규모사업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D) 이 조항의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노동부장관, 교통부 장관과 상의를 하며, 직업안전보건청이나 교통부에서 비교 목적으로 정한 요건과 이 조항의 요건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사항도 환경청장, 화학안전위험조사국이나 기타 기관에 핵규제위원회에서 허가한 시설의 건축 및 운용으로 발생한 방사성핵종의 유출사고를 규정할 권한(위험평가요건을 포함)을 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 판단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E) 이 항에서 부과된 규정이나 요건의 유효일자 후, 어느 자가 그러한 규정이나 요건을 위반하여 규정이나 요건의 적용을 받는 고정 공급원을 가동하면 불법이다. 이 항의 규정이나 요건은 이 법 113, 114, 116, 120, 304, 및 307 및 기타 집행 규정의 목적을 위해 (d)항에서 유효한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 (F) 이 조나 V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정공급원도 단지 규정이나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V장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 (G) 이 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환경청장은 미합중국법전 29장 653(b)(1)항의 목적을 위해¹⁾ 직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나 기준을 규정하거나 집행할 법령 권한을 행

1) 원본이 그러함. 1970년도 직업안전보건법 4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H) 현장 밖 영향분석정보 공공이용

(i) 용어 정의. 이 단락에서:

(I) 담당자. 이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aa) 미국의 관리직원

(bb) 연방정부 대리인이나 도급업체의 관리직원

(cc) 주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관리직원

(dd) 주나 지방 정부 대리인이나 도급업체의 관리직원

(ee) 주나 지방 정부에서 유출사고 방지, 계획 또는 대응 업무 책임을 부여한 단체와 업무제휴한 자

(ff) (ee)의 법인의 대리인이나 도급업체의 관리직원

(gg) (vii)항의 연구자격자

(II) 공용. 이 용어는 연방, 주, 지방 정부기관이나 유출사고 방지, 계획이나 대응 관련 역할을 수행하기로 (I)(ee)항에 언급된 단체의 행위를 말한다.

(III) 현장 밖 영향분석정보. 이 용어는 위험관리계획의 여러 부분을 뜻하며, 계획의 종합개요를 제외하며, 이 부분의 평가¹ 혹은 최악의 유출 시나리오나 기타 유출 시나리오 및 환경청장이 수립한 전자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IV) 위험관리계획. 이 용어는 (B)(iii)항 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환경청장에게 제출한 위험관리계획을 말한다.

(ii) 규정. 이 항의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대통령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I) 평가

(aa) 인터넷상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테러 및 기타 범죄활동위험 증가, 그리고

(bb) 유출사고 위험 감소 목적으로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의 공개로 생겨난 인센티브

(II) (I)항의 평가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의견으로 (I)(aa)항의 위험 및 유출사고 가능성 및 공중보건복지 위해 가능성을 최소로 하는 방식으로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관리하는 규정을 공포한다.

(aa)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국 어디서든 소재한 제한된 고정 공급원에 대한 현장 밖 영향분석정보의 종이 복사본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bb) 해당되는 때 현장 밖 영향분석정보를 다른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c) (i)(I)조항의 (cc)~(ff)항목에 언급된 담당자 공용으로 그 개인의 주에 소재한 고정 공급원 관련 현장 밖 영향분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dd) 주나 지방의 담당자가 인접 주의 주나 지방의 담당자에게 그 개인의 주에 소재한 고정 공급원 관련 현장 밖 영향분석정보를 공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e) (cc)항목에서 어느 주 또는 지방 담당자 이용할 수 없는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환경청장의 요청으로 공용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정보법의 자유에 따른 이용 가능성

(I) 첫 해.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 정보에서 결정된 고정 공급원의 등급결정은 이 조항의 입법일자에 시작하는 첫해 년도에는 미합중국법전 5장 552조에 따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II) 첫 해 이후. (ii)항의 규정이 (I)항의 기간이나 끝나

기 전에 공표된 경우 규정에서 다른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 및 정보에서 결정된 고정 공급원은 그 기간이 끝난 후 미합중국법전 5장 552조에 따라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III) 적용 가능성. (I)항 및 (II)항은 이 조항의 입법일자 전후나 그 날짜에 환경청장에게 제출된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에 적용하여야 한다.

(iv) 과도기 정보 이용 가능성. 환경청장은 (ii)(II)항의 (cc)~(ee)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기간에 공용으로 담당자에게, 그리고 고정공급원의 정체성이나 소재 관련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대중에게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이 조항 입법일자에 시작하고

(II) (ii)항의 규정 공표일자보다 이르게 혹은 이 조항 입법일자 후 1년 후에 끝나는 기간

(v) 담당자의 허가받지 않은 정보공개 금지

(I) 개요. 이 조항 입법일자에 시작하는 때, 담당자는 어느 형태로든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나 정보에서 확인된 고정 공급원의 주나 국가의 등급상태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ii)항에서 공표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 입법일자에 시작하는 첫 해가 끝나고, 규정이 (ii)항에서 공표되지 않았다면, 앞 문 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II) 형사벌금. 11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제한이나 금지를 ((ii)에서 공표된 규정을 포함)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담당자가 기소된 때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 허가를 받지 않고 공개한 때 미합중국법전 18장 3571조의 위반행위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3571조 (d)항이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피고가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상의 손실 결과를 낳는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 고정 공급원의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의 공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 항목의 단독 개인이나 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의 총량은 1 회계 연도 중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III) 적용 가능성.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고정 공급원과 관련된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무제한 대중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

(aa) (I) 및 (II)항목은 이 정보와 관련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bb) 소유자나 운영자는 환경청장에게 이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통지하여야 한다.

(IV) 목록. 환경청장은 (III)(bb)항에서 통지를 한 고정 공급원 목록을 관리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 통지. 환경청장은 (i)(III)조항에서 언급된 공용의 정의 통지 및 정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는 조처의 예, 그리고 (iv)항의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입수하는 담당자 및 (ii)항에서 공표된 규정에 따라 공용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입수한 담당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형벌 및 향후 유포 제한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vii) 연구 자격자

(I) 개요. 이 조항 입법일자 후 180일 이내, 환경청장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 확인을 포함하여 연구자격자, 산업이나 공공이해단체의 연구자격자에게 제공할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

(II) 유포의 제한. 이 시스템은 연구자가 이 조항에서 얻은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나 그 일부를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ii) 열람용 정보 기술 시스템. 법무부장관 및 기타 해당 연방기관과 협의하여, 환경청장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만 정보의 전자복사본 혹은 기계적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관리를 받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수단으로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가능성을 규정하는 정보기술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ix) 자발적 산업재해 방지기준. 환경보호청, 사법부 및 기타 해당 기관은 고정공급원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1)항에 제시된 목적 달성을 돕는 자발적 산업기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x) 주 또는 지방법에 대한 영향

(I) 개요. (II)항의 조건으로 이 항목(이 항목에서 규정된 규정을 포함)은 이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주나 지방법의 규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II) 주법의 정보 이용 가능성. 이 항목의 어느 것도 주법에 따라 수집한 화학물질 유출의 현장 밖 영향에 대한 자료를 주에서 사전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xi) 보고

(I) 개요. 이 항목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법무부 장관은 해당 주, 지방 및 연방정부 기관, 영향을 받는 산업 및 대중과 협의하여 위 조항에서 공포된 규정이 형사활동으로 인하여 규제물질 유출 영향을 탐색, 방지 및 최소로 하는데 효과적인 안전시설의 설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여러 조치를 취한 정보를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은 가능한 정도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차폐고정 공급원을 선택하여 샘플 채취를 하고, 해당 주, 지방 및 연방정부기관, 영향을 받은 산업 및 대중과 협의하여, 범죄테러 행위, 부지 보안에 대한 현행 산업 관행 및 규제물질 수송 보안에 차폐 고정 공급원의 취약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범죄테러행위에 차폐 고정 공급원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권고안과 함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미하원상무위원회, 미상원환경보건사업위원회 및 기타 관련 의회의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I) 중간보고서. 이 항목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법무부장관은 미하원상무위원회, 미상원환경보건사업위원회 및 기타 관련 의회의원회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a) (I)항의 예비 조사결과

(bb) 그 결과를 진전시키는데 사용한 방법

(cc) (I)항의 보고서 결과가 예비결과와 다르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의 설명

(III) 정보 이용 가능성. 법무부장관이 개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고 (I)~(II)항의 심사 목적으로 차폐고정

공급원에서 입수한 정보가 국가보안에 위협이 될 거라면 미합중국법전 5장 5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xii) 범위. 이 (I)항은 오직 담당자에만 적용되며,
 - (II)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담당자의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 유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 밖 영향분석 정보로 환경청장이 수립한 전자데이터베이스나 위험관리계획의 형태로 된 것을 제외한다.
- (xiii) 충당금 허용. 이 조항을 ((ii)항에서 공표된 규정을 포함)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환경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충당되고, 지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8) 위험평가연구. 환경청장은 (3)항의 물질 목록에 대해 사고 가능성의 범위를 다른 사고 시나리오 및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지하여야 하며, 이 항의 위험평가 준비에 사용된 절차를 향상, 유효하게 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방법 및 기법에 대한 정보를 개발, 유포하기 위해 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9) 명령권한

(A) 기타 취한 조치 외에, 환경청장은 규제물질의 실제유출사고나 사고위협으로 인해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환경청장은 그 위험이나 위협을 줄이는데 필요할 수 있는 원조물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위협이 발생한 지역의 미국지방법원은 그러한 사례의 공공이익 및 형평성으로 요구할 수 있는 원조물자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환경청장은 또한 고정공급원이 소재한 주에 통지를 한 후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명령 등을

발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의 권한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적합한 때 이 항목이 아니라 303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이 항목에서 발한 명령은 303조에서 발한 것처럼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집행될 수 있다.

(C)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0일 이내, 환경청장은 이 항목에서 정한 명령권한을 활용하는 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 311(c), 308, 309 및 504(a)항,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106조, 고형폐기물처리법 3007, 3008, 3013, 및 7003조, 안전식수법 1445조 및 1431조, 독극물관리법 5조 및 7조, 이 법 113, 114, 303조 등에서 허가한 비상권한이 있는 이 항목의 권한 활용 조정을 규정하여야 한다.

(10) 대통령 검열. 대통령은 여러 연방기관의 유출방지, 완화 및 대응 당국의 검열을 이행하며, 당국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당국이나 자원에서 결함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기관의 의무를 규정, 조정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 검열을 할 때 화학물질안전위험조사국의 자원을 활용하고, 권고사항을 권유할 수 있다. 검열이 마무리될 때,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연방정부의 유출방지, 완화 및 대응활동에 대해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 항목의 어느 것도 법에서 달리 정한 유출방지, 경감 또는 대응권한을 대통령이 수정하거나 재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판단이나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11) 주의 권한.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이 항에서 유효한 규정, 요건, 제한이나 기준보다 더 엄격하거나 이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에 적용되는 요건, 규정, 제한이나 기준(절차 요건을 포함)을 채택하거나 집행하는데 주나 행정부서의 권리를 사전에 배제,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s) 정기 보고서. 1993/1/15이내, 그 후 3년마다, 환경청장은 이 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환경청에서, 관련 주에서 취한 조치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오염물질 및 공급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취합한 정보를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한다.

- (1) (d) 및 (f)항에서 기준 설정에 대한 상황보고서;
- (2) 여러 범주 및 하위 범주에서 공급원이 부담한 준수 비용을 포함하여 기준의 준수 관련 정보
- (3) 국가도시대기독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 (4) 유출사고 방지 및 경감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위험조사국의 권고사항

[42 U.S.C. 7412]

연방정부 집행

113조. (a) 개요

- (1) SIP 준수 명령. 환경청장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특정인이 해당 이행계획이나 허가 요건이나 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했음을 발견한 때, 환경청장은 이 계획이 적용되는 개인 및 주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어느 때라도 위반통지가 발한 날짜에서 30일 만료 후, 환경청장은 위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미합중국법전 28장 2462조에 따름)

(A) 그 자가 계획이나 허가의 금지사항 또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발한다.

(B) (d)항에 따라 행정벌칙명령을 발하거나

(C) (b)항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2) 주의 SIP 또는 허가 프로그램 불이행

환경청장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V장의 해당 이행계획이나 허가승인프로그램의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서 계획이나 허가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주가 이 계획이나 허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데서 위반사항이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견한 때, 환경청장은 주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 프로그램의 경우, 통지는 V장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통지 후 불이행이 30일 지나도록 계속됨을 발견한 경우(허가 프로그램의 경우 90일), 환경청장은 이 발견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공지가 시작되고 이 계획이나 허가 프로그램을 집행할 주가 환경청장을 만족시킬 때 끝나는 기간 중에 (이후 ‘연방정부 집행 추정기간’), 환경청장은 특정한 관련하여 계획이나 허가 프로그램의 요건의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A) 그 자에게 그러한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을 발한다.

(B) (d)항에 따라 행정벌칙명령을 발하거나,

(C) (b)항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3) 다른 요건 집행. 이 항의 선행 규정에서 집행 가능한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환경청장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EPA 장은 어느 자가 이 장에서의 여타 요건이나 금지사항, III장, IV장, V장이나 VI장 303조, 각 장의 규정에서 공표, 발효되거나 승인된 규칙, 계획, 명령, 권리포기 등 혹은

이 법에서(II장 제외) 미국에 지급할 수수료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때,

- (A) (d)항에 따라 행정벌칙명령을 발하거나,
- (B)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그 자에 요청하는 명령을 발하거나
- (C) (b)항이나 305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 (D) (c)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형사조치를 착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명령요건. 이 항에서 발한 명령(112조의 위반사항과 관련된 명령은 제외)은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환경청장과 상의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명령이 전달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이 항에서 발한 명령의 사본은 위반이 일어나는 주의 대기오염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발한 어떠한 명령이든 위반의 특성을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데 선의의 노력 및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환경청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준수 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명령(혹은 (1)항의 위반자에게 보내는 통지)이 기업에 발한 경우에, 명령(혹은 통지) 사본은 해당 기업의 관리에게 발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발한 명령은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명령이 발한 날짜 후 1년 이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이 항에서 발한 어떠한 명령도 주나 환경청장이 벌금을 평가하지 못하게 하지도,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주나 미국 당국이 집행할 권한에 달리 영향을 끼치거나 제한하지도 않으며, 이 법 어느 조항도 이 법에 따라 공표되거나 승인된 허가 또는 해당이행계획의 조건을 준수할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5) 신규 공급원 준수요건 불이행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은 어느 주가 신규 공급원의 건축이나 기존 공급원의 변경과 관련된 이 법의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지 않는다고 발견한 때, 환경청장은

- (A) 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의 주요 고정 공급원의 건축이나 변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거나,
- (B) (d)항에 따라 행정벌칙명령을 발하거나,
- (C) (b)항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느 것도 그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113(c)항에서 미국이 형사소송을 착수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b) 민사소송 집행. 환경청장은 적절한 대로 어느 자가 영향을 받은 공급원, 주요 배출시설이나 주요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인 경우, 다음의 경우에 각 위반사항에 대해 25,000/일일 이하의 민사상 범칙금을 산정, 회수하거나 영구 또는 임시 명령 민사소송을 착수할 수 있다.

- (1) 그 자가 해당이행계획이나 허가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때. 그러한 소송은 (A) 연방정부에서 집행추정기간 중, 혹은 (B) 그 자가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을 (a)(1)에 따라 환경청장의 통지일자 후 30일 지나 착수하여야 한다.
- (2) 이 자가 이 법에서 미국에 수수료 지급 의무의 경우, 이 장의 요건이나 금지사항, III, IV, V, 혹은 VI장의 303조, 이 법에서 공표되거나 발하거나 승인된 허가, 규칙 명령, 권리포기나 허가 등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때.
- (3) 그 자가 (a)(5)항의 조사결과 관련된 어느 지역에서 주요 고정

공급원을 건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이 항의 소송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발생 증거나 피고가 거주하거나 피고의 주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은 위반사항을 제한하고, 준수를 요청하고, 민사 벌금을 산정하고, 이 법에서(II장 제외) 미국에 지급할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타 해당 구제책을 제공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소송의 착수 통지는 해당 주의 대기오염관리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 법원은 소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적정 변호사비 및 전문가 증인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c) 형사 벌칙 - (1) 어느 자가 알면서 해당이행계획의 요건의 금지사항(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환경청장이 (a)(1)항에서 통지 완료한 후 30 일지나 혹은 연방정부 집행 추정기간 중), 이 조 (a)항 명령, 이 장 111(e)항의 요건이나 금지(신규 공급원 성과 기준), 이 장 112조, 이 장 114조(검사 등), 이 장 129조(고형폐기물 연소), 이 장 1659(a)(사전 건축 요건), 이 장 167조 명령(사전 건축 요건), III장 303조의 명령(비상명령), V장 502(a) 혹은 503(c)장(허가), IV장(산성침전물 관리)이나 VI장 요건이나 금지(성층권오존관리), 이 조나 장에서 공표되거나 승인된 규칙, 명령, 권리포기나 허가 요건, 이 법에서 미국에 수수료 지급의무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는 기소된 때, 미합중국법전 18장에 따라 벌금형이나 5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 혹은 둘 다에 처한다. 이 항에서 어느 자의 기소가 이 항의 자가 처음 기소된 후 위반에 대한 사안인 경우, 최대 벌칙은 벌금 및 징역형과 관련하여 중복 적용된다.
- (2) 어느 자가 알면서

- (A) 이 법에 따라 접수되거나 관리될 통지, 필요한 신청서, 기록, 보고, 계획서나 기타 문서를 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거나(환경청장이나 주에서 부과된 요건과 관련되는 여부), 허위자료진술, 표현이나 진술을 하거나 자료 정보를 누락하거나 알면서 변경, 은폐하거나,
- (B) 이 법에서 요구된 통지나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 (C) 이 법¹⁾에서 유지하거나 진행하는데 필요한 감시 장치 또는 방법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잘 못하거나, 조작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기소된 때 미합중국법전 18장에 따라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한다. 이 조항의 어느 자의 기소가 이 조항의 어느 자의 첫 기소 후 위반에 대한 사안인 경우, 최대 징벌은 벌금 및 징역과 관련하여 중복 적용된다.

(3) 알면서 이 장, III장, IV장, V장이나 VI장에서 미국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는 기소된 때 미합중국법전 18조에 따라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둘 다 벌에 처한다. 이 조항의 어느 자의 기소가 이 조항의 어느 자의 첫 기소 후 위반에 대한 사안인 경우, 최대 징벌은 벌금 및 징역과 관련하여 중복 적용된다.

(4) 어느 자가 이 법 112조에 열거된 위험대기오염물질이나 1986년 수퍼펀드개정안및재인가법 302(a)(2)항의 극히 위험한 물질을(이 법 112조에 없는) 대기 중에 부주의로 유출하고 다른 사람을 그 당시 사망이나 신체 증상의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경우 기소된 때 미합중국법전 18장의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양벌에 처한다. 이 조항의 어느 자의 기

1) 쉽표가 공법 101.549 (104 Stat. 2675), 7012조에 생략됨.

소사건이 이 조항의 어느 자의 최초 기소 후 위반에 대한 사안인 경우, 최대 징벌은 벌금 및 징역과 관련하여 중복 적용된다.

(5) (A) 어느 자가 알면서 이 법 112조에 열거된 위험대기오염물질이나 1986년 수퍼펀드개정안및재인가법 302(a)(2)항의 극히 위험한 물질을(이 법 112조에 없는) 대기 중에 유출하고 그 당시 다른 사람을 사망 혹은 신체 증상의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리게 함을 아는 경우 기소된 때 미합중국법전 18장의 벌금형이나 15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양벌에 처한다. 이 조항의 어느 자의 기소가 이 조항의 어느 자의 최초 기소 후 위반에 대한 사안인 경우, 최대 징벌은 벌금 및 징역과 관련하여 중복 적용된다. 위반을 한 자가 단체인 경우 이 조항에서 기소 시점에, 각 위반사항에 대해 100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조항의 어느 자의 기소사건이 이 조항 어느 자의 최초 기소 후 위반에 대한 사안인 경우, 최대 징벌은 벌금 및 징역과 관련하여 중복 적용된다. 환경청장이 V장에서 허가증이 발급된 공급원이나 배출기준을 정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이 기준이나 허가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은 (4)항의 위반사항을 구성하지 않는다.

(B) 개인인 피고가 위반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신체 증상의 시급한 위험에 처함을 아는 여부를 결정할 때,

(i) 피고는 실제로 인식하거나 실제로 믿고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ii) 피고가 아닌, 피고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 사실은 피고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실제로 알고 있음을 입증할 때 상황 증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가 관련 정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한

증거도 포함한다.

- (C) 기소된 행위가 위험에 처한 사람의 자유의사로 합의에 의한 것이며 위험 및 기소 행위가 다음 사항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기소에 대한 확정적 방어수단이다.
 - (i) 직업, 사업이나 전문직 혹은
 - (ii) 의료, 전문 승인 방법 및 그러한 자가 실시한 의학 혹은 과학 실험에서 동의 전에 관련 위험을 이미 알게 되었다. 피고는 증거의 우위에 의하여 이 조항의 확정적 방어수단을 정할 수 있다.
 - (D) 연방형사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어수단, 확정적 방어수단 및 기소 금지는 위 (A)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성 및 경험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보통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실 및 정당성의 개념은 이성 및 경험에 비추어 전개할 수 있다.
 - (E) ‘단체’란 용어는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구성되든간에 정부 이외의 법인으로, 회사, 협회, 제휴회사, 법인, 공동주식회사, 재단, 단체, 신탁회사, 조합, 학회나 기타 사람들로 구성된 결합단체 등을 말한다.
 - (F) ‘신체 증상’이란 용어는 사망, 무의식, 심한 물리적 통증, 신체부분, 장기나 정신 능력 기능의 만성적, 명백한 기형이나 만성적 손상이나 장애의 상당한 위험과 관련된 신체 상해를 말한다.
- (6) 이 항의 목적에 맞게, ‘사람(자)’이란 용어는 302(e)항에 언급된 단체 외에, 단체의 책임 있는 관리를 포함한다.

(d) 민사 징벌의 행정평가.(1)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자를 발견한 때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위반일 당 최고 25,00달러 민사행정벌금을 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A) 해당이행계획의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경우(이 명령은 연방정부 집행추정기간 중 혹은 (ii) 그러한 자가 요건이나 금지를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을 안 사실을 이 조의 (a)(1)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통지한 날짜 후 30일 지나 발하여야 한다.)

(B) I장, III장, V장, 혹은 VI장의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경우, 이 법(II장 제외)에서 미국에 수수료 지급 의무의 경우, 이 법에서 공표되거나, 발하거나 승인된 규칙, 명령, 권리포기, 허가나 계획의 요건이나 금지사항 등도 포함한다.

(C) 이 조의 (a)(5)항의 발견 내용과 관련된 지역에서 주요 고정 공급원을 건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한 경우.

이 조항의 환경청장의 권한은 총 벌금액이 20만 달러를 넘지 않고 최초 위반주장 일자가 행정소송 개시 전 12일이 못 되어 발생한 경우의 사안에 국한된다. 다만, 환경청장 및 법무부장관이 더 많은 벌금액이나 더 긴 위반기간과 관련된 사안이 행정벌칙조치에 적합하다고 공동 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 및 법무부장관의 그와 같은 결정은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2) (A)(1)항에서 산정한 행정 벌칙은 미합중국법전 5장 554조 및 556조에 따라 공표되는 공청회 기회를 제공 후 이루어진 명령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의 공청회 절차 및 발견에 합당한 규칙을

발하여야 한다. 이 명령을 받기 전에, 환경청장은 명령을 받을 환경청장의 행정벌칙 제안을 평가받을 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서면 통지 수령일 30일 이내,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기회를 그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환경청장은 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이 항에 부과될 수 있는 행정벌칙을 타협, 수정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3) 환경청장은 법무부장관 및 주정부와 협의 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관리직원이 민사 벌금을 위반일 당 5,000달러를 넘지 않게 산정하도록 현장 출두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서 현장 출두명령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 현장 출두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규정을 통해 환경청장이 정한 적당한 시한 내, 현장 출두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벌금 평가액을 납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공청회 요청이 규정에 명시된 시간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 출두명령에서 벌금 산정은 최종적이어야 한다. 이 공청회는 미합중국법전 5장 554조나 556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인용서에 요구된 민사 벌금 납부는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위반사항을 교정하기 위해 혹은 이 법의 다른 권한에 따라 법정 최고 벌금을 평가하기 위해 향후 미국이나 주의 집행 조치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다.

- (4) 위 (3)조항에서 민사 벌금이 산정되거나 위 (1)조항에 따라 행정벌칙명령을 받은 자는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지역 또는 그 자의 거주 지역이나 그 자의 주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혹은 미국컬럼비아지방법원에 행정벌칙명령이 (2)항에 따라 최종적인 날짜가 된 후, 혹은 (3)항의 공청회가 개최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짜 후 30일 이내 법원에 접수하여,

그리고동시에 환경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등기 우편으로 접수한 사본을 보냄으로써 그러한 산정금액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30일 이내 환경청장은 행정벌칙명령이나 평가서가 발효된 기록의 확인 사본이나 해당되는 경우 확인된 목록을 그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반 사항 발견사항을 지지할 기록상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전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벌금평가가 재량 남용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명령이나 평가서를 파기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명령이나 벌금 산정은 이 조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법원의 심사도 받지 않는다. 그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미국은 이 조에서 명령을 발하거나 산정된 민사 벌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민사 벌금평가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행정벌칙명령을 따르지 못할 경우

(A) 명령이나 평가가 최종 사안이 된 후 혹은

(B) (4)항에서 제기한 소송의 법원이 환경청장에 유리한 최종 결정에 들어간 후, 환경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을 발하거나 산정된 금액을(상황에 따라 최종 판결일이나 최종 명령이나 결정일로부터 1986년도 내국세법전의 6621(a)(2)항에 따라 정한 비율로 이자를 합함) 회수하거나 명령을 집행할 해당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이 소송에서 명령이나 평가의 타당성, 금액 및 적합성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 조에서 명령을 발하거나 산정된 민사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자는 벌금 및 이자 외에 미국의 집행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 절차로 미국에서 초래된 변호사비용 및 미납이 지연되는 기간 1/4분기당 미납 가산금도 포함한다. 이러한 미

납 과징금은 분기 시작 현재 그러한 자의 미결 벌금 및 미납 과징금의 총액의 10퍼센트이다.

(e) 벌금산정기준. (1) 이 조나 304(a)항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이나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사업의 규모, 벌금이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위반자의 총 준수 기록 및 신의 성실의 준수노력, 믿을 만한 증거로(적용 시험 방법을 제외한 증거 포함) 입증된 위반 기간, 같은 위반사항에 이전에 평가된 벌금을 위반자가 납부한 사실, 준수불이행의 경제적 이득 및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요소 외에)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반자가 소환이나 조치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위반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경우 307(a)항의 행정소환이나 이 법의 114조의 조치에 대해 준수불이행 벌금을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2) 벌금은 각 위반일수에 대해 산정할 수 있다. 이 조의 (b) 혹은 (d)(1)항에서 평가할 수 있거나 120조에 따라 산정을 할 수 있는 벌금 관련 위반일수를 결정하기 위해, 환경청장이나 대기 오염관리기관이 공급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반을 일으키는 행위나 사건이 통지일자 후에 계속되거나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반일수는 통지일자와 그 후 위반자가 준수사항을 계속 달성하였음을 확증할 때까지 각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위반을 하지 않았거나 위반사항이 특성상 계속되지 않는 동안 개입되는 일수가 있다는 증거의 우위사항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도는 제외한다.

(f) 보상금. 환경청장은 이 법 이 장, III, IV, V 혹은 VI 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혹은 행정민사벌금이나 형사기소로 이끈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1만 달러 이하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지급금은 연간총당금법에 규정된 대로 이용 가능한 총당금에 적용된다. 공식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정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나 지방 정부 또는 미합중국의 관리직원은 이 항의 지급 자격에서 제외된다.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이러한 보상 적격성 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g) 중재, 공공 참여. 미국이 당사자이고 이 법의 여하한 합의 명령이나 중재 합의가(민사나 형사상 벌칙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13조, 120조나 II장의 집행조치나 사법부의 공공참여정책을 적용하는 판결) 최종 사안이거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 최소 30일 전, 환경청장은 행위나 사안의 당사자나 연루자가 아닌 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합당할 기회를 연방기록부에 공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나 해당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와 같은 서면 의견서를 신속히 고려하여야 하며, 합의가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하거나, 부적당하거나 이 법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고려사항을 공개할 경우 예정 명령이나 합의에 대한 자신의 승낙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h) 운용자. 이 조 및 120조 규정목적에 맞게, ‘운용자’란 용어는 선임 관리직원이나 기업 관리자를 포함한다. 알고 있고 고의의 위반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용어는 장비 및 시설의 가동, 유지관리, 보수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 엔지니어 및 기술자, 그리고 선임관리직원이나 기업 관리자가 아니지만 자주 감독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알고 있고 고의의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c)(4)항의 목적에 맞게, ‘사람’이란 용어는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만 선임관리직원이나 기업 관리자가 아닌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알고 있고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c)항의 (1), (2), (3), 및 (5)조항의 목적에 맞게, ‘사람’이란 용어는 정상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인의 명령으로 행동하는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검사, 감시 및 출입

114조. (a)(i) 110 혹은 111(d)항의 이행계획, 111조 성과기준¹⁾, 112조 배출기준, 혹은 129조 고품폐기물연소규정이나 129조 규정(고형폐기물연소) 등을 개발, 조력하기 위해, (ii) 어느 자가 그와 같은 기준이나 그러한 계획의 요건을 위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iii) 이 법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신규 자동차나 신규 자동차엔진 제조업체 관련 II장의 규정은 제외),

(1) 환경청장은 배출 공급원을 소유하거나 가동하거나, 배출제어 장비나 처리 장비 제조자, 환경청장이 이 항에 제시한 목적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 이 법의 요건을 적용받는(II장 규정과 관련하여 206(c) 혹은 208조 규정을 따르는 제조업체 제외)자에게 1회, 정기적이거나 연속적인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기록을 입증하고 유지관리

(B) 보고서 작성

(C) 감시 장비를 설치, 이용하고 유지하며, 감사절차나 방법을 활용

(D) 배출가스 샘플채취(환경청장이 규정하는 방법과 같은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간격으로, 같은 기간 동안)

1) 공법104.549 (104 Stat. 2574, 2680) 302(c) and 702(a)(1)은 단어 ‘혹은’을 끼어 넣어 114(a)조를 수정하여 약간 다른 언어로 새 조 129조와 관련된다. 중복성이 있는 외에, 302(c)조에서 한 수정안은 ‘112조’ 이후 두 번째 쉼표를 추가한다.

- (E) 제어장비 변수, 생산변수나 배출가스 직접 감시가 비실용적인 때 기타 간접적인 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
 - (F) 114(a)(3)항에 따라 준수 인증사항을 제출
 - (G) 환경청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제공
- (2) 환경청장이나 그 위임 대리인은 증명서를 제시한 때
- (A) 이 조 (1)항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록이 있는 곳이나 그러한 자의 부지를 통해서 혹은, 부지에서, 부지로 출입할 권한을 갖는다.
 - (B) 합리적인 시간에 기록을 열람, 복사하고, (1)항에 필요한 감시 장비 및 방법을 검사하고, 그 자에게 (1)항의 샘플 채취를 하도록 요구한 배출 물질의 샘플 채취를 할 수 있다.
- (3) 환경청장은 주요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의 경우에, 감시기능을 높이고 준수 확인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의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준수 확인서는
- (A) 인증의 기초인 해당 요건의 확인, (B) 공급원의 준수 상황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 (C) 준수 상황, (D) 준수성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여부, (E) 환경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사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수 확인사항 및 감시 자료는 이 조 (c)항을 따른다.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환경청장의 조사 권한이나 달리 이 법을 이행할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이 조항을 이행하고 지침을 제공할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 (b) (1) 각 주는 주에서 이 조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주의 절차가 적합하다고 발견한 경우, 이 조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그 주에 위임할

수 있다.

(2) 이 항의 어느 것도 환경청장이 어느 주에서 이 조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c) (a)항에서 입수한 기록, 보고서나 정보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되는 경우 이 조에서 환경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기록, 보고서나 정보나 그 특정 부분(배출자료 제외)을 어느 자가 환경청장에게 만족하게끔 제시한 때, 그러한 자의 거래비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방법이나 과정을 누설할 경우는 제외하고, 환경청장이 미합중국법전 18장 1905조 목적에 따라 비밀인 기록, 보고서나 정보나 그 특정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그 기록, 보고서나 정보가 이 법의 소송절차에 관련된 경우 미국의 관리, 직원이나 위임대리인에게 누설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d) (1) 어느 주에서 113(d)조의 명령의 일부로 혹은 해당 이행계획의 일부로) 배출기준이나 제한이나 기타 요건으로 채택한 경우, 그러한 기준, 제한이나 기타 요건과 관련하여 (a)(2)조항에 따라 출입, 감시 혹은 감시를 수행하기 전에, 환경청장(혹은 대리인)은 주에게 합당한 사전 조치 통지를 주 대기오염관리기관에 제공하여, 그 조치의 목적을 나타내어야 한다. 예정조치에 대해 이 조항의 통지서를 받는 어떠한 주의 기관도 자산이 예정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통지서에 고지할 정보가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주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거라고 환경청장이 생각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의 기관에 보내는 통지서는 기관이 더 이상 이 조항의 통지서에 들은 정보를 사용할거라고 판단한 때와 같은 시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 항의 어느 것도 110(c)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하거나 해당이행계획의

1) 34쪽의 주석 2 참조.

일부가 아닌 요건이나, 기준, 제한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취한 조치를 주 기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2) (1)항의 어느 것도 이 조항의 요건을 환경청장이 준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환경청장이 제기한 집행조치에서 방어수단이 되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입수한 정보나 자료를 이 조치에서 증거로 허용할 수 없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414]

해외 대기오염

- 115조. (a) 환경청장이 보고서, 조사나 연구서를 정히 구성된 국제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때, 미국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외국에서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에 처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 때, 혹은 국무장관이 그러한 성격의 오염과 관련하여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한 때, 환경청장은 배출 물질의 공급원에 대한 공식 통지서를 주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b) 환경청장의 통지는 (a)항에서 언급된 위험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해당이행계획과 관련하여 계획 수정안을 요구하는 110(a)(2)(H)(ii)항의 조사결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로 이러한 영향을 받는 외국은 해당이행계획의 해당 부분의 수정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아야 한다.
- (c) 이 조는 이 조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예방이나 통제와 관련하여 그 국가에 부여된 기본적으로 같은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였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한 외국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
- (d)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시행한 감축회의 후 발

효한 권고사항은 이 법 109조에서 국가대기질기준이 수립되지 않는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환경청장이 회의 당사자인 기관과 협의 후 무용성이란 이유로 그와 같은 권고사항을 취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2 U.S.C. 7415]

주 권한의 보유

116조. 119 (c), (e), 및 (f)항(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대로), 209, 211(c)(4) 및 233(특정 주의 이동 공급원 규정의 선점)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어느 것도 대기오염통제나 감축과 관련된 요건(1)이나 대기오염물질배출과 관련된 기준이나 제한(1)을 채택하거나 집행할 주나 행정당국의 권리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배출기준이나 제한이 해당이행계획에서 또는 112조나 112조에서 유효한 경우에, 주나 행정당국이 그 계획이나 조의 기준 또는 제한보다 덜 엄격한 배출기준이나 제한을 채택하지도 집행할 수도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2 U.S.C. 7416]

대통령의 대기질 자문국 및 자문위원회

117조. (a) 대기질 기준, 권장 관리방법, 기준, 연구개발 등 이 법의 목적의 전개 및 이행에 있어 원조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대기질 개선 산업 부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대기오염관리 및 감축을 위한 경제적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청장은 때때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보건, 복지, 경제나 기술 관점에서 대기질 관련하여 정통한 자로 구성된다.

(b)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기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미국의 관리직

원이 아니고 회의나 학회에 참석하거나 환경청장의 요청으로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환경청장이 정한 비율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집이나 정규사업장에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 간헐적으로 정부업무를 하는 자는 미합중국법전 5장 5703조에서 허가한대로 여행시간 등 일당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게, 생계비 대신 일당을 포함하여 여행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c) (1) 108(a)(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기준 공표,
- (2) 111(b)(1)(A) 혹은 112(b)(1)(A)¹⁾항에 따라 목록을 간행,
- (3) 111조나 112조에 따라 기준을 발간, 혹은
- (4) 202(a)항에 따라 규정을 간행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제공시간 내 최대 실행가능한 정도로 해당 자문위원회, 독립전문가 및 연방부서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2 U.S.C. 7417]

연방시설의 오염원 관리

118조. (a) 일반 준수사항. 연방정부의 부서기관 및 행정기관,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대행기관이 (1)특정 자산이나 시설에 대해 관할권이 있거나 (2) 대기오염물질 방출 결과를 낳거나 낳을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며, 각 관리, 대리인이나 직원은 비정부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도로 대기오염관리 및 감측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요건, 주정부 요건, 주 사이 요건 및 지방의 요건, 행정권한 및 과정 및 제제 등을 받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앞 문장은 (A) 명목상이든 절차상이든 특정 요건(기록유지나 기록요건 등, 허가 및 기타 요건관련 요건 등 무엇이든), (B) 대기오염규제프로그램

1) 1원본이 그러함. 112(b)(1)이어야 함. 이 항은 (A)항목 없음.

비용의 지출을 위해 주나 지방단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할 요건, (C) 연방, 주나 지방 행정권한 행사, 그리고 (D) 연방, 주나 지방 법원에서나 여타 방식으로 집행하든 간에 과정 및 제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항은 특정 법이나 법규에 따라 기관, 관리, 대리인이나 직원의 의무면제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어떠한 관리, 대리인이나 직원도 달리 의무가 없는 민사 징벌에 대해 개인적 책임이 없다.

- (b) 대통령은 부서기관이나 집행기관의 대행단체의 배출공급원이 그러한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면제할 수 있는데, 면제하는 게 미국에 커다란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단, 111조에서 어떠한 면제도 제공할 수 없거나 112조의 면제가 112(i)(4)항에 따라서만 부여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이 예산처리의 일환으로 그러한 충당금을 특별 요청하고, 의회가 요청 충당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면제는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면제든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하지만, 추가 면제는 대통령이 새 결정을 하는 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다. 특정 배출 공급원에 대한 그와 같은 면제 사항 외에, 대통령은 면제를 하는 것이 미국의 막대한 이득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미 육군(해안경비대 포함)이나 독특한 군사성격을 띠는 주의 국가경비대에서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종류나 부문의 자산 무기류, 장비, 항공기, 차량 등의 경우 이 조의 요건 준수를 면제하는 규정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3년 간격으로 이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고려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 연도 중 부여된 이 조의 요건에 대한 면제사항을 매년 1월 의회에 각 면제 부여 근거와 함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c) 정부차량. 연방정부의 집행, 입법, 사법기관의 대행기관, 각 부서기관은 D파트의 3 혹은 D파트의 2 규정에서 정한 합법적인 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군사전략차량으로 간주된 차량은 제외한다.
- (d) 연방시설에서 운행되는 차량. 자산이나 시설에 대한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단체의 부서기관 및 대행기관은 그러한 자산이나 시설이 소재한 주의 경우 부지나 시설에서 자동차를 (차량등록여부 관계없이) 운행하는 직원이 D파트 3이나 D파트의 2 규정에서 정한 차량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의 해당요건을 준수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1) 차량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에서 유효한 준수증명서를 차량소유자가 제시
 - (2) 차량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의 관할 지리 지역 내 차량등록 증거를 차량소유자가 제시(집행 수단이 차량등록의 거부를 통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
 - (3) 차량검사유지프로그램 관리자가 승인한 기타 방법 [42 U.S.C. 7418]

비철 원광제련소 명령

- 119조. (a)(1) 비철제련소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신청하는 때, (b)항의 1차 비철제련명령을
- (A) 환경청장이 주에 30일 통지 후 또는
 - (B) 공급원이 소재하는 주에서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에서 발한 어떠한 명령이 이 법의 요건에 따라 발했음을 환경청장이 결정할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의 비철제련소 명령 발급 통지서를 주에서 환경청장에게 제

출한 후 90일 이내, 환경청장은 이 법 요건에 따라 주에서 그러한 명령이 발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그 명령이 해당 요건에 따라 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비철제련소를 위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어기술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A) 비철제련소에 이 조에 따라 발한 명령은 ‘비철제련소 명령’으로 칭한다. 어떤 비철제련소도 113(d)¹⁾의 집행명령 및 이 조의 비철제련소 명령을 받을 수 없다.

(B) 이 조에서 실시한 청문회 전, 이 조의 2차 명령에 대한 비철원광제련소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환경청장(혹은 상황에 따라 주)에게 신청서의 기초에 대한 근거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지지 서류 및 정보를 포함) 예정명령의 근거 설명은 주나 환경청장이 자신의 주도로 행동하는 경우에 환경청장이나 주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설명(문서 및 정보 등)은 공청회 전 30일 기간 동안 대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 일부로 간주하여야 한다. 어떠한 비철제련소 명령도 신청인이 명령 발급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지 않는다면(혹은 환경청장이나 주가 자신의 주도로 행동하는 때 이들 조건의 충족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제공할 수 없다.

(C) 1차 비철제련소 명령 발급에 관한 결정에는 조사 및 조사 근거의 간결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이 법의 110, 304, 및 307조¹⁾의 목적에 맞게, 주에서 발하고 이 항에 따라 유효한 명령은 해당이행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1) 34쪽의 주석 2 참조.

1) 원본이 그러함. ‘조’이어야 함.

(b) 이 조의 1차 비철제련소명령은 다음의 경우 1차 비철제련소에 발할 수 있다.

- (1) 그 제련소가 이 조의 입법일자에 존재하고 있음
- (2) 발한 명령과 관련된 해당이행계획의 요건이 황산화물의 경우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 및 부수 기준의 달성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하고 그 자체로 충분한 황산화물의 배출한도나 기준인 경우.
- (3) 그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련소에 적용 가능한 어떠한 배출한도수단도 적절히 증명되지 못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준수 일자까지 그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환경청장이 준수비용, 대기 외 질보전 및 환경영향 및 에너지고려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대로)

(c) (1) 이 조의 제련소에 발한 2차 명령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연된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진행 증가분을 포함하는 준수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진행 증가분은 (d)항의 준수 요구에 한하며, 2차 명령의 경우 환경청장이 그 수단이 적절히 증명되어 (b)(3)항의 의미 내 합당하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배출한도 수단을 구입, 설치 및 운용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 (2) 이 조에서 1차 비철제련소명령을 2번 이상 1차 비철제련소에 발할 수 없다. 제련소에 발한 첫 명령은 1983년 발한 명령과 관련하여 그 결과 요건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2차 명령은 1988/1/1 지나 그 요건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d) (1)(A) 이 조에서 발한 명령의 1차 비철제련소는 그 기간 중 국가 대기질 주요기준 및 부수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필요한 때 명령이 유효한 기간 중에 중간 조치를 이용하도록 요구되며, 모든 변화, 연장, 권리포기, 집행명령, 준수 지연 명령 및 이 법에서 이전에 발한 1차 비철제련소명령과 함께 명령이 대기의 질에 미치는 종합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중간 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명령이 적용되는 공급원이 보고요건을 준수하고,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요건

(ii) 사람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한 조치

(C) (2)항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조치는 연속배출감축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제련소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동의한 때 다음 목적을 위해 그와 같은 중간조치활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i) 명령과 관련된 대기질의 국가기준을 달성, 유지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이 중간조치의 신뢰성 및 집행 가능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건이 제련소에 적용되는 때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ii) 적절한 배출통제기술의 연구개발에 적정한 자원을 약속하기 위해

(2) 연속배출감축기술 활용에 대한 (1)항의 요건은 특정 제련소과 관련하여 공지 및 공청회 후, 그리고 소유자나 운용자가 제련소의 영구 혹은 지연임시중단의 필요조건으로 이러한 요건에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제시한 때, 주나 환경청장이 권리포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포기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그러한 통보를 받고 90일 이내 미합중국법전 5장 554조에 따

라 공개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에서 환경청장은 관련 제련소에게 작업 중단주장 및 그 근거내용이나 주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공청회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은 요건의 효과에 대하여, 그리고 작업 중단주장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권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권리포기를 부여하는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나 환경청장이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3) (2)항의 권리포기 목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환경청장은 자신의 동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321조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4) 이 조의 입법일자에 연속배출감축기술 및 보완 관리 대책을 이용하고 최초 1차 비철제련소명령을 받는 제련소의 경우, 명령 조건으로 어떠한 연속배출감축기술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환경청장이 어느 때라도 통지 및 공청회 후, 그러한 연속배출감축기술이 1차 비철제련소 산업에 합당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적절히 증명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 이 조의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 어느 때라도, 환경청장은 기술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의 명령은 환경청장이 공지 및 공청회 후 명령의 근거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문서에 결정한 경우 종결되어야 한다. 명령을 받은 제련소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이 명령의 신속한 종결로 부당한 곤란을 초래한다고 입증하는 경우, 종결은 부당한 곤란 결과를 낳지 않는 가장 이른 실행 가능한 날짜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c)항에서 요구한 날짜보다 늦지 않게 발효되어야 한다.

(f) 환경청장의 명령을 받은 제련소가 (c)혹은 (d)항의 요건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1) 113조의 요건을 집행하고,
- (2)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명령이 부여된 것과 관련하여 명령을 철회하고 요건 준수를 집행하고,
- (3) 준수불이행 통지를 하고 120조의 조치를 착수하고
- (4) 적절한 이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U.S.C. 7419]

준수불이행 벌칙

120조. (a)(1)(A) 이 조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은 (2)(A)에 언급된 자에 대해 준수불이행 벌금의 산정 및 회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B)(i) 각 주는 주에서 이 조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계획이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환경청장이 발견한 경우, 이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주에 위임할 수 있다.

(ii) (i)항의 주 위임사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b)(2)(B)의 상황에 따라 그 주에서 이 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A) (B) 혹은 (C)항의 경우를 제공하고, 주나 환경청장은 다음의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한 준수불이행 벌금을 산정, 회수하여야 한다.

(i) 배출한도나 배출기준이나 해당 이행계획의 준수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주요 고정 공급원(119조의 1차 비철제련소 명령을 받는 1차 비철제련소를 제외) 또는

(ii) 배출한도, 배출기준, 성과기준이나 기타 이 법 111, 167, 303, 혹은 1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고정 공급원

(iii) 이 법 IV장, V장이나 VI장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고정공급원

(iv) (i), (ii), 혹은 (iii)조항의 공급원((B)항의 연장, 명령이나 중단에 대해, 혹은 연방정부나 주의 허가명령이 유효한 경우), 연장, 명령, 중단이나 허가명령에 따라 준수일정이나 중간배출관리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119조의 1차 비철제련소 명령요건을 받은 1차 비철제련소.

(d) (2)항의 목적에 맞게, 위 (iii)항의 공급원과 관련된 산정 금액의 경우, (d)(2)항에 언급된 비용은 그 준수 일정에서 남은 단계나 중간배출관리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제적 가치이어야 한다.

(B) (A) (i) 및 (ii)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공급원과 관련된 요건에 따라 준수불이행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는 (b)(5)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나 운영자가 다음의 이유로만 그와 같은 요건을 공급원이 준수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때이다.

(i) 영구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화학제품이나 천연가스 연소에서 119조나 113(d)(5)1의 명령에 따라 석탄 연소로 공급원을 전환하는 경우(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함)

(ii) 119(c)(1)항 두 번째 문장의 연장허가를 받은 석탄연소원의 경우(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대로), 1974년도 에너지공급환경조정법 2(a)항 및 (b)항 규정에 따라, 혹은 이 규정을 수정 또는 대체하는 법규에 따른 명령을 이유로 석유화학제품이나 천연가스 또는 둘다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iii) 113(d)(4)항의 집행명령의 제제를 받는 혁신 기술 이

용1

(iv) 그와 같은 요건을 준수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해 공급원이 113(d)¹⁾의 명령(혹은 이 조 입법일자 전 발효된 113조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의 통상 관리에 있거나 관리되고, 관리 중에 있는 기업 또는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전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요건을 준수할 수 없었고, 이 법 요건의(해당 이행계획 포함) 지연이나 위반을 허용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경우

(v) 110(f) 혹은 (g)항에서 임시비상중단이 허용되는 이유 조건.

이 조항의 면제사항은 공급원이 연장, 명령이나 중단에 따라 준수일정이나(진행 증가분을 포함) 중간배출관리요건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C) 환경청장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준수불이행 사례가 특성 및 기간이 최소 허용됨을 발견한 경우 특정 준수불이행 경우와 관련하여 이 조의 요건에서 공급원을 면제할 수 있다.

(b) (a)항의 규정은

(1) 주가 (a)(1)(B)(i)항에서 유효한 위임권이 있는 경우 주에서 그 벌금을 산정, 회수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환경청장이 수행하는 벌금산정 및 회수규정이다.

(A) 주가 (a)(1)(B)(i),항에서 유효한 위임권한이 없거나

(B) 주가 유효한 위임권한이 있지만 특정인이나 공급원과 관

1) 34쪽 주석 2 참조.

런하여 이 조의 요건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

- (3) 주에게, 혹은 주가 하지 못할 경우 환경청장에게 (a)(2)(A)항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공급원과 관련하여 이 항에 언급된 자에게 이 조의 준수불이행 통지를 간략하게, 되도록 구체적으로 1979/7/1이내 혹은 준수불이행 발견 후 30일후 더 늦은 기한에 전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4) (3)조항의 통지를 받은 자에게 다음을 요구하여야 한다.
 - (A) 각 공급원이 납부할 벌금액((d)(2)항에 따라 결정)및 납부 일정((d)(3)항에 따라 결정)을 (B)항목의 청구서 거절 후 또는 통지발급일자 후 45일 이내 산출하여 주 및 환경청장에게 독자적 입증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산출 및 예정 일정을 제출할 것,
 - (B) 통지 발급 후 45일 이내, 특정 공급원에 대해 (a)(2)(B)항의 면제 권리를 주장하거나 준수불이행 통지서에 대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것
- (5) 환경청장에게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미합중국법전 5장 5부의 II의 의미 내) 청원서에 대한 결정을(사실 발견 및 법 완결을 포함) 90일 기간 이내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가 공개 청문회와 상당히 유사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90일 기간 내 이 청원서에 (사실 발견 및 종결을 포함)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
- (6) (A) 환경청장에게 자신의 주도로 (5)조항에 따른 주의 결정을 심사하고, 이 조의 요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를 부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B) 환경청장에게 이 조항의 청원서 수령 후 50일 이내 통지, 공청회를 하고 (5)조항의 따른 주의 결정이 이 조의 요건을 따르지 않음을 신청인이 증명하도록 요

청구하여야 한다.

- (7) 통지를 받는 준수불이행 공급원에 대해 (3)항에서 준수불이행 통지를 받는 자가 (d)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 공급원에 대해 (4)(B)항의 청원을 승인하는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8) 환경청장이 공개 청문회에 대한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한 후 벌금이나 일정이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한 경우, 주나 환경청장이 (4)항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제안한 납부일정이나 산출된 벌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때때로 재조정)
- (9) (d)(4).항에 따라 공급원이 준수하게 된 후 180일 이내 최종 벌금액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든, 주가 이 조의 준수불이행 벌금을 정한 경우, 주는 환경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주에서 정한 준수불이행 벌금은 환경청장이 이 조의 주 벌금액 산정 통지서 수령일자 후 90일 이내, 자신이 정한 지침을 따르도록 필요한 것보다 적게 벌금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준수불이행 벌금 대안을 즉각 정하여야 한다.

(c) (b)(3)항에 따라 통지서가 전달된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 (1) (b)(4)(B)항의 청원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 (2) (b)(4)(B)항에 따라 기각된 청원서를 제출하고

벌금 산정서, 납부일정 및 독자적 입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혹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청장)는 공급원과 관련 벌금 산정 금액이나 납부일정 결정을 돕도록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d) (1) 이 조에서 환경청장이 산정한 벌금액은 미국재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주가 산정한 벌금액은 그 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이 조에서 공급원과 관련하여 산정, 회수하는 벌금액은 다음과 같다.
- (A) (a)항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금액, 1979/7/1일 지나 준수 지연이 공급원의 소유자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상 감가상각기간에 걸쳐 준수 및 채무 용역의 자본비용의 분기별 상당액, 준수불이행의 결과로 이전의 운용 및 유지보수비용 및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위해 지연에 대한 추가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여 그 경제적 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에서
- (B) 공급원이 요건에 부합하게 계속 준수하게 할 목적으로 그 분기 중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A)항의 벌금 산출에 고려되지 않았던 지출 비용의 정도로 지출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 어느 분기 중 (B)항에서 지출한 비용이 (A)항의 비용에서 그 분기에 대해 공제하지 않는 정도로, 그 지출 비는 이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그 납부액은 실제 건축 비용에 기안할 있는 금액에서 분기별 납부액을 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 (3) (A) 이 조에서 요구된 산정 벌금은 준수불이행으로 간주된 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최초 납부 후 분기별 납부액((2)(B)항의 공제나 조정과 무관하게 결정)은 다음과 같다.
- (B) 최초 납부는 공급원과 관련하여 (b)(3)항의 준수불이행 통

지서 발급일자 후 6개월 날짜에, 혹은 1980년1월1일 중 더 늦은 날짜로 정하여야 한다. 이 최초 납부는 다음 분기의 분기별 분할 금액에 공급원의 준수불이행으로 간주된 기간 이내 이전 기간의 채무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C) 이 조의 목적에 맞게, ‘준수불이행 간주기간’이란 용어는
 - (i) (b)(3)항의 준수불이행 통지서가 전달된 공급원의 경우 이 조의 입법일자 후 2년, 혹은 입법일자 후 2년의 날짜 전, 또는
 - (ii) 1979/1/1일 이후 통지서가 발급된 공급원의 경우 (b)(3)항의 준수불이행 통지서발급일자에 시작하고, 공급원이 이 요건의 준수 단계에 들어가는 (혹은 납부일정을 정하기 위해, 요건준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끝나는 기간이다.

(4) 이 조에서 벌금납부와 관련 공급원이 준수하고 있거나 계속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할 때, 주(혹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청장)는 준수 달성 및 유지를 위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지출한 실제 비용을 심사하고, 공급원이 준수단계에 들어간 후 180일 이내

- (A) 과다 납부한 경우 적정 최고이율로(재무 장관이 결정한) 이자를 합한 상환금을 제공하거나(상황에 따라서 주나 재무장관이 납부할),
- (B) 과소 납부한 경우 적정 최고이율로 이자를 합한 가산금을 산정, 회수하여야 한다.

(5) 이 조의 공급원과 관련 벌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자는 납부불이행이 지속되는 기간 각 분기별 미납 벌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납 벌금액은 분기 시작

현재 미납 공급원과 관련하여 미납자의 벌금총액의 90퍼센트 상당액 및 미납 벌금액이다.

- (e) (b)항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환경청장의 이의 제기 등 이 조의 어느 조치든 이 법 307조 벌금액의 사법 심사를 위해 최종 조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 (f) 이 조의 명령, 납부, 제재나 기타 요건은 이 법에서 정한 여타 허가, 명령, 납부, 제재나 요건에 추가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 법 혹은 주법이나 지방법 규정에 따라 제기한 민사상, 형사상 집행 절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g)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이 법에 따라 환경청장이 승인하거나 공표한 배출기준 또는 기타 여건의 경우, 승인이나 공표 전 유효하고 공급원의 배출한도 또는 요건보다 더 엄격한 경우,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승인 또는 공표된 배출기준이나 요건이 없는 경우,
이 조의 준수불이행 벌금 부과일자는 1979/7/1이거나 공급원이 배출한도 또는 요건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배출기준이나 요건의 승인 또는 공표 후 3년 이내이어야 한다.

[42 U.S.C. 7420]

자 문

121조. 해당이행계획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이 법의 요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 (1) 교통통제수단, 대기질 관리계획요건이나 직접 대기오염원의 건축 전 심사 혹은

(2) 관련 조치.

(A) D파트에서 (비 달성 요건과 관련), 혹은

(B) C파트에서, 그리고 113(d)항¹⁾ 요건(특정 집행명령)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는 일반목적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특별 관리로 구성된 지정단체, 그리고 주의 계획이 적용되는 연방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연방 토지 관리자 등과의 만족스런 협의과정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이 넘게 채택한 요건에 대하여 효과적이어야 하며,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에서 요구되고 공표된 최초 규정을(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후 유효한) 필요한 대로 갱신하여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목적 지방정부부서, 지역단체나 정부 위원회만이 이 항에서 언급된 계획의 일부를 승인하는 환경청장의 조치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의 요건 위반사항에 기초하여 이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2 U.S.C. 7421]

특정 규제 외 오염물질 목록

122조. (a) 이 조 입법일자 후 1년 이내(방사성 오염물질은 2년), 그리고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은 모든 이용 가능한 관견정보를 검토하고, 방사성 오염물질(공급원 원료, 특수 핵물질 및 부산물), 카드뮴, 비소 및 다환식 유기물질의 대기 중 방출 여부가 공중보건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1) 34쪽 주석 2 참조.

그와 같은 물질과 관련하여 확정 결정을 한 경우, 동시에 이 결정과 함께 108(a)(1) 혹은 112(b)(1)(A)항에서 공표된 목록에(자신의 판단으로 심각한 불가역성, 불능가역성 질병의 증가나 치사율 증가를 가져올 결과 타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물질의 경우) 이 물질을 포함하거나, 이러한 물질을 상당량 배출하는 고정 공급원 부문을 111(b)(1)(A)항에서 공표된 목록에 포함하거나 종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a)항의 어느 것도 특정 공급원과 관련하여 (a)항에 언급된 목록을 환경청장이 수정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c) (1) (a)항에 언급된 공급원 재료, 특수해물질이나 부산물(혹은 구성분이나 유도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핵규제위원회와 의논을 하여야 한다.

(2) 그와 같은 물질(혹은 구성분이나 유도 물질) 목록 작성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 및 핵규제위원회는 위원회 관할의 시설이나 공급원과 관련하여 부서 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약정은 공급원이나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 배출과 관련된 이 법과 일치하여 이 법의 배출한도, 성과기준, 그리고 기타 요건 및 권한(명목상, 절차상) 등의 수립,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업무 중복을 최소로 하고 최대 실행 가능한 정도로 행정자원을 보존하여야 한다.

(3) 환경청장이, 이 법에 따라, 어느 주에서(혹은 환경청장), 이 법의 해당이행계획에 따라, 공표한 기준이나 배출한도의 경우에, 핵규제위원회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관할권내 공급원이나 시설에 기준이나 제한을 적용하여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러한 기준이나 제안은 이러

한 사실이 발견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 대통령이 달리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설이나 공급원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422]

굴뚝의 높이

123조. (a) 이 장에서 해당이행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감독에 필요한 배출한도의 정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어느 공급원의 굴뚝 높이가 우수공학관행을 벗어나는 정도(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결정) 혹은

(2) 여타 확산방법

이전 문장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존재하는 굴뚝의 높이나 그 일자 전 이행한 확산기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18조 규정을 적용 받고, 1957/7/1일 이전 가동을 시작한 석탄연소증기전력생성설비에 대한 배출기준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974/2/8일 전 인가된 건축계약과 관련된 굴뚝의 전체 높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b) 이 조의 목적을 위해, ‘확산기술’이란 용어는 대기 조건과 함께 변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간헐적 또는 보완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c) 이 조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이 조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 목적에 따라, 우수공학관행은 굴뚝 높이와 관련하여 공급원 자체, 근처 구조물이나 인근 지형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세류, 소용돌이 및 추적의 결과로 공급원 인근에서 굴뚝의 배출 가스가 대기오염물질 과다농축 결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높이

를 말한다. 이 높이는 공급원의 높이의 2 1/2를 넘지 않으며, 다만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이전 문장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높이가 클 필요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떠한 경우든 환경청장은 공급원의 굴뚝 높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거나 굴뚝 높이의 증가를 금지할 수 없다.

[42 U.S.C. 7423]

주 정부 계획의 적합성 보장

124조. (a) 실행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이 조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주는 주요 연료 연소공급원 관련 이행계획의 규정을 심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계획 요건의 준수가 석유화학제품이나 천연가스의 주요 연료 연소 고정공급원의 사용에 좌우되는 정도.
- (2) 계획이 그러한 연료 사용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믿을 수 있고 장기적인 토대로 주에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부적합할 것으로 타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
- (3) 계획의 준수가 지방이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석탄이나 그 유도물질의 사용에 좌우되는 정도. 각 주는 이 조항에 따라 심사 및 결정을 완료하는 때에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 이 조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a)항에 따라 주의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주에 그 계획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계획이 신뢰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그 주에서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하는데 적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정을 할 경우 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여타 법 권한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이나

천연가스 혹은 둘 다 실제사용의 금지 또는 금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어느 주에 대해서 이 항의 계획 수정을 요구하기 전, 환경청장은 (1)항에서 그 주에서 실시한 검토 보고서를 고려하여, 필요한 수정과 관련된 주지사와 논의를 하여야 한다.[42 U.S.C. 7424]

경제혼란 및 실업방지대책

125조. (a)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 (1) 이 항에서 언급한 주요 연료 연소 고정공급원이(혹은 등급이나 부문) 소재하는 주지사나,
- (2) 환경청장 또는
- (3) 대통령(혹은 수입인)은 (b)항의 조치가 주의 이행계획의 요건을 따르기 위해 다음 공급원에서 사용하여 비릇될 지방이나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혼란이나 실업을 방지하거나 예방하는데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 (A) 지역, 지방에서 이용 가능한 석탄이외의 석탄 혹은 석탄 유도물질,
 - (B) 석유화학제품,
 - (C) 천연가스 혹은
 - (D) (A)~ (C)항에서 언급된 연료 모두

(b) (a)항에 따라서 결정한 때.

- (1) 주지사, 대통령이나 수입인의 서면 동의로,
- (2) 주지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대통령의 수입인, 혹은
- (3) 대통령은 규칙에 의해, 그와 같은 주요 연료 연소 고정 공급원(혹은 종류나 부문)이 이행계획요건을 따르기 위해 지역이나

지방에서 이용 가능한 석탄이나 석탄 유도물질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지사, 대통령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수입인은 이러한 조치의 소비자에 전가되는 최종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c) (b)(1)항의 경우에 지사나 (b)(2) 혹은 (3)항 조치 경우에 환경청장은 규칙이나 명령에 의해 이 조치가 적용되는 각 공급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석탄이나 석탄 유도물질을 이용하면서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고 환경청장이나 주가 판단한 배출한도수단을 추가로 얻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석탄이나 석탄 유도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환경청장이나 주가 판단하는 배출제한수단을 추가로 얻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3) 그 일정을 따르고(진행 증가분 포함), 시간표 및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요건. 이 항의 요건은 (b)항의 조치와 함께 조건으로 정하여야 한다.

(d) 이 조는 다음의 기존 혹은 신규 주요 연료연소 고정 공급원에만 적용한다.

(1)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설계생산용량이 250,000,000 Btu/시(혹은 그 상당량)인 경우

(2) 오일이나 천연가스 혹은 둘 다 여타 법규 관할로 연소 금지되거나 해당이행계획의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e) 선의에서 주나 환경청장이 규칙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주요 연료 연소 고정 공급원이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는 이 법 111(a) (2) 및 (4)항의 목적을 위해 변경사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f) 113조 및 120조의 목적을 위해, (b)항의 금지 조항 및 (c)항의 해당 규칙이나 명령은 113조 요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10(c)항에서 공표된 계획(혹은 그 일부)의 목적을 위해, (b)항의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c)항의 규칙이나 명령은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 113조 목적을 위해 (b)항의 금지사항은 어느 공급원이나 적용할 수 있으며, (c)항의 해당 규칙이나 명령은 공급원 주체가 소재한 주의 해당 이행계획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

(g) 대통령은 이 조의 자신의 권한을 사례별로나, 기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지정하여 미국의 관리,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h) ‘지역이나 지방에서 이용 가능한 석탄이나 석탄 유도물질’이란 용어는 주나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주요 연료연소 고정식 공급원이 소재한 지방이나 지역(환경청장이 결정한)에 존재하거나 생산, 채굴되거나 될 수 있는 석탄이나 석탄 유도물질을 말한다.

[42 U.S.C. 7425]

주 정부간 오염 감축

126조. (a) 각 해당 이행계획은

(1) 주요 예정 신규(혹은 변경) 공급원이,

(A) C파트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를 조건으로,

(B) 공급원이 소재할 (변경할) 예정인 주 밖의 대기질 관리지역에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 오염수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인근 주의 대기오염수준이 공급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에 서면 통지서를 건축착수 허가를 받은 날짜 전 최소 60일 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2) 신규 혹은 변경 공급원과 관련 (1)항에 언급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요 고정식 공급원을 확인해서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개월 이내 공급원의 존재를 근처 주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b) 주나 행정당국은 환경청장에게 주요 공급원이나 고정 공급원 그룹이 이 조 110(a)(2)(D)(ii)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한 사실을 조사하라고 청원을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청원서 수령일자 후 60일 이내, 그리고 공청회 후, 환경청장은 조사를 하거나 청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c) 공급원이 소재하는(혹은 소재할 예정) 주에서 부여할 수 있는 허가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조의 위반사항이며¹⁾ 그 주의 해당이행계획이다.

(1) (b)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주요 예정 신규 (혹은 변경) 공급원이 이 조¹⁾ 및 110(a)(2)(D)(ii)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가동되려면, 혹은

(2) 기존 주요 고정 공급원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3개월 지나 가동되려면,

환경청장은 (2)항에 언급된 공급원의 지속적인 가동을 3개월 만료 경과 후까지 허가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공급원이 110(a)(2)(D)(ii)항의 요건을 따를 수 있도록 환경청장이 규정할

1) 공법 101.549 (104 Stat. 2470) 109(a)(2)(A)항은 첫 문장에서 (c)을 ‘이 조’를 삽입하고 ‘의 위반’ 뒤에 더 이상 명시 없이 수정하였다. ‘의 위반’이란 단어는 두 곳에서 나타난다. 개정안은 아마도 ‘의 위반’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에서만 새 단어를 넣을 의도였던 것 같다.

1) 이전 페이지 주석 1참조.

수 있는 배출한도 및 준수 일정(진행 증분 포함)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조사일자 후 3년 이내 준수할 경우이다. 이전 문장의 어느 것도 환경청장이 지속적인 가동을 허가하였던 기간 만료 후 113(d)항²⁾의 집행명령 자격을 공급원에게서 미리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426]

일반 공고³⁾

- 127조. (a) 각 주의 계획은⁴⁾ 특정 년도 중 대중에게 정규 사례나 지역별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이 전년도 기간 중 초과되거나 초과된 경우 통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조치를 포함하여 오염관련 건강 위험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 기준이 초과되지 않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공공의식 및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대중이 행정활동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대도시지역에 주 경계 고속도로 접근지점에 경고 사인을 붙이고, TV, 라디오나 언론공지나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b) 환경청장은 주가 (a)항의 요건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조성할 권한이 부여된다.[42 U.S.C. 7427]

주 정부 사무국

128조. (a)⁵⁾ 이 조 입법일자 후 1년 이내⁵⁾, 각 해당이행계획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허가나 집행명령을 승인하는 부서나 단체의 과반수는

2) 34쪽 주석²⁾ 참조

3) 공법 95.95 127를 추가하였지만 조의 표제는 누락함,

4) 원본이 그러함, '달력년도'이어야 함.

5) 128조는 (a)항으로 제정되었지만, (b)항은 없음.

최소한 공공이익을 대변하고 이 법의 허가나 집행명령을 받는 사람에게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도하지 않는 구성원일 것.

- (2) 이러한 부서단체의 구성원이나 집행기관장이 유사당국과 이해 갈등 가능성을 적절히 공개할 것.[42 U.S.C. 7428]

고형 폐기물 연소

129조. (a) 신규 공급원 성과기준

- (1) 개요. (A) 환경청장은 고형폐기물소각설비 부문 관련하여 111조 및 이 조에 따라 성과기준 및 기타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 (B) 111조 및 이 조에서 시의 일일 연소 폐기물 당 250톤 용량 이상의 고형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어느 것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환경청장이 착수한 중재 및 합의명령에 따라 111조의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공표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는 이 조의 각 요건을 포함하기 위해 이 조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준이 계속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C) 111조 및 이 조에서 시의 일일 연소폐기물 당 250톤 용량과 같거나 미만인 고형폐기물소각설비 및 병원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감염폐기물연소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 (D) 111조 및 이 조에서 상업용, 산업용고형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6개월 이내 상정하고, 이 입법일자 후 48개월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E)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111조 및 이 조에서 기타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공표 일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 (2) 배출기준. 111조 및 이 조에서 공표된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a)(4)항¹⁾에 열거된 대기오염물질의 최대 배출감축량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배출감축달성 비용 및 대기 외적인 보전 및 환경영향과 에너지 요건 등을 고려하여 각 부문에서 신규 혹은 기존 설비의 경우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양이다. 환경청장은 이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어떤 부문의 설비의 규모, 등급, 유형(다량연소, 폐기물 유출연료, 설비의 모듈 및 기타 형태) 등을 구별할 수 있다. 어느 부문의 신규 설비에 대해 달성 가능하다고 간주한 배출감축 정도는 환경청장이 결정한, 최대 관리되는 유사 설비로 실제 달성되는 배출가스 통제보다 덜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부문의 기존 설비의 배출기준은 같은 부문의 신규 설비에 대한 기준보다 덜 엄격할 수는 있지만 그 부문 설비 중 최대 성능 설비 12퍼센트에서 달성한 평균배출한도보다 덜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기준이 공표되기 30개월 전, 기준이 상정되기 18개월 전 중 더 늦은 기간에 최저 달성 가능한 배출비율을 처음에 충족한 설비는 제외)
- (3) 통제 방법 및 기술. 111조 및 이 조에서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연소 전후, 혹은 연소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방법 및 기술에 기초하여야 하며,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부지별로 최대 실행 가능한 정도로 최소로 하는 신규 설비 부지결정 요건을 합체하여야 한다.

1) 원본이 그러함. ‘항’일 것임.

- (4) 배출제한수치. 111조 및 이 조에서 공표되고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기준은 다음 물질이나 혼합물에 대한 배출수치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미립자(통째인 것, 미세한 것), 불투명체(해당되는 경우), 이산화황, 염화수소,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카드뮴, 수은 및 다이옥신 및 다이벤조 푸란 등이 있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에서 열거한 것 이외의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배출제한수치를 공표하거나 명시한 온도를 초과하여 대응 물질의 연소 후 농도, 변수나 체류 기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5) 심사 및 수정. 이 조 및 111조에서 고품폐기물소각설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기준 및 기타 요건을 처음 공표하고 나서 5년 이내, 환경청장은 이 기준 및 요건을 심사하고, 이 조 및 111조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b) 기존 설비

- (1) 지침.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대해 이 조 및 111조의 성과기준은 111(d) 및 이 조에 따라 공표되고 기존 설비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이 조에 규정된 대로 (a)항의 요소(제한공표 관련 111(d)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배출한도), (c)항(감시), (d)(작업자 교육), (e)(허가), 그리고(h)(4)(잔존 위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¹⁾
- (2) 주의 계획. 고품폐기물소각설비 부문에 대한 지침을 환경청장이 공표하고 나서 1년 이내, 그 부문의 설비가 가동되는 해당주는 환경청장에게 이 설비와 관련된 지침을 이행, 집행할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 계획은 환경청장이 공표한 지침만큼 최소한 보호수단이 되며, 지침을 따르는 각 설비는 주

1) 원본이 그러함. (h)(3)을 말하여야 함.

의 계획이 환경청장의 승인 후 3년 이내, 그러나 지침 공포 후 5년 이내 이 조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제출 후 180일 이내 주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하며, 계획이 부결된 경우, 환경청장은 서면으로 부결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느 주도 환경청장이 부결한 계획서를 수정,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3) 연방 계획. 환경청장은 기존 고형폐기물소각설비 부문과 관련하여 이 항의 승인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에 소재한 부문의 설비에 대한 계획을 환경청장이 관련 지침을 공포한 날짜 후 2년 이내 이 계획을 개발, 이행하고 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는 적용대상 설비가 관련 지침이 공포된 후 5년 이내 지침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감시. 환경청장은 (a)항 및 111조에 따라 공포된 성과기준의 일환으로 고형폐기물소각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 (1) 배출가스가 대기 중(혹은 굴뚝, 연소실이나 오염관리장비 안에서) 배출되는 지점에서, 그리고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다른 지점에서 설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감시할 것.
- (2) 기타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설비 작업 및 오염관리기술 관련 변수를 감시
- (3) 설비 작동 및 오염관리기술

이 규정은 고형폐기물소각설비에 유효한 감시회수, 시험방법 및 절차, 그리고 감시결과를 기재한 보고 양식 및 빈도수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이 조의 기준의 초과사항을 나타내는 시험 결과나 감시 보고는 별도로, 집행 조치 목적 심사를 돕는 방식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감시결과

복사본을 관련 시설에서 파일로 관리하고 복사본을 업무 시간 중 일반 대중의 이해관계자가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d) 운용자 교육.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고품폐기물소각설비 운용자 및 고용량화석연료연소공장 운용자의 교육 및 인증을 위해 주의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 후원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주에서 환경청장이 개발한 모델 프로그램만큼 최소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한 경우, 고품폐기물소각설비 운용자 및 고용량화석연료연소공장 운용자의 교육 관련 모델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주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성과기준 및 지침이 (a)항 및 111조에 따라 고품폐기물소각설비 부문에 대해 공표된 날짜 후 30개월에 시작하여,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자가 이 항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완수하지 않았다면 그 부문의 설비를 가동하면 불법이다.
- (e) 허가. (1)(a)항 및 111조에 따라 고품폐기물소각설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기준의 공표 후 36개월 이내 혹은 (2)V장에서 설비가 소재하는 주에서 허가 프로그램의 유효일자 중 더 늦은 날짜에, 그 부문의 설비는 이 항 및 V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가동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된 허가는 V장 규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대해 이 법에서 발급된 허가는 최소 12년간 유효하며, 발급 또는 재발급 후 5년마다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 허가는 발급일자 후 만료일까지 계속 유효하다. 단, 환경청장이나 주가 허가에서 포함된 기준 및 조건을 설비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의 결정은 허가기간 동안 정기적인 간격으로, 5년을

넘지 않게, 그리고 공공의견 및 공청회 후에만 하여야 한다. 고품 폐기물소각설비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이 법에 따라 설비의 설계 및 건조나 가동에 대해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있는 자 또는 대형 단체나 기관이 발할 수 없다. 이 항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이나 해당 주는 설비의 소유자나 운전자나 여타 조치를 이행하거나 배출한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한도나 조치가 없는 때 배출 가스가 공중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환경청장이나 주가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전 문장의 환경청장의 결정은 재량결정이다.

(f) 유효일자 및 집행

- (1) 신규 설비. 이 조 및 111조에 따라 공표되고 신규고형폐기물 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기준 및 기타 요건은 공표일자 후 6개월 일자 현재 유효하여야 한다.
- (2) 기존 설비. 이 조 및 111조에 따라 공표되고 신규고형폐기물 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기준 및 기타 요건은 가능한 신속히 (b)(2)항의 주 계획 승인 후(또는 (b)(3)항에 따라 환경청장의 계획 공표), 그러나 주 계획의 승인 후 3년 이내 또는 기준이나 요건의 공표일자 후 5년 이내 중, 더 이른 때 유효하여야 한다.
- (3) 금지. 이 조 및 111조에 따라 공표된 성과기준, 배출한도나 기타 요건의 유효일자 후, 그러한 기준, 한도나 요건이 적용되는 고품폐기물소각설비의 소유자나 운전자나 이 기준, 제한이나 요건을 위반하여 그 설비를 운용하거나, 위반자가 이 조의 해당 요건을 위반하면 불법이다.
- (4) 다른 권한과의 조정. 이 법의 집행 규정, 111(e), 113, 114, 116, 120, 303, 304 및 307조의 목적을 위해 이 법에 따라 환경청장

이나 주 정부 혹은 지방 정부에서 정한 요건이나 성과기준, 배출한도는 111조에 따라 배출한도인 성과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g) 용어 정의.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306조 및 이 조의 목적만을 위해,

(1) 고품폐기물소각설비. 이 용어는 산업용 또는 산업용 시설물이나 일반 대중예(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호텔 및 모텔 등)에서 나온 고품폐기물을 연소하는 시설의 특징적인 가동설비를 뜻한다. 이 용어는 고품폐기물처리법의 3005조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소각로나 기타 설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A) 금속 회수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하는 원료 회수 시설(1차 혹은 2차 제련소 등),

(B) 연방전력법의 3(17)(C)항에 정의되어 있고, 전력에너지 생산을 위해 동질성폐기물(타이어나 폐유를 연소하는 설비, 폐기물 추출연료는 제외)을 연소하는 소규모전력생산자격 시설이나, 연방전력법의 3(18)(B)항에 정의되어 있고 산업용, 상업용, 난방이나 냉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에너지 및 증기 또는 유용한 에너지(열)의 형태 생성을 위한 동질적 폐기물을 연소하는 폐열발전자격시설,

(C) 목재폐기물, 야적폐기물 및 깨끗한 목재만을 연소하고, 규칙에 의해 환경청장이 정할 불투명 한도를 따르는 경우의 대기 막소각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규 고품폐기물소각설비. 이 용어는 이 설비나 변경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게 될 배출기준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는 이 조의 요건을 환경청장이 제기한 후에 건축이 시작된 고품폐기물소각설비를 말한다.

- (3) 변경 고품폐기물소각설비. 이 용어는 (a)항에 따른 기준 유효 일자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고품폐기물소각설비를 말하며, (A) 설비 수명에 걸쳐서 누적변경비용이 현 시세에 맞추어 최초 설비건축설치 비용의(건축이나 설치 관련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B) 변경이 물리적인 변화나, 이 조나 111조에서 정한 기준 관련 설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증가시키는 설비 가동방법의 변화인 경우이다.
- (4) 기존 고품폐기물소각설비. 이 용어는 신규 혹은 변경 고품폐기물소각설비가 아닌 고품폐기물소각설비를 말한다.
- (5) 시의 폐기물. 이 용어는 일반 대중에서, 주거용, 상업용, 기관용, 산업용 자원에서 회수한 폐기물(및 폐기물에서 추출한 연료)을 말하여, 종이, 목재, 야적장폐기물, 식품폐기물, 플라스틱, 가죽, 고무 및 기타 가연성 원료 및 금속, 유리 및 암석 등 불연성 원료로 구성되지만, (A) 다른 폐기물에서 분리된 산업처리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B) 연료공급유량을 연소하는 경우 그 중량의 30퍼센트 이하가 총 시의 폐기물로 구성되는 경우, 소각설비는 111조나 이 조의 목적에 맞게 시의 폐기물을 연소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 (6) 기타 용어. 고품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용어는 고품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환경청장이 정한 의미를 지닌다.

(h) 기타 권한

- (1) 주의 권한. 이 조의 어느 항목도 주나 행정부서가 이 법의 여타 규정에 따라 혹은 이 조에서 유효한 규정, 요건, 제한이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고품폐기물소각설비와 관련된 규정, 요건, 제한이나 기준을 채택하거나 집행할 권한을 미리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

- (2) 이 법의 다른 권한. 이 조의 어느 항목도 환경청장이나 주가 여타 법 권한에 따라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여타 요건을 정할 권한을 축소하지 않아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관련하여 국가대기질기준을 정할 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이 조 및 111조에서 성과기준을 적용 받는 어떠한 고품폐기물소각설비도 이 법 112(d)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잔존 위험. 환경청장은 고품폐기물소각설비 부문 관련하여 이 기준의 공표가 112(f)항에서 그 기준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 경우, 112(f)항에 따른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¹⁾ 앞 문장만의 목적을 위해
 - (A) (a)항 및 111조의 기준에 따라 고품폐기물소각설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기준은 112(d)(2)항에 따른 기준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 (B) 필요하다면 (a)(4)항에 열거한 오염물질을 고려하여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산성 비. 고품폐기물소각설비는 IV장에 정의한 유틸리티 시설은 아니며, 연간 연료소비측정량의 80 퍼센트 이상이 Btu 기준으로, 환경청장이 정할 기간 중에 화석연료 이외의 연료에서 비롯됨을 조건으로 한다.
- (5) C파트 및 D파트의 요건. 165조(107(d)(1)(A) (ii) 혹은 (iii)항에 따라 확인된 지역에서 시설 건축 관련)에 따라, 혹은 172(c)(5) (달성 예외 지역의 건축 및 가동허가)의 해당이행계획의 어느 요건도 이 조에서 유효한 기준을 약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없다. [42 U.S.C. 7429]

1) 원본이 그러함. ‘그’이어야 함.

배출 계수

130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환경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방법을 (배출 계수)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여 대기오염물질 공급원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 화합물 및 질산화물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환경청장은 이전에 어떠한 방법도 환경청장이 정한 적이 없는 공급원에 대한 배출계수를 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특정인이 배출량 산정향상기법을 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기법의 승인 후, 환경청장은 이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기법은 적절한 대중 참여 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이 조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을 완료한 때까지 이 조의 어느 항목도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환경청장이 정한 배출계수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430]

토지사용 권한

131조. 이 조의 어느 항목도 토지사용을 계획하거나 관리할 국가 및 도시의 기존 권한에 대한 침해사항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 법의 어느 항목도 그러한 토지사용에 대한 권한을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42 U.S.C. 7431]

[B.]¹⁾

[150조~159조 폐지조항]

C. 2)

파트 C의 1

목 적

160조. 이 파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청장의 판단으로³⁾ 모든 대기질 국가기준의 달성 및 유지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기로 배출되는 물질로 비롯되며, 대기오염이나 다른 매체 속의 오염물질 노출로 발생할 걸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⁴⁾ 실제 영향이나 불리한 영향가능성으로부터 공중보건복지를 보호하기
- (2) 국립공원, 국유지, 국립기념물, 국립해안 및 국가나 지역의 특수 성격, 휴양, 경관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에서 대기의 질을 보존, 보호하고 높이기.
- (3) 기존의 깨끗한 대기자원의 보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 (4) 어느 주의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해당이행계획의 부분과 저축되지 않고 다른 주의 경우 대기질의 유의한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 (5) 이 조가 적용되는 특정 지역에서 대기오염증가를 허용하는 결정은 결정의 모든 영향을 세밀히 평가한 후에, 그리고 결정과

1) 공법 101.549 (104 Stat. 2648), 601조에 의해 폐지됨

2) 관련 규정은 공법 95.95 (부록)120(b)항 참조.

3) 원본이 그러함. '예상할'이어야 함.

4) 원본이 그러함. 여는 괄호 없이 제정된

정에서 고지한 대중 참여를 위한 적합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
한 후에만 내릴 수 있도록 하기.[42 U.S.C. 7470]

계획 요건

161조. 101(b)(1)항의 정책에 따라, 해당이행계획은 배출한도 및 필요
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이 파트에서 공표된 규정에 따라 결정한
대로 포함하여 달성이나 분류불가능으로 107조에 따라 지정된 지
역(혹은 그 일부)의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42
U.S.C. 7471]

최초 분류

162조. (a) 이 파트를 제정하는 때에, 모든

- (1) 해외 공원,
- (2) 크기가 5,000 에이커를 넘는 국립 황야지
- (3) 크기가 5,000 에이커를 넘는 국립기념공원
- (4) 크기가 6천 에이커를 넘고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
일자에 존재하는 국립공원은 I 등급 지역이며,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그 입법일자 전 공표된 규정에서 I 등급으로 재지정이
된 지역은 이 파트에서 규정된 대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 이
조에서 I 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1977년도 청정대기
법 개정안 입법일자에 연속하여 발생하였거나, 1990년도 청정
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에 연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계상의
변화를 따른다.

(b) (a)항의 I 등급으로 정하지 않고 107(d)항에 따라 달성 또는 분류
불능으로 지정되고 해당 주의 지역은 164조에 따라 다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II 등급이다. [42 U.S.C. 7472]

증분 및 최대치

- 163조. (a) 황산화물 및 미립자의 경우, 해당이행계획은 오염물질의 기준 농도의 최대허용증가량 및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연중 기간 이외의 특정 기간에 대한 국가 대기질 기준에서 허용된 농도에 기초하여 특정 오염물질에 대하여 최대허용증가의 경우(165(d)(2)(C)(iv))항에서 명시한 허용증가량을 제외), 이 규정은 매년 그 기간 중 초과될 최대 허용증가량을 허가하여야 한다.
- (b) (1) I 등급 지역의 경우, 이산화황 및 미립자의 기준 농도를 넘어서 이 오염물질 농도의 최대허용증가량은 다음 양을 넘지 않아야 한다.

최대허용증가량
[마이크로그램/m³]

오염물질

미립자

연간기하평균	5
24시간 최대량	10

이산화황

연간산술평균	2
24시간 최대량	5
3시간 최대량	25

(2) II 등급 지역의 경우, 이산화황 및 미립자의 기준 농도를 넘어 이 오염물질 농도의 최대허용증가량은 다음 양을 넘지 않아야 한다.

최대허용증가량
[마이크로그램/m₃]

오염물질

미립자

연간기하평균	19
24시간 최대량	37

오염물질

이산화황:

연간기하평균	20
24시간 최대량	91
3시간 최대량	512

(3) II 등급 지역의 경우, 이산화황 및 미립자의 기준 농도를 넘어 이 오염물질 농도의 최대허용증가량은 다음 양을 넘지 않아야 한다.

최대허용증가량
[마이크로그램/m³]

오염물질

미립자

연간기하평균 37

24시간 최대량 75

이산화황;

연간기하평균 40

24시간 최대량 182

3시간 최대량 700

(4) 이 파트가 적용되는 어느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의 최대허용농도는 다음과 같이 노출기간 동안 오염물질 관련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국가 대기질 기준에서 허용된 농도나

(B)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에서 허용된 농도, 노출기간 중 오염물질의 최저 농도

(c) (1) 이 파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환경청장이 승인한 계획이 있는 주의 경우, 그 주지사는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농도에서 최대허용증가량의 준수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이 오염물질의 다음 농도를 고려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령을 발하거나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 (A) 1974년 에너지공급환경조정법의 2 (a) 및 (b)항 규정에서 유효한 명령에 의해, 명령의 유효일자 전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에 대해, 석유화학제품이나 천연가스 혹은 둘 다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전환되었던 고정 공급원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¹⁾
 - (B) 연방정부전력법에 따라 유효한 천연가스삭감계획에 따라 천연가스삭감의 이유로, 명령의 유효일자 전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으로부터 전환되었던 고정 공급원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
 - (C) 건축이나 기타 임시배출관련 활동에서 비롯되는 배출량 증가에 기인할 수 있는 미립자의 농도, 그리고
 - (D) 169(4)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 농도에 포함되고 기존 공급원에 기인할 수 있는 농도와 관련하여 미국 밖 신규 공급원에 기인할 수 있는 농도의 증가
- (2) (1)(A) 혹은 (1)(B)조항에서 공급원에 대해 취한 어떠한 조치도 (1)(A)조항에 언급된 명령이나 (1)(B)조항에 언급된 계획 중 적용 가능한 유효일자 후 5년 지나 적용을 하여야 한다. 그 명령 및 계획이 적용 가능하다면, 그 조치는 유효일자 중 늦은 날짜 후 5년 이상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이 항에 따른 어느 조치도 주지사가 그러한 예외사항을 규정한 명령이나 규정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환경청장이 이 명령이나 규칙이 이 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473]

1) 그 기간은 아마도 첩표가 있어야 한다.

지역 재지정

164조. (a) (c)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는 I 등급 지역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지역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지역은 II 등급 또는 II 등급으로만 다시 지정될 수 있다.

- (1) 크기가 1만 에이커를 초과하고, 국립기념물, 국립원시지역, 국립보존지역, 국립휴양지역, 국립야생경관하천, 국립야생보호지, 국립 호수가나 해안 지역, 그리고
- (2) 이 법 입법일자 후 정한 국립공원이나 국립야생지역으로 크기 1만 에이커를 초과한 지역

(1)항¹⁾ 및 (2)항에 언급된 지역의 범위는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에 이어 발생하였거나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에 이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계의 변경사항을 따른다.²⁾

어느 지역((1)항 또는 (2)항에서 언급된 지역이나 162(a)항 첫 문장에서 I 등급으로 정한 지역은 제외)을 다음의 경우 III 등급으로 주에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A) 주지사가 개최중인 경우 해당입법위원회와, 개최중이 아닌 경우 입법지도자와 (주 의회에서 특별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지정을 주법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 의논 후, 특별 승인을 받은 재지정, 그리고 재지정이 된 지역주민 대 다수를 대표하는 일반목적 지방 정부 부서가(해당되는 경우 지방정부 결의 부서를 포함) 주의 재지정에 동의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경우

1) ‘조항’이어야 함

2) 공법 101.549 (104 Stat. 2569), 108(n)항은 “어느 지역((1) or (2)조항에 언급된 지역 이외)로 시작하는 문장 바로 앞에 끼어 넣어 164(a)항을 수정하였다. 개정안은 (2) 다음에 두 번째 관호를 넣지 않았어야 한다.

- (B) 이 재지정이 최대허용농도나 기타 지역의 분류에서 허용된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는 경우
- (C) 이러한 재지정이 달리 이 파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A)조항은 인디언 부족에 의한 지역의 재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 (1)(A) 이 파트에서 지역을 다시 지정하기 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공청회는 재지정을 받을 예정지역에서, 그리고 재지정 예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청회 전, 재지정 예정의 보건, 환경, 경제, 사회 및 에너지영향에 대한 만족스런 설명 및 분석 사항을 준비하고 재지정 전 대중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되어야 하며, 영향설명 및 분석 사항은 재지정 당국에서 심사, 검토를 하여야 한다.

(B) 이 항의 지역 재지정 관련하여 (A)조항의 통지서 발급 전, 그 지역이 연방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주는 해당 연방 토지 관리자에게 서면통지서를 보내고, 재지정계획통지와 관련된 주와 상의를 하고 재지정계획통지서에 대한 서면 의견 및 권고사항을 제출할 (60일 넘지 않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방 토지 관리자가 서면의견 및 권고사항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조의 지역을 다시 지정하는데 있어, 주는 재지정 및 권고사항 사이의 불일치목록 및 불일치설명서(연방 토지 관리자의 권고안에 대하여 재지정을 하는 근거와 함께)를 발표하여야 한다.

(C) 환경청장은 이 파트의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규정을 공표하여, 가능한 한 지역의 재지정에 대한 공청회 전, 심리 중인 지역이 III 등급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이 된 경우에

만 건축, 가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규, 혹은 변경 주요 배출시설별 특정계획에 대한 공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환경청장이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재지정이 이 조의 절차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 조 (a)항이나 162(a)항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지역의 재지정을 부결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부결 경우, 지역의 분류는 부결되었던 재지정 전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c)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인디언 부족 보호지의 외곽 경계 내 토지는 해당 인디언 통치조직만이 재지정을 할 수 있다. 인디언 통치조직은 모든 점에서 (e)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d) 연방 토지 관리자는 모든 국립기념물, 원시지역 및 국립보존지역 등을 심사하고, 대기질 관련 가치가 그 지역의 중요한 속성인 경우 해당 지역을 I 등급으로 재지정을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연방 토지 관리자는 이 권고사항을 지지분석 내용에 넣어¹⁾ 의회 및 이 조의 제정 후 1년 이내 영향을 받는 주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권고를 하기 전에 해당 주와 의논을 하여야 한다.
- (e) 인디언 부족에서 지역의 재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주나 주의 지역 재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인디언 부족이 지역의 재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혹은 영향을 받는 주지사나 영향을 받는 인디언 부족 통치조직이 각각의 주나 부족의 보류지 내 이 파트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대기질의 누적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주에서 건축 예정인 신규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발급예정인 경우에, 지사나 인디언통치 조직은 환경청장에게 분쟁을 해

1) '함께'이어야 함.

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협상에 들어가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주나 인디언 부족의 요청을 받은 경우, 환경청장은 분쟁 해결 및 관련 토지의 대기질 관련 가치 보호를 위해 권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환경청장은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결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도달한 합의결과는 적용 가능한 계획의 일부가 되며, 이 계획의 일부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재지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관련 토지가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를 허용하거나 그 지역의 대기질 관련 가치를 갖도록 하는데 충분한 크기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42 U.S.C. 7474]

사전 건축 요건

165조. (a) 이 파트의 입법일자 후 건축을 시작한 주요 배출시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파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건축될 수 없다.

- (1) 이 파트의 요건을 준수하는 시설의 경우 배출한도를 제시하는 이 파트에 따라 예정시설에 대한 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2) 이 조에 따라 예정허가가 심사를 받았고,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청장의 대리인을 포함 이해관계자가 출석하여 공급원, 그 대안, 통제기술요건 및 기타 적절한 고려사항의 대기질 영향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 표현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 경우.
- (3) 시설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110(j)에 따라 요구된 대로, 시설의 건축이나 가동으로 나오는 배출가스가 (A) 연 1회 이상 이 파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최대허용증가량이나 최대허용농도, (B) 대기질 관리 지역에서 국가 대기질 기준, 혹은 (C) 이 법에서 성과기준이나 여타 적용 가능한 배출기준

- 을 초과하여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는 경우
- (4) 예정 시설이 이 법에 따른 규정대상이고 시설에서 배출되거나 비롯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최대 이용 가능한 관리기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5) 등급 I 지역의 보호에 대한 (d)항의 규정이 이 시설의 경우 준수된 경우.
 - (6)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성장 결과로 지역에 예정된 대기질 영향 분석이 있었던 경우
 - (7) 그와 같은 시설의 배출 물질이 공급원의 배출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대기질에 미칠 수 있거나 미치고 있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감시활동을 하기로 동의하고 이 파트에서 요구된 허가를 받기 위해 주요 배출시설을 소유하거나 가동하거나 소유 또는 가동 예정인 자는
 - (8) III 등급 지역에서 건축예정인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II 등급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허용증가분을 초과하게 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경우, 그리고 이 법 111조의 어떠한 기준도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후속으로 공표된 적이 없었던 경우에, 그 공급 부문에 대해, 환경청장이 허가서에 제시된 최대 이용 가능한 기술 결정을 승인하였던 경우.
- (b) (a)(3)항에서 요구된 최대허용증가 관련 증명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에 존속한 주요 배출시설의 확장이나 변경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허용배출량이 (a)(4)항을 준수한 후, 연간 50톤 이하이고 이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미립자 및 이산화황 배출량이 이들 오염물질의 국가 대기질 부수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 대기질 수치를 일으키거나 기여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II 등급 지역의 경우 최대허용증가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c) 이 파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주요배출시설의 경우 110조에서 완비된 허가신청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후 1년 이내 승인을 받거나 거절되어야 한다.

(d) (1) 각 주는 환경청장에게 주에서 수령한 주요 배출시설과 관련된 허가 신청서사본을 제출하여, 허가 고려사항과 관련된 모든 조치 통지를 환경청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허가신청서 통지서를 예정시설의 배출 가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I 등급 지역 내 토지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토지 관리자 및 연방 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B) 토지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토지 관리자 및 연방 공무원은 등급 I 지역 내 토지의 대기질 관련 가치(가시성 등)를 보호하고 환경청장과 의논하여 예정 주요 배출시설이 그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확실한 책임이 있다.

(C) (i) 등급 I 지역 내 토지를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방 공무원이나 이 토지의 연방 토지 관리자나 환경청장이나 등급 I 지역을 포함한 인접 주의 지사가 예정 주요배출시설의 배출 물질이 그 지역의 대기질 변화를 초래하거나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불리한 영향 가능성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서는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미립자 및 이산화황 배출이 I 등급지역에 대해 최대허용증가량을 초과하는 농도를 초래하지도,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i)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로 비롯되는 대기질 변화가 등급 I 지역의 경우 최대허용증가량을 초과하는 농도

를 일으키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방 토지 관리자가 시설의 배출 물질이 그 토지의 대기질 관련 가치(가시성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주장 만족하게끔 증명하는 경우에, 허가서는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iii)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로 비롯되는 대기질 변화가 등급 I 지역의 경우 최대허용증가량을 넘는 농도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거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배출 물질이 그 토지의 대기질 관련 가치(가시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연방 토지 관리자가 만족하게끔 증명하고, 연방 토지 관리자에게 확인한 경우에, 주는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iv) (iii)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의 경우, 이 시설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및 미립자 배출이 이 오염물질의 기준 농도를 넘어 다음의 최대허용증가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농도를 초래하지도 기여하지도 않게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허가에 따라 배출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최대허용증가량
[마이크로그램/m³]

미립자	
연간기하평균	19
24시간 최대량	37
이산화황	
연간기하평균	20
24시간 최대량	91
3시간 최대량	325

(D) (i) (C)(iii)항의 인증이 거절된 예정 주요 배출시설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I 등급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24시간 이하 동안 이산화황의 최대 허용 증가를 이유로 건축될 수 없음을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주지사가 만족할 만큼 증명하고 주지사가 확인한 경우, 그리고 연방 규제 등급 I 지역의 경우, 이 조항의 편차가 그 지역의 대기질 관련 가치에(가시성 등)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주지사는 연방 토지 관리자의 권고사항을 고려한 후 그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러한 최대허용증가분의 변화량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허용된 경우,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공급원에게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ii) 연방 토지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 조항의 변화를 주지사가 권고하는 경우, 주지사 및 연방 토지 관리자의 권고안은 대통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 변화가 국가에 이롭다는 것을 알면 주지사의 권고안을 승인할 수 있다. 대통령의 조사는 어떠한 법정에서도 심리할 수 없다. 이 변화는 대통령이 주지사의 권고안을 승인할 경우 유효하다. 대통령이 주지사 및 연방 토지 관리자의 권고안을 수령하고 90일 이내 권고안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iii)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이산화황 배출 물질이 오염물질의 기준 농도를 넘어서 그 지역의 다음 최대허용증가량을 초과하는 농도를 초래하지도 기여하지도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도 중 18일 이상 24시간 이하의 노출 기간 동안 달리 적용 가능한 최대허용증가량을 초과하는 농도를 일으키지도 기여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허가에 따라 배출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최대허용증가량
[마이크로그램/m³]

노출기간:

저 지형지역:

24-hr 최대량 36

3-hr 최대량 130

고지형지역:

24-hr 최대량 62

3-hr 최대량 221

(iv) (iii)항에 대하여, ‘고지형 지역’이란 용어는 특정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굴뚝 밑위로 고도 900피트 이상인 지역이며, ‘저 지형 지역’이란 용어는 고지형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e) (1) (a)항에 규정된 심사는 이 항에서 공표된 환경청장의 규정에 따라, 주에서 실시할 수 있거나(혹은 일반목적 지방정부 부서) 혹은 허가를 신청한 주요 배출시설의 예정 부지에서, 그리고 이 시설에서 배출되며 이 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 오염물질의 경우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대기질의 분석 결과보다 나중에 이루어야 한다.

(2) 이 파트의 제정일자 후 1년간 유효하므로, 이 항에서 요구된 분석은 시설의 배출 물질이 최대허용증가량이나 이 파트에서 허용된 최대허용농도를 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집한 연속 대기질 감시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는 이 파트의 허가 신청일자 전에 1회계연도 기간에 걸쳐 수집하여야 하며, 다만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이러한 목적에 적합

하고 완전한 분석을 짧은 기간에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분석 결과는 허가를 신청하는 때 공청회 시점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 (3) 환경청장은 이 파트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이 항에서 요구된 분석 관련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 (A) 자동 혹은 균등 완충지역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 (B) 예정 주요 배출시설 부지에서, 그리고 시설에서 배출되거나, 시설의 건축이나 가동에 기인하며, 이 법에서 규정된 오염물질의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의 영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대기질, 기후기상학, 지형, 토양 및 초목, 그리고 가시성, 예정 시설의 규모 및 특성 및 기타 시설의 연속배출감축달성가능성 정도 및 대기질 관리지역에 예정된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물의 영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관련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C) 분석 결과는 허가 신청 시 공청회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¹⁾ 요구하여야 한다.
 - (D)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할 대기질 모델을 적절히 세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모델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이 이 파트에서 요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독특한 지형이나 기상 특성을 고려하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조정될 수 있다. [42 U.S.C. 7475]

1) 아마도 '하도록' 이어야 함.

기타 오염물질

- 166조. (a)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광화학 산화물 및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경우에, 환경청장은 연구를 실시하고, 이 파트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오염물질 배출 가스에 기인할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 파트 입법일자 후 국가 대기질 기준이 공표된 오염물질의 경우, 기준의 공표일자 후 2년 이내 이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b) (a)항에 언급된 규정은 공표일자 후 1년 후 유효하여야 한다. 공표일자 후 21개월 이내, 계획수정서는 110조에서 요구된 같은 방식으로 공표일자 후 25개월 이내 계획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 이 규정은 허가 신청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특정 수치 척도, 관리 향상기술을 진작하기 위한 방안, 대기질 가치의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101조 및 160조에 제시된 목적 및 목표를 충족하여야 한다.
- (d) (a)항에서 환경청장의 규정은 이 목표 및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적어도 163조에서 정한 증가량만큼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기질 증가분, 배출밀도요건이나 기타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e) 황산화물이나 미립자를 제외하고 국가 대기질 기준이 수립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지역 분류계획은 주에서 채택하고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거나 환경청장이 110(c)항에 따라 공표된 이행계획이 기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청장이 오염물질에 대한 지역 분류계획만큼 최소한 효과적으로 160조의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는 규정을 포함한 경우에 이 조에서 요구될 필요

는 없다. 이전 문장에서 언급된 기타 규정은 이 조가 적용되는 지역 관련 오염물질에 대해 최대허용증가량을 정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다.

- (f) PM₁₀ 증가량. 환경청장은 163(b)항 및 165(d)(2)(C)(iv)항에 명시된 미립자의 최대허용증가량을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립자의 최대허용증가량으로 대신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대체 최대허용증가량은 대체 규정에서 명시된 만큼 똑같이 유효하게 엄격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 항의 권한에 따라 규정을 공표할 때까지, 미립자 농도의 현재 최대허용증가량인 여전히 유효하다. [42 U.S.C. 7476]

집 행

167조. 환경청장은 이 파트의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107(d)에서 달성 혹은 분류불능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될 예정이고, 이 파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행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배출시설의 건축이나 변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대로 명령 발효나 권고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주는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2 U.S.C. 7477]

계획 승인전 기간

168조. (a) 해당이행계획이 특정 지역에 대해 유효한 시간까지, 이 계획은 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파트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파트의 제정 전에 이 법의 해당 규정은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오염물질에 대해 그 지역에서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유효하여야 한다.

(b) 이 파트의 입법 전에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어떠한 규정이 162(a), 163(b) 혹은 164(a)항의 요건과 불일치할 경우, 이때 이 규정들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975/6/1 이후, 그리고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에, 공사가 착수된 시설의 경우(169(2))항에 ‘착수된’ 정의에 따라), 시설의 심사 및 허가는 유의한 악화 방지를 위해 이 개정안 입법 전에 유효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42 U.S.C. 7478]

용어 정의

169조.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 (1) ‘주요 배출시설’이란 용어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0톤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고정 공급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영국 시간당 열 단위 열투입량이 250백만 이상인 화석연료연소증기발전소, 석탄세척공장(열 건조기), 크라프트펄프제재소, 포틀랜드 시멘트공장, 아연원광제련소, 철강제련소, 알루미늄광환원공장, 구리원광 제련소, 일일 폐기물 방출 용량이 50톤 이상인 시의 소각로, 플루오르수화물, 황화물 및 질산 공장, 석유 정유공장, 석회공장, 인광처리공장, 코크스로배터리, 황 회수 공장, 블랙카본공장(용광로 처리), 납 원광 제련소, 연료전환공장, 소결공장, 2차 금속 생산시설, 화학처리공장, 시간당 영국 열 단위 열 투입량이 250백만 이상인 화석연료보일러, 3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석유보관운송시설, 각암 광 처리시설, 유리섬유처리공장, 역청탄생산시설 등이다. 이 용어는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일일 250 톤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공급원을 포함하나, 주에서 면제를 받았던 비영리 보건, 교육기관으로 신규시설이나 개조 시설은 포함하지는 않는다.

- (2) (A) ‘착수된’이란 용어는 주요 배출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소유자나 운영자가 연방, 주 혹은 지방의 대기오염배출 및 대기질 법규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사전 건축 승인이나 허가를 얻었으며, (i) 물리적 현장공사의 연속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거나 시작하게 하였거나, (ii) 구속 약정이나 계약 의무를 체결하였으며,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상당한 손실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적정 시간 내 시설 완공공사 프로그램을 착수하였음을 뜻한다.
- (B) ‘필수 공사 전 승인이나 허가’란 용어는 (A)항의 (i)혹은 (ii)조항에서 어떠한 활동을 개시하는 선행 조건으로서 허가 당국에서 요구한 허가나 승인을 의미한다.
- (C) ‘공사’란 용어는 공급원이나 시설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공급원이나 시설의 개조사항(111(a)항에 정의된)을 포함한다.
- (3) ‘최대 이용 가능한 통제 기술’이란 용어는 주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거나 비롯되며 이 법의 규정을 따르는 오염물질의 최대 감축정도에 기초한 배출제한을 의미하여, 허가당국이 사례별로 에너지, 환경, 경제적 영향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생산과정 및 이용 가능한 방법, 시스템 및 기법 등을 활용하여 시설에 대해 달성 가능한 것으로, 연료세척¹⁾, 청정연료 혹은 처리나 오염물질 통제를 위한 혁신적 연료연소기법 등을 포함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을 이용하여 이 법 111조나 112조에 따라 정한 해당기준에서 허용된 배출량을 초과할 대기오염물질배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청정연료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는 공급원의 배출량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1) 공법 101.549 (104 Stat. 2631) 403(d)항은 ‘연료세척 등’ 다음에 ‘청정연료’를 삽입하여 169(3)항을 수정하였다. ‘연료세척 등’ 다음에 쉼표는 없다.

존재할 때 이 항에서 요구되었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4) ‘기준 농도’란 용어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적용되는 지역에서 최초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서 환경청이나 주의 대기오염관리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대기질 자료 및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대기농도 수준을 말한다. 이 대기농도수준은 1975/1/6일 전 공사를 착수했지만 기준 대기농도 측정일자까지 가동을 시작하지 않고 주요 배출시설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예정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1975/1/6일 후 공사를 시작했던 주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및 미립자 배출량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파트에서 정한 오염물질농도의 최대허용증가량과 대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42 U.S.C. 7479]

C 2

연방 I 등급 지역의 가시성 보호

169A조. (a)(1) 의회는 이 항에 따라 국가 목표로 가시성 장애가 인위적 대기 오염에서 비롯되는 연방 I 등급 규제 지역에서 기존의, 향후 이 장애를 예방하고 규제함을 선포한다.

- (2) 이 조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내무부 장관은 기타 연방 토지 관리자와 의논하여 연방 규제 I 등급 지역을 심사하고, 가시성이 그 지역의 중요한 가치인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때때로 내무 장관은 이 확인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내무 장관과 의논한 후, 가시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한 I 등급 연방규제지역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 (3) 이 조의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1)항에 제시된 국가목표이행을 위한 이용 가능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완수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1)항에 언급된 연장지역에서 가시성장애를 확인, 분류, 결정, 수량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B) 인위적 대기 오염이 그러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모델링 기법(혹은 기타 방법)

(C) 인위적 대기 오염 및 이로 인한 가시성장애를 방지, 구제하는 방법. 보고서는 또한 개별로 혹은 기타 공급원이나 오염물질과 합쳐서 가시성 장애를 일으키거나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공급원 등급이나 범주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이 조의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그리고 통지 및 공청회 후, 환경청장은 (A) (1)항에 명시된 국가 목표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B) 이 조의 요건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b) (a)(4)항의 규정은

(1)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한 적정 기법 및 방법에 대해 (a)(3)항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주에게 보낼 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2) (a)(2)에서 환경청장이 열거한 지역이 소재한(혹은 그와 같은 지역에서 배출량이 가시성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주) 주의 해당이행계획에 이러한 배

출한도, 준수일정 및 다음을 포함하여 (a)항에 명시한 국가목표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A)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입법일자에 존재하지만, 그 일자 현재 15년 이상 가동된 적이 없으며, 그리고 주에서 (혹은 110(c)에서 공표된 계획의 경우는 환경청장) 결정한 대로 그와 같은 지역에서 가시성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고정 공급원이 최대 이용 가능한 개장기술을, 주에서 (혹은 110(c)항에서 공표된 계획의 경우 환경청장) 결정한 대로,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 설치 및 가동을 (그 후 유지)하고 그와 같은 장애를 제거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이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통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B) (a)항에 명시된 국가목표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진행하도록 하는 장기(10~15년) 전략.

총생산량이 750메가와트가 넘는 화석연료연소발전소의 경우, 이 조항에서 요구된 배출한도는 (1)항에서 환경청장이 공포한 지침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c) (1)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주요 고정 공급원이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공급원과 협동하여 I 등급 연방규제지역에서 유의한 가시성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때 (b)(2)(A)항의 요건에서 이 공급원을 면제할 수 있다.

(2) 위 (1)조항은 총 설계용량이 750메가와트 이상인 화석연료연소 발전소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발전소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공급원과 결합하여 유의한 가시성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a)(2)항에 환경청장이 열거한 지역에서 떨어진 거리에 소재함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그와 같은 발전소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 조항의 면제사항은 위 조항의 환경청장의 결정에 해당 연방 토지 관리자가 동의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d)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이행계획의 수정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혹은 110(c)항에서 공표된 계획의 경우 환경청장)는 해당 연방 토지 관리자와 직접 의논을 하고 공고 사항에 연방 토지 관리자의 결론 및 권고 요약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 이 조의 규정을 공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자동완충구역이나 균일완충구역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f) 304(a)(2)목적에 위해, (a)(1)항에 명시된 국가목표를 특정일자까지 충족하는 것은 환경청장의 재량 외 임무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g) 이 조의 목적에 맞게,

(1) 적정 진행 상황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준수 비용, 준수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에너지 및 대기 외적인 환경영향과 이들 요건을 따르는 기존 공급원의 잔존 유용수명 등이다.

(2) 최대 이용 가능한 개장 기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혹은 이 기술을 반영하는 배출한도를 결정하는 데는 환경청장)는 준수 비용, 에너지 및 대기 외적인 환경영향, 공급원에서 사용 중인 기존 오염통제기술, 공급원의 잔존 유용 수명, 그리고 이 기술

활용으로 비롯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가시성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인위적 대기오염”이란 용어는 직, 간접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비롯되는 대기 오염을 말한다.
- (4) ‘가능한 한 신속히’란 용어는 가능한 한 신속히 이 조의 계획수정안의 승인일자 후 5년 이내,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계획수정안 승인일자 후 5년 이내(또는 이 조의 목적에 맞게 110(c)에서 환경청장이 조치한 경우에 계획의 공표일자)를 말한다.
- (5) ‘I 등급 연방규제지역’이란 용어는 이 파트에서 I 등급 이외의 등급으로 지정될 수 없는 연방 지역을 말한다.
- (6) ‘가시성 장애’ 및 ‘가시성의 장애’란 용어는 가시거리의 축소 및 공기가 뿌연 현상을 포함하며,
- (7) ‘주요 배출시설’이란 용어는 다음 유형의 고정 공급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0톤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고정 공급원을 말한다.: 영국 시간당 열 단위 열투입량이 250백만 이상인 화석연료연소 증기발전소, 석탄세척공장(열 건조기), 크라프트펄프제재소, 포틀랜드시멘트공장, 아연원광제련소, 철강제련소, 알루미늄광환원공장, 구리원광제련소, 일일 폐기물 방출 용량이 50톤 이상인 시영소각로, 플루오르수화물, 황화물 및 질산 공장, 석유 정유공장, 석회공장, 인광처리공장, 코크스로배터리, 황 회수 공장, 블랙카본공장(용광로 처리), 납 원광 제련소, 연료전환공장, 소결공장, 금속정광 생산시설, 화학처리공장, 시간당 영국 열 단위 열 투입량이 250백만 이상인 화석연료보일러, 3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석유보관운송시설, 각압 광 처리시설, 유리섬유처리공장, 역청탄생산시설 등이다.

[42 U.S.C. 7491]

가시성

169B조. (a) 연구. (1) 환경청장은 국립공원당국 및 기타 해당연방기관과 공조하여 I 등급 지역에서 공기가 아주 맑은 구역 및 가시성 장애를 일으키는 공급원 및 그 지역을 확인,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환경청 및 기타 연방기관이 이 연구를 실시하는데 5년 동안 연간 총 800백만 달러를 충당하도록 허가되며, 연구 내용은

- (A) I 등급 지역에서 현행 가시성 관련 감시활동 확대;
- (B) 현재 가시성 장애를 일으키는 오염 및 청정 공기 회랑 공급원의 평가
- (C) 가시성 평가를 위한 지역 대기 모델의 개선
- (D) 대기화학 및 가시성 역학 연구

(2) (a)(1)항에서 요구된 연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학문기술자료, 연구 및 기타 가시성 공급원 수용관계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은 가능한 정도로 I 등급지역의 청정공기 공급지역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포함하여 공급원 및 가시성 장애 공급원 지역을 확인하는 검사 및 평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이 연구로 중간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다른 규정의 영향.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조의 규정 이외에 위 개정안 규정의 이행으로 비롯될 가능성이 있는 등급 I 지역에서 가시성 진행상황 및 개선책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 후 5년 마다 환경청장은 I 등급 지역의 실제 가시성의 진행개선상황을 평가하고, 평가보

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c) 가시성 이동 지역 및 위원회 수립

(1) 가시성 이동 지역 수립 권한. 환경청장의 동의로 또는 최소한 영향을 받는 주지사 2명의 청원에 의해, 환경청장이 영향을 받은 주에 소재하는 I 등급 지역에서 가시성 장애에 상당히 기여하면서 여러 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주 사이에 현재, 장래에 이동할거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때, 환경청장은 이 주와 관련된 오염물질에 대한 이동 지역을 정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자신의 동의로 혹은 영향을 입은 주지사의 청원이 있는 때, 또는 이 조 (b)항에서¹⁾ 정한 이동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때,

(A) 환경청장이 해당 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주 사이에 이동하여 이동 지역 내 소재한 I 등급 지역에서 가시성 장애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할 때 어느 주나 그 일부를 가시성 이동 지역에 추가할 수 있으며,

(B) 이 조에 따라 주나 그 일부에서 배출량 관리가 이동 지역 내 I 등급 지역에서 가시성의 보호나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 때마다 이동 지역에서 주나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2) 가시성 이동 위원회. 환경청장이 (c)(1)항의 이동 지역을 정할 때마다 환경청장은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된 (최소한) 이동 위원회를 수립하여야 한다.

(A) 가시성 이동 지역의 각 주지사나 그의 수임인

(B) 환경청장이나¹⁾ 그 수임인

1) 아마도 위 조항 (2)조항과 관련될 것임

1) 이 조항의 첫 단어는 더 작은 경우일 것임.

(C) 가시성 이동지역 내 I 등급 지역의 직접관리권이 있는 연방기관 대표자 1명²⁾

(3) 연방 정부의 대표자는 직권상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4) 가시성 이동위원회는 연방자문위원회법의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5 U.S.C. 부록 2,³⁾1조).

(d) 가시성 이동위원회의 기능. 이 위원회는

(1) 과학기술자료, 연구 및 기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평가하여야 하며, 기타 가시성 지역에 소재한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상되어 가시성에 나쁜 영향과 관련되며, (a)(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도 포함한다.

(2)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러한 나쁜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청정대기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청정공기회랑에서 배출량 증가에 대한 추가 제한은 영향권 내 I 등급지역에서 가시성을 보고하는데 적절할 수 있는 청정대기회랑을 만들고,

(B) 청정공기회랑에서 기존 공급원에 대한 주요 변경이나 신규 주요 고정 공급원의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장 파트 D의 요건을 부과하며, 특히 173(a)(5)항의 부지결정 분석 대체 규정을 포함시킨다.

(C) 영향권 내 I 등급 지역에서 가시성 장애를 일으키는 지역의 안개 관련 장거리전략을 다루기 위해 169A조에 따른 규정을 공포한다.

(e) 환경청장의 역할. (1) 환경청장은 (a)(1)항에서의 연구 및 (d)(2)항에

2) 이 조항의 첫 단어는 더 작은 경우일 것임.

3) 숫자 '2'가 아마도 누락되었을 것임.

따른 보고 및 기타 관련 정보, 그리고 국가목표에 대한 ‘적정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이 조 (d)(2)항에서 언급한 보고서 수령 후 18개월 이내, 169A항에 따라 환경청장의 규제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장 169A항에 따라 공표된 규정은 영향권 내 주가 이 항에 따라 공표된 규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배출한도, 준수 일정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기 위해 이 장 110조의 이행계획을 12개월 이내 수정함을 요한다.

(f) 그랜드 캐년 가시성 이동위원회. 환경청장은 (c)(1)항에 따라 12개월 이내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관련하여 가시성이동위원회를 수립하여야 한다.[42 U.S.C. 7492]

D.

파트 D의 1. 달성 제외 지역 개요

- 171조. 용어 정의
- 172조. 달성 제외 계획 규정 총괄
- 173조. 허가 요건
- 174조. 계획 절차
- 175조. 환경보호청의 보조금
 - [175A조. 유지보수 계획]¹⁾
- 176조. 주 정부간 이동 위원회
 - [176A조. 주간 교통 위원회]¹⁾
- 177조. 비달성지역의 신규 자동차배출기준
- 178조. 지침 문서

1) 원본이 그러함. 장의 조에 명시된 바와 일치하지 않음.

179조. 과업 실패에 대한 제재 및 영향

179B조. 해외 국경 지역

용어 정의

171조.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¹⁾,

- (1) 향후 적정 증가량. 이 용어는 이 파트에서 요구되거나 해당 일자까지 해당 국가 대기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청장이 적정하게 요구할 수 있는바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연간 감축증가량을 의미한다.
- (2) 달성 제외 지역. 이 용어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107(d)의 의미 내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최저 달성 가능한 배출량’이란 용어는 특정 공급원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반영하는 배출 비율을 말한다.
 - (A) 공급원 종류나 부문의 경우 어느 주의 이행계획에 포함된 가장 엄격한 배출한도, 다만 예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이와 같은 한도를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B) 공급원 부문이나 범주에서 실제로 달성된 가장 엄격한 배출한도 중 가장 엄격한 것.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용어를 적용한다고 해서 예정 신규 공급원이나 개조 공급원이 해당 신규 성과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양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4) ‘변경사항’ 및 ‘변경된’이란 용어는 이 법 111(a)(4)항에서 사용된 ‘변경’ 용어와 같은 것을 뜻한다.[42 U.S.C. 7501]

1) 관련 규정은 공법 95.95(부록), 129(a) 및 129(c)항을 참조.

달성 제외 계획 규정 개요

172조. (a) 분류 및 달성 일자

(1) 분류. (A) 국가 대기질 기준과 관련하여 107(d)항에 따라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공표하는 날이나 그 후에, (혹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에 유효한 기준 수정안을 포함) 환경청장은 (2)항에 따라 달성일자를 적용할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그 지역을 분류할 수 있다. 달성 제외 지역에 대한 해당 분류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그 지역의 달성 제외의 엄격성 및 해당 지역의 기준 달성도를 규정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염관리대책의 활용성 및 개연성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B) 환경청장은 (A)항의 분류방법을 발표하는 공지를 연방기록부에 발표하여야 하는데, 다만 환경청장이 적어도 90일 동안 서면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분류는 미합중국법전 5장 553조~557조(통지 및 의견)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환경청장이 이 분류에서 요구된 계획제출서와 관련하여 110조 (k) 혹은 (l)항의 최종 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C) 이 조항은 이 파트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분류와 관련된 달성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달성 제외 지역의 달성 일자(A)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과 관련하여 달성 제외 지역의 달성 일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107(d)항에 따라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날짜로부터 5년 이내, 달성을 할 수 있는 날짜이어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정도로 달성 제외로 지정된 날짜로부터 10년보다 적은 기간 동안 달

성 제외의 엄격성 및 오염물질조치의 이용 가능성 및 개연성을 고려하여 달성일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 국가 대기질 부수 기준과 관련하여 달성 제외로 지정된 지역의 달성일자는 107(d)항에 따라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날짜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달성을 할 수 있는 날짜이어야 한다.

(C) 어느 주에서 신청한 때, 환경청장은 다음의 경우 (A) 혹은 (B)조항에서 환경청장이 결정한 달성일자를 추가로 1년 동안(이후 ‘연장기간’으로 칭함) 연장할 수 있다.

(i) 주가 해당이행계획에서 그 지역과 관련된 모든 요건 및 공약을 준수 완료한 경우,

(ii) 환경청장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 관련 국가 대기질 기준의 최소 초과사항 이하로 연장연도 이전 연도에 그 지역에 발생한 경우

1년 연장기간은 2번 이상 어느 달성제외 지역에 대해 이 조항에서 발효할 수 없다.

(D) 이 조항은 이 파트의 다른 규정에서 달성일자가 특별히 규정된 달성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b) 계획 제출 일정. 환경청장이 107(d)항에 따라 국가 대기질 기준과 관련하여 달성 제외로 지정된 지역을 공표하는 시점에, 환경청장은 (c)항 및 110(a)(2)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획이나 계획수정안(계획 항목 포함)을 그 지역의 주가 제출하는 것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일정은 (c)항 및 110(a)(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이나 계획수정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최소한 일자, 달성 제외 지정일자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면서 날짜를 포함하여야 한다.

(c) 달성 제외 계획 규정. 이 파트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이 계획 규정(계획 항목 포함)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 (1) 개요. 이 계획규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적정하게 이용 가능한 관리대책의 이행을 규정하여야 하며(최소한 적정한 가용 통제 기술을 채택하여 지역의 기존 공급원에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것 등),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달성을 규정하여야 한다.
- (2) RFP. 이 계획 규정은 향후 적정 증가량을 요구하여야 한다.
- (3) 이 계획규정은 해당 지역에서 관련 오염물질 공급원에서 나오는 실제 배출 가스를 정확히, 작성한 종합목록을 포함하며, 환경청장이 이 파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정기 수정사항도 포함한다.
- (4) 확인 및 수량화 작업. 이 계획규정은 해당 지역에서 주요 신규 또는 변경 고정 공급원의 건축 및 가동으로 인해 173(a)(1)(B)항에 따라 허용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명백히 확인하고 수량화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이 목적을 위해 수량화한 배출량이 향후 적정 증가량의 달성과 일치하고 해당달성일자까지 해당 국가 대기질 기준의 달성과 저축되지 않음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하여야 한다.
- (5) 신규, 변경 주요 고정 공급원에 대한 허가. 계획 규정은 173조에 따라 달성 제외 지역에서 어느 곳이든 신규 혹은 변경 주요 고정 공급원의 건축 및 가동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 (6) 기타 조치. 계획 규정은 집행 가능한 배출 한도, 그리고 이 파트에서 명시된 해당달성일자까지 해당 지역에서 기준의 달성을 규정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대로, 기타 관리대책, 수단이나 기법(수수료, 판매허가 및 배출권 경매 등 경제

적 인센티브를 포함) 뿐만 아니라 준수 일정 및 시간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7) 110(a)(2)항의 준수.. 계획규정은 110(a)(2)항의 해당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8) 동등 기법. 주에서 신청하는 때, 환경청장은 동등한 모델링, 배출목록 및 계획 절차 등의 활용을 허용할 수 있지만, 다만 예정기법이 모두 합쳐서 환경청장에 명시한 방법보다 덜 효과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9) 비상조치. 이 계획은 지역에서 향후 걱정하게 감축량 증가를 하지 못할 경우, 혹은 이 파트에서 적용 가능한 달성일자까지 국가 대기질 주요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조치를 취해 이행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주나 환경청장이 향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유효할 비상조치로 계획 수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d) 계획 준수불이행 발견에 대응하여 필요한 계획 수정. 110(k)(5)항(계획 수정 요청) 따라 환경청장의 조사결과에 대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 달성 제외 지역의 계획 수정은 환경청장이 명시한 계획의 하자를 수정하고, 110조 및 이 파트의 해당 계획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수정 요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날짜를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적절히 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의 해당요건과 일치하고 승인 가능하고, 적합한 계획을 주에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청장은 해당되는 때, 그리고 때때로 1990년도 청정 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규정된 지침, 해석이나 정보를 고려하여 서면 지침, 해석서 및 정보를 주에 제공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 향후 기준의 수정. 환경청장이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 일자 후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완화한 경우, 환경청장은 완화 후 12개월 이내, 완화일 현재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한 요건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완화 전 달성 제외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제수단보다 덜 엄격한 통제수단을 규정하여야 한다. [42 U.S.C. 7502]

허가 요건

173조. (a) 개요. 172(b)(6)¹⁾에서 요구된 허가 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 건축 및 가동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기준 배출량 측정을 위해, 110조 및 이 파트에서 승인된 해당 이행계획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서, 허가 부서는 다음 사항을 판단한다.

(A) 공급원이 가동을 시작할 시점까지, 충분한 상쇄 배출감축량을 달성하였는지,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존 공급원에서, 주요 배출시설이 아닌 신규 또는 변경 공급원에서, 그리고 예정 공급원에서 나오는 총 허용배출량이 향후 적정증가량을 나타낼(172조에 따른 계획규정과 함께 고려할 때) 만큼 건축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존 공급원의 총 배출량보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충분히 적을 것인지, 또는

(B) 어느 구역(달성 제외 지역 내)에 소재한 신규, 변경 주요 고정 공급원으로 환경청장이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는 구역으로 확인한 경우에, 건축도시개발부 장관과 상의하여, 예정 신규 혹은 변경 주요 고정 공급원에서 비롯되는 오

1) 이 참조내용은 '172(c)(5)이어야 함.

염물질¹⁾ 배출량이 172(c)항의 신규 혹은 변경 주요 고정 공급원에서 이 지역과 관련된 오염물질에 허용된 양을 초과하는 배출수준을 초래하지도, 기여하지도 않은지

- (2) 예정 공급원이 최저 달성 가능한 배출량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지
 - (3) 예정 신규 혹은 변경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해당 주에서 그 자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혹은 감독 법인이, 그 자가 관리하거나 그 자와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주요 고정식 공급원이 배출한도를 따르고 이 법의 모든 해당배출한도 및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 일정에 있음을 증명했는지²⁾
 - (4) 환경청장이 이 파트의 요건에 따라서 건축 또는 변경예정인 공급원이 있는 달성 제외 지역의 경우 해당이행계획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는지.
 - (5) 예정공급원과 관련하여 대체 부지, 크기, 생산과정 및 환경관리방법에 대한 분석으로 예정공급원의 혜택이 예정공급원의 장소, 건축이나 변경의 결과로 환경비용 및 사회비용보다 상당히 비중이 큰 점이 입증되는지
- (1)항의 허가 발급 선행필수조건인 배출감축은 허가를 발급할 수 있기 전에 연방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b) 과거 증가 허용량 사용의 금지. 172(b)(5)항의 요건을(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충족하기 위해 해당 이행계획에 포함된 증가 허용량은 110(a)(2)(H)(ii)조항(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에 따라 혹은 110(k)(1)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고, 허용량을 명시한 해당이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의 용도로는 유효하지 않다.

1) 원본이 그러함. ‘그’ 단어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와’ 단어는 삭제되어야 함.

(c) 상쇄. (1) 신규 혹은 변경 주요 고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달성 제외 지역에서 같은 공급원이나 다른 공급원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감축량을 구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증가분에 대해 이 파트에서 유효한 상쇄 요건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주에서 (A) 다른 지역이 공급원의 소재지역보다 같거나 높은 등급의 달성제외 분류지역이고, (B) 그와 같은 다른 지역의 배출량이 공급원이 소재한 달성 제외 지역에서 국가 대기질 기준의 위반에 기여한 경우에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다른 달성제외 지역에서 배출감축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배출감축은 신규 혹은 변경 공급원이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집행 가능하여야 하며, 신규 또는 변경 공급원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총 배출 증가량이 그 지역의 동종 혹은 다른 공급원에서 나오는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동량으로 또는 해당되는 경우 크게 감소된 양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법에서 달리 요구한 배출감축량은 그와 같은 상쇄 요건의 목적을 위해 배출감축량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이 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우발적 배출감축량은 배출감축량이 (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목적에 맞게 배출감축량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d) 통제기술정보. 주는 이 조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통제기술정보는 RACT/ BACT/LAER 정보센터를 통해서 다른 주에,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환경청장에게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e) 로켓 엔진이나 모터. 주의 허가당국은 다음의 조건으로 로켓엔진이나 모터를 시험하는 기존 공급원이나 변경 주요 공급원에서, 로

켓엔진 및 모터 시동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를 대체수단이나 혁신적 수단으로, 또 시동 관련하여 세척의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공급원에게 허용하여야 한다.:

- (1) 어떠한 예정변경이든 이 항의 입법일자에 이 엔진에 대한 시험허가를 받은 기존 공급원에서 로켓 엔진이나 모터 실험을 확대하기 위함.
- (2) 공급원은 매년 결정된 대로, 허용수치 이상의 배출증가량에 대해 상쇄수단을 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모든 이용 가능한 상쇄수단이 사용 중에 있으며, 충분한 상쇄수단이 공급원에 이용할 수 없음을 주의 허가당국이 만족하게끔 입증할 것.
- (3) 공급원은 로켓엔진이나 모터 실험이 국가보안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하다는 조사결과 문서를 국방부, 교통부, 국립항공우주국이나 기타 연방관계기관에서 확보하였음.
- (4) 공급원은 스스로 직접적으로 상쇄하지 못한 허용 수치 이상의 배출증가량을 상쇄할 목적으로 허가 당국에서 부과된 대체 수단을 준수할 것임.

대체 상쇄 수단을 부과하는 대신, 허가당국은 주의 당국에 배출수수료를 납부하라고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채택된 고정 공급원의 통제 조치에 대한 평균 비용의 1.5배보다 크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허가 당국은 그 지역에서 배출감축량을 최대로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이용하여야 한다.[42 U.S.C. 7503]

계획 절차

174조. (a) 개요. - 오존, 일산화탄소 혹은 PM.10 달성 제외 지역의 경우, 관할 주 및 영향권 내 지방 정부의 선임관리는 182(a)(1) 및

187(a)(1)항에 언급된 목록을 제출하는데 요구된 날짜 이전에,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이 항에 따라서 채택된 계획 절차를 필요한 때 합동으로 심사하고 보완하거나 이 항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계획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주 및 지방의 선임 관리는 이 행계획수정안 중 어떤 요소를 주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나 지역기관이, 지방 정부, 지역부서 또는 주가 합동으로 개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인지(집행을 포함한 수단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 파트에서 요구된 이행계획은 주에서 인증한 단체가 지방정부의 선임관리와 의논을 하고, 이 항의 두 번째 문장의 결정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이 단체는 영향권 내 지역에서 지방 정부의 선임 관리, 그리고 주의 대기질 계획기관의 대표자, 주의 교통기획기관, 미합중국법전 23장 134조에 따라 지역의 지속적, 협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기획과정을 실시할 대도시계획단체, 이 법의 이행규정에 따라 대기질 관리계획과정업무를 담당하는 단체 및 기타 이 파트에서 요구된 계획을 개발, 제출하거나 이행하는 기타 등을 포함한다. 이 단체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이들 역할을 수행했던 한 단체가 될 수 있다.

(b) 조정. 108(e)항에 언급된 지속적인 교통 대기질 계획과정에 따른 이행계획규정 및 후속계획수정은 미합중국법전 23장 134조에 따라 요구된 지속적이고, 협조적이며 종합적인 교통계획과정과 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획과정은 이 파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c) 공동 기획. 하나 이상의 주에 있는 달성 제외 지역의 경우, 영향권 내 주는 이 조에서 언급된 계획절차의 전부 혹은 부분을 합동으로, 주 사이의 계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착수, 이행할 수 있다.[42 U.S.C. 7504]

환경보호청의 보조금

175조. (a) 환경청장은 174(a)항에 따라 주에서 인정한 교통이나 대기질 유지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의 선임 관리들로 구성된 단체에 이 파트에서 적정한 계획수정 개발비용의 지급을 위해 보조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b) (a)항의 단체에 주는 보조금액은 이 조항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서 처음 2년의 회계연도에 대해 이 파트의 계획수정 개발추가비용의 100퍼센트이어야 하며, 교통이나 대기질 관리 계획을 위한 단체에 연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이 조의 보조금은 건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42 U.S.C. 7505]

유지관리 계획

175A조. (a) 계획수정. 어떤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달성 제외 지역을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국가대기질 주요기준을 달성한 지역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해 107(d)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하는 주는 재지정 후 최소한 10년 동안 관련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해당 주의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유지관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대로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b) 후속 계획 수정. 107(d)의 달성 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다시 지정하고 8년 후, 주는 (a)항에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0년 동안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주의 이행계획의 추가 수정사항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계획 승인 전 적용 가능한 달성 제외 요건. 계획수정이 승인을 받고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달성 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경우, 이 파트의 요건은 그 지역에 대하여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

(d) 비상사태 규정. 이 조에서 제출된 계획수정안은 달성 지역으로 지역을 다시 지정한 후 발생한 기준 위반사항을 신속히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한 때 그러한 비상사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달성 지역으로 지역을 다시 지정하기 전에 그 지역 관련하여 주의 이행계획에서 포함되었던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감독에 대한 모든 조치를 주가 이행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달성 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지역이 관련 국가 대기질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결과 주가 주의 이행계획을 수정하는 요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청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주의 이행계획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주에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U.S.C. 7505a]

특정 연방 지원에 대한 제한

176조. [(a)항 및 (b)항은 공법101.549, sec. 110(4), 104 Stat. 2470.]으로 폐지됨.

(c) (1) 어떠한 연방정부의 부서, 기관이나 대행단체도 110조에 따라 이행계획이 승인되었거나 공표된 후 이를 따르지 않는 활동에 개입,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허가, 허락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미합중국법전 23장 134조에 따라 지정된 어떠한 대도시계획단체도

110조에서 승인되거나 공표된 이행계획을 따르지 않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행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함은 그 부서기관이나 대행단체의 장의 확실한 의무이다. 이행계획의 준수는 다음을 말한다.

(A) 국가 대기질 기준 위반건수 및 심각성을 줄이거나 없애고, 기준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의 목적을 준수함.

(B) 이 활동은

(i)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준을 다시 위반하거나 기여하지 않는다.

(ii) 어느 지역에서 기준을 기준에 위반한 회수나 심각성을 높이지 않는다.

(iii)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준이나 필요한 중간 배출량 감축이나 기타 이정표를 기한 내 달성하는 것을 지연하지 않는다.

준수사항 판단은 가장 최근의 배출량 산정수치에 기초하며, 이 산정수치는 대도시계획단체 혹은 기타 이러한 산정 권한이 위임된 기관에서 측정한 대로 가장 최근의 인구, 고용, 여행 및 혼잡 수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2) 미합중국법전 23장 혹은 도시대중교통법에 따라 개발된 교통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여기서 차폐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적용할 수 있고 이 법에서 승인된 해당이행계획의 교통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연방기관도 교통계획,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승인, 채택하거나 기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계획,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이 법에서 유효한 해당이행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특히, (A) 어떠한 교통계획이나 교통개선프로그램도 미합중국법전

23장이나 도시대중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대도시 계획단체에서 채택할 수도 없고 계획 및 프로그램이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배출량이 해당이행계획에 포함된 필수 배출감축량 및 자동차의 배출량 산정 수치와 일치하고, 그리고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1)(B)항의 요건을 따를 거라는 최종 결정에 이를 때까지는 일치되는 것으로 대도시계획단체에서 확인할 수도 없다.

- (B) 미합중국법전 23장이나 도시대중교통법에 따라 어떠한 대도시계획단체나 기타 기금수령인도 이 프로그램이 해당이행계획에 포함된 일정과 일치하는 교통통제대책을 적시에 이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프로젝트의 교통개선프로그램을 채택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아야 한다.
- (C) 교통프로젝트는 미합중국법전 23장이나 도시대중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기금수령인이나 대도시계획단체에서 채택하거나 승인할 수 있거나 대도시계획단체에서 일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다음 요건이나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통부에서 승인, 채택하거나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i) 이 프로젝트의 모태는 준수 계획 및 프로그램이다.
 - (ii) 프로젝트의 설계개념 및 범위는 프로젝트의 모태인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준수 조사결과 이래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 (iii) 프로그램의 준수 결정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설계개념 및 범위는 배출량 측정에 적합하다.
- (D) (C)항에 언급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인한 예상 배출량이 달성 제외지역 내 해당교통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예상배출량과 함께 고려할 때 해당이행계획에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배정된 배출감축예상량 및 일정을 초과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증명된 경우에만 해당이행 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3) (4)(C)항에 언급된 이행계획수정안이 승인되는 시점까지, 그러한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준수에 다음의 경우에 증명될 것이다.

(A) 교통계획 및 프로그램이

- (i) 가장 최근에 산출한 자동차 공급원 배출량과 일치하며,
- (ii) 해당이행계획에서 교통통제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규정을 만들고,
- (iii) 오존 및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 지역과 관련하여, 182(b)(1) 및 187(a)(7)항과 일치하는 연간배출감축량에 기여함.

(B) 교통프로젝트는

- (i) (A)항에 규정되거나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간, 순응 교통계획 및 프로그램이나, 이 입법일 전 3년 이내 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교통프로그램이 모태이며,
- (ii)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지역에서 일산화탄소 기준 위반건수 및 심각성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B)(ii)항과 관련하여, 교통프로그램에 대해 혹은 프로젝트개발의 환경심사단계 중 전부 수락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준수 결정의 일환으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4) (A)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해, 환경청장은 (1)항에 언급된 활동의 적합성을 결정하고(교통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활동 관련된 사

항을 환경청장에게 통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교통부 장관의 동의로 교통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에 적합성을 증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공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 및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304조에 따라 기준 및 절차 공표를 촉진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지원은 이 공표를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B) 절차 및 기준은 적어도,

(i) 대도시계획단체 및 교통부장관이 적합성 결정을 하기 전에 주 및 지방 대기질 기관 및 주의 교통부서와 함께 착수할 자문 절차를 다루며,

(ii) 적합성 결정을 위한 적당한 빈도수를 다루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은 3년 이상의 간격으로 하며,

(iii) 유지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적합성 결정을 하는 방법을 다룬다.

(C) 이러한 절차는 또한 각 주에서 이 항의 적합성 요건을 따르는 계획,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적합성 평가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 이행계획 수정안을 그 입법일자에서 23개월 이내 환경청장 및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D) 미합중국법전 23장이나 연방통과법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거나 승인된 교통계획 및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청장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승인이나 이행 전에 교통신호동시성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교통계획,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합성 결정을 위한 실시한 후

원 지역배출량 분석은 적합성을 결정하기 전에 자금지원
이나 승인을 받거나 이행된 프로젝트의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¹⁾ 적용 가능성. 이 항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A)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관련하여 오염물질 및 달
성 제외 지역

(B)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나중에 환경청장이 달
성 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었고 달성 제외 지정지역에 대해
특정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175A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5조항에도 불구하고¹⁾, 이 항은 국가의 특정 대기질 기준에 대
해 처음에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후 1년까지 107(d)(1)항에
서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
는다. 이 조항은 달성 제외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의 국
가 대기질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75(A)항에 따라 유지관
리계획으로 달성제외지역에서 달성 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었거
나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모든 국가 대기질
기준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
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의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이
전의 기존 국가 대기질 기준을 포함)

(d) 대기질 관련 교통 영향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지지할 권한이 있
는 연방정부 부서기관이나 대행단체는 주나 기타 관할구역 사이에
배정하기 위한 법정 요건과 일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가 대
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조에서 마련된 계획
의 부분들을 이행하는데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미합중

1) 법규상 한계

국법전 23장, 도시대중교통법 및 주택도시개발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 등에도 적용된다. [42 U.S.C. 7506]

주간 교통 위원회

176A조. (a) 주간 교통 지역설정 권한. 환경청장의 동의로 주지사의 청원에 의해, 환경청장은 여러 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주 사이에 이동하여 여러 주에서 국가 대기질 기준의 위반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때, 환경청장은 이들 주와 관련된 오염물질에 대해 규칙에 의해 이동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동의로, 주지사의 청원이 있는 때, (b)항에서 정한 이동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때,

- (1) 그 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 사이에 이동하여 이동지역에서 기준의 위반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환경청장이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때 이 항에서 정한 지역에 어느 주나 그 일부를 추가할 수 있거나,
- (2) 그 주가 그 일부에서 배출 통제가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기준 달성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환경청장이 생각할 근거가 있을 때 어느 주나 그 일부를 그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b) 이동위원회

- (1) 설립. 환경청장이 (a)항의 이동지역을 정할 때, 환경청장은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동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A) 그 지역의 주지사나 주지사의 수임인
 - (B) 환경청장이나 그 수임인
 - (C) 관련 이동지역의 영향을 받는 환경청지역사무소의 지역사무소장(혹은 그 수임인)
 - (D) 그 지역의 각 주를 대표하며 주지사가 임명하는 대기오염

통제관리. 각 이동위원회의 결정, 권고사항 및 환경청장에 대한 요청은 환경청장 및 지역사무소장(혹은 그 수임인) 이외의 과반수 구성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2) 권고사항. 이동위원회는 이동지역을 관통하여 오염물질이나 그 전구체가 주 사이에서 이동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주 사이의 오염완화전략을 평가하며, 관련 주에 대한 계획이 110(a)(2)(D)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조치를 환경청장에게 권고를 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자문위원회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5 U.S.C. App.).

(c) 위원회 요청. (b)항에서 설립된 이동위원회는 환경청장에게 이동지역의 여러 주와 관련하여 이행계획이 110(a)(2)(D)항의 요건을 따르는데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는 110(k)(5)에 따라 발표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요청서를 수령하고 18개월 이내 요청을 승인, 부결하거나 일부 승인 및 일부 부결을 하여야 하며, 요청을 승인하는 정도로 승인 시점에서 110(k)(5)에 따를 조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조치에서, 환경청장은 공공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에서 특정 권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요청의 승인이나 부결은 307(b)항의 의미 내 최종기관의 행위 구성요건이 된다.[42 U.S.C. 7506a]

신규 자동차 배출기준 및 달성 제외 지역

177조. 209(a)항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에서 승인된 계획규정이 있는 주는 신규 자동차나 그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통제 관련하여 모델 연도 기준을 채택,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이러한

차량과 관련하여 209(a)항에 언급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기준은 모델년도에 권리포기가 부여된 캘리포니아 기준과 동일하며,
- (2) 캘리포니아 및 그 주는 모델년도 시작하기 최소한 2년 전 이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환경청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로) 이 조나 이 법 II장의 어느 항목도 그와 같은 주에 캘리포니아 주를 충족하는 만큼 캘리포니아에서 인증된 신규 자동차나 그 엔진의 제조나 판매를 직, 간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캘리포니아 기준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인증된 자동차나 엔진과는 다른 자동차나 그 엔진을(제 3 차량) 고안하거나 고안하는 효과를 갖거나, ‘제 3 차량’을 고안하는 종류의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507]

지침 문서

178조. 환경청장은 최저 달성 가능배출 비율과 관련하여 각 주가 이 파트의 요건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108조에 따른 지침 문서를 간행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이 파트의 입법일자 후 9개월 이내 간행되어야 하며, 그 후 최소 2년마다 수정되어야 한다.[42 U.S.C. 7508]

달성 불이행 제재 및 결과

179조. (a) 주의 불이행. 이 파트에서 요구된(110(k)(5)항에 언급된 실질적인 부적합성의 조사결과에 대응하여 요구된) 이행계획이나 계획수정을 위하여, 환경청장이,

- (1) 107(d)항에서 달성제외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 적용 가능하며

이 법의 규정에서 요구된 요소를 제출하거나1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110(k)항의 요소들과 관련하여 수립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발견한 경우

(2) 107조 달성 제외 지정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 적용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서 요구된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제출서류에 기초하여 110(k)항의 제출서류를 부결한 경우,

(3) (A) 어느 주가 적합한 유지관리계획 등 (1)혹은 (2)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이 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1)항이나 (2)항에서 언급된 것 이외, 이 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110(k)(1)(A)항에 따른 제출과 관련하여 정한 최소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하거나,

(B) (A)항에서 언급된 제출서류를 전부 혹은 일부 부결하거나

(4) 승인된 계획의 요건(혹은 계획의 일부 승인)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1), (2), (3), 및 (4)항에 언급된 조사, 부결이나 결정 후 18개월 이내 하자가 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에 언급된 제재는 환경청장이 선택하는 대로 주가 준수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신의성실이 부족하다고 발견할 경우, (b)항의 (1) 및 (2)조항의 제재는 그 주가 준수단계에 들어갔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할 때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이 제재 하나를 선택하고 그 후 하자가 6개월 이내 교정되지 않으면, (b)항의 (1)조항 및 (2)조항의 제재는 주가 준수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조에서 규정된 대로 적용 가능한 기타 제재 외에, 환경청장은 대기오염 계획을 지지하는 보조금 전부나 일부를 보류할 수 있으며, 105조에서 따라 환경청장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다.

(b) 제재. (a)항에 규정된 대로 환경청장에게 이용 가능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고속도로 제재. (A) 환경청장은 주에서 제출한 자료나 사고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 안전입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향상이고 사고를 상당히 줄이거나 방지할 가능성을 낳을 거라고 장관이 결정할 경우에 안전관련 프로젝트나 보조금은 제외하고, 미합중국법전 23장에 따라, 교통부 장관이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보조금을 부여한 때, 달성 제외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금지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금지는 환경청장이 제재를 선택한 때 유효하게 된다.

(B) 안전 외에, 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보조금은 (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i) 환승 목적을 위한 자금 계획;

(ii) 여객용 버스나 다인승 차량 전용의 특정 도로나 차선의 건설이나 제한

(iii) 고용주가 고용인 출장 관련 차량 배출가스 요건에 대한 기획

(iv) 고속도로 램프 측정, 교통신호작업 및 관련 프로그램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순 배출 감축량을 달성하는 경우

(v) 언저리 및 교통회랑주차시설로 다인승차량 프로그램이나 통과 작업을 돕는 경우

(vi) 도심지나 기타 배출가스 집중 지역에서 특히 피크 활용 기간 중 도로사용 부담금, 통행세, 주차할증료나 기타 가격결정 방법, 차량제한구역이나 기간 혹은 차량등록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프로그램,

(vii) 고장 및 사고현장관리, 한시적 혼잡 및 차량정보시스템 등 관련 프로그램이 혼잡 및 배출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

(viii) 환경청장이 교통부장관과 상의하여 대기의 질을 높이고 나홀로차량 수용 능력을 고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기타 교통관련 프로그램.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는데 있어, 주는 도심지, 기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및 혼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거나 장소를 바꾸지 않도록 모색한다.

(2) 상쇄. 173조의 배출 상쇄 요건을 파트 D에서 허가가 요구된 신규 혹은 변경 공급원이나 배출 물질에 적용하는데 있어, 배출감축량 대 배출증가량 비율은 최소한 2:1이어야 한다.

(c) 달성 불이행 통지 (1) 달성 제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달성 일자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이 날짜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달성 일자 현재 그 지역의 대기질에 기초하여 그 날짜까지 기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결정을 한 때, 환경청장은 어느 지역이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결정을 한 내용 및 그 지역 등 연방기록부에 공지사항을 발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달성일자 현재 그 지역의 대기질 관련 충분한 정보나 분석사항에 기초하여 어느 때라도 그 결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d) 달성 불이행에 대한 영향. (1) (c)(2)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공지를 (달성 불이행 공고) 발표한 후 1년 이내, 달성 제외 지역 관련된 주는 이 항의 (2)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이행계획의 수정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은 110조 및 172조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그 외에, 수정사항은 환경청장이 합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술적 달성 가능성, 비용 및 기타 대기 외적인 질 및 기타 대기 관련 보건 및 환경영향에 비추어 그 지역에서 이행할 개연성이 있는 조치도 포함한다.

- (3) (1)항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달성일자는 172(a)(2)항의 규정에 제시된 것과 같은 것이며,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172(a)(2)항의 통지일자로부터’란 표현은 ‘107(d)의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날짜로부터’로, ‘달성제외로 지정된 날짜로부터’란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42 U.S.C. 7509]

해외 국경지역

179B조.¹⁾ (a) 이행계획 및 수정. 기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요구된 이행계획이나 계획수정은 다음의 경우 환경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 (1) 계획이나 수정안이 이 법의 해당조항에서 혹은 조항에서 공포된 규정에서 명시한 달성일자까지 관련 국가 대기질 기준의 달성 및 유지관리를 증명하는 요건 이외 이 법²⁾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 해당 주의 이행계획이 이 법 해당조항에서, 혹은 이 조항에서 공포된 규정에서, 미국 밖 지역에서 방출되는 배출물질에 대하여 명시한 달성일자까지 관련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 유지하는데 적합할 거라고 계획을 제출하는 주가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하는 경우

1) 179A항은 없음.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이 법’을 언급하여야 함

- (b) 오존수치의 달성. 기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의 오존 달성 제외 지역과 관련하여, 미국 밖에서 방출되는 배출물질에 대해, 해당 달성일자까지 오존의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하였을 거라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하는 주는 185조나 181(a)(2) or (5)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 (c) 일산화탄소 수치 달성. 여타 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의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 지역과 관련하여, 미국 밖에서 방출되는 배출물질에 대해, 해당 달성일자까지 일산화탄소의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하였을 거라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하는 주는 186(b)(2) or (9)항의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³⁾
- (d) PM₁₀ 수치 달성. 여타 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의 PM₁₀ 달성 제외 지역과 관련하여, 미국 밖에서 방출되는 배출물질에 대해, 해당 달성일자까지 일산화탄소에 대한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하였을 거라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하는 주는 188(b)(2)항의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42 U.S.C. 7509a]

D 2. 가

- 181조. 분류 및 달성 일자
- 182조. 계획서 제출 및 요건
- 183조. 연방 정부 오존 대책
- 184조. 주 정부간 오존 대기오염 관리
- 185조. 심각하고 극심한 오존 달성 제외 지역의 과업 실패에 대한 집행
- 185A조. 과도기 지역
- 185B조. NO_x 및 VOC 연구

³⁾ 136(b)항에서 (9)조항은 없음.

분류 및 달성일자

181조. a) 1989년도 달성 제외 지역의 분류 및 달성일자 (1)107(d)항에 따라 오존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 시행에 의해, 지정 시점에서 표1에 따라, 지역의 설계수치에 기초하여 경계지역, 경미한 지역, 중증 지역, 심각한 지역이나 극심한 지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설계 수치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가장 최근에 환경청장이 발표한 해석방법론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분류한 각 지역에 대해, 오존의 주요 기준 달성일자는 가능한 신속히, 표1에 작성되어 있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

지역 등급	설계 수치*	주요 기준 달성 일자**
경계 지역	0.121 ~ 0.138	입법 후 3년 이내
경미한 지역	0.138 ~ 0.160	입법 후 6년 이내
중증 지역	0.160 ~ 0.180	입법 후 9년 이내
심각한 지역	0.180 ~ 0.280	입법 후 15년 이내
극심한 지역	0.280 초과	입법 후 20년 이내

* 설계 수치는 ppm으로 측정한다.

**주요 기준 달성일자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로부터 측정한다.

(2) 표1에도 불구하고 1988년 오존 설계 수치가 0.190~0.280 ppm 인 중증지역¹⁾의 경우, 달성일자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7년이어야 한다(15년 대신).

(3) 오존 달성제외지역에 대해 107(d)(4)(지역지정)의 공지 발표시점에, 환경청장은 오존 달성제외지역의 분류를 나타내는 공지를 발표하여야 한다. 172(a)(1)(B)(공지 및 의견 및 사법심사 결여)의 조항은 이 분류에 적용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중증 지역'일 것임.

(4) (1)(표 1)항에서 분류한 지역의 설계 수치가 분류의 근거 수치보다 5퍼센트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다면,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최초 분류 후 90일 이내, (3)항에서 요구된 절차로, 그 지역을 다른 부문에 포함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을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그 지역의 오존에 대한 국가 대기질 주요기준을 초과한 사항, 그 지역과 다른 영향권 내 지역 사이에 오염물질의 이동 수준, 주 안팎에서의 이동, 그리고 지역에서 공급원 및 대기오염물질의 혼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 주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추가 연도에 대해 다음의 경우 위 (1)조항의 표 1에 명시된 날짜를 연장할¹⁾ 수 있다.

(A) 주가 해당이행계획에서 지역관련 모든 요건 및 공약을 준수한 경우

(B) 연장 연도 이전 연도에서 지역에서 오존의 국가 대기질 기준 수치의 초과건수가 1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 연장은 달성제외지역 한 곳에 대해 이 조항에서 2번 이상 발효될 수 없다.

(b) 신규 지정 및 재분류

(1) 달성 제외지역의 신규 지정. 107(d)(4)항에서 오존 달성지역이나 분류불능지역 및 나중에 107(d)(3)항에서 오존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지정 시점에서 법규 시행에 의해 (a)항의 표 1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때에, 그 지역은 이 파트의 1, 110조에 따른 같은 요건과, 그리고 (a)(3)항에서 통지 시점에서 그 지역이 분류되었다면 적용될 이 파트의 1을 적용한다. 다만, 그와 같은 요건과 함께 적용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지역'일 것임

할 수 있는 확정불변일자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 일자와 이 조항에서 지역이 분류된 일자 사이에 시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법규의 시행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달성 불이행시 재분류. (A) 오존 달성제외 지역의 해당 달성일자(연장기간 포함)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지역의 설계 수치(달성일자 현재)에 기초하여 그 날짜까지 주가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각한 지역이나 극심한 지역을 제외하고, 그 날짜까지 달성하지 못했다고 환경청장이 발견하는 (a)항의 표1부터 다음의 높은 등급에 따라 법규 시행에 의해 다시 분류를 하여야 한다.

(i) 그 지역에 대해 다음 높은 단계 분류, 혹은

(ii) (B)항에서 요구된 통지 시점에 결정된 대로 지역의 설계 수치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

어느 지역도 (ii)조항에 따라 극심한 지역으로 다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

(B) 환경청장은 달성일자 후 6개월 이내, 연방기록부에 공지사항을 발표하고 (A)항에 따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판단한 지역을 구별하고 (A)항에서 언급된 재분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임의적 재분류. 환경청장은 (a)항의 표1에 따라서 그 주의 달성제외지역을 더 높은 등급으로 다시 분류하도록 하는 주의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요청을 수락하고 환경청장의 조치 및 요청 사항을 연방기록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 (4) 중증지역의 기준달성미달 .(A) 중증 지역이 해당 달성일자까지 (연장기간 포함) 오존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85조의 수수료 조항은 그 지역 내에서 적용하며, 182(c)(2)(B) 및 (C)항의(향후 적정 증가량 표시 및 NOx 통제) 백분율 감축 요건은 계속 그 지역에 적용하며, 그리고 주는 기준이 달성될 때까지 기준미달 후 3년 간격으로 비율 감축량을 달성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 파트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한다.

(B) (A)항의 요건 외에, (A)항에 언급된 중증 지역의 오존 설계 수치가 해당달성일자 연도에 0.140ppm을 넘을 경우, 또는 지역이 182(g)에 따라 가장 최근의 이정표에 미달한 경우, 극심한 지역에서 이 파트의 1에서 적용 가능한 신규 공급원 심사요건은 그 지역에서 적용되며, ‘주요 공급원’ 및 ‘주요 고정공급원’이란 용어¹⁾는 극심한 지역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C) (A)항에 속하지만 (B)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A)항의 요건 외에, (B)항에 언급된 조항은 해당달성일자로부터 3년 후에 적용하며, 다만, 그 지역이 3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준을 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D)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환경청장이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준수 결정 방법을 수정한 경우, 이 기준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0.140에 비유할 수 있는 설계 수치나 기타 지표는 (B)조항 및 (C)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0.140 대신에 사용하여야 한다.

(c) 용어 참고 기준. (1) 이 파트에서 ‘경계 지역’ ‘경미한 지역’ ‘중증 지역’ ‘심각한 지역’ ‘극심한 지역’으로 표시한 것은 이 조에서 각각 ‘경계 지역’ ‘경미한 지역’ ‘중증 지역’ ‘심각한 지역’ ‘극심한

1) ‘조건’이어야 함

지역'으로 분류된 참고기준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이 파트에서 '다음 높은 분류단계' 혹은 비교 가능한 용어를 언급한 것은 표1의 설계 수치에서 높은 단계와 관련된 분류 기준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2 U.S.C. 7511]

계획서 제출 및 요건¹⁾

182조. (a) 경계지역. 경계지역의 전부 혹은 일부가 소재한 주는 경계지역과 관련하여(혹은 그 일부, 이 항에서 명시된 정도로)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계획수정안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제출 완료한 정도는 제외한다.

(1) 목록.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해당 주는 환경청장이 제공한 지침에 따라 172(c)(3)항에 언급된 대로 모든 공급원의 실제 배출물질 목록을 정확히, 종합하여 현 시점에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주 이행 계획의 교정.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 내, 해당 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오클라호마시에서 발생한 참사구조지원, 테러방지, 추가 재난지원 및 다른 목적으로 1995년 9월 30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폐지하는 비상사태보조충당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 1004조 및 1005조는 다음과 같다.

행정 조항

1004조. 1995년 회계연도에 대해 충당금법에서 이용 가능한 기금 중 어느 것도 시험용이나 IM240 차량검사 유지관리 개선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이행하여 환경청이 주에게 청정대기법182조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가 이 요건 충족을 위해 하나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5조. 1995년 회계연도에 대해 충당금법에서 이용 가능한 기금 중 어느 것도 차량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에서 여행 감소조치를 이행하는 요건을 강요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환경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청정대기법 304조는 이 법 입법일자에 시작하고 1995/9/30에 끝나는 기간 중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 기술 수정안. 경계지역(혹은 환경청장의 재량 범위 내, 그 일부)의 경우, 181(a)항의 분류일자에서 6개월 이내,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108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발표한 지침에서 해석된 대로, 172(b)에서(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요구된 것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 관련 계획에 요건을 포함할(혹은 요건을 추가할) 조항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B) 차량검사유지관리 유보조항 (i) 경계지역(혹은 환경청장의 재량권 내, 그 일부)의 경우, 차량배출관리검사 및 유지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이미 포함하거나 172(b)(11)(B)항에서(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요구하여 포함되었던 계획의 경우, 해당 주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직후, 172(b)(11)(B)항에 따라 공표된 환경청장의 지침에서 해석된 대로 하원보고서(번호995.294, 95회 의회, 1회기, 281.291 (1977)에 규정된 프로그램보다 더 엄격한 차량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이나 그 계획에 이미 포함된 프로그램 중 더 엄격한 프로그램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ii)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법에서 요구된 자동차검사유지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조사 및 감사내용을 고려하여 주에 대한 지침을 심사, 수정, 갱신하고 연방기록부에 다시 발표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최소한 검사회수, 검사차량종류(달성 제외 지역에 등록된 임대차량 포함), 소유자 및 운행자의 차량유지관리, 주의 감사, 시험방법 및 조치(중앙

관리 혹은 지자체 관리방법 무관),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의 질, 취급구성부품, 제조업체부터 리콜통지를 받은 차량이 통지를 접수 완료했다는 보증,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 차량 결함 발생 후 재시험은 교정조치의 증거 및 뒷거래나 부적절한 급유의 경우에 차량등록취소규정 등을 다루어야 한다. 해당 주 이행계획에 합체될 이 지침은 영향권 내 소비자를 위해 유행에 따라 적절히 탄력성을 계속 부여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프로그램을 해당 주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m)(3)항(배출관리진단)에 따라 환경청장이 규정을 공표한 후 2년 이내 해당 주는 이 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규정할 수 있는 요건충족을 위해 프로그램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C) 허가프로그램.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i) 지역에 소재 예정인 신규 혹은 변경 주요 고정공급원(오존 관련)의 건설, 가동과 관련하여 172(c)(5)항 및 173조의 허가요구 조항

(ii)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공표된 환경청장의 규정에서 해석한 대로, 172(b)(6)항에서(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요구된 허가프로그램관련 계획에 있는 요건을 수정할(혹은 추가할) 조항

(3) 정기 목록

(A) 일반 요건. (1)항의 목록 제출 후 그 지역이 달성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때까지 3년 기간이 끝나기 전, 해당 주는 (a)(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정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배출물질 확인서. (i)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해당 주는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는 해당 주에 환경청장이 규정할 (혹은 주에서 개발한 동등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원 등급이나 범주와 관련하여, 공급원의 실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나타내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주의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초 확인서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확인서는 그 후 적어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확인서는 수록된 정보가 보증인이 최대 아는 범위 내 정확하다는 보증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ii) 해당 주는 (i)조항을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간 25톤 이하 배출하는 등급이나 범주의 고정공급원에 적용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는¹⁾ (1) 혹은 (3)(A)에 따른 제출서류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배출계수나 기타 환경청장에게 수용 가능한 방법을 활용한데 기초하여 그러한 등급이나 범주의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물질목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4) 일반 상쇄요건. 이 파트의 배출상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 배출감축량 대 총 배출증가량의 비율은 최소한 1.1:1이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해당 주에게 이 항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이나 기타 항목을 제출하기 위한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의 요건은 경계지역에서 해당달성일자까지 오존 기준 달성을 해당 이행계획이 규정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1) “조항”이어야 함.

요건 대신에 적용되어야 한다. 172(c)(9)항(비상조치)은 경계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b) 경미한 지역. 경미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경미한 지역과 관련하여, (a)항(경계지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하고, 이 항에서 언급한 해당이행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적정 증가량에 대한 계획조항.

(A) 일반규칙. (i)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해당 주는 이 개정안 입법 연도 후 배출량 증가를 고려하면서 최소한 기준배출량의 15퍼센트가 되도록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감축량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이행계획 수정안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이 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달성일자까지 오존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대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연간배출감축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질소산화물의 추가 감축량이 달성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환경청장이 판단하는(환경청장이 계획이나 계획수정안을 승인할 때) 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ii) 15퍼센트 이하는 다음 사항을 주에서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하는 경우에 (i)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I) 신규 공급원 심사 규정이 극심한 지역의 경우에(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요 공급원' 및 '주요 고정공급원'이란 용어는(302조의 공급원 외에) 인접 지역 내 소재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최소 연간 5톤 배출하거

나 배출할 수 있고,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고정공급원을 포함하여야 경우는 제외) (e)항에서 요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도로 달성 제외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음.

(II)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이 모든 기존의 주요 공급원에 필요함(I)조항에 규정됨), 그리고

(III) 15퍼센트 이하의 비율을 반영하는 계획이 기술적 달성도에 비추어 그 지역에서 이행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조치를 포함함.

이 조항의 낮은 비율 자격을 위해, 어느 주라도 지역관련 계획에 상위 단계 범주의 달성제외 지역에서 같은 공급원 범주의 공급원이 실제로 성취된 조치를 포함되어 있음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증명하여야 한다.

(B) 기준 배출량. (A)항의 목적을 위해, ‘기준 배출량’이란 용어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달력연도 중 그 지역의 모든 인위적 공급원에서 나오는 실제 VOC 혹은 NOx 총배출량을 말하며, (D)항의 (i)항 및 (ii)항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제거할 배출량은 제외한다.

(C) 감축량 거래권의 일반 규칙. (D)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출감축량은 해당이행계획에서 요구된 조치,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칙이나 V장의 허가 이행으로 인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년 현재, 실제 발생한 정도까지 (A)항에서 요구된 15퍼센트에 육박하는 배출감축량은 거래 가능하다.

(D) 감축량 거래권의 제한. 다음 조치로부터 (A)항에서 요구된 15퍼센트 감축량에 육박하는 배출감축량은 거래될 수 없다.

(i) 1990/1/1일까지 환경청장이 공표한 자동차 배기가스나

증기배출가스와 관련된 조치

(ii)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 입법일자 까지 환경청장이 공표하거나 211(h)항에 따라 공표할 것으로 요구된 레이 드(reid)증기압 관련 규정

(iii) (a)(2)(A)항에서 요구된 조치(환경청장의 지침에서 규정된 이행계획의 수정사항관련)

(iv) 1990년도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후 제출하도록 (a)(2)(B)항에서 요구된 조치(자동차검사유지관리 프로그램 수정사항)

(2)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 해당 주는 다음과 관련하여 172(c)(1)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의 이행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해당이행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A) 환경청장이 1990년도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와 달성일자 사이에 발표한 CTG 문서에서 차폐 지역의 VOC 공급원 범주

(B)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발표된 CTG에서 차폐 지역의 모든 VOC 공급원

(C) 그 지역에 소재한 기타 모든 VOC 주요 고정식공급원.

(A)항에 언급된 수정사항은 관련 CTG 문서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환경청장이 제시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B) 및 (C)항에 언급된 공급원에 대한 수정사항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가능한 신속히, 1995/5/31일 이내 필요한 조치의 이행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휘발유 증기 회수

(A) 일반 규칙.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해당 주는(B)항에 규정된 날짜까지 휘발유급유장치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자동차 급유로 인한 휘발유 증기 배출가스 회수설비를 설치, 가동하도록 요구하는 이행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설비의 효과성에 대해 적절한 대로 지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월 1만 갤런 이상 휘발유를 판매하는 시설에만 적용된다.(325¹⁾조에 정의된 대로 소규모 자영업 휘발유 상인인 경우 월 5만 갤런)

(B) 유효일자. (A)항에 따라 요구된 일자는

(i)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공사를 시작한 휘발유 급유시설의 경우 채택일자 후 6개월

(ii) 채택일자 전 2년의 기간 동안 평균 월 판매량에 기초하여 최소 월 10만 갤런 휘발유를 급유한 시설의 경우 채택일자 후 1년

(iii) 기타 휘발유 급유시설의 경우 채택일자 후 2년

(i) 항 및 (ii)항에서 언급된 휘발유 급유시설은 (i)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C) 용어의 기준.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채택 일자’란 용어의 기준은 자동차 급유로 인한 휘발유증기배출가스 회수 설비의 설치 및 가동 요건을 주에서 채택한 일자를 참고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 자동차검사유지관리. 경미한 지역의 경우, 해당 주는 (a)(2)(B)항 및(172(b)(11)(B)항에 요구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언급된 자동차검

1) “324”조와 관련될 것임.

사유지관리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행일정을 이미 포함하였음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의 수정안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일반 상쇄요건. 이 파트의 배출상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 배출감축량 대 총 배출증가량의 비율은 최소한 1.15:1이어야 한다.

(c) 중증 지역. (4)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증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중증지역과(혹은 그 일부, 이 항에서 명시된 정도까지) 관련하여, (b)항(경미한 지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하고, 이 항에서 언급한 해당이행계획의 (계획 항목 포함)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 지역의 경우, '주요 공급원' 및 '주요 고정공급원'(302조의 공급원 외에)이란 용어는 인접 지역 내 소재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최소 연간 50톤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성이 있고,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고정공급원을 포함한다.

(1) 감시활동 증대. 오존대기오염에 대한 더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공지 및 공공 의견 개진 후, 오존,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감시활동 증진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무엇보다도 감시자의 장소 및 유지관리를 다루어야 한다. 감시활동 증대와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규칙을 공표한 직후, 해당 주는 이 규칙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채택, 이행하고, 오존,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농도 및 이들 물질의 배출량을 감시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착수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 대한 주의 이행계획은 대기오염물질의 환경 감시활동을 증대할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달성 및 향후 적정 증가량 증명.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4년 이내, 해당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이행 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달성 증명. 계획수정으로 해당 달성일자까지 오존의 국가 대기질 기준의 달성을 보여줄 거라는 증명. 달성 증명은 환경청장의 재량으로, 광화학적 그리드 모델링이나 여타 최소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결정한 분석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B) 향후 적정 증가량 증명

계획수정으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6년 후에 시작하여 달성일자까지 연속 3년의 기간에 걸쳐 다음 평균량에 해당하며, (b)(1)(B)항에 언급된 기준 배출량에서 VOC 배출 감축량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증명.

(i) 최소한 매년 기준 배출량의 3퍼센트, 혹은

(ii) 매년 기준 배출량의 3퍼센트 이하의 양. 작은 양을 반영하는 계획이 기술적인 달성가능성에 비추어 지역에서 이행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조치를 포함함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입증하는 경우.

(ii) 항의 3퍼센트 요건을 줄이기 위해, 주는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높은 단계로 분류된 달성제외지역에서 같은 공급원 부문의 공급원에서 실제로 달성한 조치를 포함함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증명을 하여야 한다.

3퍼센트 요건을 줄이는 결정은 182(g)에 따라 각 이정표 시점에서 검토를 하고 특정 주에서 같은 부문의 공급원이 실제로 달성한 새 조치를 반영하고, 이 조치를 이행할 적정 시간을 허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배출감축량은 b)(1) (C) 및 (D)항

에(감축량 거래권) 따라서 산출을 하여야 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년에 시작하는 기간 동안 거래 가능한 감축량은 그 기간 전에 발생했고 (b)(1)항에 따라서 산출된 감축량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b)(1)(A)항에서 요구한 15 퍼센트 감축량을 넘어선 양이다.

(C) NO_x 통제. 수정사항은 (B)항에서 요구된 증명 대신에 수정된 이행계획이 VOC'S¹⁾ 및 질소산화물 배출감축량을 (b)(1) (C) 및 (D)항의 거래권 규정에 따라 산출) 규정하고, 이로 인하여 (B)항에서 요구된 VOC 배출감축량에 기인할 양과 최소한 같게 오존농도감축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증명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포함할 수 있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NO_x 통제가 VOC 통제로 대신할 수 있거나, VOC 통제와 함께 오존대기오염감축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조건 관련 지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VOC는 더 낮은 비율로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증명으로 수용할 수 있다.

(3) 차량검사유지관리 프로그램 개선

(A) 제출 요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해당 주는 인구통계국에서 정의한 대로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도시화지역에(달성 제외 지역) 등록된 사용 중인 자동차의 탄화수소 배출량 및 NO_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개선 프로그램을 규정하기 위해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주정부 프로그램의 유효일자: 지침

(A)항에 요구된 해당 주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

1) 가 없어야 함.

법일자로부터 2년 이내 발효하여야 하며, 차량검사유지관리 개선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청장이 연방기록부에 발표한 지침과 모든 점에서 일치하여야 하며, 이 지침의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도로 위 배출시험을 포함하여 배출시험과 202조의 기준을 따르는 모든 소형차 및 소형트럭에 대하여 배출제어 장치로 조작한 사항과 부적절한 급유를 검출하는 검사를 합한 프로그램으로 달성 가능한 성과기준

(ii) 적합한 관리자원, 도구 및 업무가 성과기준을 달성, 유지하는데 적절하게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관리 특징.

(i) 항의 성과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환경청장이 정할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C) 주정부 프로그램. (A)항에서 요구된 주정부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i) 배출량 컴퓨터 분석기, 도로 위 시험 장치도 포함

(ii) 보증 구제수단이 서면으로 거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207(b)항에 규정된 대로 배출관리수행보장사항에서 다른 차량 및 부품에 대한 권리포기 없음, 또는 조작 항목과 관련된 수리.

(iii) 이 프로그램의 대기질 목적에 비추어, 특정 차량의 경우, 보증사항에서 다루지 않는 배출량 관련 수리에 대한 권리포기가 허용될 경우, 수리비용이 450달러 이상이면 권리포기자격에 대한 지출비용 (V장에서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매년 조정함)

(iv) 차량등록거부를 통한 집행(비 준수 차량이 공용도로

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차량등록프로그램보다 집행 수단이 더 효과적임을 환경청장에 증명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실시 중인 프로그램은 제외)
(v) 연간 배출시험 및 필요한 조정, 수리 및 유지관리 등, 다만, 주정부에서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2년 간격 검사로 이 법의 요건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다른 특징과 결합하여, 배출감축량이 연례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축량과 같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vi) 중앙 통제방식 프로그램의 운용, 다만 주정부가 비중앙통제 방식 프로그램이 효과가 똑같다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증명한 경우는 제외. 전자연결식 시험시스템, 면허부여 시스템이나 기타 조치(혹은 이들 결합)는 환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목적에 맞게 똑같이 효과적인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vii) 배출관리진단 시스템 검사 및 이 시스템으로 확인되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열화 혹은 기능불량의 유지보수나 수리. 주정부는 차량검사수리 기간 중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조항에서 요구된 프로그램으로 달성된 배출감축량을 평가하는 환경청장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배출량감축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은 환경청장이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 (4) 청정연료차량 프로그램. (A) (B)항에서 환경청장이 대체 규정을 승인하였던 정도를 제외하고, 해당 주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42개월 이내, II장 파트 C에서 규정된 청정연료차량 프로그램 규정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기 위해 II장의 파트 C에서 규정된 지역에 대해 해당이행계획의 수정안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차량소유자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청정연료차량의 대체청정연료를(II장 파트 C에서 정의함)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도 포함한다. 수정안은 II장 파트 C에서 규정된 대로 청정연료차량 프로그램에 적합한 지역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B) 환경청장은 II장 파트 C에 규정된 청정연료차량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의 대안으로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II 장 C 파트에서 달성된 것과 같은 오존 생성 독성 대기 배출 물질의 장기 감축을 달성할 관련 이행계획의 수정사항, 즉 대체할 수정안의 청정연료차량 프로그램의 일부에 기인할 수 있는 감축 비율을 승인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지역에 대해 이 법에서 요구된 규정을 제외한 규정으로만 수정안이 구성될 경우에만 이 수정안을 승인할 수 있다. 수정안 승인을 청구하는 주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24개월 내 환경청장에게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30개월 내, 그와 같은 수정안을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하며, 주에서 제출한 수정사항을 연방기록부에 발표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수정안의 승인 여부에 대한 규칙 입법 상정안 공고를 구성하며, 미합중국법전 5장 553~557 조에(공지 및 의견 관련) 수록된 규칙입법 상정안 공고와 관련된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특정 지역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할 경우, 주정부는 환경청장이 대안으로 수정안을 승인했던 연방청정연료차량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해서 그 지역 관련하여 (A)항에서 요구된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C) 179조에 따라 주정부가 (A)항에서 요구된 프로그램 일부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때 179조에서 이

용 가능한 제재 외에, 주는 그 지역의 달성 혹은 향후 적정 증가량을 증명할 때, II장 파트 C에 정한 연방청정연료 차량 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이행하여 감축한 배출량과 관련하여 배출 거래권을 수령할 수 없다.

- (5) 교통통제 (A)¹⁾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년에 시작하여, 그 후 3년마다 주정부는 현재 총 차량거리, 총 차량 배출량, 혼잡수준 및 기타 관련 변수가 그 지역의 달성 증명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수 및 배출량수치가 지역의 달성 증명의 목적에 예상되는 수치를 초과할 때, 주정부는 증명서에서 예상되는 배출수치와 일치하는 수치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조치(108(f)등)로 구성되는 교통통제대책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수정안을 18개월 이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치를 고려하는데 있어, 주는 도심지, 기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적절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배출량을 증대하거나 이동하는 조치를 피하는 게 좋다. 이 수정안은 108(e)에 따라 환경청장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서, 174(b)의 요건에 따라 마련하고, 이행계획 전망 방안에 따라 신속한 배출 감축을 달성하는 이행일정 및 자금지원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최소 허용 규칙. 이 파트에서 신규 공급원 심사 규정은 그 지역에 소재한 고정공급원의 물리적 변화 혹은 작동 방법의 변화로 인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증가를 이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최소허용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공급원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순 배출증가량이 발생한 달력년도를 포함하여 연속 5년 동안에 걸쳐 공급원의 기타 순 배출증가량과 합해

1) (5)조항은 (A)항목과 함께 제정되었지만 (B)항목은 없음.

25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배출량이 100톤 이하인 공급원의 특별 변경 규칙. 지역에 소재한 주요 고정공급원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연간 휘발성 유기화합물 100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공급원은 제외), 공급원에서 어떠한 변화(111(a)(4)에 언급된)로 별도의 작업, 설비 혹은 기타 공급원에서 오염물질 배출활동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증가가 있는 때, 이 증가량은 172(c)(5) 및 173(a)항의 목적을 위해 변경 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증가가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공급원 내 다른 작업, 설비나 활동으로 관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감축량이 크게 증가한 양을 최소한 1.3:1의 내부상쇄 비율로 상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한 변경사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유자나 운영자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그 목적에 맞게 변경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변경의 경우에 173(a)(2)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169조에 규정된 최대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BACT)은 최저 달성가능 배출 비율(LAER)로 대체되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알려야 한다.
- (8)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공급원의 특별 변경 규칙. 지역에 소재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간 100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고정공급원의 경우, 공급원에서 어떠한 변화(111(a)(4)에 언급된)로 별도의 작업, 설비 혹은 기타 공급원에서 오염물질 배출활동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증가가(최소 허용 증가량 제외) 있는 때, 이 증가량은 172(c)(5) 항 및 173(a)항의 목적을 위해 변경 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증가가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공급원 내 다른 작업, 설비나 활동으로 관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감축량이 크게 증가한 양을 최소한 1.3:1의 내부 상쇄 비율로 상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위한 변경사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유자나 운용자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그 목적에 맞게 변경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변경의 경우에 173(a)(2)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9) 비상사태 조항. 172(c)(9)항에서 요구된 비상사태 조항 외에, 계획수정안은 그 지역이 해당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착수할 특정 조치의 이행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주가 해당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한 때 주나 환경청장이 조치를 더 하지 않고 유효할 비상사태 조치로 계획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0) 일반 상쇄요건. 이 파트의 배출상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 배출감축량 대 총 배출증가량의 비율은 최소한 1.2:1이어야 한다.

(b) 항에서 ‘달성일자’라는 용어 참고사항은 (d)항에 참고로 포함되었는데 중증 지역의 경우 달성 일자를 말한다.)¹⁾

(d) 심각한 지역. 심각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심각한 지역과 관련하여, (c)항(중증지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하고, 이 항에서 언급한 해당이행계획의 (계획 항목 포함)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각한 지역의 경우, ‘주요 공급원’ 및 ‘주요 고정공급원’(302조의 공급원 외에)이란 용어는 인접 지역 내 소재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최소 연간 25톤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성이 있고,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고정공급원을 포함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중증 지역’일 것임.

(1) 차량이동거리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주는 지역에서 차량여행 회수나 차량이동거리 증가로 인해 배출량 증가량을 상쇄하고, 이 파트의 다른 배출감축요건과 결합하여 필요한 대로 자동차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b)(2)(B)²⁾ 및 (c)(2)(B)항의(정기배출감축요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교통통제전략 및 교통통제대책을 확인, 채택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는 108(f)항에 명시된 절차를 고려하고, 국가 대기질 기준으로 달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선택, 이행하여야 하며, 이 조치를 고려하는데 있어, 주는 도심지, 기타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의 적절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배출량 및 혼잡을 줄이기보다는 증가하거나 이전하는 조치를 피하여야 한다.

(B) 주는 또한 자체 재량으로 고용인의 업무 관련 차량운행회수 및 이동거리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그 지역의 고용주에게 어느 때라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108(f)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서 개발을 하며, 그 지역의 고용주가 피크 운행 기간 중 집과 일터 사이에 통근 운행에서 차량당 평균 승차인원수를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환경청장의 지침은 달성 제외 지역 내 (교외, 중심가, 업무지역), 혹은 기존의 승차인원수 및 높은 승차인원수 활용 양상을 반영하는 달성 제외 지역 중에서 장소별로 다양한 평균 차량 승차인원수를 명시할 수 있다.

고용주가 업무 관련하여 고용인의 차량 운행 건수 및 차량이동거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조항에서(이 문장의 입법일자 전 유효한)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주는 주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b)(1)(A)항 일 것임.

법에 따라 이행계획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주가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삭제되거나 철회된 조항으로 달성할 감축량과 같은 배출 감축량을 달성한 대체 방법을 착수하였거나, 착수할 거라고 통보한 경우이다.

(2) 상쇄요건. 이 파트의 배출상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 배출감축량 대 총 배출증가량의 비율은 최소한 1.3:1이어야 한다. 다만, 주 계획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통제를 위해 달성 제외지역의 기존 주요 공급원이 최대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을 이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에 그 비율이 최소 1.2:1이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85조의 집행. 2000/12/31일까지, 주는 185조에서 요구한 규정을 포함하는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항 혹은 (c)항에서 ‘달성일자’라는 용어 참고사항은 (d)항에 참고로 포함되었는데 심각한 지역의 경우 달성 일자를 말한다.

(e) 극심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극심한 지역과 관련하여, (d)항(심각한 지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하고, 이 항에서 언급한 해당이행계획의 (계획 항목 포함)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c)(2)(B)항의 (ii)항의 규정은(3퍼센트 이하 감축), (c)항¹⁾ (6), (7) 및 (8)항 규정(최소 허용규칙 및 공급원 변경), (b)(1)(A)항 (ii)항 (15퍼센트 이하 감축)은 극심한 지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극심한 지역의 경우, ‘주요 공급원’ 및 ‘주요 고정공급원’(302조의 공급원 외에)이란 용어는 인접 지역 내 소재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최소 연간 10톤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성이 있고,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고정공급원을 포함한다.

1) “조항”이어야 함.

- (1) 일반 상쇄요건. 이 파트의 배출상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 배출감축량 대 총 배출증가량의 비율은 최소한 1.5:1이어야 한다. 다만, 주 계획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달성제외지역에서 기존의 주요 공급원이 최대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을 이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그 비율은 최소 1.2:1이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요 고정식공급원에서 어떠한 변화(1119(a)(4)항에 언급된)가 공급원에서 별도의 작업, 설비나 기타 오염물질 배출활동으로 배출량 증가가 초래되는 경우는 172(c)(5)항 및 173(a)항의 목적에 맞게 변경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173(a)(1)항에 따라 상쇄요건을 준수할 목적으로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나 공급원에서 별도의 작업, 설비나 기타 활동으로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하여 증가량을 최소 1.3:1의 내부 상쇄비율로 상쇄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파트의 상쇄요건은 변경사항이 이 법의 이행계획이나 허가를 따르는데 필요한 장비의 설치로 구성된다면 극심한 지역에서 기존의 공급원의 변경에 적용할 수 없다.
- (3) 청정연료나 고급통제기술 활용. 극심한 지역의 경우, 계획수정안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 날짜 후 8년간 연간 질소산화물 25톤 이상 배출하는 신규, 변경, 기존의 전력시설 및 산업용, 상업용 보일러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주 연료로 천연가스 메탄올이나 에탄올(혹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오염 연료)을 연소할 것
- (B)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급통제기술을 활용할

것(촉매제어기술이나 기타 비교할 수 있게 효과적인 제어 방법).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주요 연료’란 용어는 가동 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연료를 말한다. 이 조항은 천연가스 공급 비상시 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978년 천연가스정책법 III장에 규정)

(4) 교통 혼잡시간 중 교통 통제대책. 극심한 지역의 경우, 이 항의 이행계획수정안은 기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심한 오염원인 차량이나 대형차량의 활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 혼잡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통제대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5) 새로운 기술. 환경청장은 110조에 따라서 기존의 통제기술 개선이나 새로운 통제기법의 개발을 예상하는 극심한 지역 관련 이행계획, 그리고 이 조항에 기초한 달성 증명 조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에서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A) 이 조항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처음 10년 간 필요한 배출감축 증가량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경우

(B) 예상된 기술이 감축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여기 제시된 대로 비상조치를 개발, 채택하여 이행하기로 집행 가능한 공약을 제출 완료한 경우. 이 비상대책은 계획조항의 이행계획 전 3년 이내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110조에 따라서 환경청장의 승인이나 부결을 받아야 한다.

비상대책은 다른 승인계획규정과 함께, (b)(1) 혹은 (c)(2)항에서 요구된 정기배출감축 및 해당날짜까지 달성을 하는데 충분한 배출감축량을 생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b)(1) 혹은 (c)(2)항에 제시된 배출감축요건을 극심한 지역이 달성하지 못했고, 이

러한 불이행이 전부 혹은 일부 이 항에 따라 승인된 규정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무능력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은 주에게 (b)(1) 혹은 (c)(2)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비상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항에 참고로 합체된, (b), (c), 혹은 (d)항의 ‘달성일자’란 용어는 극심한 지역의 경우 달성일자를 말한다.

(f)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주요 고정공급원에 대해 이 파트에서 요구된 계획규정은 또한 질소산화물 주요 고정공급원에 적용된다.(302조 및 이 조의 (c), (d), 및 (e)항에 정의됨) 이 항은 순 대기질 이득이 관련 공급원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감축이 없을 경우 더 크다고 환경청장이 (환경청장이 계획이나 계획수정안을 승인한때) 판단하는 공급원의 경우 질소산화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항은 다음의 질소산화물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 (A) 184조의 오존이동지역 내 있지 않은 달성제외지역, 환경청장이 질소산화물 추가 감축량이 그 지역의 오존 국가 대기질 기준 달성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환경청장이 계획이나 계획수정안을 승인하는 때) 경우, 혹은
- (B) 오존 이동지역 내 달성제외 지역, 환경청장이 질소산화물 추가 감축량이 그 지역의 순 오존 대기질의 이득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185B에서 요구된 실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A) 환경청장이 NO_x 배출량의 과다 감축이 (1)항에서 성취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은 과다 감축량을 달성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도로 (1)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B) 이 조항의 목적에 맞게, NO_x 과다 배출감축량은 순 대기질 이득이 감축이 되지 않을 때 더 크다고 환경청장이 판

단한 배출감축량이다. 그렇지 않으며, 이 조항의 목적에 맞게, NO_x 과다배출감축량은

(i) 184조의 오존이동지역 내 있지 않은 달성제외지역의 경우, 환경청장이 그 지역의 오존 국가 대기질 기준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배출감축량이거나

(ii) 오존이동지역 내 달성제외지역의 경우, 환경청장이 그 지역에서 오존의 대기질 순이익을 가져올 거라고 환경청장이 판단하지 않는 배출감축량이다.

- (3) 185B의 최종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184조 오존이동지역이나 달성 제외지역과 관련하여 (1) 혹은 (2)조항에 따라 결정을 해달라고 환경청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청원서가 제출된 후 6개월 이내 청원을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g) 이정표

- (1) 배출량 감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년, 그 후 3년 간격으로 주는 달성제외지역(경계지역이나 경미한 지역은 제외)이 (b)(1)항에 따라 이 간격이 끝날 때까지 달성할 필요가 있는 총 배출감축량에 해당하는 이전 기간의 배출감축량 및 (c)(2)(B) 및 (C),(d) 및 (e)항의 해당요건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감축량은 이 조에서 해당 이정표로 칭한다.
- (2) 준수 증명. (1)항의 달성제외 지역의 경우, 해당 이정표가 발생한 날짜 이후 90일 이내(기준이 달성 완료된 경우 이정표가 발생하는 달성 일자를 포함하지 않음), 그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환경청장에게 이정표가 충족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증명서는 규칙에 의해 환경청

장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양식 및 방식으로 제출하며, 정보 및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자신이 요구한 정보 및 분석을 포함하는 증명서를 수령하고 90일 이내 이 증명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중증 지역 및 심각한 지역: 주의 선택. 주가 요구된 기간 내 중증지역이나 심각한 지역에 대해 (2)항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혹은 그 지역이 해당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한 경우, 주는 이러한 불이행이나 결정이 일어난 후 90일 이내 다음 사항을 선택하여야 한다.

(A) 다음 높은 단계로 그 지역을 다시 분류할 것인가

(B)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해당 비상사태계획에 규정된 다음 이정표를 충족하는데 적합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이행할 것인가,

(C) (4)항에 언급된 경제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

주가 (B)항에 따라 선택한 경우, 환경청장은 선택 후 90일 이내, 이 계획을 심사하고, 비상사태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이정표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다음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일단 주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 이는 선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주가 그 후 6개월 이내 혹은 요구된 90일 기간 내 이 조항에서 요구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지역은 6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 법규 시행으로 다음 높은 단계로 다시 분류되어야 한다. 주가 선택을 하는데 요구된 날짜 이후 12개월 이내, 주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제출일자 후 9개월 이내 계획수정안을 심사, 승인하거나 부결을 하여야 한다.

(4)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 (A) 이 조항의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은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칙과 일치하며, 주 계획의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다음 이정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주 방안은 판매 허가 시스템, 또는 주 사이의 거래 관련 법칙과 일치하고 주에서 정한 배출수수료의 재량 외 시스템, 또는 오존 형성에 기여하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에 대한 주의 수수료 시스템, 혹은 이전 조치나 기타 유사조치를 합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또한 그 지역에서 차량의 이동거리 및 차량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 및 요건을 포함할 수 있으며, 108(f)항의 교통통제조치도 포함한다.

(B)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A)조항에 따라 채택할 방안에 대한 규칙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인가된 고정공급원, 지역 공급원 및 이동 공급원에서 나오는 배출량 감축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시범계획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주에게 (A)조항에 따라 채택된 계획규정에서 창출된 수입을 다음 목적에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 배출량 감축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ii) 오존대기오염관리를 위해, 저 오염 용제 및 표면 코팅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제공. 이 지원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비용이나 저 오염 용제나 표면 코팅 재료 개발 비용의 75 퍼센트 이상 지급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iii) 이 법의 주정부 프로그램 행정비용 자금지원. 그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은 이 조항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극심한 지역. 주가 요구된 기간 내 극심한 지역 관련 (2)항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혹은 그 지역이 해당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한 경우, 주는 불이행이나 결정 후 9개월 이내, (4)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계획수정안을 심사, 제출일자 후 9개월 이내 수정안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h) 시골 이동지역. (1) 181조나 이 조의 여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통계지역 혹은 통합대도시통계지역의(미국 인구통계국에서 정한) 일부를 포함하지 않거나 인접하지도 않은 오존달성제외 지역의 주는 환경청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2)항의 의미 내 시골이동지역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법규 시행에 의해 이 조 (a)항에(경계지역 1)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2) 환경청장이 오존 달성제외지역을 시골이동지역으로 다룰 수 있는데, 이는 그 지역 내 VOC 배출 공급원(및 환경청장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NO_x)이 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오존농도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i) 재분류 지역. 181(b)(2)항에 따라 오존달성제외지역으로 재분류된 지역의 주는 이 조 (b)~(d)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요건과 연결하여 규정된 일정에 따라 재분류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청장이 필요한 제출 서류 중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조정이 필요하거나 적절한 정도로 해당 기한(달성일자 제외)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j) 복수 주의 오존달성제외지역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경계지역'일 것임

- (1) 주 사이의 조정. 여러 주와 관련된 오존달성제외지역 한 곳의 일부가 소재한 주는 (이후 이 조에서 복수 주 오존달성제외지역으로 칭함)
- (A) 관련 달성제외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 정부 이행계획의 수정안 및 이행을 명목상, 절차상으로 조정하는데 적절한 단계를 취하여야 한다.
- (B) 환경청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최소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광화학 그리드 모델링이나 여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청장은 복수 주 오존달성제외지역의 일부가 소재한 주와 관련하여 주의 계획수정안이 이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 파트에서 제출된 주 이행계획 수정안을 승인할 수 없다.
- (2) 달성 증명 불이행. 복수 주 오존달성제외 지역의 일부가 소재한 주가 요구 기간 내 그 일부에서 오존의 국가 대기질 기준 달성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주는 그 지역의 다른 일부가 소재한 여러 주에서 182조의(오존달성제외지역 관련 계획 제출 및 요건)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약속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인지 환경청장이 조사해 달라고 청원을 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이 조사를 할 경우, 179조(제재) 조항은 청원서를 제출하는 주 내 복수 주 오존달성제외 지역의 일부에서 이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42 U.S.C. 7511a]

연방정부 오존대책

183조. (a) VOC공급원 통제기술지침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환경청장은 입

법일자 현재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VOC 배출 고정공급원 1 1부문에 대해 108조에 따라 통제기술지침을 발표하여야 하는데, 이 조 (3)조항 및 (4)조항에서 언급된 부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통제기술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b) 기존 CTG 및 신규 CTG.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6개월 이내, 그 후 정기적으로, 환경청장은 이 개정안 입법일자 전 108조에서 발표된 통제기술지침을 심사, 필요하다면 갱신을 하여야 한다.

(2) 지침을 발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오존달성제외지역에서 오존대기오염 형성에 가장 많이 기여할 거라고 간주하는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고형폐기물처리법 C장에서 허가된 위험폐기물 처리, 보관 및 폐기시설을 포함한다. 그 후 환경청장은 이 지침을 정기적으로 심사,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여야 한다.

(3)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환경청장은 108조에 따라 통제기술지침을 발표하여 항공 산업 코팅 재료 및 용제에서 대기 중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 통제기술지침은 최대 이용 가능한 통제조치를 최소한 채택하여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달성될 수 있는 수준까지 코팅 재료 및 용제를 이용하여 대기 중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 배출량을 줄이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일정에, 그러나 이 지침의 최종 발표 후 10년 이내, 증가량 감축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통제기술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국방부 장관, 교통부 장관, 그리고 국립항공우주국장과 코팅 재료에 대한 명세서 수립에 대하여 의논을 하여야 한다.

VOC 감축전략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 지침은 112조의 해당 요건 및 성층권 오존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환경청장은 108조에 따라 통제기술지침을 발표하여 선박제조 작업 및 선박 수리에 사용된 페인트, 코팅 재료 및 용제로부터 대기 중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PM.10의 총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최소한 최상의 이용 가능한 통제조치를 채택하여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달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페인트, 코팅 재료 및 용제를 제거하거나 사용하여 대기 중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PM.10의 총배출량을 줄이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일정, 그러나 이 지침의 최종 발표 후 10년 이내, 증가량 감축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해당 연방기관과 의논을 하여야 한다.

- (c) 다른 통제기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환경청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25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성이 있는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정공급원의 부문에 대해 다른 통제수단을 확인한 기술문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때 이 문서를 수정, 갱신하여야 한다.

- (d) 비용 효과성 평가 지침.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오존의 국가 대기질 기준 달성에 기여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고정공급원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의 상대적 비용 효과성 평가에 사용할 지침을 주에 제공하여야 한다.

- (e) 특정 공급원 배출량 관리

- (1) 용어 정의, 이 항의 목적에 맞게,
- (A) 최대 이용 가능한 통제수단. 이 용어는 환경청이 판단하기에 기술적 경제적 개연성, 보건, 환경영향 및 에너지 영향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장비, 조치, 과정, 방법, 시스템이나 기법을 이용하여 달성 가능한 배출량 감축 정도를 말하며, 화학적 재조제, 산물이나 공급재료 대체, 재포장, 그리고 사용, 소비, 보관이나 처리를 위한 지침 등을 포함한다.
 - (B) 소비자용 또는 상업용 제품. 이 용어는 특정인이 보유한 원료, 제품(페인트, 코팅 재료 및 용제 등)이나 품목을(용기나 포장재 포함) 말하며, 이를 사용, 소비, 보관, 처리, 파괴하거나 분해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되는 경우이다. 이 용어는 211조에서 규정한 연료나 연료첨가제나 자동차, 216조의 비도로 용 엔진 및 비도로 용 차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 (C) 규제대상 단체. 이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i) 미국 주 사이의 거래에서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소비자용 또는 상업용 제품의 제조업체, 가공업체, 도매업체나 수입업체 혹은
 - (ii) 미국 주 사이의 거래에서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그 제품을 (i)항의 단체에 제공하는 제조업체, 가공업체, 도매업체나 수입업체
- (2) 연구 및 보고
- (A) 연구. 환경청장은 다음 목적으로 소비자판매용 제품(혹은 그 결합물)에서 대기 중에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i) 오존의 국가 대기질 기준을 위반하는 오존 수치에 기

여할 가능성 판단.

(ii) 이 항의 규제를 받는 소비자판매용 제품이나 그 등급
혹은 부문을 규제하는 기준 설정

이 연구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완수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특정 고려 요소. (A)(ii)항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환경청
장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i) 소비자판매용 제품의 용도, 이득 및 구매수요

(ii) 소비자판매용 제품의 보건 또는 안전 기능

(iii) 대기 중에 고반응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소비자판매용 제품

(iv)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적용하는 소비자판매
용 제품

(v) 보건, 안전 및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비용
이 드는 소비자판매용 제품의 대체품 이용 가능성

(3) 배출량 감축 요구 규정

(A) 개요. - (2)항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환경청
장은 연구에 기초하여 오존의 국가대기질 기준을 위반하
는 지역에서 소비자용 또는 판매용 제품에서 반응성 조정
에 기초하여 최소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비자용 또는 판
매용 제품의 부문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한다. 80퍼센트
배출량 산정 값에 대한 거래권은 이 조 입법일자 후 제조
된 소비자용 또는 상업용 제품에서 배출량 감축의 경우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때, 환경청장은 (2)항의 기준에
기초하여 규정 관련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목록을 4 그룹
으로 나누어야 한다. 목록 공표 후 2년 마다, 환경청장은
4그룹의 규정이 입안될 때까지 한 그룹의 부문 규정을 입

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적합한 대체물이 없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하는 건강용 제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를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어느 활동이든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소비자용 또는 상업용 제품의 판매, 제조 또는 시장 출시, 판매용 공여 등을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B) 규제대상 기업. 이 항의 규정은 규제대상 기업과 관련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

(C) CTG 활용. 어떠한 소비자용 또는 판매용 제품이든, 환경청장은 오존 국가 대기질 기준을 위반하는 지역에서 오존 수치에 기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감축 규정만큼 실질적으로 지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A)항의 규정 대신에 이 법에 따라 통제기술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4) 규정 체계. 이 항의 규정은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때 규정 체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 사용, 소비나 처리와 관련하여 등록 및 라벨표시 요건, 자가 감시 및 보고, 금지, 제한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배출권 판매 허가 및 경매 등)를 포함한다.

(5) 특별 자금. 규정에 따라 환경청장이 조달한 금액은 면허 및 기타 업무용 미국 재무부 특별 펀드에 예치하고, 그 후 연간 충당금법에 따라 지출될 때까지, 관련 수수료, 비용이나 기부금이 정해진 활동을 환경청장이 수행할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집행. 이 항에 따라 확정된 규정은 이 법의 집행 목적을 위해 111조의 기준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 규정 위반은 111(e)항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 (7) 주정부 관리. 주정부는 이 항에서 공포된 규정을 이행, 집행하기 위해 주법에 따른 절차를 개발, 환경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주정부 절차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환경청장은 이 절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이 항에 따른 해당규정을 환경청장이 집행하지 못하게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 (8) 크기 등. 제품의 크기, 형태나 라벨표시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환경청장이 국가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 규정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공포되지 않아야 한다.
- (9) 주정부 자문. 이 항에서 채택된 규정 이외의 규정을 상정하는 주는 여타 주나 지방당국에서 이 파트에서 다른 제품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거나 공포할 예정 여부에 관해 환경청장과 의논을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항에서 다른 제품에 대하여 상정, 공포된 규정, 정보 및 연구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주나 지방 당국에서 요청한대로 수집한 정보를 유포하여야 한다.

(f) 탱크 용기 기준

- (1) 기준 일정.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해안 기동대를 지휘하는 부서의 장관과 의논하여, 공중보건이나 복지 위험이 합당하게 예상되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한다고 환경청장이 생각하는 탱크 용기(미합중국법전 46장 2101조에 정의된)의 적하 및 하역으로 인해 VOC 및 여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대체 통제기술과 관련된 비용, 대기 외적인 이득, 환경영향, 에너지 요건 및 안전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실행가능한 정도로 이 기준은 탱크 용기의 적하 및 하역 시설에 적용하며, 탱크 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이 항에 따라 규정된 어느 항목도 (및 그 수정사항) 환경청장이 생각하기에 필요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허가하는데 필요한 기간 후에 효력을 받으며, 그 기간 내 준수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효일자가 규정 공표 후 2년 이내이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장비 안전 규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해안기동대를 지휘하는 부서의 장관은 미합중국법전 46장 3703조 및 항구수로안전법 6조에 따라 탱크 용기의 적하 및 하역으로 인한 배출량을 관리할 장비 및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탱크 용기의 적하 및 하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과 관련하여 (1)항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한 기준 및 주나 행정당국에서 발한 규정은 해안기동대를 운영하는 부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 (3) 기관의 권한. (A) 환경청장은 (1)(A)항에 따라 규정된 탱크 용기 배출기준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안기동대를 지휘하는 부서는 또한 (1)(A)항에서 규정한 탱크 용기와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B) 해안기동대를 지휘하는 부서는 (2)항에 따라 발한 규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기준. 환경청장이 이 조에 따른 기준을 공표한 후, 어떤 주나 그 행정당국도 기준이 (1)항에서 공표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의 규정을 따르는 탱크 용기에서 나오는 배출과 관련된 기준을 채택하거나 집행 시도를 할 수 있다.
- (5) 집행. (1)(A)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은 이 법의 집행 목적을 위해, 111조의 기준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면 111(e)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g) 오존 설계 값 연구. 환경청장은 오존 설계 값을 정하기 위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환경청에서 사용 중인 방법론이 오존 달성제외지역에서 오존 대기질의 적정한 지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주정부, 지방행정당국 및 기타 부서에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연구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완수하고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 및 공개 심사를 받아야 한다.

(h)¹⁾ 오존 달성 제외 지역 진입차량.

(1) 오존검사 및 유지관리실험관련 권한

(A) 개요.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미국 시민이나 미국영구외국인거주자나 미국에서 고용 또는 교육연구 목적의 비자 소지자가 운행하는 상업용 외 자동차는 주법이 달성 제외 지역에서 해당 이행계획에 따라 차량검사유지관리요건이 있는 경우 1개월 기간에 2회 이상 달성제외지역에 인접하

1) 이 항에 1998년도 경계선스모그저감법(P.L. 105. 286)2조가 추가되었으며, 이 법 3조 및 4조는 다음과 같다.

SEC. 3. 일반 규정

(a) 개요..2조 수정은 이 법 입법일자 후 180일 지나 유효하며, 수정사항의 어느 것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불일치하는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b) 정보. 이 법 입법일자 후 가능한 곧, 미국 해당 기관은 2조 수정안에 제시된 금지조항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SEC. 4. 일반 회계사무소의 연구

(a) 개요.. 미국 감사원장은 2조 수정안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연구 내용. (a)항의 연구는

(1) 수정안의 영향을 받는 오존 달성제외지역에서 대기질 관련 2조 수정안의 영향 가능성과

(2) NAFTA 이행 결과로 미국에서 상업에 관련되고 멕시코에 등록되었거나 거기서 운행되는 차량 수 증가로 오존 달성제외지역에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야 한다.

(c) 보고. 1999/7/1일 이내, 미 감사원장은 하원통상위원회 및 상원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 (a)항의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미국과 접경하는 외국으로부터 오존 달성제의 차폐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

(B) 적용 가능성. (A)항은 운행자가 미국 국경 진입지점에서 차량이 같은 종류 및 모델년도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고 유효한 검사유지관리요건을 완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위반 제재. 대통령은 (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고자 하는 자동차 운행자로부터 2회 위반이나 위반시도의 경우 200달러 이하, 3회 이상 위반이나 위반시도의 경우 4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주의 결정. (1)항의 금지사항은 금지사항에서 면제되는 주로 결정된 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결정을 통보하는 주지사로부터 대통령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때 효력을 발한다.

(4) 다른 방법. (1)항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경우 주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통령은 다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다.

(A)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외국등록차량이 다음의 차량검사유지관리요건을 준수하게끔 하는 대체 방법에 대해 설명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i)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됨

(ii) 오존 달성제의 차폐 지역에서 이행계획에 따라 유효함

(iii) 외국등록자동차와 같은 종류 및 모델연도의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음

(B) 대통령이 대체 방법을 (A)항의 자동차 검사유지보수요건의 준수를 도모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경우

(5) 오존 달성제의 차폐지역 정의. 이 조에서 이 용어는 이 항의 입법일자 현재 181조에서 분류된 중증 지역을 말한다. [42 U.S.C. 7511b]

주 정부간 오존 대기오염관리

184조. (a) 오존 이동지역. 오존이동지역은(176A(a)항의 의미 내)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주 및 컬럼비아 구역을 포함하는 통합대도시통계지역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법규 시행에 의해 정한 것이다. 176A(a) (1) 및 (2)항의 규정은 이 조에서 정한 이동지역 및 오존에 대해 정한 여타 이동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며, 다만, 이 조 규정과 불일치하는 정도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6개월 이내 지역을 확정할 결과, 요구된 위원회를(176A(b)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b) 오존이동지역에서 주정부 계획규정. (1) 110조에 따라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혹은 오존이동지역에서 어느 주를 나중에 포함시키고 9개월 후) 오존 이동지역 내 포함된 주는 다음을 요건으로 하는 주정부 이행계획이나 그 수정안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오존이동지역에 있는 주의 각 지역, 그리고 인구 10만 이상 대도시통계지역이나 그 일부는 182(c)(2)(A)항 규정을 따를 것, 그리고

(B)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후 발효된 통제기술지침에서 다른 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공급원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을 이행할 것.

(2)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환경청장은 182(b)(3)항의 차량급유 관리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조치와 필적할 수 있고, 배출감축달성능력이 있는 관리조치를 확인하는 연구를 완수하며, 이 조치나 차량급유 관리조치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의 기타 기한에도 불구하고, 해당이행계획은 연구 완결 1년 이내 이 조치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연간 최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50톤을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성이 있는 고정공급원은 주요 고정공급원으로 간주하며, 중간 달성 제외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 주요 고정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을 요건을 따라야 한다.

(c) 추가 관리조치

- (1) 권고사항. 오존 이동지역 내 어느 주의 청원이 있는 때, 위원회(혹은 그 수임인)¹⁾에 대해 주지사 과반수 투표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공공의견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이 파트에서 제시된 날짜까지 달성 지역으로 포함시키는데 조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동지역의 전부나 일부에서 적용될 추가 관리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환경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2) 통지 및 심사. 환경청장이 (1)항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사항을 입수하는 때(권고사항 수령일자는 이 조에서 이후 ‘수령일자’로 칭함), 환경청장은
 - (A) 즉각 연방기록부에 권고사항이 이용 가능함을 나타내는 공지를 알리고 수령일자에 시작하여 90일 이내 공청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B) 이 파트에서 제시된 날짜까지 달성 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권고사항의 관리조치가 필요하며, 달리 이 법과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권고사항 심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위원회’는 대문자가 아닐 것임.

(3) 자문. (2)(B)항의 심사를 착수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영향권 내 주의 위원회 구성원들과 상의를 하며, (2)(A)항에 따라 입수된 자료, 견해 및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승인 및 부결. 수령일자 후 9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A) 권고사항을 승인, 부결, 일부 승인 또는 일부 부결하는 여부를 결정하고, (B)위원회에 승인, 부결, 일부 승인 또는 일부 부결사항을 서면 통보하며, (C) 연방기록부에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환경청장이 권고사항을 부결하거나 일부 부결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i) 부결된 추가 관리조치가 이 파트에서 제시된 날짜까지 달성지역에 포함시키는데 필요하지 않거나 달리 이 법과 일치하지 않은¹⁾ 이유

(ii) 권고사항의 부결된 부분이 이 조 요건을 따르도록 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똑같거나 효과가 더 많은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

(5) 조사.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사항의 승인이나 일부 승인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이동지역에 포함되고 승인계획 요건이 적용되는 주에게 이행계획이 110(a)(2)(D)항 요건을 충족하는데 110(k)(5)항에 따라 조사된 부적합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사는 조사내용이 발표된 후 1년 이내 해당 주가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승인된 추가관리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d) 최대 이용 가능한 대기질 감시 및 모델링. 이 조의 목적을 위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한 지역의 공급원이 다른 오존 달성제외 지역에서 오존 농도에 기여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이러한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이러한'이어야 함.

결정을 하기 위해 최대 이용 가능한 대기질 감시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42 U.S.C. 7511c]

오존달성제의 심각한 지역 및 극심한 지역의 달성 불이행 집행

185조. (a) 일반 규칙. 182 (d) 및 (e)항에(오존달성제의 심각한 지역 및 극심한 지역의 달성계획) 따른 이행계획수정안은 그 적용지역이 해당달성일자까지 오존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VOC 주요 고정공급원은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이행 벌금으로 (b)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달성일자 후 시작하는 달력년도에 오존달성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때까지 주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 수정안은 수수료 산정 및 징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b) 수수료 산정.

- (1) 수수료 금액. - 수수료는 (3)항에 따라 조정을 하고 (2)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 양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달력연도 중 공급원이 배출하는 VOC 톤당 5,000달러이다.
- (2) 기준량. 이 조의 목적을 위해, 기준량은 환경청장이 제공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달성 연도 중 실제 VOC 배출량(실제량)이나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허가에 따라(혹은 달성 연도에 대해 허가가 발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이행계획에서 허용된 VOC 배출량(허용량)) 허용된 VOC 배출량 중 낮은 양으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 이전 문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1 달력 년도가 넘는 기간에 걸쳐 측정된 평균 실제량이나 평균 허용량 중 낮은 양에 따라 기준량을 결정하도록 허가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특정 공급원에 대한 평균 산출은 공급원의 배출량이 불규칙적이고, 주기가 있거나 해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3) 연간 조정. (1)항의 수수료 금액은 502(b)(3)(B)(v)항(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서 입법일자 연도에 시작하는 연도에 시작하여야 한다.

(c) 예외 조항.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급원도 181(a)(5)항에 따라 연장 연도로 다른 어느 연도 중 배출량과 관련하여 (a)항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d) 환경청장의 수수료 징수. 환경청장은 이행계획의 수수료조항이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발견한 경우, 혹은 주가 이 조에서 요구된 수수료를 관리하지도, 집행하지도 않는다고 조사한 경우, 환경청장은 이 장에서 부여된 여타 조치 외에, 환경청장이 공표한 절차에 따라서, (a)항의 미납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179(a)(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 환경청장은 결정 전 기간 동안 환경청장이 수수료가 주에 납부된 적이 없음을 발견한 정도까지 수수료에 1986년 내국세법전 6621(a)(2)조항에(연방세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계산) 따라 산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502(b)(3)(C)항의 (ii)~(iii)항목의 규정은(기금의 벌칙 및 활용) 이 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e) 특정 소규모 지역의 면제. 해당달성일자까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총인구 20만 이하 지역의 경우, 이 조나 이 법 여타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도 환경청장이 제공한 지침과 일치하여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오존이나 그 전구체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달성을 하지 못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2 U.S.C. 7511d]

과도기 지역

185A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오존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1987/1/일 ~1989/12/31일 사이 36개월 동안 오존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환경청장은 1991/12/31일까지 그 지역에 이 파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1992/6/30일까지, 환경청장은 그 지역이 1991/12/31일까지 그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달성일자 현재 지역의 설계 값에 기초하여 명령에 의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지역이 기준을 달성했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명령의 일환으로 기준 결정 후 12개월 이내 그 지역의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그 지역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1992/6/30일까지 107(d)(4항에 따라 달성제외 지역으로 그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42 U.S.C. 7511e]

NO_x 및 VOC 연구

185B조. 환경청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공조하여 대류권 오존형성 및 관리에서 오존 전구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NO_x 및 VOC 배출량 감축의 역할을 조사하고, NO_x 감축이 다른 달성제외지역에서 달성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혹은 가역생산적인) 정도, 오존의 NO_x 통제에 대한 반응성, NO_x 에 대한 통제조치의 가용성 및 정도, 생물적 VOC 배출가스의 역할, 그리고 대기질 모델에 필요한 기초 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완수하고, 예정보고서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1년 이내 30일간 공개하고, 최종 보고서는 입법일자 후 15개월 이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모든 가용 정보

및 연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조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추가 정보를 모색하여야 한다. [42 U.S.C. 7511f]

D 3. 가

186조. 분류 및 달성일자

187조. 계획 제출서류 및 요건

186조. 분류 및 달성일자

(a) 달성제외지역의 법규 시행에 의한 분류 및 달성일자. (1) 107(d)항에 따라 일산화탄소에 대해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표1에서 지정 시점에서, 법규의 시행에 의해, 지역의 설계 값에 기초하여 경미한 지역이나 중증지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설계 값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가장 최근에 환경청장이 제공한 해석방법론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분류한 지역의 경우, 일산화탄소 주요 기준 달성일자는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표1에 제시된 날짜 이내이어야 한다.

<표 3>¹⁾

지역 분류	설계 값	주요 기준 달성일자
경미한 지역	9.1.16.4 ppm	1995/1231
중증지역	16.5 초과	2000/12/31

(2) 107조에서(일산화탄소 달성제외 지역지정) 요구된 공지 발표 시점에서, 환경청장은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지역의 분류내용을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알려야한다. 172(a)(1)(B)(공지의견 및 사법심사 결여)항의 규정은 이러한 분류사항에 대해서 적용하여야한다.

1) 원본이 그러함. ‘표 1’일 것임

- (3) (1)조항, 표 1에서 분류된 지역의 설계 값이 분류의 근거가 된 수치보다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른 부문에 분류되었을 거라면,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0일 이내, (2)항의 절차에 의해, 지역의 분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을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그 지역의 일산화탄소에 대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초과 사항 수, 그 지역과 다른 영향권 내 지역 사이에 오염이동수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급원과 대기오염물질의 혼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187(a)항의 (2), (3), (6), 및 (7)조항의 목적을 위해 같은 조정을 할 수 있다.
- (4) 어느 주에서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a)항의 표1에 명시된 날짜를 다음의 경우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이후 ‘연장 연도’로 칭함)

- (A) 주가 해당이행계획에 지역관련 모든 요건 및 공약을 준수 완료한 경우, 그리고
- (B) 일산화탄소의 국가 대기질 기준 수치가 한 번 이상 초과한 사실이 이전 연장연도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

1년의 연장은 어느 달성 제외지역 1곳에 이 조항에 따라 2번 이상 허가할 수 없다.

(b) 신규 지정 및 재분류

- (1) 달성 제외 지역으로 신규 지정. 107(d)(4)항의 일산화탄소의 경우 달성지역 혹은 분류불능 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그 후에 107(d)(3)에 따라 일산화탄소 달성제외 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지역은 재지정 시점에서 법규의 시행에 의해 (a)(1) 및

(a)(4)항에 따라 표1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때에, 지역은 110조, 이 파트의 파트 1, 그리고 (a)(2)항에서 공지 시점에서 그 지역이 다시 분류되었다면 적용되었을 이 파트에 따라 같은 요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요건과 결합하여 해당 확정불변일자는 법규의 시행으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와 지역의 분류일자 사이에 시간의 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달성 불이행 시 경미한 지역의 재분류

(A) 일반 규칙. 일산화탄소 달성제외 지역의 경우 해당달성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달성일자 현재 지역의 설계 값에 기초하여 지역이 그 날짜까지 기준을 달성 완료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날짜까지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환경청장이 발견한 경미한 지역은 법규의 시행에 의해 (a)(1)항의 표1에 따라 중증지역으로 다시 분류를 하여야 한다.

(B) 공지 발표. 환경청장은 연방기록부에 달성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이 (A)항에 따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을 나타내고, (A)항에 언급된 재분류 내용을 나타내면서 공지사항을 알려야 한다.

(c) 용어의 언급. ‘경미한 지역’이나 ‘중증지역’의 표현은 이 조에서 분류된 ‘경미한 지역’ 혹은 ‘중증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42 U.S.C. 7512]

계획서 제출서류 및 요건

187조. (a) 경미한 지역. 경미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경미한 지역과 관련하여(혹은 그 일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

안 입법일자 전 발표한 환경청장의 지침에 명시된 정도로) 환경청장에게 이 항에서 언급된 주 이행계획수정안(계획 항목 포함)을 이 항에서 언급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주가 입법일자 현재 제출 완료했던 경우는 제외한다.

(1) 목록.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로부터 2년 이내, 주는 환경청장이 제공한 지침에 따라 172(c)(3)에 언급된 대로 모든 공급원에서 나오는 실제 배출가스의 현재 목록을 정확히, 종합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A) 차량이동거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분류시점에서 설계 값이 12.7ppm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수정안은 지역에서 달성할 일산화탄소 국가 대기질 기준을 예상하는 계획연도 전 각 연도에 관련하여 달성제외 지역에서 차량이동거리 전망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전망치는 환경청장이 교통부 장관과 의논을 하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발표하여야 하는 지침에 기초하여야 한다. 계획수정안은 전망치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는 정도에 관해 연례보고서와 함께 환경청장에게 제출할 전망치를 매년 갱신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례보고서는 전망치가 필요한 연도에 실제 차량이동거리 산정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B) 덴버의 특수규칙.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덴버의 경우, 주는 182(d)(1)(A)항에서 요구된 대로 교통통제조치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수정안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CO 배출량 감축을 위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가 그와 같은 조치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 이행계획은 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가능한 배출량 감축

을 위해 어떠한 배출감축조치를 채택하였는지, 혹은 일산화탄소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는데 감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비상사태 규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분류시점에서 설계 값이 12.7ppm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수정안은 (2)항에서 연간보고서에 제출된 지역에서 차량이동거리 산정치가 가장 최근의 이전 전망치에서 예측된 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지역이 주요 기준 달성일자까지 일산화탄소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착수할 특정조치의 이행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이전 전망치가 전망 갱신치를 하회하였거나 국가 기준이 그 기한까지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 주나 환경청장이 더 이상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효력을 발할 비상사태 조치로 계획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4) 주 이행 계획의 차량검사유지관리조항의 유보조항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후, 경미한 지역(혹은 환경청장의 재량범위 내, 그 일부)의 경우, 182(a)(2)(B)항에 언급된 유형이고, 해당이행계획이 182(a)(2)(B)항의 차량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항인 계획
- (5) 정기목록. 1995/9/30일 이내, 그 후 3년 기간이 끝나기 이전, 지역이 달성 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때까지, (a)(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정목록
- (6) 차량검사유지관리향상. 분류 시점에 설계 값이 12.7ppm을 넘는 경미한 지역의 경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182(c)(3)항에서(오존 달성제외 심각한 지역) 요구된 대로 차량검사유지관리향상 프로그램 규정을 포함하는 수정안, 다만 이 프로그램이 탄화수소 배출량이 아니라 일산화

탄소를 감축할 목적인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 (7) 달성 입증 및 특정 연간배출감축량. 분류 시점에 설계 값이 12.7ppm을 넘는 경미한 지역의 경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해당 달성 일자까지 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특정 연간 배출감축량에 대한 규정 및 해당 달성일자까지 일산화탄소 국가대기질 기준 달성을 위해, 수정계획이 제공할 증명서 및 제공할 수정안.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 항에서 요구된 기타 항목이나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일정을 제출하도록 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분류 시점에 설계 값이 12.7ppm미만인 경미한 지역의 경우, 이 항의 요건은 해당이행계획이 해당 달성일자까지 일산화탄소 달성에 대한 규정을 보여 주는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 대신에 적용되어야 한다.

(b) 중증지역

- (1) 개요. - 중증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중증 지역과 관련하여, 분류 시점에 설계 값이 12.7ppm보다 큰 경미한 지역에 (a)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a)(1)(B)¹⁾항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제외, 그리고 이 항에서 언급한 수정안 및 기타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차량이동거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주는 182(d)(1)항에 요구된 교통통제조치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닌 CO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정안의 경우는 제외한다. II 장 C 파트의 청정연료프로그램을 위해 차폐지역의 경우에(뉴욕 주 소재 지역은 제외), 추가 그와 같은 조치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 이

1) 아마도 '(a)(2)(B)'와 관련될 것임.

행계획은 그 조치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와 비교 가능한 배출량 감축을 위해 어떤 배출감축조치를 채택하였는지, 혹은 일산화탄소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는데 그러한 감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소처리 휘발유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주는 다음 지역 중 큰 지역에서 휘발유의 판매, 공급, 판매용 또는 공급용 입찰, 보급, 수송이나 출시를 요구할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i) 그 지역이 소재한 통합대도시통계지역(미국관리에산청에서 정의한)(CMSA)

(ii) 지역이 CMSA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이 소재한 대도시통계지역(미국관리에산청에서 정의한)은 해당 달성일자까지 일산화탄소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 달성 및 그 후 그 지역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유지를 규정하기 위해, 다른 조치와 결합하여, 그 지역이 높은 일산화탄소 대기 농도에(환경청장이 결정한) 취약한 연도 기간 중에 필요한 산소수치를 포함한 연료와 혼합하여,

수정안은 이러한 요건이 1993/10/1일 이내 유효함을 규정하며, 환경청장이 제공할 지침과 일치한 요건의 이행 및 집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B) (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설명한 수정안은 해당달 성일자까지 일산화탄소 국가 대기질 기준의 달성 및 그 지역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이행을 규정하는데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음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주가 증명하는 경우 지역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

(c) 유의한 CO 고정공급원 배출 지역

- (1) 중증 지역. 고정공급원이 일산화탄소 수치에 (환경청장이 발한 규칙에 따라 결정한 대로) 상당히 기여하는 중증 지역의 경우, 주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2년 이내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주요 고정공급원’이란(302조에 언급된 공급원 외에) 용어는 연간 50톤 이상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고정공급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2) 특정 지역의 권리포기. 환경청장은 일산화탄소 이동 공급원이 지역의 일산화탄소 수치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규칙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교통제어대책, 검사 및 유지관리 혹은 산소처리 연료와 관련된 요건을 사례별로 포기할 수 있다.
- (3) 지침.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고정공급원이 지역의 일산화탄소 수치에 상당히 기여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 및 규칙을 발하여야 한다.

(d) CO 이정표.

- (1) 이정표 증명. 1996/3/31일까지, 중증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1995/12/31일까지 요구된 특정 총 연간배출감축에 해당하는 CO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였다는 증명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감축량은 이 항에서 이정표로 칭한다.
- (2) 증명의 적합성. 이 조항의 증명서는 환경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 및 방식으로 제출하며, 환경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및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증명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주의 증명서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배출감축이정표 충족 불이행. 주가 요구된 기간 내 (1)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주가 이정표를 충족

하지 못했음을 환경청장이 주에 통보하는 경우, 주는 불이행이나 통보 후 9개월 이내, 182(g)(4)항에 언급된 대로 경제적 인센티브 및 교통통제프로그램을 이행할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수정안은 달성일자까지 계획에 제시된 구체적인 연간 일산화탄소 배출감축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e) 복수 주 CO 달성제외 지역.

(1) 주 사이 조정. 여러 주가 관련되고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 지역의 일부가 소재하는 주(복수 주 달성제외지역)는 관련 달성 제외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 이행계획의 수정 및 이행을 조정하는데 모든 적절한 조치를 명목상으로 절차상으로도 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주의 계획수정안이 이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복수 주 달성제외 지역의 일부가 소재한 주에 대해 이 파트에서 제출한 주 이행계획의 수정사항을 승인할 수 없다.

(2) 달성 증명 불이행. 복수 주 달성제외 지역의 일부가 소재한 주가 이 파트에서 요구된 기간 내 그 일부에서 일산화탄소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달성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주는 지역의 다른 부분에 소재한 여러 주가 187조에서(일산화탄소 달성 제외 지역의 경우 계획제출서류) 요구된 모든 조치 이행을 약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조사를 해달라고 환경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환경청장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주의 달성제외 지역 일부에서 조사를 한 경우, 어떠한 제재도 179조에 따라 혹은 이 법의 여타 규정에 따라,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f) 재분류 지역. 186(b)(2)항에 따라 재분류된 일산화탄소 달성제외지

역이 있는 주는 이 조 (b)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요건과 관련하여 규정된 일정에 따라서 재분류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기한이 실행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기한(달성 일자 제외)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g) 중증 지역의 기준 달성 불이행. 일산화탄소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이 해당달성일자까지 중증지역에서 달성되지 못했다고 186(b)(2)에 따라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주는 결정일자 후 9개월 이내 지역 관련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수정안이 182(g)(4)항에 언급된 인센티브 및 요건 프로그램이 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수정계획의 다른 요소와 합하여 계획수정안 승인 후, 그리고 일산화탄소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달성 전에 각 연도에 연간 최소 5퍼센트까지 지역에서 일산화탄소 총 배출량(톤)을 감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42 U.S.C. 7512a]

D 4.

가

188조. 분류 및 달성일자

189조. 계획규정 및 계획 제출 일정.

190조. RACM 및 BACM 지침 공포

분류 및 달성일자

188조. (a) 최초 분류. 107(d)에 따라 PM.10 관련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시점에서 법규 시행에 의해 중간¹⁾ PM. 10 달성 제외 지역(이 파트에서 '경미한 지역'으로 칭함)으로 분류하여야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경미한'일 것임.

한다. PM.10 달성제외 지역의 경우 107(d)(4)(지역 지정)에 따른 공지 발표 시점에서, 환경청장은 이 지역의 분류사항을 발표하는 공지를 알려야 한다. 172(a)(1)(B)항의 규정(공지의견 및 사법심사 결여)은 이 분류에 대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b) 중증 지역으로 재분류

(1) 달성일자 전 재분류. 환경청장은 경미한 지역의 경우 달성일자까지(c)항에 규정된 PM.10의 국가 대기질 기준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하는 주를 중증 PM.10 달성제외 지역(이 파트에서 '중증 지역'으로 구별됨)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다음 일자까지 해당 지역을 중증 지역으로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A) 107(d)(4)항에 따라 PM.10에 대해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환경청장은 1991/6/30일까지 해당지역을 다시 분류할 예정이며 1991/12/31일까지 최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그 후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환경청장은 경미한 지역에 대한 SIP를 주에서 제출하기 위해 요구된 날짜 후 18개월 이내 해당지역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2) 달성 불이행시 재분류. PM.10 달성제외지역의 달성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그 일자까지 지역이 기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 해당달성일자 후 경미한 지역이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발견한 경우,

(A) 그 지역은 중증 지역으로 법규 시행에 의해 다시 분류하여야 하며,

(B) 환경청장은 달성일자 후 6개월 이내 그 지역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A)항에 언급된 재분류내용을 나타내는 공지를 연방기록부에 알려야 한다.

(c) 달성 일자, (d)항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PM.10 달성 제외 지역의 달성일자는 다음과 같다.

- (1) 경미한 지역. 경미한 지역의 경우, 달성일자는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후 6번째 연도 말 이내이며, 다만 107(d)(4)항에 따라 PM.10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달성일자는 1994/12/31일 이후로 연장되지 않는다.
- (2) 중증 지역. 중증 지역의 경우, 달성일자는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후 시작하여 10년째 연도가 끝나기 전이어야 하며, 다만 107(d)(4)에 따라 PM.10의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일자는 2001/12/31일 지나 연장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d) 경미한 지역의 달성일자 연장

주에서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다음의 경우 (c)(1)항¹⁾에 명시된 날짜를 추가로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연장 연도’로 칭함)

- (1) 주가 해당 이행계획에서 지역과 관련된 모든 요건 및 공약을 준수 완료한 경우,
- (2) PM.10의 24시간 국가 대기질 기준치를 하나 이상 초과건수가 연장 연도 직전 연도에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해 연도 그 지역의 PM.10의 연간 평균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1년 연장은 2번 이상 달성제외 지역 한 곳에 이 항에 따라 2번 이상 부여될 수 없다.

(e) 중증 지역의 달성일자 연장.

주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중증지역의 경우 달성일자를 (c)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항’일 것임

항에 명시된 날짜 지나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c)항에서 따라 정한 날짜까지 달성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 주가 이행계획에 지역 관련 모든 요건 및 공약을 준수 완료한 경우, 그리고 지역 관련 계획이 특정 주의 이행계획에 포함되거나 특정 주에서 실제로 달성되고, 그 지역에서 이행 개연성이 있으며 가장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주가 증명한 경우이다.

이러한 신청 시점에서, 주는 가장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날짜까지 달성 증명서를 포함하는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 허가 여부 및 연장 시간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달성 제외의 성격 및 정도, 그 지역에서 공급원의 유형이나 수 혹은 다른 배출활동(통제불능 천연자원 및 외국에서 오는 국경초월 배출 물질의 영향), 기준 과다 농도에 노출된 인구, 지역의 미립자 배출 혼합물질 중 독성 가능성 물질의 농도, 그리고 여러 통제조치의 기술적, 경제적 개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지역의 달성 증명서를 주가 제출할 때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없으며, 지역의 연장기간을 최대한 5년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

- (f) 특정 지역의 권리포기. 환경청장은 PM.10 인위적 공급원이 지역의 PM.10 기준의 위반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이 파트에서 중증 지역에 적용 가능한 요건을 사례별로 포기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또한 PM.10 비 인위적 공급원이 지역의 PM.10 기준 위반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기준 달성의 특정 날짜를 포기할 수 있다.[42 U.S.C. 7513]

계획 규정 및 계획 제출일정

189조. (a) 경미한 지역

- (1) 계획규정. 경미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2)항의

일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72(c)(5)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7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허가는 PM. 10 신규, 변경 주요 고정공급원의 건축 및 가동에 필요함을 규정한 허가 프로그램

(B) (i) 계획이 해당 달성일자까지 달성을 준비하겠다는 증명서(대기질 모델링 포함) 혹은 (ii) 그 날짜까지 달성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증명서

(C) PM.10 관리를 위한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제조치가 1993/12/10이내 혹은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중간¹⁾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 지정 후 4년 이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2) 계획 제출일정. 주는 다음 기간 내 (1)항에서 요구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1년 이내, 107(d)(4)항에서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단, (1)(A)항에서 요구된 규정이 1992/6/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18개월 후, 107(d)(4)항에서 규정된 지정 후 달성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b) 중증 지역

(1) 계획 규정. (a)(1)조항²⁾의(경미한 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된 규정 외에, 중증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그 지역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A) 증명서(대기질 모델링 포함)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중간'일 것임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항'일 것임

- (i) 계획이 해당 달성일자까지 **PM.10** 국가 대기질 기준 달성을 규정함, 혹은
 - (ii) 주가 188(c)항에 제시된 날짜를 지나 달성일자의 연장을 188(e)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그 날짜까지 달성이 실행 불가능할 것이므로 가장 빠르고 실행 가능한 대체 일자까지 달성을 준비함.
- (B) pm.10 관리를 위해 최대 가용한 통제조치가 중증 지역으로 분류(혹은 재분류)된 후 4년 이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2) 계획 제출일정. 주는 중증 지역으로 다시 분류된 후 4년 이내 (1)(A)항의 지역에 요구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88(b)(2)에서 재분류된 지역의 경우, 주가 중증지역으로 재분류된 후 18개월 이내 달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는 중증지역으로 재분류된 후 18개월 이내 (1)(B)항에 언급된 조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주요 공급원. 중증 지역의 경우, ‘주요 공급원’ 및 ‘주요 고정 공급원’이란 용어는 최소 연간 pm.10 70톤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고 인근 지역 내 있으며,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고정공급원을 포함한다.
- (c) 이정표. (1) 이 파트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환경청장에게 제출한 달성증명 계획수정안은 달성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때까지 3년 마다 달성할 예정이며, 그리고 해당날짜까지 달성하는 방향으로 171(1)항에 규정된 향후적정증가량을 증명하는 수량 이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지역에 적용 가능한 이정표가 발생하는 날짜 후 90일 이내, 이 조에서 승인된 계획의 모든 조치가 이행 완료되었으며 이

정표가 충족되었다는 증명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항의 증명서는 환경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및 분석을 포함하여 환경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양식 및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러한 정보 및 분석을 포함하는 증명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주의 증명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주가 요구 기간 내 이정표와 관련하여 (2)항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 해당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겠다고 결정한 후 9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주에게 해당날짜까지 다음 이정표를 달성하겠다고 (혹은 다음 이정표가 없는 경우 pm10의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 보장하는 계획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d) 달성 불이행. 중증 pm.10 달성제외 지역의 경우, 해당달성일자까지 pm.10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때, 지역이 소재한 주는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제공 후, 해당달성일자 후 12개월 이내,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수정안은 제출일자부터 달성까지 pm.10 대기질 기준 달성에 대해, 지역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작성된 목록에 보고한 배출량이 5 퍼센트 이상인 지역에서 pm.10이나 그 전구체의 연간 감축량을 규정하고 있다.

(e) PM.10 전구체. pm.10 주요 고정공급원 관련하여 이 파트에서 유효한 계획에서 적용 가능한 통제요건은 pm.10 전구체의 주요 고정공급원에 적용되며, 다만, 환경청장이 이 공급원이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pm.10 수치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은 앞 문장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여야 한다.[42 U.S.C. 7513a]

RACM 및 BACM 지침 공포

SEC. 190. 환경청장은 도시지역 비산성 먼지에 대한 최대 가용억제 조치 및 합리적인 가용 억제조치, 그리고 주거 지역 목재 연소(삭감 및 삭감 면제사항 포함) 및 삼림 및 농업연소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기술 지침을 108(c)항에서 발표한 지침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같은 절차에 따라,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발행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pm.10 기준 달성 제외에 기여하는 기타 공급원 부문을 조사하고, 합리적 가용억제조치 및 최대 가용억제조치에 대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그와 같은 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지침을 간행하고 결정을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주와 상의하여) IV장 및 기타 이 법 규정에 따라 달성되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감축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42 U.S.C. 7513b]

D 5. , , 가

191조. 계획제출기한

192조. 달성 일자

계획 제출기한

191조. (a)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 이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나 납에 대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과 관련하여 107(d)항에 따라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이 된 지역의 주는 지정되고 18개월 이내, 이 파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이행계획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전부 승인 이행계획이 없는 지역의 주.

107(d)(1)(C)(i)항에 따라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과 관련하여 달성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대로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하는 전부 승인 이행계획이 없는 지역의 주는 파트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행계획을(단, 192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2 U.S.C. 7514]

달성 일자

192조. (a) 191(a)에 따른 계획. 이 이행계획은 가능한 신속히, 그러나 달성 제외 지역일자로부터 5년 이내, 관련 주요 기준의 달성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b) 191(b)에 따른 계획. 이 이행계획은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관련 주요 국가 대기질 기준의 달성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c) 부적합 계획.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에 환경청장이 승인하였지만, 승인 후, 환경청장의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계획이 있는 황산화물, 이나 질소산화물의 달성제외 지역 관련 이행계획은 조사일자로부터 5년 이내 관련 주요 기준 달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42 U.S.C. 7514a]

D 6.

193조. 일반 유보조항

일반 유보조항

193조.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에 유효한 때, 이 법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하거나 발한 규정, 기준, 규칙, 공지, 명령 및 지침은 그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받으며, 다만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환경청장의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환경청장이 수정한 정도는 제외한다. 특정 오염물질 달성 제외 지역에서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계획, 명령이나, 중재합의에서 유효하거나 채택할 필요가 있는 어떤 억제요건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법 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동량 혹은 크게 감축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42 U.S.C. 7515]

II 장. 이동 공급원의 배출기준

약식 표제

201조. 이 장은 ‘국가배출기준법’으로 칭할 수 있다. [42 U.S.C. 7401]

A.

기준 제정

202조. (a)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1) 환경청장은 이 조의 조항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 자신의 판단으로 공중보건이나 복지위험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특정 부문의 신규 자동차나 그 엔진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때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차량 및 엔진이 오염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완비 시스템이나 일체 장치로 설계되던 간에 차량 및 엔진의 활용수명에 (인증을 받기 위한 차량의 활용수명) 대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위 (1)항에서 규정된 규정(및 그 수정사항)은 환경청장이 필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허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후에 효력을 발하며, 그 기간 내 준수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3) (A) 개요.(i) (B)조항에 제시된 대로 기준이 바뀐 경우를 제외하고, 위 (1)항의 규정은 1983년 모델 연도 중이나 그 후에 제조된 대형차량이나 엔진 부문이나 종류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미립자 배출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기준이 적용되는 모델 연도에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비용, 에너지 및 안전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감축정도를 반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ii) 이 조항의 규정을 위해 차량이나 엔진 부문의 등급이나 범주를 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등급이나 범주를 차량 총중량, 마력, 사용한 연료 종류나 기타 적절한 요소에 기초할 수 있다.

(B) 대형트럭의 수정기준 (i)공중보건복지에 미치는 대형트럭 차량이나 엔진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및 기타 이동 공급원 관련 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비용을 고려하면서 환경청장은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이나, 개정안에 따라 공표되고(혹은 이 항목에 따라 이전에 수정됨), 대형차량이나 엔진 부문이나 등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정하는 규정을 위 (1)조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ii) 모델연도 1998년 및 그 후 유효한, 위 (1)항의 규정은 휘발유 및 디젤연료 대형트럭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배출에 적용할 수 있는데 배출량이 4.0그램/제동마력시간(gbh)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C) 준비 시간 및 안정성. 이 조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수정되고, 대형차량이나 엔진 등급이나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수정 기준이 공표된 후 4년 후 시작하는 모델 연도보다 이르지 않게 시작하면서 3년의 모델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

(D) 재건축 관행. 환경청장은 대형차 엔진을 재설치하는 작업 및 재건설이 엔진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야 한

다. 이 연구 및 환경청장에게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은 재설치 통제 업무의 요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재설치된 대형 엔진의 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고(엔진이 법정 활용수명을 지났는지 여부), 자신의 판단으로 비용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이나 복지위험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것에 적용된다. 규정은 환경청장이 기간 및 에너지 및 안전 요소 준수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필수 통제 조치의 개발 및 활용을 허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간 후에 효력을 발한다.

(E) 오토바이.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오토바이 및 그 엔진은 대형차 및 엔진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며(206(f)(1)항¹⁾에 달리 허가한 경우는 제외), 다만 환경청장이 이 조의 의미 내 소형차로 오토바이를 다시 분류하는 규칙을 공표하는 경우, 또는 별도의 등급이나 범주로서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a)항의 요건을 공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도의 등급이나 범주로 오토바이의 배출 물질에 대한 기준이 공표된 경우에도, 환경청장은 이 기준을 공표하는데 있어, 최대 실행 가능한 정도로 오토바이 및 기타 자동차 사이 배출 감축량의 동등성을 달성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A) 모델 연도 1978년 후 제조된 차량 및 엔진에 대해서 유효하며, 어떠한 배출억제장치, 시스템이나 설계요소도 이 장에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할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나 그 엔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설계 장치, 시스템이나 요소가 작

1) 아마도 206(f)항과 관련될 것임. 206(f)항의 '(1)'은 공법 101.549. 230(8)(A)항으로 삭제되었음

동이나 기능에 있어서 공중보건, 복지나 안전에 대한 합당하지 못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경우이다.

(B) (A)항에 따라 합당하지 못한 위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여러 요소 중에서 (i) 설계 장치, 시스템이나 요소를 사용하여 규제 외 오염물질 배출을 초래하거나, 증감소하거나 제거하는 여부 및 그 정도; (ii) 설계 장치, 설비나 요소 사용과 관련될 수 있는 공중보건, 복지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데 이용 가능한 방법, 그리고 (iii) 그러한 합당하지 않은 위험을 일으키거나 기여하지 않고 이 장에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설계 장치, 설비나 요소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A) 환경청장이 자동차 급유로 인한 규제 외 배출물질의 휘발유 증기회수에 대해 준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 절차 및 필요한 통제범위의 정도를 규정하는 최종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자동차 안전에 대해 교통부장관과 상의 후,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규정에 의해 증기회수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급유관과 증기회수장치 사이에 효과적인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형 자동차에 대한 급유관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공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급유관 직경, 노즐 장착삽입구에 대한 최소 설계기준, 무연연료금지자의 장소 제한, 파이프나 노즐 최소삽입각도 및 기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 (A)항의 기준을 명하는 규정은 설계 및 생산에 적당한 준비시간상 제약을 고려하면서 기준을 이행하는데 실행 가능한 모델 연도를 제출할 때까지는 발효하지 않는다.

(C) (A)항의 어느 것도 (i) 환경청장이 첨가제 여부와 무관하

게 휘발유의 상이한 노즐 및 급유 주입구 크기를 명시하지 못하게 막지 않아야 하며, (ii) 연료탱크 급유 충전 주입구나 충전 간극 싸개에 대해서 차체의 특정 위치, 구성, 모델링이나 스타일 등을 환경청장이 요구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D)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급유관’이란 용어는 연료탱크 급유관, 급유주입구, 충전입구 및 마개 등을 포함한다.

(6) 탑재 증기회수.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차량급유 중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차량 기반(탑재)설비의 안전에 관해 교통부 장관과 상의 후, 이 조에서 기준이 공표된 모델 연도 후 4차 모델연도에 시작하여 신형 소형차를 제조하고 그 후 설비를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요구된 기준은 기준이 공표된 모델 연도 후 4차 모델 연도에서 시작하여 신형 소형차 제조업체 군단의 백분율에 적용하여야 한다.

탑재 증기회수 요건의 이행일정

기준 공표 후 시작하는 모델 연도	백분율*
4차	40
5차	80
5차 이후	100

* 표의 백분율은 제조업체의 판매량 백분율을 말함

이 기준은 설비의 배출가스 흡착 비율이 최소 95퍼센트가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81조에서 경미한 오존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 182(b)(3)항(휘발유증기회수 II단계)의 요건은 이 기준을 공표한 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181조에서

오존에 대해 중증, 심각한 지역, 극심한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 이 조항에서 요구된 탑재배출억제장치가 자동차 군단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한 시간 후 182(b)(3)항의 요건 적용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b) (1)(A) 1977년 모델연도~1979년 중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배출가스에 적용할 수 있는 (a)항의 규정은 차량 및 엔진의 배출량이 탄화수소는 1.5g/차량거리, 일산화탄소는 15g/차량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980년도 중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적용할 수 있는 (a)항의 규정은 차량 및 엔진의 배출량이 탄화수소는 7g/차량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980년도 중에 또는 그 후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에 적용할 수 있는 (a)항의 규정은 이 조에서 1970년 모델연도에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에서 최소 90퍼센트를 감축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5)조항에 규정된 권리 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1980년도 중에, 혹은 그 후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에 적용할 수 있는 (a)항의 규정은 이 조에서 1970년 모델연도에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에서 최소 90퍼센트를 감축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B) 1977년 모델연도~1980년 중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적용할 수 있는 (a)항의 규정은 차량 및 엔진의 배출량이 2.0g/차량거리,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980년도 중에 또는 그 후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적용할 수 있는 (a)항의 규정은 차량 및 엔진의 배출량이 1.0g/차량거리,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앞 문장에서 요구한 사항 대신에 다음과 같이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경우에 1981~1982모델 연도 중 기업 주체별, 전 세계에서 소형차가 30만대 미만을 생산한 제조업체가 제조한 소형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g/차량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i) 1975년 및 그 후 모델 연도에 제조업체의 배출기준 충족능력이 다른 제조업체가 개발하고 그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한 기술에 주로 의존한 경우,

(ii)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자원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C) 환경청장은 공중보건이나 복지보호에 필요한대로, 비용, 에너지 및 안전을 고려하여 (a)(1)항에 따라 이 항에서 이전에 규정되거나 수정된 기준을 수정하는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그와 같은 수정안은 기준의 단계적 도입을 규정할 수 있다. (a)(3)(B)(ii), (g), (h), 및 (i)항에 명시된 배출수치기준은 2004년 모델 연도 전 특정 모델 연도에 대해 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환경청장이 수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의회의 취지이다.

(2) (1)조항의 배출기준 및 기준의 근거가 되는 측정기법(1990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공표되지 않은 경우)은 이 날짜 후 180일 이내 규정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3)¹⁾ 이 파트의 목적에 맞게,

1) 공법101.549(104 Stat.2529)230(4)(C)항은 그전의 202(b)(3)항을 폐지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고 202(b)(6)항을 202(b)(3)항으로 재지정을 하였다.

(A) (i) 특정 달력연도를 언급한 ‘모델 연도’란 용어는 제조업체의 연간생산연도(환경청장이 정한)를 말하며, 달력연도의 1월1일을 포함한다. 제조업체가 연간생산기간이 없는 경우, ‘모델연도’란 용어는 당해 연도를 의미한다.

(ii) 모델연도의 시작 전에 제조된 차량 및 엔진이 (b)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기준의 유효일자를 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환경청장은 (i)항에서 규정된 것과는 달리 ‘모델연도’를 정의하는 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

[(B)]²⁾

(C) ‘대형차량’이란 용어는 주로 공용도로, 가로 및 고속도로 용으로 제조된 트럭, 버스나 기타 차량(철도나 철로전용 운행차량 제외)을 말하며, 총중량이(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서 결정한 대로) 6천 파운드가 넘는다. 이 용어는 특히 도로 외 혹은 고속도로 밖 운행이 용을 가능하게 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3) 제조업체의 청원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공청회 공지 및 기회 제공 후 최고 4 모델연도 중 제조업체가 제조한 특정부문이나 등급의 소형차나 엔진의 경우 질소산화물이 1.5g/차량거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1)조항의 (B)항목에 따라 요구된 기준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등급이나 종류의 차량이나 엔진에 혁신적 배출제어장치나 설비 또는 혁신적인 동력 견인 기술사용을 허가하는데 권리포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이나 설비가 1975년 모델연도에 미국에서 판매된 소형차 1퍼센트 이상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제조업체가 증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포기는 환경청장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2) (B)항목은 P.L.101.549, (104 Stat. 2529) 230(1)항으로 폐지됨.

- (A) 권리포기가 공증보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 (B) 권리포기 만료 시점에서 차량이나 엔진이 이 조의 해당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
- (C) 기술이나 설비가 권리포기 만료시 에너지정책보존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평균연료경제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 대기질 이득 가능성이 있음.

제조업체에게 허용된 이 항목의 어떤 권리포기도¹⁾ 제조업체의 생산량의 5퍼센트 이상이나 차량이나 엔진 50만대 이상 중, 큰 쪽에 적용되지 않는다.

- (c) (1)환경청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조 (b)항에서 환경청장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 종합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이 법에서 환경청장이 충당할 권한이 있는 기금 중에서, 필요한 금액은 위 (1)조항에서 권한이 부여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위 (1)조항에서 권한이 부여된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립과학아카데미와 약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아카데미에 연구조사 진도에 대해 1971/7/1이내 시작하고, 연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환경청장 및 의회에 보낼 보고서를 반년마다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4) 환경청장은 아카데미의 요청이 있는 때 위 (1)조항에서 부여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간주하는 정보를 아카데미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을 위해, 환경청장은 특정인으로부터 (A)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B)그 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이 항을 실시하는데 합당하게 필요할 수 있고 그 자가 실시하는 연구나 기타 활동과 관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조항'일 것임.

런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d) 환경청장은 이 조 (a)(1)항 및 207조 목적을 위해 차량 및 엔진의 활용수명을 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유용수명기관이 이 장 활용수명에서 다르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소형차 및 그 엔진과 소형트럭이 각각 750 lbs. LVW 미만, 6,000 lbs. GVWR인 경우, 5년 사용기간이나 5만 마일(혹은 상당거리)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만 1990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의 경우, 이 차량 및 엔진의 활용수명기간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간은 10년 또는 10만 마일(혹은 상당거리)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로 207조에 따라 사용 중 적합성 목적을 위한 시험으로 최고 7년이나 75,000 마일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하는 때는 제외한다.

(2) 기타 자동차나 엔진(오토바이나 그 엔진 제외)의 경우 (1)항에 제시된 사용 기간, 다만 환경청장이 더 긴 사용기간이나 거리가 적합하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한 경우는 제외.

(3) 오토바이나 그 엔진의 경우,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사용기간.

(e) 206(a)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신형 자동차나 그 엔진의 신규 동력원이나 추진 장치를 제출한 경우, 환경청장은 (a)항에서 기준이 아직 규정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공중보건이나 복지위험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차량이나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규정 완료할 때까지 인증을 연기할 수 있다.

(f)¹⁾ (1) 모델 연도 1977년 자동차에 대해 유효한 고 위도 규정은 1978년 및 그 후 모델연도 자동차의 제조, 보급이나 판매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골의 고위도지역에서 1984년 모델연도 전에 제조된 자동차나 엔진의 판매나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향후 규정은 1981 모델연도 이후에 효력을 발한다.

(2) 고위도 차량이나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향후 규정은 202(b)에 제시된 자동차의 배출량 감축량보다 많은 차량의 배출비율감축을 요구하지 않아야한다. 이 비율 감축은 1970년 모델연도 중 제조된 차량에서 고위도 배출량과 고위도 예정배출기준을 비교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1984년도 모델 연도 전 제조된 고위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저위도 조건에서 인증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307(d)항은 (2)조항에 언급된 고위도 규정에 적용하며, 그와 같은 규정을 공포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작업을 고려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A)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영향, 개별 고위도 자동차상인, 이러한 규제를 받는 자동차산업, 고위도 인증 요건에 대하여 1977년도 모델연도 중 부과된 규정의 결과로 경험한 경제적인 효과도 포함.

(B) 모델 이용 가능성을 줄이지 않고 현재, 향후에 해당 차량 및 엔진 배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배출통제기술의 가용성.

(C) 고위도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대기질의 유의한 향상을 가져 올 규정을 채택할 가능성

1) 공법 101.549 (104 Stat. 2482) 207(b)항은 이전에 있던 (f)항을 폐지하거나 다시 지정을 하지 않고 새 (f)항을 추가하여 202조를 수정하였음. 새 (f)항은 편집과정에서 본문에 나타나있는 대로(e)항 뒤가 아니라 202조 끝부분에 추가되었음

(f)¹⁾ 1990년도 모델연도. 모델연도 1994년 전의 모델연도²⁾의 경우, 202(a)항에서 219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버스의 미립자 배출량이 다음 표에 제시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버스의 PM 기준

모델 연도	기준*
1991	0.25
1992	0.25
1993 이후	0.10

* 기준은 g/제동마력시간(g/bhp/hr)으로 표현된다.

(g) 6,000 LBS미만. GVWR인 소형트럭/소형차량: 1993년 후 모델연도 기준

(1) NMHC, CO 및 NO_x.. 모델연도 1994년과 그 후에 유효하며, (a)항에 따라 최소 총 중량급이 6,000 lbs.인 소형트럭 및 소형차(LDV)에서 나오는 (LDT) 비메탄 탄화수소(NM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_x) 배출 가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차량 및 트럭 제조업체 판매량의 비율은 표 G에 명시된 수준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비율은 아래 이행일정에 명시된 대로이다.

1) 이전 페이지의 주석 1 참조

2) ‘모델연도 1994년 전’이란 표현은 그 항의 표 및 표제와 불일치하며, 아마도 ‘모델연도 1990년 후 기간 중’으로 읽어야 함.

표 G. 6,000LBS미만.GVWR급 경트럭/경차량의 NMHC,
CO 및 NOx배출기준

차량 종류	A 종목			B 종목		
	(5 yrs/50,000 mi)			(10 yrs/100,000 mi)		
	NMHC	CO	NOx	NMHC	CO	NOx
LDTs(0 - 3,750 lbs. LVW) 및 소형차	0.25	3.4	0.4*	0.31	4.2	0.6*
LDTs(3,751-5,750 lbs. LVW)	0.32	4.4	0.7**	0.40	5.5	0.97

기준은 그램/거리(gpm)로 표시된다.

A 종목에 따른 기준의 경우 20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활용수명은 5년이나 5만 마일(혹은 등가치)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적용한다.

B 종목에 따른 기준의 경우 20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활용수명은 10년이나 10만 마일(혹은 등가치)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적용한다.

* 디젤연료 LDT(0.3,750 LVW) 및 소형차의 경우, 모델연도 2004년 전, NOx의 경우 0.4 및 0.6 기준 대신에, NOx의 적용기준은 활용 수명이 5년 혹은 5만 마일 중 먼저 발생한 경우에 1.0gpm, 활용수명이 10년이나 10만 마일 중 먼저 발생한 경우에 1.25gpm이다.

**이 기준은 디젤 연료 LDT(3,751.5,750 lbs. LVW)에 적용하지 않는다.

표 G 기준에 대한 이행일정

모델 연도	비율*
1994	40
1995	80
1995년 이후	100

* 표의 비율은 제조업체의 판매량 비율을 말함.

(2) PM 기준. 소형차의 경우 모델연도 1994년과 그 후에 유효하며, 6,000 lbs.미만 경트럭(LDT)의 경우 모델연도 1995년과 그 후에 유효하며, (a)항에 따라 차량 및 트럭에서 나오는 미립자 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차량 및 트럭 제조업체 판매 트럭의 일정비율의 배출량이 아래 표에 명시된 수준을 넘

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비율은 아래 이행일정에 명시된 대로이어야 한다.

6,000 lbs. GVWR 미만 LDT의 PM 기준

활용수명기간	기준
5/50,000	0.08 gpm
10/100,000	0.10 gpm

적용 가능한 활용 수명은 20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207조의 사용 중 준수 목적을 위해 5/50,000 기준의 경우 5년이나 5만 마일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활용 수명은 20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207조의 사용 중 준수 목적을 위해 10/100,000 기준의 경우 10년이나 100,000마일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PM 기준 이행 일정

모델연도	소형차	LDTs
1994	40%*	
1995	80%*	40%*
1996	100%*	80%*
1996년 이후	100%*	100%*

* 표의 비율은 제조업체의 판매량 비율을 말함.

(h) 6,000 LBS GVWR이상 소형차트럭: 1995년도 이후 모델연도 기준. 모델연도 1996년과 그 후에 유효하며, 총중량 6,000 lbs. 이상 소형

트럭(LDT)의 경우, (a)항에 따라 소형트럭에서 나오는 NMHN, CO, Nox 및 미립자 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이 트럭 제조업체의 판매트럭 중 특정비율의 배출량은 표H에 명시된 수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명시된 비율은 모델연도 1996년에는 50퍼센트, 그 후 100퍼센트이다.

표 H-6,000 L배출기준

LDT 시험 중량	A 종목			B 종목		
	(5 yrs/50,000 mi)			(11 yrs/120,000 mi)		
	NMHC	CO	NOx	NMHC	CO	NOx
3,751 - 5,750 lbs. TW						
5,750 lbs 초과. TW						

기준은 그램/거리(gpm)로 표시된다.

A 종목에 따른 기준의 경우 20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활용수명은 5년이나 5만 마일(혹은 등가치)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적용한다.

B 종목에 따른 기준의 경우 20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활용수명은 11년이나 12만 마일(혹은 등가치)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적용한다.

* 디젤연료 LDT에 적용할 수 없음

- (i) 특정 소형차/소형트럭의 II 단계 연구(1)환경청장은 기술 평가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형차/소형트럭의 배출감축량은 이 장에서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연구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2003/1/1일 시작하는 모델 연도에 대해 다음 표에 명시된 부하중량 (LVW)이 3,750 lbs. 이하인 휘발유디젤연료 소형차/소형트럭에 대한 기준 및 활용수명기간의 수립 여부를 연구하여야 한다.

표 3. 3,750 LBS 미만 LVW 휘발유디젤¹연료 소형차/소형트럭의
미결 배출기준

오염물질	배출수준*
NMHC	0.125 GPM
NOx	0.2 GPM
CO	1.7 GPM

* 배출수치는 그램/마일(gpm)으로 표현한다. 202(d)의 목적에 맞게 이 항을 적용하는 차량 및 엔진 및 기준에 대해, 차량 및 엔진의 활용수명은 10년 혹은 10만 마일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¹아마도 '디젤 연료형'일 것임.

이 연구는 표 3에 제시된 기준보다 더 엄격하거나 덜 엄격한 (그러나 (g) 및(h)항에 언급한 것보다 더 엄격함) 기타 기준 및 활용수명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A) (1)조항의 연구의 일부로, 환경청장은 209(b)항의 포기 조항을 고려하여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배출량 감축 필요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i) 기술 이용 가능성(기술 비용 포함). 부하차량중량이 3,759 lbs. 이하인 소형차/소형트럭의 경우에, 2003/1/1일 후보다 이르지 않게 시작하고, 2006년 이해 모델 연도의 경우 (g) 및 (h)항에 제시된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영향 및 준비시간 및 안전을 포함한다.

(ii) 향후 소형차/소형트럭에서 나오는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 및 비용 효과성. 주 이행계획 및 기타 이 법의 요건에 따라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대체 수단을 고려하고, 실행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을 포함한다.

- (B) 환경청장은 1997/6/1일 이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항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A)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도 포함한다. 보고서 제출 전에, 환경청장은 적절한 공공 의견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에 보낼 보고서에 의견 적요서도 포함하여야 한다.
- (3) (A) (1)항의 연구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3년 이내, 그러나 1999/12/31일 이내,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i) (2)(A)항에 제시된 향후 배출 감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ii) (2)(A)(i)항에 규정된 대로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의 가용성. 3,750 lb.이하 LVW의 소형차/소형트럭의 경우에, 2003/1/1일 이후에 시작하고 2006년 모델연도 이내 모델 연도의 경우, (2)(A)(i)항에 열거한 요소를 고려함.
 - (iii) 향후 차량의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고 비용 효과적인지 여부. (2)(A)(ii)항에 제시된 대안을 고려함. 이 조항의 규칙제정은 (2)(B)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 시작하여야 한다.
- (B) 환경청장이 (A)항목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 (i) (2)(A)조항에 제시된 향후 배출량을 감축할 필요성이 없음
 - (ii) (2)(A)(i)항에 규정된 대로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이용할 수 없음 (3,750 lb.이하 LVW의 소형차/소형트럭의 경우에, 2003/1/1일 이후에 시작하고 2006년 모델연도 이내 모델 연도의 경우, (2)(A)(i)항에 열거한 요소를 고려함).

(iii) (2)(A)(ii)항에 제시된 대안을 고려하여 향후 차량의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 효과적이지도 않은 경우, 환경청장은 (g) 및 (h)항에 따라 유효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의 규칙제정은 (2)(B)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 시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어느 것도 3,750 lbs. LVW 이하인 소형차/소형트럭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공표하기 위해 (a)항에 따른 환경청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후 어느 때라도 (a)항에 따른 행사권한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C) 환경청장이 (A)항목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i) (2)(A)조항에 제시된 향후 배출량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

(ii) (2)(A)(i)항에 규정된 대로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3,750 lb. 이하 LVW의 소형차/소형트럭의 경우에, 2003/1/1일 이후에 시작하고 2006년 모델연도 이내 모델 연도의 경우, (2)(A)(i)항에 열거한 요소를 고려함).

(iii) 2)(A)(ii)항에 제시된 대안을 고려하여 향후 차량의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고 비용 효과적인 경우, 환경청장은 (1)조항의 표3에 제시된 기준(및 활용수명기간)을 공표하거나 (g) 및 (h)항에 따라 유효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대체 기준(및 활용수명기간)을 공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공표한 이와 같은 기준(혹은 활용수명기간)은 이러한 차량이나 엔진에 대해 모델연도 2003년 이후, 모델연도 2006년 이내, 환경청장이 규칙에서 결정한 대로 효력을 발한다.

- (D)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이 조항에서 요구된 규칙제정 시 표3에 제시된 기준(혹은 활용수명기간)이 공표되어야 한다는 가정으로 환경청장이나 법원은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환경청장에게 요구된 조치는 304(a)(2)항의 (시민소송) 목적을 위해 재량권 외 임무로 다루어야 한다.
- (E) 환경청장이 (B)항에 규정된 더 엄격한 기준을 공표하지 않기로, (1)조항의 표3에 언급된 기준 유효일자를 연기하지 않기로, (C)조항에 규정된 대체 기준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002/1/1일 후에 시작하는 모델 연도에 대해 유효하며, (a)항에 따라서 위 (1)조항 표3에 명시된 등급의 자동차 및 그 엔진에서 나오는 NMHC, NO_x 및 CO 배출가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1)조항 표 3에 명시된 미결 배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j) 냉혹한 CO 기준

- (1) I 단계. -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1994년도부터 이후 모델연도 소형차/소형트럭이 화씨 20도에서 운행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배출가스에 적용할 수 있고 이 조 (a)항에 따른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화씨 20도에서 운행될 때 제조업체 차량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소형차의 경우 1.0g/m을, 소형트럭의 경우 소형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엄격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모델연도 1993년 이후 해당 기준을 따르기 위해 제조업체의 소형차/소형트럭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단계별 진입 일정에 따라 모델연도 1993년 이후에 효력을 발한다.

냉축한 출발 기준의 단계별 진입일정

모델연도	비율
1994	40
1995	80
1996 이후	100

(2) II 단계. 1997/6/1일 이내, 환경청장은 모델연도 2001년과 그 후 모델연도 소형차/소형트럭이 화씨 20도에서 운행될 때 달성 가능한 향후 최대 배출감축량 및 일산화탄소 배출감축량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연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B) (i) 1997/6/1 현재, 달성 제외 지역 6곳 이상이 일산화탄소 설계 값이 9.5ppm 이상인 경우, 이 조 (a)(1)항에 따라 모델연도 2001년과 그 후 모델연도 소형차/소형트럭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화씨 20도에서 운행될 때 이 차량 및 트럭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량이 소형차는 3.4gpm, 6,000 GVWR미만 소형트럭은 4.4gpm, 6,000 GVWR 이상의 소형트럭의 경우 엄격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ii)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6곳 이상의 달성제외 지역이 일산화탄소 설계 값이 9.5ppm보다 큰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오하이오, 스토이벤빌 및 오쉬코쉬, 위스콘신 등 지역을 배제하여야 한다.

(3) I 단계 및 II 단계 기준의 활용수명. 206조의 인증과 207조의 사용 중 준수 목적을 위해, (1) 및 (2)조항에 언급된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기간은 5년이나 5만 마일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더 긴 활용수명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 기준을 따르는 차량 및 엔진의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활용수명기간(206조나 207조 혹은 둘 다를 위해)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이 이 활용수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이 연장 활용수명에 대한 해당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활용수명은 (d)항의 요건에 규정된 활용수명기간을 지나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

(4) 대형차량 및 엔진. 환경청장은 또한 추운 날씨에 운행할 때 대형차량 및 엔진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적용할 수 있는 (a)(1)항의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k) 증기배출가스 관리. 환경청장은 휘발유연료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공표(때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1) 운행 중; 그리고

(2) 2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때, 오존에 취약한 하절기 조건에서 (환경청장의 규정에서 결정된). 이 규정은 가능한 신속히, 효력을 발하며, 그리고 규정이 적용되는 모델연도 중 생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되는 수단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배출감축량 정도를 요구하여야 하며, 적절한 기술 활용과 연관되는 안전 요인, 비용 및 에너지, 그리고 연료 휘발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이 항에 따라 규칙제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최종 규정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이 항에 따라 공표되지 않는 경우, 환경청장은 이 법에 따라 최종규정의 공표를 위해 특정한 일자 및 지연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 이동 공급원 관련 대기독성물질.

(1) 연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법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동차 및 그 연료와 관련된 독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제 필요성 및 통제 실행 가능성, 그리고 배출통제 필요성 및 통제 실행 가능성과 제어 장치의 수단 및 대책의 연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사람의 건강에 최대 위험을 지니거나 불확실성이 유의한 배출 물질 범주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벤젠, 포름알데히드, 1 부타디엔, 3 부타디엔¹⁾ 등을 포함한다. 예정 보고서는 공개심사 및 의견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의견을 요약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4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1)항의 연구에 기초하여, 자동차 및 그 연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유해물질을 억제할 합당한 요건을 포함하여 (a)(1)항이나 211(c)(1)항에 따라 규정을 공포(때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연료나 차량 혹은 둘 다를 위해 환경청장이 (a)항의 기준, 기술의 가용성 및 비용, 그리고 소음, 에너지 및 안전 요인, 그리고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가용할 기술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배출량감축정도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최소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 물질에 적용하여야 한다.

(m) 배출량 통제 진단

(1) 규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다음의 능력이 있는 신형 소형차/소형트럭 진단 장치에 설치할 것을 제조업체에게 (a)에 따라 요구하는 규정을

1) 원본이 그러함. '3'과 '부타디엔'사이에 -이 있어야 함.

공표하여야 한다.

- (A) 이 조에서 정한 대로 차량의 활용수명, 배출관련 설비 열화나 성능불량, 최소한 촉매 변화기 및 산소 센서 등 이 조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차량이 준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B) 차량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배출관련부품이나 설비유지보수나 수리에 대한 가능성 있는 필요성에 경고를 보낼 수 있음
- (C) 환경청장이 명시한 결함 규격을 보관하고 검출할 수 있음
- (D) 환경청장이 명시한 방식으로 보관 정보에 접근성을 제공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대형 차량 및 엔진에 탑재진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제조업체에게 요구하는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 (2) 유효일자. 이 항의 (1)조항에서 요구된 규정은 모델연도 1994년에 효력을 발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자동차 등급이나 범주에 대해서 모델연도 1994 혹은 1995(혹은 둘 다)에 대한 규정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이러한 장치 관련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에서 채택한 해당 규정이나 정책과 일치하여, 모델연도에 자동차 등급이나 부문에 규정을 적용할 개연성이 없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 (3) 주정부 검사.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자동차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 이행계획이 있는 주에 탑재 진단장치 검사를 지시한 규정을 공표한 후 2년 이내 이행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위 (1)조항의 규정에서 지시된 대로)
- (4) 특정 요건. 이 항의 규정을 공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다음을 요구하여야 한다.

- (A) 검사, 진단, 서비스나 수리를 위해 배출통제 진단 장치에 연결된 커넥터는 모든 자동차 및 그 엔진에 표준형이고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 (B) 커넥터를 통한 배출억제 진단 장치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고,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이용 가능한 장치나 접근 코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C) 배출억제진단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산출한 것은 독특한 부호해독정보나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5) 정보 가용성.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제조업체에게 자동차나 그 엔진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그 자가 사용하기 위해 환경청장에게 이 항에서 규정된 배출억제진단 장치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배출관련 진단 및 수리를 하기 위한 설명서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거래 비밀로 보호할 자격이 있는 방법이나 과정의 보호에 관해 208(c)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자동차나 자동차엔진의 수리, 진단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프랜차이즈 딜러에게 제조업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208(c)에 따라 억누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208(c)항을 적용하여 이 조에서 환경청장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청장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42 U.S.C. 7521]

금지 행위

203조. (a) 다음의 행위 및 그 원인제공은 금지한다.

- (1)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의 제조업체의 경우, 거래, 판매나 판매용 공여 혹은 수입이나 수입목적 인도의 경우, (특정인의 경우에, 환경청장의 규정에 의해 제공된 경우는 제외), 이 파트에

서 신형 자동차나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유효일자 후 제조된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거래 혹은 미국에 수입, 다만, 청정연료차량의((b)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우에 그러한 차량이나 엔진이 이 파트나 C 파트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적합성 증명서로 보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A) 특정인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거나 복사를 하지 못하거나 208조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 (B) 특정인이 206(c)항이나 20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출입, 시험이나 검사를 허락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 (C) 특정인이 시험 완수를 하지 못하거나 거절하거나 208조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D) 제조업체가 202(m)(5)항의 규정에 지시된 대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3)(A) 특정인이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 및 인도 전 이 장을 따른 규정에 적합한 자동차나 엔진에 설치된 설계 장치나 부품을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들거나, 특정인이 고의로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 및 인도 후 설계 장치나 부품을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드는 경우, 혹은
- (B) 특정인이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과 함께 혹은 일부로 사용할 목적의 부품이나 구성부품을 제조나 판매, 혹은 판매 공여나 설치하는 경우, 이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주요 영향이 이 장 규정에 적합한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에 설치할 설계 장치나 요소를 우회, 망가뜨리거나 못 쓰게 만들 목적인 경우, 그리고 그 자가 이러한 부품이나 구성부품이 판매용으로 공여 중이거나 그 용도로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 (4) 202조나 파트 C의 기준을 적용하는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제조업체가
- (A) 그러한 차량이나 엔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단, 제조업체가 (i)차량이나 엔진에 대해 207 (a) 및 (b)항 요건을 준수 완료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라벨이나 꼬리표를 207(c)(3)항에 따라 차량이나 엔진에 부착한 경우는 제외, (iii) 청정연료차량의 경우 파트 C의 해당 요건을 준수 완료한 경우는 제외(제조업체가 파트 C 해당요건을 준수 완료한 경우는 제외)1)
 - (B) 207 (c) 혹은 (e)항 요건이나 청정연료차량의 경우 파트 C 해당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거절한 경우1
 - (C) 청정연료차량의 경우 파트 C 해당 요건 및 207조 (c)(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직, 간접적으로 최종 구매자나 그 후 구매자에게 전하는 어떤 통신방법으로든 이 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제조업체나 제조업체의 대리인이나, 제조업체의 관리를 받아 제조된 부품, 구성 부품이나 장치 사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와 같은 자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D) 청정연료차량의 경우 특정 차량에 대해 파트 C 해당요건이나 207 (a) or (b)항의 보증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 (5) 특정인이 이 장 파트 C, 218조, 219조 혹은 218조, 219조나 파트 C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조항에(요소의 조정이나 변경) 언급된 설계 요소에 대해 어떠한 행위도 215조에 따른 경우 (3)조항에의 금지 행위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3)조항의 어느 것도 자동차나 자동차엔진의 수리나 유지보수에서 제조업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쉽표가 와야 할 것임.

체 부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제조업체 부품’이란 용어는 자동차엔진과 관련하여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 제조업체가 생산하거나 판매한 부품을 말한다. (3)조항의 설계 장치나 요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이 조항의 금지 행위로 다루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i)그 행위가 장치나 요소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하거나 다른 품목을 수리 또는 교체하는데 필요하고 임시적인 절차이고, 절차 완료 시점에서 장치나 요소를 교체한 경우, 그리고 (ii)그 후 취한 조치로 (3)조항의 장치나 요소가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경우이다. (3)조항의 설계 장치나 설계 요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이 조항의 금지 행위로 다루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i)그 행위가 청정대체용 차량의 전환 목적인 경우, 그리고 차량이 이 연료로 운행될 때 202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청정대체연료차량의 경우(환경청장의 규칙에 정한) 전환절차 완료 시점에서 이 장치나 요소를 교체한 경우, 그리고 그 조치로 전환연료로 자동차가 운행될 때 이 장치나 요소가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경우이다.

- (b) (1) 환경청장은 (a)항 요건에서 연구, 조사, 실험, 시연이나 훈련을 위해 혹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형 자동차나 신형 자동차 엔진을 제외할 수 있다.
- (2) (a)항을 위반하여 수입을 위해 제공하거나 특정인이 수입한 신형 자동차나 신형자동차 엔진은 미국으로 반입이 거절되지만 재무부 장관 및 환경청장은 합동 규정에 의해 그와 같은 자동차나 엔진이 이 파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요건 및 제한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일 수 있는 조건으로 소유자나 수탁인에 수입하기 위해 제공된 자동차나

엔진의 인도를 허가하고 반입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예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재무 장관은 이 조항에서 자동차나 엔진이 반입이 최종 거절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자동차나 엔진의 예치를 명하여야 한다. 단, 재무 장관이 지시한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나 거절 통지일자에서 90일 이내 반송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법에 따라 예치가 이 파트에서 환경청장이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신형 자동차나 신형자동차 엔진의 최종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방식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제외한다.

- (3) 오로지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용기 외부 및 차량이나 엔진 자체에 라벨이나 꼬리표가 있는 신형 자동차나 신형자동차 엔진은 (a)항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차량이나 엔진을 반입하는 국가가 202조의 기준과는 다른 배출기준이 있는 경우, 그 때 차량이나 엔진은 그 반입 국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2 U.S.C. 7522]

금지명령 조처

204조. (a) 미국의 지방법원은 203(a)항의 위반금지 권한이 있다.

- (b) 이러한 위반 금지 행위는 미국에서 실시하여 미국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조치에서 어느 지역 지방법원에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은 증인의 소환장은 다른 지역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42 U.S.C. 7523]

민사 벌금

205조. a) 위반. 203(a)(1), 203(a)(4), 혹은 203(a)(5)항¹⁾을 위반하는 자 또는 203(a)(3)(A)항을 위반하는 제조업체나 딜러는 25,000달러

이하의 민사벌금형에 처한다. 203(a)(3)(A)항을 위반하는 제조업체나 딜러를 제외한 자나 203(a)(3)(B)항을 위반하는 자는 2,500 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형에 처한다. 203(a)항의 (1), (3)(A), 혹은 (4)조항에 대해 그와 같은 위반은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에 대해 별도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 203(a)(3)(B)항에 대해 그와 같은 위반은 부품이나 구성 부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 203(a)(2)항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일 당 2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민사 소송. 환경청장은 이 조 (a)항, 211(d), 혹은 213(d)항에 따라 민사벌금을 산정,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착수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소송도 위반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거나 환경청장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역 관련 미국 지방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민사벌금을 산정할 권한이 있다. 이 항에 따라 산정할 민사벌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위반의 중대성,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나 절감, 위반자의 사업 규모, 위반자의 이 법 준수기록, 위반 구제 행위, 위반자의 사업유지능력에 대한 벌금의 영향, 그리고 기타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행위에서, 지방법원 출두 요구를 받는 증인의 소환장은 다른 지역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c) 특정 벌금액의 행정평가

(1) 행정 벌칙 권한. (b)항의 민사소송을 착수하는 대신, 환경청장은 (a)항, 211(d)항이나 213(d)항에 따라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다만, 벌금액 산정 절차에서 위반자에 대한 최대 벌금액은 2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며, 환경청장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조'일 것임.

및 검찰청장이 합동으로 더 큰 벌금액 관련 사안이 행정벌금 산정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환경청장 및 검찰청장의 그와 같은 결정은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 항의 민사벌금 산정은 미합중국법전 5장 554조 및 556조에 따라 청문회 기회가 있는 후 공개로 이루어진 명령에 의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의 청문회 관련 기타 절차 및 조사에 적정한 규칙을 발포하여야 한다. 명령을 발포하기 전, 환경청장은 행정벌금 평가를 받을 자에게 환경청장이 명령을 발하겠다는 제의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그 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에서 30일 이내,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에서 부과될 수 있는 행정벌금을 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타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2) 금액 결정. 이 항에 따라 평가된 민사 벌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위반의 중대성,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나 절감, 위반자의 이 법 준수기록, 위반 구제 행위, 위반자의 사업유지능력에 대한 벌금의 영향, 그리고 기타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환경청장 조치의 영향. (A) 이 항에 따른 환경청장의 조치는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을 집행할 환경청장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 (i) 위반에 대해 환경청장이 이 항에 따라 조치를 착수하였으며, 성실히 기소 중이거나,
 - (ii) 위반에 대해 환경청장이 향후 사법 심사를 받지 않는 최종 명령을 발하였고, 위반자가 이 항의 벌금액을 납부한 때 (b)항의 민사벌금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B) 이 항에 따른 환경청장의 어떠한 조치도 그 자가 이 법의 어떠한 조를 준수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명령의 완결성. 이 항에 따라 발한 명령은 (5)조항에서 사법심사청구서가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포하고 나서 30일 후 최종적이어야 한다.

(5) 사법 심사. 이 항에 따라 민사벌금액이 산정된 자는 미국컬럼비아지방법원이나 위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위반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위반자의 주요 사업장이 소재하는 곳에 민사벌금명령이 발한 날짜에 시작하여 30일 이내 평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자는 동시에 환경청장 및 검찰총장에게 등기 우편으로 접수 사본을 보내야 한다. 환경청장은 30일 이내 명령이 발한 기록의 등기 사본이나, 해당되는 경우 확인 목록을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항의 요건에 따라 발한 명령을 방치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아야 하며, 다만, 전체로 볼 때 위반행위 발견을 지지하는데 기록에 실질적인 증거가 없거나 환경청장의 벌금 산정이 재량권 남용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법원은 민사벌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소송절차에서도 미국은 이 항에서 평가된 민사벌금액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6) 징수. 이 항에 규정된 대로 환경청장이 부과한 민사벌금 평가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A) 평가를 하는 명령이 최종사안이 된 후, 혹은

(B) (5)조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청장을 지지하여 최종 판단에 들어간 후, 환경청장은 검찰총장에게 평가액을(상황에 따라서 최종판결일 또는 최종명령일로부터 1986년 내국세법전 6621(a)(2)항에 따라 정한 비율로 이자를 합한 금액) 회수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서, 벌금의 타당성, 금액 및 적절성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 조항 첫 문장에 언급한 대로 민사벌금액 평가액을 적시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그 금액 및 이자 외에, 미국의 집행비용과 변호사 수입료 및 징수 절차 비용, 그리고 납부 불이행 지속기간 중 각 분기별 미납 벌금 등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 미납 벌금은 분기 시작 현재 미납된 경우 납부 의무자의 벌금 및 미납 과징금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2 U.S.C. 7524]

자동차 및 자동차 엔진 적합성 시험 및 인증

SEC. 206. (a)(1) 환경청장은 신형 자동차나 신형 자동차엔진이 이 법 202조 요건의 준수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출한 그러한 차량이나 엔진을 시험하거나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량이나 엔진이 규정을 따르는 경우, 환경청장은 규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간에 (1년을 넘지 않게)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어느 모델연도에 미국에서 판매예정 차량이나 엔진이 300을 넘지 않는 장비 최초 제조업체(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 공포된 규정에서 환경청장이 정한)의 경우, 환경청장은 차량이나 엔진의 유용수명에 대해 202조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모델연도 중 제조된 차량이나 엔진의 운행을 각각 5천 마일이나 160시간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규정에 의해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은 유용수명 기간에(202(d)항에서 결정한) 202조의 규정을 차량이나 엔진이 준수하도록 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정요소를 적용하여야 한다.

- (2) 환경청장은 특정인이 제출한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에 탑재된 배출제어장치를 시험하여 이 법 202(b)항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기준이 차량이나 엔진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 시험에 기초하여 차량이나 엔진이 기준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시험 차량이 대표하는 등급의 차량에 탑재될 때 이 장치에 대한 배출기준과의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제조업체 및 국립과학아카데미에게 시험결과를 알리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시험은 환경청장이 규정에 의해 지시할 수 있는 조건에서(독자적 실험자격자의 예비시험 요건을 포함) 실시하여야 한다.
- (3) (A) 적합성 증명서는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제조업체(혹은 수입용 차량이나 엔진의 경우, 해당자)가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배출제어장치, 설비나 차량이나 엔진에 설치되거나 탑재된 설계 요소가 202(1)(4)항의 해당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한 경우에만 이 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B) 환경청장은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혹은 그와 같은 자)가 위 (A)항목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설비, 장치나 설계 요소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오염물질이 차량이나 엔진에서 배출되지 않거나 설계 장치, 설비나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적은 양으로 배출된 경우 신속한 배출 보고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A)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항에 공표된 규정을 수정하여 모델연도 1994년 및 이후 모델연도 소형차/ 소형트럭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사용될 때, 검사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수행에서 상황에 마주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각 모델연도 207(b)항에서 정한 검사 방법절차를 통과하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험절차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시험 전 연료 특성, 대기온도 및 짧은 대기시간(30분 이하)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에서 정한 시험절차를 통과할 수 없다고 환경청장이 결론을 내린 1994년도 이후 모델연도 차량이나 엔진에 대해 이 항의 적합성 증명서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B) 때때로 환경청장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때 (A)에 따라 공표한 규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 (b) (1) 제조업체가 제조한 신형 자동차나 신형 자동차 엔진이 적합성 증명서가 발급된 것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경청장은 차량이나 엔진을 시험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 시험은 환경청장이 직접 또는 환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조업체가 실시할 수 있다.
- (2) (A)(i)적합성 증명서 관련 신형 차량이나 엔진 샘플에 대해 (1) 조항에서 실시한 시험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취급한 차량이나 엔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합성 증명서가 발부되는 근거 규정 및 202(a)(4)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제조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류나 철회는 통지 후 제조된 (혹은 제조업체의 손에 아직 있는 경우 그 날짜 전에 제조된) 신형 자동차나 신형 자동차 엔진의 경우에 적용되며, 제조업체가 제조한 차량 및 엔진이 이 규정 및 요건을 따른다고 환경청장이 생각하는 시간까지 적용한다. 보류나 철회 기간 중

환경청장이 차량이나 엔진이 실제로 이 규정 및 요건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이러한 차량이나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ii) 신형 차량이나 엔진에 대해 (1)조항에서 실시한 시험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이러한 차량이나 엔진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차량이나 엔진이 이 규정을 실제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까지 차량이나 엔진에 적용되는 한 증명서를 보유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제조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i)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시험이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또는 샘플링 방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마련하며, (A)조항의 보유나 철회에 대해 공개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이 철회나 보유는 청문회를 이유로 유예되지 않아야 한다.

(ii) (i)항에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실제 논쟁의 경우에도, 제조업체는 어느 때라도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전에 제조업체 거주지 혹은 주 사업 소재지에서 순회재판청구 신청서를 미국 법원에 접수하여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사본은 즉시 환경청장에게 법원 직원이나 기타 지정된 관리가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청장은 미합중국법전 28장 2112조에 규정된 대로 이때 자신의 결정의 근거가 된 소송절차 기록을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iii) 청구자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법원에 휴가기간을 신청하고 법원이 만족하게끔 추가 증거가 중대하며 환경청장 앞으로 소송절차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합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법원은 환경청장 앞으

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추가 증거(및 항변의 증거) 수락 명령을 취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수락된 추가 증거를 이유로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정하거나 다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 증거를 회부하면서 수정되거나 새로운 조사내용, 그리고 자신의 최초 결정의 변경이나 유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접수하여야 한다.

(iv) (ii)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때, 법원은 미합중국법전 5장 7절에 따라 명령을 심사하고 이 절에 규정된 적당한 구체수단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 (c) 이 조의 집행 목적을 위해, 환경청장이 정히 지정한 관리나 직원은 제조업체가 담당자에게 적당한 증명서가 제시된 때, (1) 적당한 때에 제조업체의 공장이나 다른 시설물에 들어가 제조업체의 손에 있는 엔진의 차량 시험을 실시하거나, (2) 적당한 때에 환경청장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 제조업체가 사용한 기록, 파일, 문서, 과정, 제어 장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검사는 적절하게 신속히 착수, 완료하여야 한다.
- (d) 환경청장은 이 조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에 의해 수립하여야 한다.
- (e)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가능한 신속히, 그 후 시작하는 모델연도가 시작하는 때 (a)항에서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시험 결과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결과는 이 법 202조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있어 시험한 차량 및 엔진의 비교 성능을 신형 자동차 및 신형 자동차 엔진의 최종 구매예정자에게 적절히 공개되도록 기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여야 한다.

- (f) 1984년 중이나 그 후 제조된 소형차 및 엔진, 그리고 1995년 모델 연도 중이나 그 후 제조된 소형트럭은 판매 고도에 관계없이 이 법 202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g) (1) (2)조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202(a)항의 기준이 적용되는 등급이나 부문의 대형차량이나 엔진의 경우에, 적합성 증명서는 (a)항에 따라 발급하고, 공청회 통지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른 준수불이행 벌금을 제조업체가 납부할 경우 이 기준을 차량이나 엔진이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제조한 차량이나 엔진에 대해 (b)항에 따라 보류되거나 철회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이 증명서는 제조업체가 벌금을 납부할 경우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발급할 수 있다.
- (2) 적합성 증명서는 제조업체가 202(a)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환경청장이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떠한 종류나 등급의 차량이나 엔진에 대해서 (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적합성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문이나 등급의 차량이나 엔진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대로 생산 중인 차량이나 엔진 시험을 요구하여야 하며,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 (3) (1)조항에서 공표된 규정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이 정한 공식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준수불이행 벌금액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 벌금액은
- (A) 오염 물질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 (B) 차량이나 엔진 등급이나 부문별로 다를 수 있으며,
 - (C) 202조에서 공표된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실제배출

량이 허용배출량을 초과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D) 필요한 배출감축정도를 달성하는 생산 차량이나 엔진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증대하여야한다.

(E) 필요한 배출감축정도를 달성한 차량이나 엔진 제조업체에 경쟁적 불리한 점을 없애야 한다.((4)조항의 적용으로 파생되는 불리한 요소를 포함)

(4) 이 항에 따라 적합성 증명서가 발급된 어떠한 경우에도, 207(b)(2)항에서 요구된 보증 및 207(c)항의 조치도 해당 기준에서 요구된 배출수치가 아니라 발급된 증명서에서 환경청장이 결정한 배출수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208(a)항의 권한은 208(b)항의 조건을 따르며 이 항의 목적에 맞게 적용한다.

(h)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자동차가 사용되는 실제 현재 운행 조건, 즉 연료, 온도, 가속 및 고도 등을 반영하는 상황에서 차량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엔진 검사에 관하여 이 조 (a)항 및 (b)항¹⁾의 규정을 필요한 때 심사, 수정을 하여야 한다.

[42 U.S.C. 7525]

실제 사용 중인 차량 및 엔진별 적합성

207조. (a)(1) 197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0일이 지나 시작하는 모델연도에 제조된 차량 및 엔진에 대해서 유효하며, 신형 자동차 및 신형 자동차 엔진 제조업체는 최종 구매자 및 그 후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항'일 것임

구매자에게 이 차량이나 엔진이 (A)202조 해당 규정을 판매 시점에서 따르기 위해 설계되고 건조되고 장착되며, (B) 차량이나 엔진이 해당 유용수명 관련 규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재료 및 작업상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모델연도 1995년 및 그 후에서 제조된 차량 및 엔진의 경우 이 보증은 차량이나 엔진이 (i)항에 규정된 보증기간과 관련하여 결함이 없도록 요구하여야 한다.²⁾

(2)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엔진 부품의 경우, 부품 제조업체나 재설치자는 부품의 사용으로 202조의 배출기준을 차량이나 엔진이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증은 (b)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청장이 공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의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이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3) 배출통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조 (c)(3)항에 따라 발간된 설명서에 이 법 202조의 규정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의 유용수명 중 교체할 예정인 소형차의 부품, 장치나 구성 부품의 비용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차량의 정상 성능과는 저촉되지 않으며, 설치비를 포함하여 예상소매가가 차량의 소매체시가의 2 퍼센트가 넘는 경우는 교체 시점에서 차량 제조업체가 부담하거나 상환하여야 하며, 교체품은 최종 구매자나 그 후 구매자나 딜러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제공하여야 한다. 앞 문장에서 ‘배출통제 설계가 된’이란 용어는 주로, 유일하게 차량배출감축 목적으로(모델연도 1968년도 이전에 널리 사용된 차량 구성 부품 및 그 주용 기능이 배출통제와 무관한 경우도 포함) 차량에 설치된 촉매 전환기, 열반응기나 기타 구성 부품을 말한다.

2) 공법101.549(104 Stat. 2485), 209(4)항에 따라, 207(a)(1)의 마지막 문장은 모델연도에 제조된 차량에 시작하면서 유효하다.

(b) 보증 기간 중((i)항에 따라 결정) 실제 사용 중일 때, 202조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 및 엔진이 이 규정의 배출기준을 준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 가능한 시험방법 및 절차가 있으며, (ii) 이 방법 및 절차가 우수공학관행을 따르는지, 그리고 (iii) 이 방법 및 절차가 206(a)(1)항에서 실시한 시험과 상관관계가 적절하게 있을 수 있는지를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1) 규정에 의해 이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2) (1)조항에서 정한 시험 방법절차를 수행하는데 검사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때에, 환경청장은 202조 규정이 규정되고 이 조항의 보증 규정을 환경청장이 처음에 규정한 후 시작하는 모델연도에 제조된 신형 자동차나 신형 자동차 엔진의 배출제어장치나 설비를 제조업체가 보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보증은 최종 구매자 및 그 후 구매자에게 적용되며,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A)(c)(3), 차량이나 엔진이 (c)(3)항의 설명서에 따라 유지, 운행되는 경우.

(B) 보증기간¹⁾ 중((i)항에서 결정된) 어느 때라도 202조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C) 준수 불이행으로 차량이나 엔진의 최종 구매자(혹은 이후 구매자)가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차량이나 엔진 사용권 거절 등) 감당하게 되는 경우, 이 때, 제조업체는 자신이 부담할 준수 불이행 비용과 함께 보증의 준수불이행 사항을 교정하여야 한다.

1) 공법101.549 (104 Stat. 2484) 209(1)항은 “유용수명(202(d)항에서 결정된)”이 나타나는 곳마다 대신 “보증기간((i)항에 따라 결정된)을 삽입하여 207(b)항을 수정하였다. 개정안은 아마도 단어 ‘그’를 삽입하였어야 함. 이 수정사항은 1995년도 모델연도에 제조된 차량에 시작하면서 유효하다.

그러한 보증은 차량이나 엔진의 부품이 (a)(2)항에 규정된 대로 입증되는 경우 그 수리나 유지보수에 사용된 부품에 기초하여 무효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항의 보증을 위해, 24개월 또는 25000 마일 후 기간 동안(먼저 일어나는 경우 적용), ‘배출제어장치나 설비’란 용어는 촉매 중심 또는 전용으로 차량 배출감축을 목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촉매 변환기, 열 반응로나 기타 구성부품 등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68년¹⁾ 모델연도 전 널리 사용되었던 차량 구성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c) 197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0일 이내 시작하는 모델연도 중 제조된 차량 및 엔진에 대해서 유효하며,

(1) 환경청장이 어떤 등급이나 부문의 차량이나 엔진 상당수가 잘 유지되고 사용되고는 있지만 유용수명 (202(d)항에 결정된) 기간 중 실제 사용 중일 때 202조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즉각 제조업체에게 이러한 준수 불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제조업체에게 통지서가 발부된 차량이나 엔진의 부적합성을 교정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는 적절히 사용, 유지되고 있는 차량이나 엔진의 부적합성은 제조업체의 비용으로 교정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체가 부적합성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환경청장에게 그렇게 조언한 경우, 환경청장은 제조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에서 이의사항을 지지하는 견해 및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청회 결과, 환경청장이 이러한 부적합성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청장은 공청회가 끝나고 50일 이내 제조업체에게 (2)조항에 따라 부적합성

1) 모델연도 1995년 및 이후 제조된 신형 자동차 및 그 엔진에 대해 유효하며, 207조는 207(b)항을 끼어 넣어 수정하였으며, 이후 세 번째 문장이 옴.

통지사항을 신속히 제공하라고 명하여야 한다.

- (2) 어떠한 등급이나 종류의 차량 또는 엔진에 대해 (1)항에서 요구한 통지사항은 딜러, 최종 구매자 및 이후 구매자(알려진 경우)에게 환경청장이 규정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 및 정보를 포함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 (3) (A)²⁾ 제조업체는 최종 구매자가 차량이나 엔진을 적절히 사용, 유지하기 위한 신형 자동차나 신형 자동차 엔진 설명서를 제공하며, 이 설명서는 환경청장이 공표하는 규정에 상응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는 유지관리 설명서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체로 배출제어장치 및 설비의 수리, 유지나 교체는 (a)(2)항에 규정된 대로 입증된 자동차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수리전문점이나 개인이 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B) 위 (A) 조항의 설명서는 차량이나 엔진과 연결하여 최종 구매자가 브랜드, 거래처명이나 회사명별로 확인된 구성 부품이나 서비스(구매자 동의 조건에서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된 구성 부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직, 간접적으로 제조업체의 프랜차이즈 딜러 혹은 제조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는 여타 서비스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조업체와 거래관계가 없는 자동차수리자영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를 차별하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 항의 금지 조항이 다음의 경우 환경청장이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i) 제조업체가 확인된 구성 부품이나 서비스가 차량이나 엔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차량이나 엔진이 기능이 잘 발휘된다고 환경청장을 만족시키는 경우.
- (ii) 환경청장이 그러한 권리포기가 공공 이익을 가져 온

2) 공법 95.95은 (3)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 조항은 여백이 있어야 함.

다고 생각하는 경우

(C) 그 밖에, 제조업체는 차량이나 엔진에 라벨이나 꼬리표를 영구 부착하는 방식으로 차량이나 엔진이 이 법 202조 배출기준의 달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급된 적합성 증명서로 보호받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 라벨이나 꼬리표는 환경청장이 규정에 의해 지시하는 자동차 배출 통제와 관련하여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사용 중 중간 기준

(A) 모델연도 1994년도 및 1995년도. 이 모델연도에 202(g)(1)항 표 G의 기준을(1994년도 모델연도에 제조업체 판매량의 40퍼센트, 모델연도 1995년에 80퍼센트) 적용하고, 6000lbs. GVWR미만 소형트럭/소형차의 경우, NMHC, CO 및 Nox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장에서 달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기준 대신에 아래 표 A에 제시된 기준이다.

표 A. 6,000 LBS. GVWR미만 LDT 및 소형차의 사용 중 중간기준

차량 종류	NMHC	CO	NOx
소형차	0.32	3.4	0.4*
LDT's ¹ (0.3,750 LVW)	0.32	5.2	0.4*
LDT's ¹ (3,751.5,750 LVW)	0.41	6.7	0.7*

*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할 수 없음.

¹ "LDT's"는 '가 없어야함'.

(B) 모델연도 1996년도 및 이후 (i) 모델연도 1996년 및 1997년에, 최고 총 중량등급 6,000lbs. 인 소형트럭/소형차를 (5)조항의 최종 사용 중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모델

연도 1996년에는 제조업체 판매량의 60퍼센트, 모델연도 1997에는 20퍼센트)는 (5)조항에 제시된 기준 대신에 이 항의 목적을 위해 NMHC, CO 및 NOx의 경우 (A)조항의 표 A에 제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ii) 6,000 lbs. GVWR 이상의 LDT.

(I) 202(h)항 표 H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는 모델연도 1996년에 (50%);

(II) 모델연도 1997 (100%); 그리고

(III) (5)항의 사용 중 최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모델연도 1998년에 (50%); 이 항의 목적에 맞게, NMHC, CO, 및 NOx 기준은 이 장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기준 대신에 아래 표 B에 제시된 기준이어야 한다.

표 B. 6,000 LBS. GVWR 이상 LDT 사용 중 중간 기준

차량 종류	NMHC	CO	NOx
LDTs (3,751.5,750 lbs. TW)	0.40	5.5	0.88*
LDTs (over .5,750 lbs. TW)	0.19	6.2	1.38*

*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할 수 없음.

(C) 유용수명. 이 조항에서 적용 가능한 사용 중 기준의 경우, 적용 가능한 유용수명은 5년 또는 5만 마일이나 이에 해당하는 것(먼저 발생하는 것을 적용)이다.

(5) 최종 사용 중 기준 (A) 모델연도 1995년 후, 이 항을 적용하기 위해, GVWR 6,000 lbs 미만 소형트럭(소형차1)의 제조업체 판매량의 이행일정에 명시된 비율의 경우, NMHC, CO 및 NOx

기준은 202(g)항 표 G에 제시된 대로이다. 다만, 이 항과의 적합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표 G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적용 가능한 유용수명은 (i) 5만 마일에서 인증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 5년 또는 5만 마일(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도, 그리고 (ii) 10만 마일에서 인증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 10년 또는 10만 마일(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발생하는 것을 적용하는 경우도 제외하며, 7년 또는 75,000 마일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그 후 어떠한 시험도 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한다.

6,000 LBS. GVWR 미만 LDT 및 소형차의 최종 사용 중 기준이행 일정

모델연도	백분율
1996	40
1997	80
1998	100

(B) 모델연도 1997년 이후, GVWR 6,000 lbs 이상 소형트럭의 제조업체 판매량의 이행일정에 명시된 비율의 경우, NMHC, CO 및 NOx 기준은 202(h)항 표 H에 제시된 대로이다. 다만, 이 항과의 적합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표 H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적용 가능한 유용수명은 (i) 5만 마일에서 인증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5년 또는 5만 마일(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ii) 12만 마일에서 인증 목적으로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소형차'일 것임.

적용 가능한 기준에 대해 11년 또는 12만 마일(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발생하는 것을 적용하는 경우도 제외하며, 7년 또는 90,000 마일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 그후 어떠한 시험도 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한다.

6,000 LBS. GVWR이상 LDT 및 소형차의 최종 사용 중 기준이행 일정

모델연도	백분율
1998	50
1999	100

(6) 디젤 차량: 사용 중 유용수명 및 시험

(A) GVWR 6,000 lbs 미만 디젤연료 소형트럭/소형차의 경우, NOx의 경우 202(g)항의 기준과의 사용 중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유용수명은 10년이나 10만마일(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 중 10만 마일에서 인증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의 경우에 먼저 발생하는 것을 적용한다. 다만 5년이나 75,000마일 중(먼저 발생하는 경우 적용)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한다.

(B) GVWR 6,000 lbs 이상 디젤연료 소형트럭/소형차의 경우, NOx의 경우 202(h)항의 기준과의 사용 중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유용수명은 11년이나 12만마일(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 중 12만 마일에서 인증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의 경우에 먼저 발생하는 것을 적용한다. 다만 7년이나 90,000마일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 적용) 이후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한다.

(d) (a), (b), 혹은 (c)항에서 부과된 요건의 결과로 부담하는 딜러의 비

용 의무는 제조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조업체에서 딜러에게 프랜차이즈나 기타 약정을 통해 비용의무 전가는 금지된다.

- (e) 제조업체가 배출제어장치나 설비의 비용 또는 가액과 관련된 설명문을 광고문에 포함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설명문에 노동부 장관이 이러한 장치나 설비에 전가하는 (노동통계국을 통해) 비용이나 가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과 그 대리인은 311조의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이 지원 수혜자의 도서, 문서, 서류 및 기록을 열람하는 것과 같이 열람이 가능하다.
- (f) (c)(1)항의 목적을 위해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 검사는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된 후 그 차량이나 엔진의 소유자가 주나 지방검사프로그램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검사를 임의로 허락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 (g)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이 조에서 보증이 된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소유자는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시설이나 업소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스파크 플러그, 포인트, 콘덴서 및 기타 배출제어와 관련된 (207(a)(3)의 마지막 문장에서 배출 관리용은 아님¹⁾) 부품, 물품이나 장치를 교체하고 유지하기 위해 차량이나 엔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부품, 물품이나 장치가 이 법에 따라 명하지 않은 보증사항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h) (1) 딜러가 신형 소형자동차를 판매한 때, 딜러는 구매자에게 202조의 해당 규정을 자동차가 준수한 증명서와 (2)조항의 구매자권리 통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b)항에 따라 보증 기간이 적용되는 중 어느 때라도, 자동차가 이 조 (b)항에서 결정된 대로 202조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1) 법에 그러함. 바깥 괄호에 공법101.549, 230(9)(104 Stat. 2529)가 추가되었음.

못한 경우, 이러한 부적합성은 207(b)(2)항에((C)조항과 무관하게) 규정된 보증에 따라서 제조업체의 비용으로 제조업체가 교정하여야 한다.

- (3) 209(a)항의 어느 것도 최종 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일자 후 주가 자동차 시험이나 시험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형 자동차 제조업체나 딜러가 이 조항의 시험 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

(i)¹⁾ 보증기간

- (1) 개요. - (a)(1) 및 (b)항을 위해, 보증기간은 신형 소형트럭/신형 소형차 및 엔진에 대해서 유효하며, 모델연도 1995년 및 이후에 제조된 경우 사용 기간 처음 2년 혹은 24,000 마일(먼저 발생한 것)이며, 다만 (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a)(1) 및 (b)항을 위해, 다른 차량 및 엔진의 경우, 보증기간은 환경청장이 규정에 의해 정한 기간이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공포된), 다만, 환경청장이 그 후 이 규정을 수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특정 주요 배출제어 구성부품. 특정 주요 배출제어 구성 부품의 경우, (a)(1) 및 (b)항의 목적을 위해 모델연도 1995년 이후에서 제조된 신형 소형트럭 및 소형차의 보증기간은 사용기간 8년 또는 8만 마일(먼저 일어난 것)이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특정 주요배출제어 구성 부품’이란 용어는 촉매 전환기, 전자 배출제어장치 및 탑재 배출 진단 장치만을 말하며, 다만 환경청장이 다음의 경우 기타 오염제어장치나 구성 부품을 특정 주요 배출제어 구성부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법101.549, 230(9)(104 Stat. 2529)항에 따라 (i)항은 모델연도 1995년에 제조된 차량부터 유효하다.

(A) 모델연도 전에 제조된 차량 및 엔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장치나 구성 부품

(B) 환경청장이 장치나 구성 부품의 소매비용(설치비 제외)이 200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결정 시점에 환경청장이 산출한 대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하여 조정을 한 경우

‘탐재 진단장치’란 용어는 배출관련 진단 정보를 보관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장치를 의미하지만, 특정 주요 배출제어 구성부품을 제외하고 장치가 감시하는 부품이나 기타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 어느 것도 이 조항에 언급된 8년이나 8만 마일 기간에 대해 이 법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3) 설명서. (b)(2)항의 (A)항목은 환경청장이 관련 설명서가 (c)(3)항의 요건을 따른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42 U.S.C. 7541]

정보수집

208조. (a) 제조업체 책임.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제조업체 및 신형 자동차나 엔진 부품 또는 구성부품의 제조업체 및 기타 이 파트나 C 파트의 요건을 따르는 자는 기록을 하고 유지하며, 이 파트 및 C 파트(시험 수수료 포함)에서 시험을 달리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시험을 실시하고, 보고하며, 제조업체나 기타 자가 이 파트 및 C 파트 및 그 규정을 따르거나 조항을 달리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적절하게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청장이 정히 지정한 관리나 직원의 요청이 있는 때, 적당한 때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를 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b) 집행 권한. 이 조의 집행을 위해, 환경청장이 정히 지정한 관리나 직원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때
- (1) 적당한 때 제조업체나 (a)항에서 요구된 활동을 하도록 제조업체가 고용한 자의 시설물에 들어가 (a)항에 따라 실시된 활동을 검열하거나 관찰할 권리가 부여되며,
 - (2) (a)항에서, 제조업체나 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이 요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기록, 파일, 문서, 과정, 제어 수단 및 시설을 검사할 권리가 부여된다.
- (c) 공공 이용성, 거래비밀. 이 파트나 C 파트에서 얻은 기록, 보고서나 정보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특정인이 기록, 보고서나 정보나 그 특정 부분(배출 데이터 제외)이 특정인의 거래비밀을 보호할 자격이 있는 방법이나 프로세스가 누설될 거라고 환경청장에게 만족스럽게 제시하는 때, 환경청장이 미합중국법전 18장 1905조의 목적에 따라 비밀기록, 보고서나 정보나 그 특정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의 위임대리인은 미합중국법전 18장 1905조의 목적을 위해 미국 직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 조의 어느 것도 환경청장이나 그 위임대리인이 기록, 보고서나 정보를 이 법 수행과 관련되거나 이 법의 소송에 관련될 때 다른 미국의 관리, 직원이나 위임대리인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의 어느 것도 환경청장이나 그의 감독 하에 있고 의회의 정히 위임을 받은 위원회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42 U.S.C. 7542]

주 정부 기준

209조. (a) 어느 주나 그 행정당국도 이 파트를 적용하는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통제와 관련된 기준을 채택

하거나 집행할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주도 자동차, 자동차 엔진이나 장비의 최초 소매 판매, 권리부여 혹은 등록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 배출 물질의 통제 관련하여 인증, 검사나 기타 승인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b) (1) 환경청장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1966/3/30일 이전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배출물질 통제를 위한 기준(크랭크실 배출 기준 제외)을 채택한 주에 이 조의 적용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는 주의 기준이 총체적으로 최소한 해당 연방기준만큼 공중보건복지를 보호할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어떠한 권리포기도 환경청장이 다음과 같이 생각한 때 허용되지 않는다.

(A) 주의 결정이 독단적이고 변화무쌍함,

(B) 주의 기준이 강압적이고 예외 조건을 충족할 필요를 요구하지 않음

(C) 주의 기준 및 수반 집행절차가 이 파트 202(a)항과 일치하지 않음

(2) 주의 기준이 비교 가능한 해당 연방 기준만큼 최소한 엄격하다면, 주의 기준은 (1)조항의 목적에 맞게 연방기준만큼 보건복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1)조항에 따라 허용된 권리포기에 따라 주의 기준이 적용되는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경우, 주 기준과의 적합성은 이 장에서의 목적을 위해 해당 연방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c)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엔진 부품에 대한 규정이 207(a)(2)항에 따라 유효한 때, 어떠한 주나 그 행정당국도 자동차 배출과 관련된 인증, 검사나 승인 요건이나 기준을 채택하거나 집행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며, 그 부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앞 문장은 (b)항에 유효한 권리포기 관련 주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d) 이 파트의 어느 것도 등록차량이나 면허차량의 이용, 가동이나 운행을 달리 규제, 통제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

(e) 비도로 용 엔진이나 차량.

(1) 특정 주의 기준에 대한 금지. 어떠한 주나 그 행정당국도 이 법 규정을 적용하는 다음 비 도로용 엔진이나 비 도로용 차량의 배출물질 통제와 관련된 기준이나 기타 요건을 채택하거나 집행할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A) 건설장비나 차량 또는 농장장비나 차량에 사용되고 175마력미만의 신형 엔진

(B) 신형 기차나 기차에 사용된 신형 엔진. (b)항은 이 조항의 목적에 적용하지 않는다.

(2) 기타 비 도로용 엔진이나 차량 (A) (1)조항의 (A) 혹은 (B)항목에 언급된 것 이외의 비 도로용 차량이나 엔진의 경우, 환경청장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캘리포니아가 주의 기준이 모두 합쳐 최소한 해당 연방기준만큼 공중보고복지를 보호할 것으로 주에서 판단한 경우 이 차량이나 엔진의 배출물질 관리와 관련된 기준 및 기타 요건을 채택,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권한은 환경청장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 부여되지 않는다.

(i) 주의 결정이 독단적이고 변화무쌍함,

(ii) 캘리포니아는 주의 기준이 강압적인 예외조건을 충족하도록 요하지 않음

(iii) 캘리포니아 기준 및 수반 집행절차가 이 조와 일치하지 않음

(B) I 장의 파트 D에 따라 승인된 계획규정이 있는 캘리포니

아 이외의 주는 다음의 경우 특정 기간 중에, 비도로용 차량이나 엔진의 배출물질 관리와 관련된 기준((1)항의 (A) 혹은 (B)항목에 언급된 것 제외)을 채택, 환경청장에게 통지 후 집행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엔진과 관련된 이 조항의 (A)항목에 언급된 것과 같은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관련 기간 동안, 그 기준 및 이행 및 집행이 (A)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허가한 캘리포니아 기준과 같은 경우.

(ii) 캘리포니아 및 주가 기준의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2년 전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발하여야 한다. [42 U.S.C. 7543]

주 정부 보조금

210조. 환경청장은 해당 주 기관에 효과적인 차량배출장치 및 설비검사 및 배출 시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하는 비용의 최고 2/3 까지 보조금을 조성할 권한이 부여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보조금이 프로그램의 대기오염관리측면의 비용과 직접 관련되는 주 차량검사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해서 부여되지 않은 경우
- (2) 보조금이 미합중국법전 23장 402조에 따라 개발한 고속도로안전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일치함을 환경청장에게 교통부장관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성되지 않은 경우
- (3) 이 프로그램이 실제 사용 중인 차량에 있는 배출통제장치 및 설비가 중단되거나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이 조성된 날짜 전에 주에서 금액을 지출하였던 경우에 보조금은 상환조건으로 이 조에서 부여될 수 있다. [42 U.S.C. 7544]

연료 규정

211조. (a)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연료나 연료첨가제(비 도로용 엔진이나 비 도로용 차량에만 사용되는 연료나 연료첨가제를 포함)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정할 수 있는 날짜 후, 그와 같은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는 연료나 첨가제를 판매, 판매 목적의 공여나 거래반입을 할 수 있다. 단, 환경청장이 이 조 (b)항에 따라 연료나 첨가제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b) (1) 연료 및 연료 첨가제 등록을 위해 환경청장은

(A) 특정연료 제조업체에게 연료에 포함된 첨가제명칭 및 제조업체, 연료 중 첨가제의 농도범위 및 사용 중 의도를 나타내는 상업광고에 대해 통보하고,

(B) 첨가제의 제조업체에게 첨가제의 화학성분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2) 연료 및 연료 첨가제의 등록을 위해, 환경청장은 또한 특정 연료나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에게

(A) 연료나 첨가제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기형성 영향) 공중보건 영향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B) 연료 중 첨가제를 검출, 측정하는데 사용할 있는 기술 분석설명서, 첨가제 농도 권장 범위 및 첨가제의 사용 목적 권장사항, 연료나 연료에 포함된 첨가제 사용에서 비롯되는 배출물질, 연료나 첨가제가 차량, 차량엔진, 비 도로용 엔진이나 비 도로용 차량의 배출통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배출물질이 공중보건이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판단하는데 합당하고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A)항목의 시험은 환경청장이 정한 시험절차 및 규약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비밀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3) 환경청장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사항을 입수할 수 있는 보장사항 등이 항의 규정과 적합한 때, 환경청장은 연료나 연료첨가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c) (1) 환경청장은 이 조 (b)항에서 얻은 정보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때때로, 규정에 의해, 자동차, 자동차엔진이나 비 도로용 엔진이나 비 도로용 차량에 사용 목적으로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제조, 거래반입, 판매 공여나 판매 등을 다음의 경우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A)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배출 산물이 공중보건이나 복지위험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경우, (B)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배출 산물이 널리 사용되거나 환경청장이 널리 사용될 적정한 시간에 공표될 규정이 있는 경우의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었다고 생각하는 배출제어장치나 설비의 기능을 상당한 정도로 손상할 경우
- (2) (A) 어떠한 연료, 연료등급이나 첨가제도 (1)조항의 (A)항목에 따라 환경청장이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202조의 배출기준을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달성할 개연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의료, 과학적 증거를 고려한 후에는 제외한다.
- (B) 어떠한 연료, 연료등급이나 첨가제는 (1)조항의 (B)항목에 따라 환경청장이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사용 예정이고 통제나 금지 계획을 요하는 배출통제장치나 설비를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사용 예정이며 통제나 금지계획을 요하지 않는 배출통제장치를 비교

하는 비용이득분석을 포함하여 가용 과학적, 경제적 데이터를 고려한 후에는 제외한다. 규칙제정계획을 통지하고 10일 이내 자동차, 자동차 엔진, 연료나 연료 첨가제의 제조업체의 요청서가 제출된 때, 환경청장은 이 항목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사결과를 알려야한다. 이 조사결과는 최종 규정 공포 시점에 알려야 한다.

(C) 어떠한 연료나 연료 첨가제도 (1)조항에서 환경청장이 금지할 수 없다. 다만 환경청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금지로 금지 예정인 연료나 연료첨가제 사용보다 같거나 더 큰 정도로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할 배출 물질을 생산하는 여타 연료나 연료첨가제 사용을 초래하지 않는 걸로 발견하여 이를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3) (A) (2)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환경청장은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의 제조업체에게 연료나 연료 첨가제 사용으로 비롯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또는 이를 사용하여 배출제어장치나 설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발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B) (A)항목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307(a)(소환)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A) (B) 혹은 (C)항목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주(혹은 행정당국)도 자동차나 자동차엔진에 있는 연료나 연료 첨가제의 특성 또는 구성부품과 관련하여 통제나 금지, 자동차 배출통제 목적으로 규정하거나 집행시도를 할 수 없다.

(i) 환경청장이 (1)조항의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특성 또는 구성부품의 통제나 금지가 필요하지 않고 연방기록부에 조사결과를 발표한 경우,

(ii) 환경청장이 (1)조항에 따라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특성 또는 구성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나 금지사항을 규정한 경우, 다만 주의 금지나 통제가 환경청장에 규정한 금지나 통제사항과 같은 경우는 제외.

(B) 어느 주가 어느 때라도 209(a)항 적용을 포기한 경우 209(b)항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통제를 위해 연료나 연료첨가제와 관련된 통제나 금지사항을 규정, 집행할 수 있다.

(C) 주는 자동차 배출 통제를 위해 자동차나 자동차엔진에 연료나 연료첨가제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 해당이행계획이 110조에 따라 그렇게 규정한 경우 통제나 금지사항을 규정, 집행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이행계획에서 규정을 승인하거나, 이행계획에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는데 주의 통제나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그 규정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적시에 달성을 초래할 기타 수단이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달성하는데 주의 통제나 금지가 필요하고 이행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없거나 타당하지 않음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지역의 계획에 적시 달성을 승인한 증명서가 없더라도 이 항목에 따른 필요성을 조사할 수 있다.

(d) 벌금 및 명령.

(1) 민사벌금. 이 조의 (a), (f), (g), (k), (l), (m), 혹은 (n)항이나 이 조의 (c), (h), (i), (k), (l), (m), 혹은 (n)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조 (b)항에서 환경청장이 요구한 시험을 실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자는 미국에 위반일수 당 25,000달러 이하 및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나 절감액을 미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복수일 평균 기간에 기초하여 규제기준을 정한 이 조의 (c), (k), (l), 또는 (m)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반은 평균 기간에 일수 당 별도의 위반일자 구성조건이 된다. 민사벌금은 205조 (b)~ (c)항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2) 명령 권한. 미국 지방법원은 이 조의 (a), (f), (g), (k), (l), (m), 및 (n)항 및 이 조의 (c), (h), (i), (k), (l), (m), 및 (n)항에 지시된 규정의 위반사항을 제한하고,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정보 제공 및 이 조 (b)항에서 환경청장이 요구한 시험실시를 강요할 권한이 있다. 위반을 제한하고 조치를 강요하는 조치는 미국에서 제기하고 미국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조치에서 어느 지역의 지방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있는 증인의 소환은 여타 지역에 미칠 수 있다.

(e) (1) 이 항의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그리고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은 연료나 연료첨가제에 대하여 (b)(2) (A) 및 (B)항에 따라 권한을 이행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 후 이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고, 규정 공표일자에 등록된다.

(2) 이 항을 수행하기 위해 (b)항의 규정은 주에서 환경청장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A) 등록 전, 규정공표일자에 미등록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경우, 혹은

(B) 규정공표일자 후 3년 이내, 그 일자에 등록된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경우.

(3) 규정을 공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A) 소규모 사업(규정에 정의된)을 소규모 사업 관련 규정의 요건에서 면제하거나 유예하거나 수정할 수 있거나,

- (B) 2명 이상이 제조하거나 가공한 연료나 연료첨가제 시험과 관련하여 비용분담을 규정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무 분담을 규정할 수 있거나,
- (C) 연료나 연료첨가제 추가시험이 기존의 해당 시험을 중복할 것으로 발견하는 때 특정 연료나 연료첨가제 관련 규정에서 특정인을 면제할 수 있다.

- (f) (1)(A) 1977/3/31일에 효력을 받으며, 연료나 연료첨가제 제조업체가 모델연도 1975년 혹은 이후 모델연도 인증에서 활용된 연료나 연료첨가제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는 모델연도 1974년 후 제조된 소형차, 206조의 차량이나 엔진에 일반적인 용도로 연료나 연료첨가제를 처음 시장에 반입하거나 사용 농도를 높이면 불법이다.
- (2) 1977/11/30일에 효력을 받으며, 연료 제조업체가 망간 농도가 0.726g/갤런을 초과한 휘발유를 시장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4)항에 권리포기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1974/1/1일 후, 1977/3/31일 전, 처음 반입되거나 사용농도를 높인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제조업체는 1977/3/31일 이후, 1978/9/15 전에 반입된다면 (1)(A)항에 따라 달리 금지되었을 경우에 이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거래 유통을 중지한다. 1978/9/15일전, 이 항의 입법일자 후 180일에 시작하는 기간 중에, 환경청장은 206조에 따라 인증되었던 배출기준을 차량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배출제어장치나 설비(장치나 설비가 사용된 차량의 유효수명기간에)의 결함을 일으키거나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연료첨가제의 농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4) 환경청장은 연료나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의 신청이 있는 때, 이 항의 (1)조항이나 (3)조항의 금지사항 또는 이 항 (2)조항에

명시된 제한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는 연료나 연료첨가제나 그 명시 기준, 그리고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배출 산물이나 그 명시 농도가 206조에 따라 인증된 것과 관련된 배출기준을 차량이 준수하기 위해 배출장치나 설비의(장치나 설비가 사용된 차량의 유효수명기간에) 결함을 일으키지도 기여하지도 않음을 신청자가 입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환경청장이 신청서 접수일자에서 180일 이내, 이 조항의 신청서를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부여된 권리포기는 허가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5) 이 조에 따른 환경청장의 어떠한 조치도 사법심사가 미결 중인 법원에서 유예할 수 없다.

(g) 부적절한 급유. (1) 어떠한 자도 ‘무연 휘발유 전용’이란 라벨이 붙고, 무연 휘발유 주입목적으로 설계된 휘발유 탱크 충전기 입구가 장착되고, 1990년도 이후 모델연도 자동차이며, 무연휘발유 전용 차량이라는 것을 그 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자동차에 무연휘발유를 반입하거나, 반입하게 하거나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2) 1993/10/1일부터, 어떠한 자도 황의 농도가 0.05%(중량별)를 초과함을 알고 있거나 알 것이거나 (i)(2)항에서 환경청장이 규정한 대로 대체 방향성 수치가 세탄 지수 최소 40 이나 이에 해당하는 대체 방향성 수치를 충족하지 못한 디젤연료의 자동차에 주입을 하거나, 주입을 하게 하거나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h) 레이드 증기압요건

(1) 금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고농도 오존 계절 중 특정인이 레이드증기압이 9.0psi를 초과하는 휘발유를 판매, 판매 공여, 유통, 공급, 공급 공여, 운반이나 거래 반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공

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달성 제외 지역에서 비교 가능한 증기배출량을 대체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생각하는 때 달성 제외 지역에서 더 엄격한 레이드증기압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의 집행 가능성, 지역의 배출통제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달성 지역. 이 항의 규정은 특정인이 레이드증기압이 9.0psi보다 낮은 휘발유를 달성 지역으로 107조에서 지정된 경우 판매, 공급 공여, 운반이나 거래 반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전에는 오존 달성제외 지역이었다가 달성 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지역에서 레이드증기압이 9.0psi보다 낮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 (3) 유효일자: 집행. 이 항의 규정은 1992년의 경우 고농도오존 계절보다 늦지 않게 효력을 발함을 규정하며,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이 항의 요건을 이행,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에탄올 포기조항. 휘발유 및 10%변성무수에탄올의 경우, 이 항의 레이드증기압제한은 (1)항에서 정한 레이드증기압한도보다 큰 1파운드 psi인데, 그러나 이를 유통, 혼합, 판매, 재판매, 운반, 소매판매나 도매 구매소비자는 다음 조항을 증명할(환경청장에게 수락할 수 있는 인증서나 기타 증거 영수증을 보여 주어) 수 있는 경우에 이 항의 조항 및 규정을 전부 다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A) 휘발유 혼합물비율이 이 항에서 공표된 레이드증기압한도를 따름
 - (B) 에탄올 혼합물비율이 (f)(4)항의 포기조건을 초과하지 않음
 - (C) 추가 알코올이나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여 에탄올 혼합물 비율의 레이드증기압을 높이지 않음

(5) 취급지역. 이 항의 규정은 인근 48개주 및 컬럼비아 지역에만 적용한다.

(i) 디젤연료의 황 함량 요건 (1) 1993/10/1일부터 유효하며, 어떠한 자도 황 농도가 0.05%를 초과하거나 최소 40 세탄 지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디젤연료를 제조, 판매, 판매 공여, 유통, 공급, 보급, 운반이나 거래 반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1)조항의 요건을 이행,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자동차용이 아닌 디젤연료의 제조자 및 수입자가 특별한 방법으로 연료를 염색하지 말도록 요구하여, 자동차디젤연료와 분리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1)조항에서 세탄지수명시사항에 해당하는 대체 방향성 수준을 정할 수 있다.

(3) 1993 모델연도 대형 디젤 차량 및 엔진을 통해 1991년도 인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연료의 황 함량은 0.10%(중량별)이다. 1994년 이후 모델연도 대형 디젤 차량 및 엔진의 인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연료의 황 함량 및 최소세탄지수는 (2)조항에서 공포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알래스카 주와 하와이 주는 324조¹⁾에서 규정된 같은 방식으로 이 항의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청구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이 항의 요건에서 면제사항에 대해 324조¹⁾나 이 조항에서 접수된 청구에 대한 최종 조치를 하여야 한다.

(j) 납 대용 휘발유첨가제.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a)항의 휘발유첨가제를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된 첨가제를 납 대용물로 사용할 예정인 자는 환경청장에게 이항의 (2)조항의 의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325'조일 것임

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간주하는 제품 정체성 및 성분에 관한 정보를 ((b)항에서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외에) 제공하여 밸브좌석마모를 줄이기 위해 이 첨가제를 납 대용 휘발유 첨가제로 등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b)항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시험 외에, (1)조항의 납 대용 휘발유첨가제의 경우, 환경청장은 엔진 침적 및 기타 부작용을 낳을 첨가제의 경향 및 밸브좌석 마모를 줄이는데 있어 첨가제의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 절차를 개발, 알려야 한다. 시험절차는 농무부 장관과 첨가제 제조자, 엔진 및 엔진 부품 제조업체 및 기타 관계자의 정보제공에 협조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독립적 실험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개발, 간행된 시험절차를 이용하여 첨가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업별, 첨가제 명칭별 시험 결과를 비교 목적으로 납 대용 휘발유첨가제 대신 납 0.1g/갤런을 함유하는 휘발유에 같은 시험절차를 적용한 결과와 함께 연방기록부에 발표하여야 하며, 납 대용 첨가제의 등급을 매긴다든가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 절차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첨가제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18개월 이내 혹은 납 대용 첨가제를 환경청장에게 확인시킨 후 6개월 이내 중 늦은 경우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환경청장은 이 항의 연료첨가제 시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자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관련 연료첨가제를 등록할 예정인 자가 납부하며, 연료 첨가제 하나 당 2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이 항에 규정된 대로 시험절차를 정하고 엔진시험을 하기 위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두 번째 회계연도

전 기간에 100만 달러 이하로 환경청장에게 충당될 권한이 부여된다. 연간 50만 달러 이하는 연속 회계 연도 5년 중 매년 충당된다.

- (5) 이 항에서 징수된 수수료는 미국 재무부의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 면허 및 기타 서비스에 충당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수료 징수 기관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k) 종래 차량의 개량 휘발유.

- (1) EPA 규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특정 달성제외지역에서 휘발유연료 차량에 사용할 개량 휘발유에 대한 요건을 수립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고농도오존계절 중)을 형성하는 오존 배출 및 독성 대기오염물질배출의 최대감축을 종래 휘발유의 개량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출감축달성비용, 대기 내외적인 보건 및 환경영향 및 에너지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일반요건. (1)조항의 규정은 개량 휘발유가 (3)조항 및 다음 요건을 준수((7)조항)을 따를 것을 요한다.

- (A) NO_x 배출. 개량 휘발유를 사용할 때 기준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기준 휘발유를 사용할 때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환경청장이 앞 문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제한을 준수하는 게 휘발유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환경청장은 이 조항을 따를 (혹은 전적으로 포기) 수 있도록 적절한 대로 이 조항의 여타 요건이나 (3)(A)조항에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 (B) 산소 함량. 휘발유의 산소함량은 이 법에서 달리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량별 2.0%이상이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요건을 준수하면 국가대기질 주요 기준의 지역별 달성을 가로막거나 저촉될 것으로 환경청장이 판단하는 때 오존 달성제외지역의 경우 이 항목의 적용을 전부 혹은 일부 포기할 수 있다.
 - (C) 벤젠 함량. 휘발유의 벤젠 함량은 부피당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D) 중금속. 휘발유는 납이나 망간 등 중금속이 없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휘발유에 중금속 첨가가 총 질량이나 암 위험에 기초하여 자동차의 독성대기오염물질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중금속에 대한 금지조항을 포기할 수 있다.
- (3) 제조법이나 성능기준의 엄격성. (1)항의 규정은 (A)항목에 제시된 요건이나 (B)항목의 요건 중 더 엄격한 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더 엄격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따로 (B)항목의 (i)항 및 (ii)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제조법
- (i)벤젠. 개량휘발유의 벤젠 함량은 부피당 1.05를 넘지 않는다.
 - (ii) 방향성 물질. 개량 휘발유의 방향성탄화수소 함량은 부피당 25%를 넘지 않는다.
 - (iii)납. 개량 휘발유는 납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iv) 세척제. 개량 휘발유는 엔진이나 차량연료공급설비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첨가제가 들어 있다.
 - (v) 산소 함량. 개량 휘발유의 산소함량은 이 법에서 달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량별 2.0%이상이어야 한다.(환

경청장이 정한 시험오차를 적용)

(B) 성능 기준

(i) VOC 배출. 고농도 오존 계절에, 개량 휘발유를 사용할 때 기준 차량에서 나오는 오존형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 배출량은 기준 휘발유를 사용할 때 차량에서 나오는 오존형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 배출량보다 15% 적어야 한다. 2000년도 이후 유효하며, 25%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15%를 대신하며, 다만 환경청장이 VOC의 배출량 감축달성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기초하여 가감할 수 있는 감축량을 규정하기 위해 25%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조정도 기준 휘발유를 사용할 때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량보다 20% 이하로 감축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요구된 감축량은 질량에 기초한다.

(ii) 독극물. 개량 휘발유를 사용할 때 기준 차량에서 나오는 총 독성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중 기준 휘발유를 사용할 때 차량에서 나오는 총 독성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15% 적어야 한다. 2000년도 이후 유효하며, 25%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15%를 대신하며, 다만 환경청장이 독성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축달성 비용을 고려하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기초하여 가감할 수 있는 감축량을 규정하기 위해 25%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조정도 기준 휘발유를 사용할 때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량보다 20% 이하로 감축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요구된 감축량은 질량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서 요구된 특정 비율감축량보다 큰 감축은 비율감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4) 인증절차

(A) 규정. 이 조항의 규정은 환경청장이 개량 휘발유를 이 조항에 따라 정한 요건을 따른 것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환경청장은 해당자가 환경청장에게 연료조제법이나 조제 연료명부를 인증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환경청장이 접수일자에서 180일 이내 청구서를 승인하거나 부결할 것을 요한다. 환경청장이 180일 기간 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연료는 환경청장이 청구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인증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B) 인증. 동등성. 환경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연료 조제법이나 조제 연료명부가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i) 연료가 (2)조항의 요건을 따를 경우, 그리고

(ii) (3)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개량 휘발유보다 오존형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독성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보다 같거나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는 경우

(C) EPA 배출량 수치 결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기준 휘발유로 운행할 때 기준 차량이 배출한 독성 대기오염물질 및 오존형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하는 절차 및 그 방법론을 결정하여야 한다.(산출 방식, 장비 및 시험 오차 등)

(5) 금지. 1995/1/1일부터, 다음 사항은 이 항의 위반사항이다.

(A) 특정 차폐지역에서 종래 휘발유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보급.

(B) 특정 차폐지역에서 재판매용 종래 휘발유를 정제, 혼합,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i)개량 휘발유와 종래 휘발유를 분리하지 않고, (ii) 종래 휘발유를 ‘종래 휘발유, 차폐지역에서 최종 소비자 판매용이 아님’으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판매 또는 보급.

특성이 분리, 표시된 종래 휘발유를 구입하고 이 휘발유를 개량휘발유로 라벨을 붙여 정제, 혼합, 수입 또는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도매상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청장은 이 항의 위반을 하지 않도록 휘발유를 정제, 혼합,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샘플링, 시험 및 기록 유지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6) 선택(opt-in) 지역. (A)주지사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I 장 D 파트의 2에서 경계지역, 경미한 지역, 중증지역이나 심각한 지역으로(1980년도 지역인구가 25만 명을 넘는 여부와 무관하게) 분류된 지역에서 (5)조항의 금지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 환경청장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지사항의 유효일자는 1995/1/1일 이내 혹은 신청서 접수 후 1년 이내 중 더 늦은 쪽으로 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접수될 때 연방기록부에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B) 환경청장이 자신의 동의로 또는 특정인의 신청으로, 에너지 장관과 협의 후, 이 항에서 인증된 휘발유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환경청장은 (A)항목의 경계지역, 경미한 지역, 중증지역이나 심각한 지역에서 금지 유효일자를 1년 더 규칙에 의해 연장하여야 하며, 1년 연장기간을 2번 더 규칙에 의해 갱신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이 조항에서 제출된 청구서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높은 단계 지역에 대해 연장기

간을 허용하기 전에 낮은 오존농도 지역에 대한 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7) 배출거래권. (A) 이 항에서 공표된 규정은 다음의 휘발유를 정제, 혼합, 수입 및 인증하는 자에게 적정량의 배출거래권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i) 산소함량(중량별)이 (2)조항의 최소 산소함량을 초과함
- (ii) 방향성 탄화수소 함량이 (3)조항을 따르는데 필요한 최대 방향성 탄화수소함량보다 적음
- (iii) 벤젠 함량이 (2)항의 최대 벤젠 함량보다 적음(부피별)

(B) (A)항목의 규정은 배출거래권이 허용된 자가 배출거래권을 사용하거나 이 항을 준수 목적으로 같은 달성제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자에게 배출거래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C) (A) 및 (B)조항에서 공표된 규정은 배출거래권의 발급, 활용 및 양도 요건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출거래권을 사용하여 다음 결과가 일어날 정도로 달성제외지역에서 휘발유와 관련하여 사용할 배출거래권의 양도나 허가를 금지하여야 한다.

(i) 달성 제외지역의 경우 평균 휘발유 방향족 탄화수소함량이(부피별)(달성 제외지역에서 종래 휘발유연료차량용으로 판매된 휘발유를 고려함) 배출권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일어날 평균 연료 방향족 탄화수소함량보다 높음.

(ii) 달성 제외지역의 경우 평균 휘발유 산소함량이(무게별)(달성 제외지역에서 종래 휘발유연료차량용으로 판매된 휘발유를 고려함) 배출권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일어날 평균휘발유 산소함량보다 낮음.

(iii) 달성 제외지역의 경우 평균 벤젠함량이(부피별)(달성 제외지역에서 종래 휘발유연료차량용으로 판매된 휘발유를 고려함) 배출권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일어날 평균 벤젠함량보다 높음.

(8) 덤핑 방지 규칙

(A) 개요..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휘발유를 정제, 혼합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이들이 판매, 거래 반입하는 휘발유((1)조항 요건을 따르지 않는 개량 휘발유 제외)가 i)휘발성 유기화합물, ii)질소산화물, iii)일산화탄소, iv)독성대기오염물질 겔런 당 평균배출량이(질량 측정기준) 휘발유를 정제, 혼합 또는 수입하는 자가 1990년도 판매, 출시되는 휘발유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1995/1/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B) 조정. (A)항목의 요건 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1990년도 이후 판매된 자동차에서 자동차배출량통제에 이용할 목적으로 배출거래권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C)개별 오염물질의 적합성 판단

(A)항목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배출량의 증가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환경청장은 (i)~(iv)항의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를 별도의 금지사항 위반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단, 환경청장이 휘발유에 산소화합물을 첨가하여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나 독성대기오염물질, 혹은 합해 같거나 큰(질량 기준) 배출 감축량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D) 준수기간. 환경청장은 (A)항목의 금지사항 준수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준수 기간을 공표하여야 한다.
 - (E) 준수 결정 기준. 환경청장이 1990년도에 휘발유를 정제, 혼합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판매 또는 반입한 휘발유 성분에 관해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 휘발유는 (A)항목의 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1990년도 휘발유로 대신하여야 한다.
- (9) 차량 전체에서 배출되는 량. 이 항의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체 배출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기가스, 운행 중, 급유 중 배출량 및 배기가스 등을 포함한다.
- (10) 용어 정의
- (A) 기준 차량. 이 용어는 모델연도 1990년도 대표차량을 말한다.
 - (B) 기준 휘발유
 - (i) 하절기. ‘기준 휘발유’란 용어는 고농도 오존 기간 중에 판매된 휘발유의 경우 다음 명세 사항을 충족하는 휘발유를 말한다.

기준 휘발유 연료 특성

API 비중	57.4
황, ppm	339
벤젠, %	1.53
RVP, psi	8.7
옥탄, R+M/2	87.3
IBP, F	91
10%, F	128
50%, F	218
90%, F	330
최종점, F	415
방향족, %	32.0
올레핀, %	9.2
포화유(saturate), %	58.8

(ii) 동절기. 환경청장은 고농도 오존기간 이외의 계절에 판매된 휘발유에 대해 ‘기준 휘발유’의 명세를 정하여야 한다. 이 명세는 이 기간 중 판매된 1990년도 산업평균휘발유의 명세이다.

(C) 독성대기오염물질. 이 용어는 다음의 배출물질 모두를 말한다.

벤젠

1,3 부타디엔

다환식 유기물질 (POM)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D) 차폐 지역. 1980년도 인구수 25만 명이 넘고, 1987~1989년 기간 중 오존 설계 값이 최고인 오존 달성 제외지역 9곳은 ‘차폐 지역’이다. 181(b)항에 따라 특정 오존 달성 제외 지역을 심각한 오존 달성 제외 지역으로 다시 분류하고 1년 후 유효한데, 이러한 심각한 지역도 ‘차폐 지역’이다.

(E)¹⁾ 개량 휘발유. 이 용어는 이 항을 따르는 것으로 이 항에서 환경청장이 인증한 휘발유를 말한다.

(F)¹⁾ 종래 휘발유. 이 용어는 이 항에서 인증의 명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휘발유를 말한다.

(l) 세척제, 1005/1/1일부터 유효하며, 어떠한 자도, 어떠한 휘발유 정제업자나 판매업자도 미국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엔진이나 연료 공급설비에 양금이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첨가제를 함유하지 않는 휘발유를 미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보급하는 자에게 적, 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이 첨가제의 명세를 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m) 산소처리 연료

(1) CO 달성 제외 지역의 계획수정. (A) I장에서 CO 달성 제외 지역으로 지정되고, 1988~1989년 2년 기간 동안 자료에 기초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전에 환경청장이 발표한 가장 최근의 해석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CO 설계 값이 9.5ppm 이상인 지역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환경청장에게 산소처리 휘발유에 대해 이 항에서 명시된 규정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 I 장 파트 D 110조의 주 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본이 그러함. (E) 및 (F)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임.

(B) 그러한 규정이 있는 계획수정안은 1989년 이후 2년 동안 CO 설계 값이 9.5ppm 이상인 지역이 소재한 주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수정안은 2년 기간 후 18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CO 달성제외 지역의 산소처리 휘발유

이 항의 계획수정안은 최종 소비자에게 다음의 큰 지역에서 판매나 보급을 하는 자에게 연료 정제업자나 판매자가 직, 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보급하거나, CO달성제외 지역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보급된 휘발유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A) 그 지역이 소재한 통합대도시통계지역(CMSA), 혹은

(B) CMSA에 소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지역이 소재하고 연중 일산화탄소 대기농도에 취약한 대도시통계지역에서 산소를 중량당 2.7% 이상(환경청장이 정한 시험오차를 적용) 함유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대기농도에 취약한 지역의 연중기간은 환경청장이 정한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의 요청으로, 환경청장은 앞 문장의 명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는 기간을 단축하면 기상조건 때문에 단축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산화탄소기준 초과건수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의 CO 설계 값이 9.5ppm¹⁾인 지역의 경우, 수정안은 1992/11/1일 이내 (혹은 이전 조항에서 환경청장이 정한대로 1992년 중 다른 일자에) 이 요건이 효력을 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아마도 ‘의’앞에 ‘으로’를 첨가하여야 할 것임.

다른 지역의 경우, 수정안은 (1)조항의 2년 적용기간의 마지막 연도 후 3번째 연도의 11/1일 이내 이 요건이 효력을 발하도록 규정을 하고, 환경청장이 발한 지침과 일치하는 요건의 이행,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권리포기. (A) 환경청장은 산소처리 휘발유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대기질 주요 기준을 지역에서 달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되지 않을 거라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주에서 증명하는 때 (2)항 요건을 전부 혹은 일부 포기할 수 있다.

(B) 환경청장은 주가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증명하는 때에 일산화탄소 이동 공급원이 지역의 일산화탄소 수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2)조항의 요건을 포기하여야 한다.

(C) (i) 어느 자라도 환경청장에게 특정 지역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연료첨가제나 (2)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소처리 휘발유의 국내공급량이나 보급용량이 부적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조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청구서 접수 후 9개월 이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i) 환경청장이 (i)항의 청구에 대응하여 (i)항에서 공급량이나 용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1년간 (2)조항의 유효일자를 연장하여야 한다. 청구가 있는 때, 환경청장은 추가로 1년 유효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부분 지연이나 일부 포기는 이 조항에서 부여할 수 없다.

(iii) 이 항목의 권리포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국내공급량의 적정성과는 별도로 보급용량을 고려하고,

산소처리 휘발유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일산화탄소 설계 값이 최고인 지역이 (2)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소처리 휘발유를 조달하는데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포기사항을 허가하여야 한다.

(iv) 이 항목에서 사용된 대로, ‘보급용량’이란 단어는 수송, 보관 및 혼합을 위한 용량을 포함한다.

- (4) 연료분배장치. 이 항에 따라 소매점에서 산소처리 휘발유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휘발유가 산소 처리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거라는 주의표시로 연료분배장치에 라벨을 붙이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 (5) 배출권 지침.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개월 이내, 필요 이상으로 산소함량이 낮은 휘발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2)조항의 명시 기간 중 필요 이상으로 산소함량이 높은 휘발유로 판매 가능한 산소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어떠한 배출권도 달성 제외 지역 사이에서는 양도할 수 없다.
- (6) 달성 지역. 이 항의 어느 것도 일산화탄소의 경우 달성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산소처리 휘발유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산화탄소 달성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일산화탄소 달성제외지역에서 이 항의 요건이 그 지역에서 그 후 기준을 유지하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한 정도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CO 기준 달성 불이행. 환경청장이 일산화탄소의 국가대기질 주요 기준이 중증 지역에서 해당 달성일자까지 달성되지 못했다고 186(b)(2)항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주는 결정일자 후 9개월 이내 그 지역에 대한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

회수정안은 (2)조항의 휘발유 최소 산소함량이 이 항의 규정에 따라서 요건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량별 3.1% 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n) 유연휘발유의 대로 사용 금지. 1995/12/31일 이후, 어느 자가 납이나 납 첨가제를 함유하는 휘발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219(2)¹⁾항에 규정) 판매, 판매 공여, 공급, 공급공여, 보급, 수송이나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 (o) 연료 및 연료첨가제 수입자 및 수입. ‘제조업체’란 용어는 수입자를 포함하고, ‘제조’란 용어는 수입을 포함한다. [42 U.S.C. 7545]
[212조는 P.L. 101.549, 230(10)항으로 폐지됨]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

213조. (a) 배출기준. (1) 환경청장은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의 배출 물질 연구를 실시하여 이 배출 물질이 공중보건이나 복지 위험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크게 기여하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12개월 이내 완수를 하여야 한다.

(2) 공청회 공고 및 기회 제공 후, 환경청장은 (1)항의 연구가 끝나고 12개월 이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신규 및 기존의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오존이나 일산화탄소의 국가대기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1지역보다 오존이나 일산화탄소 농도에 크게 기여하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3)조항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참고사항은 아마도 216(2)항이어야 할 것임. 공법101.549. 220조 참조

- (3) 환경청장이 (2)조항에서 확정 결정을 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1)조항의 연구가 끝나고 12개월 이내, 자신의 판단으로 대기 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신형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기차나 기차용 엔진은 제외)등급 및 부문에서 나오는 배출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한 규정을 공표(때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적용 대상 엔진이나 차량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달성 가능한 최대 배출량 감축정도를 달성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에서 가능한 기간 내 기술을 활용하는 비용, 기술 활용과 관련된 소음, 에너지 및 안전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감축정도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청장은 먼저 220조에서 규정된 비교 가능한 자동차나 엔진 기준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고려하고, 적절한 대로 엄격성 및 준비시간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개연성, 비용, 안전, 소음 및 에너지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엔진이나 차량의 유용수명에(환경청장이 정한) 적용한다.
- (4) (2)조항에서 신규 비 도로용 엔진이나 차량의 배출 물질이 공중보건이나 복지 위험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신형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기차나 기차용 엔진은 제외)등급 및 부문에서 비롯되는 배출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여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규정을 공표(때때로 수정)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엔진 및 차량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기술 활용과 관련된 비용, 소음, 안전 및 에너지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엔진이나 차량의 유용수명에(환경청장이 정한) 적용한다.

- (5)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이내, 환경청장은 신형 기관차 및 기관차에 사용된 신형엔진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적용 대상 기관차나 엔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환경청장이 판단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달성 가능한 최대 배출량 감축정도를 달성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에서 가능한 기간 내 기술을 활용하는 비용, 기술 활용과 관련된 소음, 에너지 및 안전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 (b) 유효일자. 이 항의 기준은 필수 기술의 개발, 활용을 허락하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효력을 발하며, 기간 내 준수 비용 및 에너지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c) 안전한 통제수단. 이 항에서 기준이 적용되는 신형 엔진이나 차량에 대해서 유효하므로, 어떠한 배출 제어설계 장치, 설비나 요소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신형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설계 장치, 설비나 요소가 기능이나 작동에서 공중보건, 복지나 안전에 합당치 못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경우이다. 합당치 못한 위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청장은 202(a)(4)(B)항에서 언급된 사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d) 집행. 이 항의 기준은 206, 207, 208, 및 209조를 적용하고,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때 이들 조의 이행 규정내용을 수정하면서, 202조에서 규정된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에서 유효한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하거나 공표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42 U.S.C. 7547]

자동차의 미립자 배출가스 연구

- 214조. (a)(1)환경청장은 202조가 적용되는 자동차나 자동차엔진에서 배출되는 미립자가 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를 실시하며, 이 연구는 배출물질의 특성을 분류, 수량화하며, 다양한 연료 및 연료첨가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 (2) 이 연구는 또한 엔진의 배출물질과 무관한 이동성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미립자(타이어조각 및 제동라이닝의 석면 등) 분석을 함한다.
- (b) 환경청장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a)항에서 실시한 연구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보고서는 (a)항의 (2)조항에서 설명한 미립자 배출규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U.S.C. 7548]

고위도 성능 조정

- 215조. (a)(1)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나 자동차엔진에 장착하는 설계요소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가(요소 변경이나 조정 등) (b)항의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고위도 조정설명서에 따라 실시된 경우 203(a)항을 위반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 (2) 환경청장이 (1)조항의 제조업체의 설명에 따른 조정이나 변경이 202조 기준과 관련하여 배출통제성능이 그러한 조정이나 변경이 없다면 발생할 성능과 최소한 같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발견한 경우, 이 설명서를 부결하여야 한다. 이 조사결과는 우수공학관행과 일치한 최소 공학평가업무에 기초하여야 한다.
- (b)(1) 이 장이 적용되는 차량이나 엔진 부문이나 등급과 관련하여 다른 위도에서 배출통제성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차량 및

엔진 조정변경사항을 제공하는 설명서는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조항에서 환경청장의 요구사항을 제조업체가 고의로 위반한 때는 205조의 벌금조항에 맞게 203(a)(3)항에서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3) 이 지시사항은 기타 조정사항 외에, 최초 차량등록 후 고위도 지역에서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조정이나 변경과 관련하여 이 조의 어떤 설명서도 제조업체 부품을(203(a)항에 규정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는데 배출통제성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제조업체가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1981/1/1일 전, 이 조에서 규정된 권한은 고위도 주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이 법의 입법일자 전 공표된 규정에서 환경청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로) 하지만, 1980/12/31일 이후, 이 권한은 자동차관련오염물질의 국가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주의 일부지역에 대해 자동차 배출시험을 위한 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었던 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e) 고위도시험, (1)환경청장은 신속히 고위도 조건을 나타내는 부지에 소재한 시험센터를 최소한 1곳 신축하여, 202조가 적용되는 규정의 등급이나 부문의 차량이나 엔진이 그 유용수명 기간 중 실제 사용 중일 때 규정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위도 조건’이란 용어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유효하며 환경청장의 규정에서 정의된 고위도를 말한다.

- (2) 환경청장은 에너지장관과 도시대중교통관리청장, 그리고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기관과 공조하여 고위도 조건을 나타내는 고위도 부지에 위치하여야 하는 버스, 대형트럭, 비 도로용 엔진 및 차량용 저오염 대형 엔진 및 연료를 개발, 평가하는 연구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 이러한 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지원을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지방시설의 비용분담 및 시설 활용을 통한 가동비용의 회수방법을 제공하는 제안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 (3) 환경청장은 판매 후 배출 구성부품, 복수연료방식 차량 및 전환 키트, 배출장비에 대한 조작효과, 대체연료 및 전환키트시험, 그리고 교육과정개발, 훈련과정 및 고위도지역에서 차량배출의 효과적인 관리개선과 관련된 검사유지관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최대로 할 재료 등에 관한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고위도 조건에 있는 센터를 최소 1곳을 지정하여야 한다. [42 U.S.C. 7549]

파트 A의 용어 정의

216조. 이 파트에 사용된 대로

- (1) 202, 203, 206, 207 및 208 조에서 사용된 ‘제조업체’란 용어는 신형자동차, 신형자동차엔진, 신형 비 도로용 엔진이나 차량의 제조나 조립 혹은 재판매용 차량이나 엔진의 수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신형자동차, 신형자동차엔진, 신형 비 도로용 엔진이나 차량의 유통과 관련하여 그 자를 대리하고 통상의 관리를 받는 자를 말하지만, 거래관계에서 조달된 신형자동차, 신형자동차엔진, 신형 비 도로용 엔진이나 차량과 관련된 딜러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자동차’란 용어는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할 목적으로 설계된 자가 추진식 차량을 말한다.
- (3) 수입되거나 수입에 제공된 차량이나 엔진경우를 제외하고, ‘신형자동차’란 용어는 최종 구매자에게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자격이 양도된 적이 없는 자동차를 말하며, ‘신형자동차엔진’이란 용어는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자격이 최종 구매자에게 양도된 적이 없는 자동차나 신형자동차의 엔진을 말하며, 수입차량이나 엔진에 대해서, 이 용어는 자동차 및 엔진을 말하고, 이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미국에 수입목적으로 제조되었다면 그러한 차량이나 엔진에 적용할) 202조에서 발한 규정의 유효일자 후 제조된 것이다.
- (4) ‘딜러’란 용어는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을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5) ‘최종 구매자’란 용어는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과 관련하여 재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신형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을 신의성실원칙에서 구매한 최초의 자를 말한다.
- (6) ‘거래’란 용어는 (A) 주의 어느 장소 및 그 밖의 장소사이에 거래, 그리고 (B) 전적으로 컬럼비아 지역 내 거래를 말한다.
- (7) 차량연석중량, 총 차량 중량등급, 소형트럭(LDT), 소형차¹⁾ 및 차량부하중량(LVW). 이들 용어는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제공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유효한 의미를 갖는다. 용어에 해당하는 괄호안 약어는 해당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8) 시험 중량(tw). 이 용어 및 약어는 총 차량중량 등급(gvwr)²⁾에 더한 차량연석중량을 2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1) ‘소형차’는 인용 부호로 끊겼을 것임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GVWR)일 것임.

- (9) 자동차나 엔진 부품 제조업체. 207조 및 207조에서 사용된 이 용어는 자동차나 자동차엔진에 설치된 설계 장치, 설비, 부품, 구성부품이나 요소 등의 제조, 조립이나 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0) 비 도로용 엔진. 이 용어는 경주용 전용차량이나 자동차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111조나 202조에 따라 공표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내연엔진(연료장치 포함)을 말한다.
- (11) 비 도로용 차량. 이 용어는 경주 전용 차량이나 자동차가 아니며, 비 도로용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말한다.[42 U.S.C. 7550]

자동차 적합성 프로그램 수수료

217조. (a) 수수료 징수. 미합중국법전 31장 9701조와 일치하여 환경청장은 다음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에게 납부할 적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을 공표(때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 (1) 206(a)항이나 C파트에서 신형 차량이나 엔진 인증
- (2) 206(b)항이나 C파트에서 신형 차량이나 엔진 적합성 감시 및 시험
- (3) 206(c)항이나 C파트에서 사용 중 차량이나 엔진 적합성 감시 및 시험

환경청장은 국내외제조업체를 위해 적절하고 정당하며 재량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발견하는 요소에 기초하여 수수료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적합성 증명서에 따라 생산된 차량이나 엔진의 수를 포함한다. 대형엔진 및 차량 제조업체의 경우, 수수료는 적정한 비용의 적정 비율을 회수하는데 적정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 (b) 이 조에서 징수된 수수료는 미국 재무부의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 면허 및 기타 서비스에 충당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수료 징수 기관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c) 기금 운용제한. (b)항의 특별기금의 자금은 수수료가 기금에 납부되는 때 처음 7월 1일 후에 시작하는 첫 회계 연도 후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d) 환경청장의 시험 권한. 이 항의 어느 것도 환경청장이 제조업체에게 이 파트에 제공된 확증시험을 요구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552]

유연 휘발유를 필요로 하는 엔진 생산의 금지

218조. 환경청장은 유연휘발유를 필요로 하는 엔진의 제조, 판매나 거래반입을 금하고 모델연도 1992년도 이후에 제조된 자동차 및 비도로용 엔진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42 U.S.C. 7553]

도시 버스 기준

219조. (a) 1993년도 이후 모델연도기준. 1992/1/1일 이내, 환경청장은 202(a)항에서 모델연도 1994년도 이후의 도시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여러 조치를 이행할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을 걸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최상 기술에 기초하여야 하며, 비용, 안전, 에너지, 준비시간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한다. 규정은 같은 종류 및 모델연도의 대형차량에 대한 202(a)항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과의 적합성외에 도시버스가 이

조1) (b)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하여야 한다.

(b) PM 기준

- (1) 50 퍼센트 감축. 도시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202(a)항의 기준은 모델연도 1994년 이후에 유효하며, 도시버스에서 나오는 미립자(PM) 배출량인 모델연도 1994년에 제조된 대형 디젤 차량 및 엔진의 경우에 PM에 대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202(a)항에서 적용 가능한 배출기준에 따라 허용된 미립자 배출량의 50%를 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2) 수정 감축. 환경청장은 (1)조항에 언급된 기준에 따라 허용된 미립자 배출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내구성, 비용, 준비시간, 안전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환경청장이 (1)조항의 50 퍼센트 감축이 기술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이다. 환경청장은 모델연도 1994년에 제조된 대형 디젤 차량 및 엔진의 경우에 PM에 대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202(a)항에서 적용 가능한 배출기준에 따라 허용된 미립자 배출량의 70%를 초과하여 이러한 배출수준을 높일 수 없다.
- (3) 규칙의 일환으로 결정. (a)항의 규칙제정의 일환으로, 환경청장은 (1)조항의 50퍼센트 감축이 내구성, 비용, 준비시간, 안전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c) 저 오염 연료 요건

- (1) 연간 시험. 도시버스 199년도 버스에 시작하면서, 환경청장은 (b)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PM 기준을 적용하는 운행도시버스의 대표샘플의 연간시험을 실시하여 버스의 유용수명 기간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조'이었어야 함.

중 사용 중인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저 오염 연료의 공표

요건.(A) 환경청장이 (1)조항의 시험에 기초하여, (b)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유용 수명 기간 중 사용 중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1980년도 인구 75만 명 이상인 대도시통계지역이나 통합대도시통계지역에도시버스 소유자나 운영자가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신형 도시버스가 저 오염 연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독점 운행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항목의 시험을 위한 합격불합격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B) 환경청장은 (A)항목에 따른 결정을 하고 3년 후 시작하는 첫 모델연도 5년 각각의 해에 구매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신형 도시버스의 증가비율로 이 조항에 따라 정한 저 오염 연료 요건의 단계별 진입 일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A)항목에 따른 결정을 하고 3년 후 시작하는 첫 모델연도 5년 각각의 해에 구매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신형 도시버스의 100%는 이 조항에 따라 정한 저 오염 연료 요건을 따라야한다.

(C) 환경청장은 이 조항의 요건을 1980년도 인구 75만 이하인 대도시통계지역이나 통합대도시통계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공중보건에 커다란 이득이 이러한 확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이다.

(d) 개정 요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202(a)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 (1) (1) (c)(2)항의 (A)항목에 언급된 지역에서 운행하고 (혹은 환경청장이 이 항목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면(c)(2)의 (C)항목);
- (2) (a)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 (3) 1995/1/1일 후 교체되었거나 재건된 도시버스는,
규정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배출통제기술요건이나 배출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배출기준이나 배출통제기술요건은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개장기술 및 유지관리 작업을 반영하여야 한다.

(e) 행정관리 집행요건.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206(h)항에 따라 이 조의 기준을 적용하는 버스의 관리집행 절차, 시험절차, 샘플링규약, 사용 중 적합성요건 및 버스평가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험절차(인증 시험 등)는 실제 운행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f) 용어 정의

- (1) 도시버스. 이 용어는 202(a)항에 따라 공표된 환경청장의 규정에서 제공된 의미를 지닌다.
- (2) 저 오염 연료. 이 용어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이나 천연가스 또는 비교 가능한 저 오염 연료 등을 말한다. 연료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도 저오염성인 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수준에 이 배출물질의 기여도 및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메탄올’이란 용어는 환경청장이 공중보건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비율을 높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85% 메탄올을 함유한 연료를 포함한다. [42 U.S.C. 7554]

B.

기준 제정

231조. (a)(1) 197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0일 이내,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연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A) 미국 전역에 대기질 관리지역에서 배출물질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리고

(B) 배출물질 관리의 기술적 개연성

(2) (A) 환경청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공중보건이나 복지위험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항공기엔진종류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배출기준상정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B) (i) 환경청장은 항공기엔진배출기준에 대해 연방항공관리국장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ii) 환경청장은 항공기엔진배출기준이 소음을 크게 늘리고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 기준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3) 환경청장은 기준 상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실행가능한 정도로 항공기엔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질 관리지역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규정 상정안을 발하고 90일 이내, 환경청장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항을 수정하면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때때로 수정할 수 있다.

(b)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및 그 수정안)은 필수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허가하는데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기간 후 효력을 받으며, 이 기간 내 적합성 비용을 적절히 고려한다.

- (c)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 혹은 이 조에 따라 유효하거나 그 후 상정되거나 공포된 규정이나, 그 개정안은 공청회 통지 및 기회 후 규정이 항공기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는 교통부장관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조사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진 근거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U.S.C. 7571]

기준 집행

232조. (a) 교통부장관은 환경청장과 협의 후 환경청장이 규정한 231조의 기준과 적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교통부장관의 규정은 연방항공법이나 교통부 법에서 허가한 인증서의 발급, 수정, 변경, 보류나 철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모든 필요한 검사가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¹⁾ 이 조에서 자신에 부여된 모든 권한 및 의무 행사에 여타 법 조항으로 자신에 부여된 권한이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b) 231조의 배출기준이나 (a)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쟁점에 있는 인증서의 수정, 변경, 보류나 철회 조치에서, 인증서소지자는 1958년도 연방항공법이나 교통부 법에 소지자에 대해 규정된 대로 같은 통지 및 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국립교통안전국에 제기하는 항소에서, 안전국은 기준이나 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만 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수정,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이

1) 원본이 그러함, 쉽표는 아마도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임.

러한 수정, 변경이나 철회가 항공교통의 안전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U.S.C. 7572]

주 정부 기준 및 관리대책

233조. 어떠한 주나 그 행정당국도 항공기나 그 엔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기준을 채택, 시도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준이 이 파트에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42 U.S.C. 7573]

용어 정의

234조. 이 파트에서 사용된 용어(환경청장 제외)는 1958년도 연방항공법 101조의 용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42 U.S.C. 7574]

C.

용어 정의

241조.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 (1) 파트 A에서 정의된 용어. 216조에서 파트 A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는 이 파트를 위해서도 적용한다.
- (2) 청정대체연료. 이 용어는 청정연료차량에 사용된 특정 연료(메탄올, 에탄올이나 기타 알코올류(휘발유나 다른 연료로 알코올 부피별로 8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포함), 개량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수소)나 동력원(전기 포함)을 말하며, 이러한 연료나 동력원을 사용할 때 이 장에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및 요건을 따른다. 가변적 연료차량이나 이중연료차량의 경우에, '청정대체연료'란 용어는 청정대체연

료로 운행할 때 243(d)(2)항의 청정연료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혹은 243(e)항에 따라 이 기준을 대체하는 CARB 기준) 충족하면서 연료와 관련하여 청정연료차량으로 인증을 받은 연료만을 말한다.

- (3) ‘비메탄유기기체’(NMOG)란 용어는 기체 시료에 포함된 총 탄화수소(산소처리 무관)를 말하며, 최소한 탄소원자가 5개 이하인 산소처리 유기기체, 그리고 (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에테르 등), 그리고 알칸, 알켄, 알킨 및 방향족으로 알려지고 탄소원자가 12개 이하인 것 등을 포함한다. NMOG 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MNOG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비메탄유기가스시험절차’에 따라서 측정을 하여야 한다. 기준 휘발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 NMOG 배출량 수치는 기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관련된 배출 물질의 반응성에 기초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 (4) 기준 휘발유. 이 용어는 다음 명세사항을 충족하는 휘발유를 말한다.

반응성 재조정을 위한 토대로 사용된 기준 휘발유의 명세사항

API 비중	57.8
황, ppm	317
색상	보라
벤젠, vol. %	1.35
레이드증기압	8.7
주행성	1195
녹 방지 지수	87.3
증류, D.86 °F	
IBP	92
10%	126
50%	219
90%	327
EP	414
탄화수소 형, Vol. % FIA:	30.9
방향족	8.2
올레핀	60.9
포화 지방	

환경청장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의 저 배출차량 및 청정연료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된 정의 및 방법을 따르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용어정의가 모두 합쳐서, 최소한 이 조의 정의만큼 공중보건복지를 보호하는 한 NMOG, 기초 휘발유 및 반응성 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 (5) 차폐 군단. 이 용어는 특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동차 10대 이상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차량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자가, 그 자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자의 관리를 받는 자가, 그리고 그 자와 함께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자가 소유하거나 운행하거나, 임

대하거나 달리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는 그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차폐 군단’이란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 리스나 임대용으로 보유하는 자동차, 자동차 딜러가 판매용으로 보유하는 자동차(시연 차량 포함), 자동차 제조업체 제품평가나 시험용 자동차, 경찰차량 및 기타 응급차량 혹은 비도로용 차량(농가 및 건설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차폐 군단 차량. 이 용어는 다음의 자동차만을 말한다.

(i) 이 파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차량 종류에 속하고,

(ii) 본부 급유 방식 차폐 군단에 속함 (혹은 본부에서 급유될 수 있음)

정상 운행을 하고 야간에 개인 주택의 차고에 있는 어떠한 차량도 이 조항의 의미에서 본부에서 급유될 수 있는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7) 청정연료차량. 이 용어는 특정 모델연도의 경우 이 파트에서 그 모델연도와 관련하여 청정연료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청정연료차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을 받았던 차량종류나 부문에 속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42 U.S.C. 7581]

청정연료차량의 적용 요건

SEC. 242. (a) 기준 공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파트에 명시된 청정연료차량에 대한 청정연료차량기준을 포함하며 이 파트에 따라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b) 다른 요건. 이 파트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는 8,500gvwr 미만의 청정연료차량¹⁾은 같은 부문 및 모델연도의 종래의 휘발유연료차

량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장의 모든 자동차요건을(탑재 진단장치, 증기배출가스 관련된 요건 등) 따라야 한다. 다만, 행정관리집행에 대해서 24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파트의 규정과 상충하는 정도를 제외한다. 이 파트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는 8,500 gvwr 1 이상의 청정연료차량은 같은 부문 및 모델 연도의 전통 휘발유연료나 디젤 연료차량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장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행정관리 및 집행에 대해 24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요건이 이 파트의 규정과 상충하는 정도도 제외한다.

(c) 사용 중 유용수명 및 시험. (1) 6,000lbs. gvwr 미만 소형차/소형트럭의 경우에¹, 243조의 기준을 사용 중에 준수하는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유용수명은

(A) 5만 마일에서 인증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에, 5년이나 5만 마일 기간(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B) 10만 마일 시점에서 인증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에, 10년이나 10만 마일의 기간(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이다. 다만 7년이나 75,000마일 (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지난 기간 중 사용 중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6,000lbs gvwr이상 소형트럭의 경우에¹, 243조의 기준을 사용 중에 준수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용수명은

(A) 5만 마일에서 인증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에, 5년이나 5만 마일 기간(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GVWR”일 것임.

(B) 12만 마일 시점에서 인증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에, 11년이나 12만 마일의 기간(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이다. 다만 7년이나 90,000마일 (혹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지난 기간 중 사용 중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형 청정연료차량의 기준

243조. (a) 소형차량 및 특정소형트럭의 배기가스 기준.

이 항에 제시된 기준은 6,000lbs gvwr 미만의¹⁾(그러나 3,750lbs lvw 이상 소형트럭을 포함하지 않음)²⁾ 소형트럭이나 차량으로 청정연료차량인 경우에 적용한다.

(1) I 단계. 1996년 모델연도에 시작하고, 다음 표에 명시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이 조의 청정연료차량 기준은 차량배기가스가 다음 표에 명시된 수치를 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야한다.

I 단계 3,750 LBS. LVW 미만소형트럭/6,000 LBS. GVWR 미만
소형차량의 청정연료차량 배출기준

오염물질	NMOG	CO	NOx	PM	HCHO (포름알데히드)
50,000 마일 기준	0.160	4.4	0.7		0.018
100,000 마일 기준	0.200	5.5	0.9	0.08*	0.023

기준은 그램/거리(gpm)로 표시된다.

* 미립자(PM)의 기준은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기 위해 5만 마일 기준 및 10만 마일 기준의 경우에, 적용 활용 수명은 각각 5만 마일이나 10만이다.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GVWR”일 것임.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LVW”일 것임.

(2) II 단계. 2001년 모델연도에 시작하고, 다음 표에 명시된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 이 조의 청정연료차량 기준은 차량배기가스가 다음 표에 명시된 수치를 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II 단계 3,750 LBS. LVW 미만소형트럭/6,000 LBS. GVWR 미만 소형차량의 청정연료차량 배출기준

오염물질	NMOG	CO	NOx	PM*	HCHO (포름알데히드)
50,000 마일 기준	0.075	3.4	0.2		0.015
100,000 마일 기준	0.090	4.2	0.3	0.08	0.018

기준은 그램/거리(gpm)로 표시된다.

* 미립자(PM)의 기준은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기 위해 5만 마일 기준 및 10만 마일 기준의 경우에, 적용 활용 수명은 각각 5만 마일이나 10만이다.

(b) 3,750lbs lvw 이상 5,750lbs. lvw 미만과 6,000 lbs.gvwr 미만 소형트럭의 배기가스 기준. 이 항에 제시된 기준은 3,750lbs lvw 이상 소형트럭인 청정연료차량¹⁾에 적용되지만 5,750 lbs. lvw 이하²와 6,000lbs.gvwr 이하는 아니다.

(1) I 단계. 1996년 모델연도에 시작하고, 다음 표에 명시된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 이 조의 청정연료차량 기준은 차량배기가스가 다음 표에 명시된 수치를 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야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LVW".일 것임.

I 단계 3,750lbs lvw 이상 5,750lbs. lvw 미만과 6,000 lbs.gvwr 미만
소형트럭의 청정연료차량배출기준

오염물질	NMOG	CO	NOx	PM*	HCHO (포름알데히드)
50,000 마일 기준	0.160	4.4	0.7		0.018
100,000 마일 기준	0.200	5.5	0.9	0.08	0.023

기준은 gpm으로 표시됨.

* 미립자(PM)의 기준은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기 위해 5만 마일 기준 및 10만 마일 기준의 경우에, 적용 활용 수명은 각각 5만 마일이나 10만이다.

(2) II 단계. 2001년 모델연도에 시작하고, 다음 표에 명시된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 이 조의 청정연료차량 기준은 차량배기가스가 다음 표에 명시된 수치를 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II 단계 3,750lbs lvw 이상 5,750lbs. lvw 미만과 6,000 lbs.gvwr 미만
소형트럭의 청정연료차량배출기준

오염물질	NMOG	CO	NOx	PM*	HCHO (포름알데히드)
50,000 마일 기준	0.100	4.4	0.4		0.018
100,000 마일 기준	0.130	5.5	0.5	0.08	0.023

기준은 그램/거리(gpm)로 표시된다.

* 미립자(PM)의 기준은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기 위해 5만 마일 기준 및 10만 마일 기준의 경우에, 적용 활용 수명은 각각 5만 마일이나 10만이다.

(c) 6,000 LBS. GVWR 초과 소형1트럭의 청정연료차량배출기준. 이 항에 제시된 기준은 6,000lbs. gvwr 이상, 8,500lbs. gvwr 이하의 소형트럭으로 청정연료차량의 경우에 적용되며, 모델연도 1998년

에 시작한다. 다음 표에 명시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이 조의 청정연료차량 기준은 다음 표에 명시된 시험 중량 범주 내 차량의 배기가스가 다음 표에 명시된 수치를 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6,000 LBS. GVWR 초과 소형¹⁾트럭의 청정연료차량배출기준

시험 중량 범주: Up to 3,750 lbs. tw²⁾

오염물질	NMOG	CO	NOx	PM*	HCHO (포름알데히드)
50,000 마일 기준	0.125	3.4	0.4**	0.08	0.015
100,000 마일 기준	0.180	5.0	0.6		0.022

시험 중량 범주: 3,750 초과, 하지만 5,750 lbs. TW은 초과하지 않음

오염물질	NMOG	CO	NOx	PM*	HCHO (포름알데히드)
50,000 마일 기준	0.160	4.4	0.7**	0.10	0.018
100,000 마일 기준	0.230	6.4	1.0		0.027

시험 중량 범주: 5,750 TW 초과, 하지만 8,500 lbs. GVWR를 초과하지 않음

1) 아마도 “소형”일 것임.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TW”일 것임.

오염물질	NMOG	CO	NOx	PM*	HCHO (포름알데히드)
50,000마일 기준	0.195	5.0	1.1**		0.022
100,000 마일 기준	0.280	7.3	1.5	0.12	0.032

기준은 그램/거리(gpm)로 표시된다.

* 미립자(PM)의 기준은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 디젤연료차량에 적용할 수 없는 기준.

표에 제시된 5만 마일 기준 및 12만 마일 기준의 경우에, 인증을 위한 적용 활용 수명은 각각 5만 마일이나 12만이다.

(d) 가변적, 이중연료차량

(1) 개요. - 환경청장은 모델연도 1996년도 및 이후 하나 이상의 연료로 운행할 수 있는 8,500lbs. gvwr¹⁾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 이 조의 기준 및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그러한 차량이 CO, Nox 및 HCHO,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같은 차량 종류 및 모델연도 단일연료 차량의 경우 PM에 대해 (a), (b)항²⁾에서 적용 가능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청정대체연료로 운행하기 위한 NMOG 배기가스 기준.

(1)조항의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외에, (1)조항에서 정한 기준은 차량의 NMOG 배기가스가 청정대체연료로 운행하는 차량에 인증을 받은 때 아래 표에 명시된 수치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GVWR”일 것임.

2) 아마도 “항”일 것임.

청정대체연료로 운행할 때 가변적, 이중연료차량의 NMOG 기준

소형¹⁾ 트럭 (6,000 lbs. GVWR 미만)/소형차량

차량 종류	A 종목 (50,000 mi.) 기준 (gpm)	B 종목 (100,000 mi.) 기준 (gpm)
MY 1996년도에 시작:		
LDT's (0.3,750 lbs. LVW) 및 소형차량	0.125	0.156
LDT's (3,751.5,750 lbs. LVW)	0.160	0.20
MY 2001년도에 시작:		
LDT's (0.3,750 lbs. LVW) 및 소형차량	0.075	0.090
LDT's (3,751.5,750 lbs. LVW)	0.100	0.130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A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5만 마일이다.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B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10만 마일이다.

소형트럭²⁾ (≥ 6,000 lbs. GVWR 이상)

차량 종류	A 종목 (50,000 mi.) 기준 (gpm)	B 종목 (100,000 mi.) 기준 (gpm)
MY 1998년도에 시작:		
LDT's ((0 - .3,750 lbs. TW)	0.125	0.180
LDT's (3,751 - .5,750 lbs. TW)	0.160	0.230
LDT's (above 5,750 lbs. TW)	0.195	0.280

1) 아마도 대문자였을 것임.

2) 아마도 대문자였을 것임.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A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5만 마일이다.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B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12만 마일이다.

- (3) 전통 연료로 운행하기 위한 NMOG기준. (1)조항의 기준 외에, (1)조항에서 정한 기준은 차량의 NMOG 배기가스가 아래 표에 명시된 수치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래의 연료로 운행할 때 가변적, 이중연료차량의 NMOG 기준

소형¹ 트럭(6,000 lbs. GVWR 미만 및 소형¹ 차량¹)

차량 종류	A 종목 (50,000 mi.) 기준 (gpm)	B 종목 (100,000 mi.) 기준 (gpm)
MY 1996년도에 시작: LDT's (0 - ,750 lbs. LVW) 및 소형차량 LDT's (3,751 - ,750 lbs. LVW)	0.25 0.32	0.31 0.40
Beginning MY 2001 LDT's (0 - ,750 lbs. LVW) 및 소형차량 LDT's (3,751 - ,750 lbs. LVW)	0.125 0.160	0.156 0.200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A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5만 마일이다.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B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10만 마일이다.

소형¹ 트럭(6,000 lbs. GVWR 미만)

차량 종류	A 종목 (50,000 mi.) 기준 (gpm)	B 종목 (120,000 mi.) 기준 (gpm)
MY 1996년도에 시작:		
LDT's (0 - ,750 lbs. TW)	0.25	0.36
LDT's (3,751 - ,750 lbs. TW)	0.32	0.46
LDT's (above 5,750 lbs. TW)	0.39	0.56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A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5만 마일이다.

206조의 인증을 얻기 위한 B열 기준의 경우, 해당 활용수명은 12만 마일이다.

(e) CARB 기준으로 대체

(1) CARB 단일 기준집. 캘리포니아 주가 이 조의 (a), (b), (c), 혹은 (d)항에 언급된 차량부문에 209조에서 승인된 권리포기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수립, 이행하는 규정을 공표하고, 이 기준이 모두 합쳐서 이 조의 (a), (b), (c), 혹은(d)항 및 242조에 제시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만큼 공중보건복지를 최소한 보호한다면, 이 캘리포니아 기준은 이 조의 (a), (b), (c), 혹은 (d)항 및 242조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그 부문의 청정연료차량에 적용하여야 한다.

(2) CARB 복합 기준집. 캘리포니아 주가 이 조의 (a), (b), (c), 혹은 (d)항에 언급된 차량부문에 209조에서 승인된 권리포기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수립, 이행하는 규정을 공표하고, 이 기준이 모두 합쳐서 이 조의 (a), (b), (c), 혹은 (d)항 및 242조에 달리 적용할 수 있게 제시된 기준만큼 공중보건복지를 최소한 보호한다면, 이들 기준은 ‘캘리포니아의 적격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적격 기준집이 하나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립, 관리되는 경우, 가장 덜 엄격한 캘리포니아 기준집이 이 조 및 242조의 차량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대신에 관련 청정연료차량에 적용하여야 한다.

(f) 덜 엄격한 CARB 기준. 이 조의 (a), (b), (c), 혹은 (d)항에 언급된 차량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의 저배출차량 및 청정연료규정집이 (a), (b), (c), 혹은 (d)항에 제시된 달리 적용 가능한 기준보다 덜 엄격한 배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수정되는 경우, 혹은 이 규정집에 있는 유효일자가 연장되는 경우, 이렇게 수정된 기준이나 연장기간은(혹은 상황에 따라서 둘 다) (a), (b), (c), 혹은 (d)항에 따라 수정된 기준이나 연장된 유효기간으로 적용되는 차량에 달리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유효일자 대신에 잠정 기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잠정 기간은 (a), (b), (c), 혹은 (d)항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유효일자로부터 모델연도 2년 이하의 기간이다. 이 잠정 기간이 지난 후, (a), (b), (c), 혹은 (d)항에 달리 적용할 수 있게 제시된 기준은 이러한 저배출차량에 대해서 효력을 발한다.(단, 나중에 (e)항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

(g) 대형차량에 적용 불가능.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의 저배출차량 및 청정연료규정집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어느 것도 8,500 lbs. GVWR. 이상 차량의 대형엔진에 적용되지 않는다.[42 U.S.C. 7583]

캘리포니아 기준에 의한 행정관리 및 집행

244조. 8,500 lbs. GVWR이하 차량에 이 파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청정연료차량의 수치 기준이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CARB)의 저배출 차량 및 청정연료규정집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배출수치기준과 같은 경우,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환경청장이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 (1) 캘리포니아 주가 CARB의 저배출차량및청정연료규정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해당기준을 관리, 집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 및 융통성을 띠며, 그리고
- (2) CARB 기준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요건을 따르며, 인증, 생산라인시험 및 사용 중 적합성 요건 등을 포함하는 등 같은 해석 및 정책판단을 활용한다. 단, 환경청장이 그와 같은 행정관리 및 집행이 209조의 권리포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조의 청정연료차량 프로그램을 정하는 규칙을 공표하는데 있어서) 이 조의 어느 것도 대형차량과 관련하여 245조 기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2 U.S.C. 7584]

중대형 청정연료차량의 기준

(8,500 GVWR ~26,000 LBS미만).

245조. (a) 1997년도 이후 모델연도; NO_x 및 NMHC의 총 배출기준

8,500lbs. gvwr ~26,000lbs. gvwr 미만이고 모델연도 1998년도 이후에 제조된 대형차량이나 엔진종류나 부문의 경우, 이 파트에서 청정연료차량의 기준은 NO_x 및 NMFC 총 배출량이 3.25g/제동마력시간(모델연도 1994년 종래의 대형디젤연료차량이나 엔진)의 경우에 대기오염물질 관련 202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총 배출기준

의 50%에 해당)을 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어떤 기준도 26,000lbs. 대형차량의 경우 이 조에서 규정된 대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 (b) 덜 엄격한 기준의 수정. (1)환경청장이 (a)항에 언급된 차량이나 엔진에 대해 (a)항에서 요구된 50% 감축이 청정연료차량 및 엔진의 경우 내구성, 비용, 준비시간, 안전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덜 엄격한 기준 수정안을 공표할 수 있다. 적정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환경청장은 1993/12/31일 전에 이 50% 감축의 기술적 현실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누구라도 어느 때에 환경청장에게 (1)조항에 따라 결정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청구서가 접수되고 6개월 이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이 항에 규정된 대로 공표되고 덜 엄격한 기준 수정안은 (1)조항에 언급된 50% 감축 대신에 최소 30% 감축을 요한다. [42 U.S.C. 7585]

중앙 연료공급 군단

246조. (a) 특정 달성 제외 지역에 필요한 군단 프로그램

- (1) SIP 수정. 차폐 지역((2)조항에 정의)의 전부나 일부가 소재한 주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42개월 이내, I 장 파트 D 110조의 주 이행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 이 조의 군단에 대한 청정연료차량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차폐 지역. 다음의 경우가 '차폐 지역'에 해당한다.
- (A) 오존 달성제외지역. 이 법 I 장 파트 D의 2에서 1987, 1988 및 1989년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중증지역, 심각한 지역이나 극심한 지역으로 분류된 1980년도 인구 24만 이

상 오존 달성제외지역. 이 항목에 따라 오존달성제외지역을 차폐지역으로 다루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발표한 가장 최근의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일산화탄소 달성제외지역. 1988년도 및 1989년도 자료에 기초하여 1980년도 인구 25만 이상, 일산화탄소 설계 값이 16.0ppm 이상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지역(미국환경청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발표한 가장 최근의 해석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이동공급원이 일산화탄소 초과건수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일산화탄소 달성제외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

(3) 재분류 지역의 계획수정안. I장의 파트 D에서 1980년도 인구 25만 명이상, 중증지역, 심각한 지역이나 극심한 지역으로 재분류된 오존 달성제외 지역의 경우, 주는 재분류 후 1년 이내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수정안은 재분류 시점 및 그 후 이 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그 기한을 준수하는데 불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준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협의. 고려 요소. 이 항에서 이행계획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주는 군단 운전자, 차량제조업체, 연료생산유통업체, 자동차 연료 및 기타 관계자와 협의하여 운용 범위, 특수용도, 차량 및 연료 가용성, 비용, 안전, 차량 및 장비의 재판매 가치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수정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b) 단계별 진입요건. 이 조에서 요구된 계획수정안은 차폐지역에서 차폐 군단 운용자가 구매한 1998년도 및 그 후 신형 차폐 군단차량의 최소 일정비율은 청정연료차량이어야 하며, 차폐지역에서 운행할 때 청정대체연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표에 명시된 해당 모델연도(MY) 및 그 후 년도의 경우에, 일정 비율은 표에 제시된 차량종류별로 표에 제공된 대로이다.

청정연료차량 군단 단계별 진입 요건

차종	MY1998	MY1999	MY2000
소형트럭(6,000 lbs. GVWR 미만)			
소형차량	30%	50%	70%
대형트럭(8,500 lbs. GVWR 초과)	50%	50%	50%

MY는 모델연도를 말함.

(c) 6,000lbs.gvwr미만 소형트럭 및 소형차 진척기준. 243조에 규정된 대로 청정연료차량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모델연도에도 불구하고, 모델연도 1998~2000에 제조된 6,000lbs.gvwr미만 소형¹⁾트럭 및 소형차는 모델연도 2001년의 같은 종류의 차량에 대해 243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따를 경우에만 청정연료차량으로 다루어야 한다. (b)항의 요건은 다음 중 이른 때 효력을 발한다.

- (1) 243조에 따라 2001 모델연도 기준을 따르는 6,000lbs.gvwr미만 신형 소형트럭소형차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제공된 1997 모델연도 후 처음 모델연도
- (2) 2001 모델연도. (b)항의 유효일자가 이 항의 (1)조항에 따라 연장된 때, (b)항의 단계별 진입일정은 1998 모델연도 대신에

1) 아마도 '소형'이어야 할 것임.

(1)조항에 언급된 모델연도에 시작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d) 차량 및 연료 선택. 이 항의 계획수정안은 청정연료차량 및 청정 대체연료 선택은 이 항의 요건을 따르는 차폐군단운용자가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e) 청정대체연료의 가용성. 계획수정안은 연료공급자에게 차폐군단차량이 중앙에서 급유되는 장소에서 청정대체연료를 차폐군단운용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f) 배출거래권

(1) 배출거래권 발급. 이 조에서 요구된 주의 계획수정안은 주가 다음에 해당하는(혹은 둘 합쳐서) 군단운용자에게 적절한 배출거래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A) 이 조에서 요구된 것 보다 더 많은 청정연료차량의 구입

(B) (4)조항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청정¹⁾연료차량 구입

(C) 이 조에서 다루지 않으나 (4)조항의 차량에 대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구입

(2) 배출거래권 사용. 중량 등급별 제한.

(A) 배출거래권 사용. 이 항의 배출거래권은 이 항과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배출거래권을 소지한 자가 사용할 수 있거나 같은 달성제외지역에서 이 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요건과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자가 사용하도록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어느 때 배출거래권을 획득하였든지 간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예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될 때 이 배출거래권

1) 아마도 “청정연료”일 것임.

은 더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처럼 같은 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B) 중량 등급별 제한. 8,500lbs.gvwr 미만 차량구매와 관련하여 발급된 배출거래권은 8,500lbs.gvwr 이상 차량에 이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특정인이 준수함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8,500lbs.gvwr 이상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발급된 배출거래권은 8,500lbs.gvwr 미만 차량에 대해 이 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특정인이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C) 중량조절. 이 항에서 청정연료차량 구매를 위해 발급된 배출거래권은 차량별로 배출감축달성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중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규정 및 행정관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배출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주는 이 항에서 정한 배출거래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청정차량용 배출거래권 발급기준. (1)(B)항에서 배출거래권 발급목적으로만, 환경청장은 이 파트에서 청정연료차량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최저 배출차량(ULEV)² 및 배출제로 차량(ZEV)²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청정연료차량³을 이와 같이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인증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게 정한 청정연료차량의 경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더 엄격한 기준을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8,500 lbs. GVWR 이상 차량에 대해 이 조항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기준은 같은 등급의 ULEV

2) 아마도 “(‘ULEV’)” 및 “(‘ZEV’)”일 것임.

3) 아마도 “청정연료”일 것임.

및 ZEV 차량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한 기준을 가능한 더 근접하게 따라야 한다. 8,500 lbs. GVWR 이상 차량에 대해, 환경청장은 이 항의 목적에 맞게 비교되는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5) 조기 군단 배출거래권. 주의 계획수정안은 이 조에서 계획수정안 승인 후 군단 프로그램의 유효일자 전 어느 기간 중 이 파트에서 청정연료차량 기준을 충족하도록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는 군단운용자에게 이 항의 배출거래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g) 공공 이용성. 이 항을 적용하는 차량에 청정대체연료가 공급되고 미국 부서기관이나 대행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시설에서, 이 연료는 적정 업무시간 중 다른 차량에 공개 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보안우려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방시설 근처에서 차량에 상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h) 교통통제조치.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하루 중 혹은 주중 제한조치 등 교통통제조치 및 기타 유사한 차량이용제한조치가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정연료차량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항은 I장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어야 한다.[42 U.S.C. 7586]

차량 전환

247조. (a) 기존, 종래의 신형 차량을 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 246조의 요건은 기존, 신규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246조의 해당 요건을 따르는 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하여 충족할 수 있다. 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은 청정연료차량의 구매로 다루어야 한다. 이 파트의 어느 것도 246조 군단차량구매요건을 적용하는 차폐군단운용자가 기존, 신규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차

량을 구매할 필요가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b) 규정.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신형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장 요건과 일치하여, 종래의 차량을 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하는 관할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전환 차량이 이 파트에서 청정연료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전환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¹⁾ 242, 243, 244, 및 245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이 장에서 같은 규정의 전환사항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의 경우에, 환경청장이 이 파트를 이행하는데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규정을 이행하는 해당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c) 집행. (b)항에 따라 종래의 차량을 청정²⁾연료차량으로 전환하는 자는 206조 및 207조 및 관련 집행규정에 맞게 제조업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앞 문장의 어느 것도 이러한 차량전환을 하는 자에게 파트에서 요구된 것 이외의 차량의 일부나 운행을 보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의 어느 것도 관련이 없는 부품이나 운행에 여타 보증사항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d) 조작. 휘발유나 디젤 연료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b)항에 공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203(a)(3)항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 (e) 안전. 교통부 장관은 기존, 신규 차량을 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된 차량의 안전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법에 따라 규칙을 필요하다면 공표하여야 한다.

[42 U.S.C. 7587]

1) 아마도 “조들”일 것임.
2) 아마도 “청정연료”일 것임.

연방부서기관의 군단

- 248조. (a) 추가 적용 가능한 규정. 이 조의 규정은 이 파트의 다른 규정 외에 미국정부부서기관이나 대행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차폐 군단 차량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b) 연방부서의 차량비용. 1949년도 연방자산관리업무법 211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총당금이 비교되는 종래의 차량비용을 상회하여 차량부대비용을 제공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연방부서에서 상환할 금액에 청정연료차량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c) 총당금 제한. 이 조항의 권한에 따라 총당된 기금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 종래에 비교되는 차량의 구입, 유지보수 및 운행비용을 초과하며 이 항목에 따라 구입한 차량의 조달, 유지보수 및 운행비용의 일부
 - (2) 종래의 차량에 요구된 목적의 비용을 초과하는 차량에 기인한 연료보관분배장비의 비용 일부
 - (3) 종래에 비교되는 차량의 처분으로 얻은 수입과 비교할 때처럼 차량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나타내는 청정연료차량 구입비용의 일부
- (d) 차량 비용. 종래에 비교되는 차량 비용을 상회하여 이 파트에서 구입된 차량의 부대비용은 미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개인차량 비용에 대한 법규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산출작업에도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e) 면제. 이 파트의 요건은 국방부장관이 환경청장에게 국가보안고려 사항에 기초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증하였던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f) 구독 조건. 연방부서는 실행가능한 정도로 최초 장비제조업체로부터 청정연료차량을 구하여야 한다.
- (g) 충당금 권한. 이 조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 충당될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이 조의 권한에 따라서 행정업무청장을 위해 충당되는 금액은 1949년도 연방자산관리업무법의 109조에서 정한 일반 공급기금에 추가되어야 한다.[42 U.S.C. 7588]

캘리포니아 모의시험 프로그램

- 249조. (a) 수립. 환경청장은 오존 달성제외지역에서 대기오염을 통제하는데 있어 청정연료차량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의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 (b) 적용 가능성. 이 조의 규정은 소형트럭 및 소형차량에만 적용하며, 이 규정은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적용한다.
- (c) 프로그램 요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조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청정연료차량. 청정연료차량은 캘리포니아 최종 구매자에게 (246조의 차폐군단의 소유자를 포함) 다음 일정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수로 생산, 판매, 보급되어야 한다.(정규사업관행 및 해당 프랜차이즈 약정에 일치하여)

모델연도	청정연료차량대수
1996, 1997, 1998	150,000 대
1999 이후	300,000 대

(2) 청정대체연료.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캘리포니아 주는 I 장 파트 D 및 110조의 해당이행 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되, 이 항목에서 요구된 청정연료차량에 사용될 수 있는 청정대체연료를 연료 공급자가 생산, 보급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정연료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소한, 이 조에서 요구된 모든 청정연료차량이 최대 가능한 정도로 캘리포니아에서 청정 대체 연료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청정대체연료가 생산, 보급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는 청정대체연료로 편리하게 급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리적으로 적절히 분배된 장소에서 청정대체연료를 이용할 수 있고 판매에 제공되도록 요구하되, 주에서 차량의 지리적 분배, 판매차량대수 및 판매차량종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는 청정대체연료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향후 차량 판매전망 및 영향권 내 지방 정부 및 연료공급자와 자문에 기초하여 생산, 보급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여야 한다.

(B) 주는 이 요건을 초과하기 위해 적정량의 배출거래권을 이 조항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적용하는 자에게 규정에 의해 부여할 수 있으며, 배출거래권이 부여된 자는 이 요건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배출거래권을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는 집행 가능성, 환경요소 및 경제적요인 등을 고려한 후, 주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이 배출거래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C) 주는 또한 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보건, 복지나 안전에 합당치 못한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혹은 용인할 수 있는 차량유지보수 및 성능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발견한 때 이 조항에 따라 생산, 이용할 수 있게 된 청정대체연료에 대한 명세사항을 규정에 의해 정할 수 있다.
- (D) 이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소매 휘발유보급시설이 자동차연료저장보관탱크와 부속 배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예정이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고품 폐기물처리법 I 장에 따라 이러한 탱크 및 부속 배관을 제거, 교체 완료한 경우, 탱크의 제거, 교체일자로부터 7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까지는 이 항을 따를 필요는 없다.
- (E) 이 조의 어느 것도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주가 청정대체연료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F) 캘리포니아 주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정연료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4년 이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조항 및 110(c)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연료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 (d)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출거래권. (1)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제조업체가 이 조의 (c)(1)항의 요건 일부를 이행하는 쪽으로 적정량의 배출거래권을 부여할 수 있다.

(A) 이 조 (c)(1)항에서 요구된 것보다 많은 청정연료차량 판매량
 (B) (3)조항에 제공된 대로 청정연료차량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청정연료차량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환경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정¹⁾연료차량의 판매. 이 조항에서 배출권이 부여된 제조업체는 이 조항에서 규정된 요건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있어 다른 제조업체가 사용할 배출거래권을 전부 혹은 일부 양도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특정 주의 법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같은 차량에 대해 부여된 배출거래권이나 주 법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배출거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규정 및 행정관리. 환경청장은 이 항에서 정한 배출권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배출권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청정차량용 배출거래권 발급 기준.

245(e)항²⁾의(군단 프로그램의 청정¹⁾연료차량의 배출거래권) 배출거래권 프로그램을 위해 환경청장이 정한 더 엄격한 기준 및 기타 요건(배출거래권의 중량조정)은 이 조항의 배출거래권 프로그램을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e) 프로그램 평가. (1) 1994/6/30일 이내, 다시 (2)조항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CARB 저배출차량 및 청정연료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동차제조업체 및 자동차연료공급업체가 이 조에서 위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모의프로그램¹⁾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1) 아마도 “청정연료”.

2) 아마도 “246(f)”.

1) “모의프로그램”이란 단어는 소문자일 것임.

을 조사하여야 한다.

(2) 1998/6/30일 이내, 환경청장은 이 조의 캘리포니아 모의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달성된 배출감축수준,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을 기타 달성제외지역으로 확대하는 장점 및 단점,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가망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프로그램은 환경청장이 확대하거나 종결할 수 없다. 다만,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제정된 의회법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177조는 이 조의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f) 다른 주의 경우 자발적 단계별 선택

(1) EPA 규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 항의 자발적 단계별 선택 프로그램을 정하는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A) 이 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 판매 및 보급될 필요가 있는 청정연료차량, 그리고

(B) 이 조에서 연료공급자가 생산, 보급하고 캘리포니아에서²⁾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청정대체연료는 (2)조항의 계획수정안을 제출하는 다음 주에서 판매되고 사용될 수 있다.

(2) 계획수정안. I장 D 하부파트에 따라 중증지역, 심각한 지역이나 극심한 지역으로 분류된 오존달성제외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재하는 주는 I장 파트 D 및 110조에 따라 해당이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 판매

2) 아마도 쉽표가 들어가야 함.

및 보급할 필요가 있는 청정연료차량을 그 주나 지역에서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연료공급자가 생산, 보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청정대체연료를 그 지역이나 주에서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계획수정안은 자동차제조업체 및 연료공급자에게 이들 조항의 통지를 제공완료한 후 1년까지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3) 인센티브. (2)조항에 언급된 인센티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청정연료차량이 아니고 주에 등록된 신규 자동차에 대한 주 등록수수료, 차량비용의 최소 1% 금액. 수수료 이익금은 청정연료차량 구매자 및 청정연료차량을 많이 판매할 자동차딜러에게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행정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하여야한다.

(B) 청정연료차량을 다인승 차량이나 여행 축소 요건에서 면제하는 조항

(C) 청정연료차량용 기존 주차공간사용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
이 조항의 인센티브는 차폐 군단차량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판매 또는 생산 명령 없음. (1) 및 (2)조항의 규정 및 계획수정안은 청정연료차량이나 청정대체연료의 경우 생산이나 판매 명령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 및 계획수정안은 차량 제조업체 및 연료공급자가 청정연료차량이나 청정대체연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42 U.S.C. 7589]

일반규정

250조. (a) 주의 급유시설. 어느 주가 110조 및 파트 D의 계획을 승인

하는데 있어, 안전, 비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기존 주의 급유시설이 청정대체연료 구입을 위해 공용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주에서 운영하는 청정대체연료 급유시설이 주에서 건축, 운용할 것이며 적절한 때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달성 제외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이행계획에 집행 가능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이러한 조치에 기인할 수 있는 파트D¹⁾의 목적을 위해 배출감축거래권을 주에 부여할 수 있다.

- (b) 생산 명령 없음. 환경청장은 이 파트에서 청정연료차량의 생산 명령 권한이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 모의시험프로그램에 제공된 경우나 해당되는 대로 이 파트에서 적용되는 차량의 모델, 라인 종류 또는 판매나 가격관행, 정책이나 전략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파트의 어느 것도 판매나 가격결정관행, 정책이나 연료전략을 명령할 권한을 환경청장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c) 탱크 및 연료장치안전. 교통부 장관은 1966년도 국기자동차교통안전법에 따라 연료보관실린더 및 연료설비의 안전 및 활용에 관해 적용 가능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하며, 적절한 자동차 시험 및 재시험도 포함한다.
- (d) 에너지부 및 교통부와의 협의
환경청장은 이 파트에서 환경청장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에너지부 및 교통부 장관과 조정을 하여야 한다. [42 U.S.C. 7590]

1) 아마도 I 장의 파트 D와 관련될 것임.

III 장. 개 론

행정관리

301조. (a)(1) 환경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명할 권한이 부여된다. 환경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신의 권능 및 임무를 환경청 관리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거나 방편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307(d)항을 따르는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조항의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1)조항의 위임 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관리직원(지역 환경사무소장 등)이 따라야 할 해당 절차 및 정책을 정하는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이 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각 지역에서 적용한 기준, 절차 및 정책의 공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

(B) 이 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특히 신규공급원 심사 및 이 법의 집행에서 이 법의 요건의 준수 및 각 주의 성과 감사의 질을 적절히 확보

(C) 이 법의 이행 및 집행에서 관리직원이 활용한 다양한 기준, 절차 및 정책을 구별, 표준화하는 수단을 제공.

(b) 대기오염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 환경청 직원은 이 법 규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관에 파견될 수 있다.

(c) 이 법에서 마련된 보조금 지급은 환경청장이 정할 수 있는 대로 분할, 선 지급이나 상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d) 부족의 권한

- (1) (2)조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환경청장은
 - (A) 인디언 부족을 이 법에 따라 주정부로 대우할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105조의 연간총당금의 1%의 1/2 이상을 각 주에서 적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B) 이 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디언부족에게 보조금 및 계약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2)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인디언 부족을 주정부로 취급하는데 적절한 이 법의 조항을 명시하면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우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가되어야 한다.
 - (A) 인디언부족이 실질적인 정부역할 및 권한을 수행하는 통치조직이 있는 경우
 - (B) 인디언 부족이 행사할 역할은 보호지 외곽 경계 혹은 부족 관할권 내 기타 지역에 대기자원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되는 경우
 - (C) 인디언 부족이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이 법의 조건 및 해당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되는 경우
- (3) 환경청장은 부족의 이행계획 및 그 일부의 승인이나 부결을 하기 위한 부족의 이행계획 및 절차 요소를 정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4) 어느 경우든 환경청장은 인디언부족을 주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게 부적절하거나 행정상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때,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조항을 직접 관리할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5) 이 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규정을 공표하는 때까지, 환경청장

은 105조에서 적격 인디언 부족에게 재정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42 U.S.C. 7601]

용어 정의

302조. 이 법에서 사용될 때,

- (a) ‘환경청장’이란 용어는 환경보호청장을 말한다.
- (b) ‘대기오염관리기관’이란 용어는 다음의 하나를 말한다.:
 - (1)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공식 주 대기오염 관리 기관으로 그 주의 지사가 지정한 단독 주 기관
 - (2) 대기오염방지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있고 둘 이상의 주에서 정한 기관
 - (3) 도시, 군이나 기타 지방정부보건당국 혹은 대기오염방지관리와 관련된 법규나 명령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보건당국 이외의 기관이 있는 도시, 군이나 기타 지방정부의 경우에, 기타 그와 같은 기관
 - (4) 같은 주나 다른 주에 소재하고 대기오염방지관리 관련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시당국의 기관
 - (5) 인디언 부족의 기관
- (c) ‘주 사이 대기오염관리기관’이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1) 둘 이상의 주에서 정한 대기오염관리기관, 혹은
 - (2) 다른 주에 소재한 둘 이상의 시당국의 대기오염관리기관
- (d) ‘주’란 용어는 단일 주, 컬럼비아 지역, 푸에르토리코 공화국, 버진 아일랜드, 괌 및 미국 사모아를 말하며, 북 마리아나 아일랜드공화국을 포함한다.

- (e) ‘사람(자)’란 용어는 개인, 법인, 제휴회사, 협회, 주, 시당국, 주의 행정당국 및 미국의 기관부서나 대행단체 및 그 관리직원이나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
- (f) ‘시당국’이란 용어는 시, 읍, 현, 자치도시, 교구, 지역이나 기타 주의 법에 따라서 혹은 주의 법으로 설립된 공공단체.
- (g) ‘대기오염물질’이란 용어는 단일 대기오염물질이나 복합오염물질을 말하며, 대기 중에 배출되거나 달리 대기에 들어오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방사성(원료 물질, 특수핵물질 및 부산물) 물질이나 물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용어는 환경청장이 ‘대기오염물질’이란 용어가 사용된 목적을 위해 그 전구체를 확인한 정도로 대기오염물질 형성의 전구체를 포함한다.
- (h)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언어는 토양, 물, 농작물, 식물, 인위적 물질, 동물, 야생, 기후, 가시성 및 날씨, 자산에 대한 손해 및 열화, 교통에 대한 위험영향 뿐만 아니라 변형, 전환이나 다른 대기오염물질과의 결합이 원인이 되었던 간에 경제적 가치가 개인의 안위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 (i) ‘연방 토지 관리자’란 용어는 미국의 토지와 관련하여 그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서의 장관을 말한다.
- (j)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고정 공급원’ 및 ‘주요 배출시설’이란 용어는 연간 오염물질을 100톤 이상 직접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공급원이나 고정 시설을 말한다.(환경청장이 규칙에 의해 결정한 대로 그와 같은 오염물질의 비산성 배출원이나 주요 배출시설 등)

- (k) ‘배출한도’ 및 ‘배출기준’이란 용어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량이나 비율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주나 환경청장이 정한 요건을 말하며, 연속적 배출감축을 할 수 있도록 공급원의 가동이나 유지관리와 관련된 요건, 이 법에서 공표된 업무관행, 설계, 장비나 작업 기준 등을 포함한다.¹⁾
- (l) ‘성과기준’이란 용어는 연속배출감축요건을 말하며, 연속배출감축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원의 가동이나 유지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포함한다.
- (m) ‘배출제한수단’이란 용어는 연속배출감축시스템을 말한다.(특정 오염특성이 있는 특정 기술이나 연료의 사용 등)
- (n) ‘주요 기준 달성일자’란 용어는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달성을 위해 해당이행계획에 명시된 날짜를 말한다.
- (o) ‘준수 지연 명령’이란 용어는 이행계획의 요건을 공급원이 준수하는데 이행계획에서 요구된 날짜를 연기하면서 주나 환경청장이 기존의 고정공급원에 발한 명령을 말한다.
- (p) ‘준수 일정 및 시간표’란 용어는 필요한 조치의 일정을 말하며, 배출한도, 기타 제한, 금지나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조치나 작업의 집행 가능한 순서를 포함한다.
- (q) ‘해당이행계획’이란 용어는 110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110(C)에 따라 공표되었거나 301(d)에 따라 공표된 규정에 따라서 공표되거나 승인되었으며, 이 법의 관련 요건을 이행하는 이행계획의 일부나 가장 최근에 수정한 계획을 말한다.

1) 공법101.549 (104 Stat. 2574) 302(e)항은 두 번째 기간을 추가하였음.

- (r) ‘인디언 부족’이란 용어는 인디언 부족, 무리, 국가나 기타 조직단체나 집단사회를 말하며 알래스카원주민촌을 포함하며 인디언으로써의 위상 때문에 인디언에게 미국이 제공하는 특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연방정부에서 인정한다.
- (s) ‘VOC’란 용어는 환경청장이 정의한 대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 (t) ‘PM. 10’이란 용어는 환경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할 대로 공기역학상 직경이 정격 10 마이크로미터이하인 미립자를 말한다.
- (u) “NAAQS”란 용어는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말한다. ‘CTG’란 용어는 108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공포한 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 (v) ‘NOx’란 용어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 (w) CO란 용어는 일산화탄소를 말한다.
- (x) ‘소량 공급원’이란 용어는 연간 오염규제물질을 100톤 이하 배출하는 공급원이나 환경청장이 규정을 통해서 대기오염관리와 관련된 기술능력이나 지식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결정하는 자의 부문을 말한다.
- (y) ‘연방이행계획’이란 용어는 주 이행 계획에서 부적합성 전부나 일부를 달리 수정하거나 차이의 전부나 일부를 메우기 위해 환경청장이 공포한 계획(혹은 그 일부)을 말하며, 집행 가능한 배출한도나 기타 관리대책, 수단이나 방법(경제적 인센티브, 배출허용량의 판매가능허가나 경매 등을 포함)을 포함하고, 관련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달성을 규정하고 있다.

- (z) ‘고정공급원’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공급원을 말하며, 수송 목적으로 혹은 216조에서 정의한 대로 비 도로용 엔진이나 비도로 용 차량에서 내연기관에서 직접 배출되는 물질은 제외한다. [42 U.S.C. 7602]

긴급 권한

303조. 이 법의 여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오염 공급원(유동성 공급원 포함)이 공중보건이나 복지 또는 환경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나타내는 증거를 입수한 때 해당 미국 지역의 미국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중지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추정된 오염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자를 즉각 제지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착수로 공중보건이나 환경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행할 수 없다면, 환경청장은 공중보건이나 복지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이든, 환경청장은 해당 주 및 지방당국과 의논을 하고 예정조치를 취할 근거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 조에 따라 발한 명령은 발포하는 때 유효하며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발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이 조의 첫 문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청장이 60일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한 때, 이 명령은 14일 더 혹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로 더 긴 기간 동안 효력을 발한다. [42 U.S.C. 7603]

시민 소송

304조.1) (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라도 자신을 위해 다음의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착수할 수 있다.

- (1) (A) 이 법의 배출기준이나 한도 또는 (B)기준이나 한도와 관련하여 주 또는 환경청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위반 혐의가 되풀이된 증거가 있다면)²⁾자 ((i)미국 및 (ii) 헌법11차 개정안에서 허용된 정도로 여타 정부대행단체나 기관을 포함)
- (2) 이 법에 따라 환경청장의 재량권이 아닌 어떠한 조치나 임무를 환경청장이 수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환경청장, 혹은
- (3) I장 파트 C에서 요구된 허가 없이 (대기질 유의한 악화) I장 파트 D(달성 제외 관련) 신규 혹은 변경 주요 배출시설을 건축하거나 건축할 예정이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했거나(위반 혐의)

1) 오클라호마 시에서 발생한 참사구조지원, 테러방지, 추가 재난지원을 위해, 1995년 9월 30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폐지하며, 그리고 다른 목적의 긴급보조충당금조성법¹⁾으로 불리는 이 법 1004조 및 1005조는 다음과 같다.

행정 조항

SEC. 1004. 1995년 회계연도에 대해 충당금법에서 이용 가능한 기금 중 어느 것도 시험용이나 IM240 차량검사 유지관리 개선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이행하여 환경청이 주에게 청정대기법182조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가 이 요건 충족을 위해 하나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 1005. 1995년 회계연도에 대해 충당금법에서 이용 가능한 기금 중 어느 것도 차량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에서 여행 감소조치를 이행하는 요건을 강요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환경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청정대기법 304조는 이 법 입법일자에 시작하고 1995/9/30에 끝나는 기간 중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공법 101.549, 707(g)항은 (1) 및 (3)조항의 ‘위반하는’ 바로 앞에 혹은 ‘위반한’을 (추정 위반이 반복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개정안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날짜 후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한다.

의가 반복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 지방 법원은 당사자의 시민권이나 계쟁 중인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청장이 조치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발하고, 적절한 민사상 벌금형을 내릴((2)항의 조치는 제외) 권한이 있다. 미국 지방법원은 합당하게 지연된 기관의 소송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이 항 (2)조항과 일치하여) 다만, 합당하게 지연된 307(b)항에 언급된 기관의 조치를 강요할 소송이 미국 지방법원에 307(b)항에 따라 심사될 수 있을 순회법원 내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당하지 못한 지연에 대한 소송에서, (b)(1)(A)항에 언급된 기업에 보내는 통지는 이 소송을 착수하기 18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b) 어떠한 소송도

(1) (a)(1)항에 따라

(A) 원고가 환경청장에게 (i) 위반 통지를 보낸 후 60일 전, (ii) 위반이 일어나는 주에, 그리고(iii) 기준, 한도나 명령의 위반혐의자에게, 혹은

(B) 환경청장이나 주가 기준, 한도나 명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미국법원이나 어느 주에 민사소송을 착수했거나 성실히 기소 중인 경우, 그러나 미국법원에 그와 같은 소송에서 어느 자라도 권리문제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¹⁾

(2) 원고가 환경청장에 소송통지서를 보낸 후 60일 전 (a)(2)항에 따라 착수할 수 없다. 다만, 이 소송이 112(i)(3)(A) 혹은 (f)(4)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른 소송이거나 113(a)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발한 명령의 경우에 통지 직후 제기될 수 있는

1) 마칩표는 아마도 쉽표일 것임.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의 통지는 규정에 의해 환경청장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c) (1) 배출기준이나 한도의 고정공급원의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나 이 기준이나 한도와 관련된 명령은 공급원이 소재한 사법지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 (2) 이 조에서 어느 소송에서도, 환경청장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소송절차에 어느 때라도 권리문제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에서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서 판결은 미국에 구속효과를 갖지 않는다.
 - (3) 이 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미국 검찰총장에 대해, 그리고 환경청장에 대해 고소장 사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어떠한 합의판결도 이 조에 따라 제기되고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서 검찰총장 및 환경청장의 합의예정판결 사본을 수령한 뒤 45일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 중 정부는 법원 및 당사자에게 합의예정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권리문제로 개입할 수 있다.
- (d) 법원은 이 조(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최종 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어느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재정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그러한 재정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때이다. 법원은 임시 제한 명령이나 예비 명령이 소추된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채권이나 이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 이 조의 어느 것도 특정인(혹은 계급)이 헌법이나 보통법에 따라 배출기준이나 한도의 집행을 청구하거나 다른 구제대책을 (환경청장이나 주 기간을 상대로 한 교정조치 등) 청구하는데 권리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에서 미국의 여타 법에서 어느

것도 주, 지방이나 주 사이 당국이 다음 사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1) 주나 지방 법원에 집행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구제나 제재를 구하거나 (2) 미국, 그 부서기관이나 대행단체, 혹은 대기오염 감축관리와 관련하여 주나 지방의 법 관할 하에 있는 직원, 관리나 대리인 등을 상대로 주나 지방행정기관, 부서나 대행단체에서 행정집행소송을 제기하는 일.

미국, 부서기관, 대행단체, 관리직원, 대리인 등의 준수 규정은 118조를 참조.

(f) ‘이 법에서 배출기준이나 한도’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적합성, 배출한도, 배출기준이나 성과기준의 일정이나 시간표
- (2) 이 법이나 (118조의 이유로 적용 가능한 요건을 포함) 혹은 해당이행계획에서 따라 자동차연료나 연료첨가제 관련 통제나 금지, 혹은
- (3) I장 파트 C의 허가조건이나 요건(대기질의 유의한 악화) 혹은 I장 파트 D(달성 제외 관련)¹⁾, 119조(1차 비철제련소 명령), 교통통제조치 관련 해당이행계획의 조건이나 요건, 대기질 유지 관리 계획, 차량검사유지프로그램이나 증기회수요건, 211(e)항 및 (f)항(연료 및 연료첨가제), 169A(가시성 보호), VI장의 요건이나 조건(오존 보호), 111조나 112조 요건(요건이 배출기준으로 혹은 달리 표현됨을 고려하지 않음) 혹은
- (4)²⁾ V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혹은 환경청장이 승인한 해당 주 이행계획에 따라 정한 기타 기준, 제한이나 일정, 허가

1) 공법101.549 (104 Stat. 2683), 707(e)항의 개정사항은 쉽표가 두 개 있음.

2) 공법 101.549 (104 Stat. 2683), 707(e)은 새 조항(4)의 끝에 추가하여 304(f)를 수정 하였음. 새 조항은 아마도 본문에 보이는 대로 (3)항 뒤에 추가되었을 것이며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을 것임.

조건 및 작업조건으로 허가취득요건¹⁾, 이는 이 법이나 해당이
행계획에 따라 유효함

(g) 벌금 기금. (1)(a)항에서 수령한 벌금은 미국재무부 특별기금에 예
치하여 면허 및 다른 업무에 활용한다. 기금의 금액은 허가를 받
아 충당되며, 지출될 때까지 환경청장이 대기질 준수에 자금지원
을 하고 집행활동에 사용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기금에 예치된 금액, 그 출처 및 기금의 실제용도 및
예정용도 등에 대해 의회에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1)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벌금을 적용하기 위해 이 항²⁾에 따
라 소송 중에 있는 법원은 (1)조항에 언급된 기금에 예치하는
대신, 민사벌금이 이 법과 일치한 감축수혜프로젝트에 사용되
도록 명하고, 공중보건이나 환경을 개선할 재량권이 있다. 법
원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선택하
는데 있어 환경청장의 견해를 구하여야 한다. 어느 소송에서
그와 같은 납부액은 1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04]

소송의 대리인

305조. (a) 환경청장은 검찰총장에게 환경청장이 당사자로 이 법에 따
라 구성된 민사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하여 출두하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환경청장에게 소송에 출두하겠다고 적정 시간
내 통지하지 않을 경우, 환경청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두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그와 같은 소송에서 환경청장을 대
리하여 출두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이러한 대리권은 사법부와 환

1) 마침표는 아마도 쉼표일 것임.

2) “이 항”은 아마도 “이 조”로 바뀌어야 함.

경청 사이 1977/6/13일자 양해각서에 따라서 행사하고, 민사소송에서 환경청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양해각서에서 허가된 정도로 환경청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참석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42 U.S.C. 7605]

연방정부조달

306조. (a) 어떠한 연방기관도 113(c)항의 위반행위로 기소된 자와 기소를 초래한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설이 그 자가 소유, 임대하거나 감독하는 경우 그 시설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재화, 원료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는 환경청장이 그러한 기소를 초래한 조건이 교정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3(c)(2)항에서 발생하는 기소의 경우, 기소를 초래한 조건은 113(c)(2)항의 위반과 관련되고 이 법의 실질적 위반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기소를 당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기타 시설에 이 금지사항을 확대할 수 있다.

(b) 환경청장은 (a)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통지를 연방기관에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c) 국가의 대기질을 보호,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 및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197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0일 이내, (1) 연방기관이 계약체결을 하도록 권한부여를 요구하고 보조금, 대출이나 계약의 방법으로 연방지원을 확대할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가 계약이나 지원 활동에서 이 법의 목적 및 정책을 유효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2) 대통령이 이러한 요건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절차, 제재, 벌금 및 기타 조항을 제시하는 명령을 발하게 하여야 한다.

- (d)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이익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계약, 보조금이나 대출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의회에 이러한 면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e) 대통령은 이 조의 목적 및 취지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취한 조치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 및 진행상황 등도 포함한다. [42 U.S.C. 7606]

행정소송 및 사법심사 관련 일반 규정

307조. (a) 110(f)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202(b)(4) 혹은 211(c)(3)항의 정보입수¹⁾, 이 법²⁾의 조사, 감시, 보고요건, 진입, 적합성검사 혹은 행정집행소송(113,114,120,129,167, 205, 206, 208, 303, 306조)을 위해, 환경청장은 관련 문서, 도서 및 서류의 생성 및 증인의 참석증언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서약을 하게 할 수 있다. 문서, 도서, 서류나 정보나 그 특정 부분이 공개된 경우 소유자나 운용자의 거래비밀 또는 비밀 프로세스를 누설할 것이라고 소유자나 운용자가 환경청장에게 만족하게 제시하는 때, 배출자료를 제외하고, 환경청장은 미합중국법전 18장 1905조에 따라 이 기록, 보고서나 정보나 그 일부를 비밀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의 다른 소송절차에 관련된 때 이 문서, 도서, 서류나 정보가 이 법 수행과 관련된 미국의 다른 관리, 직원이나 위임대리인에게 202(c)항에 규정된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자에게 논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환된 증인은 미국 법원에 증인에게 납부된 것과 같은 수수료 및 마일리지를 받아야 한다. 이 항목에서 어느 자가 발부된 소환에 불응하거나 항거하는 경우,

1) 공법 101.549 (104 Stat. 2681) 703조 수정사항은 첩표가 두 번 있음.

2) 아마도 “이 법”으로 읽혀야 함.

그 자가 발견되거나 거주 또는 사업을 하는 지역의 미국 지방법원은 미국의 신청이 있고 그리고 그 자에게 통지한 후에 환경청장 앞에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출두할 자에게, 환경청장 앞에 문서,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출석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면 법원 모독으로 법원은 벌을 내릴 수 있다.

- (b) (1) 112조의 배출기준이나 요건, 111조의1 성과기준이나 요건, 국가의 1차나 ,2차 대기질 기준, 202조의 기준(202(b)(1)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기준 제외), 202(b)(5)항의 결정, 211조의 통제나 금지, 231조의 기준, 113, 119나 120조의 규칙, 혹은 여타 환경청장이 이 법에 따라 공표한 국가적용규정, 취한 최종 조치 등을 공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의 조치심사청구는 컬럼비아 지역의 미국 고등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110조나 111(d)항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공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의 조치, 111(j), 112조2, 119조 혹은 120조 혹은 119(c)(2) (A), (B), (C)항(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의 조치 혹은 규정에 따르거나 이 법 114(a)(3)항의 감시준수인증향상프로그램의 규정수정 혹은 기타 이 법에 따라 지역이나 지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청장의 최종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절한 순회재판을 위해 미국고등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앞 문장에 언급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컬럼비아지역 미국 고등법원에서만 제소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소송이 전국적인 범위나 영향의 결정에 기초한 경우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이 그 조치가 어떠한 결정에 기초함을 발견하고 알린 경우이다. 이 항의 심사청구는 공표, 승인이나 소송공지가 연방기록부에 나타나는 공지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가 60일째 이후 발생

하는 근거에만 기초한 경우 이 항의 심사청구는 그러한 근거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 신청하여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최종 규칙이나 조치를 환경청장이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는 사법심사를 위해 규칙이나 조치의 완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 조에서 그 규칙이나 조치의 사법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도 않으며, 그 규칙이나 조치의 효과성을 미루지도 않아야 한다. (1)항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 환경청장의 조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집행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환경청장의 최종 결정이 재량 외 법정조치의 수행을 나중에 집행을 연기한다면, 어느 자라도 (1)항에 따라 유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 청문회 통지 및 기회 후 이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한 심사가 청구된 사법 소송에서, 어느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법정에 휴가를 신청하고 추가 증거가 중요하며 환경청장 앞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합당한 근거가 있음을 법원이 만족하게끔 제시한다면, 법원은 환경청장 앞에 추가 증거(및 그 반박 증거)를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조건 및 방식으로¹⁾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채택한 추가 증거를 이유로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변경하거나 다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추가 증거를 돌려보내고 환경청장의 최초 결정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권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d) (1) 이 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109항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공표나 수정

(B) 110(c)항에 따라 환경청장의 이행계획의 공표나 수정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대환’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임.

- (C) 111조의 성과기준의 공표나 수정 또는, 112(d)항의 배출기준이나 한도, 112(f)항의 기준이나 112(g)(1)(D) 및(F)항의 규정, 또는 112(m) 혹은 (n)항의 규정,
- (D) 129조의 고품폐기물연소 요건의 공표
- (E) 211조의 연료나 연료첨가제 관련 규정의 공표나 수정
- (F) 231조의 항공기배출기준의 공표나 수정
- (G) IV장(산성침적물 관리)의 규정의 공표나 수정¹⁾
- (H) 119조의 1차 비철제련소명령 관련 규정의 공표나 수정
(그와 같은 명령의 허가나 거절은 불 포함),
- (I) VI장 (성층권오존보호)의 규정의 공표나 수정,
- (J) I장²⁾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방지 및 가시성보호)의 규정의 공표나 수정
- (K) 202조의 규정의 공표나 수정 및 206조의 신형 자동차나 엔진의 시험절차, 그리고 202(a)(3)항의 기준의 수정
- (L) 120조의 부적합 벌금 규정의 공표나 수정
- (M) 207조에(실제 사용 중인 차량의 준수 및 보증사항) 따라 공표된 규정의 공표나 수정
- (N) 126조(주 사이 오염감축)에 따른 환경청장의 조치
- (N)³⁾ 183(e)항의 소비자 및 상업제품 관련 규정의 공표나 수정
- (O) 113(d)(3)항의 현장인용 관련 규정의 공표나 수정,
- (P) II장 C 파트의 청정연료차량, 청정연료군단 및 청정연료프로그램이나 도시버스 관련 규정의 공표나 수정
- (Q) 213조의 비 도로용 엔진이나 비 도로용 차량 관련 규정의 공표나 수정

1) (S)항목과 같음.

2) “파트 C”일 것임.

3) 공법101.549, 302(h)항은 새로 (D)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후 항목을 ‘다시 지정을 하였다’. 공법101.549 110(5)(C)항은 (N).(T)항목을 추가하였다. 어느 개정 안도 다른 것을 참조하지 않음.

(R) 217조의 자동차 적합성프로그램수수료 관련 규정의 공표나 수정,

(S) IV장의 (산성침전물)규정의 공표나 수정¹⁾

(T) 해양선박 관련 183(f)항 규정의 공표나 수정

(U) 기타 환경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조치

미합중국법전 5장 553~557조 및 706조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규정을 제외하고 이 항이 적용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항은 미합중국법전 5장 553(b)항의 (A) 혹은 (B)항목에 언급된 규칙이나 상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항이 적용되는 소송예정일자 이내, 환경청장은 그러한 소송(이후 이 항에서 ‘규칙’으로 칭함)에 대한 규칙제정 일람표를 정하여야 한다. 어느 규칙이 특정 주에서만 적용되는 때 두 번째 (동일한) 일람표는 환경청 해당 지역사무소에 수립되어야 한다.

(3) 이 항이 적용되는 규칙의 경우에, 예정규칙제정 통지는 연방기록부에 미합중국법전 5장 553(b)항에 규정된 대로 그 근거 및 목적 보고서를 수반하여야 하고, 공공의견을 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의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정규칙제정 통지는 일람표 번호, 일람표의 장소 및 공개감사에 공개될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거 및 목적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요약한 것이어야 한다.

(A) 예정규칙의 토대가 되는 사실적 자료

(B) 자료를 얻고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한 방법론 및

(C) 예정규칙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적 해석론 및 정책고려사항 설명문은 109(d)항에서 과학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관련 조사결과, 권고사항 및 의견의 참조사항, 그리고 제안이 중요한 점에서 이들

1) (G)항목과 같음.

권고사항과 다를 경우, 차이의 근거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거나 요약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상정안의 기초가 되는 이 조항에 언급된 모든 자료, 정보 및 문서는 규칙상정안 간행일자에 일람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4)(A) (2)항의 규칙제정 일람표는 규칙상정안 공고에 명시한 적절한 시기에 대중의 검사를 받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일람표에 들어있는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사시설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환경청장은 대중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에 이 비용을 포기하거나 줄일 수 있다. 누구라도 개인의 복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우편으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B)(i) 기관이 수령한 때 신속히, 의견 기간 중 일람표에 포함된 사항의 경우 특정인으로부터 얻은 규칙상정안에 대한 문서상의 정보 및 의견은 일람표에 들어가야 한다. 규칙상정안에 대해 공청회 필사본은 공청회 사항을 기록한 자료부터 수령하는 때 신속히 일람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규칙상정안이 발표된 후 환경청장이 규칙제정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모든 문서는 이용할 수 있게 된 후 가능한 곧 일람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ii) 환경청장이 규칙을 상정하기 전 주 사이 심사 과정을 위해 예산관리청에 제출한 규칙상정안, 첨부 문서 및 다른 부서의 상정안에 대한 의견서 및 환경청장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는 규칙 상정일자 이내 일람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표 전 심사과정을 위해 제출한 최종 규칙 초안 및 이에 대한 모든 의견서, 규칙 초안에 수반된 문서,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서는 공표일자 이내 일람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 (5) 이 항의 적용되는 규칙을 공표하는데 있어, (i)환경청장은 특정인에게 의견서, 자료나 문서상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며, (ii) 환경청장은 서류 제출 기회 외에 자료, 견해나 논쟁의 구두 설명회 기회를 관계자에게 제공하며, (iii) 구두 설명회의 사본은 보관을 하며, (iv) 환경청장은 반박 및 추가 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송절차를 끝낸 후 30일 동안 공개된 소송절차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6) (A) 공표된 규칙은 (i) 규칙상정안 관련 (3)조항에 언급된 것처럼 근거 및 취지 설명서, 그리고 (ii) 규칙상정안에서 공표된 규칙이 주요 변화에 대한 이유 설명을 수반하여야 한다.
- (B) 공표된 규칙은 의견 기간 중 서면 혹은 구두로 제출된 중요한 의견, 비평, 및 새로운 자료에 대한 답변을 수반하여야 한다.
- (C) 공표된 규칙은 공표일자 현재 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보나 자료에(일부 은 전부) 기초할 수 없다.
- (7) (A) 사법심사기록은 (3)조항의 자료, (4)(B)조항의 i)목 및 (6)조항의 (A) 및 (B)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 (B) 공공 의견(공청회 포함) 중 규칙이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기한 이의신청만이 사법심사 중에 제기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임을 환경청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이의의 근거가 공공 의견 기간 후 일어났다면(그러나 사법심사를 위한 특정시기 내), 그리고 이의가 규칙의 결과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면, 환경청장은 규칙을 재고하기위한 절차를 소집하고 규칙이 상정된 시점에 정보가 이용될 수 있었다면 부여되었을 같은 절차상의 권리를 부여하여야한다. 환경청장이 이러한 절차 소집을 거부하

는 경우, 그 자는 미국 고등법원에 적절한 순회재판을 위해 거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은 규칙의 효과성을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규칙의 효과성은 이 재심 기간 중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환경청장이나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

- (8) 이 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내린 절차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법정은 규칙의 실질심사 시점에서 적절한 순회재판을 위해 미국 고등법원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중간 항고도 이러한 절차상의 결정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절차상의 오류주장을 심사하는데 있어, 법원은 오류가 너무 중대하고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규칙이 크게 개정되었을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규칙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과 관련될 경우에만 규칙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9) 이 항이 적용되는 환경청장의 조치에 대한 심사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명되는 조치를 반복할 수 있다.
 - (A) 독단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재량남용이나 달리 법규와 일치하지 않음
 - (B) 헌법상의 권리, 권한, 특권이나 면책성에 위배되며
 - (C) 법정관할권, 권한이나 제한이 과다하거나 법정권리가 결여되어 있거나,
 - (D) 다음의 경우 법에서 요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i) 절차의 준수 불이행이 제멋대로이거나 가변적인 경우
 - (ii)(7)(B)조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리고 (iii) (8)조항의 마지막 문장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 (10) 이 항이 적용되는 규칙의 법정공표기한은 상정일자 후 6개월 이내 공표를 요하는데 환경청장이 상정한 날 후 6개월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대중 및 기관에 이 항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때이다.

(11) 이 항의 요건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0일 후 일어나는 규칙의 상정에 대해 효력을 받는다.

(e) 이 조의 어느 것도 이 법에 따라 환경청장의 규정이나 명령의 사법심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이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f) 이 조의 사법절차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의(적정 변호사 수입료 및 전문가입증비용) 재정이 적절하다고 간주한 때 재정을 할 수 있다.

(g) 120조의 규정 공표 또는 120조 행정관리나 집행과 관련된 소송에서, 어떠한 법원도 유예, 명령이나 유사 구체조치를 소송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h) 공공 참여. 행정절차법의 정책과 일치하여¹⁾, 환경청장은 이 법의 규정을 공표하는데 있어 기한을 조건으로 한 규정을 포함하여 최소 30일 공공 참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107(d), 172(a), 181(a)~(b), 및 186(a)~(b)조²⁾에 달리 명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U.S.C. 7607]

강제 면허

308조. 환경청장이 신청한 때 검찰총장이

(1) (A) 이 법 111,112혹은 202조의 요건을 이행하는데, 사용 중이거나 공용이나 상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달리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 미국 문서 특허는 제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자가 준수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며,

1) 아마도 미합중국법전 5장 5절의 II를 언급하려고 했을 것임.

2) 아마도 '조들'일 것임.

- (B)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며,
- (2) 그러한 권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어느 구역의 상업라인에서 독점현상을 초래할 경향이나 경쟁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공청회 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으로 특허권소지자가 권리 사용을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미국 지방법원에게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은 특허소지자의 거주 지역, 사업 장소나 확인된 지역의 관할법원에 할 수 있다. [42 U.S.C. 7608]

정책심사

- 309조. (a) 환경청장은 이 법에서 부여한 책임 및 임무나 기타 환경청장의 권한규정이 (1)연방부서기관에서 상정한 입법안, (2) 신규 연방 건축허가프로젝트 및 공법 91.190의 102(2)(C)항이 적용되는 주요 연방기관조치(건축 프로젝트 제외), 그리고 (3) 연방정부부서기관에서 발표한 규정상정안에 포함되어 이 법에서 부여한 책임 및 임무나 기타 환경청장의 권한규정과 관련된 사안의 환경적 영향을 심사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피력하여야 한다. 의견서는 심사가 종결되는 때 공개하여야 한다.
- (b) 환경청장이 그와 같은 입법안, 조치나 규정이 공중보건이나 복지 혹은 환경의 질 관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결정 사항을 알리고 그 사안은 환경질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42 U.S.C. 7609]

기타 영향을 받지 않는 권한

- 310조. (a) 이 조 (b)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은 여타 법에 따라 환경청장이나 여타 연방관리부서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b) 어떠한 총당금도 1964/6/30에 끝나는 회계연도 후의 회계연도에 이 법의 권한에 따라 총당금을 마련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공중 보건업무법 301, 311, 314조에 따라 허가하거나 조성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10]

기록 및 감사

- 311조. (a) 이 법의 지원금 수혜자는 환경청장이 규정하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혜자가 지원 이익금의 양 및 특성, 지원금이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프로젝트나 과업과 관련된 총 비용, 그리고 다른 공급원이 제공한 프로젝트나 과업비용의 일부 금액 및 효과적인 감사를 원활하게 할 기록 등을 전부 공개하는 기록도 포함한다.
- (b) 환경청장 및 미국감사원장이나 정히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혜자의 도서, 문서, 서류 및 기록 등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 [42 U.S.C. 7611]

경제영향분석

- 312조. (a) 환경청장은 무역부 장관, 노동부 장관과 대기청정적합성분석위원회와(이 조 (f)항에서 수립된 대로) 협의하여 이 법이 미국의 공중 보건,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에 대해 발한 기준과의 적합성과 관련된 비용, 이득 및 기타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대기오염물질이 109조의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 (2) 112조의 대기오염유해물질, 오염물질에 대한 기술기반기준 및 위험기반기준을 포함

- (3) 이 법 II장에서 규정된 이동 공급원의 배출 물질
 - (4)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해 이 법의 제한
 - (5) 오존 고갈물질의 생산에 대한 이 법 VI장의 제한
 - (6) 기타 이 법의 조
- (b) (a)항의 기준의 이익을 기술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기준을 따르기 위한 활동의 경제, 공중보건 및 환경적 이득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수적 가치가 이득에 할당된 어떠한 경우든, 체로 값의 초기화 가정은 특정 데이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그러한 이득에 배정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청장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더욱 정확히 측정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이득을 측정하는 방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 (c) (a)항의 기준 비용을 기술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미국의 고용, 생산성, 생활비용, 경제성장 및 전반적인 경제에 기준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d)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무역부 장관, 노동부 장관과 청정대기적합성 분석위원회와 협의하여 (a)항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 사항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준을 준수하는 활동에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이전에 발생된 비용,
 - (2) 비용 결과로 미국에 파생된 모든 이익
- (e)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그 후 24개월마다, 환경청장은 무역부 장관, 노동부 장관 및 청정대기적합성 분석위원회와 협의하여 (d)항에 따라 발표한 보고서를 갱신하고, 예상 비용, 이득 및 (a)항에 열거한 대로 이 법에 따라 기준을 준

수한 영향 등에 대해 향후 전망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f)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노동부장관, 무역부장관과 협의하여 9명이상이 위원으로 구성된 청정대기적합성 분석 자문위원회(이후 ‘위원회로 칭함)를 지명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경제 분석, 환경과학 및 기타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건 및 환경영향의 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g) 위원회는

- (1) 이 조에서 요구된 분석에 유용할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 이용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권고를 하여야 하며,
- (2) 자료 분석을 위해 활용방법론을 검토하고 방법론 활용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권고를 하며,
- (3) (d) 혹은 (e)항에서 요구된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조사결과의 타당성 및 유용성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권고를 하여야 한다. [42 U.S.C. 7612]
[313조는 P.L. 101.549, 803조로 폐지됨, 104 Stat. 2689.]

노동 기준

314조. 환경청장은 이 법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의 인부 및 기술자는 Davis-Bacon 법으로 (46 Stat. 1494; 40 U.S.C. 276a.276a.5).알려진 1931/3/3일자 개정안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대로 지방에서 유사 공사에서 같은 종류의 작업에 통용되는 임금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 항에 명시된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이 법 1934/6/13일자 개정안(48

Stat. 948; 40 U.S.C. 276c) 2조 및 1950년 재조직계획 (15 F.R. 3176; 64 Stat. 1267) NO.14에 제시된 권한 및 역할이 있다. [42 U.S.C. 7614]

분리 가능성

315조. 이 법의 어느 조항이나 이 법의 어느 조항을 어느 자나 상황에 적용한 경우가 무효하게 유지된다면, 그 조항을 타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및 이 법의 나머지는 그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15]

하수 처리 보조금

316조. (a) 환경청장이 어느 주 특정 지역에서 하수처리설비공사 신청인에게 부여하도록 한 어떠한 보조금도 (b)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의 요건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보류하거나, 조건을 부과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b) 환경청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경우에만 (a)항의 공사보조금 조성을 보류, 조건부과나 제한을 할 수 있다.

- (1) 처리 업무가 111조나 112조의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음.
- (2) 추가 효력이 없거나 직, 간접적으로 공사로 생길 하수처리능력으로 비롯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증가 (I장 파트 C나 파트D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오염물질의 고정공급원 및 이동공급원에서)를 명시적으로 수량화하고 규정하고 환경청장이 승인한 주의 이행계획을 수행하지 않음.
- (3) 처리설비의 공사가 다음과 같은 하수처리능력을 새로 갖게 될 것임.

(A) 그와 같은 지역에 대해 (2)조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증가량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직, 간접적으로 일으키거나 기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음.

(B) 달리 해당이행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것임.

(4) 배출량 증가가 다른 주의 해당이행계획과 저축되거나 불일치함. I 장 파트 D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고정공급원 및 이동공급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직, 간접적으로 초래할 처리설비 공사의 경우에, (2)조항에 언급된 배출량 수량화작업은 지역전체에서 직,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그 지역의 주요 고정공급원이 아닌 공급원의 증가(유동식 및 고정식)를 포함하여야 한다.

(c) 이 조의 어느 것도 국가환경정책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수처리설비 공사의 경우에 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여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16]

약식 표제

317조. 이 법은 “청정대기법”으로 칭할 수 있다.

[42 U.S.C. 7401 nt]

경제영향평가

317조.¹⁾ (a) 이 조는 환경청장이 다음 사항을 공표하거나 개정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1) 111조의 신규 공급원 성과기준

(2) 111(d)의 규정

(3) I 장 파트 B의 규정(오존성충권보호 관련)

1) 317조는 318 숫자일 것임.

(4) I 장 파트 C의 규정(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방지 관련)

(5) 202조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규정 및 그 조에 따라 공표된 규정

(6) 211(c)의 연료 또는 연료첨가제를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7) 231조의 항공기배출기준

이 조의 어느 것도 이 항의 (1)~(7)조항에 기술된 기준이나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이나 규정과 관련하여 규칙제정상정안 공고가 이 조 입법일자 후 90일 일자 후 연방기록부에 발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기준이나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이 조는 환경청장이 실질적인 개정안이라고 결정하는 개정안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b) 이 조가 적용되는 기준이나 규정과 관련하여 규칙제정 상정안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이 기준이나 규정과 관련하여 경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평가서는 307(d)(2)항에서 요구된 일람표에 수록하고 307(d)(4)항에 규정된 대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제정상정안 공고는 환경청장이 그러한 조치를 상정하는데 있어 경제영향평가서에 포함된 분석을 고려하였던 정도 및 방식의 설명과 함께 이용 가능성의 공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또한 (a)항의 규정이나 기준의 공표를 자신이 공지한 사항에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307(d)(3) 및 307(d)(6)항에서 요구된 근거 및 취지를 나타낸 설명문의 부분이어야 한다.

(c) (d)항을 조건으로, 기준이나 규정에 대해서 이 조에 요구된 평가서는 다음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그와 같은 기준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비용, 준수비용이 (A) 기준이나 규정의 유효일자에 따라 다양한 정도 및 (B) 기준이나 규정을 준수하는데 비용은 적지만 더욱 효율적인 수단이나 방

법의 개발

- (2) 기준이나 규정의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가능성 효과
- (3) 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기준이나 규정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4) 기준이나 규정이 소비자 비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5) 기준이나 규정이 에너지사용에 미치는 영향

이 조의 어느 것도 (a)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이 항에 명시된 요인분석이 환경청장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들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게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d) 이 조에서 요구된 평가서는 환경청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시간과 기타 환경청장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임무 및 권한을 고려하여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가능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e) 이 조의 어느 것도 다음과 같이

- (1) 이 법에 따라 기준이나 규정이 공표된 근거를 바꾸거나,
- (2) 공중보건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에 환경청장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미리 배제하지 않거나,
- (3) 그와 같은 기준이나 규정의 사법심사나 이 조를 준수하지 못한 근거로 기준이나 규정의 상정, 공표 혹은 효과성의 유예 또는 명령을 허가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에서 환경청장에 부과된 요건은 시민소송과 관련하여 304(a)(2)항의 목적을 위해 재량권 외 임무로 다루어야 한다. 이 조에서 환경청장의 임무 집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환경청장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304(a)(2)항의 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명령의 위반은 법원을 모독한 이유로 환경청장에 벌금을 부과한다.

- (g) 이 법 조항에서 비용을 고려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 이 조에서 요구된 평가서의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조항의 사법심사 목적으로 비용을 고려하라는 그 조항의 요건의 준수나 준수불이행에 대해 결론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17]

[318조는 P.L. 101.549, 108(q)항으로 폐지됨. 104 Stat. 2469.]

대기질 감시

319조.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그리고 공청회 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은 미국 전역에 걸쳐 다음의 대기질 감시체제를 정하는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 (1) 대기질 감시 통일기준 및 방법론 및 조치를 활용하고 통일 대기질 지수에 따라 대기질을 측정하며,
- (2)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 지역 및 기타 해당 지역에 대기질 감시본부가 해당이행계획에서 요구된 미국이 수행하는 대기질 감시를 보완할(그러나 중복하지는 않고) 감시활동을 규정하고,
- (3) 이러한 통일 대기질 지수에 기초하여 대기질의 일일분석 및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 (4) 감시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록유지 및 이 데이터에 기초한 대기질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한 정기분석 및 보고사항을 규정한다.

대기질 감시체제의 운용은 환경청장이나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기타 연방정부부서기관이나 단체(국립기후국을 포함)가 수행할 수 있다. 110조의 해당이행계획에서 요구된 대기질 감시체제는 이 조의 규정을 공포한 후 가능한 곧 이 규정에서 정

한 표준기준 및 방법론을 활용하고 표준 지수에 따라 대기의 질을 측정한다.

[42 U.S.C. 7619]

대기질 모델링 표준화

320조. (a)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그 후 최소한 3년 마다, 환경청장은 대기질 모델링에 대한 학회를 주최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는데 있어 I장 파트 C를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방지)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모델링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이 조에서 실시한 학회는 국립아카데미, 주 및 지방 대기오염관리기관의 대표자 및 해당연방기관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립과학재단, 국립해양대기청 및 국립표준국 등을 포함한다.

(c)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학회절차의 축어적 필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d) (c)항에 따라 유지한 필사본 및 제출한 의견서는 I장 파트 C의 대기질 모델링과 관련하여 규정을 공표하거나 개정할 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일람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42 U.S.C. 7620]

고용효과

321조. (a) 환경청장은 이 법 조항 및 해당이행계획의 행정관리나 집행, 적절한 경우 행정관리나 집행으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발전소폐쇄위협이나 고용감축을 조사하는 등 고용의 변화나 손실가능성의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b) 고용인 혹은 고용인의 대리인으로 면직되거나 해고되거나 면직 또는 해고위협을 받거나, 자신의 직업이 주 또는 그 행정당국에서 부과된 요건 및 연방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부과되거나 부과될 예정인 요건의 결과주장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입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위협을 받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이 사안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요청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며, 고용인 또는 고용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요청을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에 대해 사안을 조사하며, 어느 당사자의 요청으로 5일 이상의 통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에서, 환경청장은 관련 고용주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요건이 고용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나 영향가능성과 그 상세한 이유나 근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공청회를 실시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결정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러한 공청회를 소집하면, 공청회는 공개로 하여야 한다. 조사 보고서를 수령하는 때, 환경청장은 요건이 고용 및 실제 면직이나 면직가능성 주장, 해고 또는 기타 고용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 등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이 조 (b)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119조에서(비철원광 제련소 명령) 허가된 조사 또는 공청회와 관련하여, 환경청장은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관련 문서, 도서 및 서류 제출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서약을 하게 할 수 있다. 배출 자료를 제외하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문서, 도서, 서류 또는 정보나 그 일부가 공개될 경우

소유자나 운영자의 거래비밀이나 비밀프로세스를 누설할 것이라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제시하는 때, 환경청장은 이러한 기록, 보고 또는 정보나 그 일부를 미합중국법전 18장 1905조의 목적에 따라 비밀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도서, 문서나 정보가 이 법 수행과 관련되거나 이 법의 소송절차에 관련될 때 미국의 관리, 직원이나 위임대리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환된 증인은 미국 법원에서 증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및 마일리지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 항목에 따라 어느 자에 발부된 소환에 불응하거나 항거하는 경우, 그 자가 발견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지역의 미국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신청하는 때, 그리고 그 자에게 통지 후 그 자에게 출석하여 환경청장 앞에 증거를 제시하고, 출석하여 도서, 문서 및 서류를 환경청장 앞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둘 다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법원의 모독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d) 이 조의 어느 것도 환경청장, 주 또는 그 행정당국이 이 법에 따라 부과되거나 부과될 예정인 요건을 변경 또는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21]

고용인 보호

322조. (a) 어떠한 고용주도 고용인(혹은 고용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하는 자)이 다음을 이유로 고용인을 파면하거나 고용의 보상, 조건, 기간이나 특권에 대해서 달리 차별을 할 수 없다.

- (1) 이 법에 따라 혹은 해당이행계획에 따라 부과된 요건의 행정관리나 집행에 대한 소송절차나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착수했거나, 착수하도록 했거나 착수할 예정이거나 착수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 (2) 그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증언을 했거나 증언을 할 예정이거나
- (3)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소송절차에 혹은 기타 소송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력을 했거나 참여했거나 조력할 예정이거나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b) (1)(a)항을 위반하여 어느 자에 의해 파면되었거나 달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고용인은 위반이 일어난 후 30일 이내, 노동부장관에게(이 후 이 항에서 ‘장관’으로 칭함) 그러한 파면이나 차별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혹은 그를 대신하여 특정인이 접수하게 하게)할 수 있다. 이러한 고소장이 접수된 때, 장관은 고소장에 거명된 자에게 고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A)(1)항에 접수된 고소장을 수령한 때, 장관은 고소장에서 위반주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고소장을 수령하고 30일 이내, 장관은 조사를 완료하고 서면으로 고소인(및 그를 대리하는 자) 및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이 항목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소장을 수령하고 90일 이내, 장관은 고소에 대한 소송절차가 장관 및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은 자가 중재에 들어간 것을 기초로 장관이 종결하지 않는 한 (B)항목에서 규정된 구체조치를 부여하거나 고소를 거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장관의 명령은 공청회 공지와 기회 후 공개로 하여야 한다. 장관은 고소인의 참여 및 동의 없이는 고소에 대한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중재에 들어갈 수 없다.

(B) (1)조항에서 접수된 고소에 대응하여 장관이 (a)항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결정할 경우, 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i) 위반을 무마할 확정조치를 하도록, 그리고 (ii) 고용의 보상(소급 지급 포함), 기간, 조건 및 특권과 함께 고소

인에게 이전 위치로 복귀시키도록 명하고, 장관은 고소인에게 위로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이 발한 경우, 장관은 고소인의 요청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명령이 발한 고소제기와 관련하여, 고소제기의 고소인이 적정하게 부담하게끔 장관이 결정한 대로 모든 비용(변호사비 및 전문가입증수수료)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c) (1) (b)항에서 발한 명령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침해를 당한 자는 명령이 발한 것과 관련하여 위반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순회재판을 위해 미국 항소법원에서 명령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심사청구는 장관의 명령이 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한다. 심사는 미합중국법전 5장 7절에 따라야 한다. 이 항목의 소송절차의 착수는 법원의 명령이 없다면 장관 명령의 정지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2) (1)조항에서 심사를 구할 수 있었을 장관의 명령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d) 어떠한 자가 (b)(2)항에서 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 장관은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위반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지역의 미국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명령구제, 위로보상금 등 모든 적절한 구제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e) (1) (b)항의 (2)조항에서 명령이 발한 자 대신에 누구라도 명령이 발한 자를 상대로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착수할 수 있다. 해당 미국 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시민권이나 계쟁 중인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2) 법원은 이 항의 최종 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원이 재정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때 어느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적정 변호사 수입료 및 전문가입증수수료) 재정할 수 있다.

(f) 이 조에서 부과된 재량권 외 임무는 미합중국법전 28장 1361조에 따라 제기된 직무집행영장 소송절차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g) (a)항은 고용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행동하고 고의로 이 법의 요건의 위반행위를 한 고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2 U.S.C. 7622]

소매점의 소유자가 부담할 특정증기회수를 위한 배출관리비용

323조. (a) 이동공급원 연료 소매점에서 이 연료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증기회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증기회수설비의 구매설치비용을 소매점주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정에서 결정된 대로). (b)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소매점주의 임대계약은 증기회수장비의 구매설치비용을 임차인이 지급하게끔 규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증기회수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은 어떠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비용에서 가격상승의 수단으로 소매점주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b) (a)항에 언급된 환경청장의 규정은 적정한 기간에 걸쳐 소매점의 임대계약이 증기회수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을 임차인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러한 소매점주가 소매점에서 도매로 혹은 소매로 어느 제품이든 판매, 거래 혹은 달리 분배하지 않는 경우이다. [42 U.S.C. 7624]

석유화학제품 영세상인의 증기회수

324조. (a) 이 법에서 휘발유소매점에서 자동차급유로 인한 증기회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월 판매량이 50만 갤런 이하인 영세 자영업 휘발유 상인이 소유한 소매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영세 자영업상인이 소유하는 소매점의 경우, 이 규정은 휘발유 영세 자영업상인에 대해서 상인이 소매점에서 구비하여야 하는 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3년의 단계별 진입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이 영세 상인에게 적용되는 첫 연말에 소매점의 33%가 준수함
- (2) 두 번째 연말에는 66 %
- (3) 세 번째 연말에는 100%

(b) (a)항의 어느 것도 어느 주가 월 판매량 5만 갤런 이하인 영세 자영업상인에 대해서 소매점에서 이동 공급원 연료의 증기회수요건을 채택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주에서 채택하고 환경청장에게 주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제출한 증기회수요건은 그 주에 대해 해당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청장이 승인, 집행할 수 있다.

(c) 이 조의 목적을 위해, 휘발유 영세자영업 상인은 이 법의 324¹⁾조에서 혹은 환경청장의 규정에 따라 증기회수설비의 구매설치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휘발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A) 정제업자 혹은
(B) 정제업자를 감독하거나, 감독을 받거나 함께 통상의 관리

1) 아마도 323조 일 것임.

를 받는 자

(C) 정제업자와 혹은 정제업자를 감독하거나, 감독을 받거나 함께 통상의 관리를 받는 자와 직, 간접적으로 제휴한 자 (여기 언급된 독점 제휴관계가 공급계약이나 상표권, 상표명,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정제업자나 그와 같은 자 소유의 식별 기호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 혹은

(2) 휘발유 정제 또는 판매로 연간수입의 50% 이하를 받는 자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정제업자’란 용어는 정제업자 총 정제 용량(정제업자를 감독하거나, 감독을 받거나 함께 통상의 관리 하에 있는 자의 정제 능력을 포함)이 일일 65,000배럴을 넘지 않는 정제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 기업의 ‘감독’이란 용어는 주식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42 U.S.C. 7625]

특정 영역의 면제

325조. (a)(1) 괄, 아메리칸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¹⁾, 북 마리아나아일랜드 공화국의 지사²⁾의 청구가 있는 때, 환경청장은 이 법에서 112조 이외의 요건이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110조이나 파트 D의 요건에서 그 영역에 있는 자나 공급원부문을 면제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면제는 환경청장이 이 요건을 준수하는데 개연성이 없거나 독특한 영역의 지리적, 기상, 혹은 경제요인이나 기타 환경청장이 중요하다고 간주한 지방의 요인 등으로 인해 적정하지 못하다고 발견하면 부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청구는 307(d)에 따라서 고려하여야 하며, 이

1) 공법101.549(104 Stat. 2689) 806조는 “아메리칸 사모아,” 뒤에 ‘버진 아일랜드’를 넣어 324(a)(1)를 수정하였음. 아마도 수정은 325(a)(1)항에 했었어야 함.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지사”일 것임

항의 면제는 307(b)항의 목적을 위해 환경청장이 취한 최종조치로 간주하여야 한다.

(2) 환경청장은 하원에너지통상천연자원위원회 및 상원환경공공사업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게 이 항의 청구를 수령한 때 그리고 청구의 승인이나 기각 및 그러한 조치의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b) 이 법의 여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입법일자 현재 광 지역 내 운용되는 화석연료연소증기발전소는 이 법에 의해 다음 사항이 면제된다.

(1) 입법일자 현재 111조에서 공표된 이산화황 관련 신규 공급원 성과기준의 요건,

(2) 입법일자 현재 110조에서 승인된 주 이행계획에 포함된 이산화황 기준이나 한도 관련 규정; 면제가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만료됨을 조건으로 하며, 다만 환경청장이 이 발전소가 이산화황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의 초과건수를 방지하는데 배출감축을 실행가능하게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U.S.C. 7625.1]

특정 조항의 구성

326조. 이 법의 어느 조항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의 조항을 괄호로 언급 한 것은 ‘관련된’ 혹은 ‘관련하여’란 단어가 사용된 경우 편리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효과는 주지 않는다.

[42 U.S.C. 7625a]

충당금의 권한

327조. (a) 개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시작하는 7

회계연도 중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은 이 법을 수행하는데 충당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 (b) 계획 보조금. 허가된 총당금액은 (1)회계연도 1991년에 시작하며 175조를 수행하는데, 지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I장 파트 D의 2,3,4에서 요구된 계획수정안을 개발하는데 5천만 달러 이하, 그리고 (2) I장 파트 D의 2,3,4에서 요구된 이행계획을 준비하는데 주에게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시작하는 7회계연도 중 1500만 달러 이하이다.

[42 U.S.C. 7626]

해외 대륙붕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328조. (a)(1) 특정 지역의 해당 요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내무 장관 미국해안경비사령관과 협의 후 환경청장은 연방과 주 정부 대기질 기준을 달성, 유지하고 I장 파트 C의 조항을 따르기 위해 태평양, 북극해안 및 남극 해안을 따라, 북위 87도30분 동쪽 플로리다 주 연해 미국 걸프 만을 따라 여러 주 연해 소재한 해외대륙붕(OCS)공급원에 기인한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요건을 규칙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이들 주의 해안 쪽 경계에서 25마일 내 위치한 공급원의 경우, 이 요건은 공급원이 해당 해안가 지역에 위치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배출제어수단, 배출한도, 상쇄, 허가, 감시, 시험 및 보고에 대한 주정부요건 및 지방 요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 OCS 공급원은 공표일자에 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의 OCS 공급원은 그 후 24개월 일자에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연안 규정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항의 권한은 외륙대륙붕육지법의 5(a)(8)항을 대신하지만 대기

질 관련하여 여타 연방, 주 혹은 지방의 권한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113, 114, 116, 120, 및 304조의 경우 이 조에서 정한 요건은 111조의 기준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와 같은 요건의 위반은 111(e)항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면제. 환경청장은 오염관리기술요건을 준수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보건안전에 예상치 못한 위협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특정 요건에서 OCS 공급원을 면제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이 항에 따라 발한 면제의 근거를 설명하는 조사서를 작성하고, 엄격성에서 가능한 한 최초 요건과 근접하거나 같게 다른 요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면제 부여로 인해 배출량 증가가 이 법에서 달리 요구된 것이 아니고 해당 연안 지역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저런 공급원의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여 상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항에 따라 예정된 면제사항에 대해 공지 및 공공의견을 규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주정부 절차. OCS에 인접한 주는 이 항의 요건을 이행,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주의 규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환경청장은 그 요건을 이행, 집행하기 위해 이 법의 자신의 권한을 주에 위임하여야 한다. 이 항의 어느 것도 이 조의 요건을 환경청장이 집행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4) 용어 정의, (a) 및 (b)항의 목적을 위해.

(A) 외륙대륙붕. 이 용어는 외륙대륙붕토지법의(43 U.S.C. 1331) 2조에서 규정한 의미를 지닌다.

(B) 해당 연안 지역. 이 용어는 OCS 공급원과 관련하여 공급원에 가장 가까운 연안 달성지역이나 달성제외지역을 말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대기오염관리감축과 관련하여 요

건이 더 엄격한 지역이 이러한 배출물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결정은 OCS 공급원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른 연안 지역에 도달할 가능성 및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이 연방정부 혹은 주의 대기질 기준을 달성 또는 유지하거나 I장 파트 C의 조항을 준수하려는 기타 연안지역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C) 외륙대륙붕(OCS) 공급원. 이 용어는 다음의 장비, 활동이나 시설을 포함한다.

(i)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음

(ii) 외륙대륙붕토지법에서 따라 규제 또는 허가를 받음,

(iii) 외륙대륙붕이나 이 대륙붕 위의 수역에 있음

그러한 활동은 플랫폼 및 시추선박 발굴 작업, 건설공사, 개발, 생산, 가공 및 교통 등을 포함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OCS 공급원과 관련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배출 물질은 OCS 공급원에서 혹은 이 공급원에서 25 마일 내 OCS 공급원으로부터 혹은 도중에 있는 동안 배출 물을 포함하여 OCS 공급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물질로 간주하여야 한다.

(D) 신규, 기존 OCS 공급원. 신규 OCS는 111(a), 기존 OCS 공급원은 신규 공급원이 아닌 OCS 공급원을 말한다.

(b) 기타 연안 지역 요건. (a)항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및 알라바마 주와 인접한 미합중국걸프만 외륙대륙붕의 일부에 대해, 장관은 환경청장과 의논을 하여 인접연안지역의 배출 물질과 대륙붕 배출물질에 대한 대기오염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산화질소에 대한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대륙붕 활동으로 인한 배출 물질의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 연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장관은 환경청장과 의논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요구된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공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 충당될 권한이 부여된다.

- (c) (1) 해안수역. 청정대기법의 112(n)¹⁾의 연구보고는 미국의 해안수역에 오대호, 체사피크만과 그 지류 수역에 요건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 (2) 청정대기법의 112(n)¹⁾항의 규제요건은 이 조 (a)항을 따르는 주의 해안수역에 오대호, 체사피크만과 그 지류 수역에 요건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C. 7627]

1) 공법101.549 801조는 이 조를 추가했음. 112(n)항은 아마 112(m)항일 것임.

IV 장. 소음 공해

401조. 이 표제는 ‘1970년도 소음공해완화법’으로 칭할 수 있다.

402조. (a) 환경청장은 환경청 안에 소음완화관리국을 설치하며, 이 관리국을 통해서 소음 및 소음의 공중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면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1) 소음의 원인 및 공급원을 조사, 분류하고 (2)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A) 다양한 높이에서 영향
- (B) 2000년도 중 도시 지역에서 소음 수준의 증가 예측
- (C) 사람에게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영향
- (D) 일상 소음과 비교할 때 간헐적 극한 소음(공항 근처 제트기소음)의 영향
- (E) 야생 및 부지에 대한 영향(가액 포함)
- (F) 초음속이 부지에 미치는 영향(가액 포함)
- (G) 기타 공중보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안

(b) (c) 이러한 조사를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 실험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조사연구의 결과를 입법이나 기타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과 함께 대통령 및 의회에 이 장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c) 연방부서기관이 대중에게 골칫거리에 이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유쾌하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지하는 경우에, 부서기관은 환경청장과 상의를 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SEC. 403. 이 장 목적에 필요할 수 있는 대로 3천만 달러를 넘지 않은 금액이 충당될 권한이 부여된다.

IV 장. 산성 침적물관리¹⁾

- 401조. 조사 및 목적.²⁾
- 402조. 용어 정의
- 403조. 기존 설비 및 신규설비 관련 이산화황 허용 프로그램
- 404조. I 단계 이산화황 요건
- 405조. II 단계 이산화황 요건
- 406조. 주 정부 배출량이 0.80 lbs/mmBtu 이하인 경우 허용량
- 407조.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 프로그램
- 408조. 허가 및 준수 계획
- 409조. 재보강 공급원
- 410조. 추가 공급원 선정
- 411조. 과다 배출량 벌금
- 412조. 감시,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 413조. 다른 규정과의 일반 적합성
- 414조. 집행
- 415조. 청정 석탄 기술 행정인센티브
- 416조. 비상시 보증, 경매, 보유

조사 및 목적

- 401조. (a) 조사. 의회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1) 대기 중에 그리고 대기에서 나온 침적물 속에 산성 화합물 및 그 전구체의 존재가 천연자원, 생태계, 물질, 가시성 및 공중

1) 공법 101.549, 401조 (104 Stat. 2584)은 기존 IV장을 폐지하지 않고 두 번째 IV장을 추가하였음. 또 표제의 글자체 및 크기가 잘못됨.

2) 이 조 관련 표는 표제와 일치하지 않음. 공법101.549, 401조(104 Stat. 2584) 참조.

보건에 위협요소를 나타내는지

- (2) 대기 중 산성 화합물 및 그 전구체의 주요 원천이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 물질인지
- (3) 산성침적물의 문제가 국내외에서 중대한지
- (4) 산성침적물 관리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전략 및 기술이 현재 존재하는지, 그리고 향상된 방법이 향후 십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 (5) 현재, 향후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시정하는 조치를 지연하여 나쁜 영향을 입을 것인가.
- (6)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의 총 대기축적량을 감소시키면 공중 보건복지 및 환경보호가 증대될 것인가
- (7) 증기발전설비의 전구체 배출물질을 줄이기 위한 관리조치가 지체되지 않고 시작되는지

(b) 목적. 이 장의 목적은 이 법 1980년 배출 수준에서 약 2천만 톤 질소산화물 배출 물질의 다른 규정과 결합하여, 인접 48 주 및 컬럼비아 지역에서 연간 이산화황 1천만 톤 배출량을 1980년도 배출 수준에서 감축을 통해 산성침적물의 나쁜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명시 기한까지 영향권 내 공급원이 규정된 배출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감축을 실시하는 것이 이 장의 취지인데, 이 한도는 배출할당 및 양도시스템으로 규정된 대체 준수 방법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생산 및 활용의 불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보존, 재생 청정대체기술의 활용 및 장기 전략으로 오염방지를 장려하는 것이 이 장의 취지이다.

[42 U.S.C. 7651]

용어 정의

- 402조. (1) ‘영향권 내 공급원’이란 용어는 하나 이상의 영향을 받는 설비를 포함하는 공급원을 말한다.
- (2) ‘영향권 내 설비’란 용어는 이 장에서 배출감축요건이나 한도를 적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3) ‘허용’이란 용어는 이 장에서 환경청장이 영향권 내 설비에 할당되어 특정 연도 중이나 후에 이산화황 1톤을 배출하도록 허가한 것을 말한다.
- (4) ‘기준선’이란 용어는 영향권 내 설비가 소비한 연간 화석연료의 양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영국 열단위(mmBtu)로 표시한다.
- (A) 1985/1/1일 전 상업 가동한 설비의 경우, 기준선은 포름(Form) 767에 따라 에너지부에서 기록한 대로 1985,1986,1987 년도 중 연료로 소비된 연간 mmBtu 평균량이어야 한다. 1 포름이 정해지지 않은 유틸리티 설비의 경우, 기준선은 1985년도 국립산성침적물평가프로그램(NAPAP) 배출목록, Ver.2, 국립유틸리티참고파일(NURF)이나 환경청장이 (3)항에 따라¹ 정한 수정데이터베이스에 이 설비에 대해 명시한 수준이다. 비 유틸리티 설비의 경우, 기준선은 NAPAP 배출목록이다. 환경청장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연속 4개월 이상 설비 가동을 중단한 기간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정전 지연을 불러온 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

- (B) NAPAP Ver2. 배출목록이나 (3)조항에 따라¹⁾ 환경청장이 정한 대로 교정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비유틸리티 설비의 경우, 기준선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공표될 규정에서 환경청장이 정하여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대로 연간평균량(설비 별 연료 소비량(mmBtu))이다.
- (C) 환경청장은 신청이 있는 때 혹은 자신의 동의로 1991/12/31일까지 이 장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영향권 내²⁾ 단계 설비의 기준량이나 1985년도 실제 배출 비율을 산출하였던 데이터에 사실상의 오류를 교정하여야 한다. 교정된 데이터는 2장에서 허용량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교정은 사법심사를 받지 않으며 환경청장이 보고서에 사실상의 오류주장을 교정하지 못해도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 (5) ‘용량 계수’란 용어는 설비의 실제전력생산량과 설비의 가능한 전력생산량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 (6) ‘준수계획’이란 용어는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 (A) 공급원이 이 장에서 해당요건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나타낸 문서, 혹은
- (B) 해당되는 경우, 공급원이 이 장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소유자나 운영자가 준수하고 인증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일정
- (7) ‘연속배출감시시스템(CEMS)’란 용어는 412조에 요구된 장비를 말하며, 샘플채취, 분석, 측정에 사용되며 연속적으로 영구배출량 및 유량기록(lbs/mmBtu, lbs/hr 혹은 기타 412조의 규정에

1) 아마도 “(C)”항목일 것임.

2) 아마도 ‘이’일 것임.

의해 환경청장이 규정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됨)을 제공한다.

- (8) ‘기존 설비’란 용어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상업가동을 시작한 설비(111조의 설비 포함)를 말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그 입법일자 후 변경, 다시 건조하거나 가동된 설비는 여전히 기존 설비이다. 기존 설비는 단순한 연소터빈이나 25MWe 이하의 용량이 표시된 발전기용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9) ‘발전기’란 용어는 에너지부 포름860에 따라 발전설비로 보고 되고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 (10) ‘신규 설비’란 용어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 혹은 후 상용가동을 시작한 설비를 말한다.
- (11) ‘허가 당국’이란 용어는 환경청장, 또는 주 또는 지방대기오염관리기관을 말하며 이 법 III장 파트 B에서 승인된 허가프로그램이 있다.¹⁾
- (12) ‘재동력’이란 용어는 다음의 청정연료기술로 기존 석탄연소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 혹은 가압 유체화 침상연소, 통합기화합체 주기, 자석유체역학, 직, 간접적 석탄연소터빈, 통합기화연료전지 혹은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에너지장관과 협의하여, 이 들 기술의 하나 이상의 파생기술 및 고성능 보일러나 발전 효율로, 그리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널리 사용 중인 기술성과 관련된 폐기물 감축능력을 크게 하여 여러 연소배출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기타 기술 등이 있다. 409(a)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동력’이란 용어는 1991/1/1일 현재 에너지부에서 청정석탄기술증명자금지원을 받은 오일 및/혹은 가스 연소설비를 포함한다.

1) 아마도 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 V장을 말한 것임.

- (13) ‘보유량’이란 용어는 이 장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예치 허용량을 말한다.
- (14) ‘주’란 용어는 인접 48주 및 컬럼비아지역의 하나를 말한다.
- (15) ‘설비’란 용어는 화석연료연소 설비를 말한다.
- (16) ‘실제 1985년도 배출비율’이란 용어는 전력유틸리티설비의 경우 NAPAP 배출목록, Ver.s, 국립유틸리티참고파일에 보고된 대로 lbs.mmBtu로 표시된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비율을 말한다. 비 유틸리티 설비의 경우, ‘실제 1985 배출비율’이란 용어는 NAPAP 배출목록, Ver.2에 보고된 대로 lbs.mmBtu로 표시된 연간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배출비율을 말한다.
- (17) (A) ‘유틸리티설비’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i) 어느 주에서 판매용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용 설비, 혹은
 - (ii) 1985년에 어느 주에서 판매용 전력을 생산한 발전기용 설비
- (B) (A)항목에도 불구하고, (A)항목의 설비는
- (i) 1985년에 상용가동 중에 있지만,
 - (ii) 1985년에 판매용 전력을 생산한 어느 주에서 이 장의 유틸리티 설비가 아닌 발전기로 사용된 적이 없는 설비.
- (C) 증기전력용 폐열설비는 ‘유틸리티 설비’가 아니다. 다만, 공급 목적으로 건조되거나 이 장 입법일자 후 공사를 착수하여 판매용 유틸리티 배전시설에 25메가와트 이상 전력생산량 및 전력생산가용량의 1/3이상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8) ‘1985년도 배출허용량’이란 용어는 1985년 설비에 적용할 수 있고 이산화황 또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배출한도나 1985년 한도가 없는 경우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후속 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설비의 배출한도가 lbs/mBut 혹은 배출한도가 연간 기준으로 나타내지 않은 평균기간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환경청장은 1985년도 배출허용량을 정하기 위해 lbs/mBtu로 배출한도에 해당하는 연간 배출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 (19) ‘I 단계 적격 기술’이란 용어는 연소 전 처리를 하지 않는 연료사용으로 생성될 수 있었을 배출량에서 이산화황 배출량이 90% 감축되는 연속배출감축기술시스템을 말한다.
- (20) ‘대체 준수 방법’이란 용어는 다음 근거에 따른 준수 방법을 말한다.
- (A) 404 (b) 및 (c)항¹⁾에 따라 제출, 승인을 받은 대체제안
- (B) 404(d)에 따라 환경청장이 승인한 단계²⁾ 연장계획으로 그 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I 단계 적격 기술을 사용한다.
- (C) 409조에 따라 적격 청정석탄기술로 동력수단을 변경
- (21) ‘착수’란 용어는 신규 전력유틸리티 설비 공사에 적용되는데 소유자나 운영자나 연속시공프로그램을 개시하였거나 소유자나 운영자가 적정 시간 내 연속시공프로그램을 개시, 완료하는 계약의무에 들어갔음을 말한다.
- (22) ‘상용가동을 착수’란 용어는 판매용 전력생산을 시작하였음을 말한다.

1) 아마도 “절”일 것임.

2) 아마도 “단계”일 것임.

- (23) ‘시공’이란 용어는 영향권 내 설비의 조립, 설치나 건립을 말한다.
- (24) ‘산업용 공급원’이란 용어는 발전기용이 아닌 설비, 즉 이 조에서 정의된 대로 ‘비 유틸리티 설비’ 또는 410(e)조에 정의한 프로세스 공급원을 말한다. 1)
- (25) ‘비 유틸리티 설비’란 용어는 유틸리티 설비 이외의 설비를 말한다.
- (26) ‘지정대리인’이란 용어는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의 보유, 양도나 처분, 그리고 설비의 준수계획, 허가 신청, 그리고 허가서 제출 및 허가준수와 관련된 사안에서 소유자나 운영자를 대리하기 위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위임한 해당자나 관리를 말한다.
- (27) ‘설비 수명, 전력 확정계약’이란 용어는 설비 관여 전력판매량약정을 말하며, 이에 따라 유틸리티나 산업소비자가 특정 발전설비(혹은 설비)의 생산용량 및 관련 에너지의 일정량 혹은 비율을 비축하거나 공급받을 자격이 있고 다음 계약내용에 따라 설비 총비용의 비례량을 지급한다.
- (A) 설비의 수명 관련;
- (B) 30년 이상 누적 기간, 조기 해지선택권을 허용하는 계약을 포함, 혹은
- (C) 25년 이상 기간 혹은 설비건조 시점 현재 설비의 경제적 유용수명의 70%, 그 기간 말에 설비의 생산용량 및 관련 에너지의 일정량을 구매하거나 양도할 선택권이 있음.
- (28) ‘II 단계 기본허용할당량’이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A) 2000~2009 회계연도 중 403조 및 (b)(1), (3), 및 (4)항과 405조 (c)(1), (2), (3), 및 (5); (d)(1), (2), (4), 및 (5); (e);

1) 아마도 “410(d)”일 것임.

(f); (g)(1), (2), (3), (4), 및 (5); (h)(1); (i) 및 (j)목에 따라
환경청장이 정한 허용할당량

(B) 2010년 시작하는 년도에, 403조 및 (b)(1), (3), 및 (4)항과
405조 (c)(1), (2), (3), 및 (5); (d)(1), (2), (4), 및 (5); (e);
(f); (g)(1), (2), (3), (4), 및 (5); (h)(1); (i) 및 (j)목에 따라
환경청장이 정한 허용할당량

(29) ‘II 단계 보너스 허용할당량’이란 용어는 2000~2009년도 중,
환경청장이 403, (a)(2), (b)(2), (c)(4), (d)(3)항(달리 규정된 경우
는 제외) 및 405조 (h)(2)항 및 406조에 따라 정한 허용량을 말
한다.

[42 U.S.C. 7651a]

기존 설비 및 신규설비 관련 이산화황 허용 프로그램

403조. (a) 기준, 신규 설비의 연간 허용할당량. (1)²⁾ 이 장의 배출한
도프로그램에 대해 환경청장은 설비의 연간 허용량을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404, 405, 406, 409 혹은 410조에서 산출한 연
간배출한도량(톤)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 장에 따라 영향권 내 공
급원에서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의 지정 대리인이 보
유하거나 분배하도록 할당하여야 한다. 2000/1/1일부터 405(a)(2),
405(a)(3), 409 및 41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환경청장은 405조의
이산화황연간 배출허용량을 유틸리티 설비의 이산화황 연간총배
출량이 8.9백만 톤을 초과하여 할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환경
청장이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혹은 배출량이 할
당된 년도 후 허용량을 보유하는 다른 자가 이월한 미사용 허용
량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앞 문장에서 부과된
제한을 충족하는데 필요하다면, 환경청장은 405조의 요건을 적용

2) “(1)” 아마도 삭제해야 할 것임.

하는 설비의 II 단계 기본허용할당량을 비례하여 축소하여야 한다. 416조의 조항을 조건으로 환경청장은 (2) 및 (3)조항¹⁾ 및 408조에 규정된 대로 매년 영향권 내 공급원의 영향권 내 설비의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409조 및 41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995/1/1/3 혹은 2001/1/1 전후) 어느 때라도 상업가동으로 기존 영향권 내 설비나 공급원이 제거되었다고 설비 자격이 부여되는 404조나 405조에 따라 허용할당량이 중지되거나 허용할당량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허용량은 수혜자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환경청장이 할당하여야 하며, 다만 416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판매한 허용량은 제외한다. 1991/12/31일 이내, 환경청장은 II 단계 기본허용할당량, II 단계 보너스 허용할당량(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2000년도 및 2010년도의 경우 405조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각각의 설비에 대해 405(a)(3)항에 따른 할당량의 목록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1991/12/31일 이내, 환경청장은 405(a)(2)항의 조항을 조건으로 최종할당량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405(b) 혹은 (c)항의 요건을 따르는 기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2000/1/1일부터 2000/12/31²⁾이전 까지 409조에 따라²⁾ 설비의 배출한도요건준수기한의 연장신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1991/3/31일 내 환경청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이 항의 II 단계기본허용량을 산정하는 토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1998/6/1일 전에 환경청장은 405(a)(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허용량에 대해 409조에서 부여된 준수일자연장의 효과를 고려하여 최종허용할당량수정확인사항을 발표하여야 한다. 설비에 할당될 허용량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 이러한 선택을 하고 405조의 경우

1) 이 항은 (2) and (3)조항이 없어야 함.

2) 409조 참조. 2000/12/31일 기준은 아마도 2003/12/31일 것임.

에 1991/3/31일 이내 환경청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혹은 405조에 따른 선택의 경우 1991/6/30) 그 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면, 환경청장은 그 자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설비에 대해 자신의 판단으로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에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선택을 반영하는 허용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자가 406조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지사이고 지사가 선택을 하지 못하면, 환경청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그 주에 소재한 설비의 최대 이익을 제공할 선택을 반영하는 허용량을 그 주의 설비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b) 허용량 양도시스템. 이 장에서 할당된 허용량은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의 지정 대리인과 기타 허용량 보유자 사이에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이 공표할 허용량시스템규정에 규정된 대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 장에서 규정된 허용량시스템을 정하여야 하며, 이 장에 따라 허용량할당, 양도 및 활용 등도 포함한다.

이 규정은 허용량할당연도 전에 허용량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 장 목적과 일치하여 미사용 허용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월되어 다음 연도에 할당허용량에 추가될 미사용 허용량을 규정하여야 하며, II 단계 배출한도요건에(405조) 적용되는 I 단계요건(404조)을 적용하는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도 포함한다. 허용량양도는 양도 각 당사자의 담당 관리자의 서명을 받아 서면양도확인서를 환경청장이 접수, 기록할 때까지는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허용량 발급 전 허용량의 양도를 허가하여야 한다. 할당 전에 기록된 양도는 환경청장이 양도인에게 할당될 허용량에서 공제하고 양수인에게 할당된 허용량에 추가하여야 한다. 할당 전 양도는 할당연도 전에 허용량 사용에 불리하게 이 항의 금지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c) 오염물질 간 거래. 1994/1/1일 이내, 환경청장은 질소산화물허용량에 대해 이 장을 수정하여 이산화황허용량 거래를 허가하여 과급되는 환경,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d) 허용량추적시스템. (1)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허용량을 발급, 기록 및 추적하는 시스템을 공표하여야 하며, 허용량시스템을 질서정연하게 경쟁력 있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모든 허용량 할당 및 양도는 환경청장의 기록한 때 408조에 따라 향후 허가심사 및 수정을 하지 않고 설비허가요건의 일부로 간주하여야 한다.
- (2) 전력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은 유틸리티 설비, 전력 풀이나 허용량풀약정을 체결한 유틸리티에서 비상사태 및 중앙과건 등 작업에서 비롯되는 일시적 배출증감을 금지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배출증감은 설비 사이에 허용량양도도 기록 작업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해 행동을 하여야 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도에(연도 말에 산출) 유틸리티 설비, 전력풀이나 허용량풀약정에서 모든 설비의 총배출량(톤)은 해당연도의 설비의 총 허용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 (e) 신규 유틸리티 설비. 2000/1/1일 이후, 신규 유틸리티 설비가 그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를 위해 보유한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이산화황 연간배출량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신규 유틸리티 설비는 (a)(1)항의 이산화황 할당허용량에 대한 자격에 미달이

다. 다만 설비가 405조 (g)(2) 혹은 (3)항의 조항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하여야한다. 신규 유틸리티설비는 특정인으로부터 이 장에 따라서 허용량을 구득할 수 있다. 이 항을 위반하여 신규 유틸리티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는 이 장 411조의 명시적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f) 허용량의 특성. 이 장에서 할당된 허용량은 이 장 조항에 따라서 이산화황 배출을 제한한 인가사항이다. 이 허용량은 재산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장이나 여타 법 조항에서 어느 것도 미국이 인가 조치를 해지하거나 제한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량 관련하여 이 조의 어느 것도 영향권 내 설비나 공급원에게 이 법의 여타 조항을 적용하거나 준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 및 주 이행계획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한다. 이 조의 어느 것도 전력유틸리티비용 및 비용을 규정하는 주법의 변경사항을 요구하거나 주의 규정을 제한하거나(신중성 심사 등) 주 규정에 대한 주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의 어느 것도 연방전력법을 변경하거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장 어느 사항도 프로그램을 수립한 주에서 전력공급 입찰경쟁프로그램과 저촉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량은 일단 환경청장이 어느 자에 할당하면 최초 허용량이 할당, 기록된 설비와 관련하여 408조나 V장에서 허가의 유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장 및 환경청장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로나 영구적으로 양도, 취득, 보유할 수 있다. 영향권 설비에 대한 이 장의 허가 및 V장의 허가는 영향권 내 설비가 연간이산화황 배출량(톤) 설비에 대해 보유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g) 금지. 어느 자가 환경청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할당된 허용량을 보유,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영향권 내 설비가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해당 연도의 설비에 대해 보유한 허용량을 초과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장의 허용량을 할당하는 때, 앞 문장의 금지조항은 허용량이 할당된 설비에 이 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타 배출한도를 대신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량은 할당연도 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에서나 허용량시스템규정에서나 어느 조항도 환경청장이 이 법에 따른 환경청장의 의무를 허가, 감시, 집행하지 못하게 하지도 않으며, 영향권 내 공급원의 이 법에 따른 해당 요건과 의무를 면제하지 않아야 한다.
- (h) 전력공급 경쟁 입찰. 이 장 어느 조항도 프로그램을 수립한 주에서 전력공급 경쟁 입찰 계획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i) 독점금지법의 적용 가능성
- (1) 이 조의 어느 조항도
 - (A) 독점금지법을 허용량 양도, 이용이나 판매에 적용할 가능성과
 - (B) 경쟁이나 반경쟁 행위나 관행의 불공정한 방법과 관련하여 어느 법 조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여기서 ‘독점금지법’은 클레이튼법 개정안 1조에 제시된 법을 말한다.
- (j) 공공유틸리티 지주회사법. 허용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보증이나 증권 발행 등 이 장에 따른 허용량의 취득 또는 처분은 1935년도

공공유틸리티주회사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42 U.S.C. 7651b]

I 단계 이산화황요건

404조. (a) 배출한도. (1) 1995/1/1일 이후, 표A의 영향권 내 설비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공급원은 이 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이다. 1995/1/1일 이후, 어느 영향권 내 설비(404(d)(2)항의 I 단계 적격설비 제외)가 I 단계 표 A에서 총 허용량으로 명시된 총 한도를 초과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A) 이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배출감축요건이 (b) 혹은 (d)항에 따라 달성되었거나 (B)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가 200/1/1일 이후 이 조에서 정한 배출한도가 405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비의 연간 총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를 위반하는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는 411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의무 등 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1991/12/31일 이내, 환경청장은 이 조의 배출한도요건을 준수한 결과로 발생될 1995년도 유틸리티 설비의 이산화황 총 배출감축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로써 결정된 양과 같은 허용비축량을 총 3.5백만 톤이 넘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이 조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의 경우

(A) 기준량에 설비의 1985년도 배출량과 1985년도 실제배출량 중 더 낮은 양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양의 결과와

(B) 설비의 기준량에 2.5lbs/mmBtu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 사이에 차이를 계산하고 산출치를 합한다.

환경청장은 앞 산출치를 조정하여 이 장에서 배출한도를 따르는 설비의 1995년도 이용 전망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생각하기에 만약 요건을 부과하지 않으면 발생하였을 걸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 (3) (1)조항의 할당허용량 외에, 1995년 시작하고 1999년에 종료하는 각 연도에, 환경청장은 일리노이, 인디애나 혹은 오하이오주²에 소재한 표A¹의 설비(Kyger Creek, Clifty Creek 및 Joppa Steam의 설비제외)에 대해 (1)조항의 3주에서 표A¹의 모든 설비에 할당된 총 허용량의 비례 몫에 20만을 곱한 것과 같은 양의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 허용량은 (2)조항의 보유량의 산정 값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b) 대체. (a)항의 영향권 내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는 408조 허가 신청 및 준수예정계획에 영향권 내 설비의 이산화황 감축요건을 전부 혹은 일부 소유자나 운영자의 감독을 받는 기타 설비에 다시 할당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a)항의 감축의무의 일부가 이 항에서 지정된 최초 영향권 내 설비 대신에, 혹은 설비에 추가하여 대체 설비를 지정할 필요성.
 (2) 최초 영향권 내 설비의 기준선, 이산화황의 경우 1985년도 실제 배출량 및 허용배출량, 그리고 표A에 명시된 연간허용할당 허가량.
 (3) 대체설비의 1985,1986,1987년도 중 연간 평균배출량을 402(d)항에¹ 정의된 설비의 기준선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설비의 1985년도 실제 배출량이나 허용배출량 중 적은 양을 곱한 값.

1) 아마도 “표”일 것임.

2) 아마도 “주”일 것임.

1) 아마도 “402(4)”일 것임.

- (4) 대체제안에서 영향권 내 최초설비 및 대체설비에 적용할 수 있을 배출비율 및 배출량 한도
 - (5) 다시 할당된 배출량한도가 전부 합쳐서 대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최초 영향권 내 설비 및 대체 설비로 달성하였을 양보다 같거나 더 많이 배출량감축을 달성할거라고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문서로 작성한 것.
 - (6) 기타 환경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c) 대체제안에 대한 환경청장의 조치. (1) 환경청장은 대체제안이 이항의 요건을 이행할 경우 408(c)항에 따라 대체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장에서 의도한 배출감축을 확보할 수 있을 대체제안을 전부 혹은 일부 허용시스템의 질서정연한 기능발휘에 일치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어느 제안이 (b)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경청장은 이를 부결하여야 한다. 표 A의 설비목록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환경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설비를 또다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 (2) 대체제안의 승인이 있는 때, 대체설비 및 대체설비가 있는 공급원은 이 장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은 승인된 대체제안 및 408조에 따라 최초 및 대체 영향권 내 공급원 및 설비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403조에 따라 승인된 대체제안에 따라 최초, 대체 영향권 내 설비의 허용량을 할당하여야한다. 이 조에서 허용량이 할당된 공급원이나 설비가 승인된 대체허가 및 계획에서 규정된 배출한도를 초과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허가 및 승인 대체제안의 관리를 받는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1)의 총 연간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여 불법인 경우

를 제외한다. 이 항을 위반하여 가동된 최초, 혹은 대체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위반 행위에 대해 총 책임을 지며, 이 장 411조에 명시한 의무이행 책임도 포함한다. 대체 제안서가 부결되면, 환경청장은 (a)항에 따라 최초 영향권 내 설비에게 허용량을 할당하여야한다.

(d) I 단계 연장 적격설비 (1) 이 조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요건충족을 위해 환경청장에게 408 조의 허가신청서에서 2년의 기한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2년의 연장기간 각 연도에 설비의 총 연간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허용량을 보유함을 조건으로 한다. 이 연장자격을 갖추기 위해, 영향권 내 설비는 I 단계 적격기술을 이용하거나 I 단계배출감축의무를 I 단계적격기술을 이용하는 설비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 양도는 408조에 따라 제출, 승인된 준수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데, 양도에 포함된 모든 설비에서 하는 작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장에 따라 부과된 배출감축요건을 명시한다.

(2) 이러한 연장제안은

(A) I 단계 연장적격설비로 지정하기 위해 제안한 설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B) 설계공학, 연장설비 관련 I 단계 적격기술의 건조, 연장설비의 배출감축의무가 양도예정인 설비와 관련하여 이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환경청장의 제안서 승인에 좌우될 수 있다.

(C) 설비의 기준선, 1985년실제배출량, 1985년도허용배출량, 그리고 1991~1999년 중 활용 전망 등을 명시하며,

1) “설비들”일 것임.

- (D) 1995/1/1일 이전 시작하여 I 단계 연장적격설비 및 양도 설비에 대한 CEMS를 요구하며,
- (E) I 단계적격기술이 설치 완료된 후 연간 작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용량 및 배출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환경청장은 408조와 일치하여 수령 순서로 연장제안을 검토하고 최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안의 경우 I 단계 적격연장설비로 이 설비를 지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연장제안을 일부 혹은 전부, 필요한 대로 수정이나 조건을 붙여, 허용량시스템의 질서정연한 기능발휘와 일치하여, 그리고 이 장¹⁾에서 의도한 배출감축을 확보하기 위해 승인할 수 있다.
- (4) (a)(2)항의 보유량에서 할당량의 자격 제안서의 수 및 제안에 대한 조치가 있는 후 이용할 수 있는 잔존 허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환경청장은
- 향후 할당을 받기 위해 비축되어 이용 가능한 잔존 허용량이 없거나 승인된 제안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까지 (A), (B) 및 (C)항목에 따라 산출된 허용량으로 비축되어 남아 있고 이용 가능한 총 허용량을 공제하여야 한다.
- 환경청장이 제안건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향후 할당을 받기 위해 비축되어 이용할 수 있는 허용량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미결 제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허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A) 1988년과 1989년의 연간평균배출량이나 (3)항에서 지정된 대로 1995년 I 단계적격연장설비의 예상배출량 중 적은 양과 설비의 기준량에 2.5lbs./mmBtu 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 사이에 차이
- (B) 1988년과 1989년의 연간평균배출량이나 (3)항에서 지정된

1) 마도 “이”일 것임.

대로 1996년 I 단계적격연장설비의 예상배출량 중 적은 양과 설비의 기준량에 2.5lbs/mmBtu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 사이에 차이.

(C) (i) 설비의 기준량에 1.20lb/mmBtu 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이 (ii) 이 항의 (2)(E)항에 명시한 톤 수치에 계수 3을 곱한 값을 초과한 양.

(5) I 단계적격연장설비는 이 조 (a)(1) 혹은 (c)항에서 결정된 허용량을 수여받아야 한다. 그 외, 1995년의 경우, 환경청장은 (a)(2)항에 따라 생성된 허용보유량에서, 1988년과 1989년의 연간평균배출량이나 1995년 예상 배출량(톤) 중 더 적은 것과 설비의 기준량에 배출비율 2.50lbs/mmBtu를 곱하고 2,00으로 나눈 값 사이의 차에 해당하는 허용량을 I 단계 연장적격설비에 할당하여야 한다. 1996년도에 환경청장은 자격 설비에 대해 (a)(2)항에 따라 생성된 허용보유량에서 1988년과 1989년의 연간평균배출량이나 1995년 예상 배출량(톤) 중 더 적은 것과 설비의 기준량에 배출비율 2.50lbs/mmBtu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 사이의 차에 해당하는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연장승인계획을 따르는 공급원이나 설비가 허가서에 연장승인계획에서 규정된 배출한도를 초과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허가 및 승인 계획의 관리를 받는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의 총 연간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5)조항에 명시된 허용량 외에, 환경청장은 I 단계적격기술을 이용하는 I 단계적격설비의 경우 1997,1998 및 1999년도에 (4) 조항에 규정된 비축량을 감축한 후에 자격설비의 기준량에 배출비율 1.2lbs/mmBtu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가 이 항 (2)(E)항에 명시된 톤 수치를 초과하는 양을 초과하지 않게 추

가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7) 1997/1/1일 이후, 이 법의 의무 외에, 411조를 포함하여, I 단계 적격기술을 이용하는 I 단계적격연장설비 또는 이 항의 양도 설비가 이 항 (3)조항에서 승인된 연장계획에 명시된 연간 배출한도를 초과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초과가 일어난 후 연도에 설비의 연간허용할당량에서 초과량에 해당하는 허용량을 공제하여야 한다.

(e) (1) 1995년 전 설비가 소재한 주지사로부터 이산화황 배출감축허가를 받고 다음 요건을 따르는 유틸리티 시설의 일부인 설비의 경우에:

(A) 총 시스템 발전비율로서 유틸리티시설 내 총 석탄연소발전량이 1980/1/1과 1985/12/31사이에 20%이상이나 감소했으며, (B)1985/1/1~1987/12/31/의 기간에 걸쳐 유틸리티시설 내 석탄연소설비의 중량용량계수 평균이 50% 미만이었다던 경우, 환경청장은 이 항에 따른 설비에 대한 허용량을 이 조항에 따라 할당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405조의 영향권 내 설비(이 조의 영향권 내 설비는 아님) 및 1995~1999 기간 중 이산화황 배출감축의 경우 405조에서 1 이상 영향권 내 설비를 포함하는 유틸리티시설의 일부인 설비에 대해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설비가 앞 문장의 요건 및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다만, 그와 같은 설비에 이 항을 적용하기 위해, 아래 명시된 대로 해당 직전 연도는 1995/1/1일 이후 연도이지만 2000/1/1일 전은 아니다.

(2) (A)항목에서 언급되었던 영향권 내 설비의 경우1), 직전 연도

1) 아마도 (1)조항일 것임.

에 조기 감축을 위해 이 항에서 할당된 허용량은 (A) 설비의 기준량에 설비의 1985년도 실제이산화황 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가 표A의 설비에 대해 명시된 허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초과할 수 없다. (A)항목에 언급되고 405조를 적용하는 영향권 내 설비의 경우¹, 직전 연도에 조기감축을 위해 이 항에서 부여된 허용량은 (i)직전 연도에 설비의 화석연료소비량에 2.5나 해당이행계획에서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배출비율 중 적은 양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가 (ii) 해당 직전 년도의 이산화황 실제배출량을 초과하는 양을 초과할 수 없다. (A)항목에 언급된 설비의 경우 이 항에서 할당된 허용량은¹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화석연료의 소비량이나 질의 변화를 포함하여 가동방법의 변화나 물리적 변화의 결과로 달성된 배출감축량에만 할당될 수 있다.

- (3)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규정²은 불가항력이나 상업적실행불가능성³ 사고로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유효한 석탄판매계약에 따라 유틸리티 시설의 불이행 핑계에 대한 근거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표 A. I 단계 영향권 내 공급원과 설비 및 그 이산화황허용량(톤)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Alabama	Colbert	1	13,570
		2	15,310
		3	15,400
		4	15,410

2) 아마도 “이 항”일 것임.

3) 아마도 “실행불가능”일 것임.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5	37,180
	E.C Gaston	1	18,100
		2	18,540
		3	18,310
		4	19,280
		5	59,840
	Big Bend	1	28,410
Florida		2	27,100
		3	26,740
	Crist	6	19,200
		7	31,680
	Bowen	1	56,320
Georgia		2	54,770
		3	71,750
		4	71,740
	Hammond	1	8,780
		2	9,220
		3	8,910
		4	37,640
	J. McDonough	1	19,910
		2	20,600
	Wansley	1	70,770
		2	65,430
	Yates	1	7,210
		2	7,040
		3	6,950
		4	8,910
		5	9,410
		6	24,76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7	21,480
Illinois	Baldwin	1	42,010
		2	44,420
		3	42,550
	Coffeen	1	11,790
		2	35,60
	Grand Tower	4	5,910
	Hennepin	2	18,410
	Joppa Steam	1	12,590
		2	10,770
		3	12,270
		4	11,360
		5	11,420
		6	10,620
	Kincaid	1	31,530
2		33,810	
3		13,890	
Vermilion	2	8,880	
Indiana	Bailly	7	11,180
		8	15,630
	Breed	1	18,500
	Cayuga	1	33,370
		2	34,130
	Clifty Creek	1	20,150
		2	19,810
		3	20,410
		4	20,080
		5	19,36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6	20,380
	E. W. Stout	5	3,880
		6	4,770
		7	23,610
	F. B. Culley	2	4,290
		3	16,970
	F. E. Ratts	1	8,330
		2	8,480
	Gibson	1	40,400
		2	41,010
		3	41,080
		4	40,320
	H. T. Pritchard	6	5,770
	Michigan City	12	23,310
	Petersburg	1	16,430
		2	32,380
	R. Gallagher	1	6,490
		2	7,280
		3	6,530
		4	7,650
	Tanners Creek	4	24,820
	Wabash River	1	4,000
		2	2,860
		3	3,750
		5	3,670
		6	12,280
	Warrick	4	26,980
Iowa	Burlington	1	110,71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Des Moines	7	2,320
	George Neal	1	1,290
	M.L. Kapp	2	13,800
	Prairie Creek	4	8,180
	Riverside	5	3,990
Kansas	Quindaro	2	4,220
Kentucky	Coleman	1	11,250
		2	12,840
		3	12,340
	Cooper	1	7,450
		2	15,320
	E.W. Brown	1	7,110
		2	10,910
		3	26,100
	Elmer Smith	1	6,520
		2	14,410
	Ghent	1	28,410
	Green River	4	7,820
	H.L. Spurlock	1	22,780
	Henderson II	1	13,340
		2	12,310
	Paradise	3	59,170
	Shawnee	10	10,170
Maryland	Chalk Point	1	21,910
		2	24,330
	C. P. Crane	1	10,330
		2	9,23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Morgantown	1	35,260
		2	38,480
Michigan	J. H. Campbell	1	19,280
		2	23,060
Minnesota	High Bridge	6	4,270
Mississippi	Jack Watson	4	17,910
		5	36,700
Missouri	Asbury	1	16,190
	James River	5	4,850
	Labadie	1	40,100
		2	37,710
		3	40,310,
		4	35,940
	Montrose	1	7,390
		2	8,200
		3	10,090
	New Madrid	1	28,240
		2	32,480
	Sibley	3	15,580
	Sioux	1	22,570
		2	23,690
	Thomas Hill	1	10,250
		2	19,390
New Hampshire	Merrimack	1	10,190
		2	22,000
New Jersey	B.L. England	1	9,060
		2	11,72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New York	Dunkirk	3	12,600	
		4	14,060	
	Greenidge	4	7,540	
		Milliken	1	11,170
	Northport	2	12,410	
		1	19,810	
		2	24,110	
		3	26,480	
		Port Jefferson	3	10,470
		4	12,330	
	Ohio	Ashtabula	5	16,740
		Avon Lake	8	11,650
			9	30,480
		Cardinal	1	34,270
2			38,320	
Conesville		1	4,210	
		2	4,890	
		3	5,500	
		4	48,770	
Eastlake		1	7,800	
		2	8,640	
		3	10,020	
		4	14,510	
		5	34,070	
Edgewater		4	5,050	
Gen. J.M. Gavin		1	79,080	
		2	80,560	
Kyger Creek	1	19,28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2	18,560
		3	17,910
		4	18,710
		5	18,740
	Miami Fort	5	760
		6	11,380
		7	38,510
	Muskingum River	1	14,880
		2	14,170
		3	13,950
		4	11,780
		5	40,470
	Niles	1	6,940
		2	9,100
	Picway	5	4,930
	R.E. Burger	3	6,150
		4	10,780
		5	12,430
	W.H. Sammis	5	24,170
		6	39,930
		7	43,220
	W.C. Beckjord	5	8,950
		6	23,020
Pennsylvania	Armstrong	1	14,410
		2	15,430
	Brunner Island	1	27,760
		2	31,100
		3	53,82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Cheswick	1	39,170
	Conemaugh	1	59,790
		2	66,450
	Hatfield's Ferry	1	37,830
		2	37,320
		3	40,270
	Martins Creek	1	12,660
		2	12,820
	Portland	1	5,940
		2	10,230
	Shawville	1	10,320
		2	10,320
		3	14,220
		4	14,070
	Sunbury	3	8,760
		4	11,450
Tennessee	Allen	1	15,320
		2	16,770
		3	15,670
	Cumberland	1	86,700
		2	94,840
	Gallatin	1	17,870
		2	17,310
		3	20,020
		4	21,260
	Johnsonville	1	7,790
		2	8,040
		3	8,41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4	7,990
		5	8,240
		6	7,890
		7	8,980
		8	8,700
		9	7,080
		10	7,550
West Virginia	Albright	3	12,000
	Fort Martin	1	41,590
		2	41,200
	Harrison	1	48,620
		2	46,150
		3	41,500
	Kammer	1	18,740
		2	19,460
		3	17,390
	Mitchell	1	43,980
2		45,510	
Mount Storm	1	43,720	
	2	35,580	
	3	42,430	
Wisconsin	Edgewater	4	24,750
	La Crosse/Genoa	3	22,700
	Nelson Dewey	1	6,010
		2	6,680
	N. Oak Creek	1	5,220
2		5,140	
3		5,370	

주	발전소명	발전기	I 단계허용량
		4	6,320
	Pulliam	8	7,510
	S. Oak Creek	5	9,670
		6	12,040
		7	16,180
		8	15,790

(f) 에너지보존 및 재생에너지

(1) 용어 정의

- (A) 우수 에너지보존대책. 이 용어는 환경청장이 에너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한 대로 전력공급시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력 활용의 효율성을 크게 하며 비용효과적인 대책을 말한다.
- (B) 우수 재생에너지. 이 용어는 환경청장이 에너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한 대로 바이오매스, 태양, 지열이나 바람에서 유도한 에너지를 말한다.
- (C) 전력공급시설. 이 용어는 전기에너지를 판매하는 자, 주정부기관이나 연방기관을 말한다.

(2) 우수에너지보존대책 및 재생에너지를 통해 회피된 배출 허용량

- (A) 개요. 이 항 (4)조항의 규정은 적용 기간 중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이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공급시설에서 회피한 이산화황 배출량에 대해 환경청장은 전력공급시설에 (g)항에서 정한 보존재생에너지보고에서 선착순으로 이 보고에서 총 할당허용건수 30만까지 단독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B) 발급요건. 환경청장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만 이 항

의 전력공급시설에 허용량을 할당하여야한다.

(i) 전력공급시설이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이나 재생에너지 비용을 직접 혹은 다른 자로부터 구매를 통해 지불하고 있는 경우.

(ii)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이나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회피한 이산화황 배출량은 이 항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수량화한다.

(iii)(I) 이 전력공급시설은 최저시스템비용으로 향후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신규전력공급물자, 에너지보존 및 재생에너지자원 등 여러 자원을 평가하는 최소비용에너지 보존전력계획을 채택하였고 이행 중임.

(II)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이나 재생에너지 혹은 둘 다 이 계획과 일치함.

(III) 주 행정당국의 관할대상인 전력공급시설은 당국이 승인한 계획을 구비하여야 한다. 주 행정당국의 관할대상이 아닌 전력공급시설의 경우, 이 계획은 공급시설에 대해 요금제정 권한이 있는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v) 주 규제를 받는 전력공급시설이 착수한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의 경우에, 에너지장관은 전력공급시설의 전기요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주 행정당국은 특정한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보존대책을 이행한 후 전력공급시설의 순수입이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얻게 될 순수입만큼 최소한 높을 수 있도록 요금체제를 확립하였음을 인증한다. 에너지장관의 인증일자에, 이 일자 전에 (A)항목에서 할당되었을 허용량은 전력공급시설에 할당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 (v) 이 공급시설이나 유틸리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영향권 내 설비를 최소 1개를 소유하거나 가동을 한다.
- (C) 적용 가능성 기간. 이 항의 허용량은 1992/1/1일 이후, (i)2000/12/31일이나 (ii) 허용량이 할당된 전력공급시설이 소유하거나 가동하는 전력공급증기발전설비가 이 장에 따라 적용을 받는 날짜 중 이른 날짜 전에 우수재생에너지로 생성되거나 에너지보존대책으로 절감한 전력에너지(KW/h)에 대해서만 할당하여야 한다.(410조에 따라 이 장에서 영향을 받기로 선택한 공급원을 포함)
- (D) 회피한 배출량 결정
- (i) 적용. 이 항의 허용량을 수여받기위해서, 전력공급시설은 다음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I) 배출회피 목적으로 우수재생에너지사용자원 및 에너지보존실행대책을 지정¹⁾.
- (II) (F) 및 (G)항목에 따라 이 대책을 이행하거나 우수재생에너지자원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회피한 배출량을 산출.
- (III) (B)항목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함. 주의 규제를 받는 전력공급시설의 허용량 신청은 전력공급시설을 관할하는 주 행정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당국은 신청서의 정확성 및 이 항과의 적합성 및 이 항의 규칙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전력공급시설의 소매요금이 주 행정당국의 관할대상이 아닌 경우 환경청장에게 직접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 우수 에너지보존대책으로 인해 회피한 배출량. 특정 연도에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을 이행하는 이유로 회피한 배출량

1) 아마도 쉽표 대신에 세미콜론일 것임.

(톤)은 다음 사항을 곱한 결과와 같은 양이다.

(i) 우수에너지보존대책이 없다면 당해 연도에 공급시설에서 달리 공급하였을 전력량(KW/h)에 (ii) 0.004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

(F) 우수 재생에너지사용으로 회피한 배출량. 특정 연도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로 회피한 배출량(톤)은 다음 사항을 곱한 결과와 같은 양이다.

(i) 우수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부터 구매한 실제 전력량에 (ii)0.004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

(G) 금지. (i) 어떠한 허용량도 특성상 정보용이나 교육용인 프로그램 이행에 대해서 이 항에서 할당되지 않아야 한다.

(ii) 어떤 허용량도 1992/1/1일 전에 운용되었던 우수재생 에너지나 에너지보존대책에 대해서 할당되지 않아야 한다.

(3) 유보 조항. 이 항의 어느 것도 주나 주 행정당국이 수요 측 자원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공급시설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게 사전에 막지 않아야 한다.

(4) 규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b)항 및 (c)항에서 공표할 필요가 있는 규정과 연계하여, 환경청장은 에너지장관과 협의하여 이 항의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우수 에너지보존대책 및 재생에너지로 다룰 수 있는 에너지보존대책 및 재생에너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허용량은 이 항의 요건 및 이 항의 이행을 위해 공표한 규칙이 준수되는 경우에 할당되어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항에서 주 행정당국이 환경청장의 규칙에 따라서 전력공급시설 마다, 주마다 일관성을 장려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1년에 한 번 이상 심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g) 보존 및 재생에너지보고.. 환경청장은 이 항에서 보존 및 재생에너지보고(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Reserve)를 수립하여야 한다. 1995/1/1일부터, 환경청장은 이 보고에서 403조에 따라 이산화황 배출량에 대해 총 30만 허용량에 해당하는 양을 할당할 수 있다. 이 보고에 30만 허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청장은 30만 허용량의 비례 몫에 기초하여 설비의 II 단계 기본허용할당량을 줄일 수 있다. 2002/1/2일 이후 보고에 허용량이 남아 있으면, 환경청장은 비례 기준으로 405조의 영향권 내 설비에 이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405조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의 경우, ‘비례기준’이란 용어는 모든 설비의 경우 이 항에서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가 허용량을 감축한 양 대 총 감축량의 비율을 말한다.

(h) 선택적 기준량이 있는 특정 유틸리티시설의 설비에 대한 대체허용할당량

(1) 특정 시설의 설비에 대한 선택적 기준량

이 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다음 설비의 경우(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A) 배출비율이 1.0 lbs/mmBtu미만,

(B) 1980년 이래 이산화황 배출비율이 60% 이상이나 감소되었음

(C) 화석연료연소 설비의 경우 이산화황 배출평균 중량비율이 1.0lbs/mmBtu 미만인 유틸리티 시설의 일부인 경우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의 선택으로 설비의 기준량은 (i) 402(d)항에 규정된 대로¹⁾ 선택할 수 있거나 (ii) 60% 용량 계수로 연료 연평균소비량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아마도 “402(4)”일 것임.

이 선택은 1991/3/1이내 하여야 한다.

- (2) 허용할당량. (1)항의 설비가 (1)항의 (ii)항에 있는 대로 기준량을 산출하기로 선택한 때, 환경청장은 403(a)(1)항, 이 조 및 405조(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에 따라 선택한 기준량에 1989년 설비의 연평균배출비율이나 1.0lbs/mmBtu 중 낮은 것을 곱한 것에 해당하는 양으로 설비의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 허용할당량은 이 조 및 405조의 허용할당량을 대신하여야 한다. [42 U.S.C. 7651c]

II 단계 이산화황 요건

- 405조. (a) 적용 가능성 (1) 2000/1/1일 이후 기존 유틸리티 설비는 이 조의 제한이나 요건을 받는다. 이 조에서 연간 이산화황 배출한도를 따르는 유틸리티 설비는 이 장에서 영향권 내 설비이다. 영향권 내 설비가 하나 이상 있는 공급원은 영향권 내 공급원이다. 1985년에 가동되지 않았던 기존 설비의 경우, 1995년 이후의 배출비율은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1985년 비율 대신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를 위반하여 가동된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는 이 장 411조에 명시한 의무이행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총 책임이 있다.
- (2) II 단계 기본허용할당량 외에, 2000년부터 2009까지 매해, 환경청장은 이 조(b)(2), (c)(4), (d)(3)(A) 및 (B), 및 (h)(2)항 및 406조에 따라 II 단계 보너스 허용량을 최고 53만까지 할당하여야 한다. 1998/6/1일 이내, 환경청장은 409조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은 설비의 경우, (A)2000년도에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과 (B) 설비의 기준량에 1.20lbs/mmBtu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 사이의 차를 구하고 합계를 내야 한다.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매해 환경청장은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에서 앞 문장에 따라 산출한 합계의 10 % 비율 몫을 공제하여야 한다.

(3) II 단계기초허용할당량 및 II 단계 보너스허용할당량 외에, 2000/1/1일부터 환경청장은 404조 표 A에 있고(Kyger Creek, Clifty Creek, 및 Joppa Steam의 설비는 제외)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조지아, 알라바마, 미주리,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혹은 테네시 주¹⁾에 소재한 설비의 경우, 표 A 목록의 설비에 할당된 기초 총 허용량의 설비의 비례 몫에 50,000을 곱한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은 403(a)항의 890만 톤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b) 75mwe 및 1.20lbs.mmBtu 이상 설비 (1) (3)조항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0/1/1일 이후, 명목상 75 MWs 이상,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lbs/mmBtu인 발전기용 기존유틸리티 설비가 설비의 기준량에 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의 연간총배출량 이상으로 배출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1)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2000/1/1일부터, 그 후 매년 2009년까지, 환경청장은 매년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2.50lbs/mmBtu 이고 기준용량계수가 60% 이하이며 (1)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의 경우 Btu 기준으로 설비의 기준량 및 설비의 60% 용량계수로 연료 소비량 사이 차의 50%에 1.20lbs/mmBtu를 곱한 양으로 (a)(2)항에 따라 생성된 보유량의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3) 2000/1/1일 이후,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lbs./mmBtu 이상,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주”일 것임.

연평균연료소비량이 1985,1986,1987년에, 이 법 109조 요건을 따르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이 법 107조의 달성제외지역으로 1090/7/1일 현재 지정된 현이나 그 일부가 없는 주에 소재하고 Btu 기준으로 갈탄의 형태로 90% 초과한 기존 유틸리티설비가 설비의 기준량에 설비의 1985년도 실제배출비율이나 허용배출비율 중 낮은 것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배출한도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의 연간총배출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2000/1/1일 이후, 환경청장은 (1)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고 1988년 설치전력생산량이 3천만 kw이상이고 금지명령이나 금지예정명령이 발한 적 있고(연소오일 때문), 그 후 1980/1/1~1985/12/31 사이 석탄으로 전환한 설비에 대해 (A) 설비의 연간연료소비량을 Btu 기준으로 65% 용량계수로 하여 전환 후 처음 해당 연도 중 실제 배출비율이나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것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과 (B) (1)조항에 따라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 사이 차에 해당하는 허용량을 매년 할당하여야하며, 이는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이 총 연간 5만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앞 문장에 부과된 제한을 충족하는데 필요하다면, 환경청장은 비례로 이 조항의 설비에 할당된 연간 허용량을 줄여야 한다.

(c) 75mwe 미만 1.20lbs.mmBtu 이상 석탄 또는 오일 연소설비. (1)(3) 조항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0/1/1일 이후, 명목상 75 MWs 이상,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lbs/mmBtu이상이고, 유틸리티운영회사가 소유하고 발전기용 기존의 석탄 또는 오일 연소설비의 명목상 화석연료증기전력 총생산량이 1989/12/31일 현재,

250MWe이고 설비의 기준량에 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의 연간총배출량 이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00/1/1일 이후, 명목상 75 MWs 미만,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lbs/mmBtu이상이고(이 법 111조나 이산화황 연간배출비율이 1.20lbs/mmBtu 미만이고 연방에서 집행 가능한 배출한도를 적용하는 설비는 제외), 유틸리티운영회사가 소유하고 발전기용 기존의 석탄 또는 오일 연소설비의 명목상 화석연료증기 전력 총생산량이 1989/12/31일 현재, 250MWe이고 설비의 기준량에 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의 연간총배출량 이상으로 배출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000/1/1일 이후, 명목상 75 MWs 미만,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lbs/mmBtu이상이고 1965/12/31일이나 전에 가동하였으며, 1989/12/31일 현재 유틸리티 운영회사가 소유하며, 화석연료증기전력 총생산량이 250 MWe~ 450 MWe 이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전기사용자가 78,000 미만인 기준 유틸리티 설비가 설비의 기준량에 1985년도 실제 배출비율이나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것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소유자나 운영자가¹⁾ 총 연간 배출량 이상을 배출할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1/1일 이후, 이 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가 기준량에 배출비율을(1.20 lbs/mmBtu)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에 해당하는 연간배출

1) 아마도 “설비“일 것임.

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의 총 연간 배출량 이상을 배출할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1)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2000/1/1일부터, 그 후 매년 2009년까지, 환경청장은 매년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2.50lbs/mmBtu 이고 기준용량계수가 60% 이하이며 (1)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의 경우 Btu 기준으로 설비의 기준량 및 설비의 60% 용량계수로 연료 소비량 사이 차의 50%에 1.20lbs/mmBtu를 곱한 양으로 (a)(2)항에 따라 생성된 보유량의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5) 2000/1/1일 이후, 명목상 75 MWs 미만, 1985년 실제 배출비율이 1.20lbs/mmBtu이상 전력유틸리티시설의 일부이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A) 연도가스탈황장치의 관리를 받아 최소 화석연료용량이 20%이고 (B) 75 MWe 미만의 석탄연소설비로 구성된 화석연료 용량은 10 % 이상, (C) FGD 개조비용계수가 (1986/1/10일자 미국환경청에 보고된, 200 최고 배출생성본부의 배출량 및 FGD 개조개연성에 따라) 까다로운 대형 시설이 있는 기존의 유틸리티 설비가 기준량에 배출비율 2.5lb/mmBtu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소유자나 운영자가 총 연간 배출량 이상을 배출할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1/1일 이후, 이 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가 기준량에 배출비율을(1.20 lbs/mmBtu)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에 해당하는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의 총 연간 배출량 이상을 배출할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d) 1.20lbs/mmBtu 미만 석탄연소설비 (1) 2000/1/1일 이후,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 이산화황 배출비율이 0.60lbs/mmBtu 미만인 기존 석탄연소 유틸리티 설비가 기준량에 (A)0.60lbs/mmBtu나 1985년도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쪽을 곱하고 (B)120% 수치계수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가 설비의 연간 총배출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2000/1/1일 이후,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 이산화황 배출비율이 중 적은 쪽이 0.60~1.20lbs/mmBtu인 기존 석탄연소 유틸리티설비가 기준량에 (A)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쪽을 곱하고 (B)120% 수치계수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가 설비의 연간 총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A) (1)조항 및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1)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운영회사의 지정대리인의 선택으로, 2000/1/1일부터, 그 후 2009년까지, 환경청장은 매년 (1)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에 대해 (i)설비의 1985년도 허용배출비율에 60% 용량계수에서 가동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된 기준량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과 0.60lbs/mmBtu 중 적은 쪽의 결과가 (ii) II 단계기초허용할당량으로 403(a)(1)항 및 (1)조항에 따라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을 초과하는 양에 해당하는 양으로 (a)(2)항에 따라 생성된 보유량에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B)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1)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운영회사의 지정대리인의 선택으로, 2000/1/1일부터, 그 후 2009년까지, 환경청장은 매년

(2)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에 대해 (i)설비의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쪽에 60% 용량계수에서 가동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된 기준량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의 결과가 (ii)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 403(a)(1) 항 및 (2)조항에 따라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을 초과하는 양에 해당하는 양으로 (a)(2)항에 따라 생성된 보유량에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C) 이 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가 있는 운영회사는 (A) 및 (B)항목에 규정된 대로 허용량할당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이 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운영회사의 모든 설비에 대해 각각 연간 허용할당량에 적용하여야 환경청장은 이 항목에 따라서만 (A) 및 (B)항목에 따라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여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나 운영자의 선택으로 2000/1/1일 이후, 환경청장은 (1), (2), (3), (5), 혹은 (6)조항¹⁾에 따라 할당량 대신에 이²⁾ 법 111조를 따르고, 준수하였으며 1981/1/1일 이후, 1985/12/31일 전에 상업가동을 착수하였으며, 이 항의 배출한도요건의 요건을 따르는 설비에 대해 Btu 기준으로 65% 용량계수에서 설비의 연간연료소비량에 설비의 1985년도 허용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5) 오일 및 가스연소설비로 1991/1/1일 현재 에너지부서에서 청정 석탄기술증명보조금을 받았던 설비의 경우, 2000/1/1일부터 환경청장은 설비의 기준량에 1.20lbs/mmBtu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1) 이 항에서 (6)조항은 없음.

2) 아마도 “이 법”일 것임.

(e) 0.60~1.20lbs/mmBtu 오일 및 가스연소설비. 2000/1/1일 이후,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 이산화황 배출비율이 0.60~1.20lbs/mmBtu인 기존 오일 및 가스연소 유틸리티설비가 기준량에 (A)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쪽을 곱하고 (B)120% 수치계수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가 설비의 연간 총배출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f) 0.60lbs/mmBtu 미만 오일 및 가스연소설비. 2000/1/1일 이후,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 이산화황 배출비율 중 적은 쪽이 0.60lbs/mmBtu미만이고 1980~1989년 중 연평균연료소비량이 Btu 기준으로 천연가스의 형태로 90% 이하인 기존 오일 및 가스연소 유틸리티설비가 기준량에 (A)1985년도 허용배출비율과 0.60lbs/mmBtu 중 적은 쪽을 곱하고 (B)120% 수치계수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가 설비의 연간 총배출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II 단계기초허용할당량으로 (1)조항 및 403(a)(1)항에 따라 허용된 할당량 외에, 2000/1/1일부터 환경청장은 도시 1곳과 인근 현 1곳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전기, 전력에너지, 증기 및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설비의 경우, 그리고 주 당국에서 소유하는 설비의 경우, 그 생산량이 도시 1곳과 인근 현 1곳으로 구성된 같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환경청장은 유틸리티 시설의 각 설비에 7,000허용량의 비례 몫을, 주 당국의 설비에 2,000허용량의 비례 몫을 할당하여야 한다.¹⁾

1) “환경청은 하여야 한다.”는 중복됨.

- (g) 1986~1995/12/31일 사이에 가동을 시작한 설비. (1)2000/1/1일 이후, 1986/1/1~1990/9/30일 사이 상업가동을 착수한 유틸리티설비가 Btu 기준으로 65% 용량계수에서 설비의 연간연료소비량에 설비의 1985년도 이산화황허용배출비율(필요하다면 lbs/mmBtu으로 환산)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연간 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가 설비의 연간 총배출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 허용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2000/1/1일 이후, 환경청장은 이 조항 표 B의 설비목록에 403조에 따라 허용량을 표 B에 명시된 양에 해당하는 연간 양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표 B

설비	허용량
Brandon Shores	8,907
Miller 4	9,197
TNP One 2	4,000
Zimmer 1	18,458
Spruce 1	7,647
Clover 1	2,796
Clover 2	2,796
Twin Oak 2	1,760
Twin Oak 1	9,158
Cross 1	6,401
Malakoff 1	1,759

이 항의 여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적용 설비의 경우, 환경청장은 이 항의 여타 조항에 따라 허용량을 할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표B의 설비 목록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이 조항의 할당량 대신에 이 항의 다른 조항에서 허용할당량을 선택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 (3) 2000/1/1일부터, 환경청장은 1990/10/1~1992/12/31일 사이 상업가동을 착수하거나 착수하였던 유틸리티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에게 Btu 기준으로 65% 용량계수에서 설비의 연간연료소비량에 0.30lbs/mmBtu 혹은 설비의 이산화황 허용 배출비율(필요하다면 lbs/mmBtu으로 환산) 중 적은 쪽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4) 2000/1/1일부터, 환경청장은 1990/12/31 전 공사를 착수하고 1993/1/1~1995/12/31 사이 상업가동을 개시한 유틸리티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에게 Btu 기준으로 65% 용량계수에서 설비의 연간연료소비량에 0.30lbs/mmBtu 혹은 설비의 이산화황 허용 배출비율(필요하다면 lbs/mmBtu으로 환산) 중 적은 쪽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5) 2000/1/1일 이후, 1985/1/1~1987/12/31일 사이 기존의 가스연소 방식에서 석탄연소¹⁾방식으로 전환 하였고, 1978년도 발전소산업연료이용법(42 U.S.C. 8301 et seq, 폐지:1987)²⁾ 302(b)항에 따라 최종 혹은 예정 금지명령을 받았던 기존 유틸리티설비가 Btu 기준으로 65% 용량계수에서 설비의 연간연료소비량에 설비의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 이산화황 배출비율(필요하다면 lbs/mmBtu으로 환산) 중 적은 쪽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연간 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가 설비의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허용량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A)¹⁾ 환경청장이 410조에서 시설 지정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

1) 아마도 “석탄연소”일 것임.

2) 1987년도발전소공업연료사용법 301(b)항은 1987년에 폐지됨. 공법 95.620, 301(b)항 (92 Stat. 3305)은 전에 42 U.S.C. 8341(b)에 분류되었다가1981/8/13일자에 폐지되고, 공법 97.35, 1021(a)항 (95 Stat. 614)항으로 대체됨.

하고, 이 장의 조항은 ‘소규모전력생산적격시설’이나 ‘적격폐열시설’(연방전력법 3(17)(C) 3(18)(B)항의 의미 내)이나 416조에2) 규정된 대로 ‘신규독립전력생산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416조 용어정의3)의 (iii)목이 다음의 경우 입법일자 현재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4)

- (i) 해당전력판매약정이 체결 완료되었음
- (ii) 시설이 전력공급시설이 시설과 전력판매약정, 구매용량을 체결하거나(전기 공급시설의 전력구매조건을 정하기 위해) 중재요구를 하는 주 행정당국 명령의 대상임
- (iii) 전기 공급시설이 이전 공급가나 더 낮은 가격으로 시설에서 공급될 전력구매를 약정한 의향서나 유사한 증서를 발급하였고, 이 약정이 적정기간 내 실행될 것임.
- (iv) 시설이 유틸리티 경쟁 입찰 신청에 입찰자로 선정되었음.

(h).오일소비량 10% 미만인 오일 및 가스 연소설비

- (1) 2000/1/1일 이후, 1980~1989년 중 Btu기준으로 연평균 연료소비량이 천연가스의 형태로 90%를 초과한 오일 및 가스 연소 유틸리티설비가

설비의 기준량에 설비의 1985년도 실제 배출비율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연간 이산화황배출한도량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다만,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가 설비의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허용량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1) (6)조항에 (B)항목 없음. 공법 101.549, 401조 참조 (104 Stat. 2611).

2) 쉼표는 “416”뒤, “제외하고”앞에 들어가야 할 것임.

3) “용어정의의 (iii)목”은 아마도 “용어 정의 (C)항목”일 것임.

4) “입법일자”는 “공법101.549 (104 Stat. 2399)입법일자”로 읽혀야 함.

(2)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1)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2000/1/1일부터, 그 후 매년 2009년까지, 환경청장은 (1)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의 경우 설비의 기준량에 0.050lbs/mmBtr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양으로 (a)(2)항에 따라 생성된 보유량에서 허용량을 매년 할당하여야 한다.

(3) 403(a)(1)항 및 (1)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2010/1/1일부터, 환경청장은 (1)조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의 경우 설비의 기준량에 0.050lbs/mmBtr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매년 할당하여야 한다.

(i)고성장 주의 설비. (1)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이 조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2000/1/1일부터, 환경청장은 이 조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고 다음 주에 소재한 설비의 경우

(A) 1980~1988사이 연령, 성별 및 변화요인 별로 실시한 주민구조주택통계에 따라 인구성장이 25%를 초과하였고 1981~1988에 미국통상부에서 할당을 받은 경우

(B) 1988년 설치전력생산량이 3천만 kw이상인 경우, 소유자나 운용자의 선택으로 1980~1989년 연속 3년 동안 Btu 기준으로 설비의 연평균연료소비량을 반영하도록 조정되고 설비에 적용할 수 있고 이 조 배출한도요건에 따른 설비에 할당되었을 할당량과 이 조의 배출한도요건에 따른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 사이의 차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매년 할당하여야 한다. 이는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이 총 연간 4만을 초과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이 항에서 부과된 4만 허용량제한을 충족하는데 필요하다면, 환경청장은 안분하여 이 조항의 설비에 할당된

추가 연간 허용량을 줄여야 한다.

(2) 2000/1/1일부터,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이 조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환경청장은 (b)(1)항의 배출한도요건을 따르는 설비의 경우, (A) 1980년도 실제 혹은 허용 배출비율 중 적은 쪽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50% 이상이나 감소하였고, (B) 실제배출비율이 2000/1/1일자 현재 1.2lbs/mmBtu 미만이고, (C) 1970/1/1일 후 가동을 시작하였고, (D) 상공용 총 전력판매량이 1980년과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사이에 20%이상 증가한 유틸리티 회사가 소유하며, 전(全)사적 화석연료 이산화황 배출비율이 1980~1988에 40% 이상 감소한 경우, 소유자나 운용자의 선택으로 1980~1989년 사이 연속 3년 동안 Btu 기준으로 설비의 연평균연료소비량을 반영하도록 조정되고 설비에 적용할 수 있고 이 조 배출한도요건에 따른 설비의 경우 할당되었을 할당량과 (b)(1)항의 배출한도요건에 따른 설비에 할당된 허용량 사이의 차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하되,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이 총 연간 5,000을 초과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이 항에서 부과된 5,000 허용량제한을 충족하는데 필요하다면, 환경청장은 비례로 이 조항의 설비에 할당된 추가 연간 허용량을 줄여야 한다.

(j) 특정 시영발전소. 2000/1/1일부터,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으로서 403(a)(1)항 및 이 조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 외에, 환경청장은 명목상 생산량이 40 MWe이하인 시영 오일가스 연소 유틸리티설비에 대해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 이산화황 배출비율 중 적은 쪽이 1.20lbs/mmBtu 인 경우, 60% 용량계수에서 Btu 기준으로 설비의 연평균연료소비량에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 배출비율 중 적은

쪽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양으로 매년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42 U.S.C. 7651d]

주 정부 배출량이 0.80 lbs/mmBtu 이하인 경우 허용량

406조. (a) 주지사의 선택.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 외에, 주지사의 선택이 있는 때, 화석연료연소 유틸리티 증기생성설비에 대해 산출한 평균이 1985년 주 전체 연간 이산화황배출비율이 0.80lbs/mmBtu 이하이고, 2001/1/1일부터 2009년까지 매년, 환경청장은 II 단계 보너스허용할당량 대신에, 그 주의 앞서 언급한 설비에 405(a)(2)항에 따라 생성된 보유량에서 선택 자격이 있는 주의 화석연료연소 유틸리티 증기생성설비에서 1985년 생산된 전력 중 설비의 비례 몫을 곱하여 125,000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b) 403(a)(1)항에 따라, (a)¹⁾ 조항의 선택권이 있는 주지사는 환경청장에게 선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지사가 환경청장에게 자신의 선택을 통보하지 못할 경우, 환경청장은 405조²⁾에 따라서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c) 2010/1/1일 이후 허용량. 환경청장은 405조에 따라 이 조의 규정을 따르는 설비에 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42 U.S.C. 7651e]

질소산화물배출감축프로그램

407조. (a) 적용 가능성. 석탄연소 유틸리티설비가 404, 405,³⁾ 409조

1) "(a)"항을 말함.

2) 선택하지 못할 때 적용할 수 있는 403(a)항을 참조.

에 따라 영향권 내 설비가 된 날짜에, 혹은 404(d)이나 409(b)항의 조항을 따르는 설비가 SO₂ 감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날짜에, 그와 같은 설비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영향권 내 설비가 되며, 여기 제시된 대로 질소산화물의 배출한도를 따라야 한다.

- (b) 배출한도.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아래 유틸리티보일러 목록 종류별로 질소산화물의 연간허용배출한도를 정하여야 하며, 이 한도는 아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하되, 환경청장이 보일러 종류별 목록의 최대비율이 저(低) NO_x 버너기술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없다고 발견하면 유틸리티보일러 종류별 목록에 있는 비율보다 더 높게 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최대허용배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A) 접전형 연소보일러는, 0.45 lb/mmBtu;

(B) 건식 바닥벽형 연소보일러는 (전지 버너기술 응용설비는 제외), 0.50 lb/mmBtu.

1995/1/1일 이후, 이 조항의 날짜에, 그리고 목록의 종류에 속하고, 영향권 내 설비인 설비가 이 조항에서 환경청장이 정한 배출비율을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 불법이다.

- (2) 1997/1/1일 이후,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lbs/mmBtu, 연평균기준으로 다음 유틸리티 보일러 종류별로 질소산화물의 허용배출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A) 습식 바닥벽 연소형 보일러

(B) 사이클론형

(C) 전지 버너기술 응용설비

(D) 기타 유틸리티보일러 종류

3) “혹은”이 와야 함.

환경청장은 이 비율을 (b)(1)항에서 정한 질소산화물 제어 비용에 필적할 수 있는 최상연속배출감축시스템을 개조 응용하여 감축달성가능성정도에 기초하여야 하며, 가용 기술, 비용 및 에너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1997/1/1일 이내, 환경청장은 접선형 연소 건식 바닥형, 벽연소형 보일러(전지 버너형 제외)의 해당배출한도를 수정하여 환경청장이 더 효과적인 저 NO_x 버너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더 엄격히 적용할 수 있지만, 404조에서 영향권 내 설비로 (b)(1)항의 요건을 따르는 어떠한 설비도 수정배출한도를 따르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c) 수정 성과기준. (1)1993/1/1일 이내, 환경청장은 전기 공급시설 및 비 유틸리티 설비를 포함하여 화석연료연소 유틸리티 증기생성설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해 111조의 수정성과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994/1/1일 이내, 환경청장은 이러한 수정성과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수정성과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감축을 위한 방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d) 대체 배출한도. 허가 당국은 이 조의 적용대상 설비 소유자나 운용자의 요청이 있는 때, 다음의 결정사항에 대해 (b)(1) 혹은 (b)(2)항에서 정한 한도보다 덜 엄격한 배출한도를 허가하여야 한다.

(1) (b)(1)항의 적용설비가 저 NO_x 버너기술을 사용하여 한도를 충족할 수 없음

(2) (b)(2)항의 적용설비가 환경청장이 정한 배출한도의 기초가 된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비율을 충족할 수 없음.

허가 당국은 이 결정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당국에 만족스럽게 소유자나 운용자가 다음과 같이 제시한 것에 기초하여야 한다.

(1)¹⁾ 해당 배출비율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제어장비를 적절히 설치하였음

(2)²⁾ 15개월 기간 동안(혹은 기타 환경청장이 규정을 통해 정한 기간) 이 장비를 적절히 가동하였으며, 이 기간 중 설비가 해당배출비율을 충족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가동감시데이터를 제공함

(3)³⁾ 설비가 연평균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배출비율을 명시하였음

허가당국은 III장⁴⁾ 파트 B 408조에 따라 문제의 설비에 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가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i) 위 (2)항목에 언급된 증명기간에 설비가 배출비율을 초과하는 비율로 배출하도록 허가함

(ii) 증명기간이 끝날 무렵에 (2) 및 (3)조항의 대체 배출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가동허가를 수정함

대체배출한도가 정해진 (b)(1)항의 적용설비는 저 NO_x 버너급 이상에 제어기술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 조의 어느 것도 소유자나 운용자가 배출한도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NO_x 제어기술을 설치, 운용하지 못하게 미리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b)(1)항의 배출한도요건 적용대상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1995/1/1일까지 시스템 신뢰성과 일치하여 설비에서 설치가동을 하는데 적절히 공급되지 못함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증명할 경우, 이때 환경청장은 15개월 기간까지 설비에 대한 준수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운용자는 환경청장에게 앞 문장의 결정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환경청장은 청구서 제출 수 3개월 이내 청구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A)항일 것 임. 공법 101.549 (104 Stat. 2614) 401조 참조

2)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B)항일 것 임. 공법 101.549 (104 Stat. 2614) 401조 참조

3)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C)항일 것 임. 공법 101.549 (104 Stat. 2614) 401조 참조

4)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V장 일 것임.

(e) 배출량 산출평균 (b)(1), (2), 혹은 (d)항의 배출한도를 따르는 대신, 이 조에서 정한 배출한도를 하나 이상 적용하는 둘 이상의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는 허가당국에 (1)문제의 설비에 대해 질소산화물의 연간실제배출평균비율(lbs/mmBtu)이 (2)¹⁾ (b) (1) 및 (2)항에서 정한 배출비율에 따라 정한 한도와 일치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설비가 가동되었다면 이 설비의 Btu 중량별 연평균배출비율과 같거나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보장된 설비의 경우 같은 시기의 다른 연간배출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 허가당국이 1990년²⁾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위 조항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 허가당국은 위 설비에 III장³⁾ 파트 B 및 408조에 따라 같은 시기의 다른 연간배출비율을 허용하는 가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2 U.S.C. 7651f]

허가 및 준수계획

408조. (a) 허가프로그램. 이 장에 기술된 조항은 403조를 조건으로 이 장 적용설비에 발급된(그리고 집행된) 허가서로 V장 조항에 따라 이 장에서 수정된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환경청장이나 혹은 승인허가프로그램의 주에서 발급한 그와 같은 허가는 다음 사항을 금하여야 한다.

- (1)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 또는 소유자나 운용자의 위임대리인이 설비 관련하여 보유한 이산화배출허용량을 초과한 이산화황연간배출량.
- (2) 해당 배출비율의 초과사항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항”일 것임.

2) 세미콜론은 아마도 생략해야 함.

3) 아마도 V장과 관련됨.

- (3) 허용량이 할당된 연도 전에 허용량의 사용, 그리고
- (4) 허가서의 여타 조항의 위반.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해 발급될 허가서는 V장에도 불구하고 5년의 기간 동안 발급되어야 한다. 이 장 요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V장과도 불일치한 어떠한 허가서도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 (b) 준수계획. 최초허가신청은 공급원이 이 장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준수계획을 수반하여야 한다. 영향권 내 공급원이 영향권 내 설비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이 계획은 그와 같은 모든 설비를 다루어야 하며, 502(c)항의 목적을 위해 그 공급원은 ‘시설’로 간주하여야 한다. 준수계획에 관해 이 조 또는 V장의 어느 것도 허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c)(1)(B)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404, 405 및 407조의 배출한도요건을 적용하는 설비의 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이 설비가 시기적절하게 각 조의 배출한도요건을 충족하거나, 404조 및 405조의 배출한도요건의 경우에 소유자 및 운전자나 설비의 총 연간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려면 허용량을 보유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 조 및 V장의 준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404(b), (c), (d), 혹은 (f)¹⁾항, 407 (d) 혹은 (e)항, 409조 및 410조에 따라 허가된 준수대체방법을 이용하여 이 장 요건을 충족할 설비의 경우,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준수계획, 허가신청서 및 허가는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 대체 준수방법과 관련하여 설비가 이 장에서 허가한 방식 및 시기에 여러 대체 준수방법에 의존할 일정 및 수단을 포괄하여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용량 양도에 대한 환경청장

1) 아마도 쉽표가 와야 함.

의 기록은 제출되거나 승인된 허가신청서, 준수계획 및 허가서를 자동으로 수정한다.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1) 공급원에게 국가대기질 주요 기준달성의 증명
- (2) 둘 이상의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전자로부터 영향권 내 공급원에서 준수달성을 위한 전체계획을 제공하는 통합 준수계획

(c) 단계허가. 환경청장은 404조 및 407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에게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및 준수계획.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 자 후 27개월 이내, 404조 및 407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은 (3)조항에서 환경청장이 발효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공급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은 이 장 및 402(a)항²⁾의 목적을 위해 소유자 및 운전자나 그 위임대리인에 구속력이 있으며, 공급원에 대해 환경청장이 허가를 발급할 때까지 허가서 대신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B) 404조 및 407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에 대해 그 소유자나 운전자나 기준선과 비교할 때 설비의 활용도를 줄이거나 설비가동을 중지하여 그 조의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제안한 준수계획의 경우, 소유자나 운적자는 준수제안계획에 영향권 내 공급원에서 감축생산량을 보완할 발전량을 제공하는 설비의 명세서 또는 에너지보존대책을 활용하거나 설비효율성을 높여 설비활용도를 줄이겠다는 증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발전량 보완에 사용할 설비는 404조 및 407조의 영향권 내 설비는 아니지만 이 장에 규정된

2) 402조는 (a)항이 없음.

설비 요건을 적용하며 404조의 영향권 내 설비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쪽에 설비의 기준량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연간배출한도량으로 이 보완설비에 허용량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준수계획에 대한 EPA 조치. 환경청장은 각 준수제안계획을 심사하여 이 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완비된 제출서를 수령한 후 6개월 이내 이 계획을 승인 또는 부결을 하여야 한다. 계획이 부결된 경우, 환경청장이 이 장 요건과 일치하여 환경청장이 부결의 일환으로 규정한 기간 내에 환경청장이 요구하는 변경사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3) 규정: 허가서 발급.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V장에 따라 규정을 공표하여 이 장 영향권 내 공급원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하는 연방허가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표 후, 환경청장은 404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에게 403조에서 규정된 허용량 및 404조의 요건을 이행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허가서는 (1)조항에서 제출한 준수계획 및 허가신청서를 대신한다.
 - (4) 수수료. 1995~1999년 중, 수수료는 404조의 영향권 내 설비인 경우 배출과 관련하여 110(a)(2)(L)항이나 502(b)(3)항에 따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d) 2단계허가. (1) (A) 403(e)항에서 요구된 신규 전기 공급 증기생성 설비가 허용량을 갖도록 하는 허가서, (B)405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이나 설비, 그리고 (C) 407조의 질소산화물감축 대상 기존설비를

규정하기 위해서, 설비나 공급원이 하나 이상 소재하는 주는 V장에서 규정된 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프로그램을 V장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승인이 있는 때, 승인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설비나 공급원에 대해 환경청장은 V장에서 규정된 허가서 발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 (2) 405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은 1996/1/일 이내 허가당국에게 그 공급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1997/12/31일 이내, 승인된 허가 프로그램의 해당 주는 V장 및 이 장 요건을 만족하고 주에 (2)조항의 준수계획 및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405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996/7/1일 까지 허가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은 주의 경우, 환경청장은 1998/1/일 이내,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서 및 계획이 기한 내 (2)항에 따라 접수된 영향권 내 공급원의 경우,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과 그 수정안은 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에 구속력이 있으며, 허가당국이 이 영향권 내 공급원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할 때까지 이 장 V장 목적을 위해 허가서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미합중국법전 V장 558(c)(갱신 관련)항의 규정은 이 장 및 V장의 허가당국이 발급한 허가서에 적용된다.
- (4) 이 항에 따라 영향권 내 공급원에 발급된 허가서는 영향권 내 공급원에서 영향권 내 설비가 이산화황 연간 배출량을 설비의 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위임대리인이 보유한 이산화황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없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e) 신규 설비. 신규 전력공급 증기생성설비가 있는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용자는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을 허가당국에 (1)2000/1/1일이나 92)설비가동개시일자 중 늦은 날짜 전 24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당국은 V장 및 이 장 요건을 만족하는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f) 기타 특정 제한대상 설비. 407조의 배출비율요건 적용대상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 또는 위임대리인은 1998/1/1일 이내 허가당국에 설비에 대한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당국은 감시보고요건 등 V장 및 이 장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자나 운용자에게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g) 신청서 및 준수계획 수정. 이 조의 신청서 및 준수계획을 제출한 후 어느 때라도, 신청인은 이 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서 및 준수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을 심의하는데 있어, 허가당국은 규제 공급시설의 경우에 해당 전력요금제정 기관과, 그리고 규제 외 공영공급시설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h) 금지. (1) 이 장에서 허가신청서나 준수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소유자나 운용자 또는 위임대리인이 이 조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신청서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 조를 이행하는 규정을 따르지 못하면 불법이다.
- (2) 어느 자가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수정안 포함)이나 승인된 허가프로그램의 주나 환경청장이 발급한 허가서의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 적용 대상 공급원을 가동하면 불법이다. 이 항의 목적에 맞게, 이 장 공급원의 경우 V장에 따라 발급되고 이 장을 준수하는 허가서를 504(f)항에

규정된 대로 준수하면 이 항뿐만 아니라 502(a)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3) 전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장이나 V장의 어느 것도 승인된 허가서나 준수계획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력공급 증기생성설비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설비가 113조 해당 집행규정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i) 복수 소유권자. 소유자나 운용자의 위임대리인이 허용량 보유, 배분과 허용량관련 거래이익금 등 이 장에서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위임증서를 접수 완료할 때까지는 어떠한 허가서도 이 조에서 영향권 내 설비에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설비의 법적, 정당한 권리나 임차권 이해관계의 복수권리자가 있는 경우, 또는 유틸리티 혹은 산업용 소비자가 설비수명 기간 내 영향권 내 설비, 전력 확정계약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경우, 증명서는 (1) 허용량 및 허용량 관련 거래이익금은 소지자의 법적, 정당한, 임차권이나 계약상 유보조항이나 권리에 비례하여 보유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2) 복수소지자가 계약에 의해 상이한 허용량분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허용량 및 허용량 관련 거래이익금은 계약에 따라서 보유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무이자 임대인이나 임대를 통해 정당한 이자를 받고 임대료 지급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권 내 설비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소득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기간 중이나 그 후에 이 항에 제공된 대로 허용량을 보유하거나 분배할 목적으로 법적, 정당한, 임차나 계약상의 이자 소지자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임차약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의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 영향권 내 설비의 법적, 정당한 권리나 이해관계를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명서는 설비가 받은 허용량을 모두 그 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U.S.C. 7651g]

재동력 공급원

409조. (a) 이용 가능성. 1997/12/31일 이내, 405 (b) 및¹⁾ (c)항의 배출 한도요건을 따르는 기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허가당국에게 405조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설비가 우수청정석탄기술로 보강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증명의 일환으로 소유자나 운영자는 2000/1/1일 이내, 이러한 동력수단 교체를 위해 예비 설계공학 작업 관련 서류, 설비를 보강할 장비 대부분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계약 및 환경청장이 규정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력보강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공급설비를 다른 곳에 소재한 신규 공급설비로 대체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기존 설비의 동력수단을 교체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 (1) 교체 설비는 기존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소유자나 운영자가 지정한다.
- (2) 기존 설비는 지정된 교체설비가 상업가동에 들어가는 일자에 가동을 중지한다.

(b) 연장. (1)(a)항 요건을 만족하는 소유자나 운영자는 2000/1/1부터 2003/12/31일까지 설비에 대한 배출한도요건의 연장이 허용된다. 연장은 408조에 따라 공급원에 발급된 허가서에 연장일자까지 2단계 요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준수일정 및 기타 요건과 함께 명시

1) “와”단어는 아마도“혹은”일 것임.

되어야 한다. 이 조에서 연장승인이 난 설비는 이 법 111(j)항의 권리포기 자격이 없으며, 405조의 적용대상인 설비인 것처럼 이 장 요건을 계속 따라야 한다.

(2) 기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청정석탄설비로 설비를 재보강하기 위해서 (1)항의 연장 승인을 받았고, (B)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에 이용할 재보강 기술을 적절히 구성, 설비에 시험을 완료하였지만 그럼에도 배출한도요건을 달성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개연성이 없음을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설비는 다른 청정석탄기술이나 기타 가용 제어기술을 이용하는 장비나 시설로 개조하거나 재보강할 수 있다.

(c) 허용량. (1) 이 조의 연장기간 중, 환경청장은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다른 할당량 대신에 1995년도의 영향권 내 설비의 기준량에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주 이행계획 배출한도나 실제 배출비율 중 적은 쪽을 곱한 양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연간허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할당량은 이 장 배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타 공급원에게 양도하거나 공급원이 사용할 수 없다. 공급원 소유자나 운영자는 연장승인을 받은 영향권 내 설비에 재보강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동을 중단하는 날짜보다 60일 전 미리 환경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이 날짜에 유효하며, 이 설비는 405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재보강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 설비 가동이 중지된 연도의 허용량은 설비의 기준량에 1.20lbs/mmBtu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비율 배분한 값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양도할 수 있다.

- (3) 재보강 작업 완료 후 연도에 기존 공급설비의 허용량은 기존 설비의 기준량에 1.20lbs/mmBtu를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4) 403(a) 및 (e)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량은 기존 설비를 대체하는 지정 대체 설비에 대해서 기존 설비의 항우 허용할 당량 대신에 이 조에 따라 할당을 하여야 한다.
 - (5) 403(a)(1)항에 제시된 총 배출한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항의 연장승인을 받은 설비는 연장 기간 중 각 연도에 (3)조항에서 할당된 허용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 (d) 통제요건. 이 조의 연장 자격이 있는 설비로 이 법¹⁾에서 공표된 오염물질의 시간당 실제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 법 111조의 성과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비의 대체 설비로 (1) 지정되고, (2)(b)항의 연장자격이 있고, (3) 기존 설비와는 다른 부지에 소재한 신규설비는 111조에서 부과된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e) 신속한 허가절차. 주의 허가당국 및 해당되는 경우 환경청장은 이 조의 연장자격이 있는 공급원에 대해 이 법 I장 파트 C 및 D의 허가신청서를 신속히 심의하도록 장려한다.
- (f) 금지. 재보강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이 조 혹은 이 조 이행요건의 허가규정, 보유된 허용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황 배출 금지조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면 불법이다.

[42 U.S.C. 7651h]

1) 원본이 그러함. 아마도 “이 법”일 것임.

추가 공급원 선정

- 410조. (a) 적용 가능성. 현재, 향후에도 403(e), 404, 혹은 405항의 영향권 내 설비가 아니거나 (d)항의 프로세스 공급원이고,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설비나 공급원을 영향권 내 설비로 지정하고 이 장에 따라 허용량을 수여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신청서는 408조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준수제안계획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사항을 승인하여야 하며, 지정된 설비나 공급원은 허용량을 할당받고, 이 장 목적을 위해 영향권 내 설비가 된다.
- (b) 기준량 설정. 이 조에서 지정된 설비의 기준량은 환경청장이 규정에 의해 연료소비량 및 1985,1986,1987년 각 연도에 설비의 연료소비량 및 가동데이터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면, 환경청장은 다른 대표 자료에 기초하여 기준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 (c) 배출한도. 이산화황 연간배출한도는 기준량에 설비의 1985년도 실제 혹은 허용배출비율(lbs/mmBtu)이나, 1985년에 설비가 가동되지 않았다면, 1985년 이후 (환경청장이 정한) 연도에 설비의 실제 혹은 허용배출비율 중 적은 쪽을 곱하고 2,000으로 나눈 결과와 같아야 한다.
- (d) 프로세스 공급원.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산화황 배출 프로세스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허용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급원을 적용대상 설비로 지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공급원을 규정하고, 배출한도를 정하고, 가동 배출 기준량 및 기타 자료요건을 정하며, CEMS나 기타 감시요건을 규정하며,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허가, 보고 및 기타 요건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e) 허용량 및 허가. 환경청장은 이 조의 적용대상 설비에 403조에 따라 (c) or (d)항에서 산출한 배출한도와 같은 양으로 허용량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허용량은 403조의 규정에 따라서, 403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은 403, 408, 411, 412, 413, 및 414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f) 제한. 이 조에서 지정된 설비는 활용축소나 폐쇄 결과로 생성된 허용량을 양도하거나 예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 허용량이 이 조에서 지정된 설비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이 장 요건을 적용하는 다른 설비로 생성된 열에너지로 대체한데서 활용축소나 폐쇄가 일어나는 정도로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정된 설비의 허용량이 다른 교체 설비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월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청장은 이 조에서 지정된 공급원에 이 법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공급원을 가동하여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많은 양으로 허용량을 할당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허용량은 이 법 다른 요건을 위반한 설비 가동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 (g) 이행.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h) 소규모 디젤 정유소. 환경청장은 1993/10/1일 이후 디젤연료를 생산하고 이 법¹⁾ 211(i)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디젤 정유소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허용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아마도 “211(i)”일 것임.

- (1) 허용량 기간. 허용량은 1993/10/1~1999/12/31의 기간 동안만 이 항에서 할당할 수 있다.
- (2) 허용량 결정.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허용량은 소규모 정유소의 탈황작업에 기인할 수 있는 이산화황 연간감축량을 2,00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한다.
- 산출 목적으로 디젤연료에서 제거한 황의 농도는 0.274%(중량별)과 0.050% 사이의 차이이다.
- (3) 정유소 자격. ‘소규모 정유소’란 용어는 다음의 정유소나 정유소의 일부를 말한다.
-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에너지부에 보고된 대로 원유 순정품 생산량이 1825만 배럴/년 미만.
- (B)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원유 순정품 총 생산량이 5018.75만 배럴/년 미만인 직영 정유소나 관리를 받는 곳
- (4) 정유소별 제한. 이 항에 따라 소규모 정유소에 매년 할당할 수 있는 최대허용량은 1,500,000이다.
- (5) 총 허용량 제한. 특정 연도에, 이 항에서 할당되는 총 허용량은 35000을 넘지 않는다.
- (6) 입증 필요성. 환경청장은 소규모 디젤 정유소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환경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규정 기한 내, 고속도로 외 사용 자동차 디젤연료를 포함하여 허용량을 청구한 정유소가 생산한 자동차 디젤연료가 이 법²⁾ 211(i)항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 항에 따라 허용량을 할당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51i]

2) “211(i)”일 것임.

과다 배출량 벌금

411조. (a) 과다배출량 벌금. 403, 404, 405, 406, 407 혹은 409조¹⁾의 요건을 따르고, 410조에 따라 지정되고, 특정 연도에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황의 경우 그 연도에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나 운영자가 보유한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설비나 프로세스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과다배출량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과다배출량이 110(f)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벌금은 설비의 배출한도요건을 초과한 총 배출량에 기초하여 산출하며, 이산화황의 경우 그 연도에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운영자가 보유한 허용량에 2,000달러를 곱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벌금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이 공표할 규정에 제공된 대로 의무사항이며 요구가 없더라도 환경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납부액은 잡비징수법²⁾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라 벌금을 정히 납부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법의 다른 조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과징금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의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b) 과다배출량 상쇄. 특정 연도에 설비의 배출한도요건이나 당해 연도에 설비에 보유된 허용량을 초과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영향권 내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다음 연도에 또는 환경청장이 규정할 수 있는 연장기간에 동량으로 과다배출량을 상쇄할 의무가 있다.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과다배출량이 발생한¹⁾ 연도 말

1) ‘조’일 것임.

2) 잡비징수법은 인정된 약식표제나 흔한 명칭은 아님. 자금예치 관련 규정은 31장 3302조 참조.

1) 공법101.549 (104 Stat. 2633)은 “발생했다”를 “발생해다”로 표기함.

이후 60일 이내 환경청장 및 공급원이 소재하는 주에 상쇄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예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계획서가 제출된 대로, 변경된 대로나 조건이 부과된 대로, 환경청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 이 계획서는 나중에 심사를 하거나 허가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설비가동 허가조건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또한 과다배출량이 발생한 연도 후 계속 상쇄가 필요한 연도나, 당해 연도에 공급원에 할당된 양에서 과다 배출량과 동량의 허용량을 공제하여야 한다.

- (c) 벌금 조정.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입법일자에, 그 후 매년 (a)항에 명시된 벌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지수에 기초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 (d) 금지. 이 조의 벌금 및 상쇄의무가 있는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a)항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2)(b)항에서 요구한 준수계획을 제공하고, 그 후에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3)(b)항에서 요구된 대로 과다배출량을 상쇄하지 못하면 불법이다.
- (e) 유보조항. 이 장 어느 조항도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13, 114, 120, or 304조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달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 U.S.C. 7651j]

감시,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412조. (a) 적용 가능성. 이 장 적용을 받는 공급원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공급원의 영향권 내 설비에 CEMS를 설치, 가동하고, 각 설비에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불투명도 및 유량체적 등의 데이터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청장은 규정에 의해 1990년도 청정

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CEMS 관련하여, CEMS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밀성, 신뢰성, 접근성 및 적시성을 지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된 대체 감시시스템 관련하여,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록 유지 및 정보 보고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배출한도 또는 허용시스템의 질서정연한 기능을 보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대체 감시시스템을 갖춘 설비로 대체 준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이 장에서 의도한 배출량이 확실히 감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이상의 설비가 굴뚝 하나를 사용할 경우, 각 설비에 별도로 CEMS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설비에 대해 규정은 소유자나 운영자가 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준수결정을 허가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b) 1단계 요건.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6개월 이내, 404조의 영향권 내 설비, (b)항 및 (c)항에 따라 영향권 내 설비가 된 설비 및 (d)항의 적격 설비 등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CEMS를 설치, 가동하고, 데이터 질을 확보하고, (a)항에 따라 기록 및 보고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 (c) 2단계 요건. 1995/1/1일 이내, (a)항 및 (b)항의 요건을 이전에 충족하지 못했던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CEMS를 설치, 가동하고, 데이터 질을 확보하고, (a)항에서 발한 규정에 따라 기록 및 보고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규 공급시설의 상업가동이 시작되는 때, 설비는 (a)항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d) 배출데이터의 불가용성. CEMS 데이터나 (a)항에서 환경청장이 승인한 대체 감시시스템의 데이터가 이 장에서 데이터가 요구된 특정 연도 기간 중 영향권 내 설비에 이용할 수 없고, 소유자나 운

영자가 이 기간 중 환경청장에게 만족스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경청장은 이 설비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걸쳐 통제되지 않은 방법으로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이후 18개월 이내 발효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해 그 기간의 배출량을 산출하는 수단을 규정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운영자는 그 규정에 따라 411조의 상쇄 및 과다배출량 수수료납부 의무가 있다. 이 조에 따라 벌금을 정히 납부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법의 다른 조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과징금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설비 소유자나 운영자의 의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 (e) 금지.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이 조의 요건 및 이 조를 이행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원을 가동하면 불법이다. [42 U.S.C. 7651k]

다른 규정과의 일반 적합성

413조. 명시 규정을 제외하고, 이 장 요건을 준수한다고 해서 이 장 적용대상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이 법의 여타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배제하거나 면제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51l]

집 행

414조. 이 장 적용대상자가 이 장에 따라 공표된 규정의 금지조항이나 요건을 위반하면 불법이다. 이 장에서 규정된 기타 요건 및 금지조항 외에, 영향권 내 설비를 가동하여 설비에 보유된 허용량을 초과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면 위반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보유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된 양은 별도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 [42 U.S.C. 7651m]

청정석탄기술의 행정인센티브.

415조. (a) 용어 정의.. ‘청정석탄기술’이란 용어는 이 장 입법일자 현재 널리 사용되지 않는 전기, 프로세스 증기나 산업제품의 생산에서 석탄 활용과 관련된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황 대기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신규 혹은 기존 시설에서 연소 전후, 연소 단계에서 적용된 기술 등을 말한다.

(b) 청정석탄기술증명의 수정 규정

- (1) 적용 가능성. 이 항은 임시 혹은 영구청정석탄기술증명 프로젝트의 설치, 가동, 중지나 불용 목적으로 기존 시설의 물리적 변화나 작업상의 변화에 적용된다. 청정석탄기술증명 프로젝트는 “에너지 및 청정석탄기술부서”란 표제에서 총당된 기금을 청정석탄기술의 상업적 증명을 위해 총 25억 달러 금액까지 사용하는 프로젝트나 환경청에 총당된 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 유사 프로젝트를 말한다. 적격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기부금은 최소한 증명프로젝트 총비용의 20%가 되어야 한다.
- (2) 임시 프로젝트.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운영되고 프로젝트의 관할 주의 주 이행계획 및 프로젝트가 중에, 종결될 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달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타 요건을 이행하는 임시 청정석탄기술 시연 프로젝트의 설치, 가동, 중지나 불용은 시설에 I장 파트 C 혹은 D나 111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영구 프로젝트. 이 장 402(1)에 규정된 대로 동력 수단을 보장하는 영구 청정석탄기술시연 프로젝트의 경우, 어떠한 적격 프로젝트라도 111조의 성과기준이나 시연 프로젝트의 결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파트 C의

심사 및 허가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EPA 규정.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해, 환경청장은 이 항에 있는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111조 및 파트 C 및 D의 요건을 수정하기 위해 해석 재정이나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파트 C 및 D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나 재정은 EPA가 허가당국인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파트 C나 D에서 주가 허가당국이 경우에, 주는 이 항에서 공포된 규정이나 재정을 적용하는 이행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극 청정설비의 재활성에 대한 면제.

가동중지 기간 후 석탄연소유틸리티 설비의 상용 가동개시와 관련된 변화나 물리적 변화는 이 설비에 이 법 파트 C나 111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이 설비가 (1) 1990년도 청정 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 2년 동안 가동된 적이 없었고, 이 설비의 배출량은 입법 시점에 허가당국의 배출량 목록에 계속 이월 중인 경우, (2) 폐쇄 전에 미립자 제거 효율은 98% 이상, 이산화황 제거효율은 85% 이상 달성하는 연속배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개시시점에 저 NOx 버너를 설치하고, (4) 달리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이다. [42 U.S.C. 7651n]

비상시 보증, 경매, 보유

416조. (a) 용어 정의

- (1) ‘독립적 전력생산자’란 용어는 신규 자체 전력생산시설을 하나 이상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 (2) ‘신규 자체 전력생산시설’이란 용어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
- (A) 전기에너지생산에 사용되며, 생산량의 80% 이상은 도매로 판매됨

- (B) 비 상환 프로젝트 자금지원을 받는다(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3개월 이내 에너지장관에 정의한 용어임)
 - (C)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의 제휴회사에(1935년 공공유틸리티지주회사법의 2(a)(11)항에 규정) 판매용 전력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음, 단,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제휴회사로부터 허용량을 확보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
 - (D) 이 장에서의 허용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신규 설비.
- (3) ‘필수 허용량’이란 용어는 2000/1월 1일 후 발생하는 설비의 유용수명 기간 동안 설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허용량을 말한다.
- (b) 특별허용량보유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이 조에 따라 판매될 허용량을 포함하는 특별허용량보유고(Special Allowance Reserve)를 설립하는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1995~1999년에 각 연도별 허용할당량의 2.8%
 - (2) 영향권 내 공급원에서 영향권 내 설비에 부여할 것이며 2000년도에 시작하여 각 연도별 허용량의 II 단계 기초허용할당량의 2.8%
- 환경청장은 이 항의 허용량 판매이익금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 보유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보유 허용량은 이 조의 보유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 (c) \$1,500/톤 가격으로 직접 판매.
- (1) 직접 판매용 하위계좌.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청장은 이 조에서 수립된 특별허용량보유고에 직접 판매 부(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직접 판매 부계좌는 2000년도에 시작하여 각 연도별 5만톤/년의 양으로 허용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판매. 부계좌의 허용량은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 1,500달러/허용량의 가격으로, (3)항에 제공된 방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여 표1에 명시된 양으로 직접 판매에 공여하여야 한다. 직접 판매 부계좌에서 구매 허용량 요청은 접수 순서로 부계좌에 허용량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허용량 구매 기회가 다른 자에게 허용량이 제공되기 전에 이항에 언급된 독립전력생산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자는 구매요청 승인 후 6개월 이내 허용량의 총 구매가격의 50%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남은 50%는 허용량을 양도하는 때나 양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표 1. 1,500달러 가격으로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 허용량

판매연도	현장 판매	사전 판매
1993-1999		25,000
2000년 이후	25,000	25,000

어느 해 현장판매에서 판매된 허용량은 당해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량이다.(나중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예치하는 경우는 제외). 어느 해에 사전 판매에 판매된 허용량은 처음 판매에 제공된 연도 후 7번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량이다. (나중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예치하는 경우는 제외)

- (3) 문서 보증의 자격. 환경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독립전력생산자는
- (A) 이 장에서 요구된 허용량 관련 신규 독립전력생산시설을 건조할 예정임
 - (B) 1990/1/1일 이후, 이 조의 최초 경매일 전 시설건조 자금 지원을 신청할 것이며,

(C) 750달러/톤 가격으로 필수 허용량을 구매하기 위해 표A의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청약서를 제출 완료하였음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이 항의 직접판매 부계좌에서, 보증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필수 허용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환경청장의 보증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4)조항에 제시된 적격 요건에 따라)

허용량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구매가격은 1,500달러/톤으로, 허용량을 구매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가(502(b)(3)(B) (v)항에서 결정된) 199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초과하는 경우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적격 요건. 환경청장이 (3)항에서 발급한 보증서는 독립전력생산자가 환경청장이 만족하게끔 다음 사항을 증명함을 조건으로 한다.

(A) 독립전력생산자는

(i) 허용량이 할당되는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로부터, 410조의 영향권 내 설비가 되기로 선택한 산업공급원으로부터 필수 허용량을 구매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노력, 이 조의 연간경매에서 구매활동을 하였으며,

(ii) 필수허용량을 확보하는데 입찰 활동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B) 독립전력생산자는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로부터, 산업공급원으로부터 필수허용량을 구매하기 위해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임.

(5) 직접 판매 부계좌에서 허용량 보증서 발급. 보증가격을 지급한 때, 환경청장은 보증서에 보장된 허용량을 이 항의 보증서

에 따라 허용량을 구매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보증서가 발급된 자는 보유고의 허용량이 다른 자에게 판매 제공되기 전에 부계좌에서 보증서에 따라 허용량을 구매할 기회를 갖는다.

- (6) 이익금. 미합중국법전 31장 3302조나 기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이 항의 판매 이익금은 판매 후 90일 이내 (b)항에서 허용량이 보유된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에게 비례 배분 기준으로 비용 부담 없이 양도하고, 판매되지 않는 허용량은 (d)항에서 정한 경매판매 부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항의 판매 이익금은 미국의 어느 관리직원이 보유하지 않으며, 미국이나 환경청장에 보내는 수입으로도 다루지 않아야 한다.
- (7) 부계좌 해지. 환경청장이 2년 연속하여 직접 판매 부계좌에서 이용 가능한 허용량의 20% 미만이 이 조항에 따라 구매되었다고 결정하면, 환경청장은 부계좌를 해지하고 허용량을 (d)항의 경매부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

(d) 경매

- (1) 경매 부계좌. 환경청장은 특별보유고에 경매부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경매 부계좌는 1995~1999년 중 각 연도별 15만톤/년, 2000년에 시작하는 각 연도별 25만톤/년으로 경매에 판매될 허용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연간 경매. 1993년에 시작하여 그 후 매년, 환경청장은 (1)항의 허용량이 환경청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에서 12개월 이내, 공표한 규정에 따라 판매에 제공되는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매에서 허용량은 표2에 명시된 양으로 판매에 공여하여야 한다. 경매는 누구에

게든 개방된다. 허용량 입찰을 원하는 자는 (환경청장이 정한 날짜까지) 환경청장에게 특정 가격에 특정 허용량을 구매하는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제공한 비공개 입찰 일정대로) 이 규정은 경매 허용량이 입찰가격기준으로 판매, 할당되며 최고입찰가로 시작하여 경매 판매용 허용량이 모두 할당되었을 때까지 계속됨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유 허용량 구매를 위해 최저가를 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경매에 구매된 허용량은 경매 후 어느 목적으로든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장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표 2.경매에 이용 가능한 허용량

판매연도	현장경매(판매연도)	사전 경매
1993	50,000*	100,000
1994	50,000*	100,000
1995	50,000*	100,000
1996	150,000	100,000
1997	150,000	100,000
1998	150,000	100,000
1999	150,000	100,000
200년 이후	100,000	100,000

현장판매에 판매된 허용량은 달리 명시한 규정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량(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한 경우 제외)이다. 어느 해 사전 경매에서 판매된 허용량은 처음 판매에 제공된 연도 후 7년째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량이다.

* 1995년에만 이용할 수 있음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한 경우 제외).

- (3) 이익금. (A) 미합중국법전 31장 3302조나 여타 법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후 90일 이내, 환경청장은 이 항에 따라 경매에서 이익금을 비례배분 기준으로 (b)항에서 허용량이 유보

된 영향권 내 공급원에서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허용량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옮겨간 자금은 미국이나 환경청장에 들어가는 수입으로 어떠한 목적으로든 다루거나 미국의 관리직원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B) 매해 말, 판매에 제공되었지만 경매에서 판매되지 않은 허용량은 비례배분 기준으로 허용량이 유보된 할당량에서 영향권 내 설비의 소유자나 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

(4) 추가경매참여자. 허용량을 보유하거나 환경청장에서 허용량을 할당받은 자는 환경청장에게 경매에서 판매 공여 목적으로 허용량을 제출할 수 있다. 판매 이익금은 판매시점에 구매자가 판매 허용량을 제출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판매에 제공된 허용량의 보유자는 최저판매가를 명시할 수 있다. 어느 자라도 경매에 제공된 허용량을 구매할 수 있다. 허용량은 (2)항의 경매가 끝난 후 입찰가 기준으로 구매자에게 할당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구매자에게 허용량 판매자에게 이체된 기금은 미국의 관리직원이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이나 환경청장에게 돌아가는 수입으로 다루지 않거나

(5) EPA의 기록. 환경청장은 낙찰가를 포함하여 이 항의 경매의 성격, 가격 및 결과를 기록, 공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조의 요건에 따라 경매결과로 허용량 양도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경매에서 허용량의 양도는 이 장에서 환경청장이 공표한 규정에 따라서 기록하여야 한다.

(e) 판매, 경매 및 보유의 변경. 공지 및 의견 제공 후 규칙제정에 따라 환경청장은 1998년과(사전 경매나 사전 판매의 경우) 2005년

후(현장 판매나 현장 경매) 이 장에 따라 보유, 판매된 허용량을 줄일 수 있다.

- (f) 경매의 중지. 환경청장은 2002년 후 3년 연속하여 경매 부계좌에서 이용 가능한 허용량의 20% 미만이 구매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 조의 경매 및 허용량의 보유를 중지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청장은 위임이나 계약에 의해 환경청장의 감독 하에 미국정부의 관리부서나 비 정부기관, 단체나 조직에 의한 판매나 경매 행위를 규정할 수 있다. [42 U.S.C. 7651o]

V장. 허가

- 501조. 용어 정의
- 502조. 허가 프로그램
- 503조. 허가 적용
- 504조. 허가 요건 및 조건
- 505조. 환경청장 및 인접 주에 대한 통지
- 506조. 기타 권한
- 507조. 소규모 사업 고정 공급원의 기술 환경 준수 지원프로그램

용어 정의

- 501조. (1) 영향권 내 공급원. 이 용어는 IV 장의 용어의 의미를 지닌다.
- (2) 주요 공급원. 이 용어는 고정공급원(이나 인접 지역 내 소재하고 통상의 관리를 받는 고정공급원)을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
- (A) 112조에서 정의한 주요 공급원
 - (B) I장 파트 D 302조에서 정의된 주요 고정공급원
- (3) 준수일정. 이 용어는 집행 가능한 일련의 조치나 과업 등 구제조치의 일정으로 말하며 해당이행계획, 배출기준, 배출한도나 배출금지를 준수하게 한다.
- (4) 허가당국. 이 용어는 환경청장이나 환경청장이 이 장에서의 허가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위임한 대기오염관리기관을 말한다. [42 U.S.C. 7661]

허가프로그램

502조. (a) 위반. 이 장에 따라 승인되거나 공표된 허가프로그램의 유효일자 후, 어느 자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111조나 112조의 영향권 내 공급원(IV장에 규정), I장 파트) C 혹은 D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기타 공급원

주요 공급원 및 기타 공급원(지역 공급원 포함)이나 지정의 근거를 제시한 조사를 포함하여 환경청장이 공표한(공지 및 공공 의견 후) 규정으로 지정된 부문에서 (전부 혹은 일부) 기타 고정공급원을 가동하면 불법이다. 다만, 이 장에서 허가당국이 발급한 허가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항의 어느 것도 공사나 변경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이 법의 해당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 법 해당 조항과 일치하여 하나 이상의 공급원 부문(전부 혹은 일부)을 이 항의 요건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공표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요건을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개연성이 없거나 그 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발견하는 경우이다. 다만 환경청장이 이 요건에서 주요 공급원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b) 규정.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대기오염관리기간이 관리할 허가프로그램의 최소 요소를 정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들 요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허가 신청서 요건, 신청서의 완비성을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한 표준 신청서양식 및 기준을 포함
- (2) 감시 및 보고 요건

1) “파트”일 것임.

(3) (A) 주법이나 지방법이 주 사이 약정에서 이 장에서 허가를 받을 요건을 따르는 모든 공급원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일정 기간에 걸쳐 507조 등 이 장에서의 허가프로그램 요건을 개발, 관리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적정 비용(직, 간접)을 보완하는데 충분한 연간 수수료나 이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항

- (i) 허가 신청이 있는 때 심사 및 조치 업무
- (ii) 소유자나 운영자가 공급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전후 이러한 허가의 조건을(소송비나 기타 집행조치관련 비용을 불 포함) 이행, 집행하는 여부
- (iii) 배출 및 대기감시
- (iv)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나 지침 마련
- (v) 모델링, 분석 및 증명
- (vi) 목록 작성 및 배출량 추적

(B) 허가당국에서 징수한 총 수수료 금액은 다음 요건을 따른다.

- (i) 환경청장은 이 항목 (ii)~(v)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이 (A)항의 모든 공급원에서 오염규제 물질의 25\$/톤 이상이나 환경청장이 허가프로그램의 적정 비용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합친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주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 (ii) ‘오염규제물질’이란 용어는 (I) 휘발성 유기화합물, (II) 111조나 112조에 따라 규제를 받는 오염물질, (III) 국가대기질 주요 기준이 공표된 오염물질(일산화탄소가 이 참고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 (iii) (i)항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허가당국은 오염규제물질을 4천 톤/년을 초과하여 공급원에서 배출하는 양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 (iv) (i)항의 요건은 허가당국이 (i)항에 명시된 금액 미만으로 징수한 금액이 (A)항목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v) (i)항에서 산출한 수수료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시작하여 매년 당해 연도 시작 전에 끝나는 가장 최근의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989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초과하는 비율로 올려야 한다. ((A)항목에서 허가한 적정 비용을 보완할 필요성과 일치하여) 이 항의 목적을 위해,
 - (I) 특정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매해 8/31/일에 끝나는 12개월 기간 말 현재 노동부에서 발표한 모든 도시 소비자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이다.
 - (II) 1989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가장 일치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수정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C) 환경청장이 (d)항에서 운용허가프로그램의 수수료 조항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혹은 환경청장이 (i)항에서 허가당국이 승인된 수수료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환경청장은 이 장에서 위임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A)항목의 공급원에서 적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환경청장이 공표한 허가프로그램의 조항을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비용을 보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ii) 이 항목에서 환경청장이 합법적으로 부과한 수수료미납 공급원은 수수료금액의 50%에 1986년 내국세법전의 6621(a)(2)항예(연방세의 미납이자 산출) 따라 산출한 수수료금액의 이자를 합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iii) 이 항목에서 징수한 수수료, 벌금 및 이자는 미국 재무부의 특별기금에 예치하여 면허 및 기타 업무에 사용되고, 그 후 충당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출될 때까지 충당금 조건으로 수수료 징수기관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지방이나 주 사이 기관에서 징수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A)항목의 허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적정 (직, 간접) 비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을 관리할 적정 인원 및 자금지원 요건

(5) 허가당국이 적정 권한을 갖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 요구사항

(A) 허가서를 발급하고 이 장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급원이 이 법의 적용기준, 규정이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B) 5년을 넘지 않게 확정기간 동안 허가서를 발급

(C) 허가서 발급 또는 갱신이 있는 때 배출한도 및 기타요건을 해당이행계획에 합체할 수 있도록 함

(D) 명분을 위한 허가서를 중지, 변경 또는 철회 및 재발급

(E) 허가서, 허가수수료요건 및 허가서 확보요건, 민사벌금을 각 위반행위에 최대 1만\$/일 이상의 금액을 회수할 권한을 집행하고 적정 형사벌금을 규정.

(F) 환경청장이 이 장에서 적시에 허가서 발급에 반대하는 경우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

- (6) 신청서가 완비된 때 신청서처리, 공지, 공공의견 및 공청회기 회 제공, 신청서, 갱신이나 수정 등 허가서조치의 신속한 심사, 신청인, 공공의견수렴과정의 참여자 및 기타 해당법규에 따라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최종허가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주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간편하며, 합리적인 절차
- (7) 허가당국, 해당당국 및 절차의 부당한 지연에 대항하여 허가 당국이 허가신청서나 허가갱신 신청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 음은(IV 장 503조의 명시기간에 따라) 더 이상을 지연하지 않 고 신청서에 대한 조치를 허가당국에서 취하도록 요구하기 위 해 (6)조항의 어느 자가 주 법원에 사법심사를 받기 위해 제기 한 소송 목적으로만 최종허가조치로 다루어야 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8) 이 법 114(c)항의 규정에 따라 503(e)항의 허가신청서, 준수계 획, 허가 및 감시 또는 준수보고서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당국이 허가신청서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따른 권한 및 적정 절차.
- (9) 주요 공급원에 대해 3년 이상의 조건이 붙은 허가서의 경우, 허가 당국이 허가서발급 후 이 법에서 공표한 해당기준 및 규 정을 합체하기 위해 허가서 수정안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요 건. 이 수정작업은 가능한 신속히, (6)조항의 절차와 일치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준 및 규정의 공표 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 기준이나 규정의 유효일자가 허가서기간의 만료 후 일 자인 경우 수정할 필요는 없다. 허가서 수정은 갱신 관련 요 건을 따를 경우 허가서 갱신으로 다루어야 한다.
- (10) 허가 시설에서(혹은 503(d)항에 따라 가동하는 시설) 허가서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변경을 허용할 규정, 이는 변화가 I장의

조항에 따른 변경이 아니며 허가서에서 허용 가능한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배출비율로 허가서에 표시되든가 총 배출량 측면이든지:1) 이는 시설이 환경청장 및 허가당국에 사전에 최소 7일 전 변경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다만 허가당국이 규정에 긴급 사안에 다른 기한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

(c) 단독 허가서: 복수 공급원이 있는 시설에 단독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d) 제출 및 승인.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주지사는 주법이나 지방법에 따라 혹은 이 장 요건을 충족하는 주 사이 약정에 따라 허가프로그램을 개발,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주지사는 검찰총장(이나 독립적 법적 자문단체가 있는 주의 대기오염관리기관의 경우 변호사)이나 주 사이 기관의 법률담당관으로부터 주, 지방당국이나 주 사이 약정의 범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1년 이내, 그리고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은 이 프로그램을 전부 혹은 일부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b)항에서 발한 규정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이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도로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전부 혹은 또는 부결되면, 환경청장은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수정사항이나 변경사항을 주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지사는 통지를 받은 후 180일 이내 이 항의 심사를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A) 주지사가 (1)항에 요구된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환경청장이 (1)항에서 주지사가 제출한 프로그램을 전부 또는

1) 닫는 괄호가 공법101.549 (104 Stat. 2638)에 생략되었음.

일부 부결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B)항목의 18개월 만료 전에 자신의 재량으로 179(b)항에 명시한 제재를 할 수 있다.

(B) 주지사가 (1)항에서 요구된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1)항에서 주지사가 제출한 프로그램을 제출에 요구된 일자나 부결일자 후 18월 후 전부 혹은 일부 부결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179(a)항에서 결정, 부결이나 조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한 및 조건을 적용하여 179(b)항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C) 179(b)(2)항의 제재는 (A) 혹은 (B)항목의 제출이나 부결을 하지 못하면 달성제외지역으로(I장 파트 D) 지정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따라 그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장 요건을 충족하는 어느 주의 프로그램이 전부 승인되지 않았다면, 환경청장은 (1)항의 프로그램 제출 요구기간 후 2년 후 그 주의 프로그램을 공표, 관리하고 집행을 하여야 한다.

(e) 중단. 환경청장은 이 조의 허가프로그램의 승인통지를 발표한 때 신속히 허가서 발급을 중단하여야 하지만, 그 통지에서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허가서에 대한 관할권을 유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심사과정은 완비되어 있지 않다. 환경청장은 허가서가 허가프로그램으로 발급된 허가서로 대체될 때까지 이 장에서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허가를 계속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이 항의 어느 것도 주에서 발급된 허가서를 환경청장이 집행할 수 있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f) 금지조항. 부분허가프로그램은 최소한 이 장 및 다음 사항을 적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

- (1) ‘영향권 내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IV장에서 정한 모든 요건
- (2) ‘주요 공급원’, ‘지역 공급원’ 및 ‘신규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112조에서 정한 모든 요건
- (3) 이 장에서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급원에 적용 가능한 I장의 요건(112조 제외)

부분 프로그램을 승인하다고 완전한 프로그램을 추가 제출할 의무가 덜어지지도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허가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 법의 제재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g) 잠정 승인. 이 장에 따라 제출된 프로그램(부분 허가프로그램 포함)이 실질적으로 이 장 요건을 충족하지만, 완전히 승인을 얻을 수 없다면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프로그램에 잠정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최종 규칙제정 통지에서 환경청장은 프로그램의 완전 승인을 얻을 수 있기 전에 변경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항의 잠정 승인은 승인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이 정한 날짜에 만료하며, 갱신할 수 없다. 이러한 잠정승인 기간 중에 (d)(2)항 규정 및 (d)(3)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해당 주의 프로그램을 공표할 의무는 보류된다. 이 규정 및 환경청장의 의무는 잠정 승인이 만료한 후 적용되어야 한다.

(h) 유효일자. 허가프로그램은 부분적이든 잠정적이든 이 장에서 승인된 그 유효일자는 환경청장이 승인한 유효일자이다. 허가프로그램이나 부분 허가프로그램의 유효일자는 환경청장이 공표하는 일자이다.

(i) 행정관리 및 집행. (1) 허가당국이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를 이 장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환경청장이 결

정하는 때, 환경청장은 주에 통보를 하고 (2)조항의 18개월 기간 만료 전에 자신의 재량으로 179(b)에 명시된 제재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2) 허가당국이 (1)항의 통지일자 후 18개월 후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를 이 장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환경청장이 결정하는 때, 환경청장은 179(a)항의 결정, 부결 또는 조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한 및 기타 조건으로 179(b)항의 제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3) 179(b)(2)항의 제재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집행, 관리하지 못하는 게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에 따라 그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환경청장이 어느 주에 대해서 (1)항의 조사를 완료한 때, 주가 조사일자 후 18개월 이내 하자를 수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청장은 조사일자가 지나고 2년 후 이 장에 따라 해당 주의 프로그램을 공표,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이 장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에도, 이 조항에서 환경청장이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시기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는 허가당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61a]

허가 적용

503조. (a) 적용 일자. 502(a)에 명시된 공급원은 허가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고, 다음 중 늦은 일자에 허가서를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프로그램이나 부분 또는 잠정허

가프로그램의 유효일자.

(2) 공급원이 502(a)항을 적용받게 되는 날짜

(b) 준수계획. (1) 502(b)항에 요구된 규정은 신청인이 공급원에게 이 법의 당 요건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준수계획을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준수계획은 준수일정,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당국에 6개월 이상 덜 빈번한 간격으로 진행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허가대상자가 시설이 해당 허가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정기적으로(그러나 1년 이상의 간격으로) 입증하고, 허가당국에게 허가요건에서 벗어난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요한다.

(c) 기한.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는 이 장에서 승인 또는 공포된 허가프로그램이 공급원에 적용하는 날짜나 허가당국이 정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 후 12개월 이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담당 관리의 서명을 받은 허가신청서 및 준수계획을 작성, 허가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허가당국은 완비된 신청서를(신청서 심의를 위해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일치하여)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자 후 18개월 이내,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당국이 허가프로그램의(부분 혹은 잠정 프로그램) 유효일자 후 처음 1년 기간 내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조치일정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같은 일정은 허가서의 유효일자 후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걸쳐 매년 허가서에 대한 관할당국의 조치가 최소 1/3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기한 내 완비한 신청서. 이 법 해당요건에 따른 공사나 변경 전에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급원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이 장에서 요구한(갱신 포함) 허가신청서를 기한 내 완비하여 제출 완료하였지만 신청서에 대한 최종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은 경우, 공급원이 허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법의 위반사항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종 조치의 지연이 신청서처리에 필요하거나 요청된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장에서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어떤 공급원도 (c)항의 신청서를 공급원이 제출할 필요가 있는 날짜 전에는 502(a)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e) 복사본: 공공이용성. 허가신청서, 준수계획(준수일정 포함), 배출량이나 준수감시보고서, 인증서 및 이 장에서 발급된 허가서 등의 사본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허가대상자가 이 법 114(c)항에 따라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할 자격이 있는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허가대상자는 정보를 따로 제시할 수 있다. 114(c)항의 요건이 이러한 정보에 적용되어야 한다. 허가서의 내용은 114(c)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42 U.S.C. 7661b]

허가요건 및 조건

504조. (a) 조건. 이 장에서 발급된 허가서는 집행 가능한 배출한도 및 기준, 준수일정, 허가대상자가 필요한 감시결과를 허가당국에 6개월 이내 간격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항, 그리고 해당이행계획요건을 포함하여 이 법의 해당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타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b) 감시 및 분석.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준수판단, 이 법의 오염규제물질 감시 및 분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수 있지만 연속배출감시필요성은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면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 항의 어느 것도 IV장이나 이 법에서 달리 요구된 경우에 연속배출감시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c) 검사, 출입, 감시, 인증 및 보고. 이 장에서 발급된 허가서는 허가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사, 출입, 감시, 적합성인증 및 보고요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시보고요건은 (b)항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 장에서 기업에 발급된 허가서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보고서는 그 정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기업의 담당 관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d) 일반허가서. 허가당국은 공청회 공지 및 기회 후 수많은 유사 공급원에 적용되는 일반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일반허가서는 이 장에서 허가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허가서로 포괄되는 어떠한 공급원도 그로써 503조의 신청서를 접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e) 임시 공급원. 허가당국은 한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유사한 가동으로 인한 배출량을 허가하는 단독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허가서는 인가된 모든 장소에서 I장 파트 C의 적용 증가분이나 가시성 요건의 준수 및 대기질 기준 등 이 법의 요건을 모두 준수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와 같은 허가서는 소유자나 운용자가 장소의 변화를 미리 허가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f) 허가서 보호범위.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를 준수하면 502조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규칙에 의해 환경청장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서는 또한 허가서를 준수하면 다음의 경우 허가대상자와 관련된 이 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1) 허가서가 그 규정의 해당요건을 포함하거나,
- (2) 허가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허가당국이 허가대상자와 관련하여 여타 규정을(결정에 언급되어야 함)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허가서에 결정사항이나 이를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앞 문장의 어느 것도 이 조에 따라 환경청장의 권한을 포함하여 303조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61c]

환경청장 및 인근 주에 대한 통지

505조. (a) 송부 및 통지 (1) 허가당국은

- (A) 환경청장에게 허가신청서(및 허가수정 혹은 갱신 신청서)나 그 일부와 준수계획 사본을 보내 환경청장이 효율적으로 신청서를 심사하고, 이 법에서 환경청장의 임무를 달리 수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B) 환경청장에게 발급예정이고 최종허가서로 발급될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당국은

- (A) 주의 대기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배출원천인 주와 인접해 있거나
- (B) 공급원에서 50마일 이내 거리에 있고, 공급원의 허가신청

서나 허가제안서를 이 조에 따라 환경청장에게 송부한 주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허가서 발급 및 그 조건에 대한 권고서를 주가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고서의 일부를 허가당국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 당국은 권고서를 제출한 주와 환경청장에게 권고사항을 거절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b) EPA의 거부. (1)어느 허가서가 해당이행계획 요건 등 이 법의 해당요건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청장이 판단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이 항에 따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허가당국은 환경청장이

- (A) (a)(1)항에 허가제안서 사본을 수령한 후 45일 이내 또는
- (B) (a)(1)항의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 그 요건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허가서 발급의사를 서면으로 거부할 경우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2) 환경청장이 (1)항에 따라 허가서발급에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환경청장에게 (1)항에 명시된 45일 심사기간의 만료 후 60일 이내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서 사본은 청구인이 허가당국 및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는 허가기관이 규정한 공공의견수렴 기간 중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허가서에 제기한 이의 사항에만 기초하여야 한다.(다만, 청구인이 그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환경청장에게 청구서에서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혹은 이의의 근거가 그 기간 후 발생한 경우도 제외) 이 청구서는 이의사항을 모두 나타내어야 한다. 허가서가 허가기관에서 발급되었다면, 청구서는 허가서의 효과성을 지연하지 않는다. 환경청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 청구서를 수락하거나 거절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허가서가 해당이행계획 등 이 법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이 환경청장에게 입증한 경
우 그 기간 내 이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
의 이행규정을 이 장에서의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조항
의 요건을 위임할 수 없다.

- (3) 이 항에서 환경청장의 반대의사를 수령한 때, 허가당국은 (c)
항에 따라 수정되어 발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서를 발급
할 수 없다. 허가당국이 (2)항에서 환경청장의 반대의사를 수
령하기 전 허가서를 발급 완료했다면, 환경청장은 허가서를
변경, 중지하거나 철회하여야 하며, 허가당국은 그 후 (c)항에
따라 수정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이다.

- (c) 발급 혹은 거절. 허가당국이 (b)항의 거절일자 후 90일 이내, 거절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수정된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환경청
장은 이 장 요건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어떠한 반대도 환경청장이 이 항의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절하는
최종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 (d) 통보요건의 포기. (1) 환경청장은 이 프로그램에서 주요 공급원을
제외한 공급원 부문에 이 장에 따른 허가프로그램의 승인시점에서
(a) 및 (b)항의 요건을 포기할 수 없다.

- (2) 환경청장은 (a) 및 (b)항이 적용되지 않는 공급원 부문을 규정
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앞 문장은 주요 공급원에 적용되지 않
는다.

- (3) 환경청장은 이 항의 권리포기에서 (a)(2)항의 통보를 제외할
수 있다. 이 항에서 부여된 권리포기는 규칙에 의해 환경청장
이 철회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다.

(e) 허가당국의 중지, 변경 혹은 철회 및 재발급 거부. 환경청장이 이장에 따른 허가를 중지, 수정하거나 철회 및 재발급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허가당국 및 공급원에게 환경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당국은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 이 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중지, 변경이나 철회 및 재발급 예정 결정서를 환경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환경청장은 신규 혹은 수정 허가신청서가 필요하거나 허가당국이 추가정보를 제출하도록 허가대상자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90일 기간을 추가로 9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a) 및 (b)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결정을 심사할 수 있다. 허가당국이 필요한 예정결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혹은 환경청장이 반대를 하고 허가당국이 90일 이내 반대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환경청장은 통지 후,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허가서를 중지, 변경하거나 철회 및 재발급을 할 수 있다. [42 U.S.C. 7661d]

기타 권한

506조. (a) 개요. 이 장에서 어느 조항도 해당 주정부이나 주 사이 허가당국이 이 법과 모순되지 않는 허가요건을 추가로 정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b) 허가 이행 산성비 조항.

이 장의 규정은 제출일정 및 허가신청서의 승인 또는 부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 장에서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IV장의 요건을 이행하는 허가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42 U.S.C. 7661e]

소규모 사업 고정 공급원의 기술 환경 준수 지원프로그램

507조. (a) 계획수정. 110조 및 112조와 일치하여 해당 주는 적절한 공지 및 공청회 후, 주에 대해 주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혹은 110조의 주 이행계획수정안으로 소규모 고정공급원 기술 및 환경 적합성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은 소규모 고정공급원의 기술적, 재정적 능력에 기초하여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면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1) 소규모 고정공급원을 위한 준수방법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전개, 수집하고 조정하는데 적합한 수단 및 이 법을 향후 준수하기 위해 공급원 및 기타 자 사이에 적법한 협조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 (2) 소규모 고정공급원의 오염방지 유출사고탐지 및 예방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수단, 대체 기술, 프로세스 변화, 제품,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가동방법 등을 포함.
- (3) 관련 주 기관 내 이 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규모 고정공급원을 위한 옴부즈맨 역할을 할 지정 주 사무국
- (4) 소규모 고정공급원이 해당요건을 결정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 법의 허가를 받는 것을 도울 소규모 고정공급원을 위한 준수지원 프로그램
- (5) 소규모 고정공급원이 이 법에 따라 발한 적용 가능한 예정 혹은 최종 규정이나 기준 및 준수방법을 공급원이 평가하는데 적절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및 형태로 이 법의 권리통지를 소규모 고정공급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수단.

- (6) 이 법의 소규모 고정공급원에게 그들의 의무를 알리는데 적합한 수단, 공급원을 감사적격자에게 주의 선택으로 의뢰하고, 이 법의 준수를 결정하기 위해 공급원 가동작업의 감사를 하는데 적합한 수단.
- (7) 다음 사항의 변경을 위해 소규모 고정공급원의 요청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
- (A) 작업관행이나 기술적 준수방법이나
- (B) 해당준수일자 전 작업관행이나 준수방법을 이행하기 위한 이정표 일정
- 해당이행계획요건을 포함하여 이 법의 해당요건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변경은 부여할 수 없다. 해당요건이 연방규정에 제시된 때, 규정에서 허가된 변경사항만을 허용할 수 있다.
- (b) 프로그램.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개월 이내, 소규모 고정공급원 기술, 환경 준수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 (1) 주가 (a)항에서(소규모 고정공급원에 대한 지원관련) 요구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 (2) 소규모 고정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관리기술 및 오염방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이행에 주가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간행하여야 한다.
- (3) 이 항에서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하는 주에서 (a)(4)항에 요구된 프로그램 규정의 이행을 규정하여야 한다.
- (c) 적격성. (1)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 고정공급원’이란 용어는 다음의 고정공급원을 말한다.
- (A)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B) 중소기업법에 정의된 소규모 회사
 - (C) 주요 고정공급원이 아님
 - (D) 오염규제물질을 50톤/년 이상 배출하지 않음
 - (E) 오염규제물질을 75톤/년 이하를 배출함
- (2) 공급원의 청구가 있는 때, 해당 주는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소규모 고정공급원으로 (1)조항의 (C), (D), 혹은 (E)1)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오염규제물질을 100톤/년 이상 배출하지 않는 고정공급원을 포함할 수 있다.
- (3) (A) 환경청장은 중소기업관리청과 협의하며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는 공급원의 범주나 하위범주를 이 조의 소규모 고정공급원 정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B) 주는 환경청장 및 중소기업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공지 및 기회를 제공한 후, 주가 판단하기에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공급원의 범주나 하위범주를 이 조의 소규모 고정공급원 정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d) 감시. 환경청장은 중소기업옴부즈맨을(이후 옴부즈맨으로 칭함) 통해서 환경청의 소규모비특혜사업활용국이 이 조의 소규모고정공급원의 기술, 환경준수지원프로그램을(이하 ‘소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 칭함) 감시하라고 지시하여야 한다. 감시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 옴부즈맨은

1) “항목”이어야 함.

- (1) 소규모고정식기술, 환경준수지원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 당면 과제와 집행의 정도 및 중요성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서류작업축소법, 행정신축성법 및 정의형평접근법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정도에 대해 의회에 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보통 사람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고정공급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서 공표될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 (4) 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보고 및 자문 의견의 전개, 보급을 위한 사무국역할을 하게 하여야한다.
- (e) 준수자문위원회. (1) 주정부 차원에서 7명이상으로 구성된 적합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가 창설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 (A) 소기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자문 의견,¹⁾ 당면과제 및 집행의 정도 및 중요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B) 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서류작업축소법, 행정신축성법 및 정의형평접근법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여부를 환경청장에게 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C) 보통 사람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고정공급원을 위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 (D) 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보고 및 자문 의견의 전개, 보급을 위한 사무국역할을 하게 하여야한다.
- (2) 이 위원회는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소규모 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며 일반 대중을 대리하기 위해 주지사가 선임한 2명의 위원.
 - (B) 주 의회에서 선정하고 소규모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그

1) 아마도 ‘소규모 고정공급원 기술, 환경준수지원프로그램’일 것임.

대리인(1명은 하원의 여, 야당 지도자가 선임하거나 단원
체 주 의회의 경우 의회의 여, 야당 지도자가 선임하는 2
명, (C)항은 적용하지 않음)

(C) 주 의회에서 선택한 2명의 소규모 고정공급원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1명은 상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 법인의 여,
야당 지도자가 선택)

(D) 1명은 대기오염관리허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의 부서
기관장이 선임

(f) 수수료. 주(또는 환경청장)정부는 소규모고정공급원의 재정자원을
고려하여 이 법에서 요구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g)연속배출감시자. 이 법에 따라 연속배출감시요건을 포함하는 규정
및 CTG를 개발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이 법의 요건과 일치하여
소규모고정공급원에게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기 전에 공급원에 대
한 요건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항의 어느 것
도 연속배출감시 관련 IV장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h) 관리기술 지침. 환경청장은 이 법에의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는
CTG를 개발하는데 있어 이 법의 요건과 일치하여 소규모 고정공
급원(및 (c)(2)항에 따라 소규모고정공급원으로 다룰 자격이 있는
공급원)의 규모, 유형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2
U.S.C. 7661f]

VI 장. 성층권 오존보호

목차

- 601조. 용어 정의
- 602조. I 등급 및 II 등급 물질 목록
- 603조. 감시 및 보고 요건
- 604조. 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 605조. I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 606조. 진행상황 일정
- 607조. 교환 [교환 권한]¹⁾
- 608조. 전국 재활용 및 배출감축프로그램
- 609조. 자동차 공기 조화기 가동
- 610조. 염화불화탄소 성분 필수품 외 품목
- 611조. 라벨표시
- 612조. 안전대안정책
- 613조. 연방 정부 조달
- 61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 615조. 환경청장의 권한
- 616조. 몬트리올협정 당사국 간 양도
- 617조. 국제 협력
- 618조. 기타 규정

용어 정의

- 601조. (1) 기구. 이 용어는 가정용이나 상업용 I등급 물질이나 II등급 물질을 포함하고 냉매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하며 공기조화기, 냉

1) 원본이 그러함. 괄호에 표시된 대로 조의 표제와 일치하지 않음.

장고, 냉동고 등을 포함한다.

(2) 기준 연도. 이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 (A) 1986년도, 602(a)항의 I 그룹 혹은 II 그룹에 속하는 I 등급 물질의 경우,
- (B) 1989년도, 602(a)항의 III, IV 혹은 V 그룹에 속하는 I 등급 물질의 경우,
- (C) 환경청장이 정한 대표 연도, (i) 602(a)항에서 최초목록 간행 후 I 등급 물질 목록에 첨가된 물질, (ii) II 등급 물질의 경우.

(3) I 등급 물질. 이 용어는 602(a)항에 제공된 목록물질을 말한다.

(4) I 등급 물질. 이 용어는 602(b)항에 제공된 목록물질을 말한다.

(5) 식약청장. 이 용어는 식품의약품관리청의 장을 말한다.

(6) 소비량. 이 용어는 어떤 물질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물질의 양에 수입량을 더하고 몬트리올협정의 당사국에 수출된 양을 뺀다. 이 용어는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7) 수입. 이 용어는 미국의 관할권 하의 장소에 양륙, 반입, 수입, 반입 및 수입시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반입, 소개, 투입이 미국관세법의 의미에서 수입 구성요건과 무관하다.

(8) 의료장치. 이 용어는 다음의 경우에 장치 및 약물(연방식품의 약화장품법에 정의됨), 진단제품, 약물전달설비 등을 말한다.

(A) 이 장치, 제품, 약물이거나 약물전달설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I 등급이나 II 등급 물질을 사용하며, 식약청장이 승인한 경우

(B) 이 장치, 제품, 약물이거나 약물전달설비가 공공의 건강 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식약청장이 승인을 하고 중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 (9) 몬트리올협정(협정). 이 용어는 오존층을 고갈하는 물질에 대한 협정으로 오존층 보호비엔나협약의 부속된 협정이며 각 당사국이 채택하여 효력을 발한 조정안 및 개정안도 포함한다.
- (10) 오존고갈가능성. 이 용어는 물질의 오존고갈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청장이 정한 계수를 말하며, 염화불화탄소(CFC11)와 비유할 때 킬로그램 당 질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계수는 물질의 대기 수명, 브롬 및 염소의 몰 질량, 물질의 광분해성 해리능력에 기초하며, 상대적 오존고갈 가능성의 정확한 척도로 결정된 기타 요소에 기초하여야 한다.
- (11) 생산, 생산된, 그리고 생산. 이들 용어는 원료나 공급원료 화학물질에서 물질의 제조와 관련되지만,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A) 다른 화학물질의 제조에 사용되고 완전히 소비되는(미량은 제외) 물질의 제조
- (B) 물질의 재활용이나 재사용
- [42 U.S.C. 7671]

I 등급 물질과 II 등급 물질목록.

602조. (a) I 등급 물질목록.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60일 이내, 환경청장은 다음 물질을 포함하는 I 등급물질의 최초 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I 그룹

- 염화불화탄소-11 (CFC.11)
- 염화불화탄소-12 (CFC.12)
- 염화불화탄소-113 (CFC.113)
- 염화불화탄소-114 (CFC.114)
- 염화불화탄소-115 (CFC.115)

II 그룹

할론-1211

할론-1301

할론-2402

III 그룹

염화불화탄소-13 (CFC.13)

염화불화탄소-111 (CFC.111)

염화불화탄소-112 (CFC.112)

염화불화탄소-211 (CFC.211)

염화불화탄소-212 (CFC.212)

염화불화탄소-213 (CFC.213)

염화불화탄소-214 (CFC.214)

염화불화탄소-215 (CFC.215)

염화불화탄소-216 (CFC.216)

염화불화탄소-217 (CFC.217)

IV 그룹

사염화탄소

V 그룹

클로로포름메틸

이 항의 최초 목록은 1,1,2-trichloroethane (메틸 클로로포름의 이성질체)은 제외하고 위 물질 목록의 이성질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c) 항에 따라 환경청장은 성층권 오존층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거나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여타 물질을 I등급 물질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c)항에 따라 오존고갈가능성이 0.2이상으로 결정한 물질을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 (b) II 등급 물질목록. I 등급물질의 최초목록을 간행함과 동시에 환경청장은 다음 물질을 포함하는 II등급 물질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수화염화불화탄소-21 (HCFC.21)
수화염화불화탄소-22 (HCFC.22)
수화염화불화탄소-31 (HCFC.31)
수화염화불화탄소-121 (HCFC.121)
수화염화불화탄소-122 (HCFC.122)
수화염화불화탄소-123 (HCFC.123)
수화염화불화탄소-124 (HCFC.124)
수화염화불화탄소-131 (HCFC.131)
수화염화불화탄소-132 (HCFC.132)
수화염화불화탄소-133 (HCFC.133)
수화염화불화탄소-141 (HCFC.141)
수화염화불화탄소-142 (HCFC.142)
수화염화불화탄소-221 (HCFC.221)
수화염화불화탄소-222 (HCFC.222)
수화염화불화탄소-223 (HCFC.223)
수화염화불화탄소-224 (HCFC.224)
수화염화불화탄소-225 (HCFC.225)
수화염화불화탄소-226 (HCFC.226)
수화염화불화탄소-231 (HCFC.231)
수화염화불화탄소-232 (HCFC.232)

수화염화불화탄소-233 (HCFC.233)
 수화염화불화탄소-234 (HCFC.234)
 수화염화불화탄소-235 (HCFC.235)
 수화염화불화탄소-241 (HCFC.241)
 수화염화불화탄소-242 (HCFC.242)
 수화염화불화탄소-243 (HCFC.243)
 수화염화불화탄소-244 (HCFC.244)
 수화염화불화탄소-251 (HCFC.251)
 수화염화불화탄소-252 (HCFC.252)
 수화염화불화탄소-253 (HCFC.253)
 수화염화불화탄소-261 (HCFC.261)
 수화염화불화탄소-262 (HCFC.262)
 수화염화불화탄소-271 (HCFC.271)

이 항에서 최초 목록은 또한 위 물질목록의 이성질체를 포함한다.
 (c)항에 따라서 환경청장은 II 등급물질목록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성층권 오존층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거나 기여할 것으로 알려지
 거나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추가하여야 한다.

(c) 목록 추가. (1)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상황에 따라서 (a)혹은 (b)
 항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a)혹은 (b)항의 I등급 또는 II등급의 물
 질목록에 어느 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 507조¹⁾에 따른 교환목적으
 로, I 등급물질 목록에 어떤 물질을 추가할 때, 환경청장은 몬트리
 올협정과 일치하는 정도로 기존의 그 물질을 I, II, III, IV 또는 V
 그룹에 분류하거나 새 그룹에 물질을 분류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
 상의 간격으로,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상황에 따라서 (a) 혹

1) 아마도 607조일 것임.

은 (b)항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I등급이나 II 등급물질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 (3) 어느 때라도, 누구나 어떤 물질을 I 등급이나 II 등급물질 목록에 추가해달라고 환경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a) 혹은 (b)항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후 180일 이내, 환경청장은 그 물질을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요청서 거절의 설명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어떤 물질을 목록에 추가할 예정인 경우에,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요청서를 접수한 후 1년 이내 그 물질을 목록에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요청서는 요청서를 보장하기에 적합한 물질자료가 있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물질에 관한 정보가 이 조항의 결정을 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면, 환경청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법규 하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 (4) I 등급 물질목록에 추가된 어떤 II등급물질만이 II 등급물질목록에서 뺄 수 있다. (a)항에 언급된 물질은 메틸 클로로포름을 포함하여 I 등급 물질목록에서 뺄 수 없다.

- (d) 신규 물질목록. 이 조의 물질의 최초목록을 발표한 후 I 등급이나 II 등급물질목록에 추가된 물질의 경우, 환경청장은 물질이 목록에 추가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604조나 605조에 포함된 일정이나 준수기한을 맞출 수 없다면 두 조에 명시된 것보다 더 늦은 날짜로 일정이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 오존고갈 및 지구온난화 가능성. 이 조의 목록 발표와 동시에, 목록 추가와 동시에, 환경청장은 물질목록에 물질의 오존고갈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환경청장은 물질

목록의 대기 수명과 염소 및 브롬축적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 후 1년 지나 (물질의 최초목록을 발표한 후 추가된 물질의 경우에 목록에 물질을 추가한 후 1년 지나), 그리고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은 물질목록의 지구온난화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앞 문장은 이 법의 추가 규정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표1에 기술된 물질의 경우, 오존고갈가능성은 표1에 명시된 그대로이며, 다만 환경청장이 601(10)항에 기술된 기준에 기초하여 물질의 오존고갈 가능성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 1

물질	오존 고갈 가능성
염화불화탄소-11 (CFC.11)	1.0
염화불화탄소-12 (CFC.12)	1.0
염화불화탄소-13 (CFC.13)	1.0
염화불화탄소-111 (CFC.111)	1.0
염화불화탄소-112 (CFC.112)	1.0
염화불화탄소-113 (CFC.113)	0.8
염화불화탄소-114 (CFC.114)	1.0
염화불화탄소-115 (CFC.115)	0.6
염화불화탄소-211 (CFC.211)	1.0
염화불화탄소-212 (CFC.212)	1.0
염화불화탄소-213 (CFC.213)	1.0
염화불화탄소-214 (CFC.214)	1.0
염화불화탄소-215 (CFC.215)	1.0
염화불화탄소-216 (CFC.216)	1.0
염화불화탄소-217 (CFC.217)	1.0
할론-1211	3.0
할론-1301	10.0
할론-2402	6.0

물질	오존 고갈 가능성
제3염화탄소	1.1
메틸 클로로프로름	0.1
수화염화불화탄소-22 (HCFC.22)	0.05
수화염화불화탄소-123 (HCFC.123)	0.02
수화염화불화탄소-124 (HCFC.124)	0.02
수화염화불화탄소-141(b) (HCFC.141(b))	0.1
수화염화불화탄소-142(b) (HCFC.142(b))	0.06

어느 물질의 오존고갈 가능성이 몬트리올 협정에 명시된 경우, 그 물질에 대해 명시된 오존고갈 가능성은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42 U.S.C. 7671a]

감시 및 보고요건

603조. (a) 규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70일 이내, 환경청장은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의 감시보고에 관해 이 날 짜에 유효한 환경청장의 규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 수정안은 이 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개정수정안은 이 조에서 요구된 감시 및 보고의 시기 및 방식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생산, 수출입 수준 보고서. 분기별로 혹은 기타 환경청장이 결정한 기준으로(1년 이상은 아님), I등급이나 I 등급물질을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이전 보고 기간에 생산, 수출입한 물질의 양을 제시하고 환경청장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담당 관리의 입증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자가 물질을 더 이상 생산, 수출입을 하지 않고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 후

당해 연도 4월 1일 지나 그 자로부터 이러한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c) I등급물질의 기준량 보고. 환경청장에게 (b)항의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날짜에 이전에 이 정보를 보고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I 등급물질을(이 조의 최초물질목록을 발표한 후 I 등급물질 목록에 추가한 물질은 제외) 생산,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기준년도 중에 그 자가 생산, 수출입을 한 물질의 양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의 최초물질목록을 발표한 후 I 등급물질에 추가된 물질의 경우, 규정은 그 물질을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물질이 목록에 추가된 날짜 이후 180일 이내, 기준년도에 그 자가 생산, 수출입을 한 물질의 양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감시 및 의회보고요건..(1)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상의 간격으로 I 등급물질과 II등급물질의 생산량, 소비사용량을 감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내생산량, 소비사용량 데이터, 그리고 이 물질의 전 세계 생산량 및 소비사용량의 산출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6년 이상의 간격으로 환경청장은 성층권오존고갈의 환경영향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국립항공우주국장 및 국립해양대기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상의 간격으로 염소 및 브롬의 대류권의 현재평균농도에 대해, 그리고 성층권오존고갈 수준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갱신된 예상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최대 염소축적량:

(B) 대기 중 염소량이 2000년도 이후 줄어든 것이라는 예상 비율

(C) 대기 중 염소량이 2ppb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날짜

이렇게 예상하여 갱신된 산정치는 이 장에서 다룬 물질의 현재 국내외 통제대책 뿐만 아니라 2000년도까지 할로탄소 배출량의 단계별감축으로(기준 상황) 보완한 통제대책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조의 규정을 통해 II 등급물질의 생산소비량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들 물질의 생산소비량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다.

(i) 이 조의 목적을 위해 기준 상황에서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 최대 염소축적량을 크게 늘린다.

(ii) 대기 중 염소량이 기준 상황에서 줄어든 걸로 예상되는 비율을 크게 줄이거나,

(iii) 기준 상황에서 2ppb의 수준으로 돌아갈 걸로 예상되는 비율을 지연한다.

(e) 2015년 기술 상황보고서. 환경청장은 정기적으로 II 등급물질을 배제한 장치를 제조, 가동하는데 필요한 대체 설비나 제품 개발에 진행 중인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공공의견수렴 공지 및 기회 후, 기술개발문제의 결과로 대체 설비나 제품의 개발이 605조의 해당기한 전에 이들 물질을 제외한 장비의 제조 규정에 필요한 시기 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환경청장은 2015/1/1일 이내 의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f) 비상사태 보고서. 국립항공우주국장 및 국립해양대기국장과 협의하고, 공공의견수렴 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은 II 등급물질의 전 세계 생산량 및 소비사용량이 기준 상황 예상치를 5.10ppb이나

초과하여 대기 중 염소 축적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정하면, 즉각 이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앞 문장에서 언급된 결정사항은 (d)항의 감시에 기초하여 3년 이상 간격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

[42 U.S.C. 7671b]

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604조. (a) 단계별 생산량 감축. 표2에 명시된 각 연도 1/1일에 유효하며, 어느 자가 I등급 물질의 연간 생산량을 표2에 명시된 관련 비율보다 많이 생산하면 불법이다. 표2의 비율은 기준연도에 해당자가 생산한 물질량의 비율로 최대 허용생산량을 말한다.

표 2

일자	제3 염화탄소	메틸염화포름	기타 등급 I 물질
1991	100%	100%	85%
1992	90%	100%	80%
1993	80%	90%	75%
1994	70%	85%	65%
1995	15%	70%	50%
1996	15%	50%	40%
1997	15%	50%	15%
1998	15%	50%	15%
1999	15%	50%	15%
2000		20%	
2001		20%	

(b) I 등급물질의 생산중지. 2000/1/1일자 유효하며(메틸클로로포름의 경우 2002/1/1일자), 어느 자가 I 등급물질의 양을 생산하면 불법이다.

(c) 생산소비량 관련 규정.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

법일자 후 10개월 이내 이 조 및 기타 이 장 해당규정에 따라 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량 감축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또한 미국의 I 등급물질 소비량이 이 장에서 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량 감축 및 중지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정(같은 예외사항 및 기타 규정을 따르는)에 따라 단계별로 감축, 중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d) 메틸클로로포름, 의료장치 및 항공안전을 위한 필수용도의 예외조항.

(1) 메틸클로로포름의 필수용도. 2002/1/2~2005/1/12 기간 중 (b)항에서 요구된 생산 중지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공공의견취합 공지 및 기회 후, 그러한 조치가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는 정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품을 이용할 수 없는 중요한 기구에(금속성 피로에 취약한 기존의 항공기 엔진 및 항공기 부품의 금속성피로 및 부식의 비파괴시험 등) 사용할 목적으로만 메틸클로로포름의 양을 제한하여 생산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장치용 메틸클로로포름의 생산허가는 (2)조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2) 의료장치. (b)항에서 요구한 생산 중지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몬트리올 협정과 일치하는 정도의 조치로 의료장치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I 등급물질의 양을 제한하여 생산하는 허가를 식약청장이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의료 장치에 사용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 (A)(b)항에서 요구된 생산 중지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조치가 몬트리올 협정과 일치하는 정도로 항공안전 목적으로 할론-1211(브롬염화불화메탄) 할론-1301(브롬염화불화메탄) 및 할론-2402(제2브롬제4불화

메탄)의 양을 제한하여 생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는 연방항공청장이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항공안전 목적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B) 연방항공관리청장은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금속피로에 취약한 기존의 항공기 엔진 및 항공기부품의 금속성 피로 및 부식에 대한 비파괴시험에 메틸클로로포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품과 대체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이 조항에서 메틸클로로포름의 예외 사용조항이 2005/1/1일 자 이후 항공기안전을 위해 필요할 것인가 여부를 조사하고, 1998년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정 예외사항의 최고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d)항의 (1), (2), 및 (3)조항에 제시된 권한은 기준연도 중 어느 자가 연간 생산한 양의 10% 이상으로 I 등급물질을 생산하도록 한 허가에 적용할 수 없다.

(5) 위생 및 식품보호. 몬트리올협정의 검역 및 선적 전 조항과 일치하는 정도로, 환경청장은 동식물보건검열국의 요건이나 해외, 연방, 주나 지방의 위생식품보호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이나 어느 국가(혹은 그 행정당국)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상품을 훈증소독하기 위해 브롬화메틸의 생산, 수출입량을 면제할 수 있다.

(6) 중요한 용도.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는 정도로,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브롬화메틸 관련 규제권한이 있는 연방부서나 대행단체 및 농무부 등과 협의하여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는 브롬화메틸의 생산, 수출입량을 면제할 수 있다.

(e) 개발도상국

- (1) 예외조항. (a)항 및 (b)항의 단계별 생산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여 몬트리올협정 당사국이고 협정 5조에 따라 가동하는 개발도상국에 수출 및 사용 목적으로만 (a)항이나 (b)항 또는 두 조항에서 달리 허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I 등급물질의 제한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허가된 생산량은 개도국의 기본적인 국내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만 허가되어야 한다.
- (2) 특정 예외사항의 최고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1)조항에 제시된 권한은 어느 자에게 어느 해에 (a)항에 생산비율이 명시된 I 등급물질을 명시비율에다 기준연도에 그 자가 연간 생산한 양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한 허가에 적용할 수 없다.
- (B) 특정 예외사항의 최고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1)조항에 제시된 권한은 어느 자에게 (b)항에 기술한 해당 중지연도에 혹은 그 후 연도에 I 등급물질 생산을 그 자가 생산한 물질의 기준량의 15%를 초과하여 생산하도록 한 허가에 적용할 수 없다.
- (C) 이 항에서 허가된 예외조항은 2010/1/1일 이내 (클로로포름메틸의 경우에 2012년) 만료되어야 한다.
- (3) 브롬화메틸. 604(h)에 따라 브롬화메틸의 단계별 생산량 감축 및 중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여, 몬트리올협정 코펜하겐 개정안의 당사국인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브롬화메틸의 생산량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f) 국가안보. 대통령은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는 정도의 조치로 특정 부지나 시설에서 또는 미국의 국가보안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선박에서 CFC-114, 할론-1211, 할론-1301 및 할론-2402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대체품을 이용할 수 없고 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이 국가보안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 명령은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때, 이 장에 포함된 금지나 요건의 면제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 조항에서 그와 같은 면제를 규정한 명령을 발하고 90일 이내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서에는 면제를 부여한 근거의 설명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면제는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면제는 대통령이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새로 발한 때마다 부여할 수 있다. 추가 면제도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면제도 충당금 부족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예산과정의 일부로 이 충당금을 특별 요청했어야 하며, 의회가 요청된 충당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g) 화재진압 및 폭발방지 (1) (a)항에 제시된 단계별 생산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조치가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는 정도로, 화재진압이나 폭발방지 목적으로만 (a)항의 일정에 따라 허가된 양을 초과하여 할론-1211, 할론-1301 및 할론-2402의 제한생산량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미국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용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화재진압이나 폭발방지 목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이다. 환경청장은 화재진압이나 폭발방지 장비의 시험이나 화재안전 또는 폭발방지교육 목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생산을 허가하지 않

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청장은 1999/12/31일 이후 이 조항에서 생산을 허가하는 예외조항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2) 환경청장은 화재진압이나 폭발방지를 위해 (1)조항에 언급한 물질의 대용물 및 1999/12/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평가의 일환으로 중요한 용도를 확인하고 1999/12/31 이후 적절한 대용물을 이용할 수 없는 용도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생산수준이나 소비수준을 허용하는데 있어 몬트리올협정 2B조에 따라 당사국의 조치 및 몬트리올협정에 따른 관련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1994년에, 또 1998년에 이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b)항에 제시된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는 정도로 북알래스카사면에서 천연가스에너지공급 및 국내원유생산과 관련하여 화재진압이나 폭발방지 목적으로만 1999/12/31~2004/12/31 기간 중 할론-1211, 할론-1301 및 할론-2402의 생산량 제한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청장이 미국 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용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화재진압이나 폭발방지 목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이다. 환경청장은 화재진압이나 폭발방지장비의 시험 또는 화재 안전이나 폭발방지훈련 목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생산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청장은 어느 자가 기준 연도 중 생산한 양의 3%보다 많은 양으로 할론을 생산하도록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h) 브롬화메틸. (d)항 및 604(b)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2005/1/1 일 전 브롬화메틸 생산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며, 이 항의 입법일

자에 유효한 몬트리올협정조약의 단계별 감축일정에 따라서, 그러나 그보다는 더 엄격하지 않는 일정으로 브롬화메틸의 생산, 수입 소비량을 감축하고 중단하는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42 U.S.C. 7671c]

I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605조. (a) II 등급물질 사용제한. 2015/1/1일자 유효하며, 다음 물질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자가 II 등급물질의 사용이나 주 사이에서 거래반입하면 무효이다.

(1) 사용, 회수, 재활용된 적이 있음.

(2) 다른 화학물질 생산에 사용, 완전 소비됨(미량은 제외)

(3) 2020/1/1일 전 제조된 기구에서 냉매로 사용됨

이 항에서 사용된 것처럼, '냉매'란 용어는 냉각장치에서 열전도용 II 등급물질을 말한다.

(b) 단계별 생산량 감축 (1) 2015/1/1일자 유효하며, 어느 자가 기준 연도 중 연간 생산한 물질의 양보다 많이 II 등급물질을 생산하면 불법이다.

(2) 2030/1/1일자 유효하며, 어느 자가 II 등급물질을 생산하면 불법이다.

(c) II 등급물질의 생산소비 관련 규정. 1999/12/31일까지 환경청장은 606조의 생산 단계별 감축가속화를 적용하면서 생산량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이 조에 따라 II 등급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또한 이 장에서 II 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량 감축 및 중단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정(동 예외조항 및 기타 규정에 따라)에 따라 미국의 II등급물질의 소비량을 단계별로 감축,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d) 예외조항

(1) 의료장비

(A) 개요. (b)(2)항에 요구된 생산중단 및 (a)항에 기술된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조치가 몬트리올 협정과 일치하는 정도로 의료장비용으로만 II 등급물질의 생산, 사용량 제한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식약청장이 환경청장과 협의 후 의료장비용으로 허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이다.

(B) 예외사항의 최고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A)항목에 제시된 권한은 어느 자가 기준연도에 연간 II 등급물질을 생산한 양의 10%를 초과하는 양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허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개발도상국

(A) 개요.. (a)항 및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은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환경청장이 결정한 대로, 몬트리올협정 당사국인 개발도상국에 수출 및 사용 목적으로만 달리 허가된 양을 초과하여 II 등급물질의 제한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허가된 생산량은 개도국의 기본적인 국내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만 허가되어야 한다.

(B) 예외사항의 최고한도. (i) 어떠한 상황에서도 (A)항목에 제시된 권한은 어느 자에게 (b)(1)항의 유효일자 후 연도부터 2030년 전 기준 연도 중 그 자가 II 등급 물질의 연간 생산량의 110%를 초과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허가에 적용할 수 없다.

(ii) 어떠한 상황에서도 (A)항목에 제시된 권한은 어느 자에게 2030년이나 그 후 연도에 기준 연도 중 그 자가 II

등급 물질의 연간생산량의 110%를 초과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허가에 적용할 수 없다.

(iii) 이 조항에서 허가된 예외조항은 2040/1/1일 이내 만료하여야 한다.

[42 U.S.C. 7671d]

진행상황 일정

606조. (a) 개요. 환경청장은 공공의 건강 공지 및 기회 후 다음에 기초한 경우에 603조나 605조 또는 두 조항에 제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의 생산소비량의 단계별감축일정을 정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1) I 등급물질이나 II 등급물질과 관련하여 성층권오존층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믿을만한 현재 과학정보(몬트리올협정의 평가 등)의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이들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엄격한 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목록물질의 대용물의 가용성에 기초하여, 환경청장이 기술달성도, 안전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일정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몬트리올협정을 수정하여 이 장에서 적용 가능한 일정보다 더 신속히 특정 물질의 생산, 소비나 사용을 통제하거나 줄이는 일정을 포함하는 경우.

(1)조항 및 (2)조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이 장에서 적용 가능한 일정에 따라 남은 기간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청구. 누구라도 환경청장에게 이 조에 따른 규정을 공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이러한 청구서를 수령한 후 180일 이

내 청구서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청구 거절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알려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러한 청구를 수락하는 경우, 최종 규정은 1년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어떠한 청구든지 청구사항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자료가 있다는 증거를 청구인이 나타내어야 한다. 환경청장이 이 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데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법규에 따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이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42 U.S.C. 7671e]

교환 권한

607조. (a) 양도.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0개월 이내, 이 장에서의 요건에 따라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의 허용량 부여 규정 및 허용량 양도관리에 대하여 이 장에서의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이 조의 권한에 따른 거래로 인해 I 등급물질과 II 등급물질의 총 생산량이 거래가 없다면 그해 감축되는 양보다 더 많이 감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오염물질 간 양도. (1) 이 조의 규칙은 어느 해의 물질 생산 허용량을 오존고갈중량 기준으로 같은 해 다른 물질의 생산허용량 대신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2) I 등급물질 그룹의 물질 허용량(602조에 열거된)은 같은 그룹의 다른 물질의 허용량 대신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3) 환경청장은 해당되는 경우 거래 목적으로 II 등급물질 그룹을 정하고 그 그룹에 II 등급물질을 배정하여야 한다. II 등급물질의 경우, 허용량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II 등급물질의 허용량 대신에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c) 다른 자와의 거래. 이 조의 규칙은 2명 이상의 허용량 양도인이 그 규칙에 따라 다음의 연간 생산량으로 집행가능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감축을 조건으로 할 경우 생산허용량((a)항 및 (b)항 요건을 따르는 오염물질 간 양도 등)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 (1) 이 장에서 양도인에게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감축량을 초과
- (2) 양수인에게 양도된 생산허용량을 초과, 그리고
- (3) 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d) 소비. 이 조의 규칙은 이 장에서의 요건에 따른 소비허용량 부여, 그리고 이 조에서 생산허용량 거래에 이 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허용량의 거래를 규정하여야 한다.

[42 U.S.C. 7671f]

전국 재활용 및 배출감축프로그램

608조. (a) 개요.(1) 환경청장은 1991/1/1일 이내, 기구의 작동, 수리나 처분과 공업처리냉각 중 I 등급물질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2)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4년 이내, (1)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I 등급물질 및 I등급물질의 사용 및 처분, 기구의 작동, 수리나 처분 및 공업처리냉각 중 II등급물질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준 및 요건은 규정 공표 후 12개월 이내 효력을 발하게 된다.

(3) 이 항의 규정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그 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달성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줄일 것

(B) 물질의 재포획 및 재활용을 최대로 할 것. 이 규정은 대체 물질(I 등급물질아 II 등급물질이 아닌 물질을 포함)을 사용하거나 I 등급이나 II 등급물질 사용을 최대로 하거나 612조에 따라 안전한 대용물 사용이나 앞선 말한 것을 결합하여 증진하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b) 처분 안전성. (a)항의 규정은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기준 및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구, 기계나 기타 제품에 벌크 단위로 함유된 I 등급물질이나 II 등급물질을 재활용목적으로 인도나 품목의 처분하기 전에 그와 같은 기구, 기계나 기타 제품에서 제거할 것

(2) 벌크 단위로 I등급물질이나 II 등급물질을 함유한 기구, 기계나 기타 제품은 제조, 판매 혹은 주 사이 거래에 분배 또는 주 사이 거래에 판매나 보급에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물품의 작동 및 수리나 처분 중 물질의 재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똑같이 효과적인 설계 특징이나 구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품의 내재적 요소를 구성하기위해서 I등급물질이나 II 등급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환경에 물질을 방출을 최대 가능한 정도로 줄이는 방식으로 처분할 것. 환경청장이 이 조항을 어떤 제품에 적용하며 환경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결정하는 경우, 환경청장은 규정에 이 제품을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c) 금지. 1991/7/1일자 유효하며, 어느 자가 기구나 공업처리냉각의 유지관리, 가동, 수리나 처분 과정에서 기구에서(혹은 공업처리 냉각)냉매로 사용한 I 등급물질이나 II 등급 물질을 물질이 주위 환

경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에 고의로 배출하거나 달리 고의로 유출하거나 폐기하면 불법이다. 그와 같은 물질의 재포착 및 재활용이나 안전한 폐기를 하기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따른 최소 허용 유출은 앞 문장에 제시된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지나 유효하므로, (1)조항은 그와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냉매로 사용하는 기구나 공업처리 냉각의 유지관리, 작동, 수리 또는 폐기하는 자가 I 등급물질이나 II등급물질 대신에 대체물질의 배출, 유출이나 폐기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물질은 환경에 위협을 띠지 않는다. 여기서, ‘기구’란 용어는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대체 물질을 냉매를 포함하고 냉매로 대체 물질을 사용하는 장치를 말하며, 공기조화기, 냉장고나 냉동고를 포함한다.

[42 U.S.C. 7671g]

자동차 공기조화기 가동

609조. (a)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환경청장은 자동차공기조화기의 가동에 관한 기준 및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이 조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b) 용어 정의

(1) ‘냉매’란 용어는 자동차공기조화기에 사용된 I 등급이나 II 등급 물질을 말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5년 지나 유효하며, ‘냉매’란 용어 또한 대체 물질도 포함하여야 한다.

(2) (A) ‘냉매재활용허가장비’란 용어는 자동차공기조화기에서 냉매의 추출 및 재생을 위한 장비에 적용할 수 있고 환경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환경청장(이나 환경청장이 승인한 독립기준시험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말한다.

이 기준은 최소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유효하고 그러한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엔지니어협회(SAE)의 기준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B) 이 조의 규정을 상정하기 전에 구매한 장비는 (A)항목에 제시된 대로 인증된 장비와 같을 경우 인증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적절히 사용'이란 용어는 냉매재활용허가장비와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정하고 그러한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일치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최소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유효하고 그러한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엔지니어협회(SAE)의 기준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4) '적절한 교육 및 인증을 받은'이란 용어는 환경청장이 정하고 자동차공기조화기에 서비스 성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일치한 자동차공기조화기용 냉매재활용인가장비를 적절히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육 및 인증을 말한다. 이 기준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현재 국립자동차서비스기능(ASE) 연구소의 인증프로그램 혹은 자동차공기조화협회(MACS)의 교육인증 프로그램 같은 유사 프로그램 하의 자동차엔지니어협회(SAE)의 기준에 명시된 만큼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c) 자동차공기조화기 정비. 1991/1/1일 유효하며,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자는 냉매재활용인가장비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공기조화기에 냉매와 관련된 자동차공기조화기에 대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가 적절한 교

육 및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앞 문장의 요건은 1990년도 중 자동차공기조화기 100대 미만의 정비를 실시한 기업에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하는 자의 경우에, 그리고 그 자가 (d)(2)에 따라 1992/1/1일까지 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한 경우 1993/1/1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d) (A) 인증.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지나 유효하며, 대가를 받고 자동차 공기조화기에 정비를 실시한 자는 환경청장에게 다음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A) 그 자가 냉매와 관련된 자동차 공기조화기에 작동 중인 냉매재활용인가장비를 구입했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자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 적절한 교육 및 인증을 받았음 혹은

(B) 그 자가 1991년에 자동차공기조화기 정비를 100대 미만 실시한 기업에서 서비스를 수행 중임.

(2) 1993/1/1일자 유효하며, (1)(B)항에서 인증을 받은 자는 (1)(B)항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항의 인증서는 이 항에서 인증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와 그 자가 구입한 재활용인가장비의 설비일련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소유자나 다른 담당 관리의 서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A)항의 인증은 냉매재활용인증장비의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기준양식으로 환경청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e) I 등급이나 II등급 물질의 소형 용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지나 유효하며, 어느 자가 냉매 20파운드 미만이 들어있는 용기에 있으며 자동차 공기조화기에 냉매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I등급이나 II 등급물질을 주 사이의 거래에서 어느 자에게 (이 조와 일치한 자동차 공기조화기에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 판매나 보급, 혹은 판매나 보급에 공여하면 불법이다.

[42 U.S.C. 7671h]

염화불화탄소 성분 필수품 외 품목

610조. (a) 규정.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이 조의 요건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b) 비 필수품. 이 조의 규정은 대기 중에 I등급물질을 방출하는(제조, 사용, 보관이나 폐기 중 발생하는 유출을 포함) 비 필수품을 조사하고, 어느 자가 그와 같은 제품을 주 사이의 거래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나 유통에 그와 같은 제품을 공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적어도 그러한 금지조항은 다음 품목에 적용된다.

(1) 염화불화탄소 추진식 플라스틱 파티 스트리머 및 소음 경적

(2) 비 상업용 전자식 사진장비용 염화불화탄소를 함유한 세척제

(3) 기타 환경청장이 정한 소비자제품

(A) I 등급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제조, 사용, 보관이나 폐기 중 발생하는 유출 포함)하고

(B) 필수품이 아닌 것

어느 제품이 필수품이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제품의 사용목적이나 의도, 그 제품의 대용품 및 I 등급물질의 대용품의 기술적 가용성, 안전, 보건 및 기타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c) 유효일자.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지나 유효하며, 어느 자가 (b)항을 이행하는 (a)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비필수품을 주 사이 거래에서 판매나 유통 혹은 판매나 유통에 제공하면 불법이다.
- (d) (1) 1994/1/1일자 유효하며, 어느 자가 주 사이 거래에서 판매나 유통 혹은 판매나 유통에 제공하면 불법이다.
- (A) II등급물질이 들어있는 에어로졸 제품이나 기타 가압 용기
(B) II 등급물질이 들어있거나 그 물질로 제조된 플라스틱 폼 제품
- (2) 환경청장은 다음의 경우 (1)조항 (A)항목에서 금지 예외조항을 허락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인화성 또는 작업자안전우려의 결과로 에어로졸제품이나 가압용기를 사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환경청장이 정한 경우
(B) II 등급물질 사용에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대안은 법적으로 II등급물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I 등급물질의 사용인 경우
- (3) (1)조항의 (B)항목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폼 절연 제품이나
(B) 연방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자동차안전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필수 외비, 딱딱하거나 말랑말랑한 폼, 이러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충족하는데 적합한 대체물질(등급 I 이나 등급 I물질 제외)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e) 의료장비. 이 조의 어느 것도 601(80항에 정의된 의료장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2 U.S.C. 7671i]

라벨표시

- 611조. (a) 규정.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이 조의 라벨표시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 (b) I 등급이나 II 등급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 및 I 등급을 함유한 제품.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개월 지나 유효하며, I 등급이나 II 등급물질을 보관, 운반하는 어떠한 용기, 그리고 I 등급물질이 들어있는 어떠한 제품도 “경고: 성충권의 오존을 파괴시켜 공중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음”과 같이 읽기 쉽고 눈에 띄게 표시한 라벨이 없다면 주 사이 거래에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 (c) II 등급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1)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개월 지나, 그리고 2015/1/1일 전, II등급 물질이 들어있는 어떠한 제품도 환경청장이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A) II 등급물질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II) 사람 건강 및 환경에 전반적인 위험을 줄이며, (C)현재나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조과정이나 대체품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b)항에 언급한 라벨이 없다면 거래에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 (2) 2015/1/1일자로 유효하며, (b)항의 요건은 II 등급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에 적용된다.
- (d)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로 제조한 제품. (1) II 등급물질의 경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개월 지나, 2015/1/1일 전, 환경청장이 공공의견 공지 및 기회 후 II등급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제조된 제품과 관련하여 (c)항에 언급한 결정을 하는 경

우, 그와 같은 제품은 “경고: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시켜 공중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물질 명칭 삽입) 제조함”을 표시한 눈에 띄고 읽기 쉬운 라벨이 없다면 주 사이 거래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2) I 등급물질의 경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개월 지나고 2015/1/1일 전 유효하며, 이 항의 라벨표시요건은 환경청장이 (A)II등급물질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II)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전반적인 위험을 줄이며, (C) 현재나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조과정이나 대체품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I 등급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제조된 모든 제품에 적용하여야 한다.

(e) 청구. (1) 누구라도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에게 이 조의 요건을 달리 적용받지 않는 II 등급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이나 I 등급이나 II 등급물질로 제조한 제품에 이 조의 요건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를 접수한 후 180일 이내, 환경청장은 (c)항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이 조의 요건을 그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거나 청구서 거절의 설명을 알려야 한다. 환경청장이 그 제품에 그러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인 경우, 환경청장은 규칙에 의해 청구서 접수 후 1년 이내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조항의¹⁾ 청구서는 청구서를 보완하는데 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료가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한 설명도 포함하여야 한다.

(3) 환경청장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결정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결정하면, 환경청장은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법규에서 자신에 이용 가능한 권한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1) “조항”일 것임..

- (4) 청구가 있는 때, 환경청장 자신의 동의로, 환경청장이 이 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제품의 경우, 환경청장은 요건의 유효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유효일자는 결정 후 1년이거나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개월 중 늦은 때이다.
- (5) 2015/1/1일자 유효하며, 이 항의 라벨표시 요건은 I 등급이나 II 등급물질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로 제조한 모든 제품에 적용한다.

- (f) 다른 법규와의 관계. (1) 이 조의 라벨표시 요건은 라벨표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제기된 소송을 제외하고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연방법이든 주법이든 법규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명분이나 의무에 대한 방어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
- (2)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여타 법규에 따라 환경청장의 다른 라벨 승인은 이 조의 라벨표시 요건에 관련하여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42 U.S.C. 7671j]

안전대안정책

612조. (a) 정책. 최대 가능한 정도로,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전반적이 위험을 줄이는 화학물질, 제품 내용품이나 다른 제조프로세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b) 심사 및 보고. 환경청장은

- (1) 대중이해관계자 및 관련 연방부서기관의 장과 협의 및 조정을 하여 연방연구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을 추천하여 냉매, 용제, 방염제, 발포제 및 기타 상용 응용제품으로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 사용의 대안을 확인하고, 대안으로 바꾸는 것을 돕고, 연방연구시설 및 자원 사용을 최대한으로 모색하여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 사용자가 냉매, 용제, 방염제, 발포제 및 기타 사용 응용제품으로 그 물질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조사, 개발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 (2) 국방부 장관 및 총무부 등 기타 관련 연방부서기관의 장과 협의 및 조정을 하여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조달업무를 조사하고, 가능한 신속히 연방정부가 안전한 대체품 사용으로 전환을 후원하는 대책을 권고하여야 하며,
- (3) 적절한 정부간, 국가 간, 상용정보 및 기술전수 등 주도 대책을 명시하여 대체 화학물질, 제품 대용품 및 대체 제조과정을 포함하여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의 안전한 대체수단의 개발, 사용을 증진하여야 하며,
- (4) 대체 화학물질, 제품 대용품 및 대체 제조과정의 공공정보센터를 관리하여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을 사용한 제품 및 제조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I 등급물질 혹은 II 등급물질의 대체수단.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I 등급물질이나 II 등급물질을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체물질로 대체하면 환경청장이 아래와 같은 대체대안수단을 확인한 경우 불법임을 이 조에 따라 규정하는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전반적인 위험을 줄임
 - (2) 현재 혹은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환경청장은 이 항에서 (A)특정 용도에 금지된 대체품 목록 및 (B) 이 항에서 특정용도로 확인된 안전한 대체수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d) 청구권. 누구라도 환경청장에게 어느 물질을 (c)항의 목록에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어느 물질을 제외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이러한 청구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청구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청구를 거절하면, 환경청장은 청구거절이유에 대한 설명을 알려야 한다.

환경청장이 청구를 수락하면, 환경청장은 그 후 6개월 이내 수정 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항의 청구서는 청구를 지지하는데 적합한 물질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청구인의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물질에 대한 정보가 이 항에서 결정을 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환경청장은 자신의 관리하는 법칙에 따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e) 연구 및 통보. 환경청장은 I 등급물질의 대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자에게 대체물질에 대한 미발표 건강 및 안전 연구서를 환경청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하고,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신규화학물질이나 기존 화학물질이 I 등급물질의 대체품으로 중요한 새로운 용도로 주 사이 거래에 반입되기 전에 90일 이내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항은 114(c)항을 조건으로 한다.

[42 U.S.C. 7671k]

연방정부 조달

613조.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행정관리청장 및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미국의 부서기관 및 대행단체에게 I 등급물질 및 II 등급물질 관련하여 612조에서 확인된 안전한 대체수단의 대용을 최대로 하고 조달규정이 이 장에서의 정책 및 요건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0개월 이내, 미국부

서기관 및 대행단체는 조달규정을 따르고 대통령에게 규정이 이
조에 따라 수정되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42 U.S.C. 7671i]

다른 법규와의 관계

614조. (a) 주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기간
중, 116조에 불구하고, 주정부도 지방정부도 성층권오존층을 보
고하기 위해 신규 혹은 회수된 기구의 설계관련 요건을 집행할
수 없다.

(b) 몬트리올협정.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로 추가된 이
장은 몬트리올협정 2조 11항에 제공된 대로 협정의 조건을 보완한
것으로 해석, 판단 및 적용을 하여야 하며, 몬트리올협정을 미국이
완전히 이행할 의무나 책임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 판단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장의 규정 및 몬트리올협정의 조항
사이에 상충되는 경우, 더욱 엄격한 조항이 우선하여야 한다. 이
장의 어느 것도 몬트리올협정 4조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청장의 다
른 해당 기관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 판단하거나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c) 기술수출 및 해외투자. 이 장이 제정된 때, 대통령은

- (1) I 등급물질 생산에 사용된 기술수출을 금지하여야 하며,
- (2) 몬트리올협정 당사국이 아닌 나라에서 I 등급물질이나 II 등급
물질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어느 자의 직, 간접투
자를 금지하여야 하며,
- (3) 어떠한 정부기관도 I 등급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쌍무적 보조
금이나 다국간 보조금이나, 지원금, 보증, 신용대출이나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2 U.S.C. 7671m]

환경청장의 권한

615조. 환경청장의 판단으로 어떠한 물질, 관행, 프로세스나 활동이 성층권, 특히 성층권의 오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이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다면, 환경청장은 이러한 물질, 관행, 프로세스나 활동의 통제 관련 규정을 신속히 공포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의 상정 및 공포 통지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U.S.C. 7671n]

몬트리올협정 당사국간 양도

616조. (a) 개요. 몬트리올협정과 일치하여 미국은 다음 조건으로 협정의 당사국들과 양도에 관여할 수 있다.

- (1) 미국은 다른 당사국에 생산허용량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는 양도시점에 환경청장이 미국의 생산한도수정안을 확정하고 이 수정안에 허용된 미국의 총 국내생산량이 (A) 협정에서 양도한 연도에 관련된 물질에 허용된 최대생산수치에서 양도한 생산허용량을 뺀 양, (B) 해당국내법에 따라 양도한 연도에 관련된 물질에 허용된 최대생산량에서 양도한 생산허용량을 뺀 양, (C) 양도 전 3년 간 관련 물질의 실제 국내평균생산량에서 양도한 생산허용량을 뺀 것 중에서 더 작은 것과 같은 경우이다.
- (2) 미국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생산허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양도 시점에 다른 당사국이 (a)항에서 미국의 양도 관련 제시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생산한도량을 수정하였음을 안 경우이다.

- (b) 생산량한도에 대한 양도 효과. 환경청장은 (a)항 (1)조항에 따라 양도의 서행조건으로 요구된 이 법에서 정한 생산한도를 줄이거나 (a)항 (2)조항에 따라 양도에서 획득한 생산허용량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생산한도를 늘릴 권한이 부여된다.
- (c) 규정.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이 조를 이행할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 (d) 정의. 미국의 경우에, ‘해당국내법’은 이 법을 말한다.
[42 U.S.C. 7671o]

국제 협력

617조. (a) 개요. 대통령은 이 장에서 허가된 연구실험을 보완하는 협동연구를 육성할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일치하여 성층권을 보호하는 기준 및 규정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이 목적으로 대통령은 국무장관 및 해양국제환경과학업무차관보를 통해 다자간 협정, 협약, 결의안이나 기타 약정을 협상하며, 미국 및 기타 적절한 국제 포럼에서 제안을 공식화, 제시하거나 지지하여야 하며, 협약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b)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환경청장은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몬트리올협정 당사국인 개도국에 기술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협정 5조에 따라 적용을 하면서 몬트리올협정에 전 세계의 참여를 지지하여야 한다. 1991,1992,1993년 회계연도에 이 조를 수행하기 위해 3천만 달러 이하, 1994년 및 1995년 회계연도에 필요할 수 있는 총당금이 허용된다. 중국 및 인도가 몬트리올협정 당사국이 되면,

1991,1992, 1993년 회계연도에 이 조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3천만 달러 이하로 총당금이 허용된다.

기타 규정

618조. 116조의 목적을 위해 오존층 고갈에 대비하여 성층권 보호를 위해 이 장에서 언급한 지역 관련 요건은 대기오염통제 및 감축 요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118조의 목적을 위해, 이 장 및 해당 주, 주 사이 및 지방 요건, 행정당국 및 프로세스, 그리고 성층권오존층보호 관련 제재 등은 118조의 의미 내 대기오염통제 및 감축의 요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42 U.S.C. 7671q]



부 록

청정대기법을 개정하지 않은 1977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공법 95.95)

교육

101조. (a) ……………

(c) 환경청장은 이 법 환경대기연구, 개발 및 시연 측면에 대하여 하
원과학기술위원회와 상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 및 시
연 문제와 관련된 이 법에서 요구된 보고서 및 연구서는 과학기술
위원회에 송부하여 동시에 기타 의회위원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준수명령(석탄 전환 포함)

112조. (a) ……………

(b) (1) 이 법 119조는 개정안에서는 폐지한다. 119조에 언급된 내용이
나 1974년도에너지공급환경조정법(이하 ‘에너지조정법’이라 칭함)
2조의 항이나 그 개정안 또는 그 법의 추후 대체개정안은 청정대
기법의 113(d)항 및 특히 (5)조항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에너지조정법 2조나 그 개정안 또는 그 법의 추후 대체개정
안에서 환경청장이 시행할 필요가 있는 인증이나 통지는 청정대기
법 113(d)(5)항의 예정명령이 발할 공급원이 소재한 주지사가 사전
서면 동일권리를 부여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정대기법 113(d)(5)(B)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에너지
조정법2조나 그 개정안 또는 그 법을 대체하는 후속 개정안에
따라 인증이 요구되는 주요 고정공급원의 경우에, 환경청장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공급원이 그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인증하여야 한다. 청정대기법 113(d)항에 따

른 명령을 받지 않고 에너지조정법 2조나 그 개정안 또는 그 법의 추후 대체개정안에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주 정부와 상의 후) 결정한 공장이나 설치물의 경우에, 환경청장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공장이나 설치물이 이행계획에서 해당배출한도를 준수하는데 있어 석탄을 연소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를 입증하여야 한다.

- (3) 에너지조정법 2조나 그 개정안 또는 그 법의 추후 대체개정안이나 이 항에서 요구된 인 증은 청정대기법 113(d) 항의 명령에 규정할 수 있다.

규제 외 오염물질

120조. (a)

- (b) 환경청장은 기타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황산염, 방사성 오염물질, 카드뮴, 비소 및 다환성 유기물질이 공중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황산염이 형성되는 방법 및 황산염, 카드뮴, 비소 및 다환성 유기물질이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공중보건복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철저히 조사하는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의한 악화 방지

127조. (a)

- (b) 이 법 입법일자로부터 1년 이내, 환경청장은 (a)항의개정내용에 따라 연간 250톤 이상 배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적용하는 ‘주요 배출시설’ 정의 부분의 귀추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차폐시설의 종류, 시설을 포함한 것의 대기질 이익 및

시설 규제에 행정적 측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c) 이 법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지침 문서를 발간하여 황산화물 및 미립자를 제외하고 국가 대기질 기준이 공표된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청정대기법 I장 파트 C에 따라 주정부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지침문서는 이 법 110조 및 파트 C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이나 복수 주정부 차원에서 광화학산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권장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 (d) 이 법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청정대기법 I 장 파트C를 이행하는데 있어 연구를 완수하고 진행 상황 및 이 조를 이행과 관련된 문제, 지역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광산화물을 통제하는 전략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법수정안의 권고사항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달성제외 지역

129조. (a)(1)1979/7/1일 전, 1976/12/21일자 41 연방기록부 55524.30에 발표한 환경청장의 해석규정은 환경청장의 규칙으로 수정할 수 있는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적절한 배출 상쇄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기준선이 주요 예정고정공급원의 (청정대기법 302조의 의미 내) 허가서 신청시점에 유효한 주정부의 이행계획이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979/7/1일 전, (1)항에 언급된 규정의 요건은 환경청장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권리포기를 할 수 있다 .

(A) 주정부가 (C)항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의 종류, 양 및 공급원을 확인한 달성제외지역(청정대기법 171조에 정의

됨)의 해당오염물질 배출목록이 있음.

(B)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는 허가프로그램이 있음.

(i) 신규, 혹은 변경 주요 고정공급원이 청정대기법 173조 (2)항~(3)항에(다른 공급원의 최저 달성가능 배출비율 및 준수) 언급되고 (C)항의 연간감축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에서 요구된 만큼 최소한 엄격한 배출한도를 충족할 것을 요구함.

(ii) 기존 공급원이 최소한 적절한 가용 제어기술을 채택하여 확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지역의 배출감축량을 달성할 것을 요구함.

(C)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계 될 수준과 같은 수준의 배출감축량을 규정하기 위해 1979/7/1일 전 그 지역의 총 허용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환경청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실제로 달성 중에 있는 배출감축량이 (C)항목에 따라 권리포기를 조건으로 한 감축량보다 적은 경우, 혹은 환경청장이 주정부가 이 조항의 요건을 더 이상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포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주의 신청이 있는 때, 환경청장은 주가 이 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만족하게 된 경우 앞 문장에서 중단된 권리포기를 부활할 수 있다.

(3) 가동허가는 이 법 입법일자나 그 전에 국가대기질 주요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신규, 혹은 변경 공급원의 공사와 관련하여 승인 시점에 유효한 법규 및 해당규정에 따라서 공사허가가 적절하게 부여된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공사허가나 이 법 입법일자 전에 부여되었고, 허가서가 발급된 자가 공급원의 배출량이 공사허가에 제시된 한도 범위

내에 있을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 (c) 청정대기법 110(a)(2)항의 목적을 위해 406(d)(2)항의(특정이행계획 수정안 제출에 필요한 날짜 관련) 요건에도 불구하고, 달성제외지역이 소재한 주(청정대기법 I장 파트 D에 기술됨)은 1979/1/1일 이내 청정대기법 I장 파트 D 및 110(a)(2)(I)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행계획수정안을 채택,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일자 전에 계획수정안을 채택, 제출한 주가 청정대기법 172(a)(2)항에서 요구한 증명한 경우에, 주는 이 법 172 (b) 및 (c)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수정안을 채택, 1982/7/1일 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소산화물 실험연구의 목적

- 202조. (a) 환경청장은 소형차량에서 질소산화물 0.4g/차량의 배출기준 달성이 공중보건의 시사점, 기준을 달성하는 비용 및 기술적 역량 및 공중보건이나 복지보호 기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1980/7/1일 이내 권고사항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료소비 연구보고서

- 203조. 자동차 모델연도 후, 환경청장은 직전 모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된 자동차연료소비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속사용 차량에 유입되는 일산화탄소

- 226조. (a) 환경청장은 교통부 장관과 연계하여, 지속사용 자동차의 승차구역으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그 차량의 승차구역에서 일산화탄소의 공급원 및 수준의 분석

과 일산화탄소가 승객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또한 일산화탄소의 존재를 감시, 시험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검토하고, 다른 감시, 시험방법의 비용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러한 차량의 승차구역에 허용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대체 전략의 비용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b) 여기서, ‘지속사용 자동차’란 용어는 디젤 혹은 휘발유연료 자동차(소형, 대형 무관)를 말하며, 환경청장이 정한 대로(교통부 장관과 연계하여) 버스, 택시 및 경찰차 등 보통 지속적, 연속적이거나 장기간 사용, 점유하는 차량이다.

암, 심장폐질환환경의 예방에 대한 기관 간 협조

402조. (a) 이 조 입법일자 후 3개월 이내, 암, 심장폐질환환경전담반(이후 ‘전담반’으로 칭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전담반은 환경청, 국립암연구소,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등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환경청장(이나 그 위임인)이어야 한다.

(b) 전담반은

- (1) 환경오염과 사람의 암, 심장, 폐질환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고 수량화하기 위해 종합연구프로그램을 권장하여야 하며,
- (2) 환경오염 관련 기타 질환 혹은 암의 위험을 줄이거나 경감하기 위해 종합전략을 권장하고
- (3) 환경관련 암, 심장, 폐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적절할 수 있는 기타 대책 및 연구를 권장하며,
- (4) 환경청, 보건복지교육부서 및 기타 환경관련 암, 심장, 폐질환을 예방하는데 해당될 수 있는 기관 등의 연구 활동을 조정하고, 부서 간 협조를 도모하여야 한다.

- (5) 이 조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그 후 매년 이 조를 이행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 및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

403조. (a) 이 법의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협조하여 (1) 부유 미립자의 크기, 무게 및 화학성분과 미립자에(특히 미세입자와 관련) 의한 공중보건이나 복지위험의 성격 및 정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2) 미립자억제기술의 가용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b) 환경청장은 악취나 악취 배출가스가 공중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 배출 공급원, 배출 억제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나 기타 대책 및 그러한 기술이나 대책의 비용, 그리고 다른 배출감축대책이나 전략의 비용 및 이익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1979/1/1일 이내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악취 관련 대기질 기준이나 국가 대기질 기준이 청정 대기법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여부, 그리고 청정대기법에 따라 기타 어떤 전략이나 권한이 배출량 감축에 이용 가능하거나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c) (1) 이 법의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사람의 조직, 혈액, 소변, 모유 및 기타 사람의 조직 등에서 발견되었던 환경오염에 기인한다고 알려진 화학오염물질목록을 미국 전역에 알려야 한다. 이 목록은 미국을 위해서 작성하며, 걱정 증례 수, 조사수치의 범위, 및 평균 조사수치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이 법의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1)항의 화학물질이 환경과, 그 후 사람의 조직에 들어오는 방식에 대해 알려진 사항의 설명을 같은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 (3) 환경청장은 국립보건연구소, 국립보건통계센터, 그리고 국립보건과학연구개발센터 등과 협의하여 실행가능하다면 환경에서, 그리고 사람의 체내 화학물질 수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상이한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미국 전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가능한 곧 의회의 해당 위원회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d) 환경청장은 해안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대기질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액상, 고형 에어로졸 및 기타 미세입자 및 이들 물질이 지역에서 가시성 및 공중보건문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환경청장은 국립보건연구소 및 기타 외부 부서기관의 환경보건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 (e) (1) 노동부 장관은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법규 이행으로 인해 직원의 인사이동 가능성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적용대상 직원의 수를 조사하고, 직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지원금 출처를 확인하고, 지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타당하다면 추가 조정 대책을 권고하여야 한다.
- (2) 장관은 이 조의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1)항에서 따라 실시한 연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f) 환경청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약정체결을 착수하여 청정대기법 202(a)항을 적용하는 배출물질이 공중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이 법 202(b)항에서 환경청장이 규정할 필요가 이는 배출기준을 충족할 기술적 개연성의 종합연구조사를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의 입법일자에서 5개월 이내, 그 후 매년,

이 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계약 약정 및 조건 상황에 관해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g) 환경청장은 자동차와 자동차엔진 및 항공기엔진에서 나오는 황 함유 화합물의 배출량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 조의 입법일자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연구보고는 그러한 배출 물질이 공중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황 화합물에 대해 예정되거나 공표된 배출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배출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는(연료의 탈황, 저황원유의 단기 할당, 현행 엔진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기술설비, 대체엔진기술 및 기타 방법) 대안의 비용 및 이익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철도 배출물질 연구

404조. (a)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철도기관차, 기관차엔진 및 철도차량에 장착되는 부수 동력원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배출 물질이 미국 전역에 대기질 관리지역의 대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리고
- (2) 현행 주 정부의 배출억제기술 및 기술적 개연성과,
- (3) 배출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주, 지방의 현행, 예정 규정의 상태와 영향

(b) 연구조사를 착수한 후 180일 이내, 환경청장은 해당 입법권고안과 함께 연구조사보고서를 상원의 환경공공사업위원회 및 하원의 국내외통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기오염관리의 경제적 방법에 관한 연구보고

405조. (a) 환경청장은 경제자문위원회와(이후 이 조에서 ‘위원회’로 칭함)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대기오염관리 목적으로 경제조치의 연구평가를 착수하여야 한다.

- (1) 기존의 대기오염관리방법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2) 청정대기법의 기존 조항(및 그에 따른 규정)에서 요구한 정도보다 더 큰 정도로 대기오염감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
- (3) 청정대기법조항에 (혹은 그에 따른 규정) 언급되지 않은 대기오염문제 관리를 위해 주요 인센티브로 역할을 할 것임

(b) (a)(1)항에 기술한 대책연구는 (1)기존의 관리방법이 준수를 지연시키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대기오염문제 확인, (2) 기존의 관리방법에 저촉되지 않게 준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경제조치의 공식화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 (a)(2)항에 기술한 대책연구는 (1)기존의 관리방법이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만큼 포괄적 일 수 없던 대기오염문제 확인, (2) 다음 사항을 초래하지 않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추가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경제조치의 공식화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A) 기존의 관리방법의 효과성과 저촉되지 않거나

(B) 환경목표에 도달하는데 대체 규제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d) (a)(3)항에 기술된 대책연구는 기존에 관리방법이 없는 대기오염문제 확인, (2) 오염을 줄이는 경제 대책의 공식화작업, (3)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규제 방법의 영향과 경제대책의 경제적, 환경적 영

항의 비교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 이 조의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b)(1), (c)(1) 및 (d)(1)항에 기술된 문제에 대해 구조적, 행정관리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비 검열을 하고, 가장 유망한 경우에 (b)(2), (c)(2) 및 (d)(2)항에 따라 경제대책을 공식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을 규정하는 그와 같은 대책을 공식화하는데 있어, 가능하다면 적절한 비용수준을 결정하고, 환경경제영향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f) 이 법의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고정공급원에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하는 장단점(개연성 분석 포함)에 대한 연구를 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체계의 수립에 관해 권고를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이 체계가 신규 주요 배출시설이나 기존 주요 배출시설 또는 둘 다 관련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억제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설비 및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장려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권고한 예정과징금체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 과징금체계를 적용하는 적정 기간, 그리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러한 체계의 적정 만료일에 관한 권고사항

(A) 시설 해당부문별로 질소산화물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적당한 기술시점

(B) 시설에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

(C) 이 기술을 이용하라고 환경청장이 요구할 권한.

(2) 과징금의 적용 가능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징금 적용 대상 시설이 집계하는 기록 관련 권고사항

- (g) 이 조의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 및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연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오염문제 및 해결권고안의 중간보고서는 이용할 수 있는 때 대통령 및 의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청장이 조치하여야 한다.

유보조항. 유효일자

406조. (a) 환경청장이 또는 환경청장이나 여타 미국의 관리직원을 상대로 청정대기법 입법일자 직전 유효하고, 이 법에 따른 공직기간 중이나 공식임무 해제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착수한 소송, 조치나 기타 절차는 이 법에서 개정된 사항의 효력발휘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자체 명령으로 그러한 효력 발휘 후 12개월 이내 어느 때라도 당사자의 명령신청으로 환경청장이나 기타 관리직원이, 또는 환경청장이나 기타 관리직원을 상대로 같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b) 이 법 입법일자 직전 유효하고, 청정대기법에 따라 정히 발하거나, 행하거나 택하고, 이 법 입법일자 직전 유효하고 환경청장이나 법원에서 중지하지 않고, 청정대기법에 따른 역할, 권한, 요건 및 임무와 관련하여, 모든 규칙, 규정, 명령, 결정, 계약, 인증, 허가, 위임이나 기타 조치는 이 법에서 개정된 대로 청정대기법과 일치하여 변경 또는 폐지될 때까지 이 법의 입법일자 후 계속 효력을 전부 발휘한다.

(c) 이 법의 어느 조항도 이 법에 따라 취한 조치도 이 법으로 개정된 때 청정대기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정대기법 110조에서 유효한 승인된 이행계획의 요건이나 이

조의 입법일자 전 청정대기법에 따라 유효한 이 법의 여타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 (1)달리 명시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입법일자에 유효하다.

(2) 달리 명시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이유로 해당이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주는 다음 중 늦은 날짜 전에 계획수정안을 채택,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이 법 입법일자 후 1년 혹은

(B) 계획수정안 승인에 필요하고 이 법의 수정사항에 따라 규정을 환경청장이 공표한 날짜가 지나고 9개월 후

VII 장. 산성비 프로그램 및 일산화탄소 연구

VII A.

약식표제

701조. 이 표제는 “1980년도 산성비법”으로 칭할 수 있다.

조사결과확인서 및 목적

702조. (a) 의회는 자연 발생원이 아닌 다음의 산성비의 영향을 조사하고 공표한다.

- (1) 자연적, 인위적으로 물 공급처의 오염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2) 농작물 및 임산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3) 어류, 야생 및 자연생태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4) 건물 및 공공기념물의 건축 및 장식에 사용된 금속, 목재, 페인트 및 석공품 등의 부식에 기여할 수 있음
- (5) 공중보건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6) 공급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영향을 끼쳐 국내외 정책문제에 얽힐 수 있음

(b) 의회는 이 장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1) 산성비의 원인 및 공급원을 확인
- (2) 산성비의 환경, 사회 및 경제영향을 평가함
- (3) 이 장에서 정한 연구프로그램의 결과에 기초하고, 기존 법규와 일치하는 정도로,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정도로 조치를 취함

- (A) 산성비의 공급원인 것으로 확인된 배출 물질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일,
 - (B) 산성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구제하거나 달리 개선하는 일
- (c) ‘산성비’란 용어는 대기에서 산성 화합물의 침전물을 말하며, 건조하거나 물기가 있는 상태이다.

부서 간 전담반: 종합프로그램

703조. (a) 이 장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10개년 종합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산성비전담반(이후, 이장에서 ‘전담반’이라 칭함)이 구성되어야 하며, 농무부 장관, 환경청장과 국립해양대기관리청장이 공동 의장이다. 전담반의 나머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내무부, 보건국민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무부, 국립항공우주관리청, 환경질위원회, 국립과학재단 및 테네시계곡관리국 등의 각 대표자 1명
- (2) 아르곤국립연구소장, 브루크하벤국립연구소장, 오크리지국립연구소장 태평양북서부국립연구소장.
- (3)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b) 국립연구소 4곳((a)(2)항에 언급됨)은 704(b)(13)항에 언급된 의무뿐만 아니라 전담반에 대해 대표자가 요구한 총괄책임을 지는 연구경영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컨소시엄은 전담반의 공동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c) 국립해양대기관리청장은 이 장에서 정한 연구프로그램의 장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종합연구계획

704조. (a) 전담반은 10개년 종합연구프로그램(이 장에서 ‘종합계획’으로 칭함)을 계획하고, (1) 산성비의 원인 및 영향을 조사하고, (2) 산성비의 유해한 영향을 제한하거나 개선하는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b) 종합계획은 다음 사항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산성비에 기여하는 대기 배출 물질의 공급원을 확인
- (2) 산성비의 수준을 검출, 측정하는 전국적 장기감시네트워크를 수립, 운용
- (3) 대기 중 배출물질이 산성비로 변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대기물리화학의 연구
- (4) 산성비 원인물질의 장거리수송을 예측할 수 있는 대기운반모델을 개발, 적용
- (5) 침전물 감시, 취약 지역 및 위험에 처한 지역의 확인을 통해 지리적 영향지역을 정의
- (6) 물과 토양화학에 대한 기존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일시적 동향 분석을 통해 영향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확대
- (7) 토양, 토양유기체, 수성유기체 및 수륙양생유기체, 농작물 및 임산물 등에 대해 용량-반응 기능의 개발.
- (8) 식물생리, 수성생태계, 토양화학체계, 토양미생물체계 및 숲생태계 등과 관련한 체계 연구를 확정, 시행
- (9) (A)산성비가 원인이 되어 농작물, 숲, 수산물 및 휴양자원 및 심미적 자원 및 구조에 미치는 환경영향, 그리고 (B)산성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달리 개선하는 대체 기술의 경제적 평가

- (10) 산성비 연구 관련하여 현행 연방정부의 활동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 활동이 재정자원 및 기술자원이 낭비되고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11)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산성비연구개발프로그램에서 산성비 영향을 받는 주와 개발에 기여하는 주와 기타 이해를 공유하는 주권국과 협조에 영향을 미침
- (12) (f)(1)항에 따라, 전담반이 연방산성비연구개발에 할당된 재정자원을 전담반이 관리함.
- (13) (f)(2)항에 따라, 연방산성비연구개발프로그램의 기술적 측면을 관리하고, (A) 연구개발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계획 및 관리 (B) 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도급업체 및 수혜자 선정 및 (C) 연구개발프로그램 및 그 결과물의 질을 확보하기위해 전문가심사절차를 수립
- (14) 산성비 및 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정기 권고사항을 공식화하고 의회 및 해당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산성비 관련 이용 가능한 정보를 분석

(c) 종합계획은

- (1) 의회에 초안 형태로, 이 법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공공 심사를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2) (1)항에서 초안 형태로 제출한 후 60일 기간 동안 공공의견 수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3) 심사기간 중 입수한 의견에서 파생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최종 형태로 대통령 및 의회에 (2)항의 종합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을 얻는데 허용된 기간이 끝난 후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 (4)(3)항에서 최종 형태로 종합계획을 제출한 회계 연도 후 9년의 회계 연도에 허가 및 충당금을 요청하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 (d) 전담반은 필요한 때, 그러나 10개년 종합계획 기간 중 매 회계 연도에 2번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
- (e) 전담반은 매년 1/15일까지 이 장의 연구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상술하고 (b)(14)항에 따라 발현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연례보고서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f) (1)(b)(12)항은 전담반이나 종합계획이 (A) 기금이 충당되는 부서기관이나 (B)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서기관의 의무를 명시한 충당금법의 조항(이나 충당기금의 사용 관련 여타 법규 조항)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2) (b)(13)항은 전담반이나 종합계획이 (A) 그러한 부서기관의 계약이나 보조금의 선택, 부여나 관리를 위한 조달관행, (B) 그러한 부서기관의 프로그램 활동, 제한, 의무나 책임을 명시하는 법규조항을(부서기관과 관련되거나 개입하는) 수정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종합계획의 이행

- 705조. (a) 종합계획은 704(c)(3)항에 따라 최종 형태로 종합계획이 제출된 회계 연도 후 9년 회계연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704(b)항의 (1)~(11)조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실시하고, 프로그램 목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 (2) 그 조의 (12)~(14)조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 (3) 704(e)항에서 회계연도 시작하는 연도의 1/14일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담반의 진행보고서를 제출한 후 프로그램의 매 회계연도에(706조에 규정) 부여되어야 하는 연간 승인을 따르며 연간충당금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 (b) 이 장에서 어느 조항도 기존 법규의 규제권한을 제한, 확대하거나 다르게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제권한을 부여하거나, 기존 법규의 규정 요건, 신규 기준이나 표준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총당금 허가

706조. (a)704조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전개하기 위해 국립해양대기관리청에 1981년 회계 연도에 5백만 달러 금액을 총당하고 지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b) 704(c)(3)항에 따라 최종 형태로 종합계획이 제출된 회계 연도 후 9년 회계연도에, 703(a)항에서 정한 10개년 종합프로그램을 수행하고, 704조 및 70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이행할 목적으로 부여되는 총당금 허가는 이후 제정된 허가부여 법에서 매년 규정하여야 하지만, 그 9개년 회계연도 중 그러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총 금액은 관련 허가부여 법에서 이 조항을 참조하여 특별히 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5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VII B.

연구

711조. (a)(1)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약정 체결을 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수치, 화석연료연소, 석탄전환 및 이 법에서 허가된 관련 합성연료 활동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종합영향전망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영향의 경제, 물리, 기후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

를 실시하는데 있어, 기술정책국 및 아카데미는 국내외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 국제단체 등과 공조하여 관련 문제의 국제적, 세계적 평가사항을 전개하고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의 측면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제안하라고 독려를 한다.

(2) 대통령은 이 조에서 요구된 연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국의 협상 상황에 관해 이 법의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b) 이 조에서 요구된 연구 결과 주요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이 법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정책국과 아카데미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카데미가 보고에 기여하는 정도는 사전 심사나 통관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전 통관이나 조건은 이 조에 따라 아카데미와 정책국에서 체결한 약정의 일환으로 아카데미에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 보고는 어떠한 경우든 다음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연구, 감시, 모델링 및 대기 중 여러 이산화탄소 수치의 원인 및 효과의 평가에 대한 장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 프로그램의 부서간 요건에 대해 정책국이 제시한 의견 및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약에 대한 국무장관의 논평 등을 포함한다.

(2) 어떻게 미국은 국제 기준으로 이러한 장기 프로그램개발에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3) 프로그램에 어떠한 국내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4) 정부정책입안자에게 최고로 중요할 수 있는 정보 및 권고안을 제공하는데 있어 효용성이 증대되도록 진행 중인 미국정부의 이산화탄소평가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가

(5) 이 조에서 정책국 및 아카데미가 권고할 수 있는 장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의회에 정기 보고할 필요성

(c) 에너지장관, 상무부 장관, 환경청장 및 국립과학재단장 등은 이 조에서 요구된 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정책국이나 아카데미가 결정한 정보를 요청이 있는 때 정책국이나 아카데미에 제공하여야 한다.

(d) 정책국은 (b)항의 세 번째 문장에 기술된 유형의 종합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간 요건의 별도 평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충당금 허가

712조. 711조에서 허가된 이산화탄소 연구를 시행하는 비용을 위해 (과학기술정책국이 결정한) 필요할 수 있는 대로 충당금액은 총 300백만 달러를 넘지 않게 허가된다. 앞 문장에 따라 충당된 금액의 최소 80%는 국립과학아카데미에 제공하여야 한다.

청정대기법을 개정하지 않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
(공법 101.549) 조항

B.

231조. 디젤 대체 에탄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환경청장은 에탄올 및 erucis 채종유로 구성된 디젤대체연료와 관련하여 개연성, 엔진성능, 배출량 및 생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채종유의 알코올 에스테르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는 연구소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계약을 공표하고 3년 이내 의회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3조. 주정부의 규제권한

(a) 연구. 환경청장 및 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최소한 다음 문제 및 기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를 다루는 밀폐 시험 격실에서 설치된 적이 없는 항공기엔진 시험의 연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1) 시험 격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어느 정도 통제할 기술이 있는지 여부
- (2) 기술의 효과성
- (3) 기술 이행 비용
- (4) 기술이 항공기엔진의 안전, 설계구조, 가동이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여부
- (5) 기술이 시험 격실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항공기 엔진안전디자인의 효과성 및 정확도를 손상하는지
- (6) 해당 달성제외지역에서 질소산화물을 관리하지 않아 다른 고

정공급원 및 유동공급원에, 그리고 그 지역의 질소산화물에 미치는 영향

- (b) 보고, 규제 권한.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4개월 이내, 환경청장 및 교통부 장관은 이 조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를 마친 후, 주정부는 해당 기준이 연구조사결과와 일치하는 여부를 명시한 공지를 발표한 후에만 시험격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채택, 집행할 수 있다.

234조. 비산성 먼지.

- (a) 신규 공급원심사를 위해 청정대기법 I장 파트 C나 D의 110조에 따라 24시간 이하의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립자의 국가 대기질 주요 기준을 따름을 증명하기 위해, 표면석탄광산에서 배출되는 비산성 미립자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AP-4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집계를 이용한 공업공급원복합(ISC)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그러한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날라 다니는 미립자의 대기질 영향을 지나치게 과다 예측하지 않도록 필요할 수 있는 수정을 하고, 모델 및 배출계수의 정확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수정작업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표면광산 비산성 배출물질의 수정 모델을 환경청장이 개발하는 시기까지, 주정부는 환경청장이 발간한 지침에 따라 다른 실험적 기반 모델링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03조. 위험평가관리위원회

- (a) 수립. 이 조에 따라 수립되는 위험평가관리위원회는(이후 이 조에서 ‘위원회’로 칭함)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절차를 착수하고 여러 연방법규에서 암 예방관리프로그램

에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의 적절한 활용 및 정책시사점과 사람이 유해물질에 노출로 비롯될 수 있는 만성적인 건강 영향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b) 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찰하여야 한다.

- (1) 청정대기법 112(o)조에서 허가된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배출이나 방출기준, 대기 기준, 노출기준, 용인할 수 있는 농도수준, 내성이나 기타 발암영향이나 기타 만성건강영향의 위험을 나타내는 유해물질의 환경기준, 그리고 위험평가의 적합성
- (2) 유해물질에 노출로 인해 암 위험이나 기타 만성건강위험을 판단, 기술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 생존 중 암 위험이나 기타 실제 사례 및 최악의 사례 기준으로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에 암이나 기타 영향의 생존 중 위험과, 위험의 범위, 노출을 줄여 피하는 건강영향 건수, 방출기준, 대기질 기준, 노출 기준, 용인할 수 있는 농도수치, 내성 및 기타 환경기준, 여러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 수 축소, 암 발생률 및 기타 공중보건요인 등을 고려한다.
- (3) 측정 및 산정기법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방법, 유해물질 사이에 시너지효과나 반대 영향의 존재, 동물노출자료에서 사람의 건강위험을 외삽하는 정확도 및 위험평가연구에서 사람의 건강에 수량화하지 않은 직, 간접적인 영향의 존재 등
- (4)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에 생존 중 암 위험의 활용, 암 발생률, 노출감축대책의 비용 및 기술적 개연성 및 배출기준 및 유해물질에 노출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한도를 정하는데 있어 부지별 실제 노출정보의 활용, 그리고
- (5) 여러 연방프로그램 가운데 일관된 위험평가방법론이나 용인할

수 있는 위험의 일관된 기준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정도에 대한 논평

- (c) 위원직. 이 위원회는 위험평가나 위험관리 분야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2명은 하원의장이 지명하며, 1명은 하원야당지도자가 지명하고, 2명은 상원 여당지도자가 지명하고, 1명은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여야 한다. 지명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 개정안의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하여야 한다.
- (d) 기관의 도움. 환경청장 및 기타 부서기관 및 연방정부대행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다른 법규 조항에 따른 이 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간주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 (e) 인원 및 계약
 - (1) 이 조에서 요구한 연구 실행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명령 범위 내 연구나 조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는 비정부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연방계약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며, 공청회, 포럼 및 연수회를 개최하여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위원회는 미합중국법전 5장의 조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인원을 임명하고 그 봉급을 정할 수 있으며, 환경청이나 기타 연방기관의 직원을 임시 임명요청을 할 수 있다.
 - (3) 미국의 관리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학회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달리 의장의 요청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미합중국법전 5장 5332조의 일반일정에 규정된 대로 출장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비 등급 GS.18의 경우 최대 임금비율을 넘지 않는 비율로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에서 허가한 대로 생계비 대

신에 일당을 포함하여 집이나 정규사업장에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

(f) 보고. 이 조에 따라 위원회의 연구조사결과 보고서는 적절한 입법 권고안이나 행정권고안과 함께,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42개월 이내 의견수렴을 위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일자 후 48개월 이내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유해물질에 노출하여 비롯될 수 있는 암이나 기타 만성건상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규제프로그램에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의 적절한 용도에 대해서 권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제출 후 9개월 이내 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해체된다.

(g) 허가. 이 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충당되도록 허가된다.

304조. 화학프로세스안전관리

(a) 화학프로세스안전기준. 노동부 장관은 1970년도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2개월 이내, 노동부 장관은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에서 고위험화학물질의 유출사고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화학프로세스안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b) 고위험 화학물질목록. 장관은 그러한 기준의 일부로 고위험 화학물질목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여기엔 독성, 인화성, 고반응성 및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다. 화학물질 목록은 1986년도 긴급계획공동체의 알 권리 302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작성한 화학물질목록을 포

함할 수 있다. 장관은 작업장에서 유출사고가 있는 때 중상 또는 사망 위협을 띠는 것으로 발견된 때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c) 안전기준의 요소. 그러한 기준은 최소 고용주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작업장의 화학물질처리 위험, 프로세스에 사용된 장비 및 프로세스에 사용된 기술 등을 확인하는 안전정보를 발전시키고 유지 관리할 것.
- (2) 작업장위험평가, 해당되는 경우 유출사고 가능성 공급원의 확인, 작업장에서 재앙의 파국 영향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서 이전의 유출사고 확인, 유출범위의 작업장 영향 평가, 유출범위가 직원에 미치는 보건안전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 (3) 위험평가개발 및 수행과 화학물질사고예방계획의 전개에 대해 직원과 대표자들과 의논을 하고 그 기준에서 요구된 여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위험방지, 완화 및 비상대응을 다룬 작업장위험평가조사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할 것.
- (5) 작업장위험평가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 (6) 작업 단계, 작업한도 및 안전보건고려사항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여 화학프로세스의 운용 절차를 개발, 문서로 작성하고, 이행할 것.
- (7) 직원에게 안전작업정보문서를 제공하고 운용절차를 교육시키고, 위험 및 안전수칙을 강조할 것.
- (8) 도급업체 및 계약직원이 적절한 정보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9) 수퍼펀드개정안및재인가법 126(d)항에 따라 공표한 규정에서 요구된 것만큼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상사태 대응

에서 직원 및 도급업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 (10) 최초 프로세스 관련 장비, 유지보수자료 및 예비부품이 설계 명세서에 따라 조립, 설치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수립할 것.
- (11) 문서절차, 직원교육, 적절한 검사 및 현재 기계의 무결함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의 시험 등 중요 프로세스 관련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체계를 수립할 것.
- (12)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장비를 시동 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13) 프로세스 화학물질, 기술, 장비 및 시설의 변화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 문서로 작성하고, 이행할 것.
- (14) 작업장에서 주요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을 모든 사고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운용직원이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변경을 할 것.

- (d) 주정부 권한. 이 조의 어느 조항도 청정대기법 112(r)(11)에서 기술된 대로 주정부 및 그 행정당국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05조. 고품폐기물연소

- (c) 산성기체 제거요건심사. 청정대기법 111조나 129조에 따라 시의 폐기물을 연소하는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 대한 성과기준을 공표하기 전, 환경청장은 청정대기법 129조 (a)92)항의 조항을 고려하여 신규설비 및 기존설비에(54 연방기록부 52190에 규정된, 1989/12/20) 대한 오염관리기술로서 산성기체제거제의 가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306조. 재 관리 및 처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의 기간 동안, 시의 폐기물을 연소하는 고품폐기물소각설비에서 나온 재는 고품폐기물

처리법 3001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 및 한도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 후 환경청장의 활동을 불리하게 하거나, 이양하거나 달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402조. 화석연료사용

- (a) 수력전기에너지공급계약.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전기에너지 공급의 대가로 수력전기에너지를 공급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대로 그 자가 보유한 허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연방전력판매관리청. 연방전력판매관리청은 전력판매관리청에서 판매하고 수력전기시설의 전기에너지와 관련하여 이 장의 조항 및 요건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연방전력판매관리청에 전기에너지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이 장에서의 요건 및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03조. 비을 감축의 폐지

- (a)
- (b) 규정개정안.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환경청장은 수정기준을 적용하는 공급원이 수정 전 이 조의 해당성과 기준을 공급원이 준수한 결과로 달성될 비율보다 높지 않은 비율로 이산화황을 배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상정된 후 공사를 새로 착수하는 화석연료연소 전기 공급설비에 대한 성과기준의 규정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 (c) 적용 가능성. (a) 및 (b)항의 조항은 청정대기법 403(e)항의 규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404조. 산성 침전물 기준

이 법의 입법일자 후 36개월 이내, 환경청장은 상원 환경공공사업 위원회 및 하원에너지통상위원회에 수생토양자원 중 취약한 자원, 극히 취약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성 침전물 기준의 실현성 및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요구된 연구는 다음 사안 등을 고려할 것을 요한다.

- (1) 산성 화합물 침전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극히 취약한 수생토양자원을 확인,
- (2) 이 자원을 보호하는데 충분할 침전기준의 특성 및 수치에 대한 설명
- (3) 산성침전물관리프로그램에서 여러 주정부나 기타 국가에서 이러한 기준용도를 설명.
- (4) 청정대기법 IV장에서 요구한 관리프로그램과 이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취할 필요가 있을 대책에 대한 설명
- (5) 관리프로그램의 실현성을 확보하는데 진행 중에 있거나 필요할 추가연구에 대한 설명 및 기준에 관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공급원 vs 수용체 관계에 대해서 지식상태에 대한 설명
- (6) 청정대기법 IV장의 신규 공급원 성과기준 및 요건, 대기질 기준을 포함한 기타 통제전략과 비교하여 침전기준의 비용효과성 및 관리프로그램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

405조. 국가산성호수등록부

환경청장은 국가산성호수등록부를 수립하여 가능한 정도로 산성 침전물로 인해 산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호수 목록을 작성하고, 이 법의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수는 산성 임을 보여 주는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때나 호수가 산성으로

될 때 등록부에 추가하여야 한다. 호수가 산성이 아닐 때에는 등록부에서 빼야 한다.

406조. 공업 SO₂ 배출

(a) 보고. 1995/1/1일 이내, 그 후 5년 마다, 환경청장은 청정대기법 405(g)(6)항을 따르는 설비를 포함하여 공업공급원에서 배출되는 국가 연간이산화황 목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도별로, 향후 20년의 기간에 걸쳐 배출물질의 있음직한 동향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214조의 디젤연료탈황규정의 공표로 인해 매년 실제 배출량 감축의 산정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b) 5.60 백만 톤 상한.

이 조에서 요구된 목록에서 공업용공급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과 청정대기법 405(g)(5) 1항의 적용대상 설비가 5.60백만 톤/년 보다 많은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 환경청장은 배출량이 5.6백만 톤/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적절할 수 있는 대로 청정대기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청정대기법 405(g)(5)¹⁾항의 적용대상 설비를 포함하여 청정대기법 111(b)항에서 신규 공급원의 성과기준을 새로, 수정하여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의 권한으로 청정대기법 405(g)(5)항의 적용대상 설비를 포함하여 기존 공급원에 대한 성과기준을 공표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된 기존 공급원의 경우, ‘성과기준’은 환경청장이 공급원 부문 별로 적절하게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는 최우수연속배출감측시스템을 적용하여(배출감축달성비용 및 대기 외 질 위생

1) 아마도 405(g)(6)항을 언급하려고 했을 것임.

및 환경영향 및 에너지 요건을 고려) 달성할 수 있는 배출감축정도를 반영하고 환경청장이 판단하기에 그 공급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 (c) 선정. 청정대기법 405(b)²⁾항에 규정된 규정은 청정대기법 410조의 영향권 내 설비로 선정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407조. 배출감축비용에 대한 의회의 의견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은 허용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의 공급원 사이에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요구량을 달성하는 비용을 할당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다. 감축량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공급원 이외의 당사자가 배출량감축요구량을 달성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광역기반 세금 및 배출수수료는 바람직하지 않다.

408조. 캐나다의 산성비감시 프로그램

- (a) 의회에 보내는 보고. 환경청장은 국무장관, 에너지장관 및 환경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와 상의하여 1994/1/1일자, 1999/1/1일자 및 2005/1/1일자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b) 보고서 내용. 의회에 보내는 보고서는 캐나다의 산성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에서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의 현재 배출수준, 각 지방에서 달성한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감축량, 감축을 하는데 있어 각 지방이 활용한 방법, 각 지방의 비용 및 감축을 하고, 유지하는데 지방의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 (c) 준수. 1999/1/1일부터, 보고서는 각 지방에서 명시된 배출상한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아마도 403(b)항을 말할 것임.

409조. 청정석탄기술 수출프로그램 보고

에너지 장관은 통상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 법 입법일자 후 1년 이내 국무부, 통상부, 에너지부 등 미국정부기관 내, 그리고 수출입은행 및 해외민영투자기업의 청정석탄기술수출프로그램을 확인, 목록을 작성하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부서간 수출 진흥을 조정하는 효과성을 다루고, 청정석탄기술의 수출 및 사용을 후원할 목적으로 부서간 위원회를 수립하는 개연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410조. 미국수산야생자원국의 산성침전물 연구

와이오밍주 Wind River 보호지에서 고위도 산정호수의 감시 및 산성침전물 관련 연구 자금으로 미국 내무부의 수산야생자원청에 50만 달러의 금액을 충당하여 와이오밍 주 랜더에 소재한 미국수산야생자원청의 관리지원국과 와이오밍 대학을 통해서 연구를 실시하도록 허가한다.

411조. 완충제 및 중화제 연구

산성침전물로 피해를 입은 호수 및 개천을 복구하는데 사용된 완충제 및 중화제의 효과성에 대해 와이오밍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할 연구 자금으로 25만 달러의 금액을 미국 내무부 수산야생자원청에 충당하도록 허가한다.

413조. 청정석탄기술 특별프로젝트

- (a) 시연 프로젝트. 에너지장관은 충당조건으로 에너지조직부법에(공법 95.91) 따라 화석에너지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장관 활동의 일환으로 법안에 규정된 배출감축량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연소설비에서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감축기술의 모델 역할을 할 사이클론 보일러의 기술시스템을 설계, 건조 및 시험할 시연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0% 자금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관은 1995/1/1일 이내 프로젝트가 완수될 수 있도록 승인 및 자금지원을 진척시켜야 한다. 이 프로젝트에 선택된 설비는 (1) 404조 표A에 확인된 이산화황 배출시설 최고 10곳 가운데 하나이며, (2) 설비는 3개 이상이며, 그 중 두 개는 사이클로 보일러 설비이고, (3) 기존의 제거제가 없는 유틸리티 공장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허가. 이 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 충당되도록 하고 지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603조. 메탄연구

(a)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조치. 이 법의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환경이익을 고려하는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활동, 물질, 프로세스 또는 이들을 합한 내용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국내메탄공급원목록 및 관리. 이 법의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에너지장관 및 농무부장관과 상의 및 조정을 하여 다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 추출, 수송, 유통, 보관 및 사용 등과 관련된 메탄가스배출량.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이들 활동과 관련된 메탄가스 배출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출목록은 천연가스정 및 오일정, 파이프라인, 가공시설 및 가스버너 등에서 발생한 우발적, 고의적 유출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또한 이들 활동으로 생성된 메탄의 양을 기록한 목록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 추출, 수송, 유통, 보관 및 사용 등과 관련된 메탄가스배출량.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이들 활동과 관련된 메탄가스

배출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출목록은 광산갱, 탈기정(脫氣井), 가스회수정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경우 및 석탄처리 및 사용으로 인한 우발적, 고의적 유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이들 활동으로 생성된 메탄의 양을 기록한 목록도 포함하여야 한다.

- (3) 고형폐기물관리와 관련된 메탄가스. 이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모든 형태의 폐기물관리, 보관, 처리 및 폐기 등과 관련된 메탄가스배출목록이 들어가야 한다.
- (4) 농업 관련 메탄가스. 이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미곡 및 축산 생산과 관련된 메탄배출목록이 들어가야 한다.
- (5) 바이오매스 연소 관련 메탄가스. 이 보고서에는 농업폐기물, 목재, 목초지 및 숲 등을 일부러 태우는 일과 관련된 메탄가스배출목록이 들어가야 한다.
- (6)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메탄가스 배출. 이 보고서는 환경청장 및 기타 부서에서 유의하다고 간주하는 메탄가스 배출 국내 공급원을 확인, 목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c) 해외연구

- (1) 메탄가스 배출. 이 법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b)항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메탄가스배출목록이 들어가야 한다.
- (2) 메탄농도 증가 방지. 이 법의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다른 국가의 활동 및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대기 중 메탄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b)항에 열거한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청장이 기타 관련 연방부서기관과 상의하여 유의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활동이나 공급원에서 메탄가스배출을 줄이는 기술방법을 조사, 평가를 하여야 하며, 비용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대기 중 메탄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달성될 필요가 있을 배출 감축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또한 후진국에서 메탄가스배출감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전수프로그램을 확인하여야 한다.

- (d) 천연자원. 이 법의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 (1) (A)열대, 온난, 아북극 지역의 숲, (B) 툰드라 지역, (C) 담수습지, 염수습지 등 생물기원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 (2)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및 온도 상승가능성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물기원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변화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 메탄 농도 증가억제조치 연구. (b), (c), 및 (d)항의 연구를 마친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b)(1)~(6)조항에 언급된 미국 내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대기 중 메탄농도 증가를 줄이거나 막기 위해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개략한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는 (b)항에 열거한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활동이나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관계부처에서 유의하다고 간주하는 양을 줄이기 위한 기술방안을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는 이 조의 연구 이외의 연구에 기초하여야 하며, 또한 후진국이 메탄가스 감축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미국 및 국제공여기관의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자원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f) 정보수집. 이 조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청정대기법 114조의

요건 및 규정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g) 자문 및 조정. 이 조의 연구를 준비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에너지장관, 국립항공우주국장 및 국립해양대기관리국장, 기타 관련 연방부서기관의 장들과 상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a), (b), 및 (e)항의 연구의 경우에, 자문 및 조정 사항에 농무부 장관도 포함시켜야 한다.

711조. 유보 조항 및 유효일자

- (a) 유보 조항. 이 법에 달리 명시한 규정을 제외하고, 청정대기법에 따라 환경청장이나 미국공무원관리직원이 공직 중에 혹은 퇴직과 관련하여 이 법의 입법일자 직전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제기한 소송, 조치나 기타 절차는 이 법 개정안의 효력 발생을 이유로 무효로 되지 않아야 한다.
- (b) 유효일자. (1) 달리 명시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의 개정안은 이 법 입법일자에 효력을 발한다.
 - (2) 이 법에서 개정된 대로 청정대기법 205(c)항에 따라 환경청장이 민사벌금액을 평가할 권한은 이 법의 입법일자에 혹은 그 후에 발생하거나 계속된 위반행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날짜 전에 발생하고 이 날짜 후 계속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벌금은 이 법의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청정대기법 조항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 (3) 청정대기법 205(a) 및 211(d)(1)항에 규정된 민사벌금은 이 법의 입법일자에 혹은 그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그 날짜 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이 법의 입법일자 직전 유효한 청정대기법 211(d)항 및 205(a)항에 규정된 민사벌금조항을

따라야 한다. 이 법에서 개정된 대로 청정대기법 211(d)(2)항에 규정된 명령권한은 이 법의 입법일자나 혹은 그 후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적용한다.

- (4) (2)항 및 (3)항 목적을 위해, 위반일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짜로 추정한다.

807조. 수소연료전지차량 연구시험프로그램

환경청장은 국립항공우주국 및 에너지부서와 공조하여 수소연료전지전기차량의 개발에 대한 연구시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량생산을 할 수 있고, 비용효과적인 수소연료전지차량의 형태에 기존의 NASA 수소연료전지기술을 가장 잘 전수하는 방법을 결정하며, 최소한 개연성설계방법을 연구하고, 원(原)형을 만들고 시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완수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료전지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시설 및 전문성이 가장 잘 대표하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808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보존인센티브

- (a) 용어 정의. ‘재생에너지’란 용어는 광전류, 태양열, 풍력, 지열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생산기술에서 유도한 에너지를 말한다.
- (b) 비율 인센티브연구. 입법 후 18개월 이내, 연방에너지관리위원회는 환경청과 협의하여 재생불능 에너지와 비교하여 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순이익을 산출하고, 수치로 작성하는 연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연구는 대기, 물, 토지이용, 사람의 건강 및 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c) 모델 규정. (b)항의 연구와 연계하여, 위원회는 환경적 이익에 대한 경제보상을 주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규제처리에 순 환경적 이익을 함체하기 위한 모델을 하나 이상 건의하여야 한다.
- (d) 보고. 위원회는 환경이익에 대해 재생에너지기술을 보상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입법 후 24개월 이내 보고서 형식으로 연구서 및 모델 규정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09조. 남서부 뉴멕시코의 청정대기연구.

환경청장은 남서부 뉴멕시코에서 가시성 저하 원인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멕시코 정부, 기타 연방기관 및 연구를 실시하는데 적절한 단체 등과 협조하도록 한다. 이 조의 어느 조항도 이 조 입법일자 현재 미국에 대해 효력이 있는 국제협약이나 관련 연방법령의 조항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810조. 소 공동체에 대한 영향.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을 이행하기 전에, 환경청장은 환경청의 소공동체조정관과 의논하여 조항을 준수하는 비용 산출 등 이 조항이 소규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811조. 통상국 간 동등한 대기질 관리대책

(a) 조사. 의회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1) 모든 국가가 유효한 대기질 기준요건을 채택,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이 점에서 미국은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 (2) 이 법을 준수한 결과로, 미국 기업은 큰 규모로 자본투자를

하고, 관리기술기준을 이행하는데 있어 증가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 (3) 외국상품이 미국상품보다 환경기준요건 비용이 낮은 조건에서 생산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하면 미국의 특정 직업, 생산, 가공처리 및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인지.
- (4) 미국과 그 통상국가가 경쟁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줄이거나 없애는데 동의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할 것인가.

(b) 대통령의 조치

- (1) 개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대통령은 다음 사항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다음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 평가하는 내용

(i) 이 법에서 요구된 중요한 대기질 기준 및 관리대책, 그리고

(ii) 이 법에서 요구된 중요한 대기질 기준 및 관리대책과 미국 주요 통상국에서 채택, 집행하는 유사 기준 및 관리대책 사이의 차, 미국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에 기초함.

(B) 무역자문 및 협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다룬 전략을 포함

- (2) 추가 보고요건. (A) (1)(A)항에서 요구된 평가는 이 법에서 요구된 중요한 대기질 기준 및 관리대책을 기존의 국제협의를 얻은 규범과 비유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B) (1)(B)항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전략은 미국 및 주요 통상국 사이에 기준 및 관리대책의 차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줄이거나 없애는 권고방안(기준 및 무역조정조치의 조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공공 의견. 이해당사자에게는 (1)항의 보고서에 요구된 평가사항 및 전략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와 같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중간보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9개월 이내, 대통령은 (1)항을 준수하는데 있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13조. 선박에서 오염된 폐오일의 연소.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환경청장은 선박에서 오염된 폐오일의 연소의 건강영향 및 환경영향, 그러한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 그러한 용도의 대안, 대안 비용 및 기타 관련 요소 및 영향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완수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를 준비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견해를 구하고, 교통부 장관 및 해안경비대 사령탑인 부서장관과 의논을 하여야 한다.

814조. 미국산 제품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청정대기법의 ‘최상 이용 가능한 통제기술’이란 용어 및 기타 이 법의 명시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개조된 기존의 장비 및 기계류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구매되어야 하는지
- (2) 신규산업시설 및 유틸리티 시설 공사가 미국산 장비 및 기술을 포함하여 이 법의 명시조항을 따라야 하는지
- (3) 개인, 집단 및 공공 부문 단체가 국가의 대기질을 향상하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 생산하려고 애쓰는지

815조. 미국-멕시코 간 국경 지역의 대기질 감시개선프로그램 수립

(a) 개요. 환경청장은 국무부 및 영향권 내 주정부와 공조하여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지역에서 대기질을 감시,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허가하기 위해 멕시코 대표와 협상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 프로그램은 1995/7/1일자에 만료한다.

(b) 감시 및 구제

(1) 감시. 이 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감시요건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지역에서 국가 대기질 기준(이후 ‘대기기준’으로 칭함) 및 기타 대기질 목표가 정해진 오염물질원을 확인, 결정하여야 한다. 감시요소는 기상학자료, 대기질 측정, 배출목록 집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상급 대기 모델링 수리분석활용을 훌륭히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감시요소는 미국 국경지역에서 주요, 부수 대기질 기준 및 기타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도록 멕시코 및 미국에 필요한 배출감축 수준을 제정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정도로 기타 당사자가 착수한 감시프로그램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구제. 환경청장은 멕시코의 관련 대표들과 협상을 벌여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주요, 부수 대기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공기로 전파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 합동구제책을 개발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 구제책은 환경청관리기법 관리기술 문서집에 수록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구제 프로그램은 멕시코에서 미국의 물질재정지원의 활용으로 촉진될 관리대책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c) 연례보고서. 환경청장은 이 조에서 허가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연도마다 미국 국경을 따라 달성제외지역을 주요, 부수 대기기준으로 달성지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프로그램진행상황에 대한 보

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이 발간한 보고서는 감시구제노력의 이행을 도울 수단에 관한 자금 지원 권고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d) 자금조달 및 인력. 환경청장은 해당되는 경우 충당을 조건으로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자금,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미국의 직접재정지원이 멕시코에서 감시구제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제공된 경우에, 환경청장은 멕시코의 관련 대표들과 보조금약정을 진척시켜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구제조치의 성과 및 감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멕시코 내 관리대책에 대해서 환경청장은 최대 가능한 정도로 멕시코의 자원을 활용하여 미국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인다면 이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조달약정은 환경청장에게 다음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감시구제계획을 심사, 계획에 동의함
- (2) 이 조에서 제시된 목적 및 이 조에 따라 정한 약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지장소, 장비 및 기록을 검사함
- (3) 필요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을 수행하지 위해 영향권 내 주정부와 보조금 약정을 진척시킴.

817조. 부수 기준의 역할

(a) 보고. 환경청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에 복지 및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 국가 대기질 부수기준의 역할에 대한 의회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 (1) 108조의 오염물질 목록 기타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대기 농도로 인해 환경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 (2) 이러한 영향의 결과 초래된 복지 및 환경비용을 산정하고,
- (3)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는데 있어 주의 이행계획과정 및 부수 기준의 역할을 조사하고,
- (4) 복지 및 환경을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합할 오염 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측정하고,
- (5) 부수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및 기타 영향을 산정하고
- (6) 그러한 영향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데 있어 부수기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청정대기법의 목표/목적과 일치하는 기타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의회에 보낼 제출서류; 의견; 허가

- (1) 보고서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3년 이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고서를 발간하기 최소 90일 전, 환경청장은 예정보고에 대한 공공의견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예정보고에 관해 입수한 의견 적요서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3) 이 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충당되도록 허가한다.

819조. 탈곡정 면제사항

여타 법규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103조에서(오존 달성제외지역의 추가규정) 청정대기법 개정사항은 개정안 104조에 의해(일산화탄소 달성제외지역 관련 추가규정), 개정안 105조에 의해(PM.10 달성제외지역의 추가 규정), 그리고 개정안 106조(황산화물, 이산화질소 및 납의 경우 달성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추가 규정)에 의해 다음의 시추, 생산, 개발, 보관이나 가공에 사용된 장비 및 다음 사항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1979년6월 에너지규정의(1986년도 내국세법전 4996(b)(7)항 의

미 안에서 폐지 전 유효한) 의미 내 탈곡정 부지에서 나오는
오일

- (2) 탈곡정 천연가스, 1978년 천연가스정책법 108(b)항에 정의됨
다만, 청정대기법 I장 파트 D에 따라 중증지역으로 지정되고
인수 35만 명 이상이거나 심각한 지역이나 극심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정안 조항에서 포함하는 정도는 제외한다.

820조. 자성부양에 대한 EPA 보고

환경청장은 이 법의 입법일자 후 6개월 이내, 자성부양기술의 보
건환경적 측면분석을 규정하면서 입법일자 전 교통부장관과 체결
한 약정에서 환경청장의 활동 보고서를 의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821조. 지구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정보수집

- (a) 감시. 환경청장은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 입법일자 후 18개월
이내, 청정대기법 V1장을 적용하는 모든 영향권 내 공급원이 511)
(b) 및 (c)항에 같은 시간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감시하
여야 한다. 이 규정은 환경청장에게 그러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
구하여야 한다. 청정대기법 V1장 511 1(e)항 규정은 511조1의 감시
및 데이터에 규정이 적용하는 정도로,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 조의 목적에 적용되어야 한다.
- (b) 이산화탄소정보의 공공 이용성. (a)항의 이산화탄소 자료를 감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설비의 경우, 환경청장은 설비의 총 연간이산
화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 총 연간자
료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511조는 아마도 412조를 말하는 것임. V장은 산성침전물 관련 IV장을 말하는 것임.

901조. 청정대기연구

(a) ……………

(e) 해외대기오염관리기술의 평가. 환경청장은 미국 외 국가에서 미국의 대기오염관리노력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기오염관리기술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한 선진국의 해외대기오염관리기술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대상 국가와 관련하여, 연구서는 도시대기질, 자동차 배출가스, 독성대기배출가스 및 산성침전물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법의 입법일자 후 2년 이내, 연구결과를 상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f) 애디론댁 영향평가. 환경청장은 산성침전물이 가장 극성을 보인 수역에 산성침전물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25000~75,000 에이커 이하로, 국무부에서 생물권 보호지로 지정된 지질 지역 내 위치한 수역에 대한 연중현장분석연구소가 있는 독립 대학과 함께 다년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은 광범위한 생태계모델링 능력뿐만 아니라 20년에 걸쳐 상시 수역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였어야 한다. 이 항을 수행하기 위해 600만 달러 이상이 충당금으로 부여된다.

(g) 서부 주정부 산성침전물 연구 (1) 환경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감시연구를 지원하고, 연간 정기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미시시피 강 서쪽 일부에 소재한 표층수에 산성침전물 발생 및 영향

(B) 산성침전물의 발생 및 고위도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숲)¹⁾,

1) ‘숲’ 다음에 침표가 생략되었어야 함.

및 표층수 포함)

- (C) 간헐적 산성화 발생 및 영향, 특히 고위도 습지와 관련하여
- (2) 환경청장은 (1)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생성한 데이터, 서부 호수 연구의 데이터 및 기타 해당 연구를 분석하고, 미시시피 강 서쪽 미국 일부에서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증가예상으로 인해 산성침전물의 발생가능성 및 영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 서부 지역의 독특한 지리, 기후, 대기 조건을 고려하는 모델링예측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실시한 프로젝트 결과를 (1)항의 의회로 보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h) (1)청정대기법 103(f)항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에너지장관은 네바다대학교와 와이오밍대학교와 제휴하는 비영리단체와 약정 및 협조약정을 체결하고, 이 단체에 보조금을 마련할 권한이 부여된다.
- (2) (1)항에 기술한 약정, 계약 및 보조금은 다음의 비영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A) 기초적 기술관리 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 (B) 비영리단체 소유의 영구연구지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3) (1) 및 (2)항에 기술한 비영리 단체는 이 항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단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받고, 보조금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1991년 회계 연도에 에너지부서에 300만 달러와 (1)항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그 후 회계 연도에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을 충당할 권한이 부여된다.

X 장. 비 특혜사업콘체른

1001조. 비 특혜사업콘체른

1002조. 금지 쿼터 이용

1001조. 비 특혜사업콘체른

(a) 개요. 1990년도 청정대기법개정안에서 개정된 요건과 관련되고 환경청의 기금을 활용하는 연구를 규정하는데 있어, 환경청장은 가능한 정도로 연방총기금의 10% 이상을 비특혜사업콘체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b) 용어 정의

(1) (A) ‘비특혜사업콘체른’이란 용어는 다음의 회사를 말한다.

(i) 사회, 경제적으로 특혜를 받지 못한 개인 소유 지분이 최소 51%이거나 공공거래기업의 경우, 최소한 사회, 경제적으로 특혜를 받지 못한 개인 1명 이상이 소유하는 주식의 최소 51%를 소유

(ii) 경영진 및 매일 운영하는 지사가 개인이 관리함

(B) (i) 영리목적의 사업콘체른은 다음 집단의 구성원이며 한 명이상의 개인의 최소 51%를 소유하거나 공공거래기업회사인 경우 회사주식의 최소 51%에 있는 경우 (a)항의 목적에 맞는 비특혜사업으로 추정한다.

(I) 흑인계 미국인

(II) 히스패닉 미국인

(III) 미국본토인.

(IV) 아시아계 미국인.

(V) 여성

(VI) 장애인

(ii) (i)항에 정한 가정은 비특혜사업회사와 관련하여 그 조항에 언급된 개인이 그 조항에 명시된 집단의 구성원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 회사를 수립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장애를 겪고 있지 않다고 합당하게 입증되면, 특별사업회사와 관련하여 반박을 할 수 있다.

(C) 다음 기관은 (a)항의 목적에 맞게 비특혜사업회사로 가정한다.

(i) 흑인전용대학 및 학생의 40%가 히스패닉계인 학생단체가 있는 대학

(ii) 소수자 단체(일반교육규정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용어를 정함)

(iii)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혜를 받지 못한 개인이 관리하는 사설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D) 벤처기업은 다음의 경우 합작기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a)항의 비특혜사업회사로 간주할 수 있다.

(i) 벤처기업의 구성원이 비특혜사업회사인 경우,

(ii) 당사가나 벤처기업의 최소 51%를 소유함

경제적인 소외계층 개인이나 비특혜 사업회사가 아닌 자는 이 항의 이유로서만 회계 연도에 2번 이상 부여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 이 조항의 어느 것도 (B)(i)항에 열거하지 않은 인종이나 민족 집단 구성원이 인종차별이나 민족 차별의 결과 사업 콘체른을 수립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장애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1002조. 금지 쿼터 이용. 이 장의 어느 조항도 100조1의 적격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쿼터 효과가 있는 요건이나 쿼터 이용을 허가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1995년도 국가고속도체계지정법 348조 (공법104.59)

348조. 특정 배출물질 시험요건의 유예

(a) 개요. 환경청장은 청정대기법 182조나 187조를 준수할 수단으로 어느 주에게 시험용 IM 240 차량검사유지보수향상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환경청장은 그 조를 준수할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추가 채택하기로 선택하면 그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b) 계획부결에 대한 제한. 환경청장은 배출거래권 할인을 규정한 정책, 규정이나 지침에 기초하여 청정대기법 182조나 187조에 따라 주 이행계획수정안에 자동 할인 조항을 적용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는 계획수정안의 검사유지보수프로그램이 지역관리형프로그램 혹은 시험수리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c) 배출감축거래권

(1) 주계획수정안; 승인. 이 항 입법일자에서 120일 이내, 주정부는 청정대기법 182조나 187조에서 중간검사유지보수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행계획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42 U.S.C. 7511a; 7512a).

환경를 반영하고 수정안이 달리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의 요소별로 추가 제의한 총 배출거래권양에 기초하여 이 프로그램을 승인하여야 한다. 120일의 기간 내, 주정부는 이행계획예정수정안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수정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정권한이 있으며, 수정하기 위해 규정을 상정하였다면, 환경청장은 그 규정이 주에서 최종 규정으로 발효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수정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2) 잠정 승인 만료. 잠정승인은 (A)잠정승인일자에 시작하여 19개

월 기간 마지막 일자 혹은 (B) 최종 승인일자 중 더 이른 날짜에 만료한다. 잠정승인은 연장될 수 없다.

- (3) 최종 승인. 환경청장은 주정부 프로그램운용에 관한 수집한 데이터가 배출거래권이 적절하고 수정사항이 달리 청정대기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잠정승인 기간 중이나 후에 주에서 제의한 배출거래권에 기초하여 수정사항을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 (4) 승인의 근거. 자동할인 없음. 잠정승인이나 최종 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든 프로그램의 요소에 기초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지방분권형 또는 시험 & 수리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